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102-10

# 2012
# 청소년 백서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발간사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움직이는 주역이며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청소년이 삶의 주체로서 필요한 인성과 자질을 개발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 자신뿐 아니라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정부 등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1965년「청소년 백서」를 처음 발행한 이후, 47년 동안 해마다 청소년정책의 핵심내용을 담은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청소년 백서」는 복지, 활동, 안전, 교육 등 분야별로 청소년정책 현황과 전망, 각종 통계와 같은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해 왔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분야 전체를 조망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청소년을 위해 더 나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중심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이 청소년분야에서는 처음으로「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여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의「청소년 백서」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백서에는 '푸른 꿈을 키우며 건강하게 자라는 청소년'을 주요내용으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복지지원 확대,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 등 한 해동안의 청소년정책 성과와 통계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록하였습니다.

「2012 청소년 백서」가 정부 관계기관과 청소년관련 시설·단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자주 활용되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수립·연구활동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제5차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년~2017년)'에 포함된 청소년 역량강화, 참여 및 권리증진,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추진하여 청소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 김 금 래



#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

1983 문교부 청소년과

1987 청소년육성법 제정

1988 체육부 청소년국

1991 청소년기본법 제정

1991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1993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1997 청소년보호법 제정

1998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1998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2004 청소년활동진흥법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정

2005 국가청소년위원회

2008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2010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청소년문제 개선 종합대책 (1985~1987)**

- 문제대응에서 건전 육성 중심으로 전환
- 정서적, 문화적 공간 제공
- 빈곤 세습화 방지

- 종합적 청소년정책과 관련법령 및 추진체계 기획
- 청소년 이용시설 확충과 활용대책 마련
- 대통령 주재 청소년 대책 확대회의 매년 개최

**한국 청소년 기본 계획 (1992~2001)**

- 일반 청소년의 자질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체제 마련
-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제도 기반 조성

- 청소년 수련거리,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등 수련활동 인프라 기반
- 청소년 수련활동 중심의 청소년육성 고유영역 마련

**제1, 2차 청소년 육성 5개년 계획 (1993~2002)**

- 미래 준비를 위한 청소년활동 기반
- 동반자적 청소년 지위 부여와 청소년 참여기초 마련
- 청소년보호정책 강화

- 청소년정책 범주 확대 및 기능 현실화
- 청소년을 대상에서 참여 주체로 인정
- 지역, 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

**제3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 (2003~2007)**

- 주5일제 대비 창의적 청소년활동 기반 조성
- 참여, 인권과 복지의 지속적 확대
- 청소년정책과 사업 범국민적 인식 제고

- 청소년행정 체계의 통합 일원화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등 청소년복지 기반 조성
- 청소년정책과 사업 추진체계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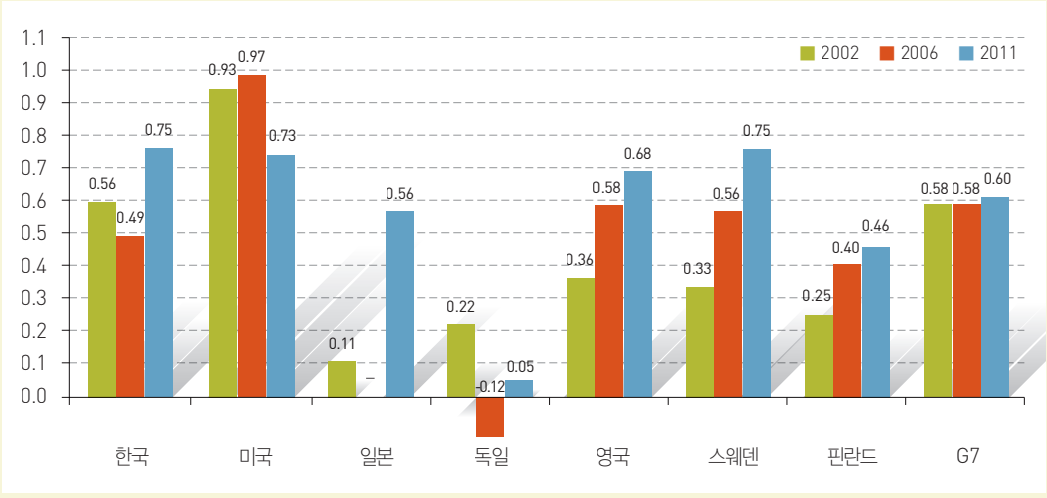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08~2012)**

- 아동정책과 청소년 정책 통합 추진
- 보편적 · 통합적 청소년정책 추진

## 국제비교 지표

### [ 인구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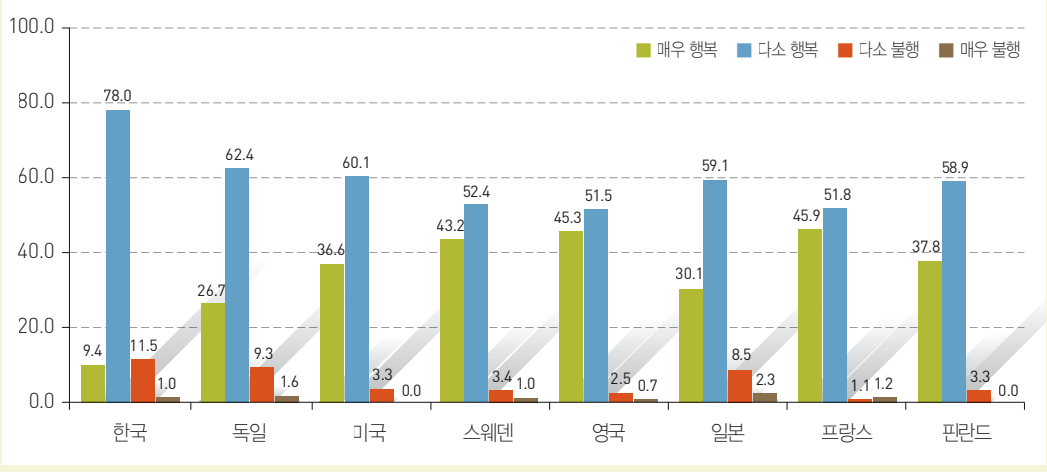
(단위 : %)




주 : 인구성장율 = (당해년도 연앙인구/전년도 연앙인구−1)×100
자료 : OECD(2012).

### [ 국가별 주관적 행복감(15~29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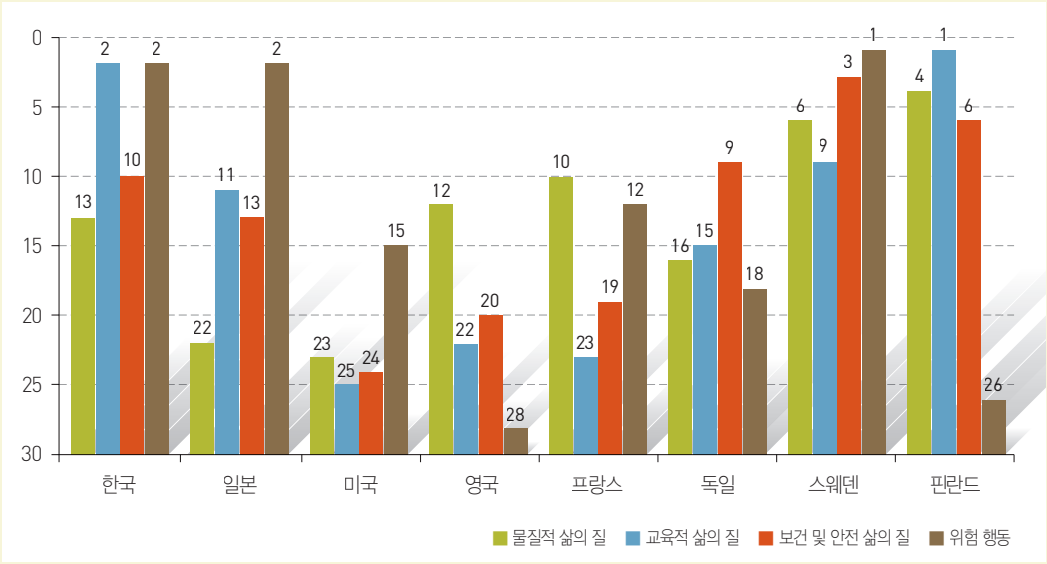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The World Values Survey(2010). Values Survey Databank.

## [ OECD 회원국 간의 청소년 삶의 질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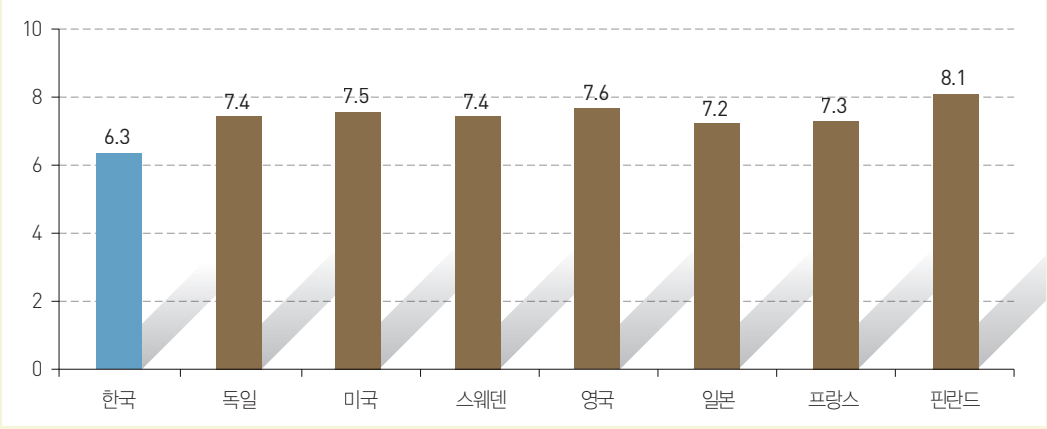
(단위 : 순위)




자료 : OECD(2009). 청소년 삶의질(Doing Better for Children) 보고서.

## [ 국가별 삶의 만족도(15~29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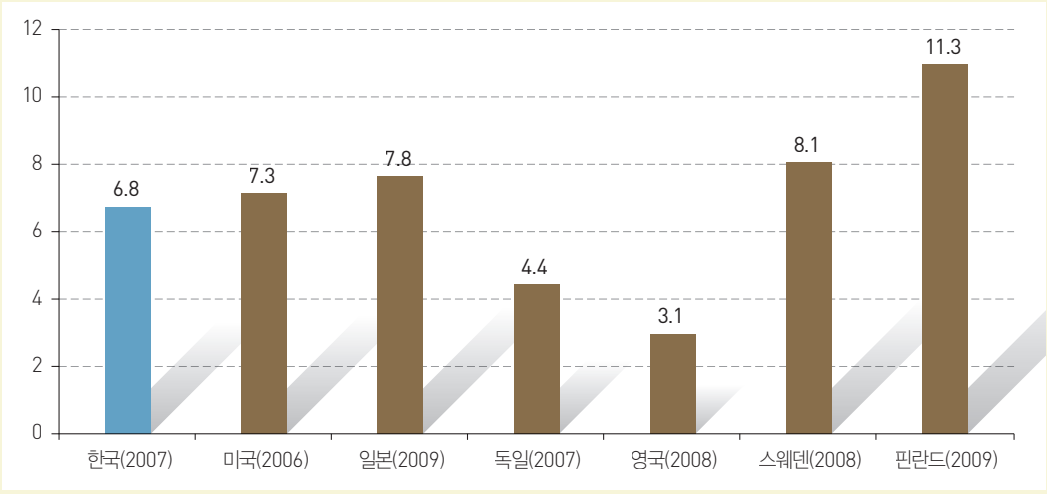
(단위 : 점)




자료 : The World Values Survey(2010). Values Survey Databank.

## [ 청소년(15~24세) 자살율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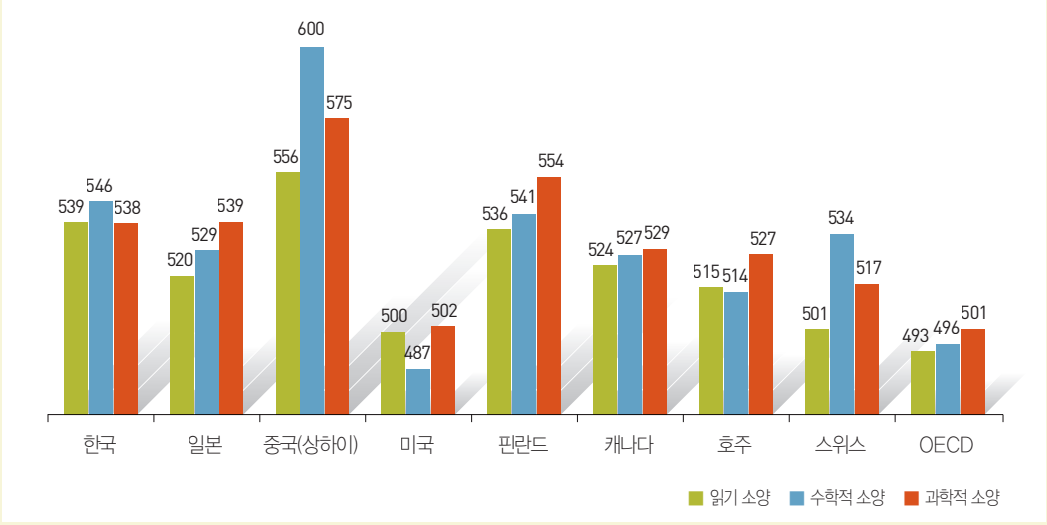
(단위 : 인구 10만명당 명)




주 :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자살율.
자료 : OECD(2012). Family Database.

## [ 2009 PISA 결과 국제 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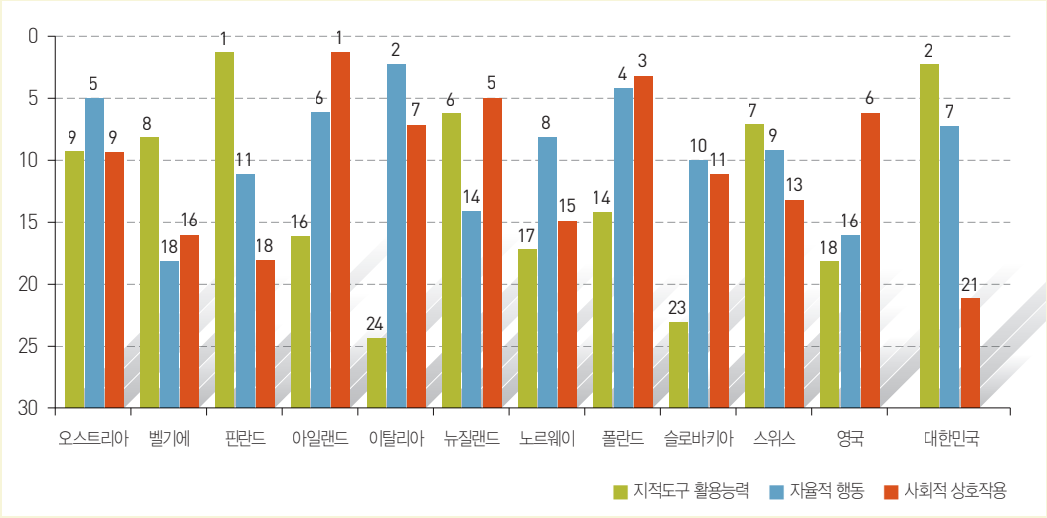
(단위 : 평균점수)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 [ OECD 회원국 간의 핵심역량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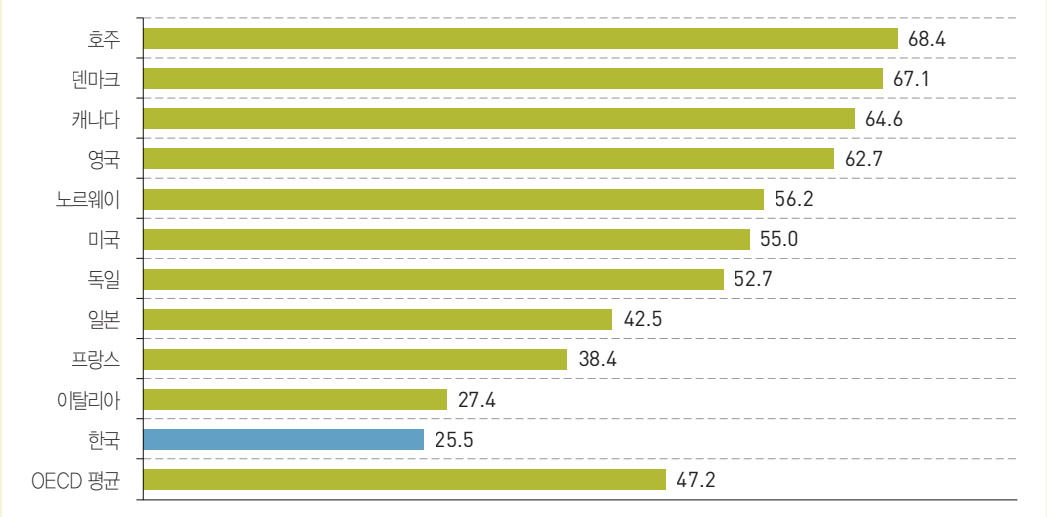
(단위 : 순위)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0). 청소년 생애 핵심역량개발 및 추진방안연구Ⅲ.

## [ 2011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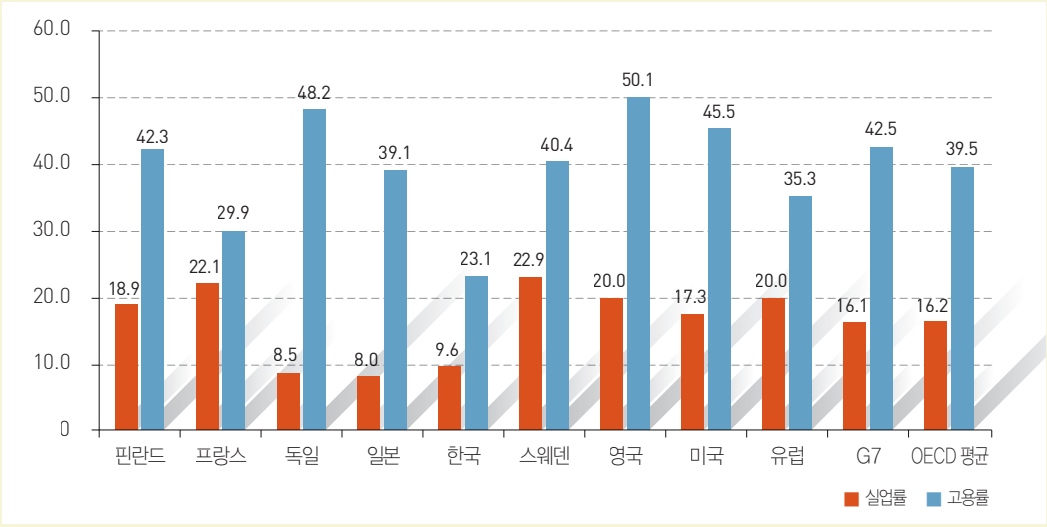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 [ 청소년(15~24세) 실업률·고용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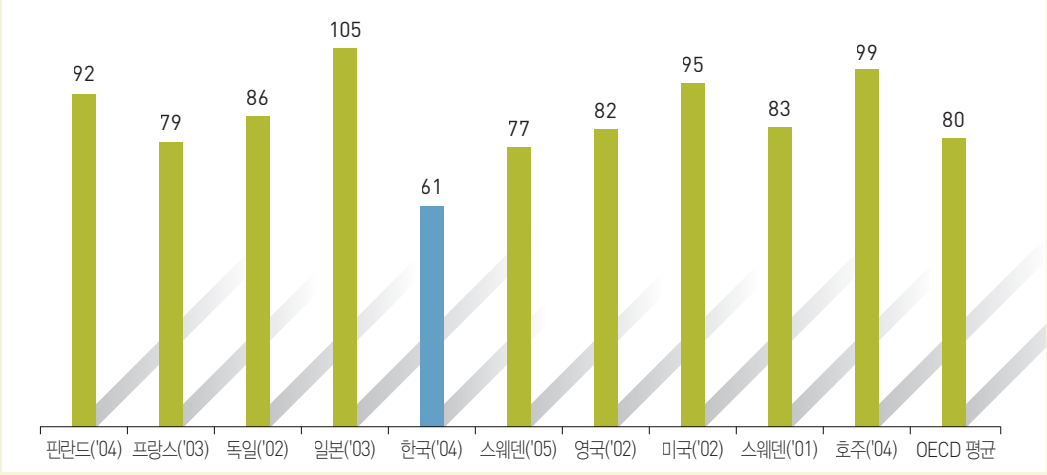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OECD(2012).

## [ 젊은 유권자(15~24세)의 투표 비율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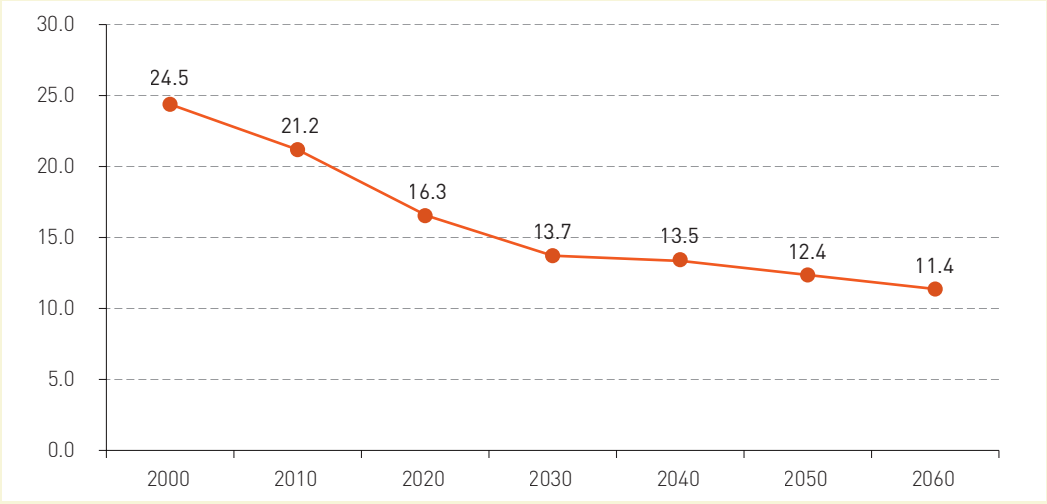

주 : 15~24세 투표율/65세 이상 투표율
자료 : OECD(2006). Society at a Glance.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지표

## 국내 지표

[ 청소년 인구 증감 추이(1970~203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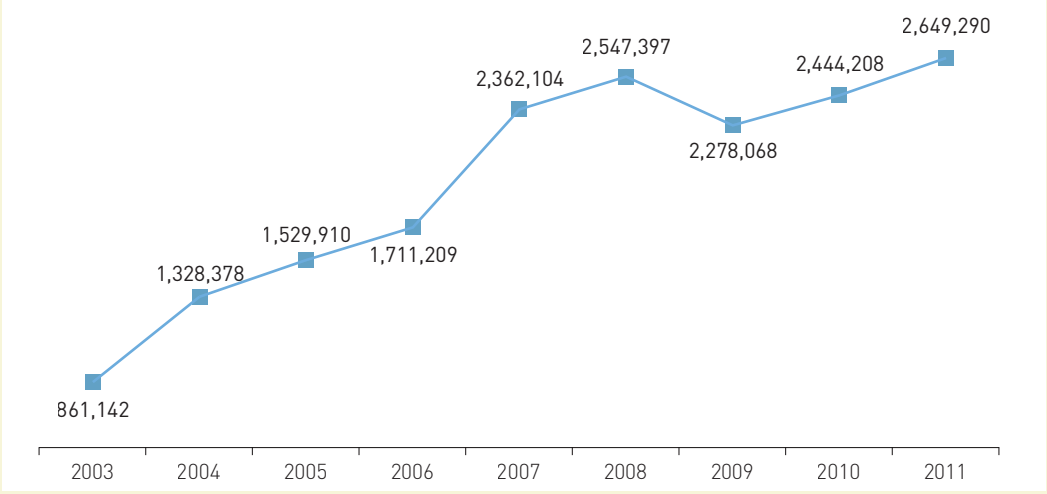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2). 장래인구추계.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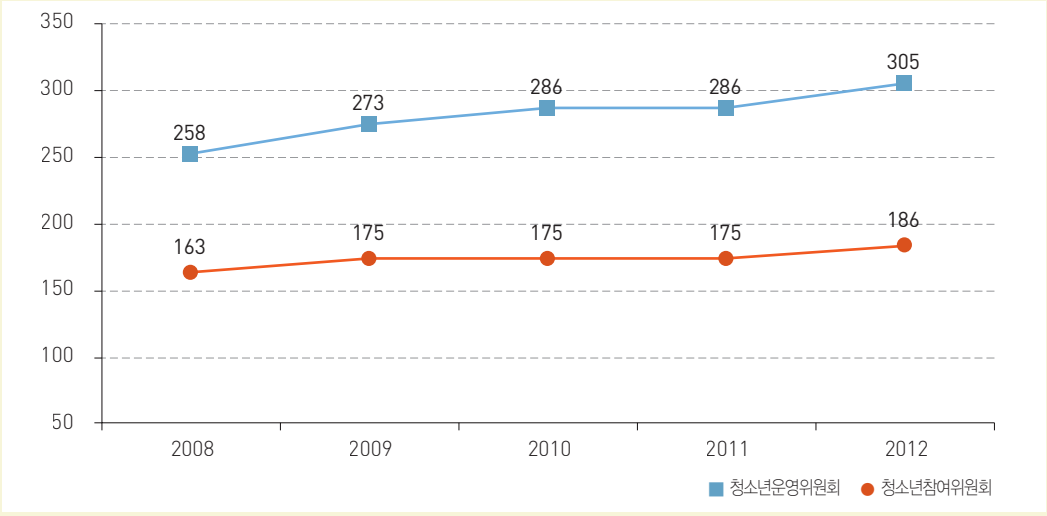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 청소년 참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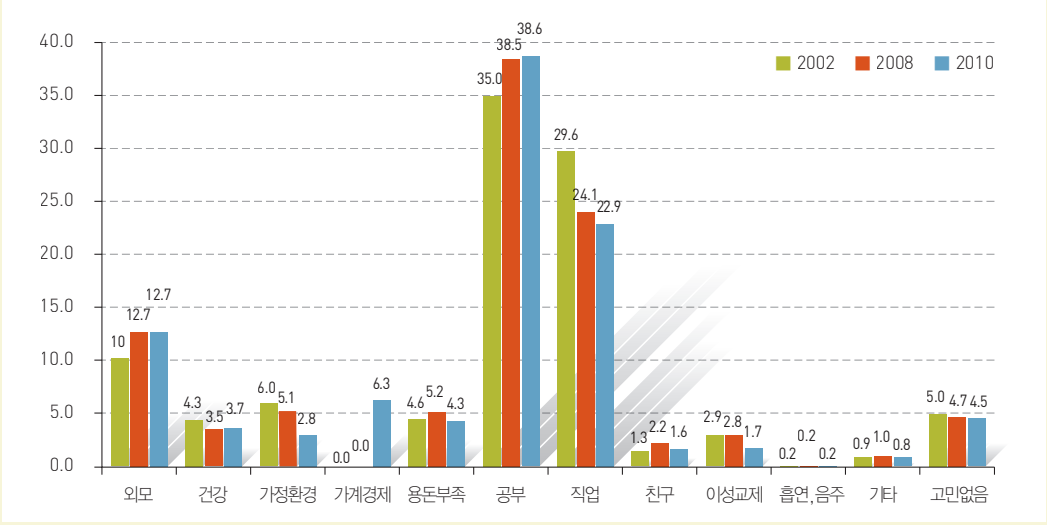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 청소년들의 고민거리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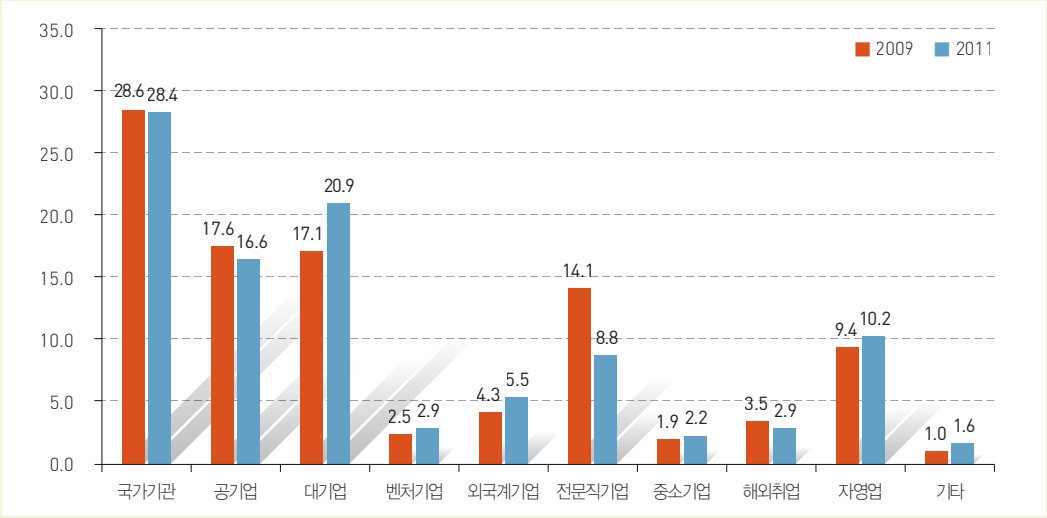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사회조사.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지표

##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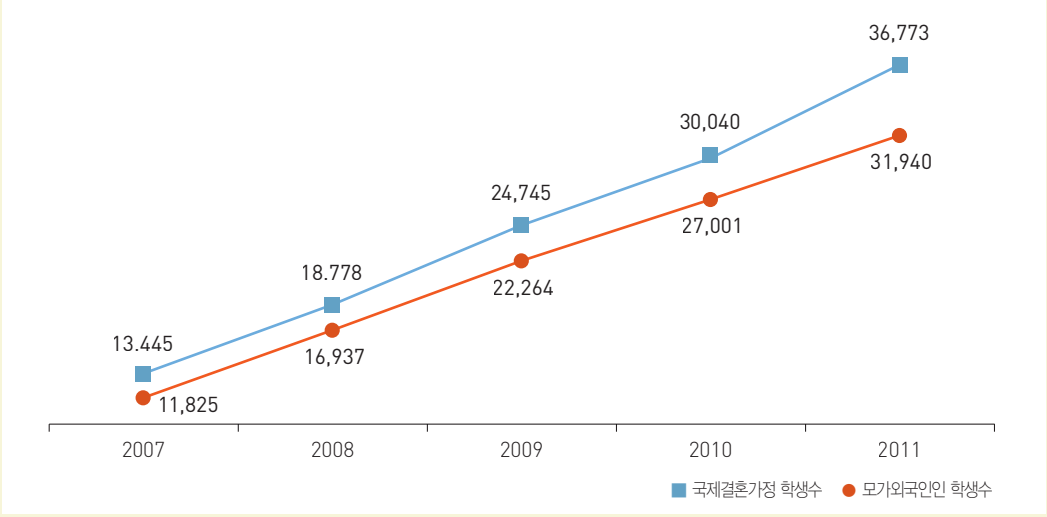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1). 사회조사.

## [ 다문화가정 자녀 재학생 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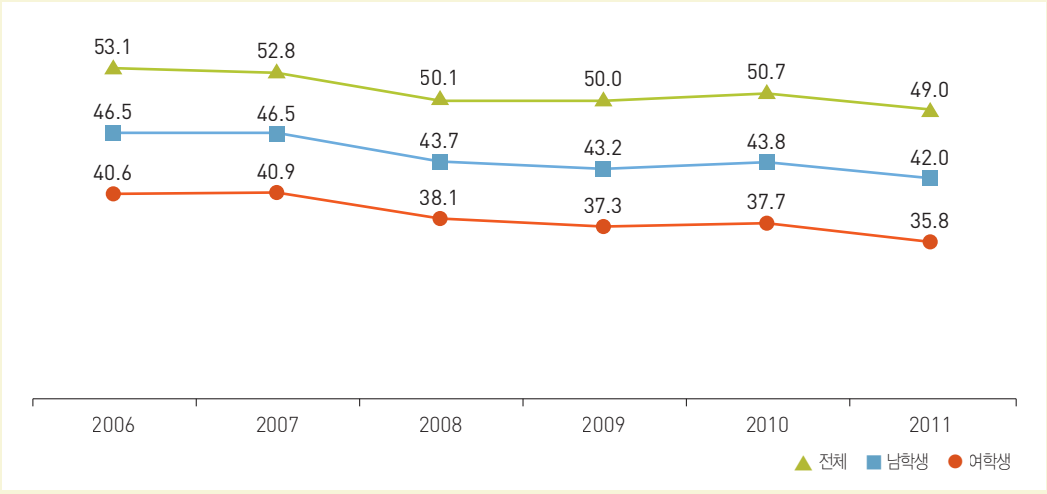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2012).

## [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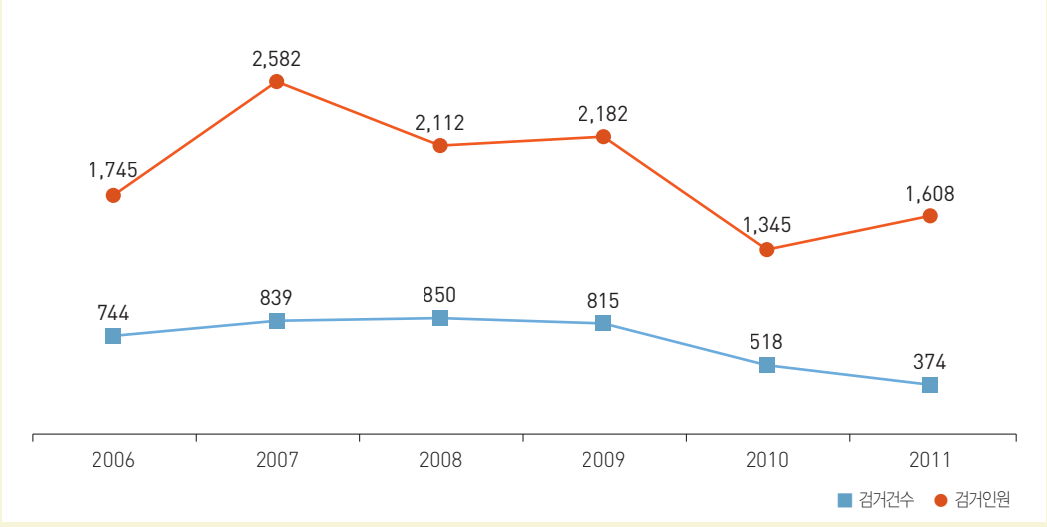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 청소년 성매매 검거 건수 및 검거인원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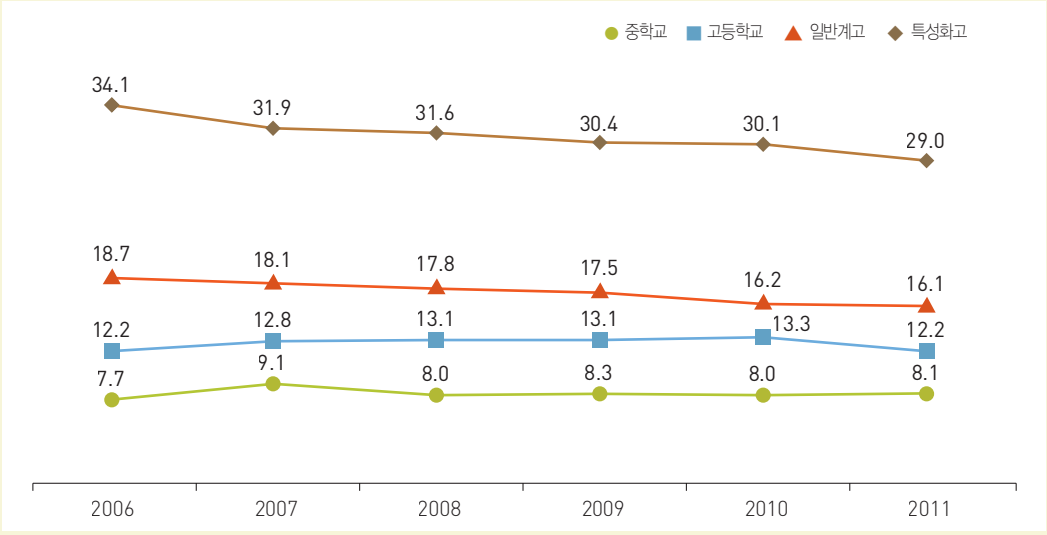
(단위 : 건, 명)




자료 : 경찰청(2012).

## [ 교급별 현재 흡연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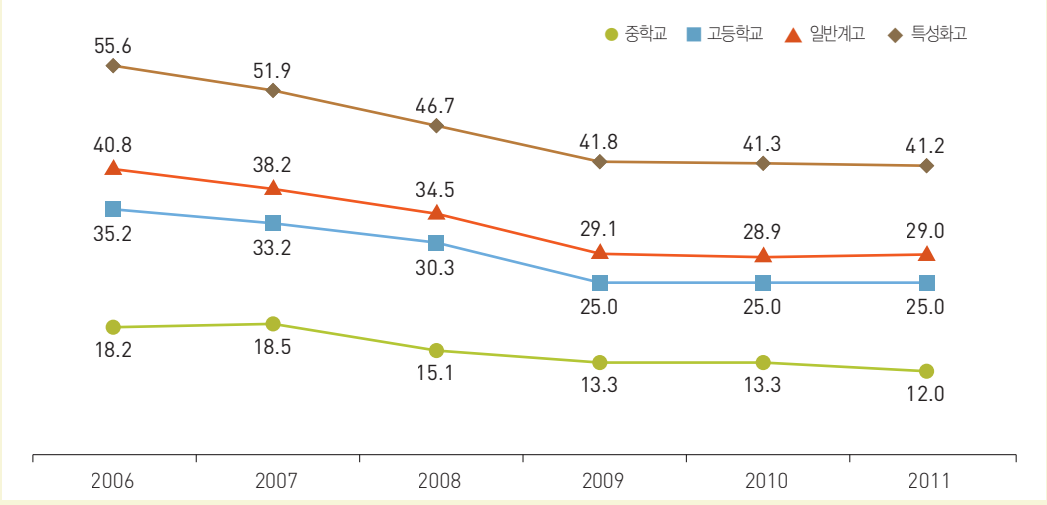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 교급별 현재 음주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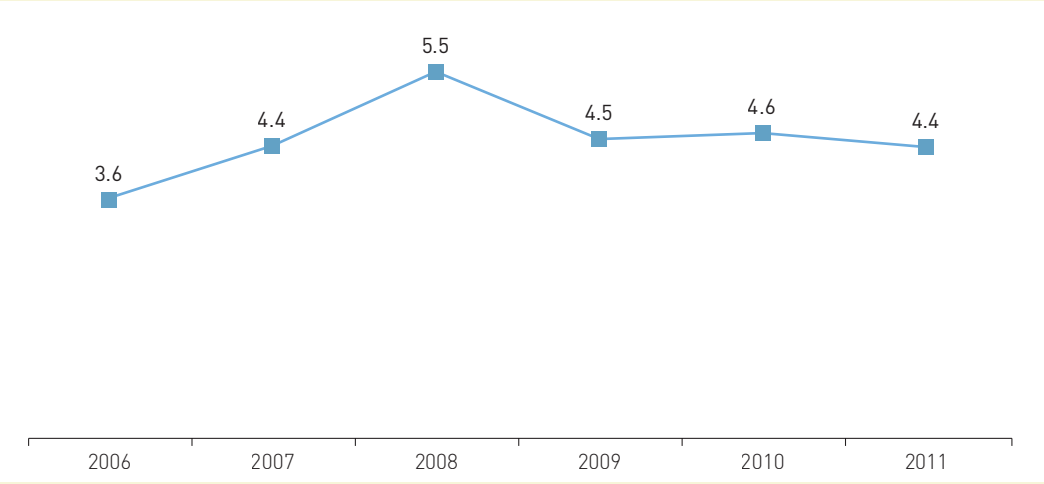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 전체범죄대비 소년범죄의 비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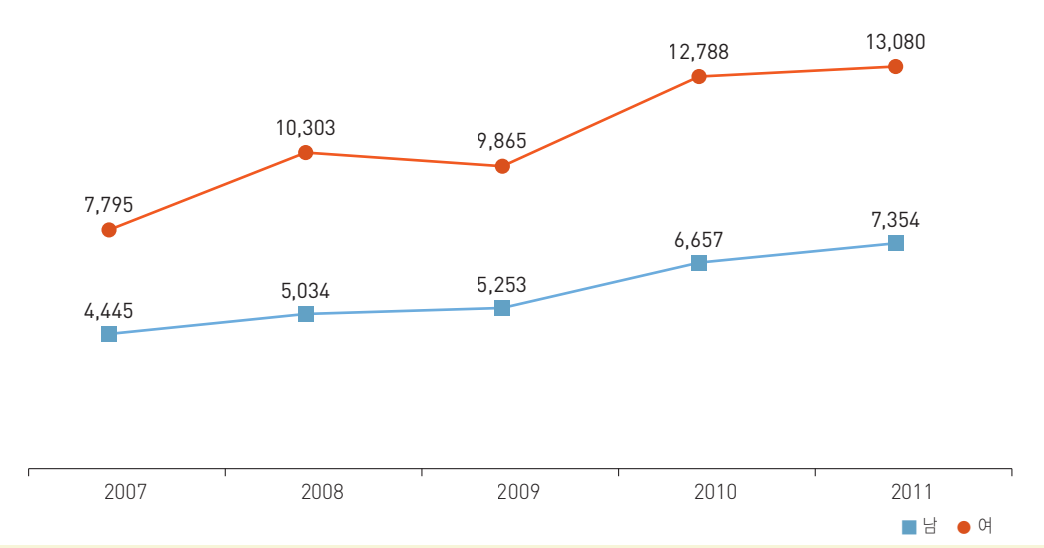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 청소년(14~19세) 가출 신고 추이 ]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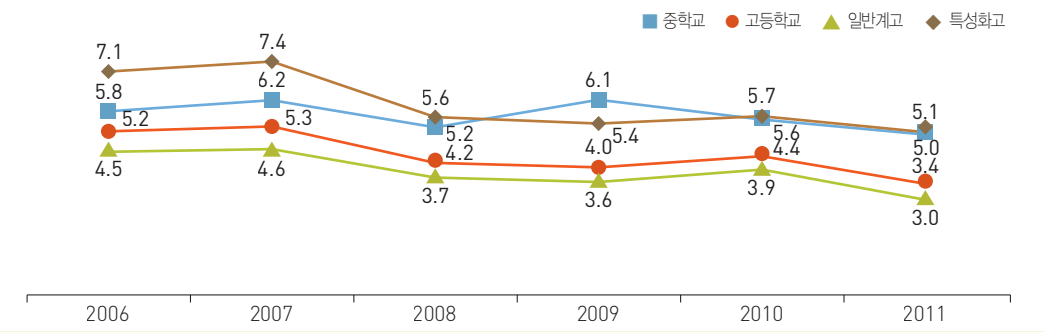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통계로 보는 청소년 : 국내·외 주요지표

## [ 청소년 자살시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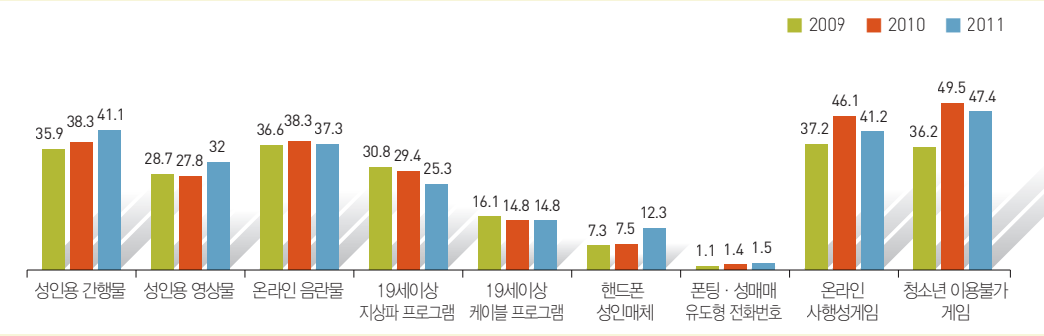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 질병관리본부 ·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각 년도.

## [ 청소년 유해매체 이용 경험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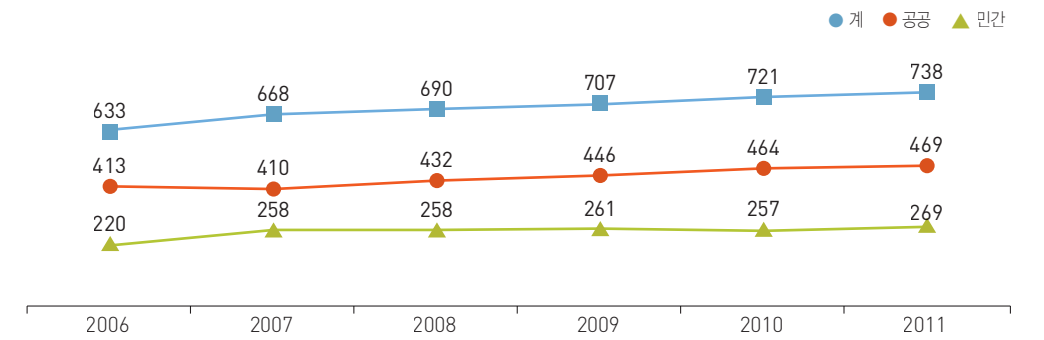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 [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 ]

(단위 : 개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012 청소년백서 본문 CONTENTS

## 제1부 총론


제1장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2

제2장 청소년 정책추진 현황 4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4
2. 청소년활동 활성화 5
3.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확대 6
4.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7
5.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8

제3장 세계 청소년 정책의 흐름 10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10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16
3. 미주 및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청소년정책 26


## 제2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36

1. 청소년 인구 현황 36
2. 청소년 인구 전망 38
3. 청소년 인구동태 40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48

1. 가족구성 현황 48
2. 가구수 현황 49
3. 가구의 세대구성 51


## 제3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56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56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57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57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61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70

1. 청소년의 달 행사 70
2. 청소년지도자대회 75
3. 푸른성장대상(大賞) 76

## 제4부 청소년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80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80
2. 청소년문화활동 81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84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88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91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도입 배경 91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91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95

1. 청소년 국제교류 95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99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102

## 제5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106

1. 아동빈곤율 현황 106
2. 한부모 가구 현황 111
3. 다문화 가족 현황 114
4. 요보호아동 현황 116
5.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118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20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120
2.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124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26
4. 지역아동센터 운영 129
5.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33
6. 디딤씨앗 통장(CDA)사업 137
7.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138
8. 아동 급식 지원 145

제3장 청소년 상담활동 147

1. 상담서비스 147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155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158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159
5.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두드림존(Do Dream Zone)」 161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165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165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172
3.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175
4. 청소년의 정신건강 180
5. 청소년의 건강대책 185

## 제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196

1. 학교폭력대책 196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200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204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207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213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213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220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228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228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234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234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238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239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242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242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245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248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250

## 제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256

1. 학령인구 256
2. 학생인구 및 학교수 257
3. 조기유학 현황 260
4.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61
5. 진학률 262
6. 교육재정 263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267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267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272

제3장 교육복지정책 274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74
2. 방과후학교 282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288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294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297

## 제8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308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308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311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312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314
5. 임금 및 노동시간 317
6. 청소년 아르바이트 320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22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322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322
3.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 324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325

제3장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328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328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333

## 제9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338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338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341
3. 학생범죄의 동향 343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345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345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358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367

## 제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386
1. 청소년 활동시설 386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392

제2장 청소년지도자 395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395
2. 청소년지도사 396
3. 청소년상담사 402

제3장 청소년 단체 407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407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409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411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411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418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423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424
5. 정부 산하기관 425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428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428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431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433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436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436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437

## 부록 자료편

# 2012 청소년백서 표 CONTENTS


〈표 1-3-1〉 교육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 11
〈표 1-3-2〉 EU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17
〈표 2-1-1〉 201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37
〈표 2-1-2〉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39
〈표 2-1-3〉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40
〈표 2-1-4〉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41
〈표 2-1-5〉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42
〈표 2-1-6〉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43
〈표 2-1-7〉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44
〈표 2-1-8〉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45
〈표 2-1-9〉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46
〈표 2-1-10〉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47
〈표 2-2-1〉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48
〈표 2-2-2〉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50
〈표 2-2-3〉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51
〈표 2-2-4〉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52
〈표 3-2-1〉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63
〈표 3-2-2〉 201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64
〈표 3-2-3〉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66
〈표 3-2-4〉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68
〈표 3-2-5〉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69
〈표 3-3-1〉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70
〈표 3-3-2〉 청소년 주간 주요 행사내용 71
〈표 3-3-3〉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73
〈표 3-3-4〉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74
〈표 3-3-5〉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76
〈표 3-3-6〉 푸른성장대상 역대시상식 현황 77
〈표 4-1-1〉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80
〈표 4-1-2〉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82
〈표 4-1-3〉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83
〈표 4-1-4〉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85
〈표 4-1-5〉 연도별, 기관 유형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86

# 2012 청소년백서 표 CONTENTS


〈표 4-1-6〉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89
〈표 4-1-7〉 포상제 운영 현황 90
〈표 4-2-1〉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92
〈표 4-2-2〉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회원 수(누적) 93
〈표 4-2-3〉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93
〈표 4-2-4〉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93
〈표 4-3-1〉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1개국) 95
〈표 4-3-2〉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96
〈표 4-3-3〉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현황 98
〈표 4-3-4〉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현황 98
〈표 4-3-5〉 2011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99
〈표 4-3-6〉 2011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101
〈표 4-3-7〉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102
〈표 4-3-8〉 201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102
〈표 5-1-1〉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절대빈곤율) 107
〈표 5-1-2〉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상대빈곤율) 108
〈표 5-1-3〉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08년, 중위소득 50%) 110
〈표 5-1-4〉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112
〈표 5-1-5〉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112
〈표 5-1-6〉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113
〈표 5-1-7〉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114
〈표 5-1-8〉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115
〈표 5-1-9〉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 현황 116
〈표 5-1-10〉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117
〈표 5-1-11〉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118
〈표 5-1-12〉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 119
〈표 5-2-1〉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121
〈표 5-2-2〉 청소년 쉼터의 발전단계 122
〈표 5-2-3〉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122
〈표 5-2-4〉 쉼터의 종류 및 기능 123
〈표 5-2-5〉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123
〈표 5-2-6〉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124

〈표 5-2-7〉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125
〈표 5-2-8〉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125
〈표 5-2-9〉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127
〈표 5-2-10〉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128
〈표 5-2-11〉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129
〈표 5-2-12〉 지역아동센터 주요 프로그램 130
〈표 5-2-1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132
〈표 5-2-14〉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133
〈표 5-2-15〉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 수 135
〈표 5-2-1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136
〈표 5-2-17〉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138
〈표 5-2-18〉 아동복지시설 현황 139
〈표 5-2-19〉 가정위탁 보호 현황 140
〈표 5-2-20〉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142
〈표 5-2-21〉 국내·외 입양 현황 144
〈표 5-2-22〉 국내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144
〈표 5-2-23〉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146
〈표 5-3-1〉 201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149
〈표 5-3-2〉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150
〈표 5-3-3〉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50
〈표 5-3-4〉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152
〈표 5-3-5〉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154
〈표 5-3-6〉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155
〈표 5-3-7〉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157
〈표 5-3-8〉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157
〈표 5-3-9〉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158
〈표 5-3-10〉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유형별 이용건수 159
〈표 5-3-11〉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현황 160
〈표 5-3-12〉 두드림존 프로그램 163
〈표 5-4-1〉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166
〈표 5-4-2〉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168
〈표 5-4-3〉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169

〈표 5-4-4〉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169
〈표 5-4-5〉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170
〈표 5-4-6〉 성별·연령별 팔굽혀펴기/매달리기의 추이 170
〈표 5-4-7〉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년 윗몸말아올리기) 171
〈표 5-4-8〉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171
〈표 5-4-9〉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분율 172
〈표 5-4-10〉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173
〈표 5-4-11〉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분율 173
〈표 5-4-12〉 끼니별 식사 여부에 따른 결식률 (1세 이상) 174
〈표 5-4-13〉 흡연 관련 지표 177
〈표 5-4-14〉 음주 관련 지표 179
〈표 5-4-15〉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과제 185
〈표 5-4-16〉 보건관리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186
〈표 5-4-17〉 환경관리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187
〈표 5-4-18〉 급식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188
〈표 5-4-19〉 학교체육 중점과제 및 실행과제 189
〈표 5-4-20〉 청소년 대상 국민건강증진 목표(Health Plan 2020) 190
〈표 5-4-21〉 제1차 및 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193
〈표 6-1-1〉 아동학대 사례유형 201
〈표 6-1-2〉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201
〈표 6-1-3〉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 204
〈표 6-1-4〉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207
〈표 6-1-5〉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현황(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207
〈표 6-1-6〉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210
〈표 6-1-7〉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12
〈표 6-2-1〉 청소년 최근 1년간 음주횟수 214
〈표 6-2-2〉 청소년 음주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214
〈표 6-2-3〉 1회 평균 음주량 214
〈표 6-2-4〉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연령 215
〈표 6-2-5〉 청소년 최근 한 달 1일 흡연량 215
〈표 6-2-6〉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217
〈표 6-2-7〉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219

〈표 6-2-8〉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220
〈표 6-2-9〉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221
〈표 6-2-10〉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221
〈표 6-2-1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223
〈표 6-2-12〉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225
〈표 6-2-13〉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226
〈표 6-3-1〉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229
〈표 6-3-2〉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231
〈표 6-3-3〉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232
〈표 6-5-1〉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242
〈표 6-5-2〉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243
〈표 6-5-3〉 교육프로그램 구성 244
〈표 6-5-4〉 교육실시현황 244
〈표 6-5-5〉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252
〈표 6-5-6〉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252
〈표 7-1-1〉 학령인구 257
〈표 7-1-2〉 학교급별 학생인구 258
〈표 7-1-3〉 학교급별 학교수 259
〈표 7-1-4〉 교원 1인당 학생수 260
〈표 7-1-5〉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261
〈표 7-1-6〉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261
〈표 7-1-7〉 학교 급별 진학률 263
〈표 7-1-8〉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264
〈표 7-1-9〉 GDP대비 교육재정 265
〈표 7-1-10〉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265
〈표 7-1-11〉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266
〈표 7-2-1〉 PISA 2009 영역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268
〈표 7-2-2〉 PISA의 평가영역별 학업성취도 순위 및 평균점수 변화 추이 269
〈표 7-2-3〉 PISA 영역별 학업성취도 점수에 대한 성별 추이 270
〈표 7-2-4〉 PISA 영역별 학업성취수준 변화 추이 271
〈표 7-2-5〉 PISA 2009 읽기에 대한 학습·심리 척도 분석 결과 272
〈표 7-2-6〉 PISA 2009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및 학교 내 차이 272

# 2012 청소년백서 표 CONTENTS


〈표 7-2-7〉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273
〈표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275
〈표 7-3-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현황 284
〈표 7-3-3〉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284
〈표 7-3-4〉 농산어촌, 도시, 전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284
〈표 7-3-5〉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285
〈표 7-3-6〉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285
〈표 7-3-7〉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286
〈표 7-3-8〉 내용별 강좌현황 286
〈표 7-3-9〉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287
〈표 7-3-10〉 방과후학교 만족도 287
〈표 7-3-11〉 방과후학교 참여효과에 대한 만족도 288
〈표 7-3-12〉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 현황 290
〈표 7-3-13〉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290
〈표 7-3-14〉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차별 학업성취도 수준 291
〈표 7-3-15〉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292
〈표 7-3-16〉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비 규모 292
〈표 7-3-17〉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293
〈표 7-3-18〉 전체학생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294
〈표 7-3-19〉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295
〈표 7-3-20〉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298
〈표 7-3-21〉 2012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298
〈표 7-3-22〉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299
〈표 7-3-2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 현황 304
〈표 8-1-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308
〈표 8-1-2〉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310
〈표 8-1-3〉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311
〈표 8-1-4〉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313
〈표 8-1-5〉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315
〈표 8-1-6〉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316
〈표 8-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18
〈표 8-1-8〉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318

〈표 8-1-9〉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319
〈표 8-1-10〉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320
〈표 8-2-1〉 201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상황 322
〈표 8-2-2〉 2011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23
〈표 8-2-3〉 2011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24
〈표 8-2-4〉 2011년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325
〈표 8-2-5〉 2011년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26
〈표 8-2-6〉 2011년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326
〈표 8-3-1〉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330
〈표 8-3-2〉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331
〈표 9-1-1〉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비율 338
〈표 9-1-2〉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39
〈표 9-1-3〉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340
〈표 9-1-4〉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340
〈표 9-1-5〉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341
〈표 9-1-6〉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342
〈표 9-1-7〉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342
〈표 9-1-8〉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343
〈표 9-1-9〉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344
〈표 9-2-1〉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346
〈표 9-2-2〉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347
〈표 9-2-3〉 2011년 범죄예방교실 운영현황 347
〈표 9-2-4〉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348
〈표 9-2-5〉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348
〈표 9-2-6〉 명예경찰소년단 활동현황 349
〈표 9-2-7〉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350
〈표 9-2-8〉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351
〈표 9-2-9〉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현황 352
〈표 9-2-10〉 2011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352
〈표 9-2-11〉 2011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352
〈표 9-2-12〉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354
〈표 9-2-13〉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임무 355

〈표 9-2-14〉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355
〈표 9-2-15〉 대안교육 실시현황 357
〈표 9-2-16〉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357
〈표 9-2-17〉 보호자교육 실시현황 358
〈표 9-2-18〉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359
〈표 9-2-19〉 소년범죄 처리 현황 360
〈표 9-2-20〉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361
〈표 9-2-21〉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362
〈표 9-2-22〉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363
〈표 9-2-23〉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364
〈표 9-2-24〉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365
〈표 9-2-25〉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 366
〈표 9-2-26〉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369
〈표 9-2-27〉 보호소년 수용현황 370
〈표 9-2-28〉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370
〈표 9-2-29〉 소년원학생 취업 현황 371
〈표 9-2-30〉 소년원학생 진학 현황 371
〈표 9-2-31〉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372
〈표 9-2-32〉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373
〈표 9-2-33〉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374
〈표 9-2-34〉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375
〈표 9-2-35〉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376
〈표 9-2-36〉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377
〈표 9-2-37〉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377
〈표 9-2-38〉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비율 379
〈표 9-2-39〉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379
〈표 9-2-40〉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380
〈표 9-2-41〉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381
〈표 9-2-42〉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382
〈표 9-2-43〉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383
〈표 10-1-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87
〈표 10-1-2〉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388

〈표 10-2-1〉 청소년 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397
〈표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397
〈표 10-2-3〉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399
〈표 10-2-4〉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400
〈표 10-2-5〉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402
〈표 10-2-6〉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404
〈표 10-2-7〉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404
〈표 10-2-8〉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405
〈표 10-2-9〉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현황 406
〈표 10-4-1〉 청소년정책관의 주요기능 413
〈표 10-4-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현황 415
〈표 10-4-3〉 청소년정책의 변천 416
〈표 10-4-4〉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418
〈표 10-4-5〉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423
〈표 10-4-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424
〈표 10-5-1〉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현황 434
〈표 10-6-1〉 연도별 청소년예산 436
〈표 10-6-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439

# 2012 청소년백서 그림 CONTENTS


[그림 1-1-1]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개요 3
[그림 3-2-1] 사진 : UN공공행정상 수상(2012년 6월 25일) 62
[그림 3-2-2]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65
[그림 3-2-3]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68
[그림 4-1-1] 연도별 참여 청소년 변화 추이 87
[그림 4-1-2] 2011년 효과성 측정 결과 88
[그림 4-2-1]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94
[그림 5-2-1]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30
[그림 5-2-2]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131
[그림 5-2-3]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132
[그림 5-2-4]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134
[그림 5-2-5]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결과 136
[그림 5-2-6]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137
[그림 5-3-1] 201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152
[그림 5-3-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수 153
[그림 5-3-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156
[그림 5-3-4]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11년 월별 이용 실적 159
[그림 5-3-5]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지원체계 162
[그림 5-3-6]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162
[그림 5-4-1]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174
[그림 5-4-2]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176
[그림 5-4-3] 학년별 현재 흡연율 177
[그림 5-4-4]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178
[그림 5-4-5] 학년별 현재 음주율 179
[그림 5-4-6]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181
[그림 5-4-7]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182
[그림 5-4-8] 학년별 자살 생각률 183
[그림 5-4-9] 학년별 자살 시도율 184
[그림 6-1-1]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198
[그림 6-1-2]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208
[그림 6-3-1]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230
[그림 6-3-2] 청소년유해음반 재심의 청구 절차 233

[그림 6-4-1]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235
[그림 6-5-1]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251
[그림 7-1-1] 학령인구 256
[그림 7-1-2] 교원 1인당 학생수 259
[그림 7-1-3] 학교 급별 진학률 262
[그림 7-1-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1) 266
[그림 7-3-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277
[그림 7-3-2] 교사 효능감 278
[그림 7-3-3]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장의 리더십 278
[그림 7-3-4] 동아리 참여 여부 279
[그림 7-3-5] 진로 프로그램 참여 279
[그림 7-3-6]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279
[그림 7-3-7] 교사의 지원 280
[그림 7-3-8] 사회성 280
[그림 7-3-9] 자존감 280
[그림 7-3-10] 학교생활적응 281
[그림 7-3-11] 어려움 극복 효능감 281
[그림 7-3-12]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제시된 방과후학교의 비전, 목표, 전략 282
[그림 7-3-13]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간대별 운영 283
[그림 7-3-14]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비전과 목표 300
[그림 7-3-15]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체계 301
[그림 7-3-16] 탈북학생의 개인별 체계적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체제 302
[그림 7-3-17] 탈북학생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302
[그림 7-3-18]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303
[그림 8-1-1] 2011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309
[그림 8-1-2] 2011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310
[그림 8-1-3]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312
[그림 8-1-4]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313
[그림 8-1-5]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314
[그림 8-1-6]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315
[그림 8-1-7] 2010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317
[그림 8-1-8] 지난 1년간 한 아르바이트 종류 321

# 2012 청소년백서 그림 CONTENTS


[그림 8-2-1]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 323
[그림 10-1-1]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 386
[그림 10-2-1]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 395
[그림 10-2-2]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 398
[그림 10-2-3]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 403
[그림 10-4-1] 여성가족부 조직도 ..... 412

# 2012 청소년백서 부록 CONTENTS

〈부록 1〉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 442
〈부록 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협력)회원단체 현황 ..... 445
〈부록 3〉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 449
〈부록 4〉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 473

# 제 1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현실문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여성가족부는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보완)」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보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추진계획을 정비하였고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또한 보다 청소년친화적인 지역환경을 조성하였고 청소년의 권익증진과 함께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였고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 간의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를 확대하였으며 청소년 간 교류확대를 통한 미래지향적 국가 관계 기반을 구축하였고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체계화시켰다.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나홀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서비스망을 정비하였으며 지역사회 청소년의 위기개입을 강화하였고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또한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였고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하였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증가에 대응하는 조사와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였다. 또한 청소년대상의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였으며 학교폭력에 대응한 정책체계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 될 예정인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 등 5대 정책과제와 15대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75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 제 01부 총 론

제1장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제2장 청소년 정책추진 현황

제3장 세계 청소년 정책의 흐름

제1장

# 청소년 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한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5~1987년)」이 수립된 이후, 제1차에서 제4차에 이르는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수립 및 추진되어왔다. 이 중 2007년 말에 수립되어 200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보완)」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청소년 희망세상 실현' 이라는 비전 하에,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증진, (2)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12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과제가 설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약 5년 동안 시행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수정·보완)」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44개 청소년수련시설과 100개 학교가 참여하였고,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여건 조성 사업으로 자원봉사 터전, 청소년동아리 지원, 청소년문화존 지원이 확대되었고,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 및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 등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이 확충되었다.

둘째,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의 반영률이 높아지고, 지역 참여위원회, 시설·단체별 운영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른 정책반영률 또한 약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UN의 '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참여 부문에서 수상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셋째,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는 등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및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2011년 청소년기본법 개정으로 청소년 방과후활동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확대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청소년 등에 대한 사업인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을 2008년 15개소에서 2012년 49개소로 확대하였다.

넷째,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치료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1년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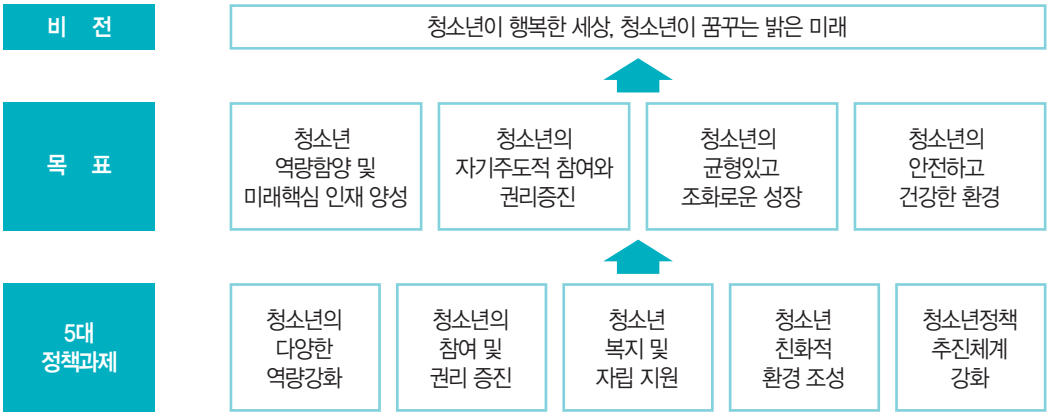
대한 심야시간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을 시행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인터넷중독 예방·상담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인터넷중독 치료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센터 및 치료협력병원 연계 체계를 구축하였고 2012년 12월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개원하였다.

다섯째, 청소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였다.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을 바탕으로 2010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설치하였으며,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개편하여 기능을 확대하였다. 또한 지역단위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허브기능 수행을 통한 청소년정책의 지원을 체계화하였다.

이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청소년들의 행복수준과 삶의 만족도, 불균형적으로 갖추어진 역량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 그리고 교육과정 및 미래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갖는 청소년들의 현실상과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향후 5년간 추진될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청소년 관련 학계, 시설, 단체, 청소년, 학부모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다양한 의견을 모아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서는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청소년이 꿈꾸는 밝은 미래'를 비전으로 청소년의 역량 함양 및 미래핵심 인재 양성,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 청소년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5대 영역(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복지 및 자립 지원,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15대 중점과제와 75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 그림 1-1-1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개요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제2장

# 청소년 정책추진 현황

## 1. 청소년정책 참여기반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수행 역량을 제고하였으며,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내실화하고, 정책 개발 활성화 및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을 추진해왔다. 먼저 범부처의 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정책관계기관 협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책 개발 활성화 및 성과평가 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정책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정책 시사점 도출 등을 통한 정책수립을 지원하고, 성과지표 개발·적용 및 평가결과 환류체계 구축 등 청소년 정책 성과 평가 기반을 마련했으며, 청소년관련 국가기초통계 정비 및 지속적·체계적 관리를 실시하였다. 지역중심의 청소년정책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단위 정책을 총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청소년정책 지역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담당자 워크숍 등을 실시하였으며, 청소년정책분석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그리고 민관협력 정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단체 간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청소년정책 협의기구를 활성화하였으며, 청소년 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복지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청소년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소년참여활동 체계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의 '소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0~20세대와의 소통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제안한 정책과제를 청소년관계부처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상정하여 수용률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SNS,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를 하도록 온라인 및 미디어를 통한 정책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사회의 환경·보건·복지 분야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지자체·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행사를 통해 청소년 참여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청

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문화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 숨은 재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5월 24~26일, 서울무역전시관)를 개최하였으며, 그간 5월 넷째 주에 개최되던 청소년 주간 행사를 각 지자체별로 5월 한 달동안 청소년을 위한 행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게 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개인 및 단체에게 '푸른성장대상' 시상을 추진하였다.

이 외에도 교육, 문화, 복지 및 안전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고, 청소년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문화생활여건, 복지수준,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등 성장환경의 건전성, 학교폭력현황, 정책결정과정의 청소년·부모 참여도 등의 종합적 요소를 반영한 청소년친화지수를 개발하여 청소년친화요소를 갖춘 지역환경을 확산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 환경조성을 위해 건강한 식생활을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강한 식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 식품 판매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수면권 보장을 위한 홍보를 전개하고,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였다.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희망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을 제고하고, 권리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시민권을 강화하였으며, 청소년지도자 대상 권리증진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더불어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더불어 청소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제를 확대 실시하고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하위법령을 제정하였으며(2013년 1월 시행), 학생선수 (성)폭력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운동부 지도자 자격기준 및 보수교육 강화, 선수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청소년연예인 기본권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을 지원하고, 대중문화예술분야 표준계약서 개정을 추진하였다.

## 2. 청소년활동 활성화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기회 확대, 청소년 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이 추진되었다. 먼저 청소년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11년부터 정규교육과정에 도입된 창의적체험활동 진행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원정보를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별로 작성하여 통합관리사이트에 탑재하여 관리하는 '청소년활동자원지도(CRM)'가 2011년 개발된 이후, 2012년

말까지 약 35,000개의 자원 및 프로그램이 개발·탑재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 활동과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내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관련시설을 안내하는 '청소년활동자원지도(CRM)'와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지도(YRM)' 간의 연계체계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자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 국제청소년성취포상,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 종합정보 등의 개별시스템을 통합하는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부처·지자체별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주제의 체험학습 프로그램들과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소외계층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이 추진되었으며, 주5일제 수업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가족공유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인프라가 확충되어 제공되고 있다.

청소년 전문지도인력의 양성과 더불어 지도인력 보수교육 법제화에 따라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 등 지도인력의 직무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자격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에 대한 종사자 자격·배치기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상담사 및 지도사의 복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는 청소년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인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와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이 2013년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활동시설의 전략적 확충을 위해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기능보강이 추진되었는데, 인구규모와 지역현황, 시설별 특성에 맞도록 청소년수련시설을 건립하되, 생활권의 중·소규모 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시설별 준공연도와 시설안전도, 운영상황, 기능보강 내용 및 규모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에는 27개소(청소년수련관 11개소, 청소년문화의집 10개소, 청소년수련원 6개소) 신규건립 및 39개소 기능보강을 지원하였다. 또한 청소년활동 시설·단체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이 청소년수련시설 유형별로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292개소)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2012년에는 청소년수련관(168개소)을 대상으로, 그리고 2013년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3.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확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 간 다양한 청소년국제교류가 실시되었는데, 총 31개 약정국가를 대상으로 647명(초청 324명, 파견 323명)의 국가 간 청소년교류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를 2012년 초청 및 파견 각 500명 수준으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아시아청소년 초

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스카우트연맹 세계야영대회 등의 국제행사·회의 개최를 지원하였다.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외 조사·연수단,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해외자원봉사단, 해외테마체험단 등 청소년해외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의 체계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교류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기획·협의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보강하였고, 참가자의 계층, 연령 등을 고려한 참여쿼터제 도입을 통해 국제교류 참여기회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참여청소년 의견 수렴 및 자율적 참여 강화를 통해 수혜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였다.

## 4. 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나홀로 청소년들의 보호를 위한 방과후돌봄서비스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청소년,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생활지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급식 및 귀가지도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46개소에서 시작하여 2010년 161개소로 점차 확대되었고, 2012년 현재 전국 200개소에서 8천1백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3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1개소 이상씩 총 232개소로 그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청소년 위기개입강화를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가 추진되었다.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운영 허브기관인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설치가 확대되었고, Wee 클래스 신규 구축·운영 및 운영기관 성과평가 및 컨설팅 등을 통해 Wee 프로젝트 운영을 내실화하였으며, 1388청소년지원단의 하부지원단 개편 운영을 통해 역할 및 기능을 재정립하여 운영을 활성화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을 조기발견하여 위기가 확산되고 고위기로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및 모바일 상담을 확대·운영하고, 무료전화(1388), 모바일 문자상담(#1388), 채팅(사이버상담센터), 스마트폰(1388 App)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운영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하였다. 또한 위기청소년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상담, 정서적 지원, 필요기관 연결 등 맨투맨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를 확대하였고(2011년 880명→2012년 980명), 청소년쉼터 내 보호 청소년에 대한 동반자 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1388 청소년지원단 중 의료지원단, 법률지원단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속관리를 추진하였다.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두드림존은 2011년 36개소에서 2012년 50개소로 확대·운영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상설화를 통해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다. 두드림존에서는 대상자의 발견부터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CYS-Net 체계 속에서 타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및 청소년 자립지원 우수 협력업체 위촉을 통해 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민간운영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연계(법 제36조)하여 청소년쉼터 설치·운영기준을 구체화하였고, 쉼터 설치를 확대하고(9개소), 야간보호기능을 신설(8개소)하였으며, 찾아가는 거리아웃리치 활동을 확대하였다. 또한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보호, 가정·사회 복귀지원, 자립지원을 위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작·보급하고, 쉼터 행정지원전산망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 쉼터 평가를 실시하는 등 쉼터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가출, 정서·행동장애 등 고위기 청소년의 치료·재활 사업을 총괄 조정할 중앙 허브기관으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건립되어 국가·사회적 차원의 청소년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이 가능해졌다.

학교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징후 학생을 발굴하여 Wee센터에서 진단 및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학업중단숙려제를 도입하여 숙려기간 중에 학업중단 이후 학습, 자립지원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하도록 하였다. 학업중단 숙려제 전면 실시에 따라 학업중단 청소년 현황관리 및 개별사례관리를 통해 학업중단 서비스 체계 내 유입 및 성공적인 학업복귀를 유도하는 등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학업·진로 정보, 인터넷 강의 등을 제공하는 지능형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기숙형 대안캠프 운영을 확대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었고, 중도입국청소년의 학교진입 및 사회정착 어려움 등 사회 초기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레인보우 스쿨(Rainbow School)'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지도사를 배치하여 숙제지도, 기본생활습관 지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 5.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초4, 중1, 고1)를 실시한 것에 이어 2012년에는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초4, 중1, 고1, 약 180만명)를 실시하였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94개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센터 183개소, 건강가정지원

센터 149개소 등 지역별 CYS-Net 연결망과 상호연계·협력하여 상담·치유체계를 구축하고, 치료협력병원 179개소를 통해 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치유를 위해 인터넷RESCUE스쿨(11박 12일, 중고생 600명, 24회)과 가족치유캠프(2박 3일, 초등생 480가족, 16회) 등 치유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동반자(YC) 등을 활용하여 치료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미디어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의 자율정화를 유도하였는데, 특히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사이버모니터링센터, 게임건전이용지원센터), 매체업계 자율정화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해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사업자의 인지도를 제고하였으며, 음반의 청소년유해성 심의를 강화하였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를 위해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13~2015년)을 수립하고,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청소년 치료·재활을 지원하며, 청소년유해환경 정화 및 개선 등의 사업을 통해 청소년 음주·흡연·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또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에 대한 순찰 및 감시활동을 강화하였다.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어른의 보호없이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을 여성전문상담원과 1:1로 결연하여 방문 및 수시전화를 통해 성폭력 사전예방 상담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 전용쉼터를 통해 피해유형과 피해정도, 연령 등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심리치료 및 자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의 내실화를 추진하였다. 성범죄자 재범방지 조치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고의무 교육,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아동성폭력 피해자 전담기관인 해바라기 아동센터의 심리치료 대상을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성범죄 가·피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2012년 2월 정부합동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 학교 내 폭력서클, 폭력적 문화, 왜곡된 또래문화를 조기에 탐색하여 대응하기 위한 일진경보제를 도입·운영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교사, 학생, 학부모가 적절히 대응하고 사전에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매뉴얼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의 사업과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가족관계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3장
# 세계 청소년 정책의 흐름

## 1. 국제기구의 청소년정책

### 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와 부문별 26개의 전문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정책의 시행과 관련있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이다. 고용노동사회위원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이민정책 분야(국제이주 전망 발간, 이민자 및 자녀의 노동시장 통합연구, 이민의 재정적 측면 분석 등)와 복지 및 사회통합 분야(인구변화에 대응한 사회적 보호시스템의 개선 연구, OECD 사회지표 및 가족 데이터베이스 발간, 소득분배 및 분배에 관한 보고서 발간, 양성평등 연구)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당면하는 교육정책 과제들을 공동연구하며, 회원국 교육정책을 평가하고 혁신방안을 권고하여 교육체제의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설치되었다. 교육위원회의 정책 시행은 하위부서인 교육국(Directorate of Education: EDU)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청소년관련 정책의 방향은 2005~2006년 6대 전략목표에 근거하고 있다. 6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평생학습의 진흥 및 사회·경제 정책과의 연계강화
- 학습의 성과 평가 및 개선
- 교사의 질 향상
- 세계 경제에서 고등교육의 역할 제고
- 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 교육을 위한 새로운 미래 형성

한편, 교육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은 12개이다.

〈 표 1-3-1 〉 교육위원회의 2011~2012년 주요사업

| | |
|---|---|
| 교육체제지표(INES: 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 교육의 성과, 자원, 기회, 환경 등 각국의 교육체제를 국제 비교하는 데이터 수집과 지표개발사업 |
| 국제학생성취도측정사업(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여 회원국의 의무교육체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사업 |
| 국제성인역량측정사업(PIAA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Assesment of Adult Competencies) | 15~65세 성인을 대상으로 국가간 성인능력의 분포 및 수준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2008~2013년까지 진행 |
| 고등교육성과측정사업(AHELO: Assessment of Higher Education Learning Outcome) | 대학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반역량, 경제학, 공학 분야의 역량을 측정하는 사업 |
| Skills Strategy Project | OECD교육국 주관, 노동국과 지역개발국이 참여하는 사업, 기술관련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결과를 종합분석하는 수평적 사업 |
| GPS Project: Leveraging Knowledge for Better Education Policy | OECD가 보유한 다양한 정보 및 데이터를 이용, 개별국가의 교육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프로젝트 |
| Skills Beyond School Project | 중등교육(고등학교)이후의 직업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1년 이상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례를 검토하는 사업 |
| 교육 측정평가 검토사업 |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 시스템평가 등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국이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검토사업 |
|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 미래지향적이고 연구중심적인 프로젝트들을 위주로 진행하는 센터 |
| 고등교육기관 관리프로그램(IMHE: Programme on Institutional Management in Higher Education) | 시스템 차원의 고등교육 정책보다는 고등교육의 지역발전 기여 등 고등교육기관 자체의 운영·발전방안 논의 |
| 교육시설프로그램(CELE: Center for Effective Learning Environment) | 학습이 실행되는 공간인 교육시설 정책의 효과성 평가, 학교 안전, 시설지표 개발 |
| 교수학습에 관한 국제조사(TALIS: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 | 중학교 교원(교장 및 교사)의 신념, 태도, 수업방식, 칭찬과 피드백, 학교리더십 등 중등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조사 |

출처 : http://oecd.mofat.go.kr/korean/eu/oecd/policy/opinion/focus/index.jsp

2010년 OECD 연례 교육 보고서(Education at a Glance, 2010)에 따르면 2008~2009년도 경제위기 기간 동안 OECD 회원국들은 실업률이 상승하고 급속한 기술 발전 및 인구변화로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점에서 국가 범위에서의 교육 발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과 세계적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확보해야만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교육 부문에 대한 정부 투자가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1년 1월에는 OECD 국가의 청년고용 정책과 시사점에서 청년고용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고용에 대한 OECD의 정책 제언으로 의무교육연령(school-leaving age)의 상향, 일과 학습 병행, 의무적 인턴십, 견습제도(apprenticeship training), 이원직업교육(dual vocational education) 등을 통해 학교에서 일터로의 원활한 전환, 아웃리치 프로그램, 프로파일링, 상호의무 부과 등 청년층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단으로 구직 지원, 채용상 차별해소, 고용비용 감소, 노동시장 이중성 완화 등을 통해 청년층에 대한 노동수요 측면의 장벽을 낮추어야 함을 제시했다.

2011년 9월에는 2011년 1분기까지 회원국들의 고용 현황과 전망을 담은 보고서 OECD Employment Outlook 2011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최근 1년 이상 실직 상태인 장기 실업자와 청년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위한 각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2012년 1월에는 OECD국가 학교 폭력(school violence) 현황 및 대응 방안으로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적 접근으로 무관용(zero tolerance) 원칙을 제안했다. 이것은 퇴학이나 정학 등의 조치가 일시적 안도감을 줄지 모르지만, 폭력의 재발 등 후속되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OECD국의 대응 방안은 학교 안전 문제의 다면성 및 예방적 장기적 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교(교사, 학생, 직원), 학부모, 청소년 단체,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주택, 고용, 경찰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장기적 종합적 전략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2월에는 EU 국가의 최근 동향을 중심으로 OECD국가의 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 검토했다. 그 결과, EU, 미국 등의 경험을 참고하여, 직업훈련 통계 및 인력수급전망 내실화, 관련 통계간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기술불일치 해소,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 나. 유엔(UN)

유엔(United Nations: UN)은 1985년을 세계청소년의 해로 결의하면서 청소년의 연령을 15~24세로 정의하고, 청소년을 '어른이 될 세대,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 만이 아닌 지금 현재 살아 있고 일을 하며, 가정과 공동체,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현 세대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의 청소년관련 정책 방향 및 이념은 1995년 세계 청소년의 해 10주년을 기념하여 채택한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와 1998년 8월 세계 150개국 청소년리더, 청소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포르투갈 브라가에서 열린 제3회 UN 세계 청소년 포럼에서 채택된 Braga Youth Action Plan, 1998년 8월 158개국 청소년업무 담당장관,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리스본에서 열린 제1회 청소년 업무 담당 장관 회의에서 채택한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과 2010년 수립된 새천년개발목표에 나타나 있다. 유엔에서는 특히 지난 1997~2006년까지 10년간을 빈곤퇴치를 위한 기간으로 정하고 노력한 바 있다.

유엔에서 지향하는 청소년정책 분야는 The 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 고용, 기아 및 빈곤, 건강, 환경, 마약, 청소년비행, 여가활동, 여성 및 청소년, 사회생활과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청소년들의 참여와 같은 10개이다. 여기에 Braga Youth Action Plan과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 제시된 분야들도 포함된다. Braga Youth Action Plan에서는 청소년정책(청소년 정책분야간 통합, 국가 내 청소년 업무관련 NGO 간 협력, 빈곤추방 및 청소년 개발), 청소년 참여(모든 청소년들의 참여, 청소년 조직과 UN기구, 21세기를 대비한 교육, 사회개발을 위한 청소년 고용, 건강과 청소년 개발), 청소년 인권(인권증진을 위한 청소년의 역할, 청소년 권리헌장과 청소년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가 제시되고 있다. Lisbon Declaration on Youth Policies and Programmes에서는 국가 청소년정책, 청소년 참여, 청소년 개발, 청소년과 평화, 청소년 교육, 청소년 고용, 청소년 건강, 마약과 약물남용이 청소년 정책 분야에 포함되어 있다.

새천년개발목표(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는 2010년 9월에 개최된 유엔 MDGs 정상회의에서 세계의 지도자들이 2015년까지 구현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다. 이것의 주요내용으로는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 성평등과 여성능력의 고양, 유아(영아) 사망률 감소, 산모건강의 증진,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이 있다.

유엔의 사업 중, 청소년사업으로는 청소년 세계 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세계청소년보고서 2011(World Youth Report 2011), UN CDS(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이 있다.

청소년 세계 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에서는 15개의 청소년 우선순위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각 영역에서는 활동을 위한 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 세계 행동프로그램 채택 이후 대두된 관심사들은 세계화, 정보통신기술(ICT), HIV/AIDS, 청소년과 분쟁(갈등) 예방, 세대 간 관계가 있다. 세계청소년보고서 2011(World Youth Report 2011)에서는 학교와 훈련기관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무엇보다도 전 세계 청소년들 스스로의 언어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용 문제를 분석하고자 했다. UN CSD(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 Major Group for Children and Youth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성취해나가는 과정에 전 세계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며, 아동과 청소년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몰두하는지 의견을 수렴하는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이다. 2012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브라질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Conference of Youth for Rio+20이 개최되었다. Cyber Schoolbus 홈페이지 운영은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교수 및 학습 프로젝트 홈페이지로 평화교육, 빈곤, 인권, 기아, 노동에서의 권리, 인종차별 등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 제공, UN관련 자료, 퀴즈와 게임, 커뮤니티, 행사 안내, 갤러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은행(World Bank)은 개발도상 가맹국에 대한 개발자금 지원과 개발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술지원, 개도국으로의 재원 및 기술이전에 관한 조정역할, 경제개발 담당자에 대한 연수 실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비영리 국제기관이다. 세계은행은 인적자본 개발, 강화 및 유지 전략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건강, 에이즈, 사회적 보호라는 4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사업으로는 경제개발과 빈곤퇴치에 초점을 두면서 교육, 보건, 영양 등 아동과 청소년의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투자기회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 영아 및 유아기 : 영아 및 아동사망을 줄이기 위한 아동보호에 집중적인 투자 필요
- ▶ 학 령 기 아 동 : 기초학습능력향상 및 학교기반시설 개선에의 투자 집중
- ▶ 초기 청소년기 : 직업체험기회 및 통합적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에 대한 투자 필요
- ▶ 18세부터 24세까지의 후기청소년기 : 중도탈락청소년들을 위한 치료교육에 투자, 청소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프로그램과 청소년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필요. 이와 더불어 청소년과 함께 하는 국가청소년정책 전개 필요.

한편 세계은행에서는 다양한 청소년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 단체를 위한 기금, 대화형 플랫폼(Interactive Platform), 청소년 대 청소년 커뮤니티(Youth-to-Youth Community), 국제 에세이 대회(International Essay Competition), 청소년 자문 그룹(Youth Advisory Groups), 세계화와 중등교육의 새로운 아젠다 등이 있다.

## 라.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 활동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인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전문기구이다. 유네스코의 청소년관련 정책 방향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사업(Education for All: EFA)'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유엔으로부터 지속가능발전 교육 10개년 사업(2005~2014년) 추진을 위한 선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유네스코의 주요 사업영역인 교육,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문화, 정보통신기술 분야 중 청소년관련 활동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유네스코 청소년 콘서트,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 국제자원활동, 아시아 청년 기금, 세계 청소년 정보망, 브릿지 EFA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유네스코 청년 콘서트는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취약계층 청년들의 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활동 및 의견 개진을 하는 청년 및 기성세대들의 의견 수렴(인터뷰, 설문 등) 및 세대 간 소통을 증진하는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취합된 콘텐츠를 바탕으로 토론, 공연 등 콘서트 진행하는데, 다양한 콘서트 진행방식을 통해 청년들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형태를 발굴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국제워크캠프는 국내외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의 장 마련, 지역사회 이슈별 프로젝트 수행, 문화교류 및 노작활동 진행, 한국참가팀 사전 훈련워크숍 및 사후 활동보고회가 포함되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워크캠프와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 국제워크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국제자원활동은 지속가능발전 주요 사안에 대한 국내외 청년들의 인식 및 참여 증진,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한 국내 자원 활동을 증진하는 것이다. 국제자원 활동 해외워크캠프 파견,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회의 및 자료 발간 등을 계획·추진하는 것이다.

모의 유네스코 총회는 지속가능발전 논의와 실천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참여 강화, 국제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 및 역량 결집, 전 지구적 문제와 개인적 삶의 연계성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증진을 위해 개최된다.

세계청소년정보망은 청소년분야의 정보화와 청소년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하여 1991년부터 유네스코 본부에서 실시해오고 있는 '세계 청소년정보 네트워크 형성' 사업이다. 여기에서는 세계를 8개 지역으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역별로 청소년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들 지역을 하나로 묶는 세계 청소년정보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5년부터 아태지역 센터로 지정되어 아태지역의 청소년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브릿지 EFA 프로젝트는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문해 교육 중심의 EFA사업 발굴 및 지원, 교육개발 협력의 경험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개발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6개국 유네스코국가위원회 9개 지역 NGO와 현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제 1기 브릿지 지역활동가 18명을 아프리카 6개국 18개 지역에 파견했다.

## 2. 유럽지역의 청소년정책

### 가.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청소년정책은 유럽위원회 소속 EACEA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유럽위원회에서 청소년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을 선정하고 지원하면, 이에 따라 청소년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U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의 참여, 교육, 고용·직업훈련·사회통합, 복지·개인의 자율성·문화, 유럽의 가치관·이동의 자유·국제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특히 EU연합국은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문제, 언어문제, 빈곤층문제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숙제를 안고 있다. 또한 청소년정책도 다양한 문화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청소년정책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포럼이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 등이다.

유럽연합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2007~2013 청소년행동프로그램과 EU Youth Strategy(2010~2018)의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2007~2013 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유럽연합에서 청소년을 위해 고안한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유럽 시민권, 젊은 유럽인들 간의 연대감 및 관용의식을 장려하고 유럽연합의 미래 형성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또한 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청소년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의 교육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젊은 층을 포함하여 유럽연합 간의 이동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청소년행동프로그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얻기 위해 제출되는 수천개의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최고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5개 활동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유럽의 청소년, 유럽봉사활동서비스(EVS), 세계 속의 청소년, 청소년지원 시스템, 청소년 분야에서 유럽협력을 위한 지원이다.

한편, EU Youth Strategy(2010~2018)는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 및 평등한 기회 제공과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적극적인 시민이 되고 참여하도록 장려한다는 두 가지 일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EU Youth Strategy(2010~2018)에 도달하기 위한 8개 분야에서의 계획 및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 표 1–3–2 〉 EU Youth Strategy(2010~2018)의 8개 분야

| | |
|---|---|
| 교육 및 훈련 | 양질의 교육 및 훈련에 청소년의 동등한 접근 강화. 청소년활동 및 기타 비공식적인 학습의 기회 개발. 정규 교육 및 비공식적인 학습 사이에 보다 나은 연계 제공. 교육과 훈련 및 노동시장 사이의 이해 개선. 초기 학교 중도탈락 감소 |
| 취업과 창업 | 고용전략에 청소년들의 관심사 통합. 노동시장에 대한 필요한 기술 준비에 투자. 직업지도 및 상담서비스 개발. 일할 청년들에게 가능성을 홍보하고 해외훈련 제공. 양질의 traineeship 홍보.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조화를 위해 파트너들 간의 책임 공유 홍보. 청년들의 창업 지원 |
| 건강과 웰빙 | 청소년들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위원회 결의안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피트니스 및 스포츠 장려. 청소년 근로자와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건강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건강과 청소년 정책 결정자들 간의 협력 및 보건정책에의 청소년 참여 장려.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돕기 위해 지역수준의 모든 이해당사자 동원.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에 대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정보 네트워크 동원. 청소년단체와 학교에서 또래 간 건강교육 장려 |
| 참여 | 위원회의 구조화된 대화에 더하여, EU 국가 및 위원회는 청소년들과 청소년 단체에 의한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참여 권장 추구, 대화방법, 청소년 단체에 대한 정치 및 금융 지원, 정보 및 통신 기술, 어린 연령부터 참여하는 학교의 '참여 학습' 프로그램, 공공기관과 청소년들 간의 토론 등 |
| 자원봉사활동 | EU 전역에서 2008년에 개최된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이동에 관한 이사회 권고'는 자원봉사 활동의 주최자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시민사회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다른 EU 국가의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더 넓은 참여기회를 확보하여 유럽 자원봉사 서비스를 보완하려고 노력. 회원국들은 젊은 자원봉사자들의 이동성에 대한 권고이행 조치를 2012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는 EU Youth Report 2012로 발간 예정. 2012년 유럽연합 청소년 포털의 일환으로 유럽 청소년 자원봉사 포털을 개발 예정 |
| 사회적 포함 | EU의 유럽 2020전략에서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유럽의 공약 중 경제성장 및 개발을 위한 전략이 사회적 응집력과 사회적 포함에 대한 강력한 차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인식. 2010년은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맞선 유럽의 해'로 명명 |
| 청소년과 세계 | 이러한 행동 분야에서의 조치는 기후변화, UN 밀레니엄 개발 목표, 인권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글로벌한 정책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와 기여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둠 |
| 창의력과 문화 | EU 회원국과 위원회는 청년들이 자신의 재능과 창조적인 능력개발과 문화 경험의 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문화, 뉴미디어 및 문화 간 역량을 위한 전문화된 교육 추진, 청소년의 창조적인 에너지와 혁신을 위한 능력 지원 |

최근 유럽연합(EU)과 중국은 2011년 1월 11일에 '2011년 유럽연합–중국 청소년의 해(EU–China Year of Youth)' 개막을 선언하여 유럽연합과 중국, 청소년들의 대화와 협력 활동을 촉구했다. 유럽 청소년들의 지식 및 기술 습득, 취업을 위한 경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제15회 폴란드 교육 박람회에서 'Youth on the Move'를 소개했다. 2011년 5월 15~21일 동안 2011년 유럽 청소년 주간(European Youth Week 2011) 동안 '구조화된 대화'라는 주제로 사회·문화적 교류, 민주적 토론, 구조화된 대화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그들과 유럽의 미래를 설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 나. 영국

영국의 청소년관련 행정조직은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이다. 교육부는 2010년 5월 12일 교육과 아동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정부부처로 조직되었다. 과거 영국에서 청소년정책과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기술부이었다가 2007년 6월에 교육기술부가 아동·학교·가족부로 이름을 변경하고 기존의 교육기술부에서 다루던 대학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을 새로운 부서인 혁신·대학·기술부로 이양함으로써 아동·학교·가족부는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학교·가족부는 교육기술부보다 더욱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을 폈는데, 여기에서 괄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부서의 개편과 함께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아동·학교·가족부가 새로 개편되기 전까지만 해도 잉글랜드에서는 청소년정책을 교육기술부의 평생교육관련부서에서 담당했고 실질적으로 청소년 전담부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아동·학교·가족부의 개편과 출범으로 인하여 청소년에 관한 모든 정책이 '청소년국' 으로 이양되어 좀 더 전문성과 확실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은 2010년 5월 아동학교가족부에서 교육부로 그 업무가 다시 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동학교가족부에서 청소년국이 신설되어 청소년정책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것에 비해 교육부에서는 과거 아동가족국과 학교국은 그대로 인데 비해 청소년국이 폐지되어 청소년정책이 위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계속교육, 기술, 평생학습국이 신설되어 평생교육이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에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학교에 더 많은 자율권 주기, 부모에게 선택권 주기, 극빈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하기, 전체적인 교육체계 향상시키기이다.

영국의 청소년에 대한 개념은 14세에서 18세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민간단체와 지방정부에 의해 주도되어 왔으나, 1970년대 초기에 지방정부 행정체계의 개혁과 경제침체로 인해서 지방수준에서보다는 중앙정부가 더 큰 책임을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인 코넥션즈에서는 13~19세의 청소년(장애나 학습문제가 있는 경우는 24세까지)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최근에는 영국에서 청소년정책의 대상 연령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2월 출판된 「Positive for Youth – A new approach to cross-government policy for young people aged 13 to 19」를 보면 청소년정책 대상 연령이코넥션즈(Connexions)와 마찬가지로 13~19세의 청소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에서 16세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영국의 의무교육이 16세에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6세 이전에는 교육이나 기술, 보호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 16세 이후에는 이보다는 자립, 고용, 직업, 평생학습의 측면에서 청소년정책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대표적인 청소년관련 입법으로는 교육법(Education Act 2011), 교육감사법 (Education and

Inspection Act 2006), 아동법(Children Act 2004), 아동·학교·가족법(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Act 2010),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ons Act 2008), 아동빈곤법(Child Poverty Act, 2010), 교육기술법(Education and Skill Act 2008), 도제·기술·아동·학습법(Apprenticeships, Skills, Children and Learning Act 2009) 등이 있다.

2011년 1월 발의되어 2011년 11월 15일 개정된 교육법(2011)은 영국정부가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모든 아동이 더 높은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체제를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법은 2개월 후인 2012년 1월부터 시작되었다. 교육법이 2011년에 개정된 것은 'The Importance of Teaching: Schools White Paper'으로 인한 것이다. 2011년 개정안의 핵심은 교사들이 좋은 훈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학교와 대학에 대한 자유, 자원을 공평하게 사용하기 등이다. 총 10장 83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2장의 훈육과 7장의 16세 이후 교육과 훈련에 관한 내용이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1988년 교육개혁이전, 1988년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 1988년 교육이후부터 현재까지로 구분할 수 있다. 1988년 교육개혁이전의 청소년정책은 다소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1988년 이전까지의 청소년정책 중의 대표적인 정책은 양성 평등교육, 여성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직업에 관한 교육들이 그 주류를 이루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교육관은 영국 청소년교육의 흐름을 좀 더 자유롭고 평등한 것으로 바꾸기 시작했다. 1988년 교육개혁과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 시기에는 연방의 지방정부보다 중앙정부에 교육과 관련된 힘을 강화시켜주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모든 청소년정책은 새롭게 도입된 국가교육과정(National Curriculum)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 강화와 학업성취 등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와 더불어 교사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것이 학교운영정책에 관한 특징 중 하나다. 한편, 1988년 교육이후부터 현재까지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2000년대 이후 두드러지는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종합적 복지서비스 성격을 가진 코넥션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코넥션즈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를 대신하는 정책으로 영국의 교육기술부(Department for Education an Skills)가 2006년 제시한 아동과 학습자를 위한 5개년 전략이 있다. 이 정책은 새롭게 개편된 아동·학교·가족국(DfCSF)에서도 그대로 이어 받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다.

현재 영국에서 2011~2013년에 진행되는 청소년 사업 및 프로그램 중에서 보조금에 의해 운영되는 것들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Bolton Lads and Girls Club은 NEET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Endeavour, Catch 22, Clubs for Young People은 초기 학업중단예방 및 학업성취 향상,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Addiction은 약물과 알콜예방 프로그램이다.

뿐만 아니라 2010년 3월 영국 17세 소녀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청소년 보호를 위해 페이스북에 패닉 버튼(panic button) 제도를 도입했다. 2011년 5월 24일에 영국은 학교 고유의 교사 관리 권한확대를 추진하여 학교 고유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11년 8월 26일에는 영국 교육부에서 십대 부모 청소년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심의하

여 Care to Learn의 개선안을 2012년 9월 이후 도입할 예정이다.

## 다. 독일

현재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청소년지원(Jugendhilfe)이다. 이 개념은 청소년들에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성인들이 간섭하거나 통제하지 않고 글자 그대로 청소년들을 돕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청소년지원의 내용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직업 밖에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사회화, 육성, 교육과 관련된 여러 대책들, 노력들과 기관 및 시설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소년지원이라는 큰 개념을 실천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으로서 청소년사업과 사회복지적 의미를 가진 협의의 청소년사회사업의 개념이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지원을 위한 여러 청소년사업들과 청소년사회사업들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지원법(KJHG)과 여기서 명시된 여러 정부조직 구조들과 제도들로 구성되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지원구조는 우선 연방공화국인 독일의 국가 최고 통치기구로서의 연방은 청소년정책과 관련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 지원법을 통하여 각 주(州)정부를 총 지휘하는 청소년지원의 장려와 고무의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에 의한 청소년지원의 근본 문제들을 자문한다.

셋째, 각 정부의 임기동안 연방정부의 아동·청소년보고서를 연방의회와 상원에 제출한다.

독일의 청소년지원 조직의 기본 골격은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상세한 사항들은 각 주(州)의 시행령에서 보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다른 법적 근거들은 주(州) 자치단체법령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법적 근거에서는 청소년정책 업무에서 실질적인 실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청(Jugendamt)과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Jugendhilfeausschuss)의 과제와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법은 청소년지원특별위원회와 행정관청으로 전국에 청소년청이 구성되도록 정하여 자치단체 행정관청의 다른 영역들과 구별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보고서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4조를 따른 것으로, 매번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청소년들의 현황과 청소년지원의 노력과 시행들에 관하여 연방의회와 상원(上院)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따로 청소년보고위원회(Jugendberichtskommission)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아동정책을 수행하는 행정조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하위부서인 청소년부이고, 지역차원에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다. 연방정부에서는 청소년부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지역차원에서는 모든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통합적

으로 다루는 실무기관인 청소년청이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즉, 독일의 아동·청소년 정책의 큰 특징은 아동·청소년은 물론 가족 및 노인정책을 관할하는 부처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아동정책이나 청소년정책을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과 연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업무를 교육부 혹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독일이 가진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연방정부의 주요 청소년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중앙정부인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에서는 크게 세계아동권리, 아동·청소년보호, 통합(integration), 관용과 민주주의, 참여의 5개 영역으로 나누어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세부 정책영역은 다시 청소년사회사업, 범죄·극우주의·외국인 적대 예방, 아동·청소년보호와 폭력보호, 통합, '연방아동·청소년계획'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육성, 사교(邪交) 집단과 사이코집단 관리, 아동·청소년지원, 아동보육관리, 중앙과 지방 연계 전국 청소년정책 공동사업, 지식정보사회 청소년지원, 유럽청소년정책들과 같은 관련 청소년정책들로 나뉘어 있다.

이외에도 독일은 1964년 이래 정부와 민간의 협력 사업으로 지금까지 12회 동안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독일 청소년지원 주간(Deutscher Jugendhilfetag)과 최근 2005년에 거대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기획된 국가행동계획(NAP: Nationaler Aktionsplan 2005~2010년)이 수립되어 시행 중에 있다.

독일에서 청소년사업의 의미는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 복지, 보호 등과 같은 총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청소년사회사업은 사회적 취약상황과 개인적인 지원 상황에 있는 대상자들이나 가정 밖의 장소나 관련기관에 있는 젊은이들을 위한 복지사업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 지원법 제11조에서는 청소년사업의 주요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것은 (1) 전인적, 정치적, 사회적, 보건적, 문화적, 자연환경적, 기술적 교육의 내용을 가진 학교 밖 청소년교육, (2) 스포츠, 오락, 가정과 관련된 청소년사업, (3) 국제 청소년 교류, (4) 아동·청소년 레크리에이션, (5) 청소년상담이다.

독일의 청소년사업은 상위기관에서 법적으로 정한 범주 내에서 수행하게 되지만, 많은 부분에서 자치권이 인정되므로, 각 주 별로 내용이 상이하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청소년사업으로는 베를린의 사회공간집중 사업과 바이에른 주에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이 있다. 베를린의 사회공간집중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개인과 집단들이 동네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지 중심으로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의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청의 전문인력이 청소년들을 상담하거나 돌보는 일과 학교와 연계된 다양한 교육적 워크숍과 강연, 코스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히아흐–프리드베르그 청소년청은 클릭(Klick) 프로젝트를 통하여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 관련 기관에게 워크숍이나 부모강연, 교사 보수교육, 체험교육적 사례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약물중독이나 폭력, 인종차별, 유해매체 등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예방 프로젝트이다.

## 라. 프랑스

프랑스의 청소년정책 담당기관은 보건·청소년·체육부(Ministère de la Sant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내 청소년대중교육실(la Direction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DJEP)이고, 청소년정책의 지방담당 부서는 국가청소년대중교육연구원(L'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uire: INJEP)이다. 이 연구원은 교육 기관인 동시에 연구기관의 역할을 하고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숙박센터의 역할도 담당한다.

프랑스의 청소년관련 입법 현황을 살펴보면,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지원, 청소년사업 등에 관하여 특별법으로 제정해 놓지 않고, 일반 법률에 청소년관련규정을 포함시키는 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동보호법, 교육법, 사회활동 및 가정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등에 청소년을 위한 일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랑스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은 크게 청소년정보정책,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정책(행동하려는 욕구 프로그램), 바캉스·여가 센터운영, 사회·문화 활동, 국제교류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정보정책은 프랑스 전역에 걸쳐 발달된 각 지역 정보망으로 청소년 관련 모든 분야의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정보망과 사이버 청소년 특성의 발전과 프로젝트로 청소년 정보망 속의 멀티미디어 공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둘째, 청소년의회는 청소년과 정부 기관 간의 의사소통의 장소로서 청소년관련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전국청소년의회(CNJ), 청소년체육단체생활지방의회(CDJSVA), 지역청소년의회(Les Conseils locaux de la jeunesse)로 구성된다.

셋째, 행동하려는 욕구(Envie d'Agir) 프로그램은 청소년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자율성, 책임감, 참여의 방향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 표출, 행동능력, 창조적 활동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들이 사회 및 직업사회에 대한 동화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넷째, 바캉스·여가정책은 물리적·도덕적 안전을 보장하는 관리된 체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질 높은 교육활동을 촉진하는 데 있다.

다섯째, 사회 문화적 활동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여가 시간동안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및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여섯째, 유럽 및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청소년과 청소년 운동을 주관하는 담당자, 전문가 혹은 자원봉사자들 및 협회 책임자들을 고무하기 위한 프로그램 활동을 마련하고 있다.

지방정부인 파리시 청소년사업으로는 취약계층의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방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프로그램은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취약계층청소년과 그들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길거리교육 프로그램은 21개의

협회에서 64개 팀의 길거리 교육자들이 거리를 배회하고 소외된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 이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위기청소년들을 최일선에서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치료프로그램은 특별한 환경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즉, 미혼모, 약물중독, 불법체류 외국청소년문제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쉼터나 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

## 마. 핀란드

핀란드의 청소년정책은 교육문화부가 담당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문화부 산하 문화·스포츠·청소년정책국의 청소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교육문화부는 각 업무의 조정과 총괄책임을 지며 각 부처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소년의 연령은 대개 15세에서 29세까지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0세부터 29세까지의 청소년을 정책 대상으로 보기도 한다.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청소년활동에 적합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립하여 일반적인 지침으로 사용한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은 청소년의 개인적인 개발, 생활조건과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공적 행위에 대한 활동과 관련된다.

둘째, 청소년활동이라는 용어는 29세 미만 청소년의 도시 활동과 도시지역에서 청소년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표를 나타낸다.

셋째, 청소년활동 계획은 청소년활동의 증진과 관련된 것이다.

청소년사업을 위한 조치의 책임을 3단계로 나누어 중앙차원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차원에서는 지방정부(the Provincial State Office)가, 지역차원에서는 지역당국(Local Authorities)이 청소년사업을 실행한다.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시·도와 같은 수준의 주 행정을, 지역당국(시와 군)은 지방간의 협력과 개발을 위해 지방위원회(Regional Council)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지역당국은 12개 주 단위의 432개로 각 지역당국에서 청소년의 시민활동, 생활조건 개선, 국제적 협력지원과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으로는 청소년 법(Youth Act)이 있다. 이 법은 1972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1986년, 1995년, 2006년 등 거의 10년 단위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6년에 개정된 청소년법에는 청소년 성장과 독립 지원, 청소년들의 활발한 시민권 촉진(시민활동 증진), 사회적 권한 부여, 청소년들의 생활환경 개선(청소년 환경조건 개선) 등의 지원 법이 포함되어 있다. 청소년법은 청소년사업 및 정책에 관한 정부 법(2006)에 의해 보완되었다. 여기에는 청소년정책 개발 프로그램 준비 및 이행, 청소년 단체 지원 계획, 청소년자문회의(Advisory Council for Youth Affairs), 청소년협회보조위원회(Youth Organisation Subsidy Committee)의 임원 구성과 임명의무에 관한 추가 조

항들을 포함된다.

청소년정책은 새로운 청소년법에 의해 재구조화되었다. 그동안 핀란드에서는 국가적 및 지역적 수준에서의 총체적인 청소년정책이 결여되어 있었다. 몇몇 지역당국에서 다양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했을 뿐이다. 그러나 새로운 청소년법에 근거하여 국가의 청소년정책개발 프로그램이 지방과 지역의 프로그램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었다. 청소년정책개발 프로그램 2007~2011은 장관이 실행 및 재정계획과 예산을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자문회의는 매년 시행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중 주요 내용은 청소년 자문회의, 방과 후 학생클럽, 청소년워크숍(작업장) 활동, 약물 남용 예방 복지사업, 다문화주의 및 이주자, 청소년문화 행사 활동 등이다.

핀란드의 청소년정책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청소년기에 청소년활동과 접목된 근로(진로)경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점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활동기반을 확충하고 직업 능력 강화 및 진로지도 이행 및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2011년에 핀란드 교육문화부는 지역 정부를 통해 청소년 활동을 지원했다. 핀란드 정부의 한 해 전체 예산에서 교육문화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2010년의 경우 총 6조 2,180억 유로)이고, 교육문화부는 지역 정부의 청소년 정책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9세 이하 인구수를 기준으로 각 지방 행정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여 예술, 스포츠, 연구, 청소년 관련 활동을 활성화했다.

## 바. 스웨덴

스웨덴에서는 다양한 부처가 아동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처는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보건사회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이다. 교육연구부는 취학전 아동을 위한 교육, 방과후 학교, 초등교육 특수학교 및 국가의 감독을 받는 자립학교 등과 관련된 일을 관장하며, 교사훈련, 학교행정 프로그램, 교재개발과 장애아동 교육 등도 담당하고 있다. 교육연구부 산하 행정 기구 중 아동정책과 관련된 기구로 국립교육원(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국립 학교개선위원회(Swedish National Agency for School Improvement), 스웨덴 특수학교 연구소(Swedish Institute for Special Needs Education) 등이 있다. 이러한 기구들은 보육기관과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가치들과 기본 교육방향을 제시하고, 시설 감시, 관련 인력 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한다.

보건사회부의 사회보험 분과에서는 가족수당, 아동수당, 연금, 산재 보험 등의 현금급여 및 아동이나 가족관련 수당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사회서비스분과에서는 일부 업무로 청소년 보호시설의 관리를 담당한다. 보건사회부 산하 중앙행정기구 중 아동옴부즈맨(Children's Ombudsman)이 있다. 아동옴부즈맨은 아동 및 청소년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시하고 아동정책 이행을 평가하는 기구이고,

지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협약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파악한다. 스웨덴 국제입양국(Swedish Intercountry Adoptions Authority)도 보사부 관할 아래에 있는 행정기구로서 입양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립시설보호국(National Board of Institutional Care)은 업무의 일부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지역자치단체는 아동정책의 직접 서비스 제공자이다. 지역자치단체 중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에는 보육 및 청소년위원회(Child Care and Youth Committee), 사회복지국(Social Welfare Board) 혹은 지역위원회(District Committee) 등이 있다. 스웨덴에서는 지역자치단체가 아동관련 서비스에 대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지방이양 형태를 갖고 있다. 단,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의 경우, 재정은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서비스는 지자체가 제공한다.

스웨덴 정부의 청소년정책에는 모든 공공서비스의 계획에서의 주요한 출발점이 되어야 할 네 가지의 관점을 갖고 있다. 네 가지의 관점은 자원(resource), 권리(right), 독립(independence and self reliance) 및 다양성(diversity)이다.

첫째, 청소년들이 자원이라는 관점은 이들이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적인 성장, 성 평등으로 지워지는 사회 창출에 대해서 자신들의 독특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자원은 그들의 경제적인 활동과 대중 운동을 통해 민주적 과정, 공공분야 등에서 개발되고 사용되어져야만 한다. 즉, 청소년들도 사회 내의 다른 구성원과 마찬가지로 서비스가 계획되는 과정에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관점은 청소년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권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사회·경제적인 안전, 건강과 개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독립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관점은 청소년기가 보다 큰 독립과 자립으로 가는 발전적 단계라는 이유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독립이라는 의미는 부모로부터의 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의존성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약물남용, 강압과 억압,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등은 청소년들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그들의 환경 속에서 제거되어야 할 요소들이다.

넷째, 청소년들이 다양성을 갖고 있다는 관점은 그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생활양식이 매우 소중한 것이고 민주주의 속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인이 만들어낸 틀 안에 맞추어질 수 없고, 그들의 상황과 여건은 배경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모든 공공수준의 서비스는 이런 다양성을 권장해야 하고, 그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이런 네 가지의 관점 속에서 국가수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들이 복지에 대한 진정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진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두 가지의 포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 및 사업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영향력 포럼(influence forum), 방과후 서비스(여가시간센터, 보육가정, 개방 여가시간 활동), 여가 및 문화활동,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는 정책 프로그램(소외된 지역 내 학교 강화 프로그램, 학교에서의 학생 학대에 대한 보호 강화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위한 주택제공 계획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질 좋고 저렴한 주택을 위한 실험적 프로젝트, 주택을 확보하거나 세를 얻는 환경 개선 프로젝트), 모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계획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향상 프로젝트, 알코올 및 약물사용 예방 프로젝트)이 있다.

## 3. 미주 및 아시아 ·오세아니아지역의 청소년정책

### 가. 미국

미국의 청소년정책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HHS) 소속 차관보 조직인 아동가족실(ACF)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아동가족실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가족에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60여개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법제상 교육에 관한 권한이 주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과 교육 및 서비스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집행은 중앙정부나 시, 카운티 등과 같은 지역 정부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미국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본적인 인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그들 스스로를 돕기 위한 미국의 주요한 정부기관으로, 청소년정책의 대표적인 부서이다.

미국 연방정부에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이외의 부처에서도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을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데,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 미성년자 근무 시 안전대책, 청소년을 위한 공정한 고용기회 프로그램,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농림부는 농촌청년활동을 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는 교정국, 청소년사법과 비행예방사무국을 두어 청소년 범죄의 예방과 통제능력을 신장시키고 있으며, 미성년 재판 및 미성년 비행예방을 주 활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무부는 청소년관리 단체 등을 다루고 있으며, 주택 및 도시개발부는 도시청소년 프로그램인 Youth Build를 주 정책으로 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의 경우, 주정부별로 독자적인 제도를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각 주정부는 각 주정부의 청소년서비스국 및 복지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고, 주에서는 주단위 제도 수립 및 각 카운티 대상 예산지원과 행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카운티에서는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규모가 거대하고 다양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직접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운영예산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National Collaboration for Youth와 US Student Association을 들 수 있다.

청소년 관련 정책이 각 부처에 분산되어 실시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청소년 관련 법은 각 부처의 청소년사업의 골격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에서 미국의 청소년 관련 법 중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청소년정책 수행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2005년 하원에 소개되고 2006년 법률로써 서명된 연방청소년정책조정에관한법률(Federal Youth Coordination Act: FYCA)은 Federal Youth Department Council에 의해 제정되었다. FYCA는 청소년을 위한 연방 정부간 커뮤니케이션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에 의해 자원을 배분하며,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2001년 의회에서 통과된 NCLB(No Child Left Behind)는 미국의 모든 아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과 여유 있는 가정의 학생들 사이에 존재하는 학업성취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되었다. NCLB는 부시 대통령 취임 후 최초로 발효된 연방법으로 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2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입법한 연방 초중등교육법이다. 그러나 NCLB가 제정된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향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결론에 이르면서 2012년 3월 초중등교육법에 다시 권한을 부여했다. 이것은 미국의 청소년정책에서 학업성취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개정된 가출·노숙청소년법은 가출·노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노동력 투자법은 광범위한 취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전달을 통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노동부에 의해 제안된 FLSA(The Fair Labor Standards Act)는 청소년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으로 기본급과 추가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증진법은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 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The Keeping Children and Families Safe Act of 2003은 아동학대 방지 및 관리법이 2003년 개정된 것으로 아동의 학대와 방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교육문화상호교류법은 미국 국제교류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의 청소년문제행동 예방, 치료, 교정 중심의 정책이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진단에 기초하여 최근 긍정적 청소년발달을 강조하고 있으며, 방과 후 시간에 다양한 긍정적 기회와 지원을 위한 방과 후 운동 등에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청소년정책 비전과 방향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소외청소년에 대한 보다 나은 관리, 확실한 책임, 청소년과 가족의 연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우선권 주기 등의 정책을 개발하고 있고 이는 향후 연방정부 청소년정책의 기본 틀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NCLB 프로그램과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을 들 수 있다.

NCLB의 담당국은 초·중등교육국이다. NCLB는 교육부는 물론이고 미연방정부의 모든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기본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다. NCLB는 보편적으로 생활수준이 낮으면서 낮

은 교육성취도를 보이고 있는 소외계층의 학생, 소수민족 학생, 영어에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 학생 등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각 주에서 정한 학업성취 기준을 달성하도록 함으로써 빈부의 차이에 의한 학력 격차를 줄이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즉, NCLB 프로그램을 통한 소외계층의 학력 수준 향상은 미국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점을 해소하고 나아가 미국의 전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NCLB는 책무성(accountability), 자율성(freedom), 방법론(methods), 선택권(choice)의 4대 원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바로 직결되는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시킬 수 있고,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학부모 및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통해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고, 교원들의 자질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

청소년 개발(Youth Development)은 긍정적인 면으로 청소년의 능력을 개발하여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의 잠재역량 개발을 도와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도전에 직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소년 개발은 미국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써 작용하고 있다.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 보호처럼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며, 청소년 육성이나 지도처럼 청소년을 성인이 이끈다는 의미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 스스로 충분히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개발은 청소년들이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직업적, 도덕적, 정서적으로 유능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긍정적인 활동과 경험들을 통해서 당면할 생애주기를 대비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정책 중에서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변화는 사이버폭력과 청소년멘토링에 관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경우, 청소년들 사이의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이것이 오프라인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차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다.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주정부에서는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뉴욕, 워싱턴, 일리노이, 미네소타 등의 주에서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사이버폭력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고, 사이버폭력을 법으로 규정한 주정부는 그 이후 증가하고 있다. 관심을 가질만한 또다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멘토링이다. 청소년멘토링은 청소년의 학업을 도와주는 멘토링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비행청소년, 위기청소년, 시설청소년, 소수청소년 등 취약계층 전반의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다. 멘토링 대상 청소년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도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다양하다.

## 나. 일본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크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정책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의 정비와 중장기계획의 마련을 들 수 있다. 일본정부는 2003년 6월, 보다 적극적인 청소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내각 부(副)총리대신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서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추진본부를 설치했다. 청소년육성추진본부 산하에는 부(副)본부장(관방장관, 문부과학성대신, 법무대신, 후생노동대신 등)으로 구성된 회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의 과장급회의, 청소년국제교류관련 연락회의, 청소년비행대책을 위한 과장급회의, 커리어교육추진회의 등을 설치하여 정책의 종합적 추진과 정책의 체계성, 구체성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계획마련의 일환으로 2003년 12월 청소년육성시책대강을 책정했다. 2006년 6월에는 청소년들을 비행 또는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안전 및 안심 추진계획-비행, 범죄피해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마련했으며, 2006년 12월에는 청소년들의 커리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커리어교육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둘째, 정책대상인 청소년의 연령을 유아기에서 성인기 이전 단계까지 매우 폭넓게 설정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보호, 지원, 육성, 계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먼저, 영유아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 보건서비스의 확충, 식생활 개선을 통한 모자 보건의 증진, 육아서비스의 확충, 탁아시설 및 유치원 서비스의 개선 및 제3자에 의한 서비스 평가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상담 및 의료서비스 지원체제의 정비,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함양, 기초 학력의 배양,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함양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사춘기에 대한 주요정책으로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식의 강화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실시되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주요정책으로는 대학교육의 충실, 직업능력의 개발 및 취업지원시스템의 구축,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 있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셋째, 청소년정책을 문제 상황별로 설정함으로써 정책과제 및 대상을 명확하게 설정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 문제 상황의 내용으로는 먼저, 학습장애(LD)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곤란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장학금제도의 확충, 생활보호, 다문화가정출신 청소년에 대한 지원),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가정폭력, 아동학대, 원조교제, 이지메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의 예방 및 보호, 장애, 비행 및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정책들이 있다.

넷째, 청소년정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제의 정비에 관한 정책들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 인력의 배치(의료, 복지, 심리상담, 진로상담분야 전문가 등), 청소년지원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환경 분위기 조성(학교 내 상담체제의 구축, 교사의 자질함양을 위한 연수, 학교재량권의 확대, 선택제 수업의 확충 등),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환경의 조성, 지역사회 내 청소년 활동공간의 확충 등과 같은 정책들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정보화사회, 소비사회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기회 및 제도적 장치(Town Meeting, 모니터링제도의 실시 등)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년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 인권에 관한 계몽활동, 사회성 함양을 위한 캠페인, 청소년들도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의 구축 등과 같은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최근 청소년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10년 일본 내각부는 심각한 비행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고, 2010년 5월 27일에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에 대한 블로킹(blocking : 열람방지조치) 도입을 골자로 한 아동포르노 근절 종합대책안을 공포했다. 또한 일본 내각부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촉진하는 자녀용과 보호자용 2가지 팸플릿을 발행했다. 뿐만 아니라 내각부에서는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약물 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2011년 1월 7일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중·고교생에게도 커리어(career) 교육을 도입하여 특정 직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육성하도록 하고, 2012년도(2012년 4월~2013년 3월)에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3월 8일에는 일본 내각부에서 필터링 보급에 관한 관계각료 간담회를 열고, 국가공안위원회,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업성과 청소년 휴대전화에 필터링(유해사이트 차단 기능)을 보급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4월 22일에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진 피해 학생 지원책을 발표했고, 지진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다. 6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 자살원인조사 지침을 문부성에서 마련했다. 또한 8월 20일에는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출범시켜 비행과 등교거부, 은둔형 외톨이 등 문제 청소년들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원했다. 9월 28일에는 일본 시즈오카(靜岡)현에서 고등학생 대인관계 지원 사업을 개시하여 2011년 10월부터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고등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인간관계 구축 및 감정 컨트롤 훈련을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개시했다.

## 다.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8년 11월 1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후 2004년에 싱가포르 행정부(15개) 중의 하나인 지역사회개발 및 스포츠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Sports: MCDS)가 MCYS로 개편되면서 청소년 주무부서가 되었다. 기존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통폐합된 것이 아니라 산하기관으로 연계되어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청소년부 산하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uncil),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가족부(Ministry of Home Affairs) 등 3개의 부서가 청소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행정부서인 MCYS는 싱가포르를 위해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더 넓은 지역 사회와 국가와 관계되는 청소년의 역동성과 역량을 개발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

다. MCYS의 다섯 가지 중요한 사업 중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는 먼저, 용기와 의식 있는 청소년을 기르기 위한 일을 하고,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청소년 분과의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첫째,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문제와 강인한 의식을 개발하기 위한 과정을 제공하며, 둘째, 청소년의 리더십 육성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셋째,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주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목표는 청소년들의 역동성을 개발하고 이들의 기상을 높이며 체력증진으로 글로벌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있다. 그리고 글로벌 환경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먼저 이들의 가치와 미래기술은 국가와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프로그램과 재정지원을 통하여 청소년기에 증가하고 있는 위험과 역동성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리더십을 개발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있다.

싱가포르 청소년 정책의 특징은 학문적인 연구보다는 청소년수련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점과 여러 관련기관에서 청소년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다.

## 라. 호주

호주에서는 교육·고용·직장관계부(Department of Education, Employment and Workplace Relations)가 연방정부차원에서 호주 전역의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 호주의 청소년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반면, 6개의 주와 2개의 특별행정지역에는 독립적인 교육부서가 존재한다. 특히 교육·고용·직장관계부에는 2008년 청소년과를 설립해서 호주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다루고 있다. 청소년과의 주요 원칙은 청소년들이 호주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청소년들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현재의 청소년 세대에게 독특한 도전과 기회를 인정하는 것이다.

호주의 청소년과 아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법은 2004년 개정된 교육법(Education Act 2004)이다. 이 교육법은 크게 6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의무교육연령에 해당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입학과 학제, 학령, 전학, 자격시험 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국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조직과 운영, 교과내용, 학교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호주에는 연방정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도 법을 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청소년관련 법들을 살펴보면, 법의 내용이 크게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 그리고 교육에 관한 법으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다. 호주의 지형적 조건상 각 주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 환경과 문화 환경을 수렴하여 각 주의 법이 처벌기준과 보호 기준 등에서 연령이 다르기는 하지만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법체계는 비슷하고, 또 주마다 청소년범죄자의 이송에 관한 법을 둠으로써 청소년과 아동 범죄자의 권리와 교정 교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호주의 청소년정책은 고용, 교육, 훈련 등의 분야, 노숙자 청소년, 정신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 조기

학교중퇴 및 장기실업 청소년과 같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분야가 있다. 단지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좀 더 세분화되어서, 이민자 청소년과 토착원주민 청소년에게로 정책의 분야가 확대되었고, 2006년과 2007년 사이에는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 사회내의 감소하는 인구율과 맞물려 이민자를 환영하고 호주의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이 주는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2009~2010년 제1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과 2011~2014년 제2차 Reconciliation Action Plan을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들은 청소년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정보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호주의 선거권이 18세 이상 시민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모든 정당은 유권자로서의 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교육·고용·직장관계부의 청소년국에서 여성, 아동, 토착원주민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이 중요한 정책대상이라고 밝힌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1990년대 중반이후, 호주의 대표적인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사회정의계획(Youth Social Justice Strategy)과 사회정의계획(Social Justice Strategy)인데 이는 사회통합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에 주안점을 둔 계획이다.

호주정부는 고용·교육·훈련·청소년부 시절 국가 청소년정책: 원칙과 목표(A National Youth Policy: A Statement of Principles and Objectives)의 발표를 통해 청소년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직업교육 및 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이 부서에서 직업교육과 훈련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경쟁적인 지구촌 경제의 변화에 호주가 탄력적이고도 역동적으로 적응하는데 청소년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의 활성화와 극대화를 통하여 청소년이 학교의 교육과정안에 머무르는 동안, 사회에서 필요한 직업기술을 습득하고, 성인의 삶을 계획하게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더십, 직업적인 건강과 안전, 작업장에서의 의사소통, 영업수완과 고객과의 관계, 주식관리, 보안과 금융관리 등의 내용을 교육 내용으로 하여 청소년들이 학교 재학 중에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된 교육은 반드시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당시부터 직업의 현장과 연관되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호주정부는 새로운 교육개혁에 임하고 있다. 2010년 4월 15일 발표된 호주청소년을 위한 국가전략(The National Strategy for Young Australians)에 의하면 청소년에 대한 호주정부의 비전은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유연하게 자라는 것과 청소년들이 배우고 일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기회와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다.

최근 2010년 12월 7일에 주 브로드밴드 통신 디지털경제부(DBCDE)는 8~17세 청소년 위원들로 구성된 호주의 청소년 자문단(Youth Advisory Group) 및 사이버안전 실무협의회(Consultative Working Group on Cybersafety)의 자문을 통해 개발된 사이버안전 버튼(Cybersafety Button)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2011년 2월 17일에는 교육부에서 디지털 교육 혁명(DER)의 일환으로 9~12학년 학생 전원

에 컴퓨터 보급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21세기에 요구되는 컴퓨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2011년 7월 5일에는 정부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진학 지원금을 제공했다.

# 제2부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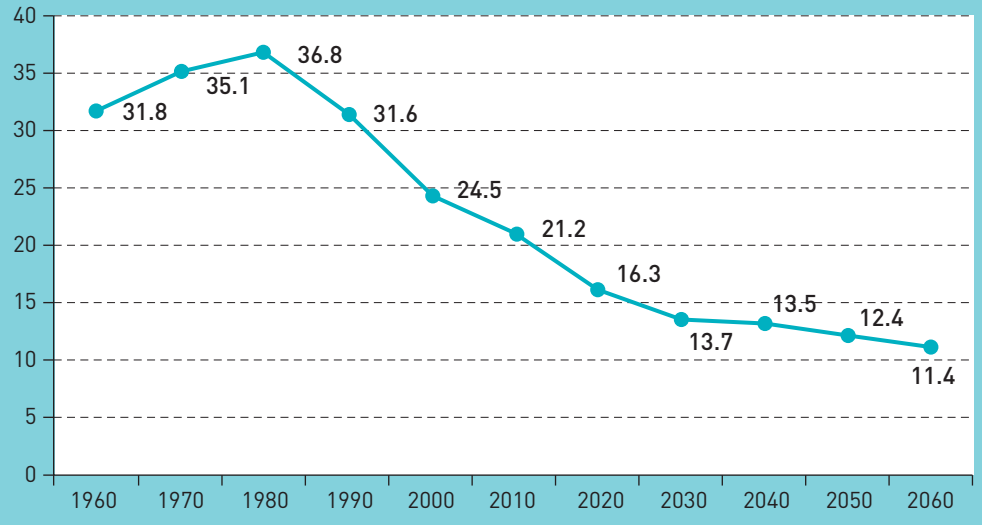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2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2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명중 20.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1980년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로 꾸준히 감소국면에 접어든 상태이며, 2015~2020년까지 5년간 120만명이 더 감소할 전망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도 1980년에 36.8%을 최고점으로 하여 2015년에는 19.0%, 2020년에는 16.3%, 2030년에는 13.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출생아수 추이는 1970년 1백만명에서 2011년 47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 2011년 11만 4천건으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와 더불어 총가구수는 2010년 1,757만 가구로 1970년에 비해 약 3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나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1970년대 5명에서 2007년 2.7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1인 가구수 증가는 2005년에 비해 2010년 30.6%로 증가하였고 이는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세대 구성은 2세대 가구수가 51.3%이고, 1인 가구 23.9%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인구 구성비(1960~2060)

(단위 : %)




자료 :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 제 02 부 청소년 인구 및 가족

제1장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제2장 가족구성 및 변동

제1장
# 청소년 인구 현황과 전망

## 1. 청소년 인구 현황

2012년 현재 9~24세의 청소년 인구는 1,020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5천만명중 20.4%를 차지하고 있다. 9~24세 인구 중 19~20세가 각각 6.9%로 가장 많았고, 9세 인구가 4.7%로 청소년 인구 중 가장 적었다.

여자 1백명 당 남자를 의미하는 성비는 2011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100.3명인데 반해, 9~24세 청소년 인구는 111.7명으로 청소년의 남녀 간 인구규모 불균형이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2세 인구의 성비는 116.5명으로 가장 높고, 이후 연령이 낮아질수록 성비가 개선되고 있으나 9세의 성비도 108.2명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0~24세의 아동·청소년 인구는 1,43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 751만 명, 여자 682만 명으로, 성비는 110.2명을 보이고 있다.

〈 표 2-1-1 〉 2011년 연령별 아동·청소년 인구

(단위 : 천명, %)

| 연 령 | 청소년 인구 | 구성비(9~24세) | 구성비(0~24세) | 남 자 | 여 자 | 성 비 |
|---|---|---|---|---|---|---|
| 0세 | 456 | – | 3.2 | 235 | 221 | 106.6 |
| 1세 | 482 | – | 3.4 | 249 | 233 | 106.8 |
| 2세 | 446 | – | 3.1 | 229 | 216 | 106.0 |
| 3세 | 452 | – | 3.2 | 232 | 219 | 106.0 |
| 4세 | 486 | – | 3.4 | 250 | 236 | 105.9 |
| 5세 | 457 | – | 3.2 | 235 | 222 | 106.2 |
| 6세 | 435 | – | 3.0 | 225 | 210 | 107.1 |
| 7세 | 442 | – | 3.1 | 229 | 214 | 107.1 |
| 8세 | 476 | – | 3.3 | 247 | 229 | 107.8 |
| 9세 | 474 | 4.7 | 3.3 | 247 | 228 | 108.2 |
| 10세 | 508 | 5.0 | 3.5 | 264 | 243 | 108.6 |
| 11세 | 587 | 5.8 | 4.1 | 306 | 282 | 108.5 |
| 12세 | 605 | 5.9 | 4.2 | 317 | 287 | 110.6 |
| 13세 | 618 | 6.1 | 4.3 | 324 | 294 | 110.1 |
| 14세 | 636 | 6.2 | 4.4 | 333 | 304 | 109.6 |
| 15세 | 658 | 6.4 | 4.6 | 345 | 313 | 110.3 |
| 16세 | 674 | 6.6 | 4.7 | 356 | 319 | 111.6 |
| 17세 | 687 | 6.7 | 4.8 | 365 | 322 | 113.2 |
| 18세 | 698 | 6.8 | 4.9 | 372 | 326 | 113.9 |
| 19세 | 707 | 6.9 | 4.9 | 375 | 332 | 113.0 |
| 20세 | 704 | 6.9 | 4.9 | 374 | 330 | 113.2 |
| 21세 | 687 | 6.7 | 4.8 | 368 | 319 | 115.3 |
| 22세 | 664 | 6.5 | 4.6 | 358 | 307 | 116.5 |
| 23세 | 649 | 6.4 | 4.5 | 345 | 305 | 113.2 |
| 24세 | 641 | 6.3 | 4.5 | 334 | 307 | 108.8 |
| 계(9~24세) | 10,197 | 100.0 | – | 5,380 | 4,817 | 111.7 |
| 계(0~24세) | 14,328 | | 100.0 | 7,511 | 6,817 | 110.2 |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 2. 청소년 인구 전망

우리나라의 청소년(9~24세) 인구는 1960년 796만 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는 1,401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출산율 감소로 청소년 인구가 점차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1,046만명까지 감소했다. 2015년까지 약 85만명의 청소년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2015~2020년까지 5년간 120만명이 더 감소할 전망이다. 저출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청소년 인구는 2035년에 709만명, 2060년에는 501만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의 구성비는 1960년에 전체 인구의 31.8%를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하여 1980년에 36.8%까지 증가하였고,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서 1990년에 31.6%, 2010년에 21.2%까지 낮아졌다. 향후에도 청소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19.0%, 2020년에는 16.3%, 2030년에는 13.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1960~1965년에는 연평균 2.95%씩 증가하는 높은 수준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990~1995년 1.04%를 기록한 이후, 1%대 이하의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2015년 사이 총인구는 연평균 0.49%씩 증가할 전망이며, 2031년부터 마이너스 인구성장을 시작, 2055~2060년에는 연평균 −0.94%씩 인구가 감소할 전망이다.

청소년 인구증가율은 1960~1965년 2.92%p로 총인구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으나,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1975~1980년 1.75%, 1980~1985년에는 연평균 −0.06%씩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5~2025년까지 10년간은 −2%대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감소폭은 줄어들 전망이나, 2055~2060년에도 연평균 −1.46%씩 감소할 전망이다.

〈 표 2-1-2 〉 총인구와 청소년(9~24세) 인구 전망

(단위 : 명, %)

| 연 도 | 총 인 구 | 연평균성장률 | 청소년 인구 | 구 성 비 | 연평균성장률 |
|---|---|---|---|---|---|
| 1960 | 25,012,374 | – | 7,956,903 | 31.8 | – |
| 1965 | 28,704,674 | 2.79 | 9,120,576 | 31.8 | 2.77 |
| 1970 | 32,240,827 | 2.35 | 11,329,714 | 35.1 | 4.43 |
| 1975 | 35,280,725 | 1.82 | 12,885,563 | 36.5 | 2.61 |
| 1980 | 38,123,775 | 1.56 | 14,014,932 | 36.8 | 1.69 |
| 1985 | 40,805,744 | 1.37 | 13,974,697 | 34.2 | -0.06 |
| 1990 | 42,869,283 | 0.99 | 13,553,357 | 31.6 | -0.61 |
| 1995 | 45,092,991 | 1.02 | 12,751,383 | 28.3 | -1.21 |
| 2000 | 47,008,111 | 0.84 | 11,501,436 | 24.5 | -2.04 |
| 2005 | 48,138,077 | 0.48 | 11,027,943 | 22.9 | -0.84 |
| 2010 | 49,410,366 | 0.52 | 10,464,647 | 21.2 | -1.04 |
| 2015 | 50,617,045 | 0.48 | 9,609,808 | 19.0 | -1.69 |
| 2020 | 51,435,495 | 0.32 | 8,403,212 | 16.3 | -2.65 |
| 2025 | 51,972,363 | 0.21 | 7,425,882 | 14.3 | -2.44 |
| 2030 | 52,160,065 | 0.07 | 7,158,631 | 13.7 | -0.73 |
| 2035 | 51,888,486 | -0.10 | 7,094,276 | 13.7 | -0.18 |
| 2040 | 51,091,352 | -0.31 | 6,893,525 | 13.5 | -0.57 |
| 2045 | 49,810,211 | -0.51 | 6,516,214 | 13.1 | -1.12 |
| 2050 | 48,121,275 | -0.69 | 5,958,537 | 12.4 | -1.77 |
| 2055 | 46,124,771 | -0.84 | 5,403,999 | 11.7 | -1.93 |
| 2060 | 43,959,375 | -0.96 | 5,010,838 | 11.4 | -1.50 |

주 : 연평균인구성장률 = $((P_t/P_0)^{\frac{1}{T}}-1)\times 100$

자료 : 통계청 (2011). 장래인구추계 : 2010~2060.

## 3. 청소년 인구동태

인구동태통계(Vital statistics)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기본적인 인구변동 사건에 대한 통계로서 출생·사망·혼인·이혼에 관한 통계를 총칭하는 것이다. 조출생률, 조사망률, 조혼인율, 조이혼율 등 다양한 인구동태 지표가 작성되고 있다.

〈 표 2-1-3 〉 연도별 인구동태 추이

(단위 : 명, 건수)

| 연 도 | 출 생 | 사 망 | 자연증가 | 혼 인 | 이 혼 |
|---|---|---|---|---|---|
| 1970 | 1,006,645 | 258,589 | 748,056 | 295,137 | 11,615 |
| 1975 | 874,030 | 270,657 | 603,373 | 283,226 | 16,453 |
| 1980 | 862,835 | 277,284 | 585,551 | 403,031 | 23,662 |
| 1985 | 655,489 | 240,418 | 415,071 | 384,686 | 38,187 |
| 1990 | 649,738 | 241,616 | 408,122 | 399,312 | 45,694 |
| 1995 | 715,020 | 242,838 | 472,182 | 398,484 | 68,279 |
| 1996 | 691,226 | 241,149 | 450,077 | 434,911 | 79,895 |
| 1997 | 668,344 | 241,943 | 426,401 | 388,960 | 91,160 |
| 1998 | 634,790 | 243,193 | 391,597 | 373,500 | 116,294 |
| 1999 | 614,233 | 245,364 | 368,869 | 360,407 | 117,449 |
| 2000 | 634,501 | 246,163 | 388,338 | 332,090 | 119,455 |
| 2001 | 554,895 | 241,521 | 313,374 | 318,407 | 134,608 |
| 2002 | 492,111 | 245,317 | 246,794 | 304,877 | 144,910 |
| 2003 | 490,543 | 244,506 | 246,037 | 302,503 | 166,617 |
| 2004 | 472,761 | 244,217 | 228,544 | 308,598 | 138,932 |
| 2005 | 435,031 | 243,883 | 191,148 | 314,304 | 128,035 |
| 2006 | 448,153 | 242,266 | 205,887 | 330,634 | 124,524 |
| 2007 | 493,189 | 244,874 | 248,315 | 343,559 | 124,072 |
| 2008 | 466,000 | 246,000 | 220,000 | 327,715 | 116,535 |
| 2009 | 444,849 | 246,942 | 197,907 | 309,759 | 123,999 |
| 2010 | 470,171 | 255,403 | 214,768 | 326,104 | 116,858 |
| 2011 | 471,265 | 257,396 | 213,869 | 329,087 | 114,284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1년에 태어난 출생아수는 47만명, 사망자수는 25만 7천명이었다. 출생아수와 사망자수의 차이를 의미하는 자연증가에 의해 2011년 한 해 동안 21만 4천명의 인구가 증가한 셈이다.

출생아수 추이는 1970년 1백만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절반이하의 수준인 43만 5천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사망자수 추이는 1970년 25만 9천명에서 증가한 후 1980년대 후반부터는 24만명 수준에서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해 왔으나, 2007년 이후 약간씩 증가하여 2010년에는 25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의 혼인과 이혼 수준은 전년과 유사했다. 2011년 연간 혼인건수는 32만 9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3천건 증가했다. 2011년의 이혼은 11만 4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2천5백건 감소했다.

혼인은 1996년 43만 5천건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여 2003년 30만 3천건까지 감소했다. 이후 2007년에는 34만건 까지 늘어났으나, 글로벌 경제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다시 31만건까지 감소한 후 2010년과 2011년에 32만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이혼은 1970년에 1만 2천건에서 1998년에는 11만 6천건으로 열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16만 6천건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수)은 9.4명, 조사망률(인구 1천 명당 사망자수)은 5.1명이었다. 2011년의 조출생률과 조사망률은 전년과 동일했다. 조출생률에서 조사망률을 차감한 자연증가율은 2011년 4.3명이었다.

2011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6.6건으로 2010년보다 0.1건 증가했고,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은 2.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 표 2-1-4 〉 연도별 인구동태율 추이

(단위 : 인구 1천명당 건)

| 구분 | 1970 | 1975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조출생률 | 31.2 | 24.8 | 22.6 | 16.1 | 15.2 | 15.7 | 13.3 | 11.6 | 10.2 | 10.2 | 9.8 | 8.9 | 9.2 | 10.0 | 9.4 | 9.0 | 9.4 | 9.4 |
| 조사망률 | 8.0 | 7.7 | 7.3 | 5.9 | 5.6 | 5.3 | 5.2 | 5.0 | 5.1 | 5.1 | 5.0 | 5.0 | 5.0 | 5.0 | 5.0 | 5.0 | 5.1 | 5.1 |
| 자연 증가율 | 23.2 | 17.1 | 15.4 | 10.2 | 9.5 | 10.3 | 8.2 | 6.5 | 5.1 | 5.1 | 4.7 | 3.9 | 4.2 | 5.1 | 4.4 | 4.0 | 4.3 | 4.3 |
| 조혼인율 | 9.2 | 8.0 | 10.6 | 9.4 | 9.3 | 8.7 | 7.0 | 6.7 | 6.3 | 6.3 | 6.4 | 6.5 | 6.8 | 7.0 | 6.6 | 6.2 | 6.5 | 6.6 |
| 조이혼율 | 0.4 | 0.5 | 0.6 | 0.9 | 1.1 | 1.5 | 2.5 | 2.8 | 3.0 | 3.4 | 2.9 | 2.6 | 2.5 | 2.5 | 2.4 | 2.5 | 2.3 | 2.3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가. 출생

2011년의 출생아수는 47만명으로 하루 평균 1,291명이 태어난 셈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면서 20~30대의 미혼자 비중이 늘고, 초혼연령이 상승하면서 출생은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2006년 '쌍춘년'과 2007년 '황금돼지해' 등의 영향으로 2007년의 출생은 49만명까지 증가했다. 2008년과 2009년은 출생아수가 감소했으나 2010년에는 47만명으로 다시 증가했고, 2011년에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 표 2-1-5 〉 출생아수 및 조출생률

(단위 : 명, %, 인구 1천명당 명)

| 연 도 | 출생아수 | 증 감 | 증감률(%) | 1일평균 | 조출생률 (천명당) |
|---|---|---|---|---|---|
| 1995 | 715,020 | | | 1,959 | 15.7 |
| 1996 | 691,226 | -23,794 | -3.3 | 1,889 | 15.0 |
| 1997 | 668,344 | -22,882 | -3.3 | 1,831 | 14.4 |
| 1998 | 634,790 | -33,554 | -5.0 | 1,739 | 13.6 |
| 1999 | 614,233 | -20,557 | -3.2 | 1,683 | 13.0 |
| 2000 | 634,501 | 20,268 | 3.3 | 1,734 | 13.3 |
| 2001 | 554,895 | -79,606 | -12.5 | 1,520 | 11.6 |
| 2002 | 492,111 | -62,784 | -11.3 | 1,348 | 10.2 |
| 2003 | 490,543 | -1,568 | -0.3 | 1,344 | 10.2 |
| 2004 | 472,761 | -17,782 | -3.6 | 1,292 | 9.8 |
| 2005 | 435,031 | -37,730 | -8.0 | 1,192 | 8.9 |
| 2006 | 448,153 | 13,122 | 3.0 | 1,228 | 9.2 |
| 2007 | 493,189 | 45,036 | 10.0 | 1,351 | 10.0 |
| 2008 | 465,892 | -27,189 | -5.5 | 1,273 | 9.4 |
| 2009 | 444,849 | -21,043 | -4.5 | 1,219 | 9.0 |
| 2010 | 470,171 | 25,322 | 5.7 | 1,288 | 9.4 |
| 2011 | 471,265 | 1,094 | 0.2 | 1,291 | 9.4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1년 출생아 모의 연령별 출산율(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출생아수)을 보면 30대 초반(30~34세)의 출산율이 114.4명으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25~29세)이 78.4명, 30대 후반(35~39세)이 35.4명순으로 높았다. 미혼과 만혼이 늘면서 주요 출산연령층이 높아져, 2007년에 처음으로 20대 후반보다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더 높아졌다. 20대 후반의 출산율은 1996년 167.6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11년에는 절반 이하 수준인 78.4명까지 감소했다. 반면 30대 초반 출산율은 1996년 71.1명에서 2011년 114.4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표 2-1-6 〉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명당 명)

| 연령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15~19세 | 3.3 | 3.0 | 2.8 | 2.6 | 2.5 | 2.2 | 2.6 | 2.5 | 2.3 | 2.1 | 2.2 | 2.2 | 1.7 | 1.7 | 1.8 | 1.8 |
| 20~24세 | 58.8 | 54.2 | 48.3 | 43.3 | 38.8 | 31.4 | 26.5 | 23.6 | 20.6 | 17.8 | 17.6 | 19.5 | 18.2 | 16.5 | 16.5 | 16.4 |
| 25~29세 | 167.6 | 159.7 | 152.1 | 147.2 | 149.6 | 129.2 | 110.9 | 111.7 | 104.5 | 91.7 | 89.4 | 95.5 | 85.6 | 80.4 | 79.7 | 78.4 |
| 30~34세 | 71.1 | 71.5 | 71.2 | 72.3 | 83.5 | 77.5 | 74.5 | 79.1 | 83.2 | 81.5 | 89.4 | 101.3 | 101.5 | 100.8 | 112.4 | 114.4 |
| 35~39세 | 15.5 | 15.4 | 15.2 | 15.3 | 17.2 | 17.0 | 16.6 | 17.1 | 18.2 | 18.7 | 21.2 | 25.6 | 26.5 | 27.3 | 32.6 | 35.4 |
| 40~44세 | 2.4 | 2.3 | 2.3 | 2.4 | 2.5 | 2.4 | 2.4 | 2.4 | 2.4 | 2.4 | 2.6 | 3.1 | 3.2 | 3.4 | 4.1 | 4.6 |
| 45~49세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0.2 |
| 일반출산율[1] | 53.5 | 49.6 | 46.7 | 45.0 | 46.3 | 40.3 | 35.7 | 35.7 | 34.4 | 31.8 | 32.9 | 36.3 | 34.4 | 33.0 | 35.2 | 35.7 |
| 합계출산율[2] | 1.58 | 1.52 | 1.45 | 1.41 | 1.47 | 1.30 | 1.17 | 1.18 | 1.15 | 1.08 | 1.12 | 1.25 | 1.19 | 1.15 | 1.23 | 1.24 |

주 : 1) 15~49세 여자인구 1천명당 명
2) 여자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수, 여자 1명당 명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2011년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105.7명으로 2010년 106.9명보다 0.5명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출생성비는 105명을 기준으로 ±2명(103~107명) 수준을 의미한다. 출생성비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1980년 중반 이후 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1994년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조항이 강화되면서 출생성비는 감소하기 시작했고, 2005년에는 정상성비 범위인 107.8명까지 감소했다.

자녀의 출생순위별로는 성비 차이가 있었다. 2011년 첫째아와 둘째아의 성비는 105.7명과 105.0명으로 정상성비를 보이나, 셋째아 이상인 경우는 109.5로 남아 비중이 약간은 높은 편이다. 셋째아 이상의 성비도 급격히 개선되고 있는 추세로, 2011년에는 셋째아 이상의 성비가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110명 이하로 떨어졌다.

〈 표 2-1-7 〉 출산순위별 출생성비

(단위 : 여아 1백명당 남아수)

| 구분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총 출생성비 | 111.5 | 108.3 | 110.2 | 109.6 | 110.2 | 109.1 | 110.0 | 108.7 | 108.2 | 107.8 | 107.5 | 106.2 | 106.4 | 106.4 | 106.9 | 105.7 |
| 첫째아 | 105.1 | 105.2 | 106.0 | 105.6 | 106.3 | 105.5 | 106.5 | 104.9 | 105.1 | 104.8 | 105.7 | 104.5 | 104.9 | 105.1 | 106.4 | 105.0 |
| 둘째아 | 109.8 | 106.3 | 108.1 | 107.5 | 107.4 | 106.4 | 107.3 | 107.0 | 106.2 | 106.5 | 106.0 | 106.0 | 105.6 | 105.8 | 105.8 | 105.3 |
| 셋째아 이상 | 166.0 | 136.1 | 146.0 | 143.3 | 144.2 | 141.5 | 141.4 | 136.9 | 133.0 | 128.5 | 121.9 | 115.7 | 116.7 | 114.3 | 110.9 | 109.5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 나. 사망

2011년 총사망자 25만 5천명 중 청소년(10~24세) 사망은 2,86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를 차지한다. 청소년 사망자 중 10~14세는 14.8%(402명), 15~19세는 36.8%(1,003명), 20~24세는 48.4%(1,318명)로 나타났다.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전체 사망자에 비해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운수사고, 자살 등)에 의한 사망자 비중이 높다. 청소년 사망의 65.8%는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이었고, 신생물에 의한 사망 12.7%,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 6.1%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전체 연령의 사망원인은 신생물이 28.2%, 순환기계통의 질환 22.1%,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12.6%의 순이다.

〈 표 2-1-8 〉 주요 사망원인별 사망수 및 구성비

(단위 : 명, %)

| 사망 원인 | 총사망 | | 청 소 년 사 망 | | | | |
|---|---|---|---|---|---|---|---|
| | 계 | 구성비 | 계 | 구성비 | 연령별 구성비 | | |
| | | | | | 10~14세 | 15~19세 | 20~24세 |
| 전체 | 257,396 | 100.0 | 2,723 | 100.0 | 100.0 | 100.0 | 100.0 |
| 특정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 6,766 | 2.6 | 30 | 1.1 | 0.7 | 0.8 | 1.4 |
| 신생물 | 72,650 | 28.2 | 346 | 12.7 | 20.1 | 13.2 | 10.1 |
| 혈액 및 조혈기관 질환과 면역 기전을 침범하는 특정장애 | 572 | 0.2 | 22 | 0.8 | 0.7 | 1.0 | 0.7 |
|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 11,715 | 4.6 | 26 | 1.0 | 2.7 | 0.8 | 0.5 |
| 정신 및 행동장애 | 5,141 | 2.0 | 3 | 0.1 | 0.5 | 0.0 | 0.1 |
| 신경계통의 질환 | 6,640 | 2.6 | 165 | 6.1 | 15.4 | 5.3 | 3.8 |
|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 4 | 0.0 | 0 | 0.0 | 0.0 | 0.0 | 0.0 |
|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 2 | 0.0 | 0 | 0.0 | 0.0 | 0.0 | 0.0 |
| 순환기계통의 질환 | 56,878 | 22.1 | 143 | 5.3 | 8.2 | 4.4 | 5.0 |
| 호흡기계통의 질환 | 19,932 | 7.7 | 35 | 1.3 | 3.2 | 1.0 | 0.9 |
| 소화기계통의 질환 | 11,134 | 4.3 | 15 | 0.6 | 0.7 | 0.3 | 0.7 |
|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 470 | 0.2 | 3 | 0.1 | 0.2 | 0.0 | 0.2 |
|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 조직의 질환 | 1,772 | 0.7 | 19 | 0.7 | 1.2 | 0.5 | 0.7 |
|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 4,922 | 1.9 | 14 | 0.5 | 0.5 | 0.8 | 0.3 |
| 임신, 출산 및 산후기 | 85 | 0.0 | 0 | 0.0 | 0.0 | 0.0 | 0.0 |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 | 769 | 0.3 | 0 | 0.0 | 0.0 | 0.0 | 0.0 |
|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 501 | 0.2 | 30 | 1.1 | 2.0 | 1.2 | 0.8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 24,998 | 9.7 | 81 | 3.0 | 1.7 | 2.1 | 4.0 |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 32,445 | 12.6 | 1,791 | 65.8 | 41.8 | 68.7 | 70.9 |

자료 : 통계청(2011). 사망원인통계연보.

## 다. 혼인

2011년 한 해 동안 총 혼인건수는 32만 9천건(쌍)으로, 하루 평균 902건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2011년의 혼인은 전년도에 비해 0.9%(2,983건) 증가했다. 최근 혼인추이는 2004년 이후 4년간 증가세를 보이다가 글로벌 경제위기 등으로 2008년과 2009년에 연속해서 감소한 후 2011년에 다시 증가했다. 2011년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도 6.6건으로 전년보다 0.1건 증가했다.

〈 표 2-1-9 〉 혼인건수 및 조혼인율

(단위 : 건)

| 연 도 | 혼인건수 | | | 1일평균 | 조혼인율 (천명당) |
|---|---|---|---|---|---|
| | | 증 감 | 증감률(%) | | |
| 1995 | 398,484 | | | 1,092 | 8.7 |
| 1996 | 434,911 | 36,427 | 8.4 | 1,188 | 9.4 |
| 1997 | 388,960 | -45,951 | -11.8 | 1,066 | 8.4 |
| 1998 | 373,500 | -15,460 | -4.1 | 1,023 | 8.0 |
| 1999 | 360,407 | -13,093 | -3.6 | 987 | 7.6 |
| 2000 | 332,090 | -28,317 | -8.5 | 907 | 7.0 |
| 2001 | 318,407 | -13,683 | -4.3 | 872 | 6.7 |
| 2002 | 304,877 | -13,530 | -4.4 | 835 | 6.3 |
| 2003 | 302,503 | -2,374 | -0.8 | 829 | 6.3 |
| 2004 | 308,598 | 6,095 | 2.0 | 843 | 6.4 |
| 2005 | 314,304 | 5,706 | 1.8 | 861 | 6.5 |
| 2006 | 330,634 | 16,330 | 4.9 | 906 | 6.8 |
| 2007 | 343,559 | 12,925 | 3.8 | 941 | 7.0 |
| 2008 | 327,715 | -15,844 | -4.8 | 895 | 6.6 |
| 2009 | 309,759 | -17,956 | -5.5 | 849 | 6.2 |
| 2010 | 326,104 | 16,345 | 5.3 | 893 | 6.5 |
| 2011 | 329,087 | 2,983 | 0.9 | 902 | 6.6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혼인편). 각 년도.

## 라. 이혼

2011년 한 해 동안 이혼은 11만 4천건(쌍)으로 1일 평균 313건(쌍)이 이혼했다. 2011년의 이혼건수는 전년에 비해 2.3%(2천5백건) 감소했다. 이혼은 1995년 6만8천건에서 증가하여 IMF이후인 1998년에 11만건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16만 6천건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03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이혼건수는 2011년 11만 4천건으로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 이혼건수는 이혼숙려제의 도입으로 둔화추세이다. 2011년 조이혼율(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2.3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 표 2-1-10 〉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단위 : 건)

| 연 도 | 이혼건수 | | | 1일평균 | 조이혼율 (천명당) |
|---|---|---|---|---|---|
| | | 증 감 | 증감률(%) | | |
| 1995 | 68,279 | | | 187 | 1.5 |
| 1996 | 79,895 | 11,616 | 14.5 | 218 | 1.7 |
| 1997 | 91,160 | 11,265 | 12.4 | 250 | 2.0 |
| 1998 | 116,294 | 25,134 | 21.6 | 319 | 2.5 |
| 1999 | 117,449 | 1,155 | 1.0 | 322 | 2.5 |
| 2000 | 119,455 | 2,006 | 1.7 | 326 | 2.5 |
| 2001 | 134,608 | 15,153 | 11.3 | 369 | 2.8 |
| 2002 | 144,910 | 10,302 | 7.1 | 397 | 3.0 |
| 2003 | 166,617 | 21,707 | 13.0 | 456 | 3.4 |
| 2004 | 138,932 | -27,685 | -19.9 | 380 | 2.9 |
| 2005 | 128,035 | -10,897 | -8.5 | 351 | 2.6 |
| 2006 | 124,524 | -3,511 | -2.8 | 341 | 2.5 |
| 2007 | 124,072 | -452 | -0.4 | 340 | 2.5 |
| 2008 | 116,535 | -7,537 | -6.5 | 318 | 2.4 |
| 2009 | 123,999 | 7464 | 6.4 | 340 | 2.5 |
| 2010 | 116,858 | -7141 | -5.8 | 320 | 2.3 |
| 2011 | 114,284 | -2,574 | -2.3 | 313 | 2.3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제2장

# 가족구성 및 변동

## 1. 가족구성 현황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일컫는 가구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사회적 단위이다.

〈 표 2-2-1 〉 연도별 가구수 및 가구원수

(단위 : 가구, 명)

| 연 도 | 총가구수 | 일반가구수 | 집단가구수 | 평균가구원수 |
|---|---|---|---|---|
| 1970 | 5,856,901 | 5,792,983 | 63,918 | 5.25 |
| 1975 | 6,754,257 | 6,647,778 | 106,479 | 5.04 |
| 1980 | 7,992,968 | 7,969,201 | 23,767 | 4.54 |
| 1985 | 9,598,796 | 9,571,361 | 27,435 | 4.09 |
| 1990 | 11,370,160 | 11,354,540 | 15,620 | 3.71 |
| 1995 | 12,974,194 | 12,958,181 | 16,013 | 3.34 |
| 2000 | 14,326,224 | 14,311,807 | 14,417 | 3.12 |
| 2005 | 15,988,274 | 15,887,128 | 16,551 | 2.88 |
| 2010 | 17,574,067 | 17,339,422 | 20,727 | 2.7 |

주 : 1) 외국인 가구 제외

2) 1970년대에는 1인 단독가구를 추정(216,706)하여 일반가구에 포함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가구구성에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전통적인 대가족의 해체, 친족가구의 비율 감소, 핵가족 비율의 증가, 고령화로 인한 노인가구 및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구수는 증가한 반면, 가구당 평균가구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0년 총 가구수는 1,757만 가구로, 2005년에 비해 158만 가구가 증가했고, 1970년에 비해서는 가구수가 약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평균가구원수는 2.7명으로 2005년 2.88명에서 0.18명 감소했다. 평균가구원수는 1970년대 5명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2005년에는 3명 이하로 줄었다.

## 2. 가구수 현황

가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2010년 총 1,757만 가구 중 일반가구가 98.7%(1,734만 가구), 외국인 가구가 1.2%(21만 가구), 기숙사나 사회시설에 살고 있는 집단가구가 0.1%(2만 가구)를 차지한다. 일반가구는 혈연가구와, 1인 가구,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가구로 구성되는데, 2010년에는 혈연가구 73.9%, 1인 가구 23.6%, 남남끼리 사는 비혈연가구는 1.2%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 비해 일반가구는 9.1% 증가했는데, 혈연가구는 4% 증가한 반면, 1인 가구는 30.6% 증가하여 최근 1인 가구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가구구성은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는데, 혈연가구는 동지역이 74.7%로, 읍면지역 70.6%보다 높았다. 반면, 1인 가구는 동지역이 22.8%로, 읍면지역 26.8%보다 낮았다. 읍면지역에 1인 가구 비율이 동지역보다 높은 이유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해 혼자 사는 노인의 비중이 동지역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표 2-2-2 〉 가구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가구, %)

| 구 분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증감률 (%) |
|---|---|---|---|---|---|---|---|
| | 가구수 | 구성비 | 가구수 | 구성비 | 가구수 | 구성비 | |
| 전국 | | | | | | | |
| 총가구 | 14,391,374 | 100 | 15,988,274 | 100 | 17,574,067 | 100.0 | 9.9 |
| 일반가구 | 14,311,807 | 99 | 15,887,128 | 99 | 17,339,422 | 98.7 | 9.1 |
| (혈연가구) | (11,928,143) | (83) | (12,490,507) | (79) | 12,994,994 | 73.9 | 4.0 |
| (1인가구) | (2,224,433) | (16) | (3,170,675) | (20) | 4,142,165 | 23.6 | 30.6 |
| (비혈연가구) | (159,231) | (1) | (225,946) | (1) | 202,263 | 1.2 | -10.5 |
| 집단가구 | 14,417 | 0 | 16,551 | 0 | 20,727 | 0.1 | 25.2 |
| 외국인가구 | 65,150 | 1 | 84,595 | 1 | 213,918 | 1.2 | 152.9 |
| 동부 | | | | | | | |
| 총가구 | 11,290,609 | 100 | 12,826,173 | 100 | 14,224,508 | 100.0 | 10.9 |
| 일반가구 | 11,229,476 | 99 | 12,744,940 | 99 | 14,031,069 | 98.6 | 10.1 |
| (혈연가구) | (9,459,798) | (84) | (10,127,839) | (80) | 10,630,848 | 74.7 | 5.0 |
| (1인가구) | (1,642,618) | (15) | (2,439,761) | (19) | 3,244,064 | 22.8 | 33.0 |
| (비혈연가구) | (127,060) | (1) | (177,340) | (1) | 156,157 | 1.1 | -11.9 |
| 집단가구 | 9,116 | 0 | 10,413 | 1 | 12,420 | 0.1 | 19.3 |
| 외국인가구 | 52,017 | 1 | 70,820 | 1 | 181,019 | 1.3 | 155.6 |
| 읍면부 | | | | | | | |
| 총가구 | 3,100,765 | 100 | 3,162,101 | 100 | 3,349,559 | 100.0 | 5.9 |
| 일반가구 | 3,082,331 | 99 | 3,142,188 | 99 | 3,308,353 | 98.8 | 5.3 |
| (혈연가구) | (2,468,345) | (80) | (2,284,064) | (79) | 2,364,146 | 70.6 | 3.5 |
| (1인가구) | (581,815) | (19) | (730,914) | (19) | 898,101 | 26.8 | 22.9 |
| (비혈연가구) | (32,171) | (1) | (127,210) | (2) | 46,106 | 1.4 | -63.8 |
| 집단가구 | 5,301 | 0 | 6,138 | 0 | 8,307 | 0.2 | 35.3 |
| 외국인가구 | 13,133 | 0 | 13,775 | 0 | 32,899 | 1.0 | 138.8 |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가구원수별로 살펴보면 2000년에는 가장 주된 가구유형이 4인 가구(31.1%)였으나, 2010년에는 2인 가구(24.3%)가 4인 가구(22.5%)나 3인 가구(21.3%)보다 더 많았다.

가구원수 분포에도 도시와 농촌 간에 차이가 있었다. 동지역은 4인 가구가 24.0%로 가장 많았으나, 읍면지역은 2인 가구의 비중이 31.2%로 가장 높았다.

〈 표 2-2-3 〉 가구의 가구원수 현황

(단위 : 가구, %)

| 구 분 | 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전국 | | | | | | | | |
| 2010 | 17,339,422 | 4,142,165 | 4,205,052 | 3,695,765 | 3,898,039 | 1,078,444 | 241,063 | 78,894 |
| (비율) | (100.0) | (23.9) | (24.3) | (21.3) | (22.5) | (6.2) | (1.4) | (0.5) |
| 2005 | 15,887 | 3,171 | 3,521 | 3,325 | 4,289 | 1,222 | 267 | 93 |
| (비율) | (100.0) | (20.0) | (22.2) | (20.9) | (27.0) | (7.7) | (1.7) | (0.6) |
| 2000 | 14,312 | 2,225 | 2,731 | 2,988 | 4,447 | 1,443 | 345 | 135 |
| (비율) | (100.0) | (15.5) | (19.1) | (20.9) | (31.1) | (10.1) | (2.4) | (0.9) |
| 동지역 | | | | | | | | |
| 2010 | 14,031,069 | 3,244,064 | 3,153,892 | 3,119,746 | 3,373,482 | 892,371 | 189,651 | 57,863 |
| (비율) | (100.0) | (23.1) | (22.5) | (22.2) | (24.0) | (6.4) | (1.4) | (0.4) |
| 2005 | 12,744 | 2,440 | 2,558 | 2,771 | 3,703 | 1,006 | 203 | 65 |
| (비율) | (100.0) | (19.1) | (20.1) | (21.7) | (29.1) | (7.9) | (1.6) | (0.5) |
| 2000 | 11,229 | 1,643 | 1,890 | 2,420 | 3,778 | 1,159 | 252 | 89 |
| (비율) | (100.0) | (14.6) | (16.8) | (21.5) | (33.7) | (10.3) | (2.3) | (0.8) |
| 읍면지역 | | | | | | | | |
| 2010 | 3,308,353 | 898,101 | 1,051,160 | 576,019 | 524,557 | 186,073 | 51,412 | 21,031 |
| (비율) | (100.0) | (27.1) | (31.8) | (17.4) | (15.9) | (5.6) | (1.6) | (0.6) |
| 2005 | 3,142.0 | 731.0 | 962.0 | 554.0 | 586.0 | 217.0 | 6.4 | 28.0 |
| (비율) | (100.0) | (22.7) | (29.9) | (18.0) | (20.0) | (7.0) | (2.1) | (0.4) |
| 2000 | 3,082 | 582 | 841 | 568 | 669 | 284 | 93 | 46 |
| (비율) | (100.0) | (18.9) | (27.3) | (18.4) | (21.7) | (9.2) | (3.0) | (1.5) |

주 : 각 통계표의 가구는 일반가구임.

자료 : 통계청(2000, 2005, 201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3. 가구의 세대구성

2010년의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가구(일반가구 기준) 중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2세대 가구가 51.3%로 가장 많고, 1인 가구가 23.9%, 1세대 가구 17.5%, 3세대 가구 6.1%, 비혈연가구 1.2%, 4세대 이상 가구 0.1%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비해 2세대 가구 비율은 4.5%p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1세대  가구는 각각 3.9%p와 1.3%p 증가했다.

2세대 가구의 비중은 동지역이 54.2%, 읍면지역은 39.1%로 농촌지역의 2세대 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1세대 가구 비중은 동지역이 15.5%, 읍면지역이 25.6%로 읍면지역의 비중이 높았다.

읍면지역에서 1세대 가구와 1인가구의 구성비가 비교적 높은 것은 농촌의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동함에 따라 노인부부 및 노인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 표 2-2-4 〉 세대구성유형별 가구수 현황

(단위 : 천가구, %)

| 구 분 | 2000년 | | 2005년 | | 2010년 | |
|---|---|---|---|---|---|---|
| | 가구수 | 구성비 | 가구수 | 구성비 | 가구수 | 구성비 |
| 전국 | 14,312 | 100.0 | 15,887 | 100.0 | 17,339 | 100.0 |
| 1세대가구 | 2,034 | 14.2 | 2,575 | 16.2 | 3,027 | 17.5 |
| 2세대가구 | 8,696 | 60.8 | 8,807 | 55.4 | 8,892 | 51.3 |
| 3세대가구 | 1,177 | 8.2 | 1,093 | 6.9 | 1,063 | 6.1 |
| 4세대이상가구 | 22 | 0.2 | 16 | 0.1 | 13 | 0.1 |
| 1인가구 | 2,225 | 15.5 | 3,171 | 20.0 | 4,142 | 23.9 |
| 비혈연가구 | 159 | 1.1 | 226 | 1.4 | 202 | 1.2 |
| 동지역 | 11,230 | 100.0 | 12,744 | 100.0 | 14,031 | 100.0 |
| 1세대가구 | 1,352 | 12.0 | 1,793 | 14.1 | 2,182 | 15.5 |
| 2세대가구 | 7,237 | 64.5 | 7,482 | 58.7 | 7,599 | 54.2 |
| 3세대가구 | 858 | 7.6 | 842 | 6.6 | 842 | 6.0 |
| 4세대이상가구 | 13 | 0.1 | 10 | 0.1 | 9 | 0.1 |
| 1인가구 | 1,643 | 14.6 | 2,440 | 19.1 | 3,244 | 23.1 |
| 비혈연가구 | 127 | 1.1 | 177 | 1.4 | 156 | 1.1 |
| 읍면지역 | 3,083 | 100.0 | 3,142 | 100.0 | 3,308 | 100.0 |
| 1세대가구 | 682 | 22.1 | 781 | 24.9 | 846 | 25.6 |
| 2세대가구 | 1,459 | 47.3 | 1,325 | 42.2 | 1,294 | 39.1 |
| 3세대가구 | 319 | 10.4 | 250 | 8.0 | 221 | 6.7 |
| 4세대이상가구 | 9 | 0.3 | 6 | 0.2 | 4 | 0.1 |
| 1인가구 | 582 | 18.9 | 731 | 23.3 | 898 | 27.1 |
| 비혈연가구 | 32 | 1.0 | 49 | 1.5 | 46 | 1.4 |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조사보고서(이혼편). 각 년도.

# 제 3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정부는 청소년의 권리신장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확립해 나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 권리침해사례에 적극 대응하고,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전담기구로서 청소년희망센터를 개소하였다.

또한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 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청소년 친화적 교육·보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3개년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6월 'UN공공행정상(UN PSA: Public Service Awards)' 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청소년을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회구성원, 인류발전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UN이나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를 주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2년 6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186개 지역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305개 지역에서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제7회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정책의제로 선정하여 과제 발굴 및 활동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참여 활동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참여 지역사회 변화 프로그램', '전국청소년참여대회' 등 다양한 참여기구 활동을 지원하였다.

# 제 03 부 청소년 권리·참여

제1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제2장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제3장 청소년 주요 행사

제1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 1.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의 형성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비준하여 협약 당사국이 됨에 따라 요보호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정책이 권리보장 관점에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협약에 명시된 차별금지 원칙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확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도입,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설치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운영 등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었다. 또한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년)과 이를 발전적으로 계승한 제3차 청소년육성5개년기본계획(2003~2007년)을 계기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자율·참여'가 주요 정책이념으로 되는 획기적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 참여기구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이 정책에 직접 참여·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의 정비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기본생활 보장은 물론 권리·참여, 안전·보호, 교육 및 여가보장 등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장
# 청소년 권리·참여 정책

## 1. 청소년 권리증진 정책

### 가. 유엔 아동권리 협약

국제사회는 아동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1989년 11월 20일 채택하였으며, 우리나라도 1991년에 동 협약에 가입하였다. 협약에서는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국가, 사회, 가정 모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와 도움을 주며 아동의 인격발달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배려를 제공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가입 후 2년 내에 이행상황에 대한 최초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후에는 5년마다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4년과 2000년에 1차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1996년과 2003년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상황을 심의 받았다. 이후 3차 국가보고서는 2004년에 제출되어야 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자체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 형태로 2008년 12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2008년 12월 제3·4차 통합국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03년에 실시된 2차 보고서 심의에서 가정폭력처벌특별법 제정(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200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2001년) 등 아동권리의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1차 보고서 심의(1996년)에서 지적된 권고사항의 이행 미흡, 상설 아동권리조정기구의 미설립, 아동권리협약의 유보조항 철회노력 부족, 시민사회와의 협력 부족, 아동권리협약의 교육홍보 미흡 등에 대해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하여 정부는 법·제도적 개선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이행수준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권리 침해사례의 실질적 조사와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 10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를 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전문가, 법조, 의료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옴브즈퍼슨 21명과 옴브즈키드 10명을 위촉하여 아동권리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성과를 평가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아동권리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이해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동권리 교육교재 개발, 교육커리큘럼 신설, 교육인력 풀 등을 추진하고, 청소년특별회의 및 아동 총회 개최, 아동권리주간 운영 등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문제에 대응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44곳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외 2007년 민법을 개정하여 혼인 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조정하였고, 협약 비준 당시 유보하였던 부모면접교섭권에 대한 철회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2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2개의 선택의정서인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9월 24일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였다. 그리고 선택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2007년 3월 9일에 제출하고, 2008년 5월 23일 심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심의에서 현역병 지원 입대 연령을 17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병역법 개정(2004년)과 18세 미만의 아동이 무력분쟁에 참여하게 한 공군규정을 개정(2005년)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해외 평화유지 인력과 망명·난민아동 관련 집단에 대한 협약 홍보 및 교육, 소형무기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 등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 의정서' 심의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개정, 혼인가능연령을 18세로 높인 민법 개정, 청소년 유해환경 종합대책 추진, 아동권리 모니터링센터의 설립 등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체계적인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선택 의정서의 조항과 국내 법률의 조화를 위한 조치, 경찰·검사·판사·의료진 등 전문가 집단에 대한 권리교육 교재 및 과정 개발, 입양허가제 유보조항 철회 및 헤이그협약 비준, 아동상담전화 통합 등을 권고하였다.

2008년 12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관계부처와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아동관련학계 및 단체, 전문가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통해 내용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있을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는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 및 협약 전반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 상황과 그간의 노력을 평가 받고, 향후 아동·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앞으로 이 같은 국가보고서는 다양한 매체에 공개하여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나.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

### (1) 추진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제비교 자료를 보면 한국 아동·청소년의 권리수준은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주로 보호와 통제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가정, 학교 및 근로 현장 등에서 권리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지원기관이 미흡한 실정이고, 권리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2008년 7월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 권리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였으며, 2011년 5월 중앙차원의 청소년 권리보호 전담기구로서 청소년 희망센터를 개소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증진 및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모니터링, 권리교육, 교육,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2) 주요기능

청소년 희망센터는 청소년 권리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 사업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의 권리상황을 자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청소년 권리모니터링 활동,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권리증진 교육, UN아동권리협약과 관련하여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의 권리증진과 관련한 기획과제 발굴 및 토론회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청소년권리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청소년 권리증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청소년 희망센터가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 권리 관련 학계, 기관·단체, 실무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획과제에 대한 정기적 논의, 운영 계획 검토 등 정기적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다.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1) 추진배경 및 목적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권익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권리교육 프로그램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03년)에서는 '교사, 사회 활동가, 법관 등 아동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인격권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여, 맞춤형 권리교육 교재 개발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교육·보육·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교육대상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권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2) 맞춤형 권리교재 개발 3개년 추진 기본계획 수립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하며, 권리 관련 지식·태도·행동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맞춤형 권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3개년(2008~2010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1차년도(2008년)에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Text) 기반의 기본교재를 개발하고, 2차년도(2009년)에는 개발된 교재를 활용한 맞춤형 권리교육 실시 및 1차년도에 개발한 기본교재를 토대로 웹(Web)기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3차년도(2010년)에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시범교육을 실시하였다.

### (3) 주요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2008년 7월, 공통, 초등교사(초등학생), 복지시설 종사자 및 보육교사 대상의 교재 개발을 위해 민·관 공동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교육대상과 내용별로 공통분과, 아동분과, 보육분과, 복지분과로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교재를 개발하였다.

공통교재는 아동·복지·보육 교재의 기초 교재로서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과 각 조항에 대한 이해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며, 권리의 개념, 역사, 국내외적인권기준 및 다양한 교수기법 등을 담은 이론서와 비차별, 비폭력, 건강, 보호 및 학대 방지 등 포괄적 아동권리에 대해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방법 등을 담은 실용서로 개발되었다.

초등교사(초등학생)용 교재는 아동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권리문화의 기반이 되는 태도 형성에 중점을 둔 아동용과, 아동용 교재의 구체적 활용 및 교수 방법을 담은 가이드용(교사용)으로 구분·개발되었다.

또한, 보육교사용 교재는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를 위해 효과적인 양육방법, 국내·외 인권기준, 양육상황별 상담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이론서와 현장에서 실천·적용할 수 있는 사례 및 활동지침을 포함하는 실용서로 개발되었고, 복지시설 종사자용 교재는 아동양육기관, 그룹홈, 쉼터 등의 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해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아동·청소년을 체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양육·지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담은 이론서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포함한 실용서로 개발되었다.

각 분과별로 개발된 교재는 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보급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맞춤형권리 청소년인권교육을 2월, 4월, 9월에 걸쳐 아동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의 기초, 아동권리협약의 이해, 시설의 아동권리증진,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권리 테마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2010년에는 청소년의 시민권 강화와 권리의식 제고, 청소년 지도자의 권리 친화적인 교육·지도 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대상 맞춤형 권리교재(3종)」를 개발하였다.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권리 교육이 아닌 권리에 대한 가치관, 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는 내용이면서, 현장에서 곧바로 적용·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교재 개발을 위해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가로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집필하였다.

중·고생 대상 교재인 청소년용은 청소년의 권리 의식 함양을 위한 핵심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으며, 청소년 교육용은 워크시트 등을 수록하여 청소년 지도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가이드용 매뉴얼로 개발하였다. 또한, 청소년지도자용은 청소년 시설·단체 등에 종사하는 지도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권리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개발된 교재를 활용하여 2010년에는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 632명을 대상으로 시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년 지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 2. 청소년 참여 활성화 정책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청소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체계화하고, 청소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온라인 매체 활용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방면에서 청소년의 시민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화하고자 노력해왔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장래 민주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을 확립해 나가는 한편, 「청소년에 관한 UN총회 특별세션」과 「UN 세계청소년포럼」 그리고 「UN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채택한 리스본 선언 등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사회참여의 가치를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한국형 '청소년참여기구'를 운영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2012년 6월 뉴욕에서 각 정부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을 홍보하고 격려하고자 UN에서 시상하고 있는 '공공행정상(UN 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 참여부문에서 한국의 청소년참여기구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 인해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추진하는 등의 획기적인 전략과 방법으로 청소년의 권익증진 및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 점 등의 정책적 우수성을 UN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정책이 체계화·활성화 되는 가운데, 기관·단체·학계 등 현장의

지지와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청소년정책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 그림 3-2-1 ] 사진 : UN공공행정상 수상(2012년 6월 25일)



여성신문

##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

### 유엔 공공행정상 '정책결정 참여' 부문 수상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이 세계에서우수성을인정받았다. 여성가족부는대한민국청소년정책이유엔에서 주관하는 유엔공공행정상(PSA: Public Service Awards) 정책결정참여부문수상자로최종선정됐다고8일밝혔다. 이번수상은전세계정부기관및공공기관에서응모한 134개 중 세계 각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유엔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의심사를거쳐최종결정됐다.

여성가족부의 유엔공공행정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법무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상을 받았지만 정책결정참여 부문 수상은 여성가족부가최초다.

청소년 정책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청소년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을 거쳐 2010년 여성가족부로이관되며많은변화를겪어왔다. 이관 이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전부개정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안전망(CYS-Net) 확대 및 위기 청소년 발견체계 강화로 보다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구축했다. 특히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정책지역토론회등을통해 청소년을 정책 과정에 직접

공공행정 국제적 최고 권위의 상 수상 통보
(5월 8일. MBC, 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보도)

## 가. 청소년참여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정부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정책의 형성·집행·평가 과정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구현하고 청소년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에 '청소년의 정책참여 기회 확대' 분야의 세부사업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었다. 동 계획에 따라 1998년 11월 문화관광부 내에 '청소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2012년 2월 '청소년참여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있던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근거법령을 청소년기본법으로 이관하였다. 청소년기본법으로의 이관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이 복지의 차원이 아닌, 모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써의 청소년자치권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고, '청소년기본법'의 법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운영주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정기·임시 회의를 통한 청소년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 청소년 의견제안과 정책자문, 각종 토론회·워크숍 개최 및 리더십 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은 개인적으로 청소년 자신의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 (2) 운영 및 활동 현황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여성가족부,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총 186개(2012년 6월 30일 현재)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별 운영규모는 10~30명이며,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선발된 약 3,700여명의 청소년이 활동 중에 있다.

2012년 현재 운영예산으로 16개 시·도에는 매년 10백만원(국비 5백만원, 지방비 5백만원), 시·군·구에는 3백만원(국비 1.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표 3-2-1 〉 2012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 계 | 여성가족부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186 | 1 | 6 | 3 | 2 | 10 | 2 | 2 | 6 | 32 | 19 | 5 | 16 | 15 | 23 | 23 | 20 | 1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나. 청소년운영위원회

### (1) 목적 및 기능

전국의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의 사업,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998년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의 정책기조가 청소년의 자율·참여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2000년대 초반 서울시 노원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 중랑청소년수련관의 '21세기 청소년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설치되었으며, 이후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급속도로 설치가 확대되었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의견과 욕구를 반영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심의·평가 등을 통해 시설 운영전반에 참여함은 물론 프로그램의 직접 기획·운영, 청소년 대표로서 각종 지역사회 청소년관련 행사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2) 현황 및 운영

청소년운영위원회는 10인에서 20인 이내의 청소년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4조). 2010년 12월 기준, 전국 16개 시·도의 338개 생활권 수련시설 중 305개의 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전국 약 4,100여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비해 활동이 활발한 편이다. 이는 전담 지도자 배치나 시설 내 전용공간 확보 등 활동인프라가 청소년참여위원회보다 양호하다는 이유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 의욕과 청소년 의견에 대한 반영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2012년 현재 운영예산은 운영위원회별 매년 2백만원(국비 1백만원, 지방비 1백만원)을 기준으로 지역 및 시설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지원하고 있다.

〈 표 3-2-2 〉 2012년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단위 : 개)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305 | 44 | 14 | 9 | 12 | 6 | 10 | 7 | 62 | 32 | 15 | 14 | 16 | 14 | 13 | 15 | 22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다. 청소년특별회의

### (1) 목적 및 기능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여성가족부 및 16개 시·도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토론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여 정책화하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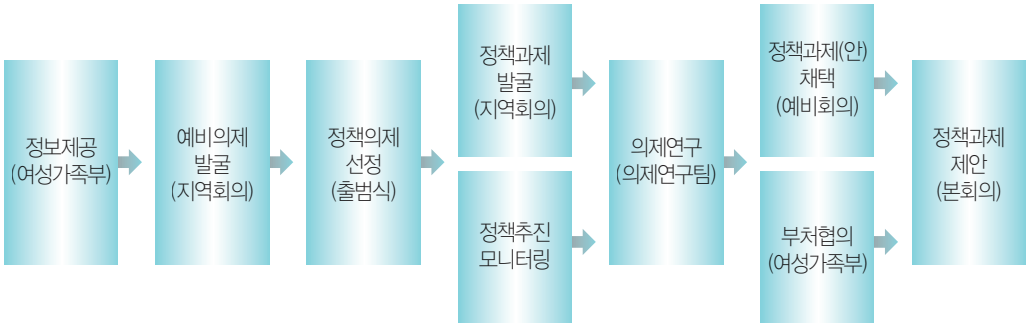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청소년기본법에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자치단체 또는 청소년시설 중심의 지역 규모의 참여기구인데 반해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들이 동일한 정책의제로 함께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참여기구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의 청소년 대표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활동, 복지, 보호를 위해 선정한 지역 예비의제를 바탕으로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을 통해 당해 연도 최종 정책의제를 선정한다.

선정된 정책의제에 따라 지역별로 청소년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토론, 워크숍,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의제연구를 통해 세부정책과제를 선정한 후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적으로 정부에

보고·제안한다.

[ 그림 3-2-2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선정 및 정책과제 제안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현황 및 운영

2011년에는 청소년 376명, 전문가 79명 등 총 455명이 참여하여 5~10월까지 여성가족부 및 16개 지역 회의별 논의 활동을 거쳐 선정된 3개 부문 41개의 세부정책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하였다. 제안된 정책과제들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최근 6년간 제안된 198건의 정책과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86.4%인 171건의 정책과제가 정부 청소년정책에 반영되어 이행 중에 있다.

〈 표 3-2-3 〉 연도별 청소년특별회의의 정책의제 및 정책과제 제안 현황

| 연도 | 의 제 | 수용률 |
|---|---|---|
| 2004 (시범) | ● 청소년 인권·참여(13개 과제)<br>–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 |
| 2005 |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br>–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 88.6% |
| 2006 | ● 청소년 성장의 사회지원망 조성(37개 과제)<br>–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 89.2% |
| 2007 |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제안(18개 과제)<br>–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 83.3% |
| 2008 |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br>–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 82.9% |
| 2009 |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br>–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 70.0% |
| 2010 |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br>–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 92.4% |
| 2011 |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br>–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 87.8%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특히, 청소년특별회의는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SNS 청소년특별회의 페이지(www.facebook.com/withyouth)를 개설·운영, 온라인 토론방(daum 카페) 개설 등을 통하여 청소년정책의 수요자이자 중심인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10~20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라.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프로그램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실천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동 사업은 주로 참여기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전, 기초 질서 지키기,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활동을 제안받고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한다.

2010년 공모를 통해 청소년관련 기관을 지원하던 '참여공모프로그램'과 통합하여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도별 20개 내외 팀을 지원하던 규모를 확대하여 2011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74개팀의 활동을 지원하였고, 2012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60개 팀이 사업비를 지원받아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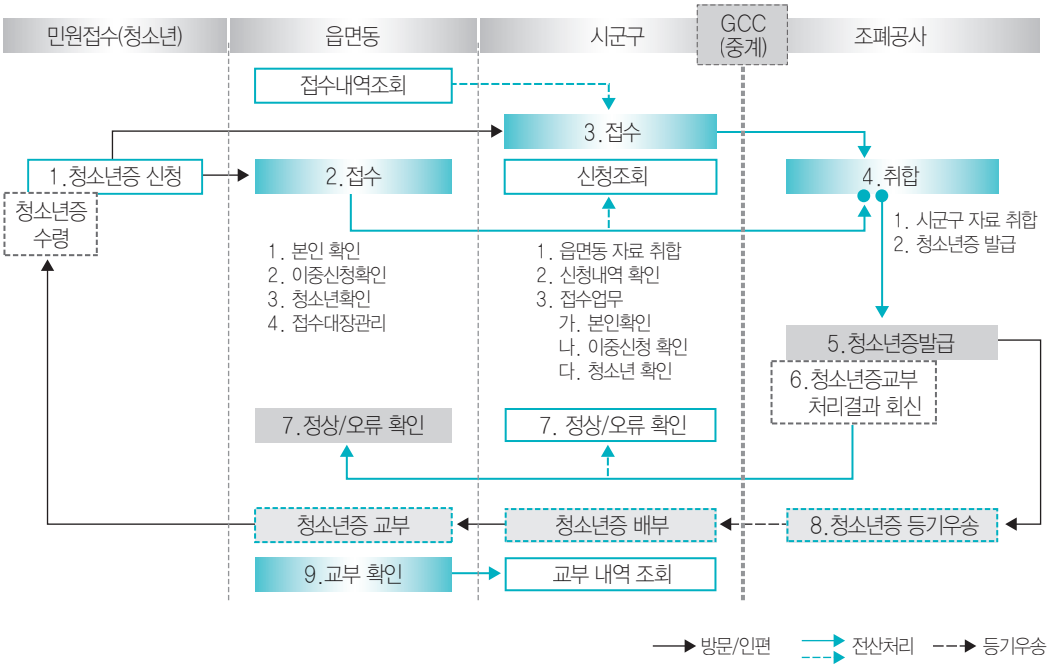
## 마. 청소년증 발급 현황

청소년증은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과 함께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의 할인 혜택을 학생, 비학생간 차별없이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편의 및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2004년에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청소년 우대 및 청소년증 발급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에게 시·군·구청장이 발급한다. 청소년증 발급 희망 청소년이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 보유)와 함께 사진 1매(반명함판)를 주민등록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기간은 14일이다. 2008년에는 이용 청소년의 편의 증진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진행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접수 및 배송 직후에 발급 진행 상황을 SMS로 안내해 주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재발급 신청방법을 개선하여 청소년증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신청기관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편의를 증대하였다.

청소년증을 소지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또는 일부 할인받을 수 있으며 기타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증은 위의 경제적인 혜택 외에도 예금통장 개설 등 금융거래를 위한 실명확인증표(기획재정부 협조), 대학입시·검정고시·각종 경시대회에서 신분증으로 활용(교육과학기술부 협조)이 가능하다.

[ 그림 3-2-3 ] 청소년증 발급 과정 절차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표 3-2-4 〉 청소년 할인혜택 현황

**※ 할인혜택 현황**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50%
- 미술관 : 30~50%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 박물관 : 면제~50%내외
- 공 원 : 면제~50% 내외
- 유원지 : 30~50%내외

※ 상기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증의 연도별 발급 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3-2-5 〉 연도별 청소년증 발급 현황

(단위 : 건)

| 구 분 | 2003 (시범)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515 | 11,848 | 14,120 | 12,478 | 24,455 | 30,265 | 33,656 | 36,263 | 40,908 |
| 서울 | 436 | 1,515 | 1,781 | 4,355 | 6,975 | 8,251 | 8,480 | 8,954 | 9,969 |
| 부산 | – | 381 | 672 | 971 | 1,724 | 2,198 | 2,492 | 2,401 | 2,866 |
| 대구 | – | 181 | 214 | 580 | 1,754 | 1,905 | 2,212 | 2,072 | 2,298 |
| 인천 | – | 751 | 353 | 640 | 1,676 | 2,464 | 2,216 | 2,527 | 2,650 |
| 광주 | – | 282 | 61 | 110 | 318 | 416 | 509 | 576 | 811 |
| 대전 | 66 | 103 | 287 | 304 | 607 | 853 | 917 | 945 | 884 |
| 울산 | – | 86 | 105 | 220 | 640 | 844 | 897 | 952 | 1,060 |
| 경기 | – | 4,381 | 1,966 | 2,894 | 6,243 | 7,477 | 8,863 | 9,897 | 11,023 |
| 강원 | 13 | 148 | 85 | 341 | 428 | 566 | 835 | 908 | 1,071 |
| 충북 | – | 648 | 995 | 350 | 479 | 614 | 845 | 913 | 1,131 |
| 충남 | – | 311 | 4,275 | 368 | 855 | 720 | 765 | 889 | 1,204 |
| 전북 | – | 1,266 | 450 | 164 | 498 | 1,027 | 1,066 | 1,226 | 1,436 |
| 전남 | – | 244 | 175 | 141 | 390 | 499 | 616 | 625 | 721 |
| 경북 | – | 521 | 1,597 | 486 | 810 | 1,048 | 1,229 | 1,369 | 1,447 |
| 경남 | – | 983 | 677 | 418 | 893 | 1,165 | 1,440 | 1,738 | 2,014 |
| 제주 | – | 47 | 427 | 136 | 165 | 218 | 274 | 271 | 323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제3장
# 청소년 주요 행사

## 1. 청소년의 달 행사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으며(청소년기본법 제16조),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청소년의 달 주제와 관련된 행사를 5월 중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월 한달 동안 전국 일원에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청소년의 달 기념식,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다양한 문화·예술체험 행사 및 성년의 날 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기념식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에 기여한 청소년과 청소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유공자를 발굴·시상하고 있다.

〈 표 3-3-1 〉 청소년 유공자 포상 현황

(단위 : 명)

| 행사별 | 계 | 훈장 |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장관표창 |
|---|---|---|---|---|---|---|
| 청소년의 달 기념식 | 185 | 2 | 3 | 7 | 16 | 157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청소년의 달

2012년 청소년의 달은 5월 한달 간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전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12년 청소년의 달 기념식은 청소년의 달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정부의 청소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청소년, 청소년 단체·기관, 유공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등

관계자 75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기념식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이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정책을 소개하는 식전 행사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담은 주제영상 상영, 청소년 보호와 육성에 이바지한 유공자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청소년과 나눔의 삶'을 주제로 청소년과 평소 나눔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유명 연예인과 소통의 장이 별도로 마련되어 호응을 얻었다.

또한 기념식을 기념하여 청소년 관계자와 함께 청소년정책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청소년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관의 협력과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 표 3-3-2 〉 청소년 주간 주요 행사내용

| 행사명 | 일시 및 장소 | 주요 내용 |
|---|---|---|
| 청소년 관련 기관장 간담회 | 2012. 5. 2(수) 백범김구기념관 | –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추진 보고<br>–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성있는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등 논의 (40여명 참석) |
| 청소년의 달 기념식 | | – 식전 행사<br>* 청소년정책 소개 갤러리<br>* 청소년 사랑의 온도 높이기<br>– 축하메시지 영상<br>– 주제영상<br>– 청소년 육성 및 보호유공자 시상<br>– '청소년 찬가' 발표(홍보대사 이민호, 김유정)<br>– 사랑과 나눔의 토크(청소년과 나눔의 삶)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중앙행정기관 외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청소년단체 등에서도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제고와 더불어 미래 청소년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 나.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청소년의 달을 맞아 개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대상 박람회로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방향을 모색하는 국내 유일의 범 청소년 축제의 장이다. 2012년에 개최한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후 첫 번째로 진행된 박람회로 청소년을 위한 체험·참여문화 정착의 기반이 되었다.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라는 주제로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서울무역전시관

(SETEC) 일대에서 열린 박람회는 청소년, 청소년 지도자, 학부모 등에게 다양한 체험과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숨은 재능과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나라사랑 토크콘서트, 청소년공연동아리 오디션, 나눔 바자회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주제별 부스를 선정하여 청소년의 참여와 체험, 소통을 위한 공간(242개 부스, 테마버스 10개)을 마련,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공유, 창출, 확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는 역대 최다 규모의 관람객인 152천명을 기록하고, 부스참여단체가 128개 단체로 늘었으며, 중앙부처 후원에서도 12개 기관이 동참하여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위한 대표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한 나눔바자회의 수익금을 불우 청소년을 위한 시설에 전달하고, 쉼터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도 같이 참여하는 등 청소년들과의 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혀 나눔바자회의 의미를 더했다.

2005년부터 개최된 박람회는 2008년부터 행사 장소를 서울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전국단위의 행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광주, 2009년에는 대구, 2010년에는 부산, 2011년에는 대전,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 표 3-3-3 〉 박람회 행사개요 및 구성

<table>
<tr><td>일시</td><td colspan="4">2012년 5월 24일(목) ~ 5월 26일(토), 3일간</td></tr>
<tr><td>장소</td><td colspan="4">서울무역전시관(SETEC) 1, 2, 3관 및 야외광장</td></tr>
<tr><td>인원</td><td colspan="4">152,000여명</td></tr>
<tr><td>주최</td><td colspan="4">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td></tr>
<tr><td>주관</td><td colspan="4">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서울특별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td></tr>
<tr><td>후원</td><td colspan="4">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지식경제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td></tr>
<tr><td rowspan="13">행사<br>구성</td><td>전시관</td><td>명칭</td><td>규모</td><td>세부내용</td></tr>
<tr><td rowspan="4">1전시관</td><td rowspan="4">진로존</td><td rowspan="4">55개 기관<br>101개 부스</td><td>주제관(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td></tr>
<tr><td>진로체험(미래직업, 창업동아리 등) 및 진로상담</td></tr>
<tr><td>유관기관(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td></tr>
<tr><td>글로벌문화체험, 다문화소개</td></tr>
<tr><td rowspan="2">2전시관</td><td rowspan="2">창의존</td><td>메인무대</td><td>개/폐막식, 청소년공연, 토크콘서트</td></tr>
<tr><td>창의아트페어</td><td>미디어 아트 워크숍 및 설치 퍼포먼스<br>(1개기관 20개부스)</td></tr>
<tr><td rowspan="3">3전시관</td><td rowspan="3">참여존</td><td rowspan="3">72개 기관<br>121개 부스</td><td>청소년체험프로그램(청소년단체, 수련관, 문화의집 등</td></tr>
<tr><td>청소년동아리활동체험(청소년동아리)</td></tr>
<tr><td>우주과학체험(국립고흥우주체험센터)</td></tr>
<tr><td>야 외</td><td>나눔존</td><td>야외 이벤트</td><td>나눔바자회, 테마버스, 청소년동아리공연</td></tr>
<tr><td>세미나실</td><td>소통존</td><td>100석</td><td>청소년활동관련 세미나 및 토론회, 워크숍</td></tr>
</table>

〈 표 3-3-4 〉 역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현황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제8회 |
|---|---|---|---|---|---|---|---|---|
| 기간 | 2005. 5.21~5.22 | 2006. 5.19~5.21 | 2007. 6.1~6.3 | 2008. 5.29~6.1 | 2009. 5.28~5.31 | 2010. 5.27~5.31 | 2011. 5.26~5.28 | 2012. 5.24~5.26 |
| 장소 |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 서울무역 전시장 (서울) | 코엑스 컨벤션홀 (서울) |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 EXCO 전시컨벤션 센터 (대구) | 부산 BEXCO (부산) | 대전 컨벤션센터 (대전) | SETEC (서울) |
| 주제 | 청소년,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는 | 대한민국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 청소년 미래비전 | 희망/기회/ 성취의 빛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디자인하다 | 청소년의 꿈을 찾아!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아! | 웃어라, 청소년! 빛나라, 내일아! |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함께 만들어요 |
| 주최 | 청소년 위원회 | 국가청소년 위원회 | 국가청소년 위원회 | 보건복지 가족부, 광주광역시 | 보건복지 가족부 대구광역시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부 대전광역시 | 여성가족부 서울특별시 |
| 주관 |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 한국청소년단 체협의회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 진흥센터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 후원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 교육인적 자원부, 한국청소년 수련원, 한국청소년 개발원 등 | 산업자원부, 노동부, KTF, LG전자, 내셔널 지오그래픽, 알파 |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 안전청 | 교육과학 기술부, 노동부 | 교육과학 기술부, 문화체육 관광부, 부산교육청 |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지식경제부 | 교육과학 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 관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법제처, 특허청, 식품의약품 안전청 |
| 인원 | 12,000여명 | 40,000여명 | 40,000여명 | 80,000여명 | 100,000여명 | 150,000여명 | 146,000여명 | 152,000여명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다. 성년의 날

성년식은 만 19세와 20세를 맞는 청소년에게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짊어질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부여하기 위한 행사이다. 과거 전통사회에서 성인이 되는 의식인 성년례는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리는 관례(冠禮)를, 그리고 여자는 쪽을 지어 비녀를 꽂는 계례(笄禮)라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하지만 현대의 성인식은 관례나 계례와 같은 전통의식이 없어지고 대신 1973년에 제정되어 만 20세가 되는 해에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성년의 날'(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3400호)로 정하여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성년을 맞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2년에는 5월 21일 성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기념식은 성년 청소년(1992년생)을 대상으로 성년다짐문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들이 참석하여 그 의미를 더했으며, 성년다짐 공모전 우수자 시상식과 성년에게 주는 메시지 낭독, 성년다짐 발표 그리고 저명인사의 특강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금년 성년의 날 기념식에서는 참가자들이 각자 작성한 성년다짐문을 슬로우레터로 부치는 행사를 통해 1년 뒤에 성년다짐문에 포함된 자신의 미래 계획에 대하여 향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청소년지도자대회

'청소년지도자대회'는 청소년정책 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이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정보 및 인식을 공유하고, '상호교류와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005년 처음 실시 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정부조직이 개편되면서 기관 통합으로 행사명을 "청소년지도자대회"에서 아동지도자들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지도자대회"로 통합 개최하였으나, 2010년 여성가족부로 '청소년' 업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청소년지도자대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추진 중에 있다. 2011년 9월에는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청소년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안에 대한 토론회,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고, 특히, 공모를 통하여 청소년지도자대회 CI를 제작·선포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2012년에는 '날다! 청소년지도자(Finding Laugh for Youth!)'를 슬로건으로 선정, 9월에 개최하였다.

〈 표 3-3-5 〉 역대 청소년지도자대회 현황

| 구분 | 제1회 | 제2회 | 제3회 | 제4회 | 제5회 | 제6회 | 제7회 |
|---|---|---|---|---|---|---|---|
| 기간 | 2005. 9.26~27 | 2006. 12.8~9 | 2007. 9.16~17 | 2008. 12.19~20 | 2009. 8.28~29 | 2010.10.19 | 2011.9.27 |
| 장소 | 올림픽 파크텔 |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 올림픽 파크텔 | 국립중앙 청소년수련원 |
| 주관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한국청소년 단체협의회 | 청소년단체 협의회(한국 청소년수련 시설협회 등 4개 협의기구 공동주관) |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공동주관 | 아동단체협의회, 아동복지협회,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공동주관 |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 청소년상담원 공동주관 | 청소년단체 협의회,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활동 진흥원, 한국 청소년상담원 공동주관 |
| 참여 인원 | 1,000여명 | 729명 | 1,500명 | 1,000여명 | 745명 | 2,000여명 | 1,000명 |
| 주제 | 청소년 지도자의 삶과 도전 그리고 희망 | 청소년지도자! 희망을 이끄는 사람들 | 꿈과 희망을 여는 사람들, 우리는 청소년지도자! | 아동·청소년 지도자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 꿈 + 미래, "행복 공감 지도자대회" | 만남+소통+ 공감= 청소년 지도자의 행복 | 청소년의 꿈! 지도자의 열정! 희망찬 대한민국! |
| 주요 프로그램 | 기념식, 위원장과 대화, 콜로키움, 청소년 지도자의 밤 등 | 개회식, 배워봅시다, 청소년지도자의 밤 및 교류회, 한마음 체육대회 | 청소년 지도자의 날 전야제, 교류회, 청소년지도자 체육대회 | 소통의 장, 만남의 장, 화합의 장, 도약의 장 | 주제발표 및 토론, 아동 청소년서비스 및 프로그램 발전방안, 기념식, 우수 운영사례 경진대회, 단합대회 | 창의적체험활동 사례발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 수정·보완 소개, 기념식, 올해의 지도자상 수상, 결의문 낭독 등 | 청소년정책 방향 주제강연, 기념식(지도자 비전선언, 지도자의 다짐 , 지도자 CI선포), 현안토론 등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3. 푸른성장대상(大賞)

여성가족부는 사회 각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개인 혹은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격려함으로써 그 공적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푸른성장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2012년 제8회 푸른성장대상」의 주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선정되었으며, 장기간 공헌한 후보자 발굴을 위해 개인 및 단체의 경우 5년, 청소년 및 동아리의 경우 2년의 수공기간을 제한하였다.

추천 대상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현저한 업적 또는 공적을 5년

이상 쌓은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으며, 청소년 부문 역시 추천 주제에 대한 2년 이상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한 청소년 개인 및 동아리이면 누구나 추천 가능하다. 개인 수상자는 10백만원, 단체 수상자는 10백만원을 수여받게 되고, 청소년 부문의 개인 수상자는 5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동아리 수상자는 1백만원을 수여받게 된다.

수상 후보자 추천은 후보자 추천기회를 확대하고 숨은 후보자를 발굴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청소년 분야의 활동이 있는 기관 및 단체 혹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 표 3-3-6 〉 푸른성장대상 역대시상식 현황

| 구분 |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주최 | |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 보건복지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 여성가족부, 문화방송, 중앙일보 |
| 주관 | |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푸른성장대상 위원회 |
| 시상 부문 | |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참여 · 인권) | 5개 부문 (활동, 복지, 정책, 학술, 미디어) | 4개 부문 (활동, 복지, 보호, 청소년) | – | – |
| 상금 | | 개인 2명 각 10백만원, 2개 단체 각 20백만원 | 4개 부문 각 10백만원 | 개인 1명10백만원, 2개 단체 각 15백만원, 7개 동아리 각 1백만원, 청소년 1명 (20만원)상품권 | 개인 10백만원, 단체 15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 개인 10백만원, 단체 10백만원, 청소년 상품권 (50만원), 동아리 1백만원 |
| 위원장 | | 이한동 (대한민국약속재단 총재) | 박완서 (서울대 명예문학 박사) |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유인촌 (극단 유 시어터 대표) | 최불암 (어린이재단 전국후원회 회장) |
| 시상식 | 일자 | 12.26(금) 16:00 | 11.30(월) 16:00 | 12.3(금) 15:00 | 11.25(금) 15:00 | 11.16(금) 14:00 |
|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 | MBC 여의도 공개홀 | MBC 여의도 공개홀 | MBC 여의도 공개홀 |
| | 참석수 | 250여명 | 250여명 | 250여명 | 250여명 | 250여명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제4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청소년활동 지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청소년들의 여가시간과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 외에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제도적 틀이 형성되었으며 2011년 12월 말까지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2,649,290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8.3%(205,082명)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교류활동은 해외 청소년과의 교류를 통해 국제적인 역량을 증진시키는 정책으로서 청소년 국제교류를 통하여 2011년에는 22개국과 총 647명의 교류를 시행하였고 이 외에도 각종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이 추천되고 있다. 또한 국제 청소년단체와 국내 청소년단체의 교류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국제교류·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 제 04 부 청소년 활동

제1장 청소년활동 지원

제2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제1장

# 청소년활동 지원

## 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인적·물적 제반자원의 경제적인 활용 방향을 확립하여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직업준비,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잠재역량을 개발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 평가 및 환류과정을 통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컨설팅 및 평가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최우수 기관으로는 관악청소년회관 등 10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는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등 10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표 4-1-1 〉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 활동영역 | 지원수 | 지원금액 |
|---|---|---|
| ① 문화·예술·미디어 | 22 | 395,000 |
| ② 과학·환경 | 8 | 137,000 |
| ③ 봉사 | 10 | 176,000 |
| ④ 진로 | 13 | 193,000 |
| ⑤ 가족 | 5 | 88,000 |
| ⑥ 나라사랑 | 10 | 152,000 |
| 합 계 | 68 | 1,141,0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2. 청소년문화활동

청소년 문화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라 청소년이 예술활동·스포츠활동·동아리활동·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적 감수성 증진을 통하여 입시위주의 환경 속에서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추진되고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청소년들이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청소년 건전문화를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청소년문화활동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사업과 청소년문화존 운영을 들 수 있다.

### 가. 청소년동아리활동

청소년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취미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특기·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자율적 활동이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시설 및 각급 학교(초·중·고·대학교)의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근 청소년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우수청소년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2,000개의 청소년동아리를 선정·지원하였다.

〈 표 4-1-2 〉 전국 청소년 동아리 지원 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분 | 동아리 지원수 | 동아리지원금액 | |
|---|---|---|---|
| | | 국고 | 지방비 |
| 서 울 | 412 | 164,800 | 247,200 |
| 부 산 | 152 | 60,800 | 91,200 |
| 대 구 | 110 | 44,000 | 66,000 |
| 인 천 | 112 | 44,800 | 67,200 |
| 광 주 | 68 | 27,200 | 40,800 |
| 대 전 | 68 | 27,200 | 40,800 |
| 울 산 | 46 | 18,400 | 27,600 |
| 경 기 | 440 | 176,000 | 264,000 |
| 강 원 | 60 | 24,000 | 36,000 |
| 전 북 | 74 | 29,600 | 44,400 |
| 전 남 | 68 | 27,200 | 40,800 |
| 충 북 | 62 | 24,800 | 37,200 |
| 충 남 | 78 | 31,200 | 46,800 |
| 경 북 | 104 | 41,600 | 62,400 |
| 경 남 | 124 | 49,600 | 74,400 |
| 제 주 | 22 | 8,800 | 13,200 |
| 합 계 | 2,000 | 800,000 | 1,200,0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청소년문화존

청소년문화존은 주5일 수업제의 확대 실시와 청소년이 생활권 주변에서 문화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놀이 체험의 장으로서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진행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표현의 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 눈높이에서 청소년들의 욕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문화존은 중앙과 지방에서 40:60 매칭펀드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되며, 2004년 및 2005년에는 8개 광역시·도에서 운영되었고, 2006년부터 11개 시·도로 확대되고 시범사업으로 5개 시·도를 지

정하여 총사업비 36억원 규모(2007년)로 운영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청소년문화축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로 특성화된 대한민국 10대 청소년문화축제를 운영하였다.

2009, 2010년도에는 16개 대표 문화존과 9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으며, 2011년도에도 16개 대표 문화존과 110개 시·군·구 문화존이 운영·지원되었다.

〈 표 4-1-3 〉 전국 시·도별 청소년문화존 지원현황

(단위 : 개, 천원)

| 구분 | 계 (국고보조액) | 대표문화존 | | 시군구 문화존 | |
|---|---|---|---|---|---|
| | | 개수 | 금액 | 개수 | 금액 |
| 계 | 3,200,000 | 16 | 640,000 | 110 | 1,760,000 |
| 서울 | 380,800 | 1 | 40,000 | 11 | 176,000 |
| 부산 | 196,800 | 1 | 40,000 | 6 | 96,000 |
| 대구 | 196,000 | 1 | 40,000 | 7 | 112,000 |
| 인천 | 148,800 | 1 | 40,000 | 4 | 64,000 |
| 광주 | 147,200 | 1 | 40,000 | 5 | 80,000 |
| 대전 | 131,200 | 1 | 40,000 | 4 | 64,000 |
| 울산 | 90,400 | 1 | 40,000 | 2 | 32,000 |
| 경기 | 536,000 | 1 | 40,000 | 20 | 320,000 |
| 강원 | 160,000 | 1 | 40,000 | 6 | 96,000 |
| 충북 | 160,800 | 1 | 40,000 | 6 | 96,000 |
| 충남 | 183,200 | 1 | 40,000 | 7 | 112,000 |
| 전북 | 165,600 | 1 | 40,000 | 6 | 96,000 |
| 전남 | 163,200 | 1 | 40,000 | 6 | 96,000 |
| 경북 | 209,600 | 1 | 40,000 | 8 | 128,000 |
| 경남 | 265,600 | 1 | 40,000 | 11 | 176,000 |
| 제주 | 64,800 | 1 | 40,000 | 1 | 16,0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 가. 추진배경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내지 제38조에 따라 2006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고, 인증된 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인증제도이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글로벌·다문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청소년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주5일제 수업 시행 등으로 늘어나는 여가시간과 청소년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청소년들의 사회문화적 역량을 개발·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기반 확립과 학교교육과 연계한 활동 지원 확대의 요구에 대한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04년 2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특징은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사전인증으로 양질의 활동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욕구가 반영된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유용성, 공공성, 안정성을 강조하며, 인증받은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기계발과 진로탐색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나. 인증제 추진 현황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2006년 3월에 시작하였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위원회 15인을 위촉하고 인증심사원 192명을 선발·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력풀을 구성하고, 5월 인증접수를 시작으로 79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다.

2007년에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인증제도 운영에 반영하여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절차의 간소화, 국제청소년활동 인증기준 개발,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업무의 효율적 연계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354건의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하였으며, 인증받은 활동의 효과성 측정을 위한 연구기획과 만족도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심사원 91명을 추가 선발하여 283명의 인증심사원 인력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인증심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인증제도 홍보와 인증수련활동 사후관리 등을 위해 학부모 참관단 32명을 시범·운영하였다.

〈 표 4-1-4 〉 인증수련활동 영역별 분류

| 영역 | 영역별 활동 예시(안) |
|---|---|
| 건강·보건활동 | 신체단련활동, 약물예방활동, 흡연·음주·약물·비만 예방활동, 안전·응급처치활동, 성교육활동 |
| 과학정보활동 | 모형 및 로봇활동, 인터넷활동, 우주천체활동, 정보캠프활동, 영상매체활동 등 |
| 교류활동 |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도농간 청소년교류활동, 국제이해활동, 다문화이해활동, 세계문화비교활동, 한민족청소년캠프 등 |
| 모험개척활동 | 탐사·등반활동, 야영활동, 해양활동, 오지탐사활동, 극기훈련활동, 호연지기활동, 수상훈련활동, 한국의 산수 탐사활동, 안전지킴이활동 등 |
| 문화예술활동 | 지역문화, 세계문화, 대중문화, 역사연극활동, 어울마당, 전통예술활동 등 |
| 봉사활동 |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활동, 캠페인활동, 자선·구호활동, 지역사회개발 및 참여 활동 등 |
| 직업체험활동 | 청소년모의창업, 경제캠프, 사회생활기술, 진로탐색 활동, 직업현장체험 등 |
| 환경보존활동 | 생태활동, 환경탐사활동, 자연지도 만들기, 숲체험, 환경음식 만들기, 환경살리기 활동, 환경·시설 보존활동 등 |
| 자기(인성) 계발활동 | 표현능력개발 수련활동, 자기탐구활동, 자기존중감향상 프로그램, 자기표현활동, 심성수련활동 등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2009년에는 제2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가 출범하고, 인증제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찾아가는 간담회, 설문조사, 현장전문가 회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증수련활동 참여기록을 등재하기로 결정하는 등 학교교육정책과 인증제도와의 연계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청소년관련학과를 설치한 9개 대학과 대입 시 가산점 반영을 하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지역 내 인증수련활동을 모니터하는 학부모참관단(107명) 운영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 700명을 대상으로 활동영역별 효과성 측정 연구를 통해 인증수련활동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2010년에는 참여청소년 확대를 위한 중·단기 제도개선을 수립하고,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6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입학 시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MOU 체결 대학: 15개교). 인증심의 317건 중 250건이 인증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으며 70건의 이행여부 확인을 실시하여 인증받은 사항과 동일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증프로그램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1년에는 동아리 인증 및 인증제 활성화 방안 연구 등 제도개선 연구와 함께 정부부처 주관 활동프로그램 인증이 추진되었으며 인증심사원 연수와 인증제 담당자 직무연수를 실시하여 인증제 담당자의 역량향상을 도모하였다. 또한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연구 지표 추가 개발(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활동 영역)을 통한 각 영역별 역량 강화와 2개 지방자치단체(도청,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증제 내실화를 위한 노력으로 2011년에는 인증수련활동 활동기록을 이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사례가 있었다.

## 다. 인증수련활동 및 활동기록 현황

수련활동 인증신청은 매월 상시적으로 인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접수된 청소년수련활동은 1개 프로그램 당 2명의 인증심사원이 배정되어 20일 동안의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가 최종심의를 하게 된다. 2011년까지 인증된 수련활동은 324개 기관 1,569건이며, 이 중 4건은 인증사항 이행여부확인을 통해 취소되고, 24건은 인증받은 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철회되었으며, 203건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2011년 12월까지 총 1,338건의 인증수련활동이 유지되고 있다.

〈 표 4-1-5 〉 연도별, 기관 유형별 인증수련활동 현황

(단위 : 건)

| 연도 | 국가지방자치단체 | 청소년수련시설 | | | | 청소년단 체 | 청소년기 관 | 청소년이용시설 | 청소년보호복지시설 | 일반 | 기타 | 총계 |
|---|---|---|---|---|---|---|---|---|---|---|---|---|
| | | 청소년수련관 |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문화의집 | 기타 | | | | | | | |
| 2006 | – | 13 | 15 | 6 | – | 11 | 3 | – | 1 | 1 | – | 50 |
| 2007 | 2 | 171 | 30 | 43 | 2 | 4 | 20 | 2 | 2 | – | – | 276 |
| 2008 | 4 | 266 | 35 | 79 | 9 | 15 | 24 | 5 | – | 1 | 1 | 439 |
| 2009 | 2 | 142 | 30 | 39 | 9 | 12 | 16 | 1 | 1 | 3 | – | 255 |
| 2010 | 7 | 172 | 18 | 39 | 3 | 8 | 12 | 2 | – | 4 | 1 | 266 |
| 2011 | 10 | 119 | 70 | 63 | 6 | 5 | 3 | 2 | 3 | – | 2 | 283 |
| 총계 | 25 | 883 | 198 | 269 | 29 | 55 | 78 | 12 | 7 | 9 | 4 | 1,5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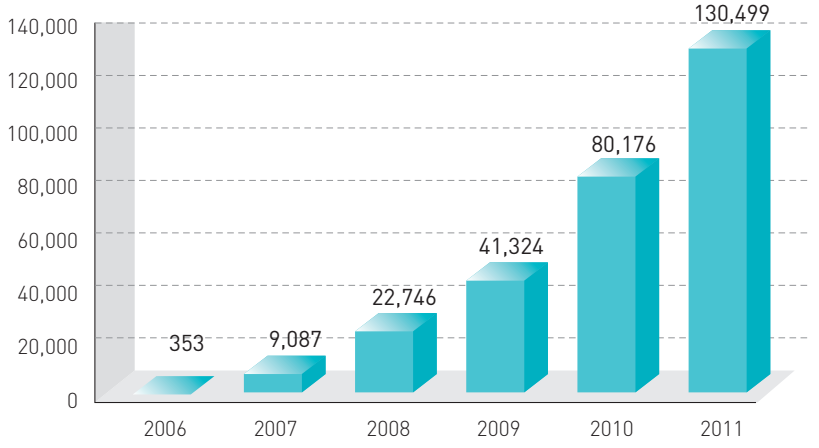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1).

국가가 인증한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의해 누계 관리되며, 주무부처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실시간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은 2011년에 130,499명이었으며, 인증수련활동기록서에는 청소년의 활동 실적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청소년이 자기계발과 상급학교 진학 시 및 대입 시, 취업 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청소년이 참여한 활동의 개요와 활동시간, 지도자의 평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 그림 4-1-1 ] 연도별 참여 청소년 변화 추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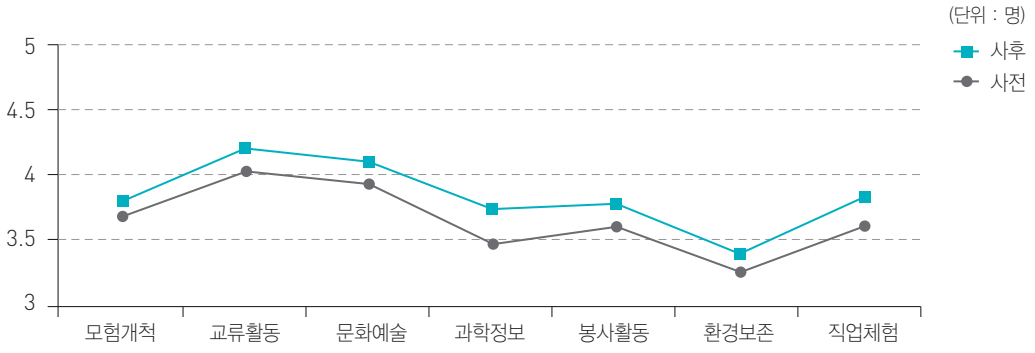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라. 인증수련활동의 효과

인증수련활동 참여청소년의 활동영역별 참여효과를 과학적으로 분석·입증하여 인증수련활동의 객관적 가치를 제시하기 위해 2007년 기초 연구를 시작하였다. 2008년에는 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연구지표를 개발하였고, 2009년에 참여 청소년 690명을 대상으로 효과성, 타당성 검토를 하였다. 2010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74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건강보건활동, 자기계발활동 영역 연구지표를 추가 개발하였고, 5월부터 11월까지 참여청소년 89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인증수련활동 참여 청소년의 글로벌리더십, 교육의 적극성, 문화예술이해, 공동체의식, 자기효능감, 사회적책임감, 자연친화성, 자기이해, 직업의식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4-1-2 ] 2011년 효과성 측정 결과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4.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 가. 제도현황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The Duke of Edinburgh's Award, 이하 '포상제')는 1956년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군인 에딘버러 공작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 1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80만 세계 청소년들이 포상제에 참여하고 있다. 포상제를 총괄하는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에는 국가운영기관(National Award Authorities, 61개국)과 독립운영기관(Independent Operators, 70개국)이 속해 있으며, 유럽·지중해·아랍 지역, 아프리카 지역, 아시아·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지역의 사무국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포상제는 비경쟁성, 평등성, 균형성, 성취지향성, 과정 중시성, 지속성 등의 10가지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며, 참여 청소년들이 자기 주도성과 도전정신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습관을 가질 수 있게 한다.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만 14세부터 만 25세까지로, 만 25세 생일 전까지 포상활동을 마칠 수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포상활동은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탐험 4가지 활동이며 주어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금장 활동일 경우 4가지 활동에 더불어 추가로 합숙활동을 해야 한다. 포상단계는 동장(6개월), 은장(6~18개월), 금장(12~18개월)으로 4가지 활동영역 모두 포상활동별 최소 활동 기간을 충족하고 성취목표를 달성해야 포상을 받을 수 있다.

〈 표 4-1-6 〉 포상 단계별 최소 활동 기간

| 구 분 | 봉사 | 자기개발 | 신체단련 | 탐험 | 합숙 |
|---|---|---|---|---|---|
| 금장 16세 이상 | 12개월 48시간 이상 | 12개월 48시간 이상 | 12개월 48시간 이상 | 3박 4일 | 4박 5일 ※ 금장 단계에 한함 |
| | 은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 | | |
| 은장 15세 이상 | 6개월 24시간 이상 | 6개월 24시간 이상 | 6개월 24시간 이상 | 2박 3일 | – |
| | 동장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6개월 수행 | | | | |
| 동장 14세 이상 | 3개월 12시간 이상 | 3개월 12시간 이상 | 3개월 12시간 이상 | 1박 2일 | – |
| | 참가자는 봉사, 자기개발, 신체단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추가로 3개월 수행 | |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포상제 추진 현황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국제포상협회(International Award Association)로부터 2008년 독립운영기관 자격을 취득(2008년 5월)하였고, 2009년 10월 다음 단계인 임시회원국가(Provisional Membership)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포상제의 한국사무국으로서 2012년 정회원국가 자격 취득을 위해 지역사회 활성화와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자격 요건들을 갖추어 가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10년에 아시아·태평양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10월 24~30일)하였다.

포상제는 2008년과 2009년 2단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8년은 한국사무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은 지역사회 중심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사무국과 중앙운영기관 체제를 적용하였다. 2010년부터는 참여 청소년들의 활동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최초로 온라인정보시스템(www.koraward.or.kr)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정보시스템 개발로 인해 포상활동 기록의 신뢰성과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청소년 활동 기록의 포트폴리오 변환 기능 및 인증 시스템으로 진학 및 취업 시 광범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2014년 국제금장총회를 유치하여 동 제도의 국내 참가자 확대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상제는 포상 자체보다는 포상활동의 과정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상 활동에서 도전에 대한 실패는 없다. 다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여 도전한다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도전의 지속성을 이어가고 있다.

〈 표 4-1-7 〉 포상제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소)

| 구 분 | 참가 청소년 | 포상 청소년 | 포상담당관 | 운영기관 |
|---|---|---|---|---|
| 2008 | 352 | – | 162 | 15 |
| 2009 | 2,139 | 398 | 1,198 | 194 |
| 2010 | 4,169 | 457 | 1,830 | 309 |
| 2011 | 3,692 | 663 | 1,569 | 220 |
| 누 계 | 10,352 | 1,518 | 4,759 | 738 |

주: 2008년 시범사업 시행으로 7월부터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 졌으며, 포상을 받기 위한 가장 낮은 단계 동장은 평균 7~8개월 소요되어 2008년에는 포상 청소년이 없음.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제2장
# 청소년자원봉사활동

## 1.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도입 배경

우리 사회에 만연된 물질만능주의 가치관과 부모의 지나친 보호 속에서 성장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남을 먼저 배려하기 보다는 오직 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 풍조에 물들게 되었다. 게다가 치열한 입시 위주의 학교교육은 청소년기에 길러주어야 할 인성을 빼앗아 버렸다.

이에 입시 위주에 매몰된 청소년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향상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직업에 대한 탐색과 준비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학교수업 외의 무엇인가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1995년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5.31 교육개혁방안」을 제안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및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

## 2.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추진현황

### 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국가는 청소년자원봉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5년 5월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에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인성교육과제로 포함시키고, 이를 계기로 당시 문화체육부 정책의 하나인 "바른청소년육성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년자원봉사은행을 설치하고 1996년 2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계획을 시·도로 통보하였다. 이에 1996년 4월부터 1999년 3월까지 중앙 및 16개 시·도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청소년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그러나 10여 년간 지속되어온 청소년봉사활동이라는 특화된 영역의 지원기관을 2006년 7월 청소년활동

지원과 청소년봉사활동 활성화의 2가지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개편하여 조직의 기능을 확대하고, 청소년활동 정보제공,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등을 수행하는 청소년활동 지원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전환하였다.

〈 표 4-2-1 〉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현황

| 지역 | 센터명칭 | 센터주소 |
|---|---|---|
| 서울 | 서울특별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156-010)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 보라매공원 내 |
| 부산 |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601-836)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1 |
| 대구 | 대구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700-191)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재)대구청소년지원재단 |
| 인천 | 인천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405-83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69 3층 |
| 광주 | 광주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501-100)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226번길 13-1번지 |
| 대전 | 대전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302-834)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대로 201 평송청소년문화센터 2층 |
| 울산 | 울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 | (680-845) 울산광역시 남구 대공원로 84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
| 경기 |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440-7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55 2층 |
| 강원 |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220-010) 강원도 원주시 중앙동 118-3 시민복지센터 4층 |
| 충북 |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03 제3별관 |
| 충남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331-96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766 진암빌딩 4층 |
| 전북 | 전라북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4길 31 3층 |
| 전남 |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 (534-821) 전남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27 여성플라자 4층 |
| 경북 |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 (760-140)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 20 |
| 경남 |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 (641-706) 경남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97 늘푸른전당 3층 301호 |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 (690-8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남로7길4 1022-13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나.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 개발·운영

청소년자원봉사활동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CS버전)을 구축하여 시·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지역별 봉사활동 기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 실적 등을 보다 쉽게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인터넷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봉사활동 신청 및 경력관리,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 등을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갖추게 되었다.

2008년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은 사용자 편의성 확대 및 기능강화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별로 운영·관리되었던 시스템(CS버전)에서 통합 시스템(WEB버전)으로 개편, 기존 청소년봉사활동 관리시스템에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로 발전시켜 청소년봉사활동관리의 안정성, 편리성, 정보 제공 확대 등을 꾀하였다.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의 2011년 회원 수는 1,453,465명이고, 운영프로그램 건수는 905,881건에 이른다. 또한 등록된 봉사활동 운영기관(터전)은 2011년 8,620개소로 2010년에 비해 567개소가 추가되었으며, 2011년 신규 회원수는 292,109명으로 2010년에 비해 9.65% 증가하였다.

〈 표 4-2-2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 회원 수(누적)

(단위 : 명)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회원 등록수 | 294,158 | 490,737 | 687,912 | 876,025 | 1,161,356 | 1,453,465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표 4-2-3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등록(가입) 터전 수(누적)

( 단위 : 건)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가입 터전수 | 2,752 | 3,657 | 4,635 | 6,802 | 8,053 | 8,62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표 4-2-4 〉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 운영 프로그램 수(누적)

(단위 : 개)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프로그램 수 | 250,799 | 367,924 | 475,974 | 629,565 | 747,754 | 905,8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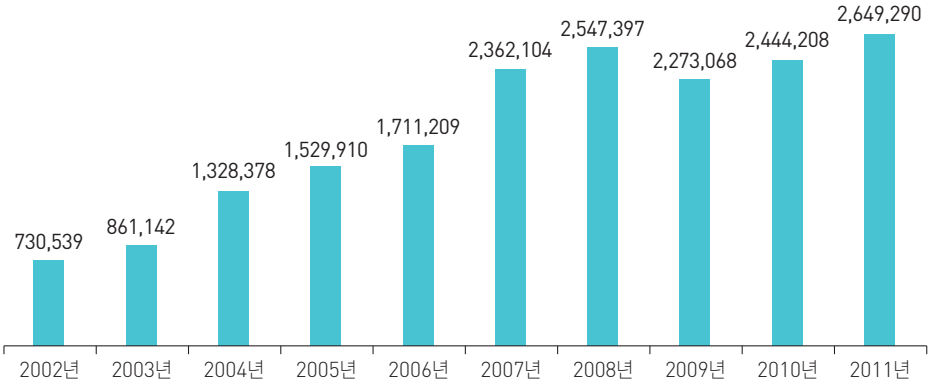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다.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현황

2011년 12월 말까지 전국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수는 총 2,649,290명으로 2010년도에 비해 8.3%(205,082명) 증가하였다.

[ 그림 4-2-1 ]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교육·연수포함)인원

(단위 : 명)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제3장 청소년 교류활동

## 1. 청소년 국제교류

### 가. 국가 간 청소년 교류

국가 간 청소년 교류는 상대국 청소년 담당 부처와의 약정 등에 의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청소년 기관 및 시설 방문, 양국 청소년 간 토론, 가정방문, 역사·문화 유적지 답사, 산업시설 견학 등을 통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경험 등을 교환하고 각 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11년에는 22개국과 파견 323명, 초청 324명 등 총 647명의 교류를 시행하였다.

〈 표 4-3-1 〉 청소년교류 약정체결국 현황(31개국)

| | |
|---|---|
| ▶ 아시아 (10개국) |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
| ▶ 유럽 (10개국) | 러시아, 프랑스, 체코,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그리스, 터키, 스페인, 불가리아 |
| ▶ 중남미 (2개국) | 칠레, 멕시코 |
| ▶ 중동·아프리카 (9개국) |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수단, 모로코, 파키스탄, 아제르바이잔, 튀니지, 카메룬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표 4-3-2 〉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약정 체결 및 교류 현황

(2011.12.31 기준)

|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 시행 근거 | 최 초 시행년도 | 약정 내용 (인원·기간) | 2011까지 교류인원 | | |
|---|---|---|---|---|---|---|
| | | | | 초청 | 파견 | 총인원 |
| 31개국 | | | | 3,971명 | 4,141명 | 8,112명 |
| 말레이시아 (청소년체육부) | 한·말 문화협정(1965) 한·말 청소년교류 약정(1992.4) 지도자 15명 추가– 공공행정처 | 1979 | 15명 10일간 (2002년부터 30명) | 589명 | 596명 | 1,185명 |
| 사우디 (청소년복지처) | 양국정부합동 위원회 합의(1981) 청소년협력 협의각서(2001) | 1981 | 10명 10일간 | 274명 | 275명 | 549명 |
| 일 본 (내각부) | 정상회담 공동선언(1984) | 1987 | 40명 15일간 (2003년부터 30명씩, 초청국 전액부담) | 716명 | 815명 | 1,531명 |
| 중 국 (중화전국청년연합회) | 양국 수교시 교류합의 (1992) 청소년교류양해각서(1998) | 1993 | 20명씩 10일간 (1998년부터 40명) | 638명 | 675명 | 1,313명 |
| 헝가리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협력약정서(1992) | 1993 | 15명 10일간 | 25명 | 57명 | 82명 |
| 러시아 (교육부) | 청소년협력계획서(1995) | 1994 | 30명씩 기간 미 명시 (2007부터 20명 10일간) | 179명 | 184명 | 363명 |
| 필리핀 (교육문화체육부) | 청소년교류 협력계획서(1995) 청소년교류 약정서(2007) | 1996 | 10~20명 10일간 (연초협의) | 121명 | 151명 | 272명 |
| 모로코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체육교류협정(1990) 청소년교류약정서(1994) | 1996 | (1995~1996) 15~20명 10~14일 (2009부터 16명, 10일) | 101명 | 134명 | 235명 |
| 핀란드 (교육부) | 청소년협력 협의각서(1996) (2005 갱신) | 1996 | 청소년전문가 5명 7일간(연초 협의 결정) | 53명 | 71명 | 124명 |
| 칠 레 (청소년처) | 청소년협력약정서(1996) | 1998 | 20명 10일간 | 31명 | 52명 | 83명 |
| 베트남 (청소년위원회) | 청소년교류약정서(1999) 재약정 체결(2004) | 1999 | 20명 10일간 (베트남 30명 ) | 398명 | 256명 | 654명 |
| 몽 골 (사회복지노동부) | 청소년분야협력 약정서(2001) | 2000 시범교류 | 10명 10일간 | 124명 | 114명 | 238명 |
| 멕시코 (청소년원) | 청소년협력약정서(2000) 재약정 체결(2008) | 2001 | 10~20명 10일간 | 105명 | 114명 | 219명 |
| 이스라엘 (청소년교류협회) | 청소년협력약정서(2002) | 2002 | 10~20명 10일간 | 89명 | 97명 | 186명 |
| 프랑스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협력약정서(2002) | – | 10~20명 10일간 | 2명 | – | 2명 |
| 체코 (교육청소년체육부) | 청소년협력약정서(2003) 약정갱신(2008) | 2003 | 10명 10일간 | 40명 | 40명 | 80명 |

| 교류 약정국 (주관기관) | 시행 근거 | 최 초 시행년도 | 약정 내용 (인원·기간) | 2011까지 교류인원 | | |
|---|---|---|---|---|---|---|
| | | | | 초청 | 파견 | 총인원 |
| 수단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체육협력약정서 (2004.5) | 2005 | 10명 10일간 | 59명 | 67명 | 126명 |
| 폴란드 (교육체육부) | 청소년·체육교류 양해각서(2004.12) | 2005 | 10~20명 10일간 | 70명 | 70명 | 140명 |
| 인도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교류약정서(2005.4) | 2006 | 10~20명 10일간 | 90명 | 88명 | 178명 |
| 파키스탄 (청소년부) | 문화교류계획서(2005.9) | 2006 | 7명 7일간 (10명, 10일간) | 39명 | 9명 | 48명 |
| 이집트 (청소년부) | 청소년교류양해각서 (2005.12.14) | 2006 | 10~20명 10일간 | 30명 | 60명 | 90명 |
| 그리스 (교육종교부) | 청소년분야양해각서 (2006.12.13) | 2006 | 8명 6일간 (정부공무원 5, 지도자3) | 10명 | 8명 | 18명 |
| 터키 (청소년체육부) | 2005~2008년도 문화 및 과학 교류계획서(2005.9.23) | 2007 | 10~20명 10일간 | 82명 | 80명 | 162명 |
| 스페인 (청소년청) | 청소년분야협력약정 (2007.3.26) | 2007 | 인원 및 기간 연초협의 | 3명 | 3명 | 6명 |
| 아제르바이잔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분야 협력양해각서 (2007.4.23) | 2007 | 10명 10일간 | 39명 | 39명 | 78명 |
| 불가리아 (청소년체육청) |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2007.12.10) | 2008 | 인원 및 기간 연초협의 | 16명 | 23명 | 39명 |
| 튀니지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09.6) | 2010 | 10명 10일간 | 5명 | 10명 | 15명 |
| 싱가폴 (국가청소년위원회) | 청소년분야 양해각서(2009.6) | 2009 | 10명 7일간(격년) | 10명 | 20명 | 30명 |
|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09.6) | 2010 | 10명 10일간 | 23명 | 23명 | 46명 |
| 브루나이 (문화청소년체육부) |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10.2) | 2011 | 10명 10일간 | 10명 | 10명 | 20명 |
| 카메룬 (외교부) | 청소년분야 협력약정(2011.11) | – | 10명 10일간 |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한·중 청소년 특별교류

2003년 7월 한·중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 교류 합의에 따라 2004년부터 우리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중국 청소년 500명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이후 중국 측은 2006년부터 매년 한국 청소년 100명을 초청하였고,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200명과 400명을, 2011년에는 200명을 초청하여 상호 교류하였다.

〈 표 4-3-3 〉 한·중 청소년 특별 교류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초 청 | | | | 파 견 | | | 총계 |
|---|---|---|---|---|---|---|---|---|
| | 1차 | 2차 | 3차 | 계 | 1차 | 2차 | 계 | |
| 2004 | 198 (7.21~7.30) | 189 (11.1~11.10) | 100 (11.17~11.26) | 487 | – | | – | 487 |
| 2005 | 192 (7.6~7.15) | 100 (9.7~9.16) | 191 (11.15~11.24) | 483 | – | | – | 483 |
| 2006 | 96 (5.24~6.2) | 193 (7.5~7.14) | 200 (11.1~11.10) | 489 | 98 (4.12~4.21) | | 98 | 587 |
| 2007 | 200 (4.7~4.16) | 100 (6.13~6.22) | 191 (11.1~11.10) | 491 | 97 (7.3~7.12) | | 97 | 588 |
| 2008 | 154 (8.18~8.27) | 100 (10.29~11.7) | 150 (11.5~11.14) | 404 | 95 (7.22~7.31) | | 95 | 499 |
| 2009 | 196 (7.8~7.17) | 99 (9.16~9.25 ) | 185 (11.11~11.20) | 480 | 96 (5.13~5.22) | 99 (8.3~8.12) | 195 | 675 |
| 2010 | 192 (6.2~6.11) | 100 (10.13~10.22) | 187 (11.11~11.20) | 479 | 192 (5.11~5.20) | 190 (9.7~9.16) | 382 | 861 |
| 2011 | 191 (6.15~6.24) | 98 (9.21~9.30) | 193 (10.26~11.4) | 487 | 197 (5.17~5.26) | | 197 | 679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다.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한·중·일 3국 정상은 2007년을 "한·중·일 교류의 해"로 설정하고 3자간 청소년 교류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2007년에는 중국에서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행사가 개최되어 한국 청소년 100명을 파견하였고, 2008년에는 일본, 2009년에는 한국, 2010년에는 중국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2012년 3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개최되며 한국 청소년 100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 표 4-3-4 〉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현황

| 회 차 | 연 도 | 개최국 | 장 소 | 기 간 | 인 원 |
|---|---|---|---|---|---|
| 1회 | 2007 | 중국 | 베이징 | 8.16~22 |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
| 2회 | 2008 | 일본 | 도쿄 | 9.17~23 |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
| 3회 | 2009 | 한국 | 서울 | 7.21~27 |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
| 4회 | 2010 | 중국 | 베이징 | 7.21.~27 | 300명 (한·중·일 각국 100명)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2.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2006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집행하는 청소년 자율 프로그램과 해외자원봉사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실시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세계 시민의식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조사·연수단」,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 참가단」, 「꿈과 사람 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등 4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로그램 전체비용의 일부를 참여청소년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참여할 경우 정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 표 4-3-5 〉 2011년 청소년 해외체험 프로그램 현황

| 연번 | 프로그램명 | 내 용 |
|---|---|---|
| 1 | 해외조사·연수단 (2006~) |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
| | | 선진외국의 청소년정책, 인문사회, 이공분야 등을 주제로 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창안한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연수활동 지원<br>* 73개팀 280명 참가(2011) |
| 2 | 국제회의·행사참가단 (2008~) |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
| | | 다양한 국제회의·행사 등에 청소년들을 파견<br>* UN총회 파견 등 59명(2011) |
| 3 | 해외테마체험단 (2007~) |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 프로젝트 |
| | | 청소년에게 세계 선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 및 강점분야의 연수·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소통능력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br>* 18개 프로그램 454명(2011) |
| 4 | 해외자원봉사단 (2002~) | 꿈과 사람속으로 |
| | |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 강화<br>* 11개국, 17개 단체, 34개팀, 704명(2011)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가. "대한민국 청소년 세계를 가다", 해외조사·연수단

4명 내외의 청소년들이 1개 팀을 이루어 외국의 청소년분야, 해외 한민족의 생활과 발전방향, 인문사회·이공분야 및 진로·취업분야 등에 대해 자율적으로 활동 주제를 선택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제출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선발팀은 선택 주제에 대해 스스로 준비를 갖춰 해외에 나가 조사·연수활동을 펼치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조사·연수활동을 펼치며, 2011년에는 280명의 청소년들이 73개 팀을 이루어 조사·연수를 다녀왔다.

## 나. "청소년을 세계의 주역으로", 국제회의·행사참가단

청소년들이 국제회의 및 행사 등 다양한 해외 활동에 직접 참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국제적인 능력을 배양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파견대상자를 선발한다. 2011년에는 UN 총회 등에 59명의 청소년을 파견하였다.

## 다. "대한민국 청소년 발전프로젝트", 해외테마체험단

세계 주요 선진국가의 선도적 강점분야 등을 체험·연수하여 청소년의 국제적 능력배양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11년도에는 18개 프로그램에 454여명의 청소년을 평균 10일 내외의 기간으로 파견하였다.

〈 표 4-3-6 〉 2011년 해외테마체험 프로그램

(단위 : 명)

| 사 업 명 | 시기(기간) | 장 소 | 인원 | 비 고 |
|---|---|---|---|---|
| 계 | | | 454 | |
| 여성인권과 사회참여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 | 08.06~08.14 | 뉴질랜드 | 2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문명간의 대화 | 07.19~07.28 | 터키 | 2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유대인의 지혜를 배우자 | 07.23~07.31 | 이스라엘 | 2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청소년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젝트 | 08.14~08.20 | 싱가포르, 태국 | 27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 국제사회가 원하는 인재상 | 08.08~08.12 | 대만 | 33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 미래식량자원 해양수산자원 첨단 사업현장 태평양을 찾아서 | 08.22~08.29 | 미국 | 21 | 농어촌육성재단 |
| 베네치아, 무라노의 장인을 만나다 | 08.24~08.29 | 이탈리아 | 20 | 서울특별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 일본의 자연재해안전정책 배움 및 재해지역 주민을 위한 재능나눔 연수 | 07.22~07.27 | 일본 | 21 |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
| 녹색성장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신재생에너지 체험 | 09.16~09.22 | 독일 | 20 | (사)한국환경교육협회 |
| 지속성장 Project – 출동! 북극곰 구출 대작전 | 07.19~07.27 | 캐나다 | 20 | 서울특별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 생활속 나눔실천, 스페인을 가다 | 06.26~07.03 | 스페인 | 22 | (사)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
|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소외계층 청소년 중국탐방) | 06.09~06.14 | 중국 | 25 | (사)나눔과 기쁨 |
| 우리는 브릿지 메이커스 | 06.11~06.16 | 태국 | 25 | (사)글로벌투게더 |
| 영국으로 떠나는 청포도 탐험대 | 08.08~08.14 | 영국 | 20 |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 |
| 대한민국의 새로운 영토 그리기 대장정 | 10.12~10.20 | 러시아 | 23 | 광명5동 청소년 문화의 집 |
| 영농계열 진로탐색 농어촌 청소년 대만 영농체험 연수 | 09.25~10.01 | 대만 | 27 |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
| 대한민국 역사체험 프로그램 | 10.30~11.03 | 중국 | 34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 장보고의 숨결과 중국 문화를 만나다 | 12.10~12.15 | 중국 | 56 | 한국청소년연맹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라. "꿈과 사람속으로",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청소년들의 자아실현과 글로벌 역량강화 및 세계 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저개발국의 아동, 청소년, 지역주민 등을 위하여 겨울방학 및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해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1년에는 아시아 11개국에 34개팀 704명의 봉사단을 10~14일 내외로 파견하였다.

〈 표 4-3-7 〉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

(단위 : 팀, 명)

| 구분 | 태국 | 캄보디아 | 네팔 | 필리핀 | 베트남 | 중국 | 인도 | 방글라데시 | 인도네시아 | 라오스 | 스리랑카 | 계 |
|---|---|---|---|---|---|---|---|---|---|---|---|---|
| 파견팀수 | 1 | 8 | 2 | 4 | 4 | 2 | 2 | 1 | 5 | 4 | 1 | 34 |
| 파견자수 | 16 | 203 | 34 | 67 | 70 | 33 | 35 | 18 | 112 | 99 | 17 | 704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3. 청소년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행사 지원

국제청소년 행사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시아 청소년들에게 한국문화체험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개최하는 아시아 청소년초청연수와 세계 각국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청소년포럼 등이 있다. 2011년에는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국제청소년포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 표 4-3-8 〉 2011년 청소년 국제행사 개최 지원

(단위 : 개국, 명)

| 행사명 | 일 시 | 참가현황 | |
|---|---|---|---|
| | | 참가국 | 인 원 |
| 2011년 아시아청소년초청연수 | 7.27~8.10(15일) | 24 | 249 |
| 제22회 국제청소년포럼 | 8.17~8.24(8일) | 32 | 118 |
| 제8회 동북아청소년포럼 | 8.3~8.8(6일) | 3 | 94 |
| 2011년 아시아청소년지도자초청연수 | 10.23~11.2(11일) | 7 | 40 |
| 제13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대회 | 7.25~7.31(7일) | 20 | 10,000 |
| 여수국제청소년축제 | 7.25~7.31(7일) | 34 | 55,374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제 5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아동빈곤율은 2006년 10%에서 2010년 8.6%로 감소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은 1995년 7.4%에서 2011년 9.3%로 증가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수는 2007년 4만 4천명에서 2011년 15만 1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재학생수도 증가하였다. 요보호아동은 2004년 2만명에서 2011년 8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세대도 1997년 약 8천가구에서 2011년 약 700가구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지원으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 북한이탈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과 디딤씨앗 통장사업, 아동시설에 대한 보강과 가정 내 위탁보호 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 17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계를 바탕으로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인 두드림존을 운영하여 체험을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 05 부 청소년 복지

제1장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제2장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3장 청소년 상담활동

제4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제1장

# 취약계층 청소년 현황

## 1. 아동빈곤율 현황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나뉜다. 빈곤율의 측정방법은 국가마다 상이한데, 우리나라에서 측정하는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이를 아동빈곤율에 대입하면 아동빈곤율이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의 수를 백분율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가구수가 아니라 개인수를 기준으로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전가구의 빈곤율은 2003년 이후에 와서야 측정이 가능해졌는데, 그 이유는 2003년 이전의 가구의 소득조사는 도시가구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득조사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및 가계조사이며, 도시가구만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계조사는 본격적으로는 1960년부터 시작되었다. 절대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한 조사는 1999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1999년에 우리나라에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한 가계조사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여 가구의 빈곤율 및 아동빈곤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도시근로자 가구의 아동빈곤율은 1999년 6.7%에서 2000년 4.4%, 2005년 3.9%, 2010년 2.6%(1인 가구 포함: 2.6%) 등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전국 가구의 경우는 2003년 5.4%에서 2005년 5.7%, 2010년 4.7%(1인 가구 포함: 4.7%) 등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보다 2~4%p 높은 수준이다. 즉, 도시보다는 농어촌가구에서 아동빈곤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어촌지역의 아동의 경제적 상황은 도시지역보다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 표 5-1-1 〉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절대빈곤율)

(단위 : %)

| 연 도 | 도시근로자가구[주1)] | 전가구기준[주2)] |
|---|---|---|
| 1999 | 6.7 | – |
| 2000 | 4.4 | – |
| 2001 | 3.6 | – |
| 2002 | 2.6 | – |
| 2003 | 3.3 | 5.4 |
| 2004 | 2.8 | 6.4 |
| 2005 | 3.9 | 5.7 |
| 2006 | 3.3 | 5.7 |
| 2007 | 2.9 | 5.2 |
| 2008 | 3.4 | 7.8 |
| 2009 | 3.1 | 4.8 |
| 2010 | 2.6 | 4.7 |
| 2006 | 3.3 | 5.7 |
| 2007 | 2.9 | 5.7 |
| 2008 | 3.4 | 5.2 |
| 2009 | 3.1 | 4.8 |
| 2010 | 2.6 | 4.7 |

주1 : 1) 도시가구 전체: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
2) 도시근로자 가구 중 아래줄의 2006~2010년의 경우: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도시근로자 가구: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주2 : 1) 전가구: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전가구 중 2006~2010년: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편 상대빈곤율은 OECD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보통 가처분소득의 40%, 50%, 60%를 사용한다. 중위소득의 50%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 변화추이를 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1990년대 초반에는 6.3%(1990년), 5.2%(1991년), 5.8%(1993년)로 감소하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0년대 전반에는 6~7%대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 후 2006년 이후에는 6%대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2010년 현재 도시근로자 가구의 상대아동빈곤율은 5.8%이다.

농어촌가구(농어가가구 제외)를 포함한 전국가구의 아동빈곤율은 도시보다 다소 높은 8~10%대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역시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아동빈곤율이 다소 높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전국가구의 상대아동빈곤율은 2000년대 중반에 11.2%로 약간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매우

적은 비율이기는 하지만 감소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0년 현재 아동빈곤율은 8.6%이다.

〈 표 5-1-2 〉 아동빈곤율 변화추이(상대빈곤율)

(단위 : %)

| 연 도 | 도시근로자[주1] | 전가구기준[주2] |
|---|---|---|
| 1990 | 6.3 | – |
| 1991 | 5.2 | – |
| 1992 | 8.7 | – |
| 1993 | 5.8 | – |
| 1994 | 6.2 | – |
| 1995 | 6.7 | – |
| 1996 | 5.9 | – |
| 1997 | 6.7 | – |
| 1998 | 7.0 | – |
| 1999 | 7.6 | – |
| 2000 | 6.3 | – |
| 2001 | 6.3 | – |
| 2002 | 5.5 | – |
| 2003 | 7.0 | 10.0 |
| 2004 | 7.1 | 10.7 |
| 2005 | 7.9 | 11.2 |
| 2006 | 6.3 | 10.0 |
| 2007 | 6.5 | 10.6 |
| 2008 | 6.2 | 9.6 |
| 2009 | 6.3 | 8.8 |
| 2010 | 5.8 | 8.6 |
| 2006 | 6.3 | 10.0 |
| 2007 | 6.5 | 10.6 |
| 2008 | 6.2 | 9.7 |
| 2009 | 6.3 | 8.8 |
| 2010 | 5.8 | 8.6 |

주1 : 1) 1인가구, 농어촌 지역 제외(가처분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
2) 아래줄의 2006~2010년의 경우 : 1인가구 포함, 농어촌지역 제외.
3) 아동은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주2 : 1) 1인가구, 농어가가구 제외.
2) 아래줄의 2006~2010년의 경우 : 1인가구 포함, 농어가가구 제외.

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가 간 아동빈곤율 비교를 위해 OECD Family Database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에서는 각국의 아동빈곤율을 측정하기 위해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빈곤율을 측정하였고, 전체빈곤율과 아동빈곤율을 동시에 제시하였다.

아동빈곤율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가장 낮았고, 뒤를 이어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따르고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등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가 아동빈곤율도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아동빈곤율은 2008년 10.3%로 아동빈곤율이 10%이상인 국가군에 속한다. 한국과 동일한 군에 속하는 국가에는 슬로바키아 10.1%, 벨기에 11.3%, 아일랜드 11.4%, 에스토니아 12.1%, 그리스 12.1%, 뉴질랜드 12.2%, 영국 12.5, 호주 14.0%, 일본 14.2%, 캐나다 15.1% 등이며, 이중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슬로바키아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아동빈곤율이 중위수준에 속하는 국가들 중 유럽 국가가 많은 편이고 뉴질랜드, 영국, 호주, 일본, 캐나다와 같은 국가 등이 포함된다.

아동빈곤율이 20% 이상인 고빈곤율 국가로는 미국 21.6%, 칠레 22.4%, 터키 23.5%, 멕시코 25.8%, 이스라엘 26.6% 등이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복지에 대한 지원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는 유색인종이 백인계 아동에 비해 빈곤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아울러 아동빈곤율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국가의 국부와 연관이 있어서 국부가 적을수록 아동빈곤율도 높다. 영국의 경우는 아동빈곤을 2020년까지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꾸준한 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실시한 결과, 빈곤율이 상당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중빈곤율 국가에서도 중간보다 앞서는 순위를 달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OECD 국가와 달리 전체빈곤율이 아동빈곤율보다 4.78%p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동빈곤율이 전체빈곤율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된 것에 비해,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는 전체빈곤율이나 아동빈곤율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빈곤율 분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동(또는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때 아동빈곤율이 낮아지고, 미국이나 남유럽국가들과 같이 아동의 문제를 국가의 책임이 아닌 가족의 책임으로 하였을 때, 아동빈곤율이 높게 된다는 것이다.

〈 표 5-1-3 〉 아동빈곤율 국제비교(2008년, 중위소득 50%)

(단위 : %)

| 구 분 | 국 가 | 전체빈곤율(A) | 아동빈곤율(B) | A-B | 아동빈곤율 평균 |
|---|---|---|---|---|---|
| 저빈곤율 국가 아동빈곤율 10% 미만 | 덴마크 | 6.1 | 3.7 | 2.39 | 7.3 |
| | 핀란드 | 8.0 | 5.4 | 2.62 | |
| | 노르웨이 | 7.8 | 5.5 | 2.31 | |
| | 아이슬란드 | 6.4 | 5.7 | 0.71 | |
| | 스웨덴 | 8.4 | 7.0 | 1.40 | |
| | 슬로바니아 | 8.0 | 7.2 | 0.81 | |
| | 헝가리 | 6.4 | 7.2 | -0.85 | |
| | 오스트리아 | 7.9 | 7.9 | -0.01 | |
| | 독일 | 8.9 | 8.3 | 0.64 | |
| | 체코 | 5.5 | 8.4 | -2.86 | |
| | 프랑스 | 7.2 | 9.3 | -2.10 | |
| | 스위스 | 9.3 | 9.6 | -0.34 | |
| | 네덜란드 | 7.4 | 9.7 | -2.31 | |
| 중빈곤율 국가 아동빈곤율 10~20% 미만 | 슬로바키아 | 7.2 | 10.1 | -2.91 | 13.3 |
| | 한국 | 15.0 | 10.3 | 4.78 | |
| | 벨기에 | 9.4 | 11.3 | -1.86 | |
| | 아일랜드 | 9.1 | 11.4 | -2.33 | |
| | 에스토니아 | 12.5 | 12.1 | 0.32 | |
| | 그리스 | 10.8 | 12.1 | -1.39 | |
| | 뉴질랜드 | 11.0 | 12.2 | -1.20 | |
| | 영국 | 11.0 | 12.5 | -1.49 | |
| | 룩셈부르크 | 8.5 | 13.4 | -4.85 | |
| | 호주 | 14.6 | 14.0 | 0.68 | |
| | 일본 | 15.7 | 14.2 | 1.48 | |
| | 폴란드 | 11.2 | 14.5 | -3.35 | |
| | 캐나다 | 12.0 | 15.1 | -3.06 | |
| | 이태리 | 11.4 | 15.3 | -3.90 | |
| | 포르투갈 | 12.0 | 16.7 | -4.78 | |
| | 스페인 | 14.0 | 17.7 | -3.69 | |

| 구 분 | 국 가 | 전체빈곤율(A) | 아동빈곤율(B) | A–B | 아동빈곤율 평균 |
|---|---|---|---|---|---|
| 고빈곤율 국가 아동빈곤율 20% 이상 | 미국 | 17.3 | 21.6 | –4.31 | 24.0 |
| | 칠레 | 18.4 | 22.4 | –4.07 | |
| | 터키 | 16.9 | 23.5 | –6.54 | |
| | 멕시코 | 21.0 | 25.8 | –4.82 | |
| | 이스라엘 | 19.9 | 26.6 | –6.72 | |
| OECD 34개국 평균 | | 11.1 | 12.6 | –1.52 | – |

주: 1) 표의 순서는 아동빈곤율의 오름차순으로 정렬함.
2) OECD에 제출한 우리나라의 아동빈곤율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계한 수치(9.6)보다 약간 높음(표 5-1-2 참조).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홈페이지. 일부 재구성.
http://www.oecd.org/els/socialpoliciesanddata/oecdfamilydatabase.htm#child_outcomes

## 2. 한부모 가구 현황

자녀가 부모 혹은 조부모 중 한 명 하고만 사는 가족형태인 한부모가구는 최근 들어 이혼 증가 등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체 가구 중 한부모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4%(960천가구)에서 2000년에는 7.9%(1백만가구 이상)로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8.6%, 1백 4십만가구, 2010년에는 9.2%, 1백 6십만가구에 이르렀으며, 2011년에는 1백 6십만가구를 넘어섰다. 한부모가구의 78%는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이고, 22%가 부자가구이며, 모자가구가 약간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 부자가구는 약간 증가추세이다. 한부모가구의 증가에 따라 자녀양육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모자가구의 가장 큰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는 반면, 부자가구의 경우는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되고 있다.

〈 표 5-1-4 〉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천가구, %)

| 연 도 | 총가구수 | 한 부 모 가 구 | | |
|---|---|---|---|---|
| | | 계(비율[1]) | 모자가구 | 부자가구 |
| 1995 | 12,958 | 960 (7.4) | 788 (82) | 172 (18) |
| 2000 | 14,312 | 1,124 (7.9) | 904 (80) | 220 (20) |
| 2005 | 15,887 | 1,370 (8.6) | 1,083 (79) | 287 (21) |
| 2010 | 17,339 | 1,594 (9.2) | 1,247 (78) | 347 (22) |
| 2011 | 17,687 | 1,639 (9.3) | 1,278 (78) | 361 (22) |

주 : 1) 전체가구 대비 한부모가족 비율임.

자료 :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2011). 2005~2030 장래가구추계

한부모가구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사별이 1990년 56.0%에서 2000년 44.7%, 2005년 36.6%, 2010년 29.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26.3% 감소), 이혼의 경우는 1990년 8.9%에서 2000년 21.9%, 2005년 29.1%, 2010년 32.8%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3.7배 증가).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형성도 10%대를 유지하고 있어 미혼모 및 미혼부 가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혼모 및 미혼부 뿐만 아니라 유배우자의 경우에도 한부모가구의 비율이 22~25%대로 적지 않은데, 이는 배우자의 가출, 복역, 장기출타 등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표 5-1-5 〉 한부모가구 형성요인별 현황

(단위 : 천가구, %)

| 연 도 | 총가구수 | 한 부 모 가 구 | | | | | 한부모가구 비율 |
|---|---|---|---|---|---|---|---|
| | | 유배우 | 사별 | 이혼 | 미혼 | 계 | |
| 1990 | 11,355 | 227(25.5) | 498(56.0) | 79( 8.9) | 85( 9.6) | 889(100) | 7.8 |
| 1995 | 12,958 | 216(22.5) | 526(54.8) | 124(12.9) | 94( 9.8) | 960(100) | 7.4 |
| 2000 | 14,312 | 252(22.5) | 502(44.7) | 245(21.9) | 122(10.9) | 1,124(100) | 7.9 |
| 2005 | 15,887 | 328(23.9) | 501(36.6) | 399(29.1) | 142(10.4) | 1,370(100) | 8.6 |
| 2010 | 17,339 | 413(25.9) | 474(29.7) | 523(32.8) | 185(11.6) | 1,594(100) | 9.2 |

자료 : 통계청(2011). 2010 인구주택총조사.

지난 7년간 전체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즉,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가구, 국가보훈법 대상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10만 9천세대에서 2010년 18만 4천세대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체 한부모가구의 약 10%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저소득 한부모가구수는 한부모가족의 증가와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74.7%가 모자가구이고, 부자가구 22.1%, 미혼모가구 1.3%, 미혼부가구 0.2%, 조손가구 1.7%의 분포이다.

〈 표 5-1-6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단위 : 세대, 명)

| 연 도 | 계 | | 모자가족 | | 부자가족 | | 미혼모가족 | | 미혼부가족 | | 조손가족 | |
|---|---|---|---|---|---|---|---|---|---|---|---|---|
|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 2004 | 109,039 | 294,648 | 88,179 | 238,341 | 20,860 | 56,307 | - | - | - | - | - | - |
| 2005 | 123,666 | 334,066 | 99,671 | 268,975 | 23,995 | 65,091 | - | - | - | - | - | - |
| 2006 | 140,188 | 374,094 | 112,347 | 299,430 | 27,841 | 74,664 | - | - | - | - | - | - |
| 2007 | 147,947 | 395,335 | 118,074 | 315,220 | 29,873 | 80,115 | - | - | - | - | - | - |
| 2008 | 152,853 | 400,646 | 118,116 | 312,718 | 30,534 | 82,456 | - | - | - | - | 2,203 | 5,472 |
| 2009 | 170,767 | 454,742 | 129,935 | 347,889 | 36,847 | 97,872 | 1,888 | 3,926 | 360 | 814 | 1,737 | 4,241 |
| 2010 | 184,749 | 480,999 | 138,071 | 361,066 | 40,759 | 106,738 | 2,392 | 5,033 | 379 | 839 | 3,148 | 7,323 |

주 : 저소득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국가보훈법대상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0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보건복지부(2011). 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91.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가구수를 보면 2010년 기준 약 10만 7천세대로 전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58.1%를 차지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하에서 자녀에게 지원되는 혜택이 제한적이고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것은 더욱 미약해서 지원대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부모의 경우 자녀양육 중 사교육비 부담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교육은 빈곤탈출의 주요 경로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 공교육 뿐 아니라 사교육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표 5-1-7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단위 : 세대, 명)

| 연 도 | 계 | | 모자가족 | | 부자가족 | | 미혼모가족 | | 미혼부가족 | | 조손가족 | |
|---|---|---|---|---|---|---|---|---|---|---|---|---|
|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세대 | 세대원 |
| 2004 | 47,405 | 123,461 | 38,993 | 101,165 | 8,412 | 22,296 | - | - | - | - | - | - |
| 2005 | 56,903 | 146,056 | 46,013 | 117,162 | 10,890 | 28,894 | - | - | - | - | - | - |
| 2006 | 66,163 | 170,530 | 53,120 | 135,728 | 13,043 | 34,802 | - | - | - | - | - | - |
| 2007 | 73,471 | 190,373 | 57,924 | 148,919 | 15,547 | 41,384 | - | - | - | - | - | - |
| 2008 | 81,792 | 212,581 | 62,198 | 160,963 | 17,909 | 48,047 | - | - | - | - | - | - |
| 2009 | 94,487 | 245,793 | 70,572 | 183,021 | 22,265 | 59,214 | 1,203 | 2,489 | 267 | 598 | 180 | 471 |
| 2010 | 107,313 | 276,378 | 79,452 | 204,042 | 25,698 | 67,614 | 1,504 | 3,175 | 299 | 653 | 360 | 894 |

자료 : 보건복지부(2009). 통계포털.
보건복지부(2010). 보건복지통계연보 2011. p.291.

## 3. 다문화 가족 현황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급변하고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족유형이 다문화가족이다. 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이란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의 형태로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 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 가족, 이주민가족(노동자, 유학생) 등이 있다. 한편, 협의의 개념으로 다문화가족을 접근하면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만으로 국한한다. 2008년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을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법에 기초하여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교육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수는 2007년에는 44,000명이었는데 2009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103,484명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3배 증가한 121,935명으로 파악되었다. 2011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51,154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자녀의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만6세 이하는 93,573명으로 비중으로는 과반수를 넘는 61.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중은 2010년에 비해 약간 감소한 수치이다. 그 다음은 만7~12세 이하로 37,590명(24.9%)이다. 중학생에 해당하는 만13~15세 이하 아동은 12,392명(8.2%)이고, 고등학생 연령대인 만15~18세 이하 아동은 7,635명(5.1%)로 파악되었다.

〈 표 5-1-8 〉 다문화가족 자녀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만6세 이하 | 만7세~만12세이하 | 만13세~만15세이하 | 만15세~만18세이하 | 계 |
|---|---|---|---|---|---|
| 2007 | 26,445 | 14,392 | 2,080 | 1,341 | 44,258 |
| 2008 | 33,140 | 18,691 | 3,672 | 2,504 | 58,007 |
| 2009 | 61,700 | 27,568 | 7,785 | 6,431 | 103,484 |
| 2010 | 75,776 | 30,587 | 8,688 | 6,884 | 121,935 |
| 2011 | 93,537 | 37,590 | 12,392 | 7,635 | 151,154 |
| 2009년 비율 | 59.6 | 26.7 | 7.5 | 6.2 | 100.0 |
| 2010년 비율 | 62.1 | 25.1 | 7.1 | 5.6 | 100.0 |
| 2011년 비율 | 61.9 | 24.9 | 8.2 | 5.1 | 100.0 |

자료 : 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 관련 통계. 각년도.

국제결혼가족 자녀중 총 재학생수는 2011년 현재 36,726명인데, 이는 2010년에 비해 6,700명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학년별로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27,256명 74.2%이고, 그 다음은 중학생으로 7,236명 19.7%이고, 고등학생은 가장 적은 2,234명, 6.1%이다. 점차 고학년 다문화가족 아동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국제결혼가족 중 모가 외국인인 학생의 비중은 전체의 87.0%(31,940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국제결혼가족 학생수와 마찬가지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24,099명이고, 중학생 6,219명, 고등학생 1,622명의 분포이다. 이와 같이 아직까지 다문화가족의 학생 분포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은 연령대에 있다.

〈 표 5-1-9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 재학 현황

(단위 : 명, %)

| 연 도 | 국제결혼가족 학생수 | | | |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 | | |
|---|---|---|---|---|---|---|---|---|
| | 계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 2005 | 6,121 | 5,332 | 583 | 206 | - | - | - | - |
| 2006 | 7,998 | 6,795 | 924 | 279 | 6,695 | 5,854 | 682 | 159 |
| 2007 | 13,445 | 11,444 | 1,588 | 413 | 11,825 | 10,387 | 1,182 | 256 |
| 2008 | 18,778 | 15,804 | 2,213 | 761 | 16,937 | 14,452 | 1,885 | 600 |
| 2009 | 24,745 | 20,632 | 2,987 | 1,126 | 22,264 | 18,845 | 2,519 | 900 |
| 2010 | 30,040 | 23,602 | 4,814 | 1,624 | 27,001 | 21,410 | 4,204 | 1,387 |
| 2011 | 36,726 | 27,256 | 7,236 | 2,234 | 31,940 | 24,099 | 6,219 | 1,622 |
| 2009 구성비 | 100.0 | 83.4 | 12.1 | 4.5 | 90.1 | 91.3 | 84.3 | 79.9 |
| 2010 구성비 | 100.0 | 78.6 | 16.0 | 5.4 | 89.9 | 90.7 | 87.3 | 85.4 |
| 2011 구성비 | 100.0 | 74.2 | 19.7 | 6.1 | 87.0 | 88.4 | 85.9 | 72.6 |

주: 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임.

자료 : 통계청(2011). KOSIS.

## 4. 요보호아동 현황

요보호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입양, 가정위탁, 시설보호 등 다양한 형태의 보호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요보호아동 수는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의 IMF 외환위기 이후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증가추세였으나, 경제가 안정화됨에 따라 몇 년 전부터는 약간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은 1990년대에는 주로 미혼모 아동, 기아, 비행, 가출이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부모의 학대, 부모이혼, 부모사망 또는 실직 등으로 인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00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긴급전화(1391)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사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나, 주로 사회의 양극화, 가정해체의 증가 등 사회변화에 의한 것으로도 보여진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요보호아동수가 줄어

들고 있는데, 이는 전체적으로 아동수의 감소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현재 요보호아동은 총 7,483명으로 2010년에 비해 1,107명이나 감소하였다.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은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등으로 인한 것이 3,928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미혼모로 인한 것이 2,515명이다. 비행·가출아동도 741명이나 되고, 기아 218명, 미아 81명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 표 5-1-10 〉 요보호아동 현황 및 발생원인

(단위 : 명)

| 연 도 | 총아동 발생수 | 귀가및 연고자 인도 | 요보호아동의 발생원인 | | | | | | | | | |
|---|---|---|---|---|---|---|---|---|---|---|---|---|
| | | | 계 | 기아 | 미혼모 아 등 | 미아 | 비행 가출 부랑 | 학대 | 부모 빈곤 실직 | 부모 사망 | 부모 질병 | 부모 이혼 등 |
| 2011 | 8,436 | 953 | 7,483 | 218 | 2,515 | 81 | 741 | 1,125 | 418 | 536 | 154 | 1,695 |
| 2010 | 9,960 | 1,370 | 8,590 | 191 | 2,804 | 210 | 772 | 1,037 | 586 | 772 | 203 | 2,015 |
| 2009 | 10,500 | 1,472 | 9,028 | 222 | 3,070 | 35 | 707 | 1,051 | 710 | 763 | 230 | 2,240 |
| 2008 | 11,672 | 2,388 | 9,284 | 202 | 2,349 | 151 | 706 | 891 | 1,036 | 732 | 274 | 2,943 |
| 2007 | 11,394 | 2,533 | 8,861 | 305 | 2,417 | 37 | 748 | 5,354 | | | | |
| 2006 | 16,008 | 6,974 | 9,034 | 230 | 3,022 | 55 | 802 | 4,925 | | | | |
| 2005 | 18,468 | 9,048 | 9,420 | 429 | 2,638 | 63 | 1,413 | 4,877 | | | | |
| 2004 | 20,357 | 10,964 | 9,393 | 481 | 4,004 | 62 | 581 | 4,265 | | | | |
| 2003 | 21,882 | 11,660 | 10,222 | 628 | 4,457 | 79 | 595 | 4,463 | | | | |
| 2002 | 22,341 | 12,284 | 10,057 | 634 | 4,337 | 74 | 749 | 4,263 | | | | |
| 2001 | 21,816 | 11,230 | 10,586 | 717 | 4,897 | 98 | 728 | 4,146 | | | | |
| 2000 | 15,936 | 6,851 | 9,085 | 1,270 | 4,190 | 152 | 1,757 | 1,716 | | | | |
| 1999 | 16,247 | 7,247 | 9,000 | 1,432 | 4,284 | 216 | 3,068 | | | | | |
| 1998 | 15,499 | 4,699 | 10,800 | 1,654 | 5,451 | 286 | 3,409 | | | | | |
| 1997 | 12,209 | 3,941 | 8,268 | 1,376 | 3,137 | 342 | 3,413 | | | | |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1). 2011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요보호아동의 보호는 크게 시설보호와 가정보호로 나뉜다. 시설보호는 아동생활가정, 장애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보호로 구성되고, 가정보호는 가정위탁, 입양, 소년소녀가정으로 나누어진다. 전반적으로 시설보호는 거의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가정위탁은 상승과 감소의 추이를 반복하고 있으며, 입양은 다소 증가→감소→증가→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이다.

〈 표 5-1-11 〉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단위 : 명)

| 연 도 | 조치내용 | | | | | | | | | |
|---|---|---|---|---|---|---|---|---|---|---|
| | 계 | 시설입소 | | | | | 가정보호 | | | |
| | | 소계 | 양육 시설 등 | 일시 보호 시설 | 장애 아동 시설 | 공동 생활 가정 | 소계 | 소년 소녀 가정 | 입양 | 가정 위탁 |
| 2011 | 7,483 | 3,752 | 2,246 | 862 | 32 | 612 | 3,731 | 128 | 1,253 | 2,350 |
| 2010 | 8,590 | 4,842 | 2,445 | 1,751 | 23 | 623 | 3,748 | 231 | 1,393 | 2,124 |
| 2009 | 9,028 | 4,767 | 2,406 | 1,640 | 35 | 686 | 4,261 | 213 | 1,314 | 2,734 |
| 2008 | 9,284 | 4,964 | 2,997 | 1,261 | 39 | 667 | 4,320 | 178 | 1,304 | 2,838 |
| 2007 | 8,861 | 3,245 | 3,189 | | 39 | 17 | 5,616 | 247 | 1,991 | 3,378 |
| 2006 | 9,034 | 4,366 | 4,313 | | 53 | - | 4,668 | 308 | 1,259 | 3,101 |
| 2005 | 9,420 | 4,818 | 4,769 | | 48 | 1 | 4,602 | 407 | 1,873 | 2,322 |
| 2004 | 9,393 | 4,782 | 4,680 | | 38 | 64 | 4,611 | 299 | 2,100 | 2,212 |
| 2003 | 10,222 | 4,824 | 4,747 | | 42 | 35 | 5,398 | 500 | 2,506 | 2,392 |
| 2002 | 10,057 | 4,663 | 4,547 | | 57 | 59 | 5,394 | 673 | 2,544 | 2,177 |
| 2001 | 10,586 | 4,774 | 4,671 | | 41 | 62 | 5,812 | 874 | 1,848 | 3,090 |
| 2000 | 9,085 | 4,481 | 4,332 | | 64 | 85 | 4,604 | 564 | 1,755 | 2,285 |
| 1999 | 9,000 | 4,702 | 4,579 | | 78 | 45 | 4,298 | 572 | 1,776 | 1,950 |
| 1998 | 10,800 | 5,141 | 4,948 | | 132 | 61 | 5,659 | 518 | 1,741 | 3,400 |
| 1997 | 8,268 | 3,928 | 3,664 | | 125 | 139 | 4,340 | 673 | 2,269 | 1,398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각년도.

## 5. 소년·소녀가정 세대 현황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 세대는 1997년 이래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97년(9,544세대) IMF를 정점으로 1999년 7,924세대, 2001년 5,248세대, 2003년 3,994세대, 2005년 2,755세대, 2007년 1,630세대, 2009년 1,054세대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소년·소녀가정의 세대수는 905세대이고, 세대원 수는 1,327명이고, 2011년에는 699세대, 1,020명이다.

2011년 소년소녀가정의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8명, 초등학교 103명, 중학교 264명, 고등학교 601명, 기타 42명이다. 즉, 소년·소녀가정은 고등학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학생이고 초등학생 순이다.

미취학의 경우도 8명이 있어 건강한 양육발달을 위해 가정보호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011년도의 경우 전년도인 2010년(905세대)에 비해 소년소녀가정세대가 149세대 감소하였고, 소년·소녀가정 세대가 가장 많았던 1997년(9,544세대)에 비해서는 무려 1/10(905세대)로 감소하였다.

〈 표 5-1-12 〉 소년·소녀가정 세대현황

(단위 : 명, 세대)

| 연 도 | 세대수 | 전 세 대 원 | | | | | |
|---|---|---|---|---|---|---|---|
| | | 계 | 미취학 | 초등학생 | 중 학 생 | 고등학생 | 기 타 |
| 1990 | 6,696 | 13,778 | 142 | 3,593 | 4,009 | 2,998 | 3,036 |
| 1991 | 6,902 | 13,985 | 121 | 3,650 | 4,093 | 3,194 | 2,927 |
| 1992 | 7,089 | 14,081 | 136 | 3,521 | 4,404 | 3,374 | 2,646 |
| 1993 | 7,322 | 14,293 | 119 | 3,331 | 4,710 | 3,622 | 2,511 |
| 1994 | 7,540 | 14,372 | 124 | 3,026 | 4,940 | 3,892 | 2,390 |
| 1995 | 8,107 | 15,118 | 124 | 2,914 | 5,261 | 4,392 | 2,427 |
| 1996 | 8,849 | 16,001 | 149 | 2,854 | 5,447 | 4,833 | 2,718 |
| 1997 | 9,544 | 16,547 | 174 | 2,830 | 5,382 | 5,516 | 2,645 |
| 1998 | 8,407 | 13,627 | 150 | 2,428 | 4,515 | 5,141 | 1,393 |
| 1999 | 7,924 | 12,427 | 150 | 2,356 | 4,046 | 4,992 | 883 |
| 2000 | 6,229 | 9,579 | 121 | 1,862 | 3,217 | 4,041 | 338 |
| 2001 | 5,248 | 8,060 | 133 | 1,640 | 2,611 | 3,414 | 262 |
| 2002 | 4,531 | 6,947 | 115 | 1,478 | 2,232 | 2,936 | 186 |
| 2003 | 3,994 | 6,184 | 99 | 1,309 | 1,966 | 2,668 | 142 |
| 2004 | 3,504 | 5,444 | 87 | 1,244 | 1,681 | 2,331 | 101 |
| 2005 | 2,755 | 4,332 | 85 | 901 | 1,343 | 1,923 | 80 |
| 2006 | 2,086 | 3,271 | 39 | 572 | 1,031 | 1,570 | 59 |
| 2007 | 1,630 | 2,501 | 25 | 401 | 789 | 1,226 | 60 |
| 2008 | 1,337 | 2,058 | 12 | 292 | 621 | 1.080 | 53 |
| 2009 | 1,054 | 1,596 | 10 | 196 | 440 | 904 | 46 |
| 2010 | 905 | 1,327 | 9 | 149 | 375 | 753 | 41 |
| 2011 | 699 | 1,020 | 8 | 103 | 264 | 601 | 44 |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각년도.

제2장
#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1. 가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 가. 학업중단 청소년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연간 7만 4천명(2012년도) 수준이며, 재학생 대비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9%이나, 고등학교는 1.9%로 학제별 학업중단 비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 중단 비율(43.9%)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전국 16개 광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기초사회생활교육,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복귀 지원, 사회적응 지원 등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 학업중단 청소년 대상 9박 10일 과정의 기숙형 대안캠프 '성장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태도 개선 및 학업복귀 동기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금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에 2주간의 숙려 기간을 도입하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확대·시행하여 청소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학업중단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건전한 성장과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중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내용을 직접 지원하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8개 시·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다.

〈 표 5-2-1 〉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및 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
| 지원대상 | 만 9~18세 이하 위기청소년 중 가구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80%미만인 자<br>(단, 생활, 건강 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미만) |
| 사업내용 |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지원 등 (월10만원~연350만원 지원)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나. 가출 청소년

최근 사회적 문제인 가족 간의 갈등과 가족해체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리생활을 하면서 건강악화는 물론 절도·폭행·성매매 등 범죄 및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가출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6개월 이상의 장기 가출과 반복적인 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 상담, 교육문화 활동을 지원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예방하고 가정복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1) 정책의 변화

1991년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고 1992년 최초로 청소년쉼터가 설치되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소년 선도 예방활동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고, "참여정부"에서는 「가출청소년 쉼터 확대」가 대선공약으로 추진되었다. 2003년에는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2005년 2월 시행)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되었다. 초기에는 한 가지 유형의 쉼터로 운영되다가 가출청소년의 상황 및 욕구수준을 고려하여 지원 서비스 내용을 차별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에 드롭인센터(일시쉼터)를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2005년부터는 중장기적인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장기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 표 5-2-2 〉 청소년 쉼터의 발전단계

| | |
|---|---|
| ① 도입기 | – 1992년 최초의 청소년쉼터 설치·운영<br>– 1998년 5개 광역시별 청소년쉼터 설치·운영 |
| ② 확대기 | – 200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br>– 2003년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법적근거 마련<br>– 2004년 드롭인센터 설치·운영<br>– 2005년 중장기쉼터 설치·운영 |
| ③ 성숙기 | – 2006년부터 정체성,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시행중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사업내용 및 규모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의 생활보호뿐만 아니라 상담, 자립역량 강화, 고충처리, 문화활동 프로그램 기회제공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들의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시설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호)로서 쉼터의 활동범위에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지원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 관리 등이 포함된다. 가출 등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개입, 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청소년쉼터는 자치단체경상보조의 형태(Matching Fund, 정책정율보조)로 지원되고 있다. 2012년 현재 청소년쉼터는 92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아래 표 참조). 청소년쉼터의 운영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나 지역실정 및 여건 등에 따라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2012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전부개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 표 5-2-3 〉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일시쉼터 | 7 | 9 | 9 | 10 | 10 | 10 | 13 |
| 단기쉼터 | 43 | 45 | 42 | 47 | 49 | 48 | 49 |
| 중장기쉼터 | 21 | 25 | 25 | 24 | 24 | 25 | 30 |
| 계 | 71 | 72 | 76 | 81 | 83 | 83 | 92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3) 청소년쉼터 종류 및 유형별 기능

여성가족부에서 운영 · 지원하는 쉼터의 종류는 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이며 그 유형별 기능은 아래 표와 같다. 청소년쉼터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1992년 설립된 서울 YMCA 쉼터이고, 2004년에 가출청소년의 긴급 보호를 위하여 일시보호시설인 '일시쉼터(드롭인센터)'를 서울과 인천, 대전에 각각 설립하였으며, 2012년 현재 일시쉼터 13개소, 단기쉼터는 49개소, 중장기쉼터는 3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 표 5-2-4 〉 쉼터의 종류 및 기능

| 구 분 | 일시쉼터 | 단기쉼터 | 중장기쉼터 |
|---|---|---|---|
| 기 간 | 24시간~9일 이내 일시보호 | 3개월 내외의 단기보호 | 2년 내외 이상 중장기보호 |
| 이용대상 | 일반청소년, 거리생활청소년 | 가출청소년 | 자립의지가 있는 가출청소년 |
| 기 능 |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br>-가출청소년 구조·발견, 청소년쉼터와 연결<br>-먹거리, 음료수 등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등 | -가출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치료서비스 및 예방활동 전개<br>-의식주 및 의료 등 보호서비스제공<br>-가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가출청소년 분류, 연계·의뢰 서비스 제공 등 | -가정복귀가 어렵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환형, 가족형, 자립형, 치료형 등 특화된 서비스 제공 |
| 위 치 | 이동형(차량), 고정형(청소년유동지역) | 주요도심별 | 주택가 |
| 지향점 | 가출예방, 조기발견, 초기개입 | 보호, 가정 및 사회복귀 | 자립지원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4) 청소년쉼터 운영현황

청소년 쉼터 이용현황은 〈표 5-2-5〉와 같으며, 쉼터이용 청소년 실적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쉼터 전산망인 '행정지원시스템'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일시쉼터 14개소를 제외한 단기·중장기 쉼터 78개소의 수용 가능한 총 정원은 892명이다.

〈 표 5-2-5 〉 청소년쉼터 이용현황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예산(백만원) | 3,533 | 4,165 | 4,639 | 4,651 | 5,874 | 6,262 |
| 쉼터수(개소수) | 71 | 72 | 76 | 81 | 83 | 83 |
| 이용인원(명) | 11,018 | 14,360 | 15,133 | 16,519 | 16,687 | 23,427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5)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내실화

청소년쉼터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일시-단기-중장기로 특성화하고, 쉼터유형별로 운영모형 및 운영목표 등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쉼터 운영역량 강화 및 가출 청소년의 가정·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 평가사업, 이행실태 점검, 사례관리 및 집단프로그램 경진대회, 종사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 연수, "청소년쉼터 주간"(최초 쉼터 설치일인 10월 28일이 속해 있는 주)을 설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에는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 2.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지원

남북분단이라는 정치·사회적 특수성과 다문화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사회에 이주배경 청소년(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 표 5-2-6 〉 북한이탈 및 다문화 청소년 수

(단위 : 명)

| 총 계 | 북한이탈 | 중도입국* | 외국인부모 | 외국인-한국인부모 |
|---|---|---|---|---|
| 148,255 | 5,665 | 6,714 | 9,621 | 126,317 |
| 근 거 | 2012년 2월 통일부 (9~24세) | 2012년 6월 법무부 | 2011년 1월 행안부** (외국계 주민 자녀 수***) | |

주 : *중도입국청소년 :외국인입국자 중 국민의 미성년 자녀(F-2-2, F-5-3), 만 20세 미만 귀화 허가자 및 귀화신청자 수(법무통계)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행정안전부)
*** 외국계주민 자녀 : '결혼이민자'와 '한국국적 취득자'의 자녀

북한이탈청소년은 입국과정에서의 심리·정서적 상흔과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하나원 교육생 중 상당수가 외상 후 스트레스증후군을 앓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 학습 공백기간, 동급생보다 나이가 많은 문제, 교육시스템 부적응 등으로 학교생활 및 적응이 어려워 중도탈락률이 일반청소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청소년의 입국초기 교육 및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통일부 하나원과 협약을 체결(2009년)하여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에 교사 파견을 지원하고 문화체험학습을 지원하는 등 관련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

청소년의 효과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례관리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 표 5-2-7 〉 북한이탈청소년 연도별 입국현황

(단위 :명, 2012년 4월 기준)

| 대상 \ 연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합계 |
|---|---|---|---|---|---|---|---|---|---|---|---|
| 전체 (입국자수) | 1,141 | 1,282 | 1,898 | 1,382 | 2,026 | 2,551 | 2,801 | 2,914 | 2,401 | 2,706 | 21,102 |
| 6세~20세 (입국자수) | 211 | 220 | 331 | 224 | 336 | 366 | 378 | 464 | 321 | 501 | 3,352 |

자료 : 통일부(2012).

〈 표 5-2-8 〉 북한이탈청소년 재학현황

(단위 :명, 2012년 4월 기준)

| 구 분 | 정규학교 | | | | | | 대안 교육시설 (전일제) | 계 |
|---|---|---|---|---|---|---|---|---|
|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재학현황 | 602 | 602 | 162 | 189 | 212 | 225 | 210 | 2,202 |
| | 1,204 | | 351 | | 437 | | | |
| | 1,992 | | | | | | | |

주 : 대안교육시설은 전일제 민간교육시설에서 수학하는 학생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최근 외국인 부모의 국가에서 생활하다가 청소년기에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청소년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다문화청소년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한 지원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이질성 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 현상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외모, 언어능력 등에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식으로 한국사회의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정 청소년은 신분상의 불안정(미등록)으로 정규학교 입학에 어려움을 겪거나 학교생활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도입국청소년 등 다문화 청소년의 입국초기 적응을 위한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011년에는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의 초기적응력 강화를 위하여 중도입국청소년 초기지원사업(Rainbow School)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어 지도, 편·입학 지도, 정체성 및 교우관계, 생활법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0년 2개 지역 시범실시과정에서 수정 · 보완과정을 거쳐 2011년에는 9개 지역 10개 기관, 2012년에는 10개 지역 15개 기관에서 위탁 운영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한국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2012년 8월 시행)으로, 탈북청소년 및 다문화청소년 등 이주배경 청소년을 지원하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3.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 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개요 및 특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학교와 가정·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공교육을 보완하는 방과후 활동을 통해 공적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여 계층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을 받는 청소년(초4~중2)은 2005년 2,350명(연인원: 225,600명), 2006년 4,200명(연인원: 1,260,000명), 2007년 6,300명(연인원: 1,890,600명), 2008년 7,680명(연인원: 2,165,760명), 2009년 7,245명(연인원: 2,064,825명), 2010년 6,645명(연인원: 1,727,700명), 2011년 8,200명(연인원: 2,148,400명)으로, 점증적으로 대상자 청소년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2011년의 경우 특별지원청소년인 다문화 청소년과 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카데미가 시범적으로 운영되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시행은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 장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을 활용하고 있다. 2008년 185개소가 운영되다가, 2009년 178개소, 2010년 161개소로 잠시 축소운영 되었으나, 2011년 다시 200개소로 대폭 확대 운영되었다.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2005년 시범실시(46개소) 이후 2006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국비 50%)되어 지자체매칭펀드방식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청

소년육성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2011년 현재 국고 154억원의 예산으로 투입되었으며 서울의 경우 30%, 다른 지역의 경우 50%가 국비에서 지원되었다.

〈 표 5-2-9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개요

| 구 분 | 내 용 |
|---|---|
| 사업목적 | 저소득·맞벌이·한부모 등 취약계층 가정의 방과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체험활동·급식·건강관리·상담 등 종합 학습지원 및 복지·보호를 통해 건전한 성장 지원 |
| 사업대상 | 맞벌이·한부모·부모의 실직·파산·신용불량 등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방과후 홀로 지내는 청소년(초4~중2)<br>–2005년 : 2,350명(연인원: 225,600명)<br>–2006년 : 4,200명(연인원: 1,260,000명)<br>–2007년 : 6,300명(연인원: 1,890,600명)<br>–2008년 : 7,680명(연인원: 2,165,760명)<br>–2009년 : 7,245명(연인원: 2,064,825명)<br>–2010년 : 6,645명(연인원: 1,727,700명)<br>–2011년 : 8,200명(연인원: 2,148,400명) |
| 시행주체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운영 |
| 설치시설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공공청소년공부방, 청소년단체시설 등 |
| 사업기간 | 2012년 1~12월 연중 상시 실시(토요일, 방학중에도 운영) |
| 사업 | 200개소(기본형: 1개소 총40명, 1개반 20명, 2개반) 운영 |
| 사업예산 | 154억원(국비지원율: 서울 30%, 지방 5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현황

### (1) 지역별 운영 현황

지역별 운영현황을 보면 16개 시·도가 모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1년 전국적으로 200개소가 운영되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총 5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어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 표 5-2-10 〉 지역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 참여현황 | | | | | | | | | | | | |
|---|---|---|---|---|---|---|---|---|---|---|---|---|---|
| | 계 | 지원형 | | | | 일반형 | | | | 혼합형 | | | |
| | | 소계 | 초등 | 중등 | 혼합 | 소계 | 초등 | 중등 | 혼합 | 소계 | 초등 | 중등 | 혼합 |
| 서울 | 19 | 18 | 16 | 0 | 2 | 1 | 1 | 0 | 0 | 0 | 0 | 0 | 0 |
| 부산 | 11 | 11 | 8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구 | 9 | 9 | 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인천 | 6 | 6 | 2 | 1 | 3 | 0 | 0 | 0 | 0 | 0 | 0 | 0 | 0 |
| 광주 | 5 | 5 | 4 | 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대전 | 5 | 5 | 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울산 | 4 | 4 | 2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기 | 38 | 37 | 24 | 6 | 7 | 0 | 0 | 0 | 0 | 1 | 1 | 0 | 0 |
| 강원 | 11 | 11 | 9 | 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북 | 10 | 10 | 1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충남 | 12 | 12 | 9 | 3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북 | 16 | 16 | 9 | 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전남 | 17 | 17 | 10 | 5 | 2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북 | 11 | 11 | 8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 경남 | 18 | 18 | 11 | 2 | 5 | 0 | 0 | 0 | 0 | 0 | 0 | 0 | 0 |
| 제주 | 8 | 8 | 5 | 1 | 2 | 0 | 0 | 0 | 0 | 0 | 0 | 0 | 0 |
| 계 | 200 | 198 | 141 | 34 | 23 | 1 | 1 | 0 | 0 | 1 | 1 | 0 | 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2) 운영형태별 운영 현황

전체 200개소 중 지원형은 198개소로 가장 많은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형 1개소와 혼합형 1개소가 각각 설치·운영되고 있다.

〈 표 5-2-11 〉 운영형태별 운영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 시설수 | 비율 |
|---|---|---|
| 일반형 | 1 | 0.5 |
| 지원형 | 198 | 99 |
| 혼합형 | 1 | 0.5 |
| 합 계 | 200 | 1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4. 지역아동센터 운영

### 가. 지역아동센터

#### (1) 지역아동센터의 개념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아동복지법 제16조 1항 11호에서는 지역아동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보고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 취약계층의 초등학생들이 보호·교육·오락을 즐기고 학습지도·외국어·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 (2)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은 보호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로 구분된다. 보호프로그램에는 빈곤·위기·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에는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경제교육,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이 있다. 건전한 놀이와 오락으로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특기적성, 예술치료 등의 활동을 하며,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로 가정방문, 상담·정서적지지, 부모·가족상담, 후원자 연계, 지역사회 내 인적·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

〈 표 5-2-12 〉 지역아동센터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명 | 내 용 |
|---|---|
| 보호프로그램 | ▶ 빈곤 위기 · 방임 아동보호, 일상생활지도, 급식제공, 위생지도 등 |
| 교육프로그램 | ▶ 숙제지도, 기초학습 부진아동 특별지도, 경제교육, 예체능교육, 독서지도 등 |
| 건전한 놀이와 오락 |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 활동, 특기적성, 예술치료 등 |
|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 ▶ 가정방문, 상담 · 정서적지지, 부모 · 가족 상담, 후원자 연계, 지역사회 내 인적 · 물적 자원 연계, 사례관리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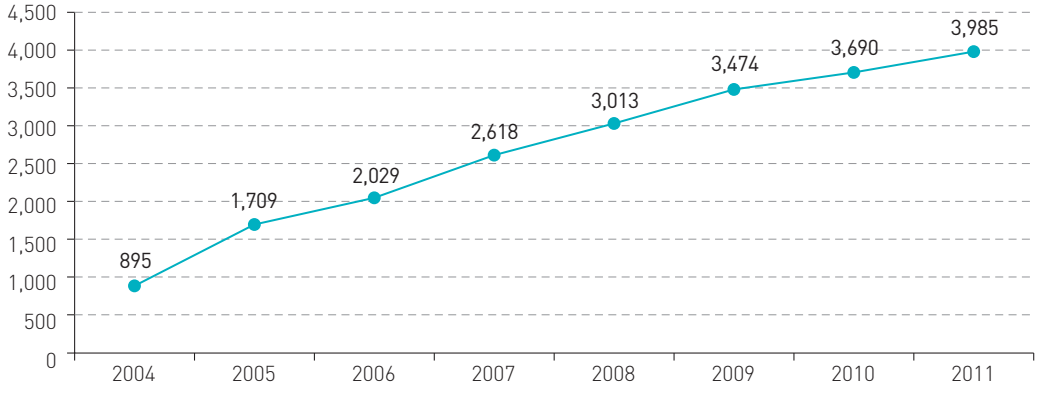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3)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이용 현황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나홀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895개소에서 2007년 2,618개소, 2011년 3,985개소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전남, 서울의 순으로 많다.

[ 그림 5-2-1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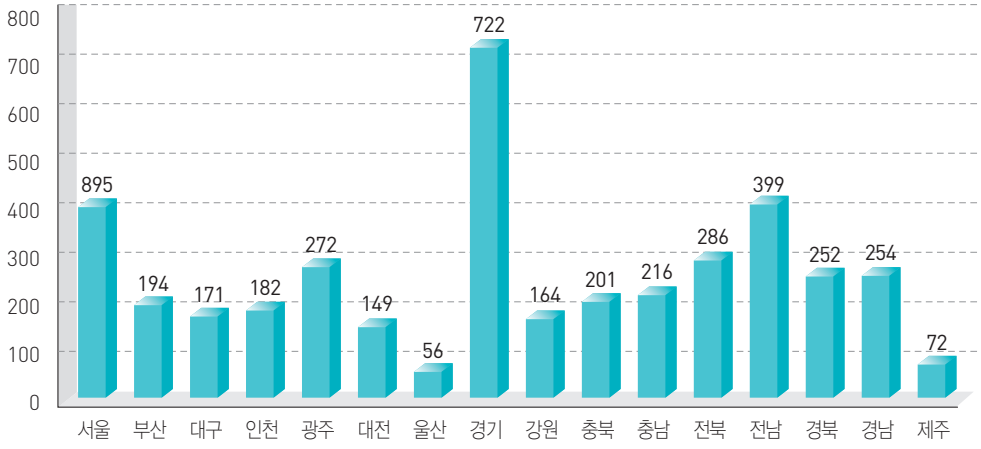
(단위 : 개소)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그림 5-2-2 ]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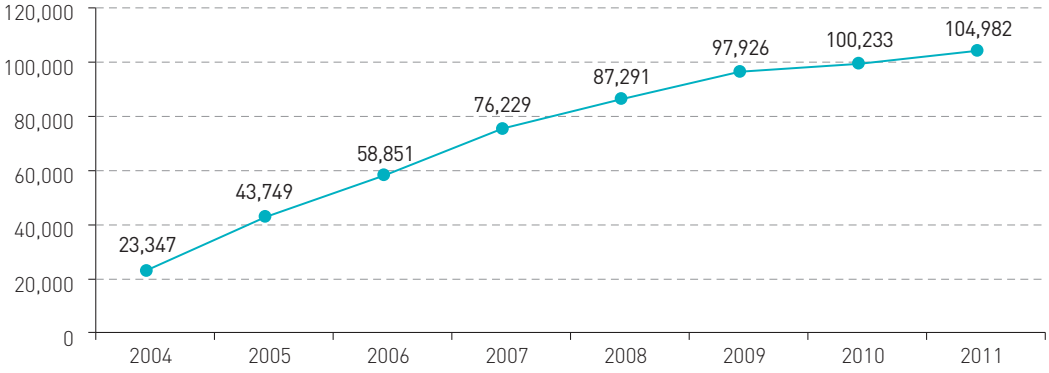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4) 지역아동센터의 이용자 증가

지역아동센터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이용아동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4년에 23,347명의 아동이 이용했으나, 2011년에는 104,982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기관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42,324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초등학교 저학년 37,407명, 중학생 17,37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다문화·새터민 등 특별관리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기준 장애아동 2,882명, 다문화가정 아동 5,781명, 새터민 377명이 이용하고 있다. 경제상황별로는 기초생활수급권과 차상위 계층 아동이 다수(2011년 기준, 6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아동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그림 5-2-3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현황

(단위 : 명)




자료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2).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 (5) 지역아동센터 지원강화

지역아동센터의 긍정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시설 증가에 따라 정부지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3,500개 시설에 대해 월평균 39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운영비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용비용,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어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 표 5-2-13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지원개소(개소) | 500 | 800 | 902 | 1,800 | 2,088 | 2,788 | 2,946 | 3,260 | 3,500 |
| 지원단가 (만원/월) | 67 | 200 | 200 | 200 | 220 | 상반기 : 220<br>하반기 : 320 | 320 | 370 | 395 |
| 예산(억원) | 12 | 73 | 98 | 206 | 282 | 457 | 543 | 695 | 767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2007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학습지도, 생활지도, 예체능 등 특기적성 교육을 담당할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였다. 2012년에는 2,700명의 교사를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여 일자리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있다.

## 5. 드림스타트 사업(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드림스타트(Dream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건강·복지·보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양육지도, 직업훈련·고용촉진서비스를 제공해 가족기능 회복, 양육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스타트는 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하여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복지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4년 민간단체에 의해서 추진하였던 '위스타트(WE: Welfare+Education)'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다. 2007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던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8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지원대상은 0세(임산부)부터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으로, 복지욕구조사 및 위기도 사정을 통해서 대상아동을 선정한다. 단, 만12세 이상의 아동이라도 초등학교 재학생인 경우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 계층 가정,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대리양육, 결손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동발달수준 및 양육환경 위기도 검사(드림스타트 사업 전용 사정도구)를 실시하여 고위기 또는 중위기로 판정된 아동과 저위기로 판정된 아동 중 특정 영역에서 고위기 또는 중위기가 나타난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가.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네트워킹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전반적 삶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보건·복지·교육·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개인별·가구별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 생활 전반에 필요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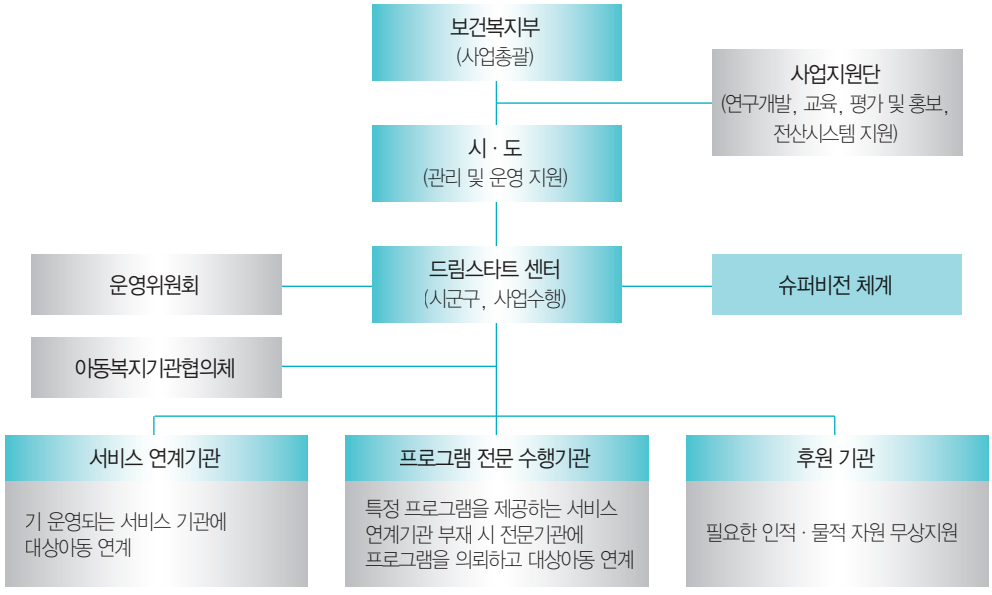
〈 표 5-2-14 〉 드림스타트 서비스 유형 및 서비스별 프로그램

| 서비스 구분 | 프로그램 예시 |
|---|---|
| 신체/건강 서비스 | 건강검진 및 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구강교육, 심리검사, 정신건강 서비스, 산전산후관리, 영양교육 등 |
| 인지/언어 서비스 | 기초학습지원, 영유아 가정방문 교육중재, 경제교육, 인터넷 중독예방, 소방 및 안전교육, 독서지도 등 |
| 정서/행동 서비스 | 사회성발달 프로그램, 아동권리교육, 아동학대 예방, 성폭력 예방, 다문화관련 교육, 진로지도, 멘토링프로그램 등 |
| 가족 및 통합지원 서비스 | 부모교육, 가족상담 및 치료, 가족애착증진 프로그램 등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이러한 제반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공·민간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이를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하는 공공전달체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보건복지부가 정책결정, 재정지원 등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는 드림스타트센터를 만들어 3인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3인 이상의 민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공간이나 서비스는 기존 지역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군·구 드림스타트센터 설치·운영 지원, 전담인력 교육, 운영모델 연구·개발, 사업평가, 후원 개발 및 홍보 등의 아동통합서비스 실무 지원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 그림 5-2-4 ] 드림스타트 수행체계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나.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는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08년부터 본격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먼저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2007년 16개 시·군·구에서 2008년에는 32개 시·군·구, 2009년에는 43개가 늘어난 75개 시·군·구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101개 시·군·구, 2011년에는 131개 시·군·구, 그리고 2012년에는 50개가 늘어난 181개 시·군·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예산 지원도 2008년 99억원에서 2012년 46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 표 5-2-15 〉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 아동 수

(단위 : 개소, 억원, 명)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설치지역 | 16 | 32 | 75 | 101 | 131 |
| 증가 수 | – | 16 | 43 | 26 | 30 |
| 사업예산 | 50 | 98 | 225 | 301 | 372 |
| 아동수 | 3,769 | 9,901 | 26,208 | 32,641 | 44,651 |
| 가구수 | 2,465 | 6,516 | 17,141 | 21,699 | 29,3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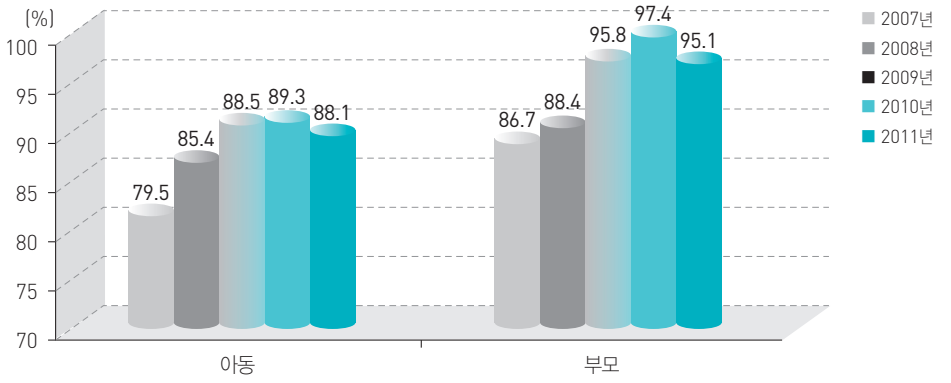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는 시·군·구가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사업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사업초기에는 시·군·구 내 일부지역 아동(2~3개 동,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시·군·구에 따라서 시·군·구 내 전 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였거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6월 현재 56개 시·군·구가 자체예산 추가 투입 등을 통해 사업지역을 확대하였고, 이 중 남양주시 등 35개 시·군·구는 이미 전 지역으로 사업지역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2007년 3,700여 명에서 2011년에는 약 12배가 증가한 45,60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차상위 이하 전체 저소득가정의 아동 수 추정치 453,000여 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 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내실화

이러한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기능인 사례관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아동통합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기본적인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는 통합형·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하고 있으며, 문제의 조기발견 및 개입이라는 예방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 그림 5-2-5 ] 드림스타트 만족도 조사결과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통합형 사례관리란, 서비스의 통합과 전달체계의 통합을 뜻한다. 먼저 서비스의 통합은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의 총 3개 영역에 대해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달체계의 통합이란 민간과 공공 영역의 전달체계의 통합으로, 민간 전문인력(건강, 복지, 보육 전문가)과 전담 공무원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성적인 고위험 대상자의 경우, 개별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원 및 전문성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으며, 또한 각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가 필수적이다.

맞춤형 사례 관리란, 단순히 서비스를 모아 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수혜적 복지 개념을 지양하고, 아동 및 가정의 상태에 따라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드림스타트 사업에서는 대상 아동과 가정을 선정할 때, 우선 위기도 사정(assessment)을 실시하여, 대상을 선별하고 선별된 시점에서부터 위기수준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대상(고위기 또는 중위기)과 일반사례관리 대상(특정 영역 고위기 또는 중위기)으로 구분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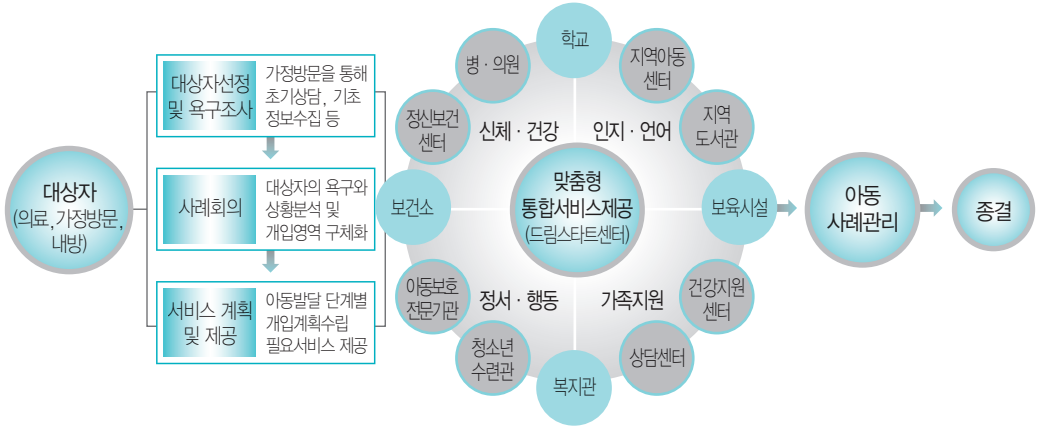
〈 표 5-2-16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의 특징

| 특징 | 내용 |
|---|---|
| 예방적 사례관리 | ▶ 문제가 심각해진 뒤의 사후치료와 개입보다는, 문제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한 예방과 보호의 사례관리를 지향 |
| 통합적 사례관리 | ▶ 서비스의 통합 : 신체·건강/인지·언어/정서·행동서비스<br>▶ 방법론의 통합 : 개별실천, 집단실천, 가족실천, 지역 사회실천<br>▶ 민간과 공공의 전달체계의 통합 |
| 맞춤형 사례관리 | ▶ 일률적이고 정형화된 서비스제공이 아니라, 아동 및 가족별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드림스타트 사업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는 다음과 같이 체계화되었다. 시·군·구에 드림스타트센터가 설치되면, 센터에서는 아동욕구와 인프라조사, 가정방문 인테이크(가정방문 인테이크는 통합서비스 제공 전 단계로서 개별아동과 가구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조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육·복지 등 세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건강검진, 치과치료 등을 제공하고,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아동들에 대하여는 방과후 학교를 열어 지도하거나 지역 학원들과 연계하여 학력 보충 기회 등을 제공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핵심적인 전략 중의 하나는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연계'로, 드림스타트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 복지관, 문화시설, 보육시설, 학원 등을 자원기관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는 다음 그림과 같다.

[ 그림 5-2-6 ]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절차 및 지역자원 연계도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6. 디딤씨앗통장(CDA)사업

최근 양극화 심화에 따른 빈곤층 증가,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 아동들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미래 성장동력인 아동들에게까지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친근감을 갖도록 2009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대국민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디딤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에게 전달이 된다. 단순히 개인 용돈이나 물품으로 주는 것이 아닌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 혼자서 살아가야할 아이

들을 위해 적게나마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다.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추가로 적립(월 3만원한도)하여 저축액이 두배가 되게 한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이 기존의 기부와 다른 것은 우리가 나눔을 실천함으로서 국가가 함께 동참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의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30,000원을 후원하면 국가에서 추가로 30,000원을 적립하여 총 60,000원이 아이들의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되게 된다. 즉, 기부한 후원금이 두 배가 되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희망 주머니' 역할을 하게 된다.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자립을 위해 저축액을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에게 목표와 계획에 맞게 돈을 모으게 하는 경제교육 효과도 있으며, 아이들 나름대로 디딤씨앗통장으로 사회 진출 시 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는 계획을 가지게 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장점도 있다. 2011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2011년 1999년생, 2012년 1999년생, 2000년생)가 추가로 포함되었다. 아동이 매월 6만원(아동 3만원, 국가 3만원)을 0~18세까지 적립 시 1,930만원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현재 4만2천명의 아동이 월평균 3만1천원을 저축하고 있다.

〈 표 5-2-17 〉 디딤씨앗통장 저축 현황

| 연 도 | 가입대상 (명) | 가입자 (명) | 가입률 (%) | 월평균 적립액(원) | 적립금 누계(억원) | | |
|---|---|---|---|---|---|---|---|
| | | | | | 아동 | 정부 | 계 |
| 2009 | 43,143 | 36,469 | 84.5 | 28,184 | 258 | 223 | 481 |
| 2010 | 42,030 | 40,829 | 97.1 | 29,129 | 377 | 308 | 685 |
| 2011 | 45,088 | 42,985 | 95.3 | 31,826 | 510 | 409 | 919 |

주 : 만기(18세) 후 통장보유 아동 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7. 가정보호 및 시설보호사업

정부는 부모의 빈곤·실직·실종 등으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시설보호, 입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호 사업을 추진하였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시적으로 가정 내 보호하는 것으로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지원하고 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주택형 숙사에서 소규모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

다. 소년소녀가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우선 선정해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우선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를 철저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 아동복지시설 보호사업

요보호 아동이 가정과 같은 쾌적한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후된 아동시설부터 기능보강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동시설의 다기능화와 함께 가정 단위의 형태로 전환하여 가정 친화적 생활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법령 전면 개정(2012년 8월 5일)을 통해 보육사 배치기준을 아동의 연령에 따른 기준으로 강화하여 보육사 배치를 확대하였다. 또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양육을 위해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임상심리상담원, 사무원, 영양사의 배치기준도 강화하였고, 자격증 기준도 사회복지사 2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아동 1인당 공간을 넓히고(3.3m²→6.6m²), 침실 1개의 정원도 현행 6인에서 3인 이하로 축소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중 사회부적응이나 정서불안 장애가 있는 아동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제행동 개선 프로그램을 2012년부터 시범적으로 지원(6억원, 약 600명)하고 있다.

〈 표 5-2-18 〉 아동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 연 도 | 계(현원) | | 양육시설 | | 직업훈련시설 | | 보호치료시설 | | 자립지원시설 | | 일시보호시설 | | 종합시설 | |
|---|---|---|---|---|---|---|---|---|---|---|---|---|---|---|
|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시설 | 인원 |
| 2011 | 280 | 16,523 | 242 | 15,313 | 1 | 32 | 10 | 455 | 12 | 249 | 12 | 113 | 3 | 113 |
| 2010 | 280 | 17,119 | 238 | 15,787 | 2 | 69 | 11 | 495 | 12 | 235 | 14 | 402 | 3 | 131 |
| 2009 | 280 | 17,586 | 239 | 16,239 | 2 | 65 | 11 | 514 | 12 | 262 | 13 | 368 | 3 | 138 |
| 2008 | 285 | 17,992 | 242 | 16,706 | 2 | 69 | 10 | 477 | 12 | 257 | 14 | 341 | 5 | 142 |
| 2007 | 282 | 18,426 | 243 | 17,161 | 3 | 72 | 8 | 404 | 13 | 269 | 13 | 365 | 2 | 155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시설아동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자립지원 프로그램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아동의 자립의지·자립기술 능력을 향상시키고, 퇴소 후 실제적인 지원과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으로 2008~2010년 3년간 전국 13개 시설(양육시설 11개소,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2개소)에서 4세 이상~24세 자립연장아동까지 자립지원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Ready? Action!)을 개발하여 2011년부터 전체 아

동복지시설에서 운영하고 있고, 2012년부터는 그 대상을 그룹홈,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 전부개정안 (2012년 8월 5일 시행)에 자립지원 및 아동자립지원계획 수립, 전담기구설치, 자립지원추진협의회구성의 제도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생활(퇴소) 아동을 위해 제공되고 있는 자립지원서비스에는 자립지원정착금 지급, 전세자금 우선지원, 영구임대·주택 우선 분양, 자립지원시설 거주, 폴리텍대학 입학 우선기회 부여, 뉴스타트 프로젝트/인턴십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 나. 가정위탁 지원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200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2012년 8월 5일 시행)하여 가정위탁 희망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시·군·구에도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정위탁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11년말 11,630세대, 15,486명 아동이 가정위탁으로 보호되고 있다.

〈 표 5-2-19 〉 가정위탁 보호 현황

(단위 : 세대, 명)

| 연 도 | 계 | | 대리양육가정 | | 친인척위탁가정 | | 일반위탁가정 | |
|---|---|---|---|---|---|---|---|---|
|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세대수 | 아동수 |
| 2006 | 10,253 | 14,465 | 6,152 | 9,062 | 3,097 | 4,160 | 1,004 | 1,243 |
| 2007 | 11,622 | 16,200 | 6,975 | 10,112 | 3,651 | 4,850 | 996 | 1,238 |
| 2008 | 11,914 | 16,454 | 7,488 | 10,709 | 3,436 | 4,519 | 990 | 1,226 |
| 2009 | 12,170 | 16,608 | 7,809 | 10,947 | 3,438 | 4,503 | 923 | 1,158 |
| 2010 | 12,120 | 16,359 | 7,849 | 10,865 | 3,365 | 4,371 | 906 | 1,123 |
| 2011 | 11,630 | 15,486 | 7,463 | 10,205 | 3,351 | 4,260 | 816 | 1,021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2003년부터 전국에 17개소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2004년 7월 중앙가정위탁센터를 설치하여 지방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가정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가정에게 양육보조금(월 12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고, 2012년부터 위탁이 종결될 시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에 준하여 자립지원정착금, 대학진학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위탁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 및 세제혜택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대리양육과 친인척 위탁가정을 위해서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위탁아동 1인당 150만원의 과세공제 혜택을 위탁부모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위탁부모의 책임을 경감하고, 후유장애에 대한 보상을 통한 아동보호 증진을 위해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2008년 16,454명의 아동으로 시작해, 2011년 15,486명의 가정위탁 아동 전수가 보험가입되어 있다.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질병에 의한 치료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위로금을 지원 받아 위탁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되어 가정위탁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인당 기준 10만원의 상해보장비가 2011년에는 7만원으로 단가가 낮아졌지만, 담보내용은 확대되어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다.

또한, 2010년 1월부터 입양·가정위탁 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 심리정서 검사·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료비 지원은 2010년 월 16만원 이내(심리검사비 10만원)에서 2012년 현재 월 20만원 이내(심리검사비 20만원)로 증액하였으며, 치료기관 선정 시 상담사 요건 기준에서 한국미술치료학회를 추가하여 심리치료의 범위를 넓혔다. 진료비 청구 부분에서 심리치료지원사업과 관련한 교통비를 별도로 청구(월 2만원 이내,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가능할 수 있게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보호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가구) 중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함으로 만 18세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이끌어 가고 있는 가정을 소년·소녀가정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11년말 기준 전국에 697세대, 1,020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들에게 생계·의료보호 및 교육보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보조금(월 10만원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복비, 영양급식비 및 학용품비·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인사와의 결연을 통해 정서적인 측면에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되도록 하고 있다.

소년·소녀가정은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하여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후견인, 결연기관 담당자, 담당 공무원 등이 수시로 방문·면담하여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나가고 있다. 하지만 소년·소녀가정은 시설보호나 가정위탁에 비해 외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형태이므로, 가능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하는 추진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 라.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아동 5~7인으로 가구를 구성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정서적인 안정과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형태로서 1997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2011년말 기준 정부지원 공동생활가정은 460세대로서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공동생활가정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생활 아동들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를 지원하고, 퇴소 시 양육시설 퇴소아동과 같은 액수의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소규모 가정형태의 보호체계가 요보호 아동에게 심리·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인식하에 시설보호 비중을 낮추는 방안의 하나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2004년 1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복지시설종류에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추가되었다.

〈 표 5-2-20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현황

(단위 : 개소, 명)

| 연 도 | 시 설 | | 보호인원 |
|---|---|---|---|
| | 신고시설 | 지원시설 | |
| 2011 | 460 | 416 | 2,241 |
| 2010 | 416 | 348 | 2,127 |
| 2009 | 397 | 290 | 1,993 |
| 2008 | 348 | 248 | 1,664 |
| 2007 | 276 | 176 | 1,368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마. 입양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2011년 8월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 절차 전반에 아동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원가정에서 우선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입양숙려제'를 도입하여, 미혼모 등이 출산 후 일주일이 지나야 입양동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양부모 자격심사 강화와 가정법원 입양허가제 도입 등을 통해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가족 찾기 등을 위해 본인의 입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양정보공개청구권도 법적으로 인정하였다.

### (1) 입양제도의 개선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요보호아동의 국내·외 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로 성립된다. 이에 따라 입양 성립요건이 입양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이주허가)에서 법원의 입양허가로 강화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된다.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 경력이 있는 자는 양부모 자격을 제한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입양 성립 전 입양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입양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양부모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친생부모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 원가정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가 아동의 출생 후 1주일이 지나야 입양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숙려기간을 두고, 입양 동의 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 시 양육정보 및 정부지원 내용, 입양의 효력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야한다.

그리고 2007년부터 시행해 온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의 법적근거를 신설하였다.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아동이 입양 의뢰 된 때부터 5개월 간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다.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지원을 위해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6개월→1년)하였으며 입양아동과 양부모 간 상호적응 관찰, 아동양육 정보 제공, 입양가정에 수시상담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시하였다.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1년 동안 3개월마다 가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2회 이상은 현장방문을 실시할 것이다.

또한 입양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은 중앙입양원의 입양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위해 중앙입양원에 입양아동 및 그 친생부모, 양부모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도록 하였다.

### (2) 국내입양 활성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 우선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입양조치 되도록 2007년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국내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다양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이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입양 중 장애아동 입양비율이 매우 낮으며, 아동 양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과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의료급여법」개정

(2003년 2월 9일)을 통해 입양아동에 대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입양절차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13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입양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 표 5-2-21 〉 국내·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국내 | 1,641 | 1,461 | 1,332 | 1,388 | 1,306 | 1,314 | 1,462 | 1,548 |
| | (42.1) | (41.0) | (41.2) | (52.3) | (51.1) | (53.9) | (59.1) | (62.8) |
| 국외 | 2,258 | 2,101 | 1,899 | 1,264 | 1,250 | 1,125 | 1,013 | 916 |
| | (57.9) | (59.0) | (58.8) | (47.7) | (48.9) | (46.1) | (40.9) | (37.2) |
| 계 | 3,899 | 3,562 | 3,231 | 2,652 | 2,556 | 2,439 | 2,475 | 2,464 |
|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보조금 지원은 기존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1인당 월 55만 1천원을 지원하였던 것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2010년 차등지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월 57만원을 지원하였고, 2011년 중증 장애아동 입양양육수당 지원액을 상향조정하여 월 62만 7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를 기존 연 252만원에서 2011년 2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2012년부터는 입양아동 양육수당 1인당 지원액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심리치료 지원한도를 월 16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였다.

〈 표 5-2-22 〉 국내입양가정 지원제도 현황

| 지원 내용 | | 지원액 |
|---|---|---|
| 입양비용 지원(2007년~) | | 100~270만원 |
| 양육수당(2007년~) | | (만13세 전까지) 월 15만원/월 |
| 의료급여(2005년~) | | (만18세전까지) 의료급여 1종 |
| 심리치료지원(2010년~) | | (만18세전까지) 월 20만원 한도/월 |
| 장애아동 (만 18세 미만)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1996년~) | 월 627천원, 월 551천원 |
| | 의료비 (1996년~) | 연간 260만원 한도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입양도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공개입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11월부터 입양한 공무원에 대해 20일의 입양휴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기업 근로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2008년 요보호아동의 발생 예방에서부터 국내보호 인프라 확충 등 국내가정 보호, 입양 후 사후관리 및 국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입양 등 국내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하였다.

## 8. 아동 급식 지원

정부는 부모의 실직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또는 부모의 질병, 사망, 가출 등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발생하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여 아동 건전육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 급식소와 연계하여 교육 및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제공되고 있으며, 2001년 11월부터는 국무조정실의 급식지원 확대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취학아동에 대해 조·석식, 미취학아동에 대해서는 조·중·석식을 제공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 주체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다.

사업 시작 이후 1만 5천여 명의 결식 또는 결식우려 아동에 대하여 급식을 실시하여 왔으나 2004년 부터 방학 중, 토·공휴일 중식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하여 급식을 실시하게 되어 여름방학에는 3만 9천명에 대하여 방학 중 급식을 실시하였다. 겨울방학에는 급식지원대상을 결식우려 아동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확대하는 적극적 급식지원으로 추진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학기 중 급식을 받는 학생 중 급식이 필요한 모든 아동들에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7만 여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이 지원되었다.

결식아동의 누락방지를 위해 2008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급식 결정권한을 부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결식을 하는 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였으며, 2009년에는 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주체를 담임교사를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결식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2005년 지방이양 이후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지방비로 급식을 지원하도록 하여 왔으나, 2009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방학 중 급식지원대상자 증가(47만 여명)로 인해 2009년 및 2010년에 한해 국비가 지원되었다.

급식지원 대상자는 연중 조사하되, 전화, 서면 및 방문조사, 교사·통장·이장·반장·이웃주민·자원봉사자 등을 통해 개인별로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계별로 실시하고 급식지원대상자 조사·선정(방문조사 또는 전화상담 등)시 아동의 심리적 상처 등 낙인(stigma) 방지에 유의하고 있다. 아동급식전달 방법은 지역실정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 급식과 인근지역의 일반음식점

급식을 적극 개발하도록 하였고 지역의 도시락업체를 통한 도시락배달과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식지원과 식품만 교환이 가능한 식품권 등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급식전달방법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급식지원대상의 확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등 인적자원과 종교·시민단체 등의 급식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역 물적 자원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이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 표 5-2-23 〉 연도별 아동 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
| 여름방학 (8월) | 겨울방학 (12월) | 여름방학 (7월) | 겨울방학 (12월) | 여름방학 (8월) | 겨울방학 (12월) | 여름방학 (7월말) | 겨울방학 (12월) |
| 294,599 | 415,519 | 545,836 | 476,444 | 483,917 | 485,811 | 471,515 | 471,961 |

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 제3장
# 청소년 상담활동

## 1. 상담서비스

### 가. 청소년상담서비스 배경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성장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기본적으로 불안정하고 변화무쌍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빈번하게 경험하는 청소년의 심리적 고통과 문제는 방치할 경우 성인기에 악화된 형태로 나타나 개인과 사회에 파괴적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우리의 청소년들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족갈등, 또래와의 갈등, 학업 문제, 사회적 압력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어려움들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경우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예방과 개입 및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관광부(당시 체육부)가 청소년상담정책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한 청소년종합상담실(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16개 시·도와 170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1990년에 설치된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은 1993년에 청소년대화의광장(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법인화됨으로써 중앙지도 차원의 상담시설과 지역 중심의 상담지원을 위한 기관설치 및 운영의 기본 틀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 그리고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청소년과 학부모 및 지도자 대상의 제반 상담서비스 제공과 각종 교육 및 연수, 학술 및 연구 활동, 각종 매체상담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심리상담 서비스의 개발과 이러한 서비스의 직·간접 제공에 힘써왔다. 그러던 중 2005년 국가청소년위원회 발족과 함께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심으로 추진된 기존의 보호 업무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청소년 육성 업무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등 청소년 정책 환경의 일대 변혁이 단행되면서, 기존 청소년상담기관의 위상과 역할 및 조직에 있어 큰 변화가 일

어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종합상담실은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과 더불어 그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확대되었다. 또한 2012년 8월 2일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 22조에 따라 한국청소년상담원도 한국청소년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청소년 전문상담 뿐만 아니라 청소년 학업중단·취약계층·인터넷 중독 청소년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을 확대되어 온 것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급속한 문화적 변동, 전통적 가치관과 가정기능의 붕괴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고통은 심화되었으나 이를 예방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가정과 학교 등의 1차적 사회안전망 기능은 오히려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학업중단, 가출, 약물남용 등의 문제를 가진 위기청소년들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기존의 청소년상담활동에 위기청소년을 위한 지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구축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상담 활동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적극 개입하기 위해서 기존 활동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청소년 문제해결 및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상담기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교육 연수 및 상담 실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많은 청소년상담 전문인력을 배출하였다. 또한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영역별 보수교육을 통해 실제 청소년 상담업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일선에서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그 밖에 지속적인 또래상담지도자 양성교육과 활성화 대회를 개최하여 또래상담자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였으며, 품성계발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전국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자료 및 지침서를 개발함으로써 질적으로 향상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동반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고품질의 직무연수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동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상태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좀 더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 많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상담사업은 전문상담의 시범적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제해결에 대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이버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체계 활성화사업에서는 청소년상담 중추기관으로서 지속적인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상담기관 관계자 회의를 통해 상담기관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상담기관들 간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YS-Net 지원사업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능동적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운영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 표 5-3-1 〉 2011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주요 교육연수 실적

(단위 : 명)

| 구 분 | | 수료인원 |
|---|---|---|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 | 735 |
| 또래상담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 | 1,990 |
| 품성계발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 | 1,035 |
| 부모교육지도자 및 전문지도자 | | 893 |
| 센터직원 직무연수 | | 832 |
| 사업별 직무 연수 | 인터넷중독상담 전문가 교육 | 457 |
| | 두드림존 전문가과정 | 362 |
| | 교사직무연수 | 294 |
| | 자살예방교육 지도자 | 244 |
| | 자살위기개입상담전문가 교육 | 61 |
| | 학교폭력예방 '알콩달콩'지도자 | 232 |
| | ADHD 아동-부모 프로그램 지도자 | 326 |
| 총 계 | | 7,461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2011년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상담 이용건수는 43,446건으로 나타났다. 대면상담의 총 건수는 5,529건이었으며, 매체상담은 총 37,917건이었다. 문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문제를 제외하고 대인관계 문제가 26.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로문제 13.6%와 정신건강 10.8%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상담은 정신건강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이어 대인관계가 19.7%, 학업 및 진로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기타를 제외하고 대인관계가 1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탈 및 비행이 12.6%, 학업 및 진로가 10.4% 순이었다. 또한 사이버상담의 게시판상담에서는 대인관계문제가 32.4%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기타상담문제 18.0%, 학업 및 진로문제가 14.4% 순으로 나타났고, 채팅상담에서도 역시 대인관계문제가 30.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기타영역문제 22.8%, 학업 및 진로문제 14.0%로 나타났다.

〈 표 5-3-2 〉 상담방법 및 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 구 분 | 대 면 상 담 | | | 매 체 상 담 | | | | 계 |
|---|---|---|---|---|---|---|---|---|
|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전화상담 | 사이버상담 | | 웹심리검사 | |
| | | | | | 게시판상담 | 채팅상담 | | |
| 지도자 | 12 | 0 | 0 | 257 | 3,877 | 18,322 | 0 | 22,468 |
| 학부모 | 803 | 447 | 87 | 2,703 | 191 | 203 | 0 | 4,434 |
| 일반인 | 13 | 760 | 1 | 1,142 | 871 | 1,543 | 0 | 4,330 |
| 청소년 | 2,137 | 459 | 810 | 957 | 4 | 24 | 7,823 | 12,214 |
| 계 | 2,965 | 1,666 | 898 | 5,059 | 4,943 | 20,092 | 7,823 | 43,446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표 5-3-3 〉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건, %)

| 상담 방법 | 구분 | 가족 | 비행 | 학업 및 진로 | 성 | 대인 관계 | 성격 | 정신 건강 | 생활 습관 태도 | 기타 상담 | 계 |
|---|---|---|---|---|---|---|---|---|---|---|---|
| 개인 상담 | 건수 | 437 | 247 | 442 | 53 | 583 | 204 | 607 | 1 | 391 | 2,965 |
| | 비율 | 14.7 | 8.3 | 14.9 | 1.8 | 19.7 | 6.9 | 20.5 | 0.0 | 13.2 | 100 |
| 전화 상담 | 건수 | 495 | 636 | 524 | 517 | 640 | 138 | 334 | 61 | 1,714 | 5,059 |
| | 비율 | 9.8 | 12.6 | 10.4 | 10.2 | 12.7 | 2.7 | 6.6 | 1.2 | 33.8 | 100 |
| 게시판 상담 | 건수 | 631 | 115 | 710 | 187 | 1,604 | 288 | 440 | 79 | 889 | 4,943 |
| | 비율 | 12.8 | 2.3 | 14.4 | 3.8 | 32.4 | 5.8 | 8.9 | 1.6 | 18.0 | 100 |
| 채팅 상담 | 건수 | 1,781 | 539 | 2,816 | 858 | 6,048 | 1,031 | 2,183 | 254 | 4,582 | 20,092 |
| | 비율 | 8.9 | 2.7 | 14.0 | 4.3 | 30.1 | 5.1 | 10.9 | 1.3 | 22.8 | 100 |
| 계 | 건수 | 3,344 | 1,537 | 4,492 | 1,615 | 8,875 | 1,661 | 3,564 | 395 | 7,576 | 33,059 |
| | 비율 | 10.1 | 4.6 | 13.6 | 4.9 | 26.9 | 5 | 10.8 | 1.2 | 22.9 | 100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다. 시·도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현황과 실적

### (1)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2년 8월 2일 전부개정 시행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광역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전문기관으로서 지역의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찾아가는 상담전문가인 청소년동반자 운영,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사업,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두드림존, 인터넷중독청소년 치료를 위한 레스큐스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도 심리상담 및 놀이치료, 또래상담사업, 학부모상담자원봉사회 운영, 청소년상담관련 심리교육, 지도자 양성, 학부모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자문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1990년에 대구, 광주에 최초로 청소년종합상담실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1991년도에 부산, 대전, 청주, 1992년도에 인천, 전북(전주), 1993년도에 경기(수원), 강원(춘천), 경남(창원), 1994년도에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북(안동), 1995년도에는 제주(제주), 1997년도에 서울(중구), 1999년 울산에 설치되었었다. 이후, 2006년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변경되었다가 2012년 8월부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 변경되었다.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충북(청주) 1개소이며, 시·도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은 대구, 충남(천안), 전남(무안), 경북(안동), 경남(창원) 등 5개소이고,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등 10개소이다.

### (2)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현황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생활권 중심의 실질적인 청소년상담체제를 구축하고자 170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의 지방비로 운영재원을 지원받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방식을 살펴보면, 170개소 중 시군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 78개소(46%)이며, 시군구에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곳이 7개소(4%)이며, 나머지 85개소(50%)는 청소년유관단체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지역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초자치단체수 대비 설치비율은 전국 7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상담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과 지역사회 내 전문 인력 활용 등의 통합적이고 문제영역별 전문화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표 5-3-4 〉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현황

(단위 : 개소, %)

| 지 역 |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경기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시도 | 수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1 (1) |
| | %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100 |
| 시군구 | 수 | 20 (25) | 6 (16) | 1 (8) | 7 (10) | 3 (5) | 1 (5) | 3 (5) | 9 (18) | 31 (31) | 6 (12) | 16 (16) | 14 (14) | 19 (22) | 13 (23) | 20 (20) | 1 (0) |
| | % | 68 | 31 | 13 | 60 | 0 | 20 | 40 | 50 | 100 | 33 | 100 | 100 | 55 | 48 | 100 | – |

주 : ( )는 기초자치단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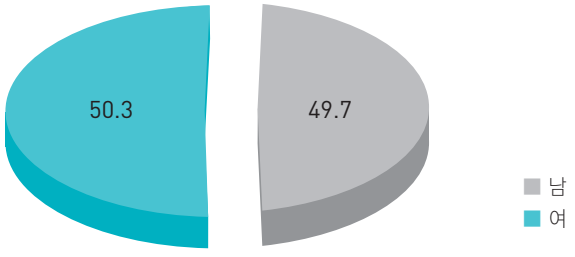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3)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활동

2011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연간상담건수는 4,590,935건으로 지난해 이용건수(4,017,242건)보다 14.3% 증가하였다. 성별로는 남자 2,282,023건(49.7%), 여자 2,308,912건(50.3%)으로 남자이용자보다 여자이용자가 많았다.

[ 그림 5-3-1 ] 201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 성별 비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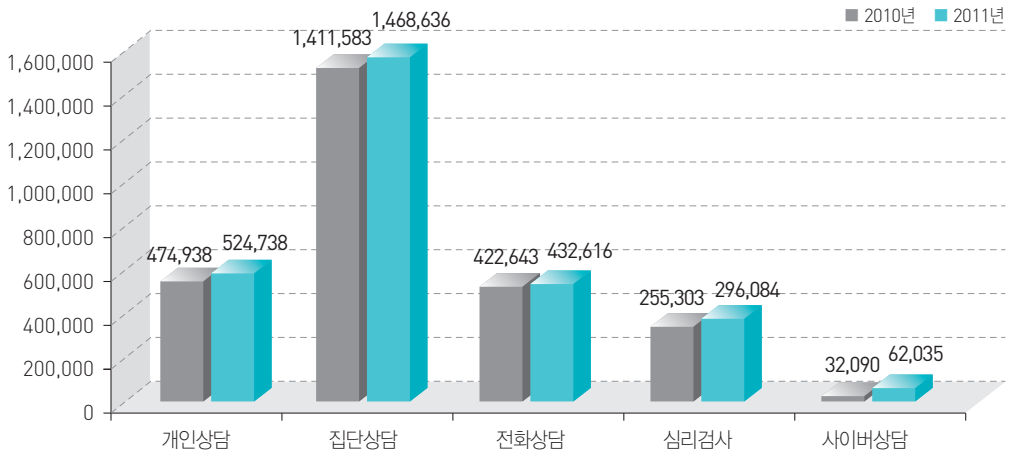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또한 2011년 상담서비스 유형별 이용추세를 살펴보면, 집단상담이 32.0%(1,468,636명)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개인상담 11.4% (524,738명), 전화상담 9.4%(432,616명), 심리검사 6.4%(296,084명), 사이버상담 1.3%(62,0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상담 이용자가 가장 많은 것은 집단상담의 특성상 동시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여러 회기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그림 5-3-2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서비스별 이용자 수

(단위 : 명)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청소년과 성인이용자를 비교하면 청소년이 79.7%(3,660,932명), 성인이 20.3% (930,003명)이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자 중 초등학생이 22.3% (1,024,467명), 중학생 28.5%(1,307,888), 고등학생 21.1%(970,430명), 대학생 1.6%(71,864명), 근로청소년 0.7%(32,236명), 무직청소년 5.5% (254,047명)로 중학생 이용자가 가장 많았다. 성인 이용자는 학부모가 10.9%(500,004명)로 가장 많았으며, 청소년지도자가 6.2%(286,860명), 일반 성인이 3.1%(143,139명)이었다.

〈 표 5-3-5 〉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별·대상별 상담실적

(단위 : 명)

| 구분 | | 성별 | | | 대상별 | | | | | | | | |
|---|---|---|---|---|---|---|---|---|---|---|---|---|---|
| | | 남자 | 여자 | 소계 | 초 | 중 | 고 | 대 | 근로 청소년 | 무직 청소년 | 학부모 | 청소년 지도자 | 일반인 |
| 개인상담 | | 287,116 | 237,622 | 524,738 | 129,442 | 164,343 | 100,948 | 6,707 | 5,459 | 37,143 | 64,397 | 12,740 | 3,559 |
| 집단상담 | | 722,448 | 746,188 | 1,468,636 | 452,529 | 467,057 | 333,843 | 21,178 | 4,618 | 36,313 | 69,879 | 59,213 | 24,006 |
| 전화상담 | | 192,457 | 240,159 | 432,616 | 16,738 | 46,788 | 62,293 | 8,448 | 2,754 | 24,628 | 115,535 | 88,020 | 67,412 |
| 심리 검사 | 개별 | 43,430 | 36,570 | 80,000 | 18,341 | 28,848 | 19,029 | 2,086 | 574 | 3,294 | 6,859 | 279 | 690 |
| | 집단 | 107,117 | 108,967 | 216,084 | 53,378 | 75,498 | 71,001 | 4,535 | 276 | 1,264 | 5,407 | 2,843 | 1,882 |
| 사이버 상담 | 메일 | 14,985 | 23,512 | 38,497 | 5,832 | 12,275 | 11,505 | 2,187 | 97 | 1,108 | 1,672 | 350 | 3,473 |
| | 채팅 | 7,230 | 16,308 | 23,538 | 2,003 | 6,684 | 8,322 | 2,004 | 160 | 2,050 | 352 | 278 | 1,685 |
| 사업수행 프로그램 | | 12,252 | 11,600 | 23,852 | 2,688 | 8,140 | 5,244 | 780 | 247 | 5,110 | 320 | 937 | 386 |
| 지원 서비스 | 개별 | 392,003 | 439,530 | 831,533 | 228,733 | 251,123 | 178,308 | 16,123 | 824 | 27,896 | 57,553 | 42,813 | 28,160 |
| | 그룹 | 498,270 | 444,089 | 942,359 | 114,070 | 244,908 | 178,574 | 7,733 | 17,038 | 114,164 | 176,769 | 77,985 | 11,118 |
| 기타상담 | | 4,737 | 4,345 | 9,082 | 713 | 2,224 | 1,363 | 83 | 189 | 1,077 | 1,261 | 1,402 | 768 |
| 합 계 | | 2,282,045 | 2,308,890 | 4,590,935 | 1,024,467 | 1,307,888 | 970,430 | 71,864 | 32,236 | 254,047 | 500,004 | 286,860 | 143,139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2011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자의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볼 때 학업 및 진로 문제가 23.5%(885,205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16.3% (612,295명), 컴퓨터 및 인터넷사용 13.1%(493,146명), 일탈 및 비행 12.9%(485,852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에 비해 대인관계, 컴퓨터 및 인터넷 사용, 일탈 및 비행 문제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다소 증가하여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겪는 학업 및 진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진로정보탐색 45.5%, 학업흥미/학업동기 부족 17.9%, 학교생활부적응 10.7%, 진로의식 부족 6.5%, 학습능력 부족 5.6%, 등교거부 4.0%, 시험불안/학업스트레스 1.9% 순이었다.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경우, 또래와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친구관계 고민이 69.8%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및 왕따 14.4%, 이성교제 2.1%, 교사와의 관계 1.6%, 어른과의 관계 1.2% 순이었다. 일탈 및 비행문제의 세부유형 빈도를 살펴보면, 학교폭력 26.0%, 금품갈취/절도/도벽 22.0%, 가출 21.0%, 비행친구와 어울림 8.3%, 음주/흡연/약물오남용 6.7%, 학교외의 폭력 4.3% 늦은 귀가/잦은 외박 2.6% 순이었다. 그밖에 컴퓨터/인터넷 사용문제에서는 인터넷 게임과다문제가 63.0%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 표 5-3-6 〉 2011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단위 : 명)

| 구분 | | 가족 | 일탈 및 비행 | 학업/진로 | 성 | 성격 | 대인관계 | 정신건강 | 생활습관/외모 | 컴퓨터/인터넷 사용 | 정보제공 | 법률정보 | 활동 | 기타 | 합계 |
|---|---|---|---|---|---|---|---|---|---|---|---|---|---|---|---|
| 개인상담 | | 64,480 | 83,978 | 112,455 | 7,971 | 58,330 | 95,120 | 63,328 | 5,836 | 28,836 | 2,776 | 172 | 1,204 | 252 | 524,738 |
| 집단상담 | | 52,264 | 119,809 | 359,883 | 43,925 | 66,226 | 307,299 | 65,928 | 9,724 | 355,695 | 24,157 | 0 | 63,726 | 0 | 1,468,636 |
| 전화상담 | | 25,687 | 44,511 | 48,648 | 17,935 | 11,967 | 30,449 | 21,231 | 2,617 | 19,047 | 141,464 | 880 | 6,509 | 61,671 | 432,616 |
| 심리검사 | 개별 | 6,970 | 9,243 | 26,268 | 716 | 12,060 | 9,062 | 6,916 | 456 | 7,454 | 286 | 10 | 90 | 469 | 80,000 |
| | 집단 | 1,921 | 2,538 | 99,702 | 373 | 49,139 | 15,934 | 8,959 | 67 | 35,139 | 938 | 0 | 1,374 | 0 | 216,084 |
| 사이버상담 | 메일 | 2,759 | 1,184 | 8,045 | 2,771 | 1,392 | 14,245 | 1,838 | 1,875 | 200 | 3,825 | 117 | 147 | 102 | 38,500 |
| | 채팅 | 2,295 | 878 | 3,346 | 1,022 | 1,125 | 6,554 | 2,544 | 280 | 155 | 3,063 | 54 | 144 | 2,078 | 23,538 |
| 사업수행 프로그램 | | 346 | 2,127 | 11,777 | 204 | 683 | 2,603 | 945 | 30 | 1,365 | 1,428 | 7 | 2,337 | 0 | 23,852 |
| 지원서비스 (개별) | | 104,968 | 219,715 | 213,261 | 14,416 | 67,003 | 129,887 | 97,394 | 11,662 | 45,003 | 30,712 | 361 | 7,783 | 194 | 942,359 |
| 기타상담 | | 789 | 1,869 | 1,820 | 162 | 502 | 1,142 | 673 | 61 | 252 | 1,435 | 18 | 283 | 76 | 9,082 |
| 합계 | | 262,479 | 485,852 | 885,205 | 89,495 | 268,427 | 612,295 | 269,756 | 32,608 | 493,146 | 210,084 | 1,619 | 83,597 | 64,842 | 3,759,40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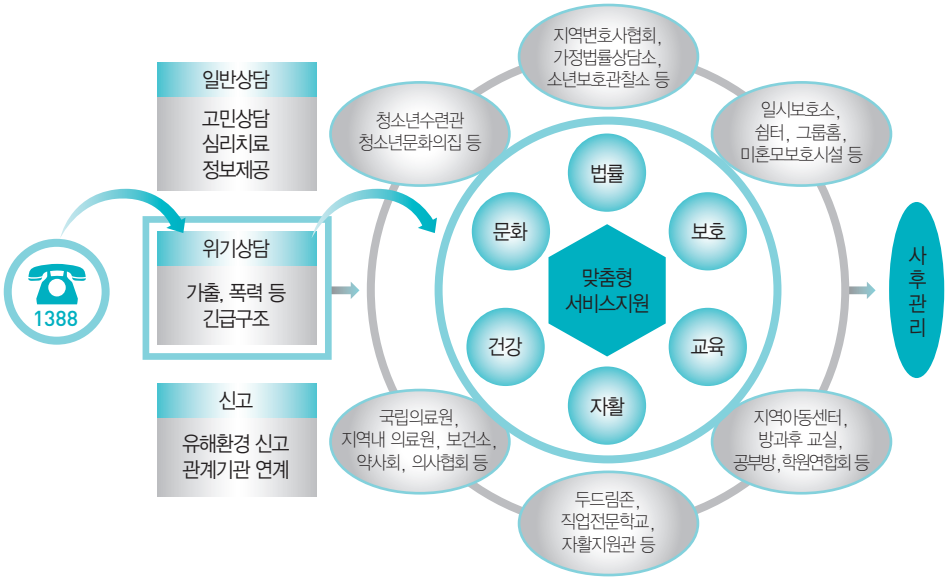
주: 집단지원서비스의 경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을 따로 산출하지 않음.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속적인 이혼율 상승 및 경기침체로 인한 가장의 실직 등으로 가정해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통적 가족 기능 약화에 따라 경제적·심리적으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별로 인프라의 편차가 있거나 상호협력체계가 부재하여 대상자 조기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개별화된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서비스를 통합·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 그림 5-3-3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서비스 체제




자료 : 여성가족부(2010).

CYS-Net 사업은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지원체계 구축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전화상담, 구조, 보호, 치료, 자립, 학습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CYS-Net 사업은 2011년 전국 16개 시·도 및 150개 시·군·구의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45,376명의 위기청소년에게 1,773,892회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연계하였으며, 2013년까지 전국 244개 지역(시·도 16개, 시·군·구 228개)에 확대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더불어, CYS-Net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연계망의 범위를 민간사회로 확대하여 가출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PC방, 노래방, 찜질방 등의 업소를 주축으로 위기청소년의 발견, 긴급구조 및 보호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1388청소년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민간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담당하며 CYS-Net의 민·관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CYS-Net 서비스 이용 실인원은 전년도 대비 12% 상승한 145,376명이고 남자가 53.5%(77,836명)이며, 여자가 46.5%(67,540명)로 여자 보다 남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3-7 〉 CYS-Net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 명)

| 구분 | 남자 | 여자 | 합계 |
|---|---|---|---|
| 2007 | 27,845 | 29,054 | 56,899 |
| 2008 | 40,977 | 40,025 | 81,002 |
| 2009 | 47,825 | 50,195 | 98,020 |
| 2010 | 67,035 | 61,391 | 128,426 |
| 2011 | 77,836 | 67,540 | 145,376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CYS-Net을 통해 청소년에게 지원된 서비스를 살펴보면, 전체 1,773,892건으로 전년도 대비 26.4% 상승하였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62.2%로 가장 많이 지원된 서비스로 나타났고,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이 13.4%,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이 10.8%, 교육 및 학업지원이 8.3%, 사회적 보호지원이 3.6%, 자활지원이 1.0%, 의료지원이 0.5%,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지원이 0.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5-3-8 〉 CYS-Net 서비스 이용건수

(단위 : 건)

| 구분 | 상담 및 정서적 지원 | 사회적 보호 |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 교육 및 학업지원 | 자활지원 | 의료지원 |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 합계 |
|---|---|---|---|---|---|---|---|---|---|
| 2007 | 303,356 | 25,176 | 55,035 | 6,986 | 2,463 | 4,902 | 1,800 | 13,093 | 412,811 |
| 2008 | 286,069 | 30,497 | 80,857 | 10,740 | 2,754 | 5,759 | 1,362 | 16,243 | 434,281 |
| 2009 | 504,540 | 43,517 | 109,428 | 18,210 | 3,387 | 5,431 | 1,283 | 29,793 | 715,589 |
| 2010 | 882,001 | 62,456 | 225,721 | 84,535 | 11,544 | 6,254 | 1,728 | 129,255 | 1,403,494 |
| 2011 | 1,102,858 | 64,147 | 237,072 | 146,621 | 18,565 | 8,513 | 4,981 | 191,135 | 1,773,892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3.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05년 4월 2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 가출청소년 상담전화 1588-0924, 한국청소년상담원의 상담전화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전화 등을 1388로 통합(2005년 9월 1일)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CYS-Net)의 관문으로 운영하고 있다.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은 청소년은 물론, 학부모, 교사 등 일반국민 누구나 청소년을 위하여 이용하는 전화로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원봉사 및 수련활동 정보제공, 인터넷 중독치료 등 청소년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365일 24시간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1388 전화 일평균 이용 수는 2005년 9월 통합 이후 하루 178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6년도 270건, 2007년도 666건, 2008년 969건, 2009년 1,164건, 2010년 1,158건, 2011년 1,18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기준 16개 시·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160개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등 전국 176개 센터에서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다.

〈 표 5-3-9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주요 실적

(단위 : 건)

| 주요 사업내용 | | 실 적 | | 증감(율) | |
|---|---|---|---|---|---|
| | | 2010년(A) | 2011년(B) | B-A | % |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이용실적 | 통화횟수 | 422,643 | 432,616 | 9,973 | 2.3 |
| | 일평균 | 1,158 | 1,185 | 27 | 2.3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한편, 청소년전화 1388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의 인터넷 홍보, 약사회, PC방 협회 등 청소년 이용기관과의 협약체결을 통한 홍보, 한국교총, SKT 등 단체나 일반기업과 연계로 사회공헌 차원의 청소년전화 1388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TV, 라디오, 신문매체, 지하철, 전광판, 홍보탑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 표 5-3-10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호소문제유형별 이용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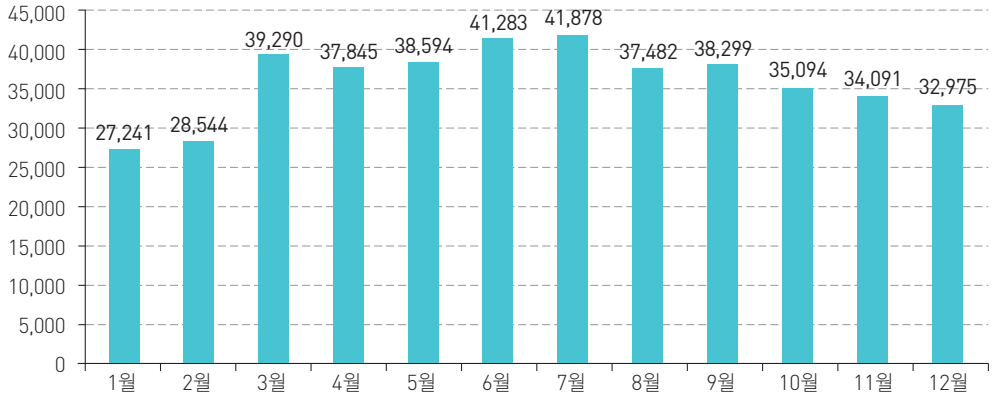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 가족 | 일탈 / 비행 | 학업 / 진로 | 성 | 성격 | 대인 관계 | 정신 건강 | 생활 습관 / 외모 | 컴퓨터/ 인터넷 사용 | 정보 제공 | 법률 정보 | 활동 | 기타 | 합계 |
|---|---|---|---|---|---|---|---|---|---|---|---|---|---|---|
| 2006 | 11,902 | 12,053 | 16,412 | 12,790 | 3,115 | 7,820 | 3,925 | 1,503 | 2,213 | 26,686 | 17 | 86 | 0 | 98,522 |
| 2007 | 25,707 | 37,039 | 32,722 | 17,529 | 6,574 | 18,437 | 10,862 | 3,515 | 5,586 | 70,307 | 450 | 2,243 | 12,089 | 243,060 |
| 2008 | 25,990 | 48,786 | 36,118 | 21,950 | 9,098 | 22,218 | 13,605 | 2,787 | 9,289 | 121,172 | 1,353 | 5,175 | 36,037 | 353,578 |
| 2009 | 25,937 | 40,669 | 35,118 | 21,473 | 9,901 | 25,532 | 16,419 | 2,522 | 12,101 | 181,906 | 976 | 7,649 | 44,539 | 424,742 |
| 2010 | 22,839 | 41,690 | 34,725 | 21,702 | 9,775 | 24,246 | 16,888 | 2,436 | 13,901 | 157,544 | 857 | 5,692 | 70,348 | 422,643 |
| 2011 | 25,687 | 44,511 | 48,648 | 17,935 | 11,967 | 30,449 | 21,231 | 2,617 | 19,047 | 141,464 | 880 | 6,509 | 61,671 | 432,616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그림 5-3-4 ] Help Call 청소년전화 1388 2011년 월별 이용 실적

(단위 : 건)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원(2011).

## 4. 청소년동반자(YC) 프로그램

위기 청소년은 자신감의 약화와 사회적 도움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로 인해 자발적으로 상담이나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상담전문가가 상담 및 심리, 정서적 지지 등을 통해 위기 청소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청소년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5년 후반,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 청소년의 입장을 이해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장중심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계에 힘쓰고 유기적인 관계형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동반자(Youth Companion)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였다.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 청소년에게 각종 상담, 심리·정서적 지지, 자활 지원, 학습·진로 지도, 문화체험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개 시·도(서울·경기·광주·경남)에서 시범운영을 통해 청소년동반자 223명이 활동하였고, 2008년도에는 16개 시·도로 확대 운영되면서 청소년동반자도 470명으로 확대되었다. 2009년도에는 추경예산을 통해, 800명의 동반자가 추가 선발되어 시도 및 시군구 센터에서 약 1,270명의 청소년동반자가 활동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10년도,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880명의 동반자가 활동하였다. 이와 같이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확대로 인해 보다 많은 위기청소년들이 개인특성과 필요에 따른 수준 높은 상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표 5-3-11 〉 연도별 청소년동반자 사업 운영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청소년동반자 수 | 223 | 301 | 446 | 470 | 1,270<br>(추경 800명) | 880 | 880 |
| 수혜 청소년 수 | 1,595 | 3,576 | 8,434 | 14,510 | 24,515 | 25,675 | 26,324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 771명 중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지원받은 281명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받은 여자청소년은 재범으로 인한 입건건수가 서비스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절반이하(수혜청소년 0.42회, 비수혜청소년 1.09회)로 감소하였고, 청소년동반자서비스를 받은 고위험군 청소년 집단의 재범율이 크게 감소(수혜청소년 0.79회, 비수혜청소년 1.26회)하였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청소년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할 경우, 경고, 출석요구, 구인의 순으로 조치를 받게 되는데,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받은 청소년의 구인 횟수는 0.11회로, 비수혜청소년의 1.93회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

그밖에 청소년동반자 서비스를 지원받은 청소년 526명의 위기수준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청소년동반자 서비스(3개월)를 받은 직후 뿐 아니라, 종료 6개월 이후에도 위기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등 청소년동반자서비스는 위기청소년의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Do Dream Zone)」

### 가. 추진배경

가출, 비행, 학업중단, 가정해체 등의 취약청소년 중에 성인기로의 자립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매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청년실업 및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국가와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왔다. 취약청소년들은 대부분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와 더불어 저학력에 사회성도 부족하여 사회진출 및 원만한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취약청소년들은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스로 진로를 찾고 직업을 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자립이행과정에 있는 청소년기에는 여러 영역(목표·가치관, 직업준비, 경제관리, 주거생활, 사회기술, 학업교육, 건강, 자원활용기술, 심리정서)에 걸쳐 자립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서비스 내용이 파편화되어 있고 분절적이라서 정보가 부족한 취약청소년이 각각의 필요한 욕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자립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험중심적 자립준비 프로그램 '두드림존(Do Dream Zone)'이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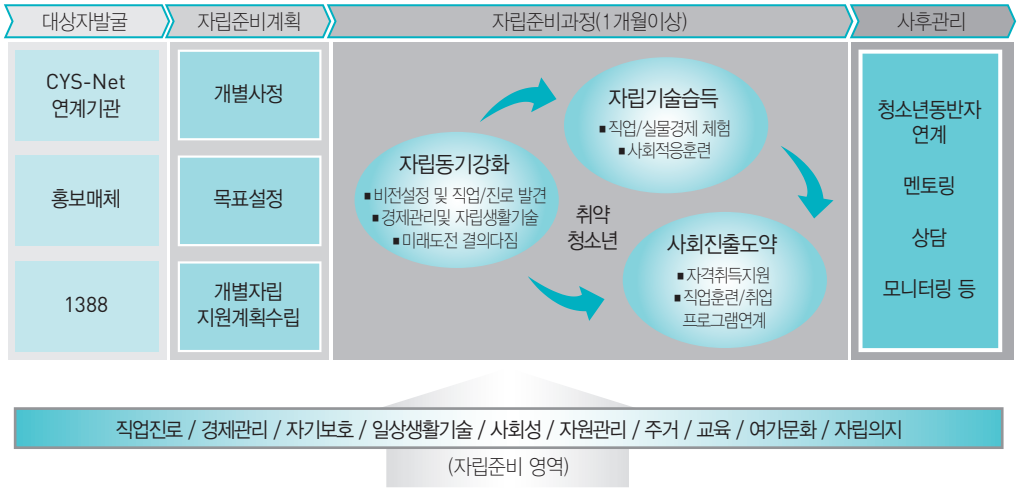
두드림존은 '꿈을 가지고, 미래의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로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속에서 지역사회 유관 기관들과 연계를 맺고 취약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자립준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나. 두드림존 사업의 특징

두드림존은 5가지 차별화된 특징이 있다. 첫째, 입체적 토탈서비스를 지향한다. 즉, 참여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교육-체험-실전과정의 자립준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자립을 앞둔 취약청소년이 종합적인 자립준비과정을 갖도록 돕는다. 둘째, 대상자 개인별로 사전 스크리닝, 개별자립지원계획 수립, 서비스 유형 판정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향한다. 셋째, Edu-Work 개념의 운영 방식이다. 즉, 22종의 시청각 교구재와 놀이도구를 활용하여 놀이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립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넷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와의 연동을 통해 자립지원 외에 학업,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16개의 상설존에는 '자립'이라는 테마 환경을 갖춘 별도의 교육체험장을 통해 실제적인 출퇴근 훈련 등 다양한 체험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과 목표를 구체화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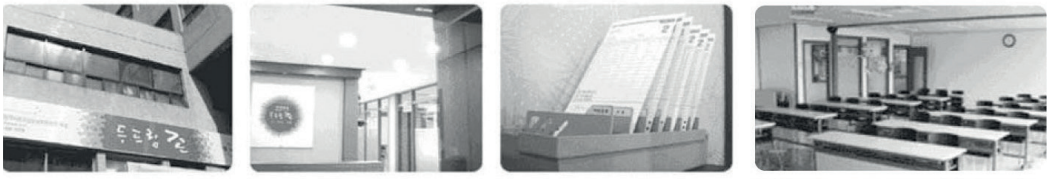
두드림존 서비스는 만 15~24세 사이 학업중단이나 가출, 가정해체 등으로 적절한 가정의 돌봄이 부족한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교정·보호·복지시설이나 자립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과정은 대상자 선별, 자립준비계획 수립, 유형별 자립준비 서비스 제공(1과정–자립동기 강화과정, 2과정–자립기술 습득과정, 3과정–사회진출 도약과정),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참여자에게는 개인별 자립준비계획에 따라 직업진로, 경제관리, 주거생활관리 등 다양한 영역의 자립준비 서비스가 제공된다.

[ 그림 5–3–5 ]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사업 지원체계




두드림존 사업은 2007년에 개발되어 그동안 두 차례의 개정연구 및 특성화연구를 거쳐, 두드림존 프로그램(6회기 집중형), 두드림존 특성화 프로그램(9영역 61모듈 선택형), 직업체험 프로그램(소·풍), 실물경제체험 프로그램(뻔뻔비즈) 매뉴얼 4종이 개발되어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전국 36개 지역의 상설 두드림존 16개소와 시범 두드림존 20개소에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2년에는 5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 그림 5–3–6 ] 두드림존 상설시범센터



두드림존 프로그램은 자립동기 강화(1과정), 자립기술 습득(2과정), 사회진출 도약(3과정)의 세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표 5-3-12 〉 두드림존 프로그램

| Ⅰ 과정 : 자립동기 강화 | | |
|---|---|---|
| 구분 | 자립동기화 프로그램 ⓐ | 자립동기 유지서비스 ⓑ |
| 소요시간 | 20~26시간(1주~4주) | 3~4주 이상 |
| 구성형태 | 6회기 34모듈 집단프로그램(구조화) | 개별서비스(비구조화) |
| 주요내용 | – 진로목표 동기화<br>– 올바른 경제 마인드 형성<br>– 직업세계 이해<br>– 구직기술(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br>– 자립생활 준비<br>– 진로설계 | – 개별상담<br>– 현장방문<br>– 전화, 온라인 모니터링<br>※ 주1회 이상 선택적 개입 |

| Ⅱ 과정 : 자립기술 습득 | | | | |
|---|---|---|---|---|
| 구분 | 단위 프로그램 | | | |
| | 소·풍<br>(소중한 직업풍경 속으로) | 뻔뻔비즈<br>(Fun Fun Biz) | 두드림캠프 | 사회적응 프로그램 |
| 주요내용 | 직업체험 | 실물경제체험 | 진로종합캠프 | 자립준비에 필요한<br>기술습득 |
| 목적 | 직업진로탐색,<br>직업에 대한 이해 확대,<br>직업진로 동기수준 향상 | 실생활에서의<br>경제개념 이해,<br>경제적 자립준비 동기강화 | 실습 및 체험활동을<br>통한 자립준비 기술 습득 | 사회진출 및 적응에 필요한<br>자립준비기술 습득 |
| 소요기간 | 1일 | 1~2일 | 2~3일 | 1일~3주 |
| 형태 | 소규모·중규모·<br>대규모 모델 | 사전교육+체험 | 기숙형 | 개별서비스/집단상담 |
| 비고 | 복수 참여 가능 | 시·도 두드림존은<br>연1회 이상 필수 | 시·도 두드림존은<br>연1회 이상 필수 | 지역 자체적으로<br>기획 가능 |

| Ⅲ 과정 : 사회진출 도약 | | |
|---|---|---|
| 구 분 | 대 상 | 세부 지원내용 |
| 자격취득<br>지원 | • 직업에 필요한 자격 취득을<br>희망하는 청소년 | – 자격증 취득과정 안내 및 지원<br>–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한 졸업자격 획득 촉진 |
| 취업<br>프로그램<br>연계 | • 취업이 시급한 청소년<br>• 인턴십 희망 청소년 | – 고용노동부 취업프로그램 연계 : 구직등록 및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지원, 취업 후 직장생활 적응 지원<br>– 자체 취업지원 서비스 : 구직서류(이력서, 자기소개서) 보완, 면접지원(모의면접 및 동행면접), 지지모임, 사내멘토 연결, 사업주 면담 등 |
| 직업훈련<br>연계 | • 곧장 취업이 아닌 직업훈련을 통한<br>직업기술 습득이 필요한 청소년 | – 직업훈련학교(학원) 연계 등 |

## 다. 위기·취약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의 토대 마련

이전의 청소년 자립지원사업은 대부분 아동양육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학교에서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의 발달과정상 필요한 진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되거나, 단편화된 교육 위주로 진행되어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웠다. 두드림존 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취약청소년 토탈자립지원사업으로 구상되어 추진되어 왔다. 이를 위해 두드림존은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에 필수적인 8대 영역(자립의지, 직업진로, 경제관리, 자기보호, 일상생활관리, 사회적 기술, 자원활용기술, 주거관리)에 걸쳐 종합적인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함으로써, 과도기적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원활한 자립이행을 촉진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7년에 12개소로 시작된 두드림존은 2011년 현재 전국적으로 36개소(상설두드림존 16개소, 시범두드림존 2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두드림존 1~3단계에 참여한 인원은 2007년에 총 2,750명에서 2011년에 총 18,629명으로 늘어나 모두 45,00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그 중 4,000여명의 청소년들이 자격취득, 직업훈련, 학업복귀 등 자립이행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2012년에는 두드림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전국 50개 지역에 두드림존을 설치하여 16,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두드림존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두드림존은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자립생활관 등 자립지원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대기업이나 정부·민간단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직업체험·학습지원·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최종단계인 자립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정책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 제4장
#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 1. 청소년의 체격과 체력

2011년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만6~17세)의 체격검사 결과, 17세의 평균 신장은 남학생이 173.7cm, 여학생이 161.1cm로 2010년 남학생 173.7cm, 여학생 160.9cm와 비교할 때 남학생은 차이가 없고, 여학생은 0.2cm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17세의 평균 신장을 10년 전인 2001년과 비교하면 남학생은 0.6cm, 여학생은 0.4cm 증가하였다.

2011년 연령별 체격의 성차를 살펴보면, 6~8세까지는 대체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신장이 1cm 이상 크지만, 9세에는 1cm미만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다가 10~11세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커지고, 12세가 되면서부터 다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평균신장이 2cm이상 커지기 시작하여 17세가 되면 12cm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1 〉 성별·연령별 신장의 추이

(단위 : cm)

| 측정연도 | 6세 | | 7세 | | 8세 | | 9세 | | 10세 | | 11세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996 | 119.6 | 118.5 | 125.2 | 124.2 | 130.6 | 130.0 | 135.7 | 135.3 | 140.8 | 141.7 | 146.6 | 147.9 |
| 1997 | 119.8 | 118.3 | 125.5 | 124.3 | 130.9 | 129.9 | 135.9 | 135.5 | 141.0 | 142.0 | 146.8 | 148.4 |
| 1998 | 119.8 | 118.5 | 125.7 | 124.0 | 130.9 | 129.5 | 136.2 | 135.6 | 141.2 | 142.0 | 147.3 | 148.8 |
| 1999 | 120.1 | 118.6 | 125.7 | 124.3 | 131.0 | 129.8 | 136.2 | 135.5 | 141.6 | 142.4 | 147.5 | 149.1 |
| 2000 | 120.1 | 118.9 | 125.8 | 124.9 | 131.3 | 130.1 | 136.6 | 136.0 | 141.9 | 142.3 | 148.1 | 149.2 |
| 2001 | 120.3 | 118.8 | 126.2 | 124.8 | 131.4 | 130.3 | 136.8 | 136.2 | 142.2 | 142.5 | 148.2 | 149.1 |
| 2002 | 120.3 | 119.1 | 126.4 | 125.0 | 131.9 | 130.6 | 136.9 | 136.5 | 142.4 | 143.1 | 148.6 | 149.6 |
| 2003 | 120.8 | 119.4 | 126.7 | 125.4 | 132.2 | 130.9 | 137.1 | 137.0 | 142.9 | 143.5 | 148.7 | 149.8 |
| 2004 | 120.6 | 119.6 | 126.7 | 125.2 | 132.1 | 131.1 | 137.6 | 137.0 | 142.9 | 143.7 | 149.1 | 150.3 |
| 2005 | 120.6 | 119.3 | 126.5 | 125.3 | 132.0 | 131.0 | 137.3 | 137.1 | 143.0 | 143.7 | 149.1 | 150.3 |
| 2006 | 121.7 | 120.2 | 127.1 | 125.8 | 132.6 | 131.5 | 138.7 | 138.3 | 143.5 | 144.4 | 150.0 | 150.9 |
| 2007 | 121.6 | 120.4 | 127.4 | 126.1 | 132.9 | 131.8 | 138.6 | 138.4 | 143.7 | 144.7 | 150.4 | 151.1 |
| 2008 | 122.0 | 120.7 | 127.4 | 126.2 | 133.1 | 131.7 | 138.7 | 138.5 | 143.5 | 144.6 | 150.2 | 151.0 |
| 2009 | 121.9 | 120.6 | 127.7 | 126.2 | 133.0 | 132.0 | 138.3 | 138.0 | 143.9 | 144.7 | 150.5 | 151.0 |
| 2010 | 121.8 | 120.6 | 127.7 | 126.4 | 133.1 | 132.0 | 138.4 | 138.1 | 144.0 | 144.6 | 150.2 | 151.2 |
| 2011 | 121.7 | 120.5 | 127.8 | 126.4 | 133.5 | 132.3 | 138.7 | 138.4 | 143.9 | 144.8 | 150.4 | 151.1 |
| 측정연도 | 12세 | | 13세 | | 14세 | | 15세 | | 16세 | | 17세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996 | 152.9 | 153.2 | 159.9 | 156.4 | 165.5 | 158.5 | 169.4 | 158.8 | 171.1 | 159.6 | 172.0 | 160.1 |
| 1997 | 153.7 | 153.5 | 160.3 | 156.7 | 165.7 | 158.6 | 169.6 | 159.2 | 171.6 | 160.0 | 172.2 | 160.3 |
| 1998 | 153.6 | 153.7 | 160.8 | 156.8 | 166.3 | 158.7 | 169.8 | 159.3 | 172.0 | 159.9 | 172.6 | 160.5 |
| 1999 | 154.3 | 153.9 | 161.3 | 157.0 | 166.6 | 158.7 | 170.3 | 159.6 | 171.9 | 159.9 | 172.7 | 160.6 |
| 2000 | 154.9 | 154.4 | 161.8 | 157.3 | 167.2 | 158.9 | 170.4 | 159.5 | 172.2 | 160.2 | 173.0 | 160.5 |
| 2001 | 155.2 | 154.3 | 162.2 | 157.5 | 167.2 | 159.0 | 170.9 | 159.7 | 172.2 | 160.2 | 173.1 | 160.7 |
| 2002 | 155.5 | 154.3 | 162.4 | 157.5 | 167.2 | 159.3 | 170.7 | 160.0 | 172.5 | 160.3 | 173.3 | 160.9 |
| 2003 | 155.9 | 154.8 | 162.5 | 157.6 | 167.7 | 159.3 | 171.1 | 160.1 | 172.6 | 160.6 | 173.6 | 161.0 |
| 2004 | 156.2 | 154.8 | 163.3 | 157.7 | 167.8 | 159.4 | 171.4 | 160.3 | 172.7 | 160.6 | 173.6 | 161.6 |
| 2005 | 156.4 | 154.9 | 163.2 | 157.9 | 168.5 | 159.3 | 171.6 | 160.2 | 172.8 | 160.7 | 173.6 | 161.0 |
| 2006 | 158.1 | 156.1 | 164.2 | 158.2 | 168.7 | 159.5 | 171.8 | 160.4 | 173.0 | 160.7 | 173.9 | 161.1 |
| 2007 | 158.3 | 156.1 | 164.2 | 158.3 | 169.2 | 159.7 | 172.0 | 160.4 | 173.1 | 160.7 | 173.9 | 160.9 |
| 2008 | 158.1 | 155.9 | 164.3 | 158.4 | 169.1 | 159.7 | 172.0 | 160.5 | 173.3 | 160.8 | 173.9 | 161.2 |
| 2009 | 157.8 | 155.7 | 164.3 | 158.0 | 169.1 | 159.6 | 171.9 | 160.4 | 173.2 | 160.7 | 173.8 | 161.1 |
| 2010 | 157.9 | 155.5 | 164.2 | 158.2 | 168.9 | 159.6 | 171.8 | 160.6 | 173.0 | 160.7 | 173.7 | 160.9 |
| 2011 | 158.2 | 155.8 | 164.6 | 158.1 | 168.9 | 159.5 | 171.8 | 160.3 | 173.1 | 160.7 | 173.7 | 161.1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체중은 17세 남학생 평균 68.3kg, 여학생은 56.2kg이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은 평균 12.1kg 차이가 있었고, 10년 전인 2001년에 남학생은 66.1kg, 여학생은 54.9kg으로 평균 11.2kg차이가 있었다. 2001년에 비해 2011년에 남학생은 2.2kg, 여학생은 1.3kg 증가하였으며, 남녀 간 평균체중의 차이도 0.9kg정도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2 〉 성별·연령별 체중의 추이

(단위 : kg)

| 측정연도 | 6세 | | 7세 | | 8세 | | 9세 | | 10세 | | 11세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996 | 22.9 | 21.9 | 25.6 | 24.6 | 28.9 | 27.9 | 32.6 | 31.0 | 35.8 | 35.5 | 40.0 | 40.1 |
| 1997 | 23.1 | 21.9 | 25.9 | 24.6 | 29.2 | 27.9 | 32.6 | 31.5 | 36.4 | 36.0 | 40.5 | 40.8 |
| 1998 | 23.1 | 22.1 | 26.0 | 24.9 | 29.3 | 27.8 | 32.8 | 31.5 | 36.4 | 35.9 | 40.6 | 40.9 |
| 1999 | 23.2 | 21.9 | 26.1 | 24.9 | 29.3 | 28.0 | 32.8 | 31.4 | 36.5 | 36.1 | 41.0 | 41.2 |
| 2000 | 23.3 | 22.4 | 26.4 | 25.4 | 29.9 | 28.5 | 33.6 | 32.2 | 37.8 | 36.3 | 42.0 | 41.8 |
| 2001 | 23.5 | 22.4 | 26.9 | 25.5 | 30.3 | 28.7 | 34.1 | 32.5 | 38.1 | 36.8 | 42.7 | 41.8 |
| 2002 | 23.8 | 22.7 | 27.1 | 25.8 | 30.7 | 29.4 | 34.6 | 32.9 | 38.8 | 37.6 | 43.9 | 42.8 |
| 2003 | 23.8 | 22.8 | 27.2 | 25.9 | 30.8 | 29.3 | 34.7 | 33.3 | 39.2 | 37.8 | 43.8 | 43.1 |
| 2004 | 24.0 | 22.8 | 27.1 | 25.9 | 30.7 | 29.4 | 34.9 | 33.1 | 39.3 | 37.2 | 44.4 | 43.2 |
| 2005 | 24.0 | 22.9 | 27.3 | 26.0 | 31.0 | 29.4 | 34.8 | 33.4 | 39.4 | 38.1 | 44.5 | 43.6 |
| 2006 | 24.5 | 23.2 | 27.7 | 26.4 | 31.6 | 29.7 | 35.8 | 34.0 | 39.8 | 38.6 | 44.7 | 43.7 |
| 2007 | 24.4 | 23.3 | 27.9 | 26.4 | 31.7 | 29.9 | 35.9 | 34.2 | 40.2 | 38.9 | 45.1 | 44.0 |
| 2008 | 24.7 | 23.5 | 27.9 | 26.4 | 31.9 | 29.9 | 36.0 | 34.3 | 40.1 | 38.6 | 45.5 | 44.0 |
| 2009 | 24.7 | 23.5 | 28.2 | 26.6 | 31.7 | 30.0 | 35.9 | 33.9 | 40.6 | 38.8 | 45.9 | 44.0 |
| 2010 | 24.9 | 23.7 | 28.4 | 26.9 | 32.1 | 30.3 | 35.9 | 34.2 | 41.1 | 39.2 | 46.1 | 44.4 |
| 2011 | 24.8 | 23.6 | 28.5 | 26.8 | 32.4 | 30.5 | 36.3 | 34.3 | 40.6 | 39.4 | 46.0 | 44.4 |
| 측정연도 | 12세 | | 13세 | | 14세 | | 15세 | | 16세 | | 17세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1996 | 45.0 | 45.5 | 50.1 | 49.4 | 55.4 | 51.9 | 59.7 | 53.2 | 61.9 | 54.0 | 64.0 | 54.2 |
| 1997 | 45.7 | 45.7 | 51.1 | 49.6 | 55.7 | 52.4 | 60.1 | 53.2 | 62.2 | 54.4 | 64.1 | 54.8 |
| 1998 | 45.9 | 45.8 | 51.5 | 49.6 | 56.0 | 52.2 | 60.0 | 53.4 | 62.3 | 54.1 | 64.1 | 54.8 |
| 1999 | 46.5 | 45.7 | 51.7 | 49.6 | 56.6 | 52.0 | 60.1 | 53.4 | 62.5 | 54.1 | 64.6 | 54.5 |
| 2000 | 47.4 | 46.7 | 52.9 | 49.9 | 57.7 | 52.5 | 60.8 | 53.3 | 63.2 | 54.2 | 65.3 | 54.9 |
| 2001 | 48.3 | 46.7 | 53.7 | 50.6 | 58.3 | 52.4 | 61.8 | 53.8 | 63.4 | 54.3 | 66.1 | 54.9 |
| 2002 | 49.2 | 47.0 | 54.7 | 51.1 | 59.4 | 53.3 | 62.5 | 53.9 | 64.7 | 54.8 | 66.9 | 55.2 |
| 2003 | 49.4 | 47.5 | 55.0 | 51.1 | 60.2 | 53.3 | 63.6 | 54.1 | 65.6 | 54.9 | 67.6 | 55.4 |
| 2004 | 49.7 | 47.5 | 55.7 | 51.1 | 60.2 | 53.4 | 63.4 | 54.0 | 66.3 | 55.2 | 68.1 | 55.8 |
| 2005 | 50.2 | 47.8 | 55.7 | 51.0 | 61.0 | 53.1 | 64.1 | 54.4 | 66.1 | 55.2 | 68.1 | 56.1 |
| 2006 | 50.7 | 48.0 | 56.6 | 51.2 | 60.5 | 52.9 | 64.3 | 54.2 | 66.5 | 54.8 | 68.2 | 55.4 |
| 2007 | 50.9 | 48.1 | 56.7 | 51.4 | 61.1 | 53.2 | 64.0 | 54.0 | 66.3 | 54.8 | 68.3 | 55.4 |
| 2008 | 50.8 | 48.1 | 56.7 | 51.5 | 61.4 | 53.3 | 63.8 | 53.8 | 65.8 | 54.4 | 67.7 | 55.1 |
| 2009 | 51.9 | 48.0 | 57.0 | 51.2 | 61.5 | 53.3 | 64.2 | 54.3 | 66.5 | 55.2 | 68.1 | 56.0 |
| 2010 | 51.7 | 48.2 | 57.2 | 51.5 | 61.5 | 53.2 | 64.7 | 54.9 | 66.6 | 55.5 | 68.1 | 55.6 |
| 2011 | 52.0 | 48.6 | 57.7 | 51.8 | 61.6 | 53.6 | 64.5 | 54.8 | 66.5 | 55.7 | 68.3 | 56.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신체능력검사를 살펴보면, 10년 전인 2001년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50m 달리기, 오래달리기 및 걷기와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에서 전반적으로 2011년의 기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기본 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단, 2001년에 비해 2011년의 윗몸일으키기 기록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2011년에 윗몸일으키기가 윗몸말아올리기로 개정되면서 그 난이도가 낮아져 기록이 좋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5-4-3 〉 성별·연령별 50m달리기의 추이

(단위 : 초)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9.8 | 10.3 | 9.4 | 10.2 | 8.8 | 9.9 | 8.4 | 9.9 | 8.1 | 10.0 | 7.8 | 9.9 | 7.7 | 10.2 | 7.6 | 10.0 |
| 2006 | 10.1 | 10.5 | 9.5 | 10.2 | 8.8 | 10.0 | 8.4 | 10.1 | 8.1 | 10.2 | 7.8 | 10.1 | 7.8 | 10.3 | 7.9 | 10.5 |
| 2007 | 9.9 | 10.5 | 9.5 | 10.3 | 8.8 | 10.1 | 8.4 | 10.2 | 8.1 | 10.3 | 7.9 | 10.1 | 7.8 | 10.1 | 8.1 | 10.4 |
| 2008 | 9.9 | 10.4 | 9.5 | 10.4 | 8.9 | 9.9 | 8.4 | 10.1 | 8.1 | 10.1 | 7.9 | 10.2 | 8.0 | 10.1 | 8.0 | 10.3 |
| 2009 | 10.0 | 10.5 | 9.6 | 10.4 | 8.7 | 9.9 | 8.4 | 9.9 | 8.1 | 9.9 | 7.8 | 9.9 | 7.7 | 9.9 | 7.7 | 10.1 |
| 2010 | 10.1 | 10.5 | 9.7 | 10.4 | 8.9 | 10.0 | 8.5 | 10.1 | 8.2 | 10.1 | 7.8 | 9.9 | 7.7 | 9.9 | 7.9 | 10.1 |
| 2011 | 9.9 | 10.3 | 9.5 | 10.2 | 8.9 | 10.0 | 8.4 | 10.0 | 8.1 | 10.0 | 7.9 | 10.0 | 7.9 | 10.1 | 7.9 | 10.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4-4 〉 성별·연령별 오래달리기 및 걷기의 추이

(단위 : 분, 초)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6.04 | 6.31 | 5.44 | 6.30 | 9.25 | 7.42 | 8.48 | 7.44 | 8.21 | 7.47 | 7.57 | 7.55 | 7.51 | 7.52 | 7.49 | 8.05 |
| 2006 | 6.14 | 6.45 | 6.02 | 6.36 | 9.36 | 8.29 | 9.10 | 8.26 | 8.48 | 8.30 | 8.16 | 8.10 | 8.17 | 8.13 | 8.28 | 8.37 |
| 2007 | 6.27 | 7.06 | 6.15 | 6.57 | 9.49 | 8.26 | 9.20 | 8.36 | 9.07 | 8.36 | 8.29 | 8.14 | 8.20 | 8.19 | 8.37 | 8.36 |
| 2008 | 6.26 | 6.55 | 6.14 | 7.00 | 9.43 | 8.30 | 9.17 | 8.22 | 8.54 | 8.26 | 8.28 | 8.07 | 8.20 | 8.17 | 8.40 | 8.42 |
| 2009 | 6.29 | 6.56 | 6.15 | 7.00 | 9.34 | 8.20 | 9.20 | 8.36 | 8.44 | 8.22 | 8.23 | 8.03 | 8.15 | 8.08 | 8.19 | 8.23 |
| 2010 | 6.31 | 6.59 | 6.15 | 6.57 | 9.57 | 8.44 | 9.31 | 8.44 | 9.06 | 8.41 | 8.07 | 8.01 | 7.97 | 7.91 | 8.21 | 8.24 |
| 2011 | 6.10 | 6.40 | 5.54 | 6.39 | 9.36 | 8.33 | 9.13 | 8.35 | 8.46 | 8.26 | 8.26 | 8.08 | 8.18 | 8.11 | 8.20 | 8.21 |

주 : 초등학교 1,000m, 중·고 여자 1,200m, 중·고 남자 1,600m.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4-5 〉 성별·연령별 제자리멀리뛰기의 추이

(단위 : cm)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155.0 | 137.9 | 164.6 | 141.9 | 189.0 | 155.5 | 204.3 | 156.7 | 217.8 | 160.8 | 228.6 | 162.6 | 234.4 | 163.4 | 241.3 | 166.3 |
| 2006 | 152.9 | 136.8 | 165.0 | 141.7 | 181.9 | 149.7 | 196.4 | 151.8 | 207.3 | 154.0 | 219.1 | 157.0 | 224.1 | 156.0 | 226.0 | 154.1 |
| 2007 | 151.8 | 136.0 | 163.9 | 139.8 | 180.8 | 149.9 | 195.8 | 151.7 | 207.5 | 153.9 | 216.9 | 156.9 | 223.4 | 159.4 | 222.8 | 155.4 |
| 2008 | 155.0 | 140.4 | 163.7 | 141.3 | 183.2 | 148.3 | 196.9 | 151.5 | 209.2 | 155.3 | 219.3 | 156.4 | 224.4 | 156.6 | 226.2 | 157.2 |
| 2009 | 151.2 | 134.5 | 161.6 | 137.9 | 185.8 | 151.1 | 199.3 | 153.9 | 210.1 | 155.3 | 217.8 | 156.5 | 222.9 | 158.5 | 226.6 | 158.4 |
| 2010 | 148.5 | 132.6 | 157.8 | 135.9 | 173.8 | 140.7 | 186.6 | 142.4 | 197.5 | 144.6 | 219.5 | 155.6 | 223.4 | 156.8 | 226.0 | 156.6 |
| 2011 | 150.3 | 134.6 | 159.7 | 138.8 | 173.4 | 140.8 | 186.8 | 142.2 | 196.7 | 143.7 | 205.0 | 147.6 | 209.5 | 147.8 | 211.8 | 147.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4-6 〉 성별·연령별 팔굽혀펴기/매달리기의 추이

(단위 : 회)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 | | | 22.0 | 6.3 | 25.4 | 6.5 | 29.8 | 7.1 | 34.5 | 9.5 | 36.7 | 9.6 | 39.2 | 10.4 |
| 2006 | – | – | – | – | 24.4 | 5.4 | 26.0 | 5.0 | 30.1 | 5.3 | 33.4 | 5.8 | 35.8 | 5.9 | 34.7 | 6.4 |
| 2007 | – | – | – | – | 23.4 | 5.2 | 25.3 | 4.7 | 27.9 | 6.0 | 32.6 | 6.0 | 34.9 | 6.4 | 33.1 | 6.4 |
| 2008 | – | – | – | – | 23.3 | 5.2 | 25.3 | 5.4 | 27.9 | 5.9 | 32.6 | 5.9 | 34.8 | 6.3 | 33.9 | 6.6 |
| 2009 | – | – | – | – | 23.7 | 5.5 | 25.6 | 6.3 | 28.7 | 6.1 | 33.5 | 7.4 | 35.4 | 7.6 | 35.7 | 7.0 |
| 2010 | – | – | – | – | – | – | – | – | – | – | 32.8 | 8.3 | 35.7 | 8.2 | 34.7 | 7.6 |

주: 여학생은 팔굽혀매달리기(단위: 초).
2011년부터 팔굽혀펴기/매달리기 항목 조사 중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4-7 〉 성별·연령별 윗몸일으키기의 추이(2011년 윗몸말아올리기)

(단위 : 회)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31.4 | 24.7 | 35.3 | 26.2 | 37.4 | 27.0 | 40.5 | 27.3 | 44.6 | 29.4 | 46.8 | 30.9 | 48.0 | 31.7 | 50.1 | 33.4 |
| 2006 | 32.1 | 24.2 | 35.3 | 26.1 | 37.9 | 27.1 | 41.0 | 27.4 | 42.8 | 28.1 | 44.3 | 29.1 | 45.4 | 29.8 | 44.9 | 28.3 |
| 2007 | 31.9 | 24.1 | 35.7 | 26.1 | 38.4 | 26.4 | 40.1 | 26.2 | 42.9 | 27.0 | 44.6 | 28.0 | 46.0 | 29.1 | 44.5 | 28.6 |
| 2008 | 31.9 | 25.3 | 35.8 | 25.8 | 38.0 | 26.4 | 40.8 | 27.6 | 43.0 | 28.3 | 45.6 | 29.2 | 47.1 | 29.9 | 44.4 | 29.3 |
| 2009 | 48.4 | - | 56.3 | - | 38.3 | 27.1 | 41.0 | 28.4 | 43.6 | 28.9 | 45.5 | 29.9 | 47.1 | 30.8 | 46.6 | 29.9 |
| 2010 | 49.7 | 39.0 | 55.9 | 38.9 | 53.9 | 32.6 | 58.2 | 33.0 | 59.2 | 33.0 | 45.6 | 30.9 | 47.0 | 31.2 | 45.6 | 30.3 |
| 2011 | 56.1 | 43.8 | 62.3 | 43.8 | 59.8 | 37.0 | 63.9 | 35.3 | 63.5 | 35.6 | 57.6 | 31.3 | 58.1 | 32.1 | 52.5 | 31.3 |

주: 2011년부터 윗몸말아올리기로 개정.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4-8 〉 성별·연령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의 추이

(단위 : cm)

| 측정 연도 | 초5 | | 초6 | | 중1 | | 중2 | | 중3 | | 고1 | | 고2 | | 고3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2001 | 8.2 | 11.1 | 8.4 | 12.1 | 9.4 | 13.7 | 11.3 | 14.9 | 13.2 | 16.2 | 15.6 | 17.3 | 16.6 | 17.9 | 17.6 | 17.9 |
| 2006 | 9.0 | 12.6 | 8.5 | 13.6 | 9.4 | 14.6 | 10.5 | 15.6 | 11.2 | 16.2 | 13.6 | 16.3 | 14.0 | 16.7 | 14.5 | 16.1 |
| 2007 | 8.2 | 12.0 | 8.2 | 12.8 | 9.0 | 14.4 | 9.9 | 14.9 | 11.2 | 15.6 | 12.4 | 16.5 | 13.4 | 16.7 | 13.8 | 16.1 |
| 2008 | 8.8 | 12.5 | 7.9 | 12.3 | 8.8 | 14.2 | 9.7 | 14.9 | 11.1 | 16.0 | 12.5 | 16.3 | 12.8 | 16.7 | 13.1 | 16.0 |
| 2009 | 7.7 | 12.0 | 7.5 | 12.8 | 9.0 | 14.7 | 10.2 | 15.6 | 11.4 | 16.3 | 12.4 | 17.3 | 14.5 | 17.2 | 13.4 | 16.7 |
| 2010 | 7.5 | 11.9 | 7.0 | 12.6 | 7.6 | 13.7 | 8.6 | 14.4 | 9.8 | 15.1 | 12.8 | 17.3 | 13.0 | 17.7 | 13.7 | 16.9 |
| 2011 | 7.8 | 12.4 | 7.3 | 13.1 | 7.5 | 13.7 | 8.5 | 14.4 | 9.6 | 15.1 | 11.0 | 15.8 | 11.7 | 16.1 | 11.9 | 15.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2. 청소년의 영양과 비만

아동청소년의 연령층별로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평균 섭취분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영양소에 대해 모든 연령층에서 권장량에 근접한 양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칼륨은 모든 연령대에서 권장수준 미만을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만12~18세 청소년의 평균 칼슘섭취량은 권장섭취량의 50% 정도였다. 반면에 나트륨은 모든 연령층에서 기준보다 섭취량이 높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충분섭취량의 2배, 3배로 섭취량이 증가해 이에 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

〈 표 5-4-9 〉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에 대한 섭취 분율

(단위 : %)

| 연령 / 영양소 | 1~2세 | 3~5세 | 6~11세 | 12~18세 | 19~29세 |
|---|---|---|---|---|---|
| 에너지 | 111.4 | 95.3 | 107.0 | 98.1 | 92.3 |
| 단백질 | 253.9 | 230.0 | 211.9 | 161.6 | 154.5 |
| 칼슘 | 99.6 | 77.8 | 67.5 | 57.9 | 70.9 |
| 인 | 149.7 | 166.2 | 133.0 | 133.3 | 174.9 |
| 나트륨 | 200.1 | 226.6 | 262.1 | 300.2 | 329.1 |
| 칼륨 | 94.5 | 77.5 | 77.3 | 77.7 | 84.1 |
| 철 | 114.8 | 110.7 | 116.9 | 86.7 | 124.9 |
| 비타민A | 160.7 | 146.4 | 123.8 | 92.9 | 112.9 |
| 티아민 | 153.0 | 180.3 | 150.2 | 140.6 | 130.1 |
| 리보플라빈 | 166.1 | 148.4 | 137.1 | 100.6 | 104.3 |
| 나이아신 | 126.3 | 131.9 | 132.3 | 112.1 | 122.7 |
| 비타민C | 205.1 | 191.3 | 127.1 | 88.2 | 102.7 |

주 : 영양섭취기준-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 나트륨, 칼륨, 충분섭취량; 기타, 권장섭취량.

자료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다음은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을 섭취한 대상자 분율을 연령층별로 비교한 결과이다. 영양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칼슘은 1~2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50% 이상이 평균필요량에 미치지 못하는 섭취수준을 보여 전반적으로 섭취상태가 불량한 영양소로 파악되었다. 특히 12~18세 연령층에서 대부분의 영양소를 부족하게 섭취하는 대상자 분율이 매우 높았다.

〈 표 5-4-10 〉 영양소별 영양섭취기준 미만 섭취자 분율

(단위 : %)

| 영양소 \ 연령 | 1~2세 | 3~5세 | 6~11세 | 12~18세 | 19~29세 |
|---|---|---|---|---|---|
| 에너지 | 16.3 | 26.5 | 16.5 | 28.6 | 36.9 |
| 단백질 | 1.8 | 1.8 | 2.5 | 13.8 | 15.3 |
| 지방 | 44.5 | 15.8 | 18.5 | 12.7 | 16.4 |
| 칼슘 | 38.8 | 60.9 | 70.0 | 80.5 | 70.1 |
| 인 | 7.9 | 6.2 | 14.9 | 15.2 | 8.5 |
| 철 | 30.0 | 30.5 | 29.0 | 54.6 | 35.2 |
| 비타민 A | 23.5 | 27.5 | 35.9 | 47.9 | 43.4 |
| 티아민 | 16.7 | 6.5 | 12.9 | 24.3 | 30.4 |
| 리보플라빈 | 15.4 | 15.7 | 18.8 | 43.4 | 40.6 |
| 나이아신 | 25.8 | 14.2 | 18.8 | 30.6 | 26.5 |
| 비타민 C | 33.7 | 27.6 | 42.1 | 61.3 | 47.8 |

주 : 영양섭취기준-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2005); 에너지, 필요추정량의 75%; 지방, 지방에너지적정비율의 하한선; 그 외 영양소, 평균필요량.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영양소 섭취부족 대상자 분율은 12~18세에 15.3%, 19~29세에 14.9%로 이들 연령층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에너지/지방 섭취과잉은 19~2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4-11 〉 영양소 섭취부족 및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대상자 분율

(단위 : %)

| 구분 \ 연령 | 영양소 섭취부족[1] | | | 에너지/지방 섭취과잉[2] | | |
|---|---|---|---|---|---|---|
| | 전체 | 남자 | 여자 | 전체 | 남자 | 여자 |
| 1~2세 | 4.9 | 2.8 | 7.2 | 0.9 | 0.0 | 1.9 |
| 3~5세 | 7.1 | 4.7 | 9.7 | 3.2 | 3.8 | 2.6 |
| 6~11세 | 6.6 | 6.3 | 7.0 | 4.0 | 3.8 | 4.2 |
| 12~18세 | 15.3 | 16.3 | 14.0 | 8.5 | 9.6 | 7.2 |
| 19~29세 | 14.9 | 10.3 | 19.8 | 10.0 | 14.3 | 5.6 |

주 : 1) 영양소 섭취부족: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 미만인 분율.
2) 에너지/지방 섭취과잉: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의 125% 이상이면서 지방 섭취량이 적정 에너지 섭취비율을 초과한 분율.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조사 직전 2일간의 끼니별 결식률을 살펴보면 아침식사 결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29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40.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12~18세의 아침식사 결식률이 29.3%로 높았다.

〈 표 5-4-12 〉 끼니별 식사 여부에 따른 결식률 (1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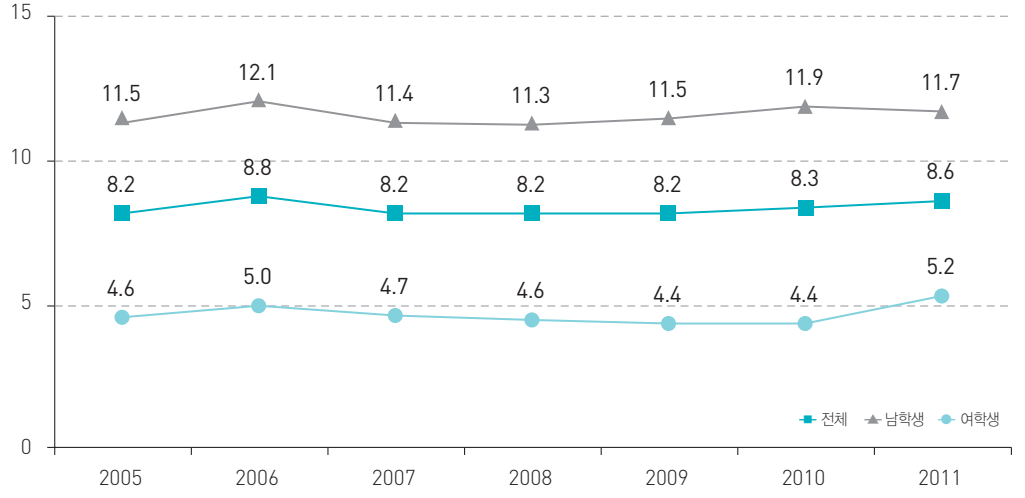
(단위 : %)

| 구분 / 연령 | 아침 | 점심 | 저녁 |
|---|---|---|---|
| 1~2세 | 4.5 | 3.9 | 1.3 |
| 3~5세 | 6.5 | 2.5 | 1.6 |
| 6~11세 | 9.9 | 2.0 | 1.9 |
| 12~18세 | 29.3 | 5.8 | 5.8 |
| 19~29세 | 40.3 | 10.5 | 5.7 |

자료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1). 2010 국민건강통계-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 1차년도(2010)-.

청소년의 비만율은 2011년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남학생의 비만율은 11.7%, 여학생의 비만율은 5.2%로 남학생의 비만율은 여학생의 2배 이상이었다.

[ 그림 5-4-1 ] 청소년의 비만율(중1~고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3.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2010년 청소년의 평생 흡연 경험률은 남학생 34.3%, 여학생 17.3%, 현재 흡연율은 남학생 17.2%, 여학생 6.5%로, 평생 흡연 경험률과 현재 흡연율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 및 매일 흡연 시작 연령에는 성차가 별로 없었으나,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남학생 12.8세, 여학생 12.8세로 같았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흡연 경험률이나 흡연율은 낮으나, 흡연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남학생들과 같은 연령대에 흡연을 첫 경험하고 매일 흡연하게 되는 연령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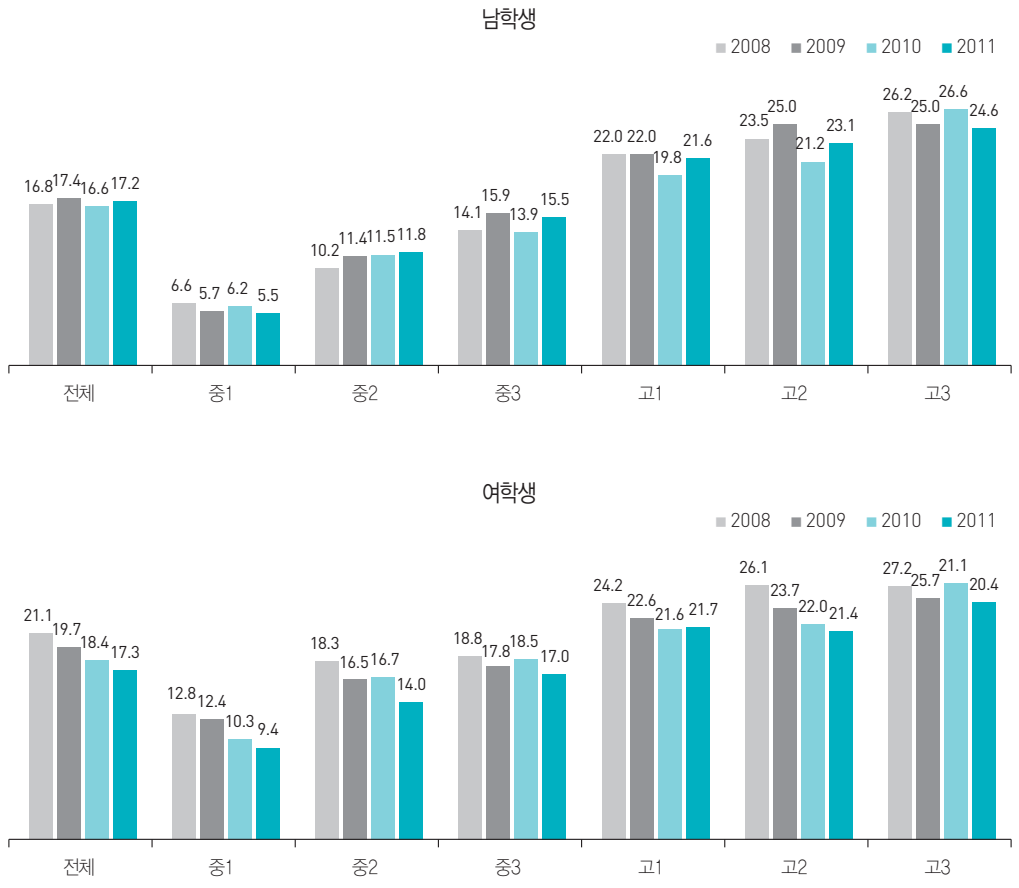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은 2008년 11.2%, 2009년 10.7%, 2010년 9.5%, 2011년 8.0%로 감소하였다. 처음 흡연 경험 연령은 2008년 이후 4년간 12.7세, 2011년 12.8세로 조사되었으며, 매일 흡연하기 시작하는 연령은 2008년 이후 2년간 14.0세, 2010년 13.9세, 2011년 13.8세로 조사되어 연령에는 연도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부터 조사된 간접흡연 노출률은 2011년에도 39.6%로 매우 높아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접흡연 방지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평생 음주 경험률은 남학생 53.8%, 여학생 47.9%,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23.7%, 여학생 17.1%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처음 음주 경험 연령도 남학생 12.9세, 여학생 13.1세로 성차가 크지는 않았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은 2011년 21.4%로 조사되어 10명 중 2명에 가까운 청소년이 초등학교 시기에 첫 음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 대상의 음주예방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 그림 5-4-2 ] 학년별 평생 흡연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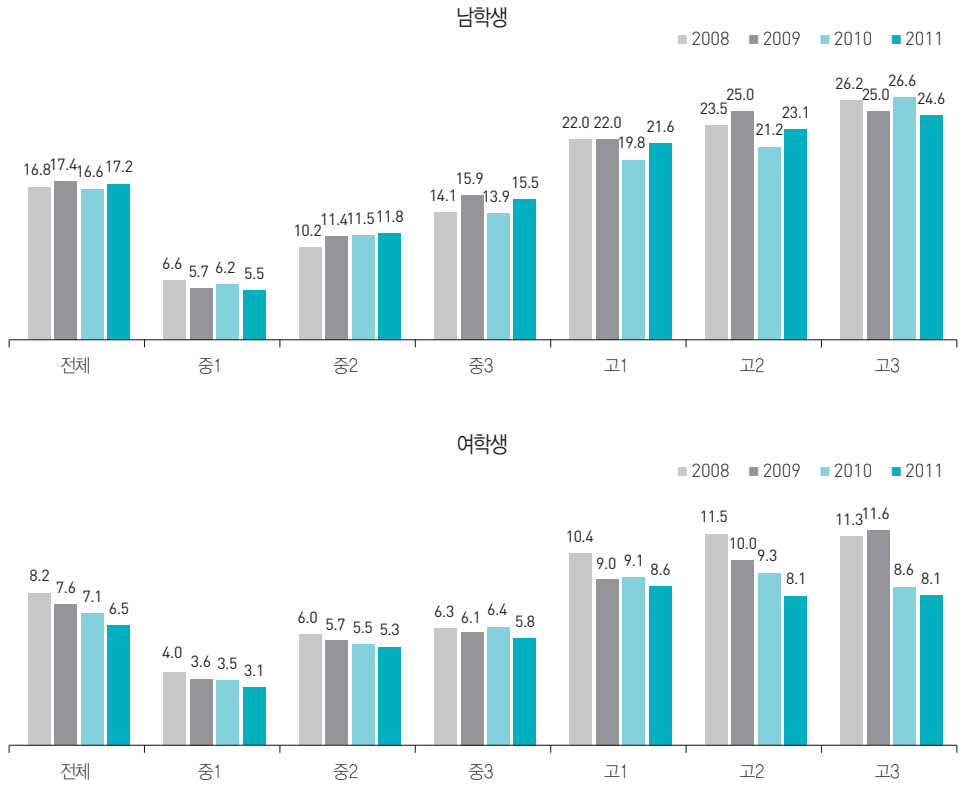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3 ] 학년별 현재 흡연율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표 5-4-13 〉 흡연 관련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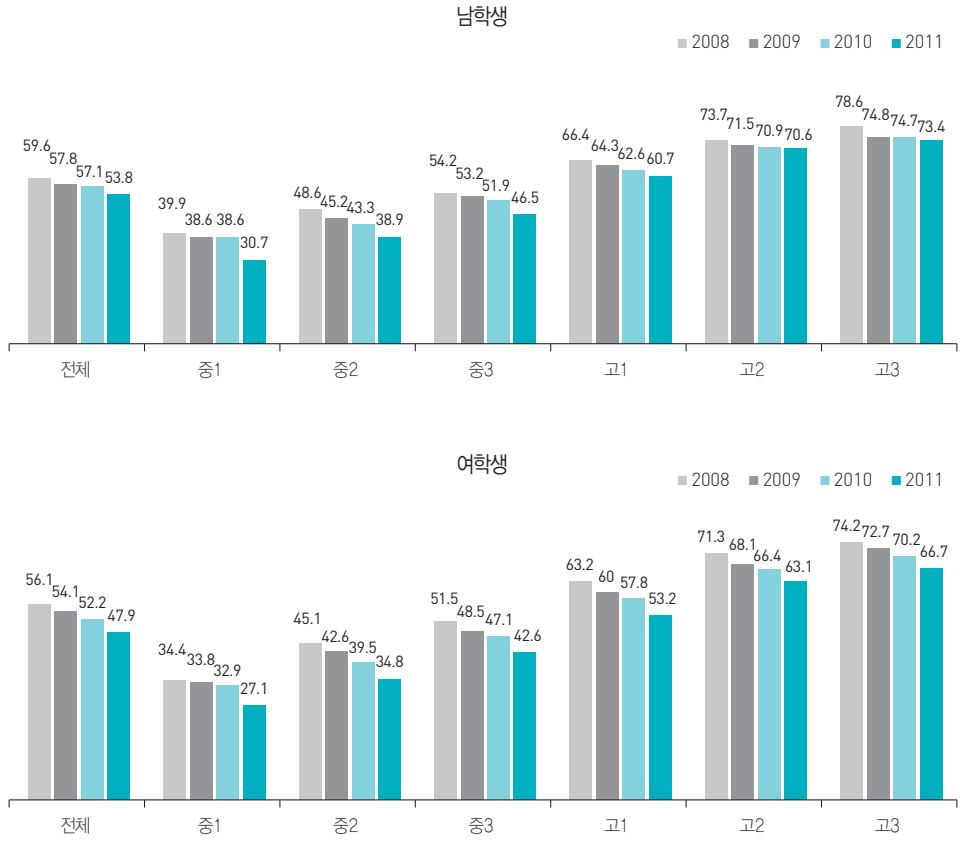
(단위 : 세, %)

| 영역 | 2008년(중1~고3) | | | 2009년(중1~고3) | | | 2010년(중1~고3) | | | 2011년(중1~고3)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처음 흡연 경험 연령 | 12.7 | 12.6 | 12.7 | 12.7 | 12.7 | 12.8 | 12.7 | 12.7 | 12.7 | 12.8 | 12.8 | 12.8 |
| 매일 흡연 시작 연령 | 14.0 | 14.1 | 14.0 | 14.0 | 14.0 | 14.1 | 13.9 | 14.0 | 13.9 | 13.8 | 13.8 | 13.9 |
| 중1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흡연 경험률 | 11.2 | 13.2 | 9.1 | 10.7 | 12.4 | 8.9 | 9.5 | 11.6 | 7.3 | 8.0 | 9.9 | 5.9 |
| 주1일 이상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 | 46.8 | 46.0 | 47.6 | 41.2 | 40.1 | 42.4 | 40.8 | 40.3 | 41.5 | 39.6 | 38.5 | 40.8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4 ] 학년별 평생 음주 경험률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5 ] 학년별 현재 음주율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표 5-4-14 〉 음주 관련 지표

(단위 : 세, %)

| 영역 | 2008년(중1~고3) | | | 2009년(중1~고3) | | | 2010년(중1~고3) | | | 2011년(중1~고3)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처음 음주 경험 연령 | 12.8 | 12.7 | 13.0 | 12.8 | 12.7 | 13.0 | 12.8 | 12.7 | 13.0 | 13.0 | 12.9 | 13.1 |
| 중1 학생의 중학교 입학 전 음주 경험률 | 27.6 | 30.8 | 24.1 | 27.8 | 30.0 | 25.5 | 26.8 | 29.7 | 23.6 | 21.4 | 22.9 | 19.8 |
| 현재 음주자의 위험 음주율 | 44.6 | 41.0 | 49.2 | 47.4 | 44.6 | 51.4 | 47.2 | 44.4 | 51.3 | 48.8 | 46.3 | 52.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4. 청소년의 정신건강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청소년의 분율은 남학생 35.7%, 여학생 49.0%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트레스 인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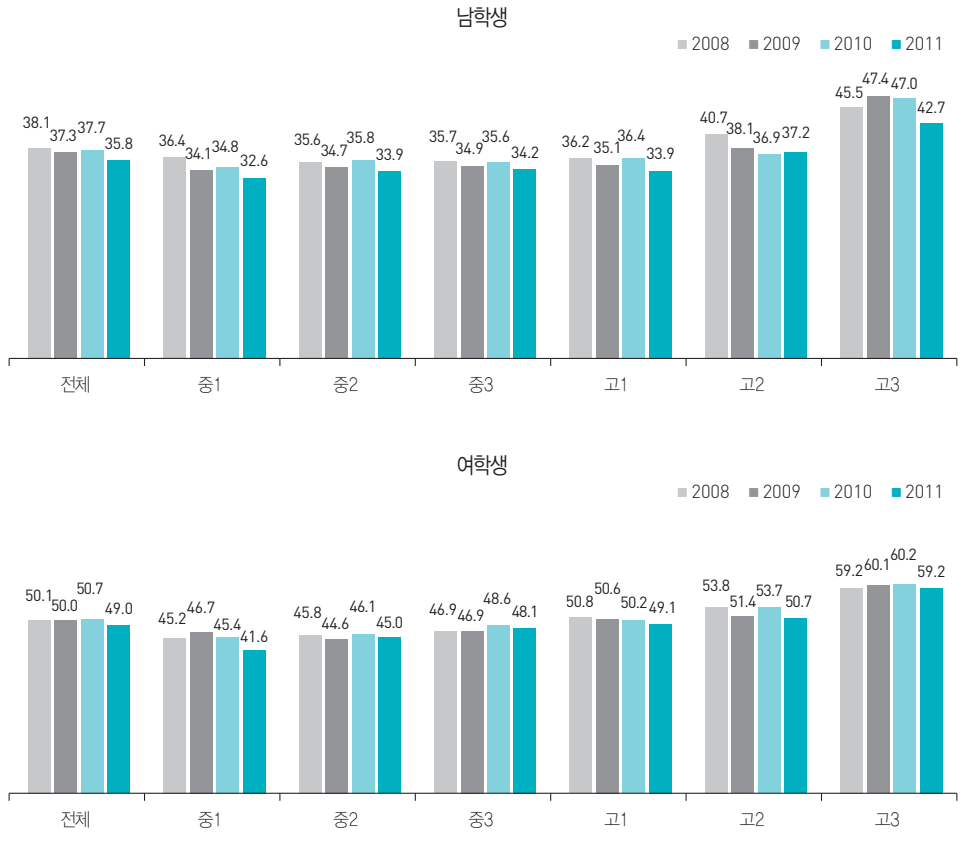
조사 전 일 년 동안 2주 내내 일상생활을 중단할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분율은 남학생 28.0%, 여학생 38.2%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울감 경험률이 증가하여 고3 여학생의 우울감 경험률은 44.2%로 나타났다.

자살 생각률은 남학생 15.4%, 여학생 24.3%, 자살 시도율은 남학생 3.0%, 여학생 5.6%로 여학생의 정신건강이 남학생보다 더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내내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청소년의 33% 정도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청소년 정신건강이 위험수위에 있음을 시사한다.

[ 그림 5-4-6 ] 학년별 스트레스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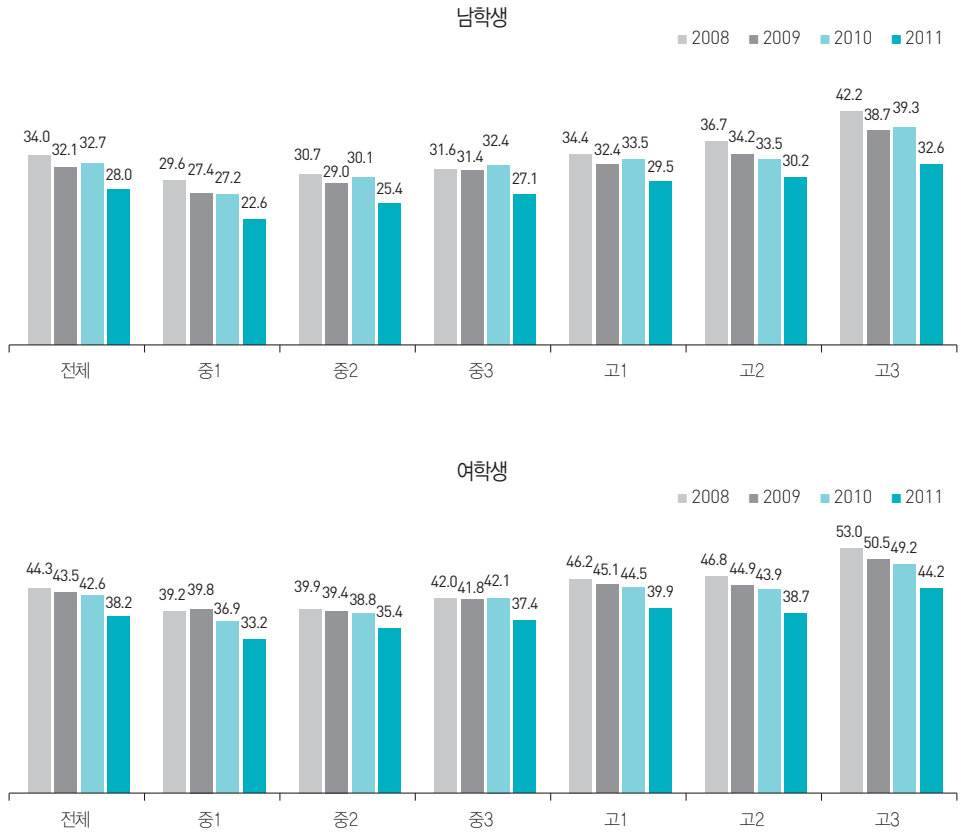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7 ] 학년별 우울감 경험률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8 ] 학년별 자살 생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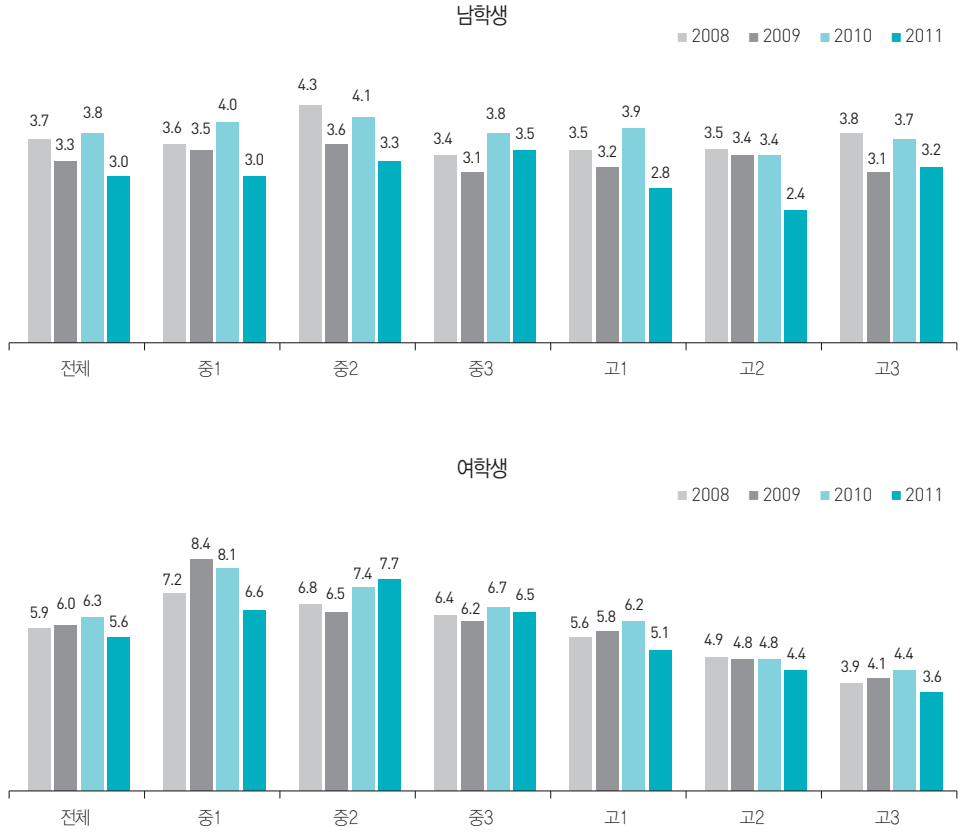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그림 5-4-9 ] 학년별 자살 시도율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각 년도.

## 5. 청소년의 건강대책

### 가.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1월에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을 발표하였다.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 교육청에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을 시달하고, 매년말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하고 있으며, 2007년에 제시된 학생건강증진대책을 보다 강화하였다. 학생건강증진기본방향은 크게 3분야인 보건관리분야, 환경관리분야, 급식관리 분야로 나뉜다. 보건관리분야에서는 학교보건교육 내실화, 학생건강관리 강화, 학교 건강검사철저 및 학생 정신건강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고,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식수, 학교 환경위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급식에서는 학교급식의 영양,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이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표 5-4-15 〉 학생건강증진대책 추진과제

|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한 신체적 · 정신적 · 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 | | |
|---|---|---|
| 보건관리 | 환경관리 | 급식관리 |
| 1. 학교보건교육 내실화<br>2. 학생 건강관리 강화<br>3. 학교 건강검사 철저<br>4. 학생 정서 · 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관리강화<br>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br>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 · 남용 예방 | 7.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대책<br>8. 학교 교사 내 공기질 등 환경 위생 개선<br>9.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보호제도 관리 철저<br>10. 깨끗한 학교 만들기<br>11. 학교 석면관리 종합 대책 추진 | 12. 학교급식 운영 내실화<br>13.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br>14. 영양관리 및 식생활 지도 강화<br>15.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br>16.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br>1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br>18.「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세부과제 추진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보건관리분야의 각 과제별 세부추진방향에서는 특히 체계적인 보건교육, 보건교사 배치, 학생건강정보 홈페이지 개설, 학생정신건강 전문 인력풀 구성, 학생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강구 등이 주목할만 하다.

〈 표 5-4-16 〉 보건관리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 과제 | 추진방향 |
|---|---|
| 1. 학교보건 교육 내실화 | ▶ 체계적인 보건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br>▶ 장학활동 강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 및 부실 운영 방지<br>▶ 학교 보건교육 운영 내실화 |
| 2. 학생 건강 관리 강화 | ▶ 「건강증진학교」모형 개발 및 체계적인 운영 내실화<br>▶ 다양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 강화<br>▶ 보건교사 적극 배치<br>▶ '학생 건강정보 홈페이지(http://schoolhealth.kr)'를 구축·운영 |
| 3. 학교 건강검사 철저 | ▶ 모든 학생에 대한 건강조사 실시<br>▶ 학생건강검진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br>▶ 건강검사 표본학교 지정·운영<br>▶ 학생검진기관 계약 간소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br>▶ 학생 건강지표 관리 및 건강검사 운영체계 개선<br>▶ 건강검사 항목 이외의 검사 금지 |
| 4. 학생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 및 관리강화 | ▶ 「정서·행동발달검사지」를 이용한 선별검사 및 관리 연차적 확대<br>▶ 학교 및 교육청 역량강화를 위한 담당자 전문성 제고 및 업무표준화<br>▶ 학생정신건강 전문 인력풀 구성.<br>▶ 검사결과 및 학생(학부모) 상담관련 보안관리 철저<br>▶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한 학교-지역사회-교육청 네트워크 구축 및 학교 내 협의체 구성·운영 |
| 5.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 ▶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 철저<br>▶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 시 감독청에 즉시 보고 및 방역기관 통보로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br>▶ 「학교 감염병 예방관리매뉴얼」(개정발간)을 각급학교까지 보급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br>▶ 학교내 예방접종 또는 학교단위 단체 예방접종은 금지하고, 방역당국 주관 예방 접종 시에도 사전예진 철저로 부작용 방지(「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6호)」)<br>▶ 학생 손씻기 운동 및 지도 강화 |
| 6. 학생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 | ▶ 학생들의 음주·흡연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건교육시 활용하고, 사전에 접근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시행<br>▶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실시<br>▶ 교원 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 및 인식제고<br>▶ 흡연 등에 중독된 학생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연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br>▶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 전체에 대한 절대금연건물 지정·운영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환경관리분야에서는 안전한 식수공급 및 석면 등과 같은 오염물질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기업, 자활사업단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 표 5-4-17 〉 환경관리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 과제 | 추진방향 |
|---|---|
| 7. 학교 먹는물 위생관리 대책 | ▶ 먹는물 수질관리<br>▶ 지하수 관리<br>▶ 수돗물 관리 |
| 8. 학생 교사내 공기질 등 환경위생 개선 | ▶ 교사(校舍)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br>▶ 일상점검,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시행철저<br>▶ 적정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단계별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br>▶ 신축(증·개축) 및 리모델링 시 교사(校舍)내 환경위생 관련규정 적용<br>▶ 학교 소음피해 방지대책 추진<br>▶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종량제 준수<br>▶ 학교 실험실 폐수처리 대책마련<br>▶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 매뉴얼" 개정 추진 |
| 9.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 교육환경 보호제도 관리 철저 |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고시업무 철저<br>▶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실태점검 및 관리 철저<br>▶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기능 강화<br>▶ 교육환경평가제도 및 학습환경보호위원회 운영, 학습환경조사 제도 내실화<br>▶ 교육환경평가 심의 후 해당 학교용지의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전까지 학교설립예정지에 준하여 관리하고, 해당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마련<br>▶ 민원서비스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 및 결과 통보' 절차를 온라인서비스(G4C) 로 처리<br>▶ 교육환경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br>▶ 각급 학교의 환경위생업무를 지원·지도하고, 교육행정기관에서의 교육환경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담당인력 보강 |
| 10. 깨끗한 학교 만들기 | ▶ 모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추진<br>▶ 사회적 기업, 자활사업단 등과 우선 계약추진<br>▶ 추진실적 점검 |
| 11. 학교 석면관리 종합대책 추진 |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석면 효율적 관리대책' 적극 추진<br>▶ 학교별 건축물 석면관리 전수조사 실시<br>▶ 학교석면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차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선비용 등을 포함한 재원확보 방안 마련<br>▶ 학교별 조사자료를 토대로 개·보수 등 관리 철저<br>▶ 기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에 따른 준비 철저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급식분야에서는 학교급식 운영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서 질관리를 실시하고 있고, 노후 급식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급식종사자의 위생수준 제고, 학생들이 영양가 있고 균형있는 식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영양관리를 강화하되, 나트륨·트랜스지방 제한, 우유급식을 확대하고 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구매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급식비 지원을 하되, 사생활보호를 최대한 하는 등 배려를 하고 있다.

〈 표 5-4-18 〉 급식분야 과제별 추진방향

| 과제 | 추진방향 |
|---|---|
| 12.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 ▶ 학교급식 운영방식 개선<br>▶ 학교급식 업무위탁 등 운영방법의 내실화<br>▶ 교육청 단위 학교급식위원회 설치 및 급식점검단 운영 활성화<br>▶ 학교단위 급식수요자 참여확대<br>▶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표창<br>▶ 학교급식 운영 및 공급자의 책무성 제고<br>▶ 위탁급식 운영관리 지도·감독 강화 |
| 13.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 ▶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로 급식환경 개선<br>▶ 보존식 보관관리 철저<br>▶ 식재료 원산지 심의·확인 및 표시제 시행<br>▶ 급식종사자 개인위생 및 교육강화<br>▶ 학교급식 위생관리시스템 적용의 내실화<br>▶ 학교급식관련시설 위생·안전점검 강화<br>▶ 학교 식중독 원인 조사팀 구성·운영<br>▶ 학교급식 위생사고 발생시 초동단계 신속대응 철저<br>▶ 학교급식소내 안전사고 예방 철저<br>▶ 식기세척제 잔류여부 확인검사 실시 |
| 14. 영양관리 및 식생활지도 강화 | ▶ 학교급식 영양관리 강화: 나트륨·트렌스지방 제한, 우유급식 확대<br>▶ 올바른 식사선택 능력 배양<br>▶ 영양교사 배치 및 식생활 교육·영양상담 실시<br>▶ 학교급식관련 교직원 연수 및 생활교육으로 정착<br>▶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홍보 강화 |
| 15.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 ▶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br>▶ 우수 식재료 사용 확대 |
| 16. 저소득층 및 농어촌 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 ▶ 저소득층 114만명에게 학교급식비 확대. 농어촌 87만명에게 학교급식비 우선지원<br>▶ 저소득층자녀 교육비지원 대상자 자존감 보호를 위해 선정절차 개선<br>▶ 급식지원방법 및 소요예산 확보<br>▶ 자치단체의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 학교밖 급식지원 적극 협조 |
| 17.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강화 | ▶ 과학적인 급식관리 기술지원 체제구축<br>▶ 학교급식 지도·감독 및 행정지원 인력보강<br>▶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br>▶ 학교급식 운영개선 및 연구활동 지원 |
| 18. 식품안전 관리 기본계획 세부과제 추진 | ▶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평가 실시<br>▶ 국무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식품안전관리 시행계획'에 '학교 급식 개선과제' 통합 추진, 점검·평가 실시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한편, 이전에는 건강증진대책에 포함되었던 학교체육 관련 대책은 별도로 마련하여 체육활동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함께 제시한 2012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은 다음 표와 같다. 본 계획에서는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추진목표로 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학생등록률을 2011년 45.0%에서 2012년 50%로 상승시키고, 학생의 신체활동 실천율을 15.3%(2011년)에서 18%(2012년)로 올리기 위해 '7560+(주5일 60분 이상 운동하기)'라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 표 5-4-19 〉 학교체육 중점과제 및 실행과제

재미있는 체육수업,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스포츠
– 운동하는 일반학생,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 6대 중점과제 | 16대 실행과제 |
|---|---|
| 1.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1-1. 체육수업시수 확대 및 체육수업 질 제고<br>1-2. 체육(담당)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연구대회 활성화<br>1-3.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
|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 2-1.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br>2-2. 학교체육과 생활체육 연계 강화 |
| 3.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 | 3-1.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내실 운영<br>3-2. 신체활동 7560+ 운동 전개<br>3-3.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실천 강화 |
| 4.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 부여 | 4-1.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체육재능기부 확대<br>4-2.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br>4-3.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 교직원 등 포상 |
| 5. 학교운동부 선진화 (엘리트 체육) | 5-1.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br>5-2. 학생선수 인권보호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연수 강화<br>5-3.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
| 6. 법 · 제도 마련 및 인프라 구축 | 6-1.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 · 제도 마련<br>6-2. 학교체육진흥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지원 강화<br>6-3. 학생 체육활동 시설 · 환경 개선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학년도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안). p6.

## 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하여 2002년에 제1차 계획(2002~2005년), 2005년 제2차 계획(2006~2010년)이 수립되었다. 2010년에 수립된 제3차 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2011~2020년에 이르는 10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확산, 만성퇴행성질환과 발병위험요인 관리, 감염질환 관리, 안전환경보건, 인구집단건강관리, 사업체계관리의 6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 6개 분야

에 총 32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각 중점과제별로 목적, 목표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32개의 중점과제에 151개의 목표와 140개의 세부사업을 설정하여 추진 중이다. 151개의 목표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표 5-4-20 〉 청소년 대상 국민건강증진 목표(Health Plan 2020)

| 분야 | 목표 |
|---|---|
| 금연 | 1. 청소년 흡연율을 낮춘다. |
| | 2. 고등학교 계열별 흡연율의 차이를 줄인다. |
| | 3. 흡연 시작률을 낮춘다. |
| | 4. 청소년 흡연자의 금연 의지 및 시도율을 높인다. |
| | 5. 청소년 간접흡연율을 낮춘다. |
| | 6. 금연구역을 넓힌다 |
| 절주 | 1. 청소년의 월간음주율을 감소시킨다. |
| | 2. 청소년의 최초음주평균연령을 연기시킨다. |
| | 3. 청소년의 위험음주율을 감소시킨다. |
| | 4. 청소년이 음주운전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
| | 5. 청소년 주류구매시도자 비율을 감소시킨다. |
| | 6. 청소년 주류구매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
| | 7. 주점출입시 성인신분 미확인을 감소시킨다. |
| 신체활동 | 1. 청소년의 규칙적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 | 2. 청소년의 규칙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 영양 | 1. 건강 식생활 실천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br>– 지방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 나트륨을 1일 2,000mg 이하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 과일과 채소를 1일 500g이상 섭취하는 인구비율<br>– 식품선택에 영양표시를 활용하는 인구비율<br>–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비율 |
| | 2.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를 강화한다.<br>– 잘못된 식습관에 의한 아침 결식률 감소<br>– 영양관리(교육 및 상담)를 받는 인구비율 증가 |
| | 3. 미량 영양소 적정섭취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br>– 칼슘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 철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 비타민 A를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br>– 리보플라빈을 적정수준으로 섭취하는 인구비율 |

| 분야 | 목표 |
|---|---|
| 영양 | 4. 식품안정성 확보 및 영양서비스 수혜 인구비율을 증가시킨다.<br>– 식품 안정성이 확보된 가구 비율<br>– 식생활 지원/관리 프로그램(영양플러스) 수혜 인구비율 |
| 비만 | 1. 아동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
| | 2. 청소년비만 유병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
| 정신보건 | 1.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한다.<br>– 정신질환 치료율<br>• 아동청소년정신질환 치료율 향상<br>– 스트레스 인지율 감소<br>•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 감소 |
| | 2. 자살 위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br>– 자살이 예방 가능한 문제임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 향상<br>– 19세이하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 감소 |
| 구강보건 | 1. 어린이의 치아우식 경험률을 감소시킨다. |
| | 2. 어린이의 우식경험 치아 수를 감소시킨다. |
| | 3. 어린이의 치아우식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
| | 4. 청소년과 성인의 치은염 유병률을 감소시킨다. |
| | 5. 아동·청소년의 점심직후 칫솔질 실천율을 증가시킨다. |
| | 6. 어린이 집단생활시설의 양치설비 설치비율을 증가시킨다.<br>– 초등학교 양치설비 설치비율<br>– 지역아동센터 양치설비 설치비율<br>–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율<br>–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비율 |
| | 7. 공공 구강보건의료센터 설립비율을 증가시킨다. |
| 학교보건 | 1. 학교건강지원기구를 설립한다.<br>– 2013년까지 교과부에 1개 설치<br>– 2020년까지 16개 시도교육청에 1개씩 설치 |
| | 2. 학생들의 불건강한 보건행태(음주율, 비만도, 흡입제 등 약물 사용 경험률 등)를 감소시킨다. |
| | 3. 학생들의 개인위생 실천율을 증가시킨다.<br>– 화장실 사용 후 손씻기 실천율 증가<br>– 점심식사 후 칫솔질 실천율 증가 |
| | 4.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증가시킨다.<br>– 자살 시도율 및 스트레스 인지율 감소 |
| | 5. 학생들의 건전한 성행태(이성교제)를 증가시킨다.<br>– 성관계 경험률 감소<br>– 보건교육(성교육) 수강 경험률 증가 |

| 분야 | 목표 |
|---|---|
| 학교보건 | 6. 학생들의 손상 및 안전사고 발생을 감소시킨다.<br>–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건수 비율 감소<br>– 안전벨트 착용률 증가 |
| | 7.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킨다. |
| | 8. 건강환경평가 결과 우수 학교 비율을 증가시킨다. |

자료 : 보건복지부(2011).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 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2007년부터 추진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종합대책」이후로 2008년에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어린이 식생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3년에 한 번씩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하였다.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종합계획이 세워졌으며, 이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등의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까지 발표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의 자세한 추진 전략 및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다.

〈 표 5-4-21 〉 제1차 및 2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

| 추진전략 | 1차 종합계획(2010~2012) | 2차 종합계획(2013~2015) |
|---|---|---|
|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판매환경 조성 | • 식품안전보호구역 구분 지정 및 관리 |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확대 및 판매환경 개선 |
| | • 학부모, 전담관리원 등 유기적 협조를 통한 유해식품 모니터링 체계 구축<br>• 특정일 등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 | • 학부모 모니터링 제도 운영 및 전담관리원 지정·운영방법 개선<br>• 어린이 기호식품의 수입관리 강화 |
| | •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및 건강매점 확산<br>• 우수판매업소 정보제공 구축 운영 | • 식품안전보호구역 외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및 다양한 지원방안 마련<br>• 학교매점을 건강지킴이 매점으로 전환 |
| | • 고열량·저영양 식품 신고체계 마련<br>• 고열량·저영양 식품 정보공개 | • 고열량·저영양 식품 대상 확대 및 판정기준 개선<br>• 기업지원을 통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생산 감축 유도 |
| | • 고열량·저영양 식품 미디어 광고 제한 모니터링<br>• 어린이 정서저해 판매근절 및 미끼 상품 광고 금지 | • 광고제한 시간 기준 조정 및 미끼상품 광고 가이드라인 개선 |
| 어린이 식생활 안심 확보를 위한 안전 공급체계 구축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위생·영양관리 지원<br>•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br>• 결식아동 지원급식에 대한 위생관리 추진 | • 지역급식센터 확대 운영 및 중앙급식센터 설치<br>• 어린이 단체급식의 당, 나트륨 등 저감화 지원<br>• 소규모 어린이 집 등의 급식시설 지원 확대 |
| | • 어린이 기호식품의 당, 나트륨 등 대체성분 개발 등 지원<br>• 어린이 기호식품의 유해물질 기준 강화<br>• 품질인증 등 지정 지원 프로그램 마련<br>• 어린이 기호식품 해썹 적용 지원책 마련 | • 나트륨 등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 추진<br>• 품질인증기준 개선 등으로 우수 어린이 기호식품 확대<br>•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대기업 해썹 적용 확대 및 지원 강화 |
| 어린이의 올바른 식품 선택보장 | • 어린이 식생활 서비스 운영 및 지원체계 구축<br>• 가정 내 식생활 안전관리 수칙 등 교육·홍보<br>•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 구축<br>• 지역사회 어린이 식생활 안전 및 영양교육 강화 및 프로그램 지원<br>• 학부모 식생활안전 교육 실시<br>• 신호등 표시제 확립 및 영양성분 표시 지도 계몽 실시 | • 어린이 영양 · 식생활 교육지원 확대 및 강화<br>•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br>• 신호등 표시제 단계적 의무화 추진<br>• 영양성분 표시 가이드 마련 |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실효성 제고 | • 특별법 등 개정(안)마련<br>• 년도별 식생활안전관리 지침 제작<br>• 관련 해설서, 교육, 홍보자료 제작<br>•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체계 구축<br>• 어린이 기호식품 등 안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br>• 소비자단체 등 민간협력 구축 강화 | • 식생활안전지수 국가승인 통계 추진 및 세부평가지표 개선<br>• 제2차 종합계획 추진사항 조사·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2012). 식약청, 제2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제 6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년 아동학대유형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중복학대(43.3%)였으며, 이를 제외하면 방임이 2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해 보다 접근성을 강화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임아동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실종에 대한 대처를 법제화시키는 한편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와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역기능에 대한 대응체계 또한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대해 상담시스템을 도입하여 이를 예방·치료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2011년 11월 20일 셧다운제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차단하였고, 이를 통해 수면권, 건강권을 비롯한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게임중독 저하,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 등을 유도하였다.

# 제 06부 청소년의 안전과 보호

제1장 청소년 안전

제2장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제3장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제4장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제5장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제1장
# 청소년 안전

## 1. 학교폭력대책

### 가. 학교 폭력 피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학교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전국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전체응답자 15,954명중 총 6.7%이며, 최초 폭력피해 연령은 11.4세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험 비율은 2010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 중 남학생(8.5%)이 여학생(5.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2011년에는 남학생이 8.4%, 여학생이 4.7%로 2010년에 비해 조금씩 낮아졌으나 여전히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 경험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학교폭력 피해 연령의 경우 2010년에는 12.9세였으나, 2011년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11.4세로 나타나 학교폭력 피해 발생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피해 장소는 주로 학교 교실 안(38.3%)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학교 교실 밖(12.3%), 동네 골목(10.5%) 등의 순이었으며, 가해자는 학교동료나 선후배(42.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다른 학교 동료 선후배(6.1%)의 순이었다.

폭력 피해 후 학생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다는 응답(32.5%)이 가장 많았는데, 남학생(38.4%)이 여학생(18.2%)에 비해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폭력 피해의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42.5%)는 응답이 가장 높고, 몸이 작거나 힘이 약해서(14.2%), 기타(13.2%), 성격 때문에(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폭력 가해의 이유는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4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음(31.2%), 기타(10.5%),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기 위해(4.0%),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발적으로(3.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나. 청소년폭력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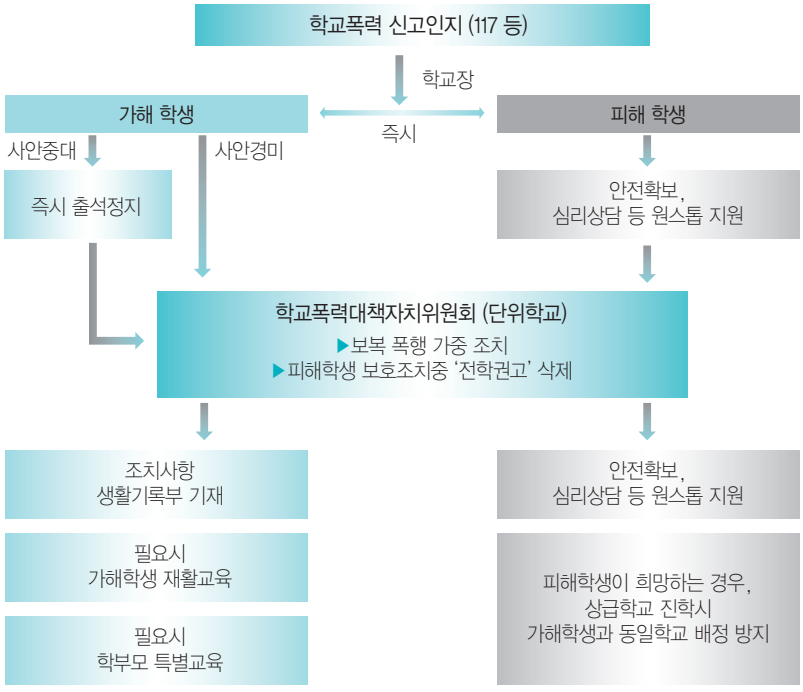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50조, 제52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18조를 사업근거로 하여 청소년 비행·폭력 예방 및 교육적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첫째, 폭력 피해 청소년·가족을 대상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청소년과 비행·범죄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재범을 예방·방지하고 학교·사회로의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12년 2월 정부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기존의 학교폭력 대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인성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에 대한 반성으로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에는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는 4대 직접대책과 학생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가정-사회가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는 3대 근본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직접대책으로는 첫째, 교원이 책임지고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장의 역할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담임교사의 역할강화와 생활지도 여건을 조성하며, 교원양성-임용-연수의 단계에서 생활지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이 은폐되지 않고 신고 시 반드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을 우선 보호하고 신속한 치유를 지원하고, 가해학생에게는 엄격한 조치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각각 운영하던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로 통합하여 24시간 운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은폐방지를 위해 매년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동일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하거나 피해학생의 의료·법률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피해학생에 대한 우선적 보호와 치유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신고-조사체계 개선 및 가·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 그림 6-1-1 ] 학교폭력 사안 처리 체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셋째, 건전한 학교 형성을 위해 또래 활동을 지원하고,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단계적으로 교육시키며, 인터넷과 SNS 서비스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는 등 예방교육을 확대하였다.

넷째,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교육포털(www.parents.go.kr)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여 자녀 이해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및 교육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하였다. 또 교사-학부모간 소통 강화 및 학부모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학교가 학기 당 1회 이상 학교 설명회를 일과 후에 개최하도록 하며, 단위학교에서 학기별 1회 이상 학부모-교사 간 개인 또는 그룹 상담을 제공하고, 교육에 관심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였다.

근본대책으로는 첫째, 더불어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함양하여 학교 폭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육 전반에 걸쳐 인성교육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바른 인성의 기초를 형성하는 3~5세 누리과정부터 질서, 나눔, 배려, 협력, 존중, 경로효친, 갈등 해결 등에 대한 실천행동 제시 및 이를 습관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초·중·고의 프로젝트형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국어, 도덕, 사회교과의 인성핵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고, 중학교 체육활동을 대폭 확대하였다. 그리

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협의하여 정한 학생생활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 규율준수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실천적 인성교육을 추진하고, 학생의 인성발달 특기사항을 학생생활기록부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입학사정관전형, 자기주도학습전형 등 대학입학 전형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생활지도 등 인성교육을 잘하는 교원과 학교를 각종 연구비 지원, 포상, 학습연구년제 대상 선발에서 우대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 인성교육 실천 및 학교폭력 근절 노력 정도의 비중을 확대하여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가정과 사회가 협력하여 학생들의 바른 인성을 키워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밥상머리 범국민 캠페인'을 본격 추진하고, 가족단위 또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였으며, 방송, 언론,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가정과 사회의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셋째, 폭력 및 정신건강 유해요소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게임이 종료되도록 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게임과몰입(중독)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전국 초·중·고생 대상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일부조항은 4월 1일부터 조기 시행되도록 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7대 실천정책의 이행을 위해 2012년 5월 1일부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기존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되어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가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시·군·구 단위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를 신설하여 기초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방검찰지청 등이 공동으로 지역단위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였다.

2012년 일부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용을 선보상하고, 가해학생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강화되었다. 또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보복행위에 대해 가중조치를 하는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엄격해지고, 가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도 의무화되었다.

## 2. 아동학대 대책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한 것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이후 부터이다. 아동복지법은 1961년 아동복리법으로 제정된 후 20년 동안 특별한 수정 없이 존속되어오다가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이후 1991년 UN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동권리의 4대 원칙인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원칙, 아동참여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게 되었다. 또한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라는 UN의 권고를 받았다. 또 1996년 OECD가입 시에도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화롭고 체계화된 안전수단을 강구"하라는 권고를 받는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보호체계 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0년 전면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1개의 아동학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신고의무, 긴급전화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기반이 되었다.

### 가. 아동학대 관련 현황

아동학대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 등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방임과 정서학대의 순이었다.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로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에 대한 양육 태도 및 올바른 자녀 양육방법을 모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아동학대 사례유형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 방임과 여러 유형의 학대가 동시에 가해지는 중복학대를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사례유형을 분석한 결과, 2011년 한 해 동안 학대피해로 인한 아동의 보호건수는 6,058건이며, 이 가운데 여러 가지 학대가 중복된 중복학대가 2,621건(4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방임 1,783건(29.4%), 정서학대 909건(15.0%), 신체학대 466건(7.7%), 성학대 226건(3.7%), 유기 53건(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도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방임과 중복학대가 매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방임의 경우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30%를 유지하고 있다.

〈 표 6-1-1 〉 아동학대 사례유형

(단위 : 건, (%))

| 유형 \ 연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신체학대 | 439(8.4) | 473(8.5) | 422(7.6) | 338(5.9) | 348(6.1) | 466( 7.7) |
| 정서학대 | 604(11.6) | 589(10.6) | 683(12.2) | 778(13.7) | 773(13.7) | 909(15.0) |
| 성 학 대 | 249(4.8) | 266(4.8) | 284(5.1) | 274(4.8) | 258(4.6) | 226( 3.7) |
| 방 임 | 2,035(39.1) | 2,107(37.7) | 2,237(40.1) | 2,025(35.6) | 1,870(33.1) | 1,783(29.4) |
| 유 기 | 76(1.5) | 59(1.0) | 57(1.0) | 32(0.6) | 14(0.2) | 53(0.9) |
| 중복학대 | 1,799(34.6) | 2,087(37.4) | 1,895(34.0) | 2,238(39.4) | 2,394(42.3) | 2,621(43.3) |
| 계 | 5,202(100.0) | 5,581(100.0) | 5,578(100.0) | 5,685(100.0) | 5,657(100.0) | 6,058(100.0) |

자료 : 보건복지부(2010).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통계청(2012). KOSIS 연도별 아동학대사례유형(http://kosis.kr/themes/recent/).

###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아동학대행위자는 크게 부모와 부모가 아닌 행위자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에 발생한 아동학대사례 가운데 학대행위자가 부모인 경우는 5,039건으로 전체 아동학대사례의 83.1%를 차지하고 있다.

〈 표 6-1-2 〉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단위 : 건, (%))

| 관계 | 건수 | |
|---|---|---|
| | 2010 | 2011 |
| 부모 | 4,709(83.2) | 5,039(83.1) |
| 조부모 | 182(3.3) | 194(3.2) |
| 친인척 | 144(2.5) | 131(2.2) |
| 형제/자매 | 11(0.2) | 24(0.4) |
| 타인 | 534(9.4) | 574(9.5) |
| 파악 안 됨 | 7(0.2) | 1(0.0) |
| 기타 | 70(1.2) | 95(1.6) |
| 계 | 5,685(100.0) | 6,058(100.0) |

자료 :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 년도.

## 나. 아동학대 예방 대책

### (1) 아동방임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학대아동 보호건수 중 중복학대를 제외하면 방임이 33.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이래로 매년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6년 4월부터 '보건소 아동보호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이 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방문간호서비스에 아동보호서비스를 연계한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시범사업은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방문건수 대비 16.5%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업성과가 바탕이 되어 2007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에서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희망스타트'사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희망스타트 사업은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저소득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2007년 전국 16개 지역에서 2011년 기준 131개 시·군·구로 확대되었으며, 지원아동 수 역시 2007년 4천명에서 2011년 말 기준 약 4만 5천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아동학대 신고자는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된 사례 6,058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총 2,135건으로 약 35.2%에 해당한다. 이에 신고의무자인 교사, 의료인 등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직업군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하여 2005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신고의무자가 자격취득 시 필수적으로 아동학대예방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아동복지법 제26조의2), 2007년에는 유치원 및 학원종사자, 구급대원 등을 신고의무자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2011년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을 통해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정신보건센터,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 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추가로 포함하였다.

또한 2011년에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STOP&LOVE 광고가 제작되어 케이블TV로 송출된 바 있으며, 2011년 전면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상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 (3)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치료지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치료지원과 함께 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과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08년 '아동학대행위자 특성별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09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한 해 동안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48,050회의 교육·상담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학대행위자에게 가장 많이 제공한 서비스 항목은 개별상담으로 2010년 이전 사례에는 15,625회(73.9%), 신규사례에는 212,569회(78.9%)를 실시하였다. 입원과 통원 치료서비스도 2010년 이전과 이후에 접수된 사례 모두 학대행위자에게 각각 17.4%와 15.6%로 타서비스 유형에 비해 많이 제공되었다. 2011년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677,586명에게 18,438회의 교육이 제공되었고,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101,196명에게 1,837회 실시된 것으로 집계되어 신고의무자보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이 활발히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고의무자 대상교육은 시설종사자에게 제공된 교육이 1,280회(87,941명)로 가장 많았고, 그 밖에 교원 483회(12,673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2회(1,086명), 소방구급대원 26회(1,186명), 의료인 11회(795명),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5회(2,5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 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정부는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0월에 전국 16개 시·도에 17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 10월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체계를 갖추었다. 2004년부터는 지역기관 23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2004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학대의 예방부터 치료·보호 및 가정 복귀까지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종합센터' 기능을 부과하여 시·도별 1개소씩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아동보호종합센터에는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치료실, 놀이실 등은 물론 보호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으며 아동보호를 위한 전체적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2012년 5월 기준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44개소).

현재, 보건복지콜센터(129), 119,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12시간 이내에,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해서는 72시간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48시간 연장가능)에 응급의료조치 및 긴급격리조치 등의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긴급격리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례판정을 통해 아동학대사례, 잠재위험사례, 일반사례로 분류하여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직과 전문 인력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9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전국 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이후 최근까지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 표 6-1-3 〉 아동학대 유형별 실태

(단위 : 건)

| 연 도 | 계 | 신체학대 | 정서학대 | 성학대 | 방 임 | 유 기 | 중복학대 |
|---|---|---|---|---|---|---|---|
| 2000. 10~12 | 464 | 180 | 30 | 23 | 205 | 26 | - |
| 2001 | 2,105 | 476 | 114 | 86 | 672 | 134 | 623 |
| 2002 | 2,478 | 254 | 184 | 65 | 814 | 212 | 949 |
| 2003 | 2,921 | 347 | 207 | 134 | 965 | 113 | 1,155 |
| 2004 | 3,891 | 364 | 350 | 177 | 1,367 | 125 | 1,508 |
| 2005 | 4,633 | 423 | 512 | 206 | 1,635 | 147 | 1,710 |
| 2006 | 5,202 | 439 | 604 | 249 | 2,035 | 76 | 1,799 |
| 2007 | 5,581 | 473 | 589 | 266 | 2,107 | 59 | 2,087 |
| 2008 | 5,578 | 422 | 683 | 284 | 2,237 | 57 | 1,895 |
| 2009 | 5,685 | 338 | 778 | 274 | 2,025 | 32 | 2,238 |
| 2010 | 5,657 | 348 | 773 | 258 | 1,870 | 14 | 2,394 |
| 2011 | 6,058 | 466 | 909 | 226 | 1,783 | 53 | 2,621 |

자료 : 보건복지부(2010, 2011).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된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8,325건이었으며, 현장조사 결과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학대사례는 6,058건(72.8%), 잠재위험사례 745건(8.9%), 일반사례 1,522건(18.3%)이었다.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아동실종예방 및 실종가족 지원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 떨어져 격리되는 경험은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충격으로 남게 되며, 부모 또한 아동이 실종되면 모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아동을 찾는 일에만 전념하게 된다. 아동의 실종은 부모로 하여금 실종아동에 대한 죄책감과 우울증,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여 최악의 경우 가정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실종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 또는

실종아동 가족의 책임으로만 치부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2004년 개구리소년들(1991년 실종)의 유골 발견, 2004년 부천초등생, 포천여중생 실종사건 등으로 인해 실종아동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국가 차원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 구축 및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03년 이전의 실종아동 찾기 체계는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보호시설의 아동카드 송부누락 및 지연, 미신고시설 관리부실, 관련 법률의 부재, 일반 국민들의 인식 부족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5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아동과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신속한 가정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 시행된 실종아동법은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대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달라진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실종아동 등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8세 이하 아동에서 14세 미만 아동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복지법" 상의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은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보호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둘째, 실종업무를 전담할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실종 아동·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실종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종가족 지원 등 실종예방 및 가족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규정하였다.

넷째, 아동·장애인시설 등 보호시설장의 신상카드 송부를 의무화하고 시설보호 대상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실종아동찾기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경찰의 수색·수사를 의무화하여 경찰의 초동수사 및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여섯째, 미신고보호행위를 금지하여 개인의 불법 입양이나 미신고시설 등의 불법 보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다.

일곱째, 보호시설에 대한 경찰의 현장 조사권한을 명시화하여 시설에서 거부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유전자검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경로를 확대하였다.

2006년 11월에는 '실종아동 및 실종장애인 찾아주기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하였으며 동 대책에 따라 신고의무자,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의무 불이행자 및 불법양육자의 처벌규정에 관한 홍보도 병행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2008년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아동범죄 예방 및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아동·

여성보호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복지가족부도 실종예방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놀이터, 공원, 학교주변 및 아동범죄 다발지역 등 아동안전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전개·지원하였다.

둘째, 시·도별 실종 아동·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지정(2010년 6월 8일, 60개소)하여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및 장애인 발생시 우선적으로 일시보호센터에 보호조치하고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실종여부를 확인하는 등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창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가족 또는 경찰서에서 이들을 찾아 전국을 헤매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셋째, 실종아동 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경찰청의 실종신고 자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신상카드 자료 간 전산연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넷째,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종·유괴 예방교육을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 2008년 12월 14일 시행)하고, 실종예방 인형극 순회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연령별·대상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였다.

다섯째, 유괴예방 3단계 구호 100만인에게 알리기, 실종예방 공익광고 송출, 어린이안전 특별생방송 방영 등 온라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날·실종아동의 날을 기념하여 실종아동 발생 예방 및 찾아주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였다.

여섯째, 실종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부모활동비·전단제작지원비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해줌으로써 실종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실종아동법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신상카드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정신의료기관의 장도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상카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아동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아동의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내어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이 정신병원이나 보호시설을 방문하는 때에는 실종아동의 가족을 동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실종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유전정보의 보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아동 및 장애인이라도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종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대책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표 6-1-4 〉 실종 아동 및 장애인 발생 및 가족복귀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일반아동 | | | 장애인 | | |
|---|---|---|---|---|---|---|
| | 발생건수 | 발견 현황 | | 발생건수 | 발견 현황 | |
| | | 보호자인계 | 미발견 | | 보호자인계 | 미발견 |
| 2006 | 7,064 | 7,058 | 6 | 6,872 | 6,834 | 38 |
| 2007 | 8,602 | 8,600 | 2 | 7,239 | 7,206 | 33 |
| 2008 | 9,470 | 9,469 | 1 | 4,864 | 4,853 | 11 |
| 2009 | 9,240 | 9,238 | 2 | 5,564 | 5,535 | 29 |
| 2010 | 10,829 | 10,822 | 7 | 6,699 | 6,657 | 42 |
| 2011 | 11,349 | 11,314 | 35 | 7,363 | 7,199 | 164 |
| 합계 | 56,554 | 56,501 | 53 | 38,601 | 38,284 | 317 |

주 : 1) 2005년까지 일반아동 연령기준은 8세 이하이나 2006년부터 실종아동법의 시행(2005.12.1)에 의거 14세 미만으로 대상 확대.
2)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연령제한 없음).
3) 2011년은 12월기준.

자료 : 보건복지부(2012). 홈페이지 통계자료(http://mw.go.kr/front_policy/jc/sjc0111mn.jsp?PAR_MENU_ID=06&MENU_ID=06180402).

〈 표 6-1-5 〉 무연고아동 등 신상카드 D/B 구축현황(보건복지부 위탁 실종아동전문기관)

(단위 : 명)

| 합계 | 아동시설 | 장애인시설 | 정신요양시설 | 정신병원 | 부랑인시설 | 기타 |
|---|---|---|---|---|---|---|
| 17,043 | 3,023 | 7,417 | 2,132 | 2,302 | 2,099 | 70 |

자료 : 실종아동전문기관(2011). 실종아동전문기관 2011사업보고서·2012사업계획서.

## 4.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 가. 아동 안전대책의 성과

어린이는 미래 국가 경쟁력의 초석이고,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결정짓는 척도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의 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우선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합계출산율이 1.29명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어린이를 안전하게 키워내는 일은 부모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책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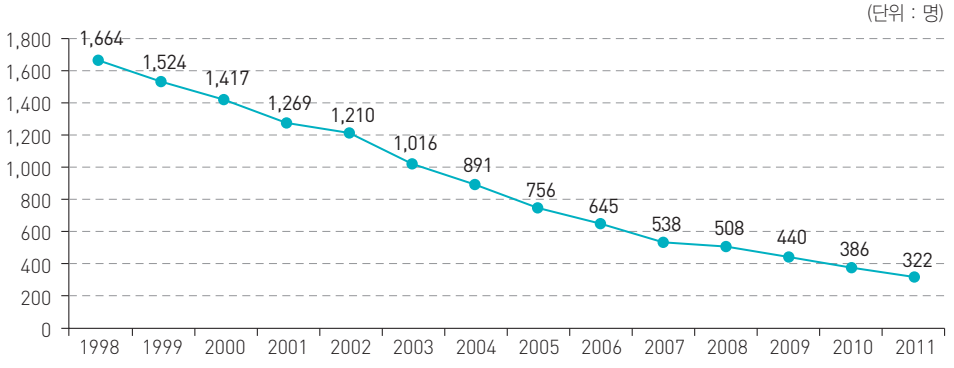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성인에 비해 사망 및 중상의 비율이 높고 인격발달과 정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며 사고로 인한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결국 국가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문제는 단지 피할 수 없는 일로 간주되거나, 부모들이 알아서 예방하여야 할 일로 여겨지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어린이 안전관련 정책 또한 소관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종합적인 정책 개발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안타깝게도 OECD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았다.

청와대는 어린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2003년 5월 5일)하고 2003년 6월부터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향후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매년 10%씩 낮추어 1/2수준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어린이 사고사망 2001년 1,269명→2007년 538명). 그리고 OECD 회원국 최하위에서 중위권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상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제를 조정해 나갔다.

이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2003년 1,016명에서 2011년 322명으로 68.3%나 감소하여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이끌어낼 수 있었는데 이는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이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 그림 6-1-2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14세 이하)




자료 : 보건복지부(2011). 보건복지통계연보. p270.

분야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 추이를 살펴보면 많은 예산과 과제가 수행된 교통사고의 경우 2002년

594명에서 2011년 137명으로 괄목할만한 감소를 보여 교통안전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사고 사망자는 2002년 198명에서 2011년 50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추락사고의 경우에도 2002년 134명에서 2011년 37명으로 큰 감소를 가져와 추락사고 대책의 효과성도 높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 안전종합대책」의 분야별 주요 추진 내용을 보면,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❶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2012년까지 7,332개소 총 1조 5,150억원 투자예정)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총 3,069개소가 개선 완료되었으며, ❷ 스쿨존 캠페인 전개와 보호구역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하였고, ❸ 도로교통법을 개정(2006년 6월 시행)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특수학교·보육시설 주변까지 확대지정(2006년 총 8,141개)하고, ❹ 6세 미만 어린이 뒷좌석 승차 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였다.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사고다발지역 9,757개소에 위험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2006년 '119시민 수상구조대' 4,229명을 운영하여 2,417명의 인명을 구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주택난간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약물 등에 대해 개봉이 어렵게 설계된 '어린이 보호포장 의무화'를 시행하는 한편, 안전검사의무대상 및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바퀴운동화·레이저용품 등 18개 사고 다발용품을 지정하는 등 위해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어린이 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급식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전환을 추진하였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소 단속강화 등 불량식품 방지노력을 하고 있다.

초등학교 안전교육시간 확보(학기당 연간 21시간~23시간)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체험차량을 이용한 순회 안전교육 실시, 다양한 안전체험 행사 개최, 어린이 안전정보 제공 강화 등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어린이 10만 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가 4.88명으로 2005년 기준 OECD 회원국가 평균수준 5.6명 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에 머물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스쿨존 만들기, 지역사회 중심 교통 예방 체험관 설치, 어린이 통학차량체제 정비, 학교 내 안전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아동연령별 발달수준에 맞는 맞춤형 안전대책을 개발하고 교육해나가며, 새로운 안전 위협요소들에 대응하여 특히 취약계층 고위험군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집중적인 정책개발과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다.

## 나.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각 연도별 사망원인별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원인으로는 교통사고가 137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익사 50건, 추락 37건, 화상 15건, 중독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1-6 〉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 계 | 교통 | 익사 | 추락 | 질식 | 화상 | 중독 | 기타 |
|---|---|---|---|---|---|---|---|---|
| 1998 | 1,664 | 805 | 326 | 115 | 161 | 64 | 21 | 172 |
| 1999 | 1,524 | 726 | 306 | 152 | 131 | 88 | 21 | 100 |
| 2000 | 1,417 | 728 | 306 | 155 | 78 | 41 | 13 | 96 |
| 2001 | 1,269 | 616 | 236 | 138 | 102 | 76 | 7 | 94 |
| 2002 | 1,210 | 594 | 198 | 134 | 114 | 55 | 6 | 109 |
| 2003 | 1,016 | 497 | 156 | 108 | 96 | 70 | 4 | 85 |
| 2004 | 891 | 374 | 183 | 88 | 90 | 46 | 7 | 103 |
| 2005 | 756 | 337 | 156 | 67 | 72 | 25 | 4 | 95 |
| 2006 | 645 | 318 | 78 | 58 | 69 | 42 | 5 | 75 |
| 2007 | 538 | 259 | 78 | 58 | 70 | 7 | 4 | 62 |
| 2008 | 508 | 214 | 78 | 50 | 67 | 19 | 2 | 78 |
| 2009 | 440 | 201 | 62 | 39 | 47 | 10 | 5 | 76 |
| 2010 | 386 | 194 | 44 | 41 | – | 15 | 3 | 89 |
| 2011 | 322 | 137 | 50 | 37 | – | 15 | 1 | 82 |

주 : 1) 1년 동안 안전사고로 사망한 14세 이하 아동의 수임.
2) 2010년부터 질식사고는 기타로 집계.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년도.

## 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2003년부터 2007년 추진된 제1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의 추진으로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10만명 당)는 2002년 12.4명에 비해 2007년 6.3명, 2010년에는 4.9명으로 감소한 것에 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을 위해 2009년 3월 제2차 「어린이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되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년)에서는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이라는 목표 하에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 추락, 익사사고 등 주요 어린이 안전사고에 관한 정책이 포함되어 추진되었다. 여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조체계 강화 및 교육·홍보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한국소비자원 등 아동안전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체계 강화,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 아동 안전체험 행사개최 등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확산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안전통계의 주요지표인 통계청 사망통계와 질병관리본부의 손상관리정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위해정보시스템 협력방안을 강구하였으며, 각 부처별, 기관별 어린이 안전관련 통계를 통계청 통계자료에 반영하도록 추진하였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아동·청소년 생활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만5세 이하)와 사고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부모교육 실시, 가정안전꾸러미를 배포하는 등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등·하교길을 동행하고, 등·하교 상황, 학교 결석여부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워킹 스쿨버스(Walking School Bus)'를 확산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및 '도로부속물'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어린이 보호장구 개발지원 및 표준화, 저소득층 무상대여 등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 표 6-1-7 〉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관계부처 주요 정책

| 부처명 (소관과) | 사업명 | 사업개요 |
|---|---|---|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생활안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실시 | ▶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br>▶ 안전수첩 및 안전꾸러미 제작·배포 |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 |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br>▶ 보행안전지도(Walking School Bus) 확대 시행 |
| | | ▶ 학교급별 안전교육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방안 마련<br>▶ 통학버스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대책 마련<br>▶ 시·도별 학교안전사고 예방 관련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 조치<br>▶ 기관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워킹스쿨버스 시범운영 확대<br>▶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활동 지원 계속 |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 민관협력을 통한 등하교길 안전 강화 | ▶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 사업 실시 |
| | | ▶ 아동안전지킴이 배치 |
| | | ▶ 보행안전지도 추진 |

자료 : 대한민국정부(2012).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2012).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제2장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1. 청소년 유해약물예방 기반 구축

청소년유해약물은「주세법」에 의한 주류,「담배사업법」에 의한 담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마약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환각물질 등이며,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은 약성 약물에서 강성 약물로 전이되는 것이 보편적이고, 한번 사용하게 되면 습관성과 의존성 및 중독성과 내성이 강하여 중단하기 힘든데,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은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제2비행의 관문(Gateway)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우려되는 문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예방 대책은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지만 주류나 담배의 유통규제 제도의 한계 등으로 청소년의 흡연·음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기존의 청소년 약물제도 및 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컨대 청소년 약물 중 빈번한 사용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약물예방에 관한 국제적 표준에 적합한 제도와 법안 마련 등이 그것이다. 이는 기존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규제 위주의 보호정책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호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들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에 대한 사회적 관리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청소년의 음주와 흡연 실태

여성가족부의「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청소년의 연간 음주율은 35.7%로 2009년 41.6%, 2010년 39.1% 비하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최초 음주 시작연령은 2011년 13.0세로 2010년도 12.8세보다 0.2세 높게 나타났다. 또한 술을 마신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회 평균 '소주 1~2잔'을 마신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소주 1병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 표 6-2-1 〉 청소년 최근 1년간 음주횟수

(단위 : %)

| 구분 / 연도 | | 최근 일 년 간 음주 횟수 | | | | | |
|---|---|---|---|---|---|---|---|
| | | 없다 | 1~2번 | 3~5번 | 6~9번 | 10번 이상 | 무응답 |
| 2009 | | 58.4 | 20.6 | 9.8 | 3.9 | 7.2 | 0.0 |
| 2010 | | 60.5 | 18.4 | 9.7 | 3.8 | 7.2 | 0.4 |
| 2011 | | 64.3 | 17.1 | 9.2 | 3.3 | 6.0 | 0.0 |
| 성별 | 남성 | 63.1 | 16.2 | 9.7 | 3.5 | 7.5 | 0.0 |
| | 여성 | 65.8 | 18.3 | 8.7 | 3.2 | 4.0 | 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표 6-2-2 〉 청소년 음주경험률 및 처음 음주 연령

(단위 : %, 세)

| 구분 / 연도 | | 음주 경험률 | 처음 음주 연령 |
|---|---|---|---|
| 2009 | | 56.1 | 12.8 |
| 2010 | | 54.8 | 12.8 |
| 2011 | | 51.0 | 13.0 |
| 성별 | 남성 | 53.8 | 12.9 |
| | 여성 | 47.9 | 13.1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표 6-2-3 〉 1회 평균 음주량

(단위 : %)

| 구분 / 연도 | | 소주 1~2잔 | 소주 3~4잔 | 소주 5잔 | 소주 1병 | 소주 2병 이상 |
|---|---|---|---|---|---|---|
| 2009 | | 42.3 | 18.1 | 11.0 | 19.1 | 9.5 |
| 2010 | | 43.1 | 17.5 | 11.1 | 18.3 | 10.0 |
| 2011 | | 40.2 | 18.8 | 10.8 | 20.4 | 9.8 |
| 성별 | 남성 | 35.5 | 18.2 | 10.6 | 22.7 | 13.1 |
| | 여성 | 47.5 | 19.7 | 11.1 | 16.9 | 4.8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 흡연의 경우, 2011년도 청소년 흡연경험률이 26.3%로 2009년 27.7%, 2010년 26.0%에 비해 낮아졌다가 다시 다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남자 청소년의 경우 34.3%, 여자 청소년의 경우 17.3%로 나타났으며, 최초 흡연 시작연령은 평균 만 12.8세로 나타났다.

흡연자 중 최근 한 달 1일 흡연량으로 2~5개비(15.5%)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최근 한 달 1일 흡연비율은 65.5%로 2010년에 비해 약 14%p 증가하였고, 특히 1일 1개비 미만의 경우, 2010년 대비 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2-4 〉 청소년 흡연 경험률 및 처음 흡연연령

(단위 : %, 세)

| 구분 / 연도 | | 흡연 경험률 | 처음 흡연 연령 |
|---|---|---|---|
| 2009 | | 27.4 | 12.7 |
| 2010 | | 26.0 | 12.7 |
| 2011 | | 26.3 | 12.8 |
| 성별 | 남성 | 34.3 | 12.8 |
| | 여성 | 17.3 | 12.8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표 6-2-5 〉 청소년 최근 한 달 1일 흡연량

(단위 : %)

| 구분 / 연도 | | 피워 본 적이 없다 | 1일 1개비 미만 | 1개비/1일 | 2~5개비/1일 | 6~9개비/1일 | 10~19개비/1일 | 1일 20개비 이상 | 무응답 |
|---|---|---|---|---|---|---|---|---|---|
| 2009 | | 33.1 | 13.1 | 4.9 | 16.8 | 14.8 | 13.4 | 3.9 | 0.0 |
| 2010 | | 48.4 | 3.9 | 2.2 | 11.1 | 14.8 | 14.0 | 4.3 | 1.3 |
| 2011 | | 34.5 | 11.8 | 5.9 | 15.5 | 14.9 | 12.7 | 4.7 | 0.0 |
| 성별 | 남성 | 30.7 | 11.5 | 6.7 | 16.2 | 15.7 | 13.4 | 5.8 | 0.0 |
| | 여성 | 44.9 | 12.4 | 4.0 | 13.4 | 12.8 | 10.9 | 1.6 | 0.0 |

주 : 최근 한 달 흡연량은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작성한 통계량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 나.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 (1) 청소년 흡연·음주예방 기반 구축

2005년 WHO는 회원국에 음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고, 국제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회원국에 담배의 광고, 판촉 및 후원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은 2006년 12월 연방의회에서 "청소년음주예방법" 제정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을 살펴보면 청소년 흡연·음주 환경 규제내용이 각 개별법에 분산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도 존재한다. 즉, 청소년 흡연규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는 주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세법은 주류소매(면허)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면허없이도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류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흡연·음주예방을 위한 기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류·담배의 청소년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을 개정 시행(2012년 9월 16일)하였다. 또한 주류의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경고문구를 개선하여 주류 용량에 따라 표기 기준을 정하는 등 누구에게나 눈에 잘 띄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011년 5월 11일) 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해약물(주류·담배) 불법판매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류·담배 판매업자대상 교육·계도활동으로 불법유통행위 근절,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청소년상대 담배·주류 판매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모니터링 대상업소를 편의점, 슈퍼마켓, 할인점 등에서 음식점, PC방, 호프점 등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 대상 술·담배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유통업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유통업체와 공동협약을 체결(2012년 4월 23일)하고 유통업체(전국 26,400개), 시민단체 및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수퍼 25,000여개)가 참여하여 대국민 인식전환 및 청소년보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통업체 판매 종업원 교육 강화, 포스터 등 홍보물 부착 및 매장 내 안내방송, 매월 19일을 '청소년 음주·흡연예방 강조의 날'로 지정하여 소비자 대상 청소년 보호의식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 (2) 청소년 흡연예방 대책 추진

최근 들어 청소년 흡연률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흡연률은 세계 청소년들의 흡연률과 비교해 볼 때 높은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청소년 흡연율이 27.4%에서 2010년 26.0%로 낮아졌으나, 2011년 26.3%로 2010년에 비해 조금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청소년 스스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 흡연을 자제하고, 흡연은 좋지 못한 사회적 행동이라는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 사업 및 다양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흡연연령이 저연령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흡연이 시작된 후 행태를 교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청소년의 흡연예방을 위해서는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아를 위한 흡연예방 놀이형 교구를 개발하여 유치원 및 농·어촌보육시설 8,268개소에 보급하였다. 놀이형 교구는 기존의 교사용 지침서에서 탈피하여 문자능력이 없는 영유아들이 주사위 놀이나 역할극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현장 교사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았다.

〈 표 6-2-6 〉 관계부처의 청소년 흡연예방 정책 주요 내용

| 관계 부처 | 대책 추진과제 |
|---|---|
| 여성가족부 | ▶ 한방의료기관을 통한 청소년건강상담 및 무료금연침 시술 사업 지원<br>▶ 유아를 위한 흡연예방 놀이형 교구개발 보급<br>▶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대국민 홍보(버스·지하철 광고 등)<br>▶ 청소년 건강열차 프로그램 개발<br>▶ 청소년 흡연예방 공동캠페인 실시<br>▶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br>–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확대<br>– 청소년대상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br>–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 | ▶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운영<br>▶ 보건소 금연상담 및 금연치료프로그램 제공<br>– 금연교실, 금연지도자교육, 보건소 금연크리닉, 금연상담 등<br>▶ 매스미디어 홍보<br>– 언론매체, 인터넷, 금연월간지, 스티커 등 |
| 교육과학기술부 | ▶ 흡연 실태에 대한 주기적 파악<br>▶ 체계적 예방교육 실시<br>– 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br>▶ 교원연수를 통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 |
| 문화체육관광부 | ▶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br>–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
| 기획재정부 | ▶ 담배사업법 제정·운영 |
| 지식경제부 |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규제 방안<br>–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약물 유통 심의강화 및 기준보완 |
| 경 찰 청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
| 방송통신위원회 |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흡연장면 노출문제 개선 |
| 지방자치단체 | ▶ 담배판매 업소 특별계도 및 단속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3) 청소년 음주예방 대책 추진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음주경험률은 2009년 56.1%, 2010년 54.8%, 2011년 51.0%로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한국 특유의 관대한 음주문화의 영향 등으로 사회전반에서 음주로 인한 수조원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였고, 음주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채 문제가 지속되어 왔으며, 청소년들은 기성인들의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건강한 성장 발달권을 침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음주는 성장과정상의 복합적인 환경요인에 기인하는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잘못된 전통적 음주문화에 대한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 선포식(2011년 7월 13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선포식에는 청소년·여성·가족·학부모·보건의료·소비자·자원봉사 등 25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고 '수능 백일주 근절 캠페인', '하계 해수욕장 음주예방 캠페인', '청소년에게 술 권하지 않는 건전한 명절문화 만들기', '술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부모교육' 등 연중 다양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 그밖에도 청소년 유해약물 모니터링, 유해약물 판매 점검·단속 강화 및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청소년음주예방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 표 6-2-7 〉 관계부처의 청소년 음주예방 정책 주요 내용

| 관계 부처 | 대책 추진과제 |
|---|---|
| 여성가족부 | ▶ 청소년 음주예방 공동캠페인 실시<br>▶ 주류 판매업소 계도·단속<br>▶ 청소년 흡연 음주예방 대국민 홍보(버스·지하철 광고 등)<br>▶ 청소년 건강열차 프로그램 개발<br>▶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추진(2013~2015년)<br>– 위기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확대<br>– 청소년대상 주류 불법판매 모니터링 강화<br>– 유해약물 피해청소년 재활지원 확대 |
| 보건복지부 | ▶ 음주폐해 감소 및 예방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br>– 캠페인, 공익광고 제작 및 방영, 전광판 등 각종 매체 활용 홍보, "절주홍보대사"의 선정과 활동, "절주기간"의 운영<br>▶ 생애집단별 교육 및 홍보<br>– 학생과 비행청소년, 또래 지도자와 교사, 주류판매업자 대상 교육<br>▶ 정신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조기발견과 음주 폐해 예방<br>– 학교와 연계해 방과 후 예방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중학생과 초등학생까지 적용<br>▶ 주류 판매자의 자정노력 강화<br>– "클린판매점" 선정과 운영<br>▶ 절주 상담실 운영<br>– 절주상담과 교육, 절주잔 제공<br>▶ 알코올상담센터를 통한 지역협력체계 구축<br>– "절주(금주)학교" 운영 추진, 조기검진도구 개발, 지역사회 연계체계 구축 추진 |
| 교육과학기술부 | ▶ 학생들의 음주율 증가 및 저연령화 문제 관련<br>– 학교 학생의 체계적 음주 예방교육 (정규수업, 학교장 재량시간 활용)<br>– 학생 음주예방 교육을 위한 지도능력 배양과 인식제고<br>– 전문지도자 과정 운영 |
| 법무부 | ▶ 위기청소년(소년원)들의 음주율 증가 문제 관련<br>– 갱생프로그램에 최소한의 음주예방 교육 반영 |
| 문화체육관광부 | ▶ 청소년 관람가 영화속의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br>– 영상물등급분류소위원회 운영규정 보완 |
| 지식경제부 | ▶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 주류유통물 규제 방안<br>– 인터넷상의 주류 유통물 심의 강화 및 기준보완 |
| 대검찰청 | ▶ 청소년관련 범죄 수사시 "피의자 원표"에 음주여부 조사항목 신설 |
| 경 찰 청 | ▶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슈퍼 등 단속 강화 |
| 방송통신위원회 | ▶ TV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음주장면 노출문제 개선 |
| 지방자치단체 | ▶ 주류판매 업소 특별계도 단속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흡연·음주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 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다양한 유흥문화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의 청소년유해업소 및 신·변종 유해업소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표 6-2-8 〉 청소년유해업소의 수

(단위 : 개소)

| 연 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유해업소수 | 768,689 | 760,386 | 789,468 | 796,113 | 803,114 | 810,816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더구나 도시지역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1년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유해업소에 대한 청소년의 생애 이용율은 노래방 84.2%, PC방 83.8%, 전자오락실 47.4%, 카페 44.4%, 호프집 및 소주방 12.0%에 달한다.

특히 학교주변의 청소년 유해환경이 확산되어가고 있고, 주거지역 인근에도 유해업소가 난립하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지정 및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 구획화 등을 통해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을 규제하고 있다.

즉, 기존 시가지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주거지, 학교, 학원 등이 혼재되어 입지하면서 청소년에게 교육적·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유해환경에 대한 체계적·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인 '레드 존(RED ZONE)'을 설정하였다.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37곳, 통행제한구역 21곳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시 청소년유해환경격리·구획화 추진 등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에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수립 시 유해업소 접촉이 최소화되도록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사업의 시범도입(국토해양부)을 적극 추진하여 2010년 화성·동탄 2신도시 실시계획에 중심상업용지 등 4개 구역에 한하여 위락시설, 숙박시설, 청소년유해업소 건축을 허용하는 RED ZONE을 지정, 격리·구획화하도록 반영하고 시범실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2010년 6월 29일).

격리구획화 사업의 시범실시 결과에 대한 분석과 함께 사업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의 지속적인 업무협조 체계 유지를 통하여 추후 신도시 개발 시에도 청소년유해환경 격리구획화 사업을 적극 확대·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 표 6-2-9 〉 청소년유해업소 현황

(단위 : 개소)

| 업종 / 시도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무도학원 | 무도장 | 이용업 | 숙박업 | 노래연습장 | 비디오감상실 | 게임 제공업계 | | | | 계 |
|---|---|---|---|---|---|---|---|---|---|---|---|---|---|---|---|
| | | | | | | | | | | | 게임제공업 | 청소년게임장 | 일반게임장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 계 | 30,287 | 15,139 | 591,590 | 78,593 | 1,162 | 88 | 20,688 | 30,474 | 36,659 | 1,207 | 526 | 3,075 | 781 | 547 | 810,816 |

주 : 1)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비디오감상실 지칭.
2) 고용금지업소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이용업, 숙박업, 게임제공업을 지칭(일반음식점의 경우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되며, 숙박업의 경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 (1) 청소년보호법 점검·단속 실적

학교보건법상 절대·상대 정화구역의 지정·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거리를 벗어난 사각지대에는 여전히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는 업소들이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을 퇴폐향락으로 이끌고 있다. 경찰에서는 2010년 8,154건에서 17.4% 증가한 2011년 9,575건 단속하여 6명을 구속하였고, 7,891명을 행정처분 의뢰하였다.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2010년 11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의 불건전서비스 광고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2011년 7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한 결과, 유해매체물 및 유해업소의 출입·고용 행위 위반 사범이 2010년 1,793건에서 2011년 2,723건(51.8%증가)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2-10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실적

(단위 : 명)

| 구분 | 총계 | 위반내용 | | | | 조치 | | |
|---|---|---|---|---|---|---|---|---|
| | | 유해업소 출입·고용 | 유해약물 등 판매 | 청소년이용 유해행위 | 유해매체물 | 구속 | 불구속 | 행정처분 |
| 2011 | 9,575 | 1,690 | 6,337 | 509 | 1,039 | 6 | 9,569 | 7,891 |
| 2010 | 8,154 | 1,351 | 5,882 | 479 | 442 | 10 | 8,144 | 7,281 |
| 2009 | 8,567 | 1,544 | 6,230 | 502 | 291 | 4 | 8,563 | 7,576 |

자료 : 경찰청(2011).

## 나.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정화활동

최근 주택가 및 학교 주변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유해환경이 증가하고 있다. 화상채팅방, 모텔, PC방 등 신·변종 업소가 청소년의 탈선을 부추기고 있어 이에 부응하는 단속 및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유해업소 업종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보호의식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유해업소 및 신·변종유해업소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대상 주류·담배판매행위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점검·단속을 실시하고, 전국 328개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지역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1)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운영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 각종 유해한 환경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1999년 7월 1일 청소년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이후 상권변동 등으로 2012년 6월말 기준 총 58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 표 6-2-11 〉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시·도 | 계 | 통행금지구역 | 통행제한구역 |
|---|---|---|---|
| 계 | 58 | 37 | 21 |
| 서 울 | 9 | 5 | 4 |
| 부 산 | 4 | 2 | 2 |
| 대 구 | 1 | 1 | – |
| 인 천 | 3 | 1 | 2 |
| 광 주 | 2 | 1 | 1 |
| 대 전 | 2 | 2 | – |
| 울 산 | 0 | – | – |
| 경 기 | 9 | 7 | 2 |
| 강 원 | 7 | 7 | – |
| 충 북 | 1 | 1 | – |
| 충 남 | 2 | 2 | – |
| 전 북 | 9 | 4 | 5 |
| 전 남 | 1 | – | 1 |
| 경 북 | 5 | 3 | 2 |
| 경 남 | 3 | 1 | 2 |
| 제 주 | – | – | –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청소년유해업소 격리 구획화

여성가족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각종 신도시에서의 청소년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하여, 신도시 계획 시 지구단위 계획 등을 통해 주거지 및 학교위생정화구역에 청소년유해업소를 제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특정용도제한구역을 설치하며, 도시의 건전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락시설을 집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MOU를 체결하여 신도시에 적용 가능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모델을 제시하고, 주거지나 학교위생정화구역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의 격리·구획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지난 2010년 6월 29일 화성 · 동탄(2) 신도시개발계획에 청소년유해업소 격리·구획화가 반영되었다.

아울러 평택 고덕국제화계획 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에듀타운 개발 컨셉, 대규모 산업단지 입주, 국제교류 특구조성 예정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범람이 우려됨에 따라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구에 대한 위락지구 지정, 청소년유해시설 집단화를 위한 정밀 검토, 위락지구 내에만 청소년유해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다.

### (3)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여성가족부는 각급 학교 주변에 산재해 있는 유흥업소·숙박업소(일명 러브호텔)·각종게임장·노래연습장·비디오물감상실 등 각종 유해업소가 청소년비행과 학교주변 폭력의 온상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질 높은 교육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과 질서의 확립 및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한다.

####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운영 현황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는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규정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근거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까지이며, 이중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절대정화구역,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한다. 정화구역 안에서는 유해업소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일부 행위 및 시설에 대해 각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

####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해업소 현황

학교보건법시행령 부칙규정에 의한 이전·폐쇄 대상 업소는 정화구역을 현행과 같이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으로 구분한 제3차 개정(1981년 10월 8일)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것으로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다. 이후 동시행령의 제4차(1990년 12월), 제6차(1993년 9월), 제12차(1998년 1월) 및 제14차(1999년 5월) 개정 시 새로이 추가되는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하여 5년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이전·폐쇄토록 규정한 바 있다. 2007년 8월 3일 학교보건법이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어 정화구역안에서 게임물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2008년 8월 이후부터 학교 앞에 설치된 미니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 표 6-2-12 〉 정화구역 내 각종업소 지역별 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 계 | 유흥 단란 주점 | 숙박 업소 | 당구장 | 멀티 게임장 (pc방) | 게임 제공업 | 만화 가게 | 무도 학원 | 노래 연습장 | 비디오 감상실 | 전화방 | 성기구 취급소 | 미니 게임기 | 담배 자판기 | 복합 유통 시설 |
|---|---|---|---|---|---|---|---|---|---|---|---|---|---|---|---|
| 서울 | 8,573 | 1,995 | 1,389 | 1,738 | 949 | 58 | 37 | 37 | 2,223 | 88 | 11 | 9 | 6 | 4 | 29 |
| 부산 | 4,024 | 1,828 | 807 | 439 | 84 | 28 | 18 | 22 | 767 | 13 | 3 | 2 | 3 | 0 | 10 |
| 대구 | 1,784 | 402 | 324 | 208 | 123 | 44 | 5 | 42 | 622 | 13 | 0 | 0 | 0 | 0 | 1 |
| 인천 | 2,123 | 595 | 375 | 472 | 109 | 17 | 3 | 13 | 523 | 6 | 3 | 2 | 3 | 0 | 2 |
| 광주 | 988 | 131 | 89 | 210 | 148 | 18 | 0 | 1 | 382 | 3 | 0 | 3 | 0 | 0 | 3 |
| 대전 | 988 | 99 | 159 | 189 | 126 | 20 | 0 | 5 | 376 | 6 | 0 | 0 | 0 | 0 | 8 |
| 울산 | 1,037 | 414 | 171 | 193 | 4 | 15 | 18 | 25 | 194 | 2 | 0 | 0 | 0 | 0 | 1 |
| 경기 | 6,930 | 1,784 | 753 | 1,551 | 571 | 175 | 112 | 54 | 1,863 | 33 | 9 | 3 | 3 | 4 | 15 |
| 강원 | 1,531 | 539 | 422 | 162 | 91 | 31 | 10 | 2 | 270 | 4 | 0 | 0 | 0 | 0 | 0 |
| 충북 | 1,290 | 338 | 301 | 230 | 67 | 8 | 11 | 8 | 316 | 6 | 0 | 3 | 0 | 0 | 2 |
| 충남 | 1,630 | 407 | 401 | 267 | 139 | 29 | 3 | 9 | 362 | 7 | 0 | 0 | 3 | 0 | 3 |
| 전북 | 1,604 | 418 | 192 | 294 | 203 | 74 | 68 | 12 | 331 | 8 | 0 | 0 | 0 | 0 | 4 |
| 전남 | 2,197 | 812 | 347 | 367 | 225 | 59 | 6 | 11 | 364 | 4 | 0 | 0 | 0 | 0 | 2 |
| 경북 | 2,236 | 734 | 501 | 318 | 108 | 45 | 7 | 15 | 468 | 37 | 0 | 0 | 1 | 1 | 1 |
| 경남 | 3,151 | 1,114 | 527 | 366 | 245 | 160 | 43 | 20 | 662 | 8 | 0 | 0 | 0 | 0 | 6 |
| 제주 | 940 | 557 | 174 | 66 | 22 | 2 | 2 | 23 | 91 | 3 | 0 | 0 | 0 | 0 | 0 |
| 계 | 41,026 | 12,167 | 6,932 | 7,070 | 3,214 | 783 | 343 | 299 | 9,814 | 241 | 26 | 22 | 19 | 9 | 87 |

주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업소와 불법업소를 합한 현황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 3 문제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교육장이 설정하지만 건축허가·영업허가와 유해시설의 방지 및 철거명령은 시·군·구청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정화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학교담장 옆이 쓰레기하차장 또는 불법 주차장화 되는 경우가 많아 비위생적이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고,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이용하는 통학로 주변의 불법·선정적인 광고물 등은 학생생활지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 (4)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1993년 한국청소년학회의 청소년유해환경고발센터 개설·운영을 시작으로 민간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자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4년에는 서울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운영되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는 서울 등 6대 도시에 6개 시민단체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이 보급되었다. 1997년에 제정·시행된 청소년보호법상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규정이 마련됨으로써 비로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활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2011년 12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서 328개의 감시단(총 18,363명)이 활동하고 있다.

〈 표 6-2-13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현황

(단위 : 개, 명)

| 시 도 | 합 계 | | 시민단체 | | 학교감시단 | |
|---|---|---|---|---|---|---|
| | 단체수 | 단원수 | 단체수 | 단원수 | 학교수 | 단원수 |
| 서 울 | 108 | 6,838 | 56 | 6,155 | 52 | 683 |
| 부 산 | 20 | 1,111 | 18 | 1,075 | 2 | 36 |
| 대 구 | 8 | 350 | 8 | 350 | – | – |
| 인 천 | 10 | 675 | 10 | 675 | – | – |
| 광 주 | 8 | 371 | 8 | 371 | – | – |
| 대 전 | 5 | 896 | 5 | 896 | – | – |
| 울 산 | 7 | 482 | 7 | 482 | – | – |
| 경 기 | 59 | 3,231 | 59 | 3,231 | – | – |
| 강 원 | 14 | 776 | 13 | 762 | 1 | 14 |
| 충 북 | 8 | 452 | 8 | 452 | – | – |
| 충 남 | 21 | 1,018 | 17 | 955 | 4 | 63 |
| 전 북 | 9 | 578 | 9 | 578 | – | – |
| 전 남 | 16 | 500 | 13 | 469 | 3 | 31 |
| 경 북 | 15 | 367 | 9 | 300 | 6 | 67 |
| 경 남 | 15 | 360 | 15 | 360 | – | – |
| 제 주 | 5 | 358 | 5 | 358 | – | – |
| 합 계 | 328 | 18,363 | 260 | 17,469 | 68 | 894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구체적인 활동내역을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을 시민들로부터 제

보를 받거나 자체 감시활동을 통해 해당 업주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한편, 관계행정기관에 고발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에 청소년유해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청소년보호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세미나 개최, 각종 캠페인 전개 및 유해업소 종사자 교육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지역단위 감시활동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시행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에게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정 및 철회 등 지역상황에 맞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운영관리하게 되었다. 감시단의 결속력 및 유대감 강화와 정보교류 확대와 감시단 활동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감시단의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5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하였으며, 2012년까지 광역지역협의회를 구성 완료하고, 2013년에는 전국 16개 시·도 광역지역협의회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3장

#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

## 1.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강화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고시를 통하여 유해매체물이 청소년들에게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고발조치·심의요청 등 시정조치를 강화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의 경계 붕괴, 모바일 화상통신, UCC, 스마트폰 등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시의적, 실효적 규제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 작업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환경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가. 법·제도개선

1997년에 제정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를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유해한 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매체환경의 급속한 발달과 변화로부터 청소년보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이 곧 국가지속발전가능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문화하고, 규제·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보호·교육 지원 등의 사전 예방적 보호조치와 인터넷 중독 등 매체역기능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 지원에 대한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에서 효율적인 청소년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매체 등급분류제도가 시청가능 연령대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가정 내 시청지도를 위한 직접적인 활용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매체물 내용표시제(폭력성, 선정성, 사행성 등의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숫자나 부호 등을 이용하여 표시) 도입을 추진하여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학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들의 적정한 매체물 선택 및

이용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여과없이 노출되지 않도록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에게 이용자 본인 여부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공인인증서·아이핀·휴대전화 인증 등을 통해 확인토록 의무화하고, 인터넷 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내용이 본인 확인 전에는 드러나지 않도록 포장에 준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 나. 매체물 심의기구 현황

우리나라의 매체물 심의기구는 각 정부기관 산하의 유관기관 및 매체별로 분리되어있는 다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쇄매체의 경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방송 및 통신매체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심의 및 등급분류 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심의기구가 심의를 요청한 콘텐츠나 심의없이 유통되는 콘텐츠의 등급부여, 음반 및 음악파일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매체물 심의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령등급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연령등급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와 문화관련 3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등급분류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심의 및 등급분류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심의기관의 법적 성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 표 6-3-1 〉 매체물 심의기관 현황

| 심의 기구 | 담당 매체 | 소관부처·법률 | 심의형태 |
|---|---|---|---|
| 청소년보호위원회 | 모든 매체물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법 | 사후심의 |
| 간행물윤리위원회 | 간행물 | 문화체육관광부/출판법 | 사후심의 |
|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화·비디오·CD | 문화체육관광부/영화비디오법 | 사전등급분류 |
| 게임물등급위원회 | 게임물 | 문화체육관광부/게임산업법 | 사전등급분류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정보통신물 |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법 | 사후심의 |
| | 방송 프로그램 | 방송통신위원회/방송법 | 사전자율/사후심의병행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9조의 심의기준 등에 따라 소관 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에서 제출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종합 목록표를 작성하여 관보 고시를 의뢰하고 있다.

[ 그림 6-3-1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 절차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 표 6-3-2 〉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관별 결정·고시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단위 : 건)

| 연도 | 고시횟수 | 간행물윤리위원회 | | | | | | 영상물등급위원회 | | 게임물등급위원회 | 청소년보호위원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 | | | | | | 舊청보위 | 계 |
|---|---|---|---|---|---|---|---|---|---|---|---|---|---|---|---|---|---|---|---|---|---|---|
| | | | | | | | | | | | | | 방송프로그램 | | | | | | 통신분야 | | 약물물건업소 | |
| | | 도서 | 정기간행물 | 만화단행 | 만화잡지 | 광고 | 전자출판 | 영화 | 비디오물 | 게임물 | 음반 | 뮤직비디오 | 영화 | 드라마 | 다큐 | 만화 | 음악 | 기타 | PC통신 | 인터넷 | | |
| 1997 | 19 | 59 | 105 | 1,994 | 29 | 11 | 12 | 102 | 444 | 0 | 0 | 0 | 1,699 | 0 | 1 | 19 | 9 | 8 | 607 | 0 | 1 | 5,100 |
| 1998 | 62 | 173 | 416 | 1,140 | 52 | 0 | 49 | 151 | 762 | 0 | 0 | 0 | 916 | 30 | 12 | 52 | 14 | 0 | 755 | 0 | 0 | 4,522 |
| 1999 | 62 | 304 | 388 | 1,501 | 14 | 1 | 16 | 71 | 428 | 0 | 4 | 0 | 280 | 2 | 5 | 2 | 0 | 4 | 61 | 36 | 1 | 3,118 |
| 2000 | 41 | 366 | 699 | 1,227 | 0 | 0 | 0 | (197) | (998) | 0 | (460) | 0 | 158 | 0 | 9 | 4 | 0 | 67 | 53 | 41 | 1 | 2,625 (1,655) |
| 2001 | 45 | 289 | 983 | 1,387 | 1 | 0 | 0 | (143) | (1,083) | (520) | (1,112) | 0 | 655 | 58 | 5 | 99 | 451 | 975 | 7 | 407 | 0 | 5,317 (2,858) |
| 2002 | 51 | 259 | 1,098 | 1,492 | 8 | 0 | 3 | (86) | (1,454) | (896) | (800) | 0 | 1,432 | 33 | 1 | 114 | 19 | 202 | 435 | 851 | 0 | 5,947 (3,236) |
| 2003 | 68 | 611 | 1,220 | 1,802 | 131 | 0 | 256 | (59) | (1,462) | (936) | (536) | 0 | 2,768 | 145 | 0 | 3 | 510 | 284 | 0 | 3,537 | 0 | 11,267 (2,993) |
| 2004 | 63 | 371 | 528 | 1,810 | 269 | 2 | 602 | (89) | (2,746) | (1,547) | (258) | 0 | 269 | 67 | 2 | 0 | 0 | 0 | 0 | 7,657 | 1 | 11,578 (4,640) |
| 2005 | 55 | 334 | 318 | 1,464 | 199 | 0 | 817 | (69) | (2,936) | (1,734) | (127) | 0 | 1,304 | 237 | 0 | 15 | 2 | 179 | 0 | 17,131 | 1 | 22,001 (4,866) |
| 2006 | 57 | 365 | 339 | 1,424 | 78 | 0 | 740 | (92) | (2,355) | (861) | 4 | 0 | 3,001 | 207 | 0 | 29 | 3 | 480 | 0 | 19,475 | 0 | 26,145 (3,308) |
| 2007 | 65 | 414 | 377 | 1,867 | 46 | 0 | 776 | (178) | (2,904) | (304) | 349 | 0 | 6,506 | 190 | 0 | 151 | 1 | 840 | 0 | 15,314 | 0 | 26,831 (3,386) |
| 2008 | 44 | 497 | 280 | 2,059 | 53 | 0 | 758 | (139) | (2,085) | (477) | 653 | 0 | 1,041 | 1,059 | 0 | 142 | 0 | 609 | 0 | 1,198 | 1 | 8,350 (2,701) |
| 2009 | 51 | 809 | 223 | 1,756 | 229 | | 658 | | (1,960) | (577) | 955 | 0 | 3,119 | 2,094 | 0 | 533 | 0 | 1,835 | 0 | 229 | 1 | 12,441 (2,537) |
| 2010 | 45 | 822 | 253 | 2,067 | 189 | | 1,131 | | (3,662) | (582) | 1,057 | 0 | 1,041 | 902 | 0 | 459 | 0 | 969 | 0 | 281 | 1 | 9,173 (4,244) |
| 2011 | 50 | 859 | 427 | 2,811 | 16 | | 1,102 | | (4,132) | (581) | 894 | 189 | 2,327 | 2,443 | 0 | 461 | 0 | 5,524 | 0 | 389 | 3 | 17,440 (4,713) |
| 계 | 778 | 6,532 | 7,654 | 25,801 | 1,314 | 14 | 6,920 | 324 (1,052) | 1,634 (27,777) | 0 (9,015) | 3,916 (3,293) | 189 | 26,516 | 7,467 | 35 | 2,083 | 1,009 | 11,976 | 1,918 | 66,546 | 0 | 171,859 (41,137) |
| 총합계 | | 48,235 | | | | | | 1,958 (28,829) | | 0 (9,015) | 3916 (3,293) | 189 | 49,086 | | | | | | 68,464 | | 11 | 171,859 (43,268) |

주 : 1) 인터넷의 2007년, 2008 대비 고시건수의 편차는 과거 모바일 사진, 화보집 이미지 등을 개별(매수) 심의하던 것을 사이트 기준으로 심의를 변경함.
2) 영화, 비디오물 등 통계 중 ( ) 안 숫자는 '18세미만 청소년이용불가 매체물' 숫자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되지 않아 현황 총계에 미포함. 청소년 보호법 〈만19세〉와 타법 〈만18세〉 연령 차이로 고시불가에 기인.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다. 음반의 청소년 유해성 심의

음반 심의제도는 그 근거가 되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6년 11월)되면서 주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한 심의임을 고려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결정 업무를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하여 추진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음반·음악파일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 등을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유해성 심의, 유통 차단 등 청소년의 건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매년 25,000여 곡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음반심의 이후(2006년 11월 이후) 2011년까지 유해결정 곡은 총 4,101곡(국내 1,904곡, 외국 2,197곡)이다.

〈 표 6-3-3 〉 청소년유해음반 결정·고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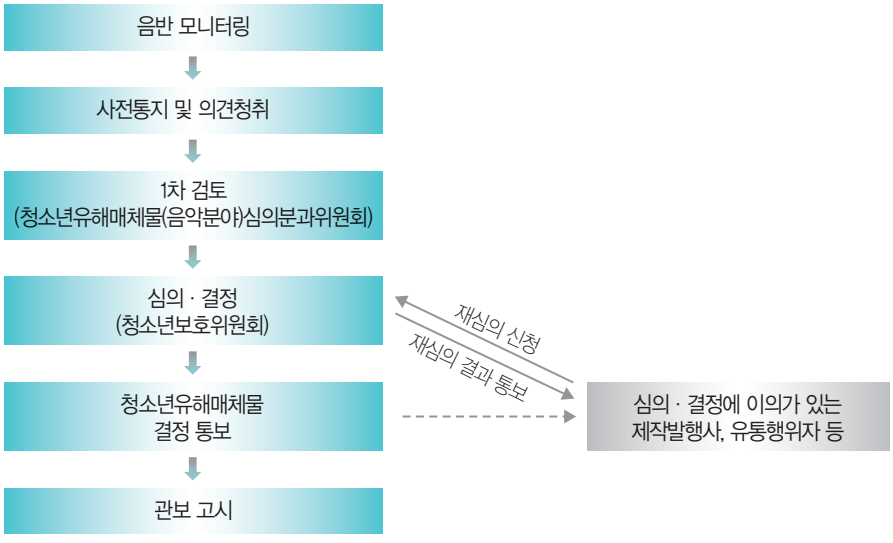
(단위 : 건)

| 구분 | 총계 | 2006.11~12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4,101 | 4 | 349 | 653 | 955 | 1,057 | 1,083 |
| 국내곡 | 1,904 | 2 | 153 | 229 | 459 | 490 | 571 |
| 외국곡 | 2,197 | 2 | 196 | 424 | 496 | 567 | 512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년 7월 19일 개정, 2012년 1월 20일 시행)을 통해 청소년유해매체물 재심의 제도를 도입, 이미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매체물에 대해서도 재심의 청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충분한 심의와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등 제도의 신뢰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체물의 제작·발행자나 유통행위자가 유해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그림 6-3-2 ] 청소년유해음반 재심의 청구 절차



제4장

# 사이버 역기능 해소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

## 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대응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으로 인한 학업성적·사회성 저하, 가정불화, 건강 악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피해 해소를 위한 단계적·체계적 대응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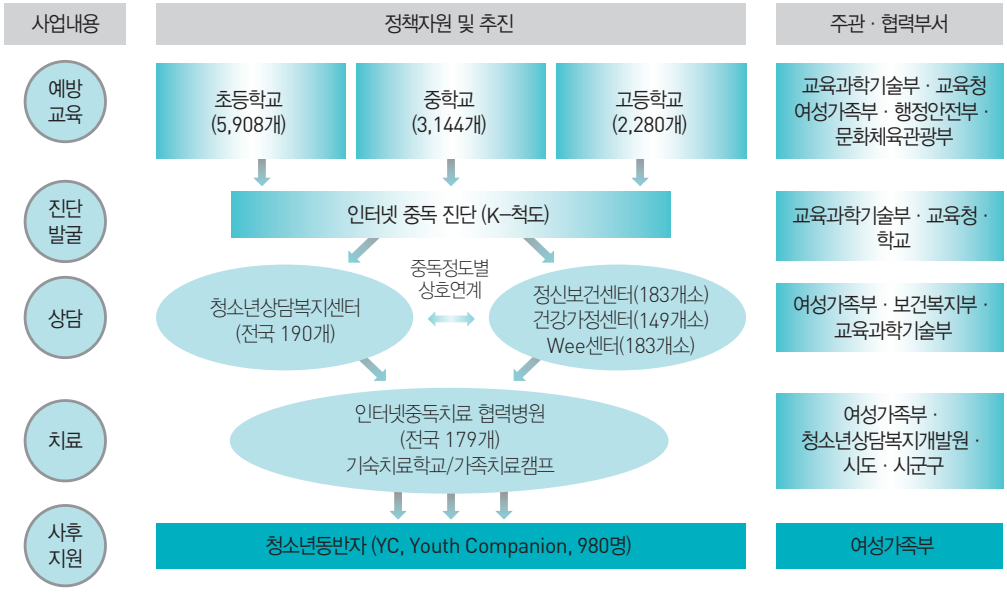
### 가. 인터넷 중독 대응체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중독 대응정책은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매체 환경을 조성해주는 정책의 주요한 분야로서, 이를 위한 상호보완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잠재적인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적 상담 활성화를 위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2012년 현재, 전국 19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둘째,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해 전국 183개소의 정신보건센터 및 179개 치료협력 병원 연계를 통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치료 기반 확대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아울러, 16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허브로 하는 인터넷 중독 대응 지역협력망을 구축하여 지자체,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단체, 학부모단체 등 지역의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협력망을 통하여 지역 내의 인터넷 중독 대응 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지역 내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조기 진단 발굴 및 상담·치료 등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및 상담실적은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 시스템에 연계하여 지역별 중독해소 서비스지원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 그림 6-4-1 ] 여성가족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정책 추진 체계도




## 나. 인터넷 중독 치료-재활 사업 추진

여성가족부와 대한청소년정신의학회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치료·재활기반이 현저히 부족하여 국민적 고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프로파일 연구와 중독 청소년에 대한 장·단기적 서비스의 총괄적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2005년부터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치료-재활 기반 조성 및 임상적 치료-재활 모델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1차년도인 2005년에는 서울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4대 권역에 각각 4개의 중심센터(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연세대병원, 중앙대병원) 및 협력병원 8개소를 치료·재활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심각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심층적 개인 심리치료, 입원치료 및 가족치료, 공존질환치료, 집단치료모델을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치료모델을 수정 및 보완하여 매뉴얼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국 협력병원의 전문의들에게 인터넷 중독 치료 모델을 교육시키는 등 치료 인력의 전문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서울지역에 국한되었던 치료협력병원을 전국 64개 병원으로 확대하여, 전국의 대상 청소년들에게 좀 더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07년에는 지역협력망 내에서 상담과 치료 연계가 활성화되도록 전국 16개 시·도 96개 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을 확대하고,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의 선진 치료모델을 국제적으로 공유한 바 있다.

## 다.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하여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통한 예방·중독 해소 강화에 초점을 두고, 2009년부터 학령전환기 청소년 인터넷 이용습관 진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전수조사는 2009년 초등 4학년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0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125만 명, 2011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등 총 186만 명, 2012년에는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총 18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조사는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학령기간 동안 최소 3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인터넷 이용습관을 점검하여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중독을 조기 진단하여 상담·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 라. 인터넷 중독 위험단계별 상담·치료 지원

### (1) 위험단계별 맞춤형 상담·치료 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단계별로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통한 1차 선별결과를 근거로 지역 상담복지센터에서 위험군에 대한 공존질환 등 추가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에게는 개인상담 및 병원치료 연계(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0만원이내 치료비 지원, 일반계층 30만원 이내)등을 지원하며, 잠재위험군 대상의 중독 낙인효과 예방을 위해 일반사용군과 통합하여 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2) 인터넷 중독 치유특화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치료 이외에 인터넷 중독 고위험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놀이 문화, 또래 경험, 토론, 가족들과의 대화,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상담 및 치료 등을 통해 인터넷 중독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심각한 인터넷 중독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2주 과정의 “기숙형 치료학교” 과정을 운영하였는데,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와 함께하는 2주간의 합숙을 통해 인터넷과 단절한 채 자아탐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터넷 중독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치료학교 종료 후에도 해당 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를 1:1로 연계하여 치료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 상담과 생활점검을 통한 도움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치료 효과를 높이고 있다. 기숙형 치료학교인 “인터넷RESCUE스쿨”은 해마다 참가자들의 높은 호응과 지지를 받아 매년 그 운영을 확대하여 2009년에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실시하였고, 2010년에는 전국에서 7회에 걸

쳐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11년에는 총 8회에 걸쳐 160명을 대상으로 11박 12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외에도 가족들의 이해와 협력이 치료·재활에 필수적이라는 인식하에 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단기캠프인 "가족치유캠프"를 2006년부터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모들이 적극 참여하여, 캠프 이후에도 정기적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 중독 치료의 긍정적인 모델로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치유특화 프로그램은 평균 50%를 넘는 치유효과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선현장 및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와 인지도로 2012년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24회로 확대·운영 하고 있다.

## 마. 인터넷 중독 상담 전문성 및 대응 강화

### (1) 인터넷 중독 상담인력의 전문성 제고

인터넷 중독 및 게임중독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 및 온라인 게임 문화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006년 상반기에 청소년상담사를 위한 인터넷 중독 전문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06년 200여명의 청소년상담사를 대상으로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급증한 인터넷 상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청소년상담사 및 청소년동반자, 학교상담사 등 총 302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치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전문화를 기하였다.

2008년부터는 매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상담사, 정신보건센터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전문가 과정을 신규 및 심화과정으로 이원화하여 실시하는 등 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 2008년 478명, 2009년 472명, 2010년 502명, 2011년 457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총 417명의 상담인력을 양성하였다.

### (2)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상담 실시

청소년인터넷 중독에 대한 상담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중심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1:1 면접상담(9~18시)을 원하는 경우 전국 19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전문상담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상담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매체인 인터넷과 휴대폰을 이용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여 상담에 대한 거리감을 허물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 중독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www.kyci.or.kr)에 접속하면 사이버상담(24시간)을 통해 비밀상담,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대폰 문자서비스 수신번호에 #1388을 누르면 24시간 문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바. 인터넷(게임)중독 등의 피해 청소년 지원

청소년보호법 개정(2011년 5월 19일 개정)에 따라 인터넷(게임) 등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피해 청소년은 예방·상담 및 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피해 청소년의 발굴을 위한 진단,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상담, 피해해소 등을 위한 다양 프로그램 개발, 치료·재활 지원을 위한 협력병원 지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2.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

### 가. 제도 도입 배경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1년 인터넷중독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들 중 인터넷에 중독된 청소년의 비율은 10.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청소년들 10명 중 1명 정도가 인터넷중독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중독 청소년들의 인터넷 주 이용목적은 온라인게임(5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터넷게임중독은 학습시간을 침해하고 수면부족을 야기하는 등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약화시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를 도입하였다. 동 제도는 UN아동권리협약에서 권장하는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수면권, 건강권)를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형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나. 제도 추진현황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의해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만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0~6시)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해서는 안된다(2011년 5월 19일 개정, 2011년 11월 20일 시행).

이 제도는 PC온라인 게임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하고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청소년들에 대한 보급률이 낮은 기기를 통해 진행되는 인터넷게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을 2년간 유예하였다. 또한, 법 규정에 의해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 여부를 매 2년마다 평가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2년 8월 정보통신망법 등 시행에 따라 타인의 주민번호 도용이 어려워져 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법제도 이행여부 점검 및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게임건전이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3.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 지원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 및 게임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한 매체이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이버세계에서의 행동은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가정과 학교에서만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대두된 바, 업계자율정화활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계자율정화시스템의 구축

업계의 자율정화활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청소년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건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 모니터링, 감독 등 내부정화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러한 자율정화시스템은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최대한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규약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자의 노력을 확보하고, 청소년보호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미지를 개선하여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자율의지의 실현이다. 또한, 법위반 행위 예방 및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차단과 청소년 보호법 준수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이버윤리지수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이버 세상을 한층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 나. 사이버윤리지수평가 실시

사이버윤리지수평가의 실시는 국가기관, 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가 사이버 상에서의 윤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력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를 이용한 사업자의 윤리수준의 측정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P2P사이트, UCC사이트 등 광범위한 참여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으로써 매체환경의 개선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이다.

사이버윤리지수는 2006년 6월 개발된 구성방법을 근간으로 인터넷 업계의 도움을 받아 업계의 사이버윤리 수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지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적 평가자료를 근거로 한 자체평가지표, 시민을 대표하는 평가단의 평가를 근거로 한 이용자평가지표 등 3가지 차원으로 측정된다.

2010년에는 평가대상을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의무업체'로 확대하여 총 67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청소년보호책임자지정 의무업체인 포털·게임·동영상·파일공유·스포츠지 사이트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은 2010년과 마찬가지로 실수효자인 수용자가 중심이 되는 평가체제를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도 포털·게임·동영상·파일공유·스포츠지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 다. 청소년보호책임자 교육 실시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한 매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과 함께 인터넷사업자 및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율정화 의지를 제고하고자 2007년부터 인터넷·게임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교육은 각 사업체에서 청소년보호를 담당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개발자, 프로그래머 등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참여하여 청소년보호법 해설, 유해매체물의 심의 절차 기준, 고시제도 등의 강의를 청취함으로써 청소년보호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청소년보호 의식 고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사업장 방문을 통해 포털사이트, 게임사이트,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온라인분야의 청소년보호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중심으로 청소년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역할에

대해 교육하였다.

## 라. 사업자의 자율정화 지원

2009년도에는 2008년도에 이어서 사이버 상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와 사업자의 협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등 유관기관들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규제를 지원하고 불법 및 청소년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협의를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고객센터 및 모니터링 기능 강화, 게임업계의 자율규약선언, 이동통신사의 성인서비스 중단 등의 청소년보호정책이 사업자의 자발적인 정화활동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자율정화 활동은 앞으로도 법이나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버 상에서 청소년들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으로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청소년을 유해매체물 피해로부터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제5장

# 성범죄로부터 청소년 보호

## 1.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선도보호(재범방지교육)

### 가. 성매매 대상청소년 현황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청소년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및 업주 등을 검거하였으며, 대상청소년은 검찰에 송치하였다.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교육과정이수제도를 도입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시행(2006년 6월 30일)에 따라 동 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 수사지침에 따라 2006년에 비해 2007년 대상 청소년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청소년 성매매 단속이 저조함에 따라 성매매 대상청소년 숫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표 6-5-1 〉 청소년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 연 도 | 검거인원 | 검 거 대 상 별 | | | 조 치 | |
|---|---|---|---|---|---|---|
| | | 행위자 | 업주 등 관련자 | 대상 청소년 | 구속 | 불구속 |
| 2005 | 1,946 | 1,611 | 305 | 30 | 295 | 1,651 |
| 2006 | 1,745 | 1,502 | 183 | 60 | 149 | 1,596 |
| 2007 | 2,582 | 1,835 | 242 | 505 | 126 | 2,456 |
| 2008 | 2,112 | 1,464 | 196 | 452 | 81 | 2,031 |
| 2009 | 2,182 | 1,543 | 264 | 375 | 125 | 2,057 |
| 2010 | 1,345 | 972 | 164 | 209 | 56 | 1,289 |
| 2011 | 2,006 | 1,494 | 162 | 350 | 41 | 1,965 |

자료 : 경찰청(2012).

## 나. 성매매 대상청소년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 대상청소년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하여 검사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게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맞춤형 치료·재활프로그램(40시간)을 개발하고 전국에 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위기청소년교육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사업을 수행 중이며, 법적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것으로, 그 목적은 성매매 대상청소년에 대한 치료·재활교육 강화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지원에 두고 있다. 주된 서비스 내용은 검사의 교육·상담과정 이수명령자 및 경찰에 의해 발견된 성매매 대상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가가 5박 6일 동안 24시간 숙식을 함께 하며 심리치료,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성교육, 역할극, 문화활동, 진로탐색 등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후 의료·법률·학업·자립·자활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다. 2012년 현재 1개의 중앙센터 및 10개의 권역별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 표 6-5-2 〉 교육과정 및 운영기관

| 교육과정 | 교육대상 | 운영기관 |
|---|---|---|
| 40시간 | ▶ 검찰의 교육상담수강 결정 통보자<br>▶ 경찰의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자 | ▶ 새날을 여는 청소녀 쉼터(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인천성산사랑의집(인천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경기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춘천길잡이의집(강원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대전광역시 여자청소년 쉼터(대전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부산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광주YWCA(광주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전북여성인권센터(전북위기청소년교육센터)<br>▶ 대구여성회(대구위기청소년교육센터) |
| 2주 | ▶ 지적 장애를 가진 성매매 대상청소년 | ▶ 평화의 샘(평화위기청소년센터) |
| 중앙지원 | –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자료 : 경찰청(2012).

위기청소년교육센터의 서비스 목표는 청소년들이 '미래 가능성과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서,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발견'을 도울 수 있도록 하며,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진로계획을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탈성매매를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미래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성과 주체성을 기르는 것이다. 교육프로그램은

40시간 교육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사전준비, 심리검사(MMPI), 관계형성프로그램(나를 소개합니다, 만남프로그램, 행복쿠키, Let's go, 소개 및 관계형성), 치유 및 치료프로그램(심리치료, 동작치료, 푸드아트 세라피, 역할치료), 성주체성향상 1(성교육, 치료프로그램, 자존감향상프로그램(개인브랜드 가치, 칭찬프로그램)), 성주체성향상 2 (섹슈얼리티(섹슈얼리티 알기), 성교육(성주체성), 관계형성 2(비즈리본공예, 가출이데아, 영화속 나 만나기, 너를 보여줘, 문화체험활동)), 사회통합1(자원봉사), 탈성매매(백분토론, 성매매바로알기), 사회통합2(미래꿈길 찾기, 직업체험), 미래설계, 수료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6-5-3 〉 교육프로그램 구성

| 분 야 | 프 로 그 램 | 비 고 |
|---|---|---|
| 심리진단 | MMPI, 문장완성검사, 홀랜드검사, HTP, MBTI | 5시간 |
| 치유 및 치료 | 동작치료, 미술치료, 푸드아트세라피, 부인과검진 | 6시간 |
| 탈성매매 | 백분토론, 탈성매매여성과 만남, 성매매 바로알기 | 5시간 |
| 자존감 향상 | 이미지메이킹, 행복한 페미니즘과 놀기, 인권감수성훈련,여성인사만나기, 여성학 | 6시간 |
| 성주체성향상 | Sexuality 점검하기, Sexuality 만들기, 성교육, 역할극,잘못된 성문화 바라보기 | 6시간 |
| 사회통합 | 대학방문, 진로탐색, 직업탐색(체험), 여성인사만나기 자원봉사활동, 의사소통 능력기르기 | 6시간 |
| 여가활동 | 영화관람, 노래방, 아이스링크, 클라이밍 | 6시간 |

자료 : 여성가족부(2008). 위기교육센터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미간행 내부자료.

그동안 교육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 표 6-5-4 〉 교육실시현황

(단위 : 명)

| 연 도 | 중앙 센터 | 40시간 교육 | | | | | | | | | 지적 장애 | 계 |
|---|---|---|---|---|---|---|---|---|---|---|---|---|
| | | 서울 | 부산 | 대전 | 광주 | 대구 | 인천 | 경기 | 강원 | 전북 | | |
| 2006 | 24 | – | 20 | 10 | 26 | – | – | – | – | – | 14 | 94 |
| 2007 | 108 | 5 | 58 | 62 | 47 | – | – | – | – | – | 25 | 305 |
| 2008 | – | 45 | 47 | 45 | 43 | – | – | – | – | – | 25 | 205 |
| 2009 | – | 44 | 43 | 36 | 39 | 34 | 42 | – | – | – | 17 | 255 |
| 2010 | – | 52 | 60 | 40 | 48 | 29 | 46 | 50 | 18 | – | 29 | 372 |
| 2011 | – | 51 | 46 | 33 | 33 | 31 | 43 | 50 | 22 | 24 | 22 | 355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

### 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목적과 의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급속한 사회환경의 변화로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 등의 성범죄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줌과 동시에 지속적인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작되었다. 2006년 6월 30일에 개정·시행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도입되었고, 2008년 2월 4일에 다시 법을 개정·시행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 1월 1일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 열람에서 인터넷에서 공개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20년간 등록관리 되고 있다.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 받은 자는 10년 이내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등록·열람제도는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법이 만들어져 시행되었다. 미국은 1994년 제이콥웨터링법(The Jacob Wetterling Act)을 만들어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96년 메간법(The Megan's Act)을 만들어 열람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또한 2006년에 아담월쉬아동보호 및 안전법(The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을 제정하여, 일반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내 성폭력전과자들에 대해 열람할 수 있도록 각 주별로 운영되던 등록·열람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된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결과 「드루 소딘 국가 성범죄자 공개 웹사이트」(Dru Sjodin National Sex Offender Public Website)를 만들어 성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강화해 왔다.

### 나.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종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❶ 강간, ❷ 강제추행, ❸ 성을 사는 행위, ❹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❺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❻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❼ 알선영업행위,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 카메라이용 촬영 등이 해당된다. 등록대상이 되는 위반법률은 상기의 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제8조 제5항 제외),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 다. 신상정보 등록 내용 및 절차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으로부터 등록대상자임과 등록정보를 제출하라는 고지를 받은 자는 4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상정보는 ❶ 성명, ❷ 주민등록번호, 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❹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❺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이다. 주소나 직장, 소유 차량 등이 바뀐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바뀐 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제출하여 변경 등록하여야 하며 사진은 1년 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경찰서장은 매년 1회 등록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할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등록대상자가 제출한 신상정보는 관할경찰서 및 교정시설에서 확인 후 여성가족부에 보내진다. 여성가족부는 각 경찰서와 교정시설로부터 받은 신상정보를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등록일자를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해 준다. 여성가족부는 등록된 신상정보를 20년간 보존·관리하고(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등록기간에서 제외된다). 등록기간이 지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하며, 그 사실을 등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여성가족부는 등록정보를 지역주민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 라. 신상정보 공개제도

2010년 1월 1일부터 실시된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공개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는 ❶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❷ 이 법에 따른 신상공개 결정 또는 열람명령·공개명령을 선고받고

다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❸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❹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❺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기간은 징역·금고 3년 초과의 경우 10년, 징역·금고 3년 이하의 경우 5년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된다. 공개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에서 공개되며 미성년자도 열람할 수 있다. 공개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 마.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2011년 1월 1일부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중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가 도입되어 우편으로 고지정보서를 발송하게 되며, 고지대상자 결정은 법원이 하게 된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고지정보를 공개명령기간 동안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 명령"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야 한다. 고지대상자는 ❶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❷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는다. 고지기간은 공개명령 기간 동안이며, 고지정보의 내용은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읍면동까지로 한다),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요지이다. 고지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실제주소지 읍·면·동 행정구역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역주민 중 아동·청소년을 세대원으로 둔 세대, 어린이집·유치원의 원장, 초·중·고등학교의

장을 대상으로 고지정보서 1부를 우편으로 송부하게 된다.

### 바.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현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등록이 완료된 자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818명이고, 공개명령이 선고되어 인터넷에 공개되고 있는 사람은 1,261명이다.

##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 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 동안(2006년 6월 30일~2008년 2월 3일까지는 5년)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운영 또는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으로는 학교,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보육시설, 아동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무종사자만 해당), 체육시설, 의료기관(의료인만 해당)등 44만여 개 시설이 해당되며, 그 외에 자유업종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가 취업제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2010년 4월 15일부터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한다).

아동·청소년대상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경력 조회는 조회기관에서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조회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및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임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인·허가증 등과 기관장의 신분증이다.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조회대상자가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인지의 여부만을 확인하여 조회를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회신한다.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취업제한자가 법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면 취업

중인 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거나 운영 중인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 폐쇄를 요구한 경우에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폐쇄, 등록·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신고 의무제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등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는 ❶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❷「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❸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❹「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❺「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의 어린이집, ❻「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 ❼「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❽「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❾「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❿「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⓫「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⓭「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⓮「청소년보호법」 제35조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가 해당된다.

아울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상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의 자격취득 과정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4.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운영

### 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립목적 및 의의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전국 16개 시·도에 2007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청소년 스스로 자기 주도적, 실천적 체험학습을 통해 올바른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도록 하여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아동·청소년대상의 성교육시설인 청소년성문화센터는 'Education'과 'Entertainment' 개념을 혼합한 'Edutainment'라는 신개념의 성교육 방식을 도입하여 'Sexuality'를 재미와 감동이 함께 하는 놀이터로 이미지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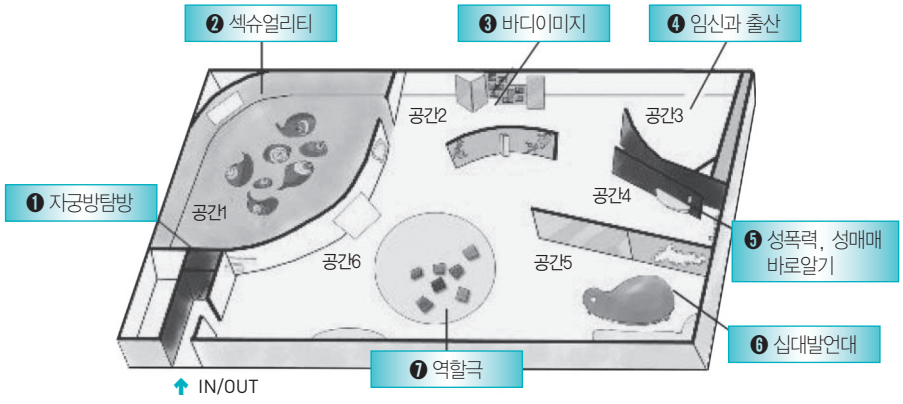
### 나. 추진배경 및 경과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정보를 주로 성인물, 음란성 게임, 미디어 또는 또래를 통해 얻고 있는데 반해 기존 학교의 성교육은 이론중심의 단편적인 지식 전달 위주로 진행되어 그 효과성이 결여됨에 따라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멀티미디어와 다양한 설치물을 활용한 참여형 성교육이 실시되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한정된 지역에서만 교육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발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효과적인 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청소년정책자문위원회 성문화분과위원회가 전국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사업시행을 여성가족부에 건의(2006년 7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7년 여성가족부 소관 정부예산안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었다.

2007년 4월 민간성교육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추진단에 의해 표준콘텐츠 및 운영매뉴얼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콘텐츠를 갖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다.

[ 그림 6-5-1 ] 청소년성문화센터 표준 시설 배치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0).

2011년에는 45인승 버스를 개조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주요 콘텐츠를 탑재하여 농·산·어촌 등에 찾아가는 성교육이 가능한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신규로 도입하였으며, 지역별 교육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이동형 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과 사업내용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역할은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멀티미디어 세대인 청소년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청각적 체험형태의 성교육으로 정확하고 올바른 성지식과 관련 정보 제공, 성교육 관련 민간 전문가의 자문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성교육 센터로서의 인프라 구축 등이다.

사업내용은 대상별, 연령별 전문 성교육 실시(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성교육 실시, 아동·청소년 등 대상별 전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으로 성 비행 및 성범죄 예방, 인형극을 이용한 성교육 실시 등)와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유치원, 각급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출장 성교육 실시, 청소년성교육 캠프 등 특별기획사업 추진 등), 그리고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성교육관련 조사연구 및 자료구축, 청소년성문화동아리 지원 및 자원 활동가 조직·관리) 등이다.

## 라.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청소년성문화센터는 2007년에 전국 16개 시·도 단위에 16개소가 신규로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며, 2012년 11월 현재 이동형 3개소를 포함하여 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표 6-5-5 〉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 계 | 서울 | 부산 | 인천 | 광주 | 대전 | 대구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44 | 7 | 3 | 2 | 2 | 1 | 2 | 1 | 5 | 3 | 2 | 1 | 4 | 3 | 4 | 2 | 2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표 6-5-6 〉 전국 청소년성문화센터 현황

| 시도 | 기 관 명(44개소) |
|---|---|
| 서울(7) |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광진구),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송파구),<br>탁틴청소년성문화센터(서대문구), 아하!청소년성문화센터(영등포구),<br>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도봉구), 하름이청소년성문화센터(성북구), 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강남구) |
| 부산(3) | 부산청소년성문화센터(사상구), 늘함께청소년성문화센터(동래구), 탄생의신비관청소년성문화센터(금정구) |
| 인천(2) | 인천광역시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부평구) |
| 대전(1) |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중구) |
| 대구(2) |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달서구), 대구아름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
| 광주(2) | 광주청소년성문화센터(북구), 광주광산구청소년성문화센터(광산구) |
| 울산(1) | 울산청소년성문화센터(남구) |
| 경기(5) |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탁틴 와~(안산시),<br>경기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 '딸콩달콩'(파주시),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부천시)<br>경기남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소행성', 경기북부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 강원(3) | 강원도청소년성문화센터(춘천시), 강릉청소년성문화센터(강릉시),<br>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원주시) |
| 충북(2) | 충북청소년성문화센터(청주시), 충주호암청소년성문화센터(충주시) |
| 충남(1) | 충남청소년성문화센터(천안시) |
| 전북(4) | 전주청소년성문화센터(전주시), 군산청소년성문화센터(군산시),<br>정읍청소년성문화센터(정읍시), 익산청소년성문화센터(익산시) |

| 시도 | 기 관 명(44개소) |
|---|---|
| 전남(3) | 목포청소년성문화센터(목포시), 여수청소년성문화센터(여수시),<br>전남청소년성문화센터(완도군) |
| 경북(4) | 경북청소년성문화센터(김천시), 새들청소년성문화센터(포항시),<br>경북북부청소년성문화센터(안동시), 경북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 |
| 경남(2) |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사천시), 창원청소년성문화센터(창원시) |
| 제주(2) | 서귀포청소년성문화센터(서귀포시), 제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제주시)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제 7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2011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는 9,825천명이며, 1980년 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점차 감소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고등교육을 받는 학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인구는 1990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교육복지우선사업은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 1,356개 학교 71,853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방과후학교는 2011년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였다. 농산어촌 교육정책은 농산어촌 전원학교와 연중돌봄학교를 육성하여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은 2008년 수립된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으며, 성장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와 탈북학생에 대한 친화적 교육기반을 구축하였다.

# 제 07부 청소년의 교육

제1장 학교교육 현황

제2장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제3장 교육복지정책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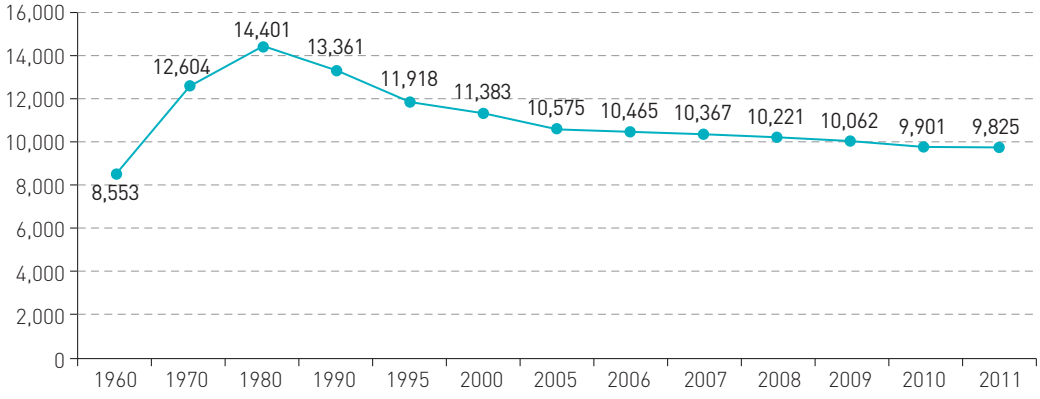
# 학교교육 현황

## 1. 학령인구

2011년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9,825천명이며, 1980년 14,401천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기준 학령인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11세(초등학교)가 3,098천명, 12~14세(중학교)가 1,913천명, 15~17세(고등학교)가 2,064천명, 18~21세(대학)는 2,750천명이다.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령에서 전년대비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림 7-1-1 ] 학령인구

(단위 : 천명)




주 : 6~21세 기준.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 표 7-1-1 〉 학령인구

(단위 : 천명)

| 연도 | 계 (6~21세) | 6~11세 (초등학교) | 12~14세 (중학교) | 15~17세 (고등학교) | 18~21세 (대학교) |
|---|---|---|---|---|---|
| 1960 | 8,553 | 3,629 | 1,566 | 1,417 | 1,941 |
| 1970 | 12,604 | 5,711 | 2,574 | 2,101 | 2,218 |
| 1980 | 14,401 | 5,499 | 2,599 | 2,671 | 3,632 |
| 1990 | 13,361 | 4,786 | 2,317 | 2,595 | 3,663 |
| 1995 | 11,918 | 3,901 | 2,443 | 2,349 | 3,225 |
| 2000 | 11,383 | 4,073 | 1,869 | 2,166 | 3,275 |
| 2005 | 10,575 | 4,016 | 2,058 | 1,864 | 2,637 |
| 2006 | 10,465 | 3,923 | 2,093 | 1,908 | 2,541 |
| 2007 | 10,367 | 3,806 | 2,095 | 1,971 | 2,495 |
| 2008 | 10,221 | 3,643 | 2,071 | 2,032 | 2,475 |
| 2009 | 10,062 | 3,464 | 2,025 | 2,067 | 2,506 |
| 2010 | 9,901 | 3,297 | 1,962 | 2,069 | 2,574 |
| 2011 | 9,825 | 3,098 | 1,913 | 2,064 | 2,750 |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년도.

## 2. 학생인구 및 학교수

2011년 현재 학교급별 재학생수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3,132,477명, 중학생은 1,910,572명, 고등학생은 1,943,798명이다. 초등학교 재학생수는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학생은 2000년 이후 소폭으로 증가하다 2006년부터 감소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199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부터 소폭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전문계 고등학생은 1997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현재 4년제 일반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 수는 2,065,451명이며, 교육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20,241명, 전문대학 재학생은 776,738명이다. 증가 추이를 보면 고등교육 재학생 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 대학생 인구는 1990년 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1980년에 비해 5배나 증가하였다. 대학원생 인구도 1980년 33,939명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에는 86,911명, 2000년에

는 229,437명, 2011년에는 329,933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인구의 감소 추세를 볼 때, 향후 고등교육 인구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 표 7-1-2 〉 학교급별 학생인구

(단위 : 명)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대 학 | 대학원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특수학교 |
|---|---|---|---|---|---|---|---|---|---|
| 1980 | 5,658,002 | 2,471,997 | 932,605 | 764,187 | 402,979 | 33,939 | 9,425 | 165,051 | 8,904 |
| 1990 | 4,868,520 | 2,275,751 | 1,473,155 | 810,651 | 1,040,166 | 86,911 | 15,960 | 323,825 | 19,971 |
| 1995 | 3,905,163 | 2,481,848 | 1,246,427 | 911,453 | 1,187,735 | 112,728 | 19,650 | 569,820 | 21,607 |
| 1996 | 3,800,540 | 2,379,983 | 1,303,874 | 939,433 | 1,266,876 | 127,808 | 20,439 | 642,697 | 21,860 |
| 1997 | 3,783,986 | 2,180,283 | 1,376,688 | 960,037 | 1,368,461 | 153,034 | 20,948 | 724,741 | 22,569 |
| 1998 | 3,834,561 | 2,011,468 | 1,399,394 | 927,486 | 1,477,715 | 179,773 | 20,969 | 801,681 | 23,256 |
| 1999 | 3,935,537 | 1,896,956 | 1,399,389 | 851,751 | 1,587,667 | 204,773 | 21,323 | 859,547 | 23,490 |
| 2000 | 4,019,991 | 1,860,539 | 1,324,482 | 746,986 | 1,665,398 | 229,437 | 20,907 | 913,273 | 23,605 |
| 2005 | 4,022,801 | 2,010,704 | 1,259,792 | 503,104 | 1,859,639 | 282,225 | 25,141 | 853,089 | 23,566 |
| 2006 | 3,925,043 | 2,075,311 | 1,281,508 | 494,349 | 1,888,436 | 290,029 | 25,881 | 817,994 | 23,394 |
| 2007 | 3,829,998 | 2,063,159 | 1,347,363 | 494,011 | 1,919,504 | 296,576 | 25,834 | 795,519 | 23,147 |
| 2008 | 3,672,207 | 2,038,611 | 1,419,486 | 487,492 | 1,943,437 | 301,412 | 24,116 | 771,854 | 23,419 |
| 2009 | 3,474,395 | 2,006,972 | 1,484,966 | 480,826 | 1,984,043 | 306,471 | 22,879 | 760,929 | 23,720 |
| 2010 | 3,299,094 | 1,974,798 | 1,496,227 | 466,129 | 2,028,841 | 316,633 | 21,618 | 767,087 | 23,858 |
| 2011 | 3,132,477 | 1,910,572 | 1,493,485 | 450,313 | 2,065,451 | 329,933 | 20,241 | 776,738 | 24,617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1년 초등학교 수는 5,882개교로, 1980년 6,487개교보다는 633개교가 줄었으나, 2000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중학교 수는 3,153개교로 1980년 2,100개교보다 1,053개교가 늘어났다. 2011년 고등학교 수는 총 2,282개교로 지난해 보다 약간 늘어났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1980년 605개교에서 2011년 689개교로 약간 늘어났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80년 748개교에서 2011년 1,593개교로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교는 1980년에 96개교이던 것이 2011년 183개교로 약 2배 증가하였으며, 전문대학교는 2011년 현재 147개교로, 2007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특수학교는 1980년 57개교에서 2011년 155개교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느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7-1-3 〉 학교급별 학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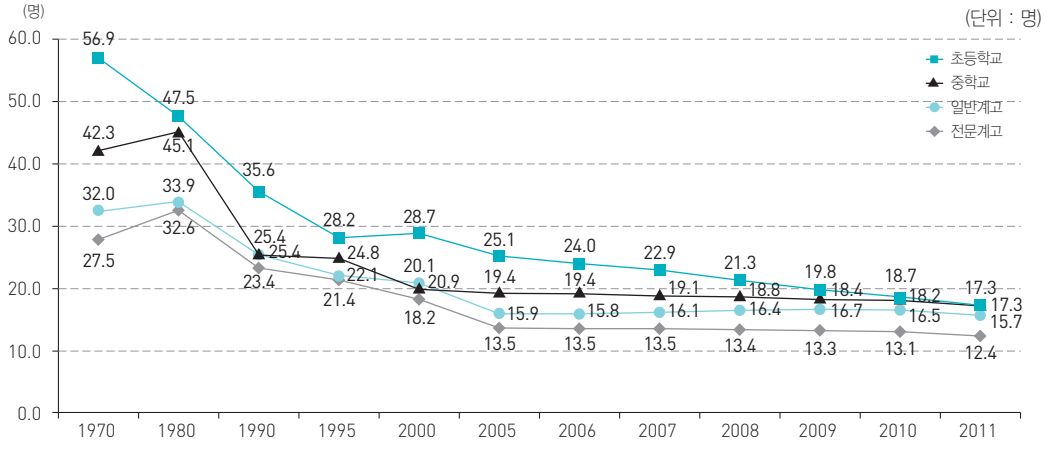
(단위 : 개교)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대학교 | 대학원 | 교육대학 | 전문대학교 | 특수학교 |
|---|---|---|---|---|---|---|---|---|---|---|
| | | | 계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 | | | |
| 1980 | 6,487 | 2,100 | 1,353 | 748 | 605 | 96 | 121 | 11 | 128 | 57 |
| 1990 | 6,335 | 2,474 | 1,683 | 1,096 | 587 | 118 | 298 | 11 | 117 | 104 |
| 1995 | 5,772 | 2,683 | 1,830 | 1,068 | 762 | 142 | 421 | 11 | 145 | 108 |
| 2000 | 5,267 | 2,731 | 1,957 | 1,193 | 764 | 172 | 829 | 11 | 158 | 129 |
| 2005 | 5,646 | 2,935 | 2,095 | 1,382 | 713 | 184 | 1,051 | 11 | 158 | 142 |
| 2006 | 5,733 | 2,999 | 2,144 | 1,437 | 707 | 186 | 1,051 | 11 | 152 | 143 |
| 2007 | 5,756 | 3,032 | 2,159 | 1,457 | 702 | 186 | 1,042 | 11 | 148 | 144 |
| 2008 | 5,813 | 3,077 | 2,190 | 1,493 | 697 | 185 | 1,055 | 10 | 147 | 149 |
| 2009 | 5,829 | 3,106 | 2,225 | 1,534 | 691 | 188 | 1,115 | 10 | 146 | 150 |
| 2010 | 5,854 | 3,130 | 2,253 | 1,561 | 692 | 179 | 1,138 | 10 | 145 | 150 |
| 2011 | 5,882 | 3,153 | 2,282 | 1,593 | 689 | 183 | 1,167 | 10 | 147 | 15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2011년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7.3명, 중학교 17.3명, 일반계 고등학교 15.7명, 전문계 고등학교 12.4명이다.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11.4명, 중학교 2.8명, 일반계 고등학교 5.2명, 전문계 고등학교 5.8명이 줄어들었다.

[ 그림 7-1-2 ] 교원 1인당 학생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7-1-4 〉 교원 1인당 학생수

(단위 : 명)

| 연도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 등 학 교 | |
|---|---|---|---|---|
| | | | 일반계고 | 전문계고 |
| 1970 | 56.9 | 42.3 | 32.0 | 27.5 |
| 1980 | 47.5 | 45.1 | 33.9 | 32.6 |
| 1990 | 35.6 | 25.4 | 25.4 | 23.4 |
| 1995 | 28.2 | 24.8 | 22.1 | 21.4 |
| 2000 | 28.7 | 20.1 | 20.9 | 18.2 |
| 2005 | 25.1 | 19.4 | 15.9 | 13.5 |
| 2006 | 24.0 | 19.4 | 15.8 | 13.5 |
| 2007 | 22.9 | 19.1 | 16.1 | 13.5 |
| 2008 | 21.3 | 18.8 | 16.4 | 13.4 |
| 2009 | 19.8 | 18.4 | 16.7 | 13.3 |
| 2010 | 18.7 | 18.2 | 16.5 | 13.1 |
| 2011 | 17.3 | 17.3 | 15.7 | 12.4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3. 조기유학 현황

해외 교육기관에서의 수학을 목적으로 출국(해외이주 또는 부모의 해외파견으로 인해 동행하여 출국하는 경우 제외)한 초·중·고 학생 수는 2011학년도(2011.3.1~2012.2.29)기준으로 총 16,515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7,477명, 중학생이 5,468명, 고등학생이 3,570명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전년 대비 약 12% 감소하였다.

〈 표 7-1-5 〉 연도별·학교급별 출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 초등학교 | 중 학 교 | 고등학교 | 합 계 |
|---|---|---|---|---|
| 2001 | 2,107 | 3,171 | 2,666 | 7,944 |
| 2002 | 3,464 | 3,301 | 3,367 | 10,132 |
| 2003 | 4,052 | 3,674 | 2,772 | 10,498 |
| 2004 | 6,276 | 5,568 | 4,602 | 16,446 |
| 2005 | 8,148 | 6,670 | 5,582 | 20,400 |
| 2006 | 13,814 | 9,246 | 6,451 | 29,511 |
| 2007 | 12,341 | 9,201 | 6,126 | 27,668 |
| 2008 | 12,531 | 8,888 | 5,930 | 27,349 |
| 2009 | 8,369 | 5,723 | 4,026 | 18,118 |
| 2010 | 8,794 | 5,870 | 4,077 | 18,741 |
| 2011 | 7,477 | 5,468 | 3,570 | 16,51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0).

## 4.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2011년 5월 기준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는 23개교, 특성화 중학교는 10개교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2011년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3,829명으로 이는 2010년 3,410명에 비해 419명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수는 물론, 학생 수, 교원 수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 7-1-6 〉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현황

(단위 : 개교, 명)

| 구분 | 2007 | | | 2008 | | | 2009 | | | 2010 | | | 2011 | | |
|---|---|---|---|---|---|---|---|---|---|---|---|---|---|---|---|
|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학교수 | 학생수 | 교원수 |
| 고등학교 | 21 | 2,154 | 306 | 21 | 2,218 | 324 | 21 | 2,436 | 322 | 23 | 2,558 | 356 | 23 | 2,728 | 388 |
| 중 학 교 | 8 | 669 | 86 | 8 | 766 | 95 | 8 | 974 | 94 | 9 | 1,007 | 109 | 10 | 1,101 | 131 |
| 합 계 | 29 | 2,823 | 392 | 29 | 2,984 | 419 | 29 | 3,410 | 416 | 32 | 3,565 | 465 | 33 | 3,829 | 51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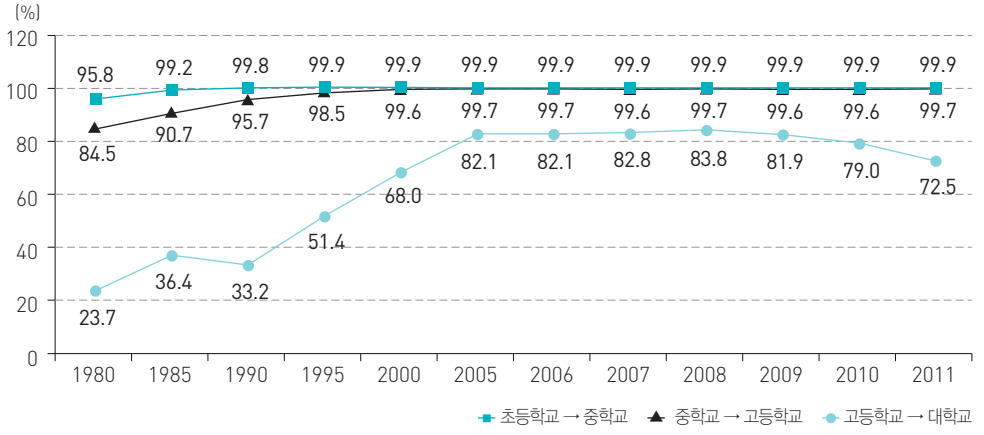
## 5. 진학률

2011년 현재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2000년 이후 거의 완전 취학율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72.5%로, 2009년에 비해 9.4%p 감소하였으나, 1990년의 33.2%에 비해 39.3%p 증가한 것으로 고등교육 기회가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고등학교 유형별 대학 진학률을 보면 인문계 고교는 2000년 84.6%에서 2011년에는 75.2%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여기에는 2011년부터 조사시점이 변경된 영향도 있다. 2000년 35.7%에 불과했던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은 2011년에도 63.7%로 크게 높지만 지난 해 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림 7-1-3] 학교 급별 진학률

(단위 :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표 7-1-7 〉 학교 급별 진학률[1]

(단위 : %)

| 연도 | 초등학교 → 중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고등학교 → 대학[2] | | |
|---|---|---|---|---|---|
| | 계 | 계 | 계 | 일반계 | 전문계 |
| 1980 | 95.8 | 84.5 | 23.7 | 39.2 | 5.0 |
| 1985 | 99.2 | 90.7 | 36.4 | 53.8 | 9.9 |
| 1990 | 99.8 | 95.7 | 33.2 | 47.2 | 6.3 |
| 1995 | 99.9 | 98.5 | 51.4 | 72.8 | 17.2 |
| 2000 | 99.9 | 99.6 | 68.0 | 84.6 | 35.7 |
| 2005 | 99.9 | 99.7 | 82.1 | 88.3 | 62.0 |
| 2006 | 99.9 | 99.7 | 82.1 | 87.5 | 68.6 |
| 2007 | 99.9 | 99.6 | 82.8 | 87.1 | 71.5 |
| 2008 | 99.9 | 99.7 | 83.8 | 87.9 | 72.9 |
| 2009 | 99.9 | 99.6 | 81.9 | 84.9 | 73.5 |
| 2010 | 99.9 | 99.6 | 79.0 | 81.5 | 71.1 |
| 2011 | 99.9 | 99.7 | 72.5 | 75.2 | 63.7 |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졸업생 수)×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6. 교육재정

### 가.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2011년도 교육 부처의 예산은 45조 1,166억원으로 1980년의 약 1조 992억원, 1990년의 약 5조 624억원에 이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전체 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부처 예산은 17.1%로 교육 부처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 표 7-1-8 〉 연도별 중앙정부 예산 대비 교육 부처 예산

(단위 : 천원, %)

| 구 분 | 정부예산(A) | 교육과학기술부예산(B) | 비 율 (B/A) |
|---|---|---|---|
| 1970 | 446,273,301 | 78,478,212 | 17.6 |
| 1980 | 5,804,061,441 | 1,099,159,170 | 18.9 |
| 1990 | 22,689,432,968 | 5,062,431,258 | 22.3 |
| 2000 | 93,937,057,000 | 19,172,027,920 | 20.4 |
| 2001 | 102,528,518,000 | 20,034,364,710 | 19.5 |
| 2002 | 113,898,884,000 | 22,278,357,817 | 19.6 |
| 2003 | 120,477,623,000 | 24,404,401,310 | 20.3 |
| 2004 | 126,991,802,000 | 26,399,680,082 | 20.8 |
| 2005 | 134,370,378,000 | 27,982,002,000 | 20.8 |
| 2006 | 144,807,610,439 | 29,127,258,513 | 20.1 |
| 2007 | 156,517,719,000 | 31,044,747,984 | 19.8 |
| 2008 | 183,515,764,000 | 35,897,425,012 | 19.6 |
| 2009 | 214,563,409,000 | 38,696,405,000 | 18.0 |
| 2010 | 211,992,599,000 | 41,627,519,000 | 19.6 |
| 2011 | 264,092,862,000 | 45,116,643,669 | 17.1 |

주 : 1) 정부예산=일반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일반회계+특별회계
3)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은 교육분야 예산 현황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 나. GDP 대비 교육재정

2011년도 교육예산은 45조 1,100여억원으로, 우리나라 GDP 대비 교육예산을 살펴보면, 2007년 3.5%, 2008년 3.7%, 2009년 3.8%로 미미하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3.2%, 2011년 3.3%로 GDP 대비 교육예산 비율이 다소 낮아졌다.

〈 표 7-1-9 〉 GDP대비 교육재정

(단위 : 조원, %)

| 구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교육 | 유아 및 초중등 | 27.4 | 30.8 | 33.9 | 32.5 | 35.5 |
| | 고등교육 | 3.6 | 4.2 | 4.2 | 4.7 | 4.8 |
| | 평생교육 | 0.3 | 0.4 | 0.5 | 0.5 | 0.6 |
| | 교육일반 | 0.1 | 0.2 | 0.1 | 0.1 | 0.1 |
| | 소계 | 31.4 | 35.6 | 38.7 | 37.9 | 41.0 |
| GDP규모 | | 906.3 | 961.8 | 1,025.6 | 1,172.80 | 1,237.13 |
| GDP대비비율 | | 3.5 | 3.7 | 3.8 | 3.2 | 3.3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1년도 예산안 분석Ⅱ.
교육과학기술부(2010).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 다.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1(Education at a Glance: OECD Indicators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8년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국가 평균 5.7%보다 높은 7.6% 수준이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부담 공교육비 구성비율은 4.7%로 OECD 국가 전체 평균인 5.0%보다 낮은 수준이며, 학부모부담 비중은 OECD 국가 전체 평균보다 1.9%p 높은 2.8%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7-1-10 〉 국가별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

(단위 : %)

| 구 분 | OECD평균 | 한국 | 미국 | 프랑스 | 독일 | 영국 | 일본 |
|---|---|---|---|---|---|---|---|
| ▶ 공교육비/GDP | 5.9 | 7.6 | 7.2 | 6.0 | 4.8 | 5.7 | 4.9 |
| • 정부부담 | 5.0 | 4.7 | 5.1 | 5.5 | 4.1 | 5.1 | 3.3 |
| • 학부모부담 | 0.9 | 2.8 | 2.1 | 0.5 | 0.7 | 0.6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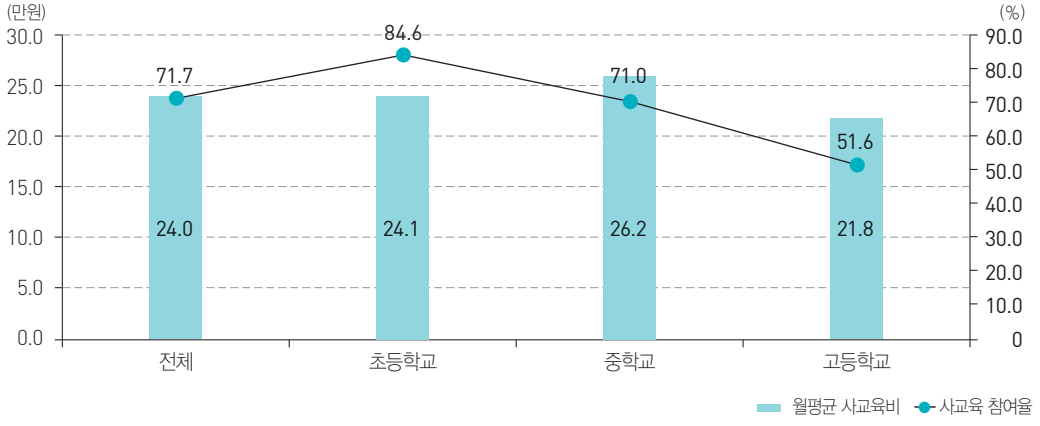
자료 : OECD(2011). 2011년 OECD 교육지표.

## 라.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

2011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2010년과 같은 수준이며, 사교육 참여율도 71.7%로 전년대비 1.9%p 감소하였다.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일반계 고등학교가 25.9만원으로 가장 높고,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가 가장 높았다.

[ 그림 7-1-4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율 및 월평균 사교육비(2011)

(단위 : 만원, %)




자료 : 통계청(2011). 사교육비조사.

〈 표 7-1-11 〉 학교급별 월평균 사교육비 및 사교육 참여율

| 구분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1] (만원, %) | | | 사교육 참여율 (%, %p) | | |
|---|---|---|---|---|---|---|
| | 2010 | 2011 | 증감률 | 2010 | 2011 | 증감률 |
| 전 체 | 24.0 | 24.0 | 0.0 | 73.6 | 71.7 | -1.9 |
| 초등학교 | 24.5 | 24.1 | -1.6 | 86.8 | 84.6 | -2.2 |
| 중학교 | 25.5 | 26.2 | 2.7 | 72.2 | 71.0 | -1.2 |
| 고등학교 | 21.8 | 21.8 | 0.0 | 52.8 | 51.6 | -1.2 |
| 일반고 | 26.5 | 25.9 | -2.3 | 61.1 | 58.7 | -2.4 |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자료 : 통계청(2011). 사교육비조사.

# 제2장
# 학업성취도 및 학교생활 만족도

## 1.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OECD는 만 15세(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소양 수준을 파악하고 소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 요인을 분석하여 각국 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3년 주기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여 비교하는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를 추진하고 있다. 2009년 평가에는 총 65개국(OECD 회원국가 34개국 포함) 약 470,0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57개교의 만 15세 학생 698,272명이 참여하였다.

PISA 2009 결과,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은 읽기 1~2위, 수학 1~2위, 과학 2~4위로 최상위의 성취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참여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전체 65개 참여국(OECD 34개국 포함)의 비교 결과에서도 읽기 2~4위, 수학 3~6위, 과학 4~7위로 높은 성취수준을 나타냈다.

〈 표 7-2-1 〉 PISA 2009 영역별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 읽기 소양 | | | | 수학적 소양 | | | | 과학적 소양 | | | |
|---|---|---|---|---|---|---|---|---|---|---|---|
| 국가명 | 등수 범위 | | 평균 점수 | 국가명 | 등수 범위 | | 평균 점수 | 국가명 | 등수 범위 | | 평균 점수 |
| | OECD 국가 | 전체 국가 | | | OECD 국가 | 전체 국가 | | | OECD 국가 | 전체 국가 | |
| 상하이-중국 | – | 1 | 556 | 상하이-중국 | – | 1 | 600 | 상하이-중국 | – | 1 | 575 |
| 대한민국 | 1~2 | 2~4 | 539 | 싱가포르 | – | 2 | 562 | 핀란드 | 1 | 2~3 | 554 |
| 핀란드 | 1~2 | 2~4 | 536 | 홍콩-중국 | – | 3~4 | 555 | 홍콩-중국 | – | 2~3 | 549 |
| 홍콩-중국 | – | 3~4 | 533 | 대한민국 | 1~2 | 3~6 | 546 | 싱가포르 | – | 4~6 | 542 |
| 싱가포르Ⓝ | – | 5~6 | 526 | 대만 | – | 4~7 | 543 | 일본 | 2~3 | 4~6 | 539 |
| 캐나다 | 3~4 | 5~7 | 524 | 핀란드 | 1~3 | 4~7 | 541 | 대한민국 | 2~4 | 4~7 | 538 |
| 뉴질랜드 | 3~5 | 6~9 | 521 | 리히텐슈타인 | – | 5~9 | 536 | 뉴질랜드 | 3~6 | 6~9 | 532 |
| 일본 | 3~6 | 5~9 | 520 | 스위스 | 2~4 | 6~9 | 534 | 캐나다 | 4~7 | 7~10 | 529 |
| 호주 | 5~7 | 8~10 | 515 | 일본 | 3~6 | 8~12 | 529 | 에스토니아 | 4~8 | 7~11 | 528 |
| 네덜란드 | 5~13 | 8~16 | 508 | 캐나다 | 4~6 | 9~12 | 527 | 호주 | 4~8 | 7~11 | 527 |
| 벨기에 | 7~10 | 10~14 | 506 | 네덜란드 | 3~7 | 8~13 | 526 | 네덜란드 | 4~11 | 7~16 | 522 |
| 노르웨이 | 7~14 | 10~18 | 503 | 마카오-중국 | – | 10~12 | 525 | 대만 | – | 11~15 | 520 |
| 에스토니아 | 8~17 | 11~21 | 501 | 뉴질랜드 | 6~8 | 12~14 | 519 | 독일 | 7~10 | 10~15 | 520 |
| 스위스 | 8~17 | 11~21 | 501 | 벨기에 | 7~11 | 13~17 | 515 | 리히텐슈타인 | – | 10~16 | 520 |
| 폴란드 | 8~17 | 11~22 | 500 | 호주 | 7~11 | 13~17 | 514 | 스위스 | 8~12 | 12~17 | 517 |
| 아이슬란드 | 9~16 | 12~19 | 500 | 독일 | 8~12 | 13~17 | 513 | 영국 | 9~13 | 14~19 | 514 |
| 미국 | 8~20 | 11~25 | 500 | 미국 | 21~29 | 26~36 | 487 | 미국 | 13~22 | 19~29 | 502 |
| OECD 국가별 평균 | | | 493 | OECD 국가별 평균 | | | 496 | OECD 국가별 평균 | | | 501 |

주 : 1) PISA 점수는 평균이 500점이고 표준편차가 100인 척도 점수임.
2) OECD에서는 PISA 2006에서 95%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등수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3) Ⓝ : ISA 2009부터 PISA 연구에 처음 참여한 국가 및 경제협력 파트너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각 영역별 평가결과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읽기 영역은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오다 2009년에는 하락하였으며, 수학 영역은 2003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과학 영역은 7~13위에서 4~7위로 2006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2000년의 1위, 2003년의 3위에 비해 비교 순위가 낮아졌다.

〈 표 7-2-2 〉 PISA의 평가영역별 학업성취도 순위 및 평균점수 변화 추이

| PISA 평가 (비교국 수) | 읽기 영역 | | 수학 영역 | | 과학 영역 | | 문제 해결력 영역 | |
|---|---|---|---|---|---|---|---|---|
|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순위 | 평균 |
| PISA 2009 (65개국) | 2~4 | 539 | 3~6 | 546 | 4~7 | 538 | 해당 사항 없음 | |
| PISA 2006 (57개국) | 1 | 556 | 1~4 | 547 | 7~13 | 522 | 해당 사항 없음 | |
| PISA 2003 (40개국) | 2 | 534 | 3 | 542 | 4 | 538 | 1 | 550 |
| PISA PLUS* (41개국) | 6 | 525 | 3 | 547 | 1 | 552 | 해당 사항 없음 | |
| PISA 2000 (31개국) | 6 | 525 | 2 | 547 | 1 | 552 | 해당 사항 없음 | |

주 : PISA PLUS : PISA 2000 실시 이후 동 평가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2001년에 PISA 2000과 같은 평가도구로 평가를 수행하여 PISA 2000 평가결과와 합한 총 41개국의 평가 결과를 분석한 자료(네덜란드, 루마니아는 평가에 참여하였으나 분석에서 제외).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읽기에서 남·여학생의 차이는 35점으로 여학생의 읽기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는데, OECD 평균 성별 차이의 추이를 고려할 때 남·여학생의 격차가 커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OECD 평균 성별차이인 39점에 비해서는 성별차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에서는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약간 높았고, 과학에서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점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OECD 평균 성별차이의 추이를 고려할 때 수학에서는 우리나라 여학생들의 향상이 두드러진 반면, 과학에서는 OECD 평균 성별 차이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표 7-2-3 〉 PISA 영역별 학업성취도 점수에 대한 성별 추이

| 영역 \ 연구주기 (참여국 수) | | PISA 2000 (41개국) | | PISA 2003 (40개국) | | PISA 2006 (57개국) | | PISA 2009 (65개국) | |
|---|---|---|---|---|---|---|---|---|---|
| | | 대한민국 | OECD | 대한민국 | OECD | 대한민국 | OECD | 대한민국 | OECD |
| 읽기 | 남학생 | 519 | 485 | 525 | 477 | 539 | 473 | 523 | 474 |
| | 여학생 | 533 | 517 | 547 | 511 | 574 | 511 | 558 | 513 |
| | 차이(남-여) | -14 ▼ | -32 ▼ | -21 ▼ | -34 ▼ | -35 ▼ | -38 ▼ | -35 ▼ | -39 ▼ |
| 수학 | 남학생 | 559 | 506 | 552 | 506 | 552 | 503 | 548 | 501 |
| | 여학생 | 532 | 495 | 528 | 494 | 543 | 492 | 544 | 490 |
| | 차이(남-여) | 27 ▲ | 11 ▲ | 23 ▲ | 11 ▲ | 9 | 11 ▲ | 3 | 12 ▲ |
| 과학 | 남학생 | 561 | 501 | 546 | 503 | 521 | 501 | 537 | 501 |
| | 여학생 | 541 | 501 | 527 | 497 | 523 | 499 | 539 | 501 |
| | 차이(남-여) | 19 ▲ | 0 | 18 ▲ | 6 ▲ | -2 | 2 ▲ | -2 | 0 |

주 : 위의 수치는 반올림에 의해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 :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영역별 학생의 수준별 성취수준을 보면, 읽기는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5.8%(2위)에 불과하고 최상위권인 5수준 이상의 학생 비율이 12.9%(6위)로, 하위수준 학생 비율은 변동이 없으나 우수한 성취수준을 보이는 학생이 증가하였다. 수학은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8.1%(3위)로 과거에 비해 다소 줄었고, 최상위권인 6수준의 학생 비율은 7.8%(5위)로 다소 낮아졌다. 과학은 하위수준인 1수준 이하의 학생 비율이 6.3%(3위)로 2006년에 비해 감소하여 하위수준 학생들의 학력이 향상되었다.

〈 표 7-2-4 〉 PISA 영역별 학업성취수준 변화 추이

(단위 : %)

| 영역 \ 연구주기 (참여국 수) | | PISA 2000 (41개국) | PISA 2003 (40개국) | PISA 2006 (57개국) | PISA 2009 (65개국) |
|---|---|---|---|---|---|
| 읽기 | 1수준이하 | 5.7 | 6.8 | 5.7 | 5.8 |
| | 2수준 | 18.6 | 16.8 | 12.5 | 15.4 |
| | 3수준 | 38.8 | 33.5 | 27.2 | 33.0 |
| | 4수준 | 31.1 | 30.8 | 32.7 | 32.9 |
| | 5수준이상 | 5.7 | 12.2 | 21.7 | 12.9 |
| 수학 | 1수준이하 | 해당사항 없음 | 9.6 | 8.8 | 8.1 |
| | 2수준 | | 16.6 | 15.2 | 15.6 |
| | 3수준 | | 24.1 | 23.5 | 24.4 |
| | 4수준 | | 25.0 | 25.5 | 26.3 |
| | 5수준 | | 16.7 | 18.0 | 17.7 |
| | 6수준 | | 8.1 | 9.1 | 7.8 |
| 과학 | 1수준이하 | | 해당사항 없음 | 11.2 | 6.3 |
| | 2수준 | | | 21.2 | 18.5 |
| | 3수준 | | | 31.8 | 33.1 |
| | 4수준 | | | 25.5 | 30.4 |
| | 5수준 | | | 9.2 | 10.5 |
| | 6수준 | | | 1.1 | 1.1 |

주 : PISA 2000(41개국) : PISA 2000(30개국)과 PISA PLUS(11개국)를 합한 자료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PISA에서 설정한 읽기에 대한 학습·심리 척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 학생의 읽기 학습에 대해 즐겁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0.13%로 OECD 평균 0.1%보다 높아 읽기 태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읽기에 대한 학습 전략 중, 암기와 정교화 전략 역시 OECD평균보다 약간 높았으며, 특히 여학생의 암기 및 정교화 전략은 OECD 여학생 평균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제 전략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표 7-2-5 〉 PISA 2009 읽기에 대한 학습·심리 척도 분석 결과

| 읽기에 대한 학습·심리적 척도 | | 대한민국 | | | OECD | | |
|---|---|---|---|---|---|---|---|
| |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전체 | 남학생 | 여학생 |
| 읽기태도 | 즐거움 | 0.13 | 0.00 | 0.27 | 0.00 | −0.31 | 0.31 |
| 읽기 전략 | 암기 | 0.08 | −0.02 | 0.19 | 0.00 | −0.09 | 0.09 |
| | 정교화 | 0.09 | 0.10 | 0.08 | 0.00 | 0.04 | −0.04 |
| | 통제 | −0.27 | −0.34 | −0.20 | 0.00 | −0.13 | 0.14 |

주 : 각 지수는 표준점수(평균 0, 표준편차 1)임.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2009년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학교 내 차이는 OECD 평균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교 간 격차가 설명하는 읽기 점수의 분산은 약 31.6%, 학교 내 차이로 인한 읽기 점수의 분산은 61.0%로 학교 간 뿐 아니라 학교 내부에서의 차이가 OECD 국가들보다 낮아 학교 간, 학교 내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2-6 〉 PISA 2009 읽기 점수에서의 학교 간 및 학교 내 차이

(단위 : %)

| 구 분 | 읽기 점수에서의 OECD 평균 분산 대비 비율 | | |
|---|---|---|---|
| | 전체 분산 | 학교 간 분산 | 학교 내 분산 |
| 대한민국 | 72.4 | 31.6 | 61.0 |
| OECD | 100 | 41.7 | 64.5 |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0).

## 2.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통계청의 「사회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학생들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은 2000년 41.4%, 2004년 46.5%, 2008년 51.0%로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으나, 2010년에는 46.5%로 감소하였다.

〈 표 7-2-7 〉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단위 : %)

| 구분 | 2000년 | | | 2004년 | | | 2008년 | | | 2010년 | | |
|---|---|---|---|---|---|---|---|---|---|---|---|---|
|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 보통 |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 보통 |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 보통 |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 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 보통 | 불만 (약간 불만+ 매우 불만) |
| 전반적인 학교생활 | 41.4 | 45.5 | 13.1 | 46.5 | 42.0 | 11.5 | 51.0 | 43.1 | 5.9 | 46.5 | 46.6 | 6.8 |
| 교육내용 | 30.7 | 48.9 | 20.4 | 35.7 | 48.1 | 16.2 | 50.8 | 39.2 | 10.0 | 46.3 | 43.5 | 10.2 |
| 교우관계 | 67.7 | 28.6 | 3.7 | 66.6 | 29.3 | 4.1 | 70.0 | 27.3 | 2.7 | 68.4 | 27.9 | 3.7 |
| 교사(교수)와의 관계 | 36.2 | 48.4 | 15.4 | 42.6 | 46.0 | 11.4 | 46.9 | 45.0 | 8.2 | 43.9 | 46.8 | 9.3 |
| 학교시설 및 설비 | 23.0 | 35.8 | 41.2 | 29.5 | 39.9 | 30.6 | 34.8 | 40.9 | 24.3 | 34.1 | 42.8 | 23.1 |
| 학교주변 환경 | 23.4 | 44.0 | 32.6 | 27.6 | 45.5 | 26.9 | 30.7 | 43.2 | 26.1 | 30.0 | 45.1 | 24.9 |

자료 : 통계청(2010). 사회조사보고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30.7%에서 2004년에는 35.7%, 2008년에는 50.8%로 높아지다가, 2010년에는 46.3%로 감소하였다. 교우관계 만족도는 2000년에 67.7%, 2004년에는 66.6%, 2008년에는 70.0%로 소폭 상승하였고, 2010년에는 68.4%로 나타났다. 교사(교수)와의 관계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에 36.2%이던 것이 2004년에는 42.6%, 2008년에는 46.9%, 2010년에는 43.9%로 나타났다. 학교시설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0%에서 2004년 29.5%, 2008년 34.8%로 지속적으로 높아졌으나 2010년에는 34.1%에 머무르고 있다. 학교주변 환경 만족도를 보면, '만족한다'('매우 만족'+'약간 만족')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 23.4%에서 2004년 27.6%, 2008년 30.7%, 2010년에는 30.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학교시설과 학교주변 환경에 대해 가장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 교육복지정책

##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 가. 추진 목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의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불리한 아동·청소년들의 취약성을 최대한 극복하고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통합적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역량을 갖춘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목적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다.

### 나. 추진 경과 및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신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하 교복투 사업)은 2002년 7월 교육인적자원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되어 출발하였다. 2003년부터 2년 간 시범적으로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인근 행정동 내 유·초·중학교가 포함된 학교군 단위로 8개 사업지역(zone)을 지정하고, 23개 행정동 내 79교(유치원 34교, 초등학교 29교, 중학교 16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5년에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사업지역을 확대하여 광역시 대상 신규 7개 지역을 추가 지정하여 총 15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사업지역을 인구 25만 이상의 중소 도시로 확대했을 뿐 아니라, 사업지역의 의미를 물리적 행정동이 아닌 취약집단 밀집 학교군으로 확대하여 16개 시도의 총 30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에는 사업지역을 총 60개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2008년 말에는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지역으로 사업학교를 확대하여 2010년까지 전국 534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었다.

사업 취지와 성과를 계승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2010년 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과 초중등교육법 제54조 개정을 통하여 2011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사업 전환을 통해 종래 지역 단위로 사업학교가 선정되었던 지정 기준이 학교 단위로 전환되어 개별 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지역뿐 아니라 읍면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2011년에 지역 특성과 취약집단 실태를 반영한 사업학교 선정 기준, 예산 배부 기준, 지역사회 협력 체제, 사업 관련 교육 규칙 등 특성화된 사업 모델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2010년도 사업학교의 약 3배에 이르는 총 1,356개 초·중·고등학교를 사업학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학교에 재학하는 전체 학생 1,086,434명 중 이 사업의 주요 참여 집단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학생 수는 71,853명으로서 이는 전체 초등학령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26.3%, 중학교 학령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의 38.3%에 해당한다.

〈 표 7-3-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 구 분 | 2003~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
| 대상지역 | 8지역 (서울6, 부산2) | 15지역 (기존8, 신규7) | 30지역 (기존15, 신규15) | 60지역 (기존30, 신규30) | 60지역 (기존60) | 100지역 (기존60, 신규40) | 100지역 (기존60, 신규40) | 114개 교육지원청 |
| 지원자격 | – | 광역시 이상 | 인구 25만 이상 | 인구 25만 이상 | 인구 25만 이상 | 모든 市 | 모든 市 | 단위학교 |
| 학교수 (초·중·고) | 45교 (초29, 중16) | 82교 (초50, 중32) | 163교 (초99, 중61, 고3) | 322교 (초187, 중132, 고3) | 322교 (초187, 중132, 고3) | 538교 (초304, 중230, 고4) | 534교 (초296, 중234, 고4) | 1,356교 (초670, 중681, 고5) |
| 학생수[1]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수) | 40,707명 (4,758명) | 75,189명 (9,765명) | 153,178명 (16,719명) | 326,826명[2] (35,110명) | 304,464명 (27,904명) | 490,081 (40,275) | 452,467명 (35,725명) | 1,086,434 (71,853) |
| 지원액 | 238억원 | 160억원 | 359억원 | 642억원 | 514억원 | 866억원 | 810억원 | 1,566억억원 |
| (특별 교부금)[3] | (238억원) | (110억원) | (209억원) | (374억원) | (248억원) | (504억원) | (310억원) | (1,188억원) |
| (대응 투자) | – | (50억원) | (150억원) | (268억원) | (266억원) | (282억원) | (417억원) | (367억원) |

주 :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에는 학생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수 포함.
3) 2011년은 보통교부금.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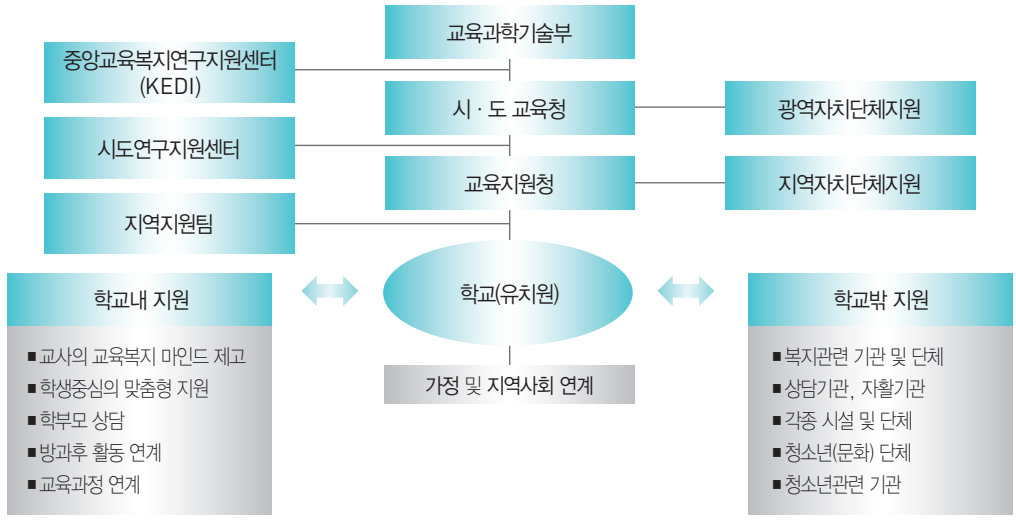
이렇듯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학교와 교육청에서는 교육복지를 한시적 특별사업의 하나가 아니라 학교교육의 기본 기능을 담당하는 제도적 장치로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학교교육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교육취약 학생의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의 전체 교육활동 속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 다. 추진 및 지원 체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사업 설계 시부터 추진 및 지원 체제가 포함된 사업 모델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각 사업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시도 단위 연간 및 중장기 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추진·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학교 중심의 지역 단위 교육복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사업학교 컨설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사업학교는 교육복지부 등의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부장교사를 중심으로 불리한 학생 발굴, 학생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지역 자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수의 시도교육청을 포함하여 교육지원청과 사업학교의 전담부서에는 프로젝트조정자, 또는 지역사회교육전문가로 불리는 민간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담당하며 학교 안팎에서 불리한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체제로는 중앙연구지원센터와 시도연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연구지원센터(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는 사업의 기본 방향과 사업 모델을 제시하며, 전문적 연구 및 성과분석, 사업 성과관리체제 개발 및 모니터링, 사업 핵심 인력 연수, 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시도연구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시도 및 지역 단위 사업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 현장 컨설팅, 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 관련 인력 연수, 자체 평가 및 환류 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학교가 대폭 확대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지원청에도 지역지원팀을 설치하여 더욱 원활하게 사업학교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그림 7-3-1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및 지원 체제




## 라.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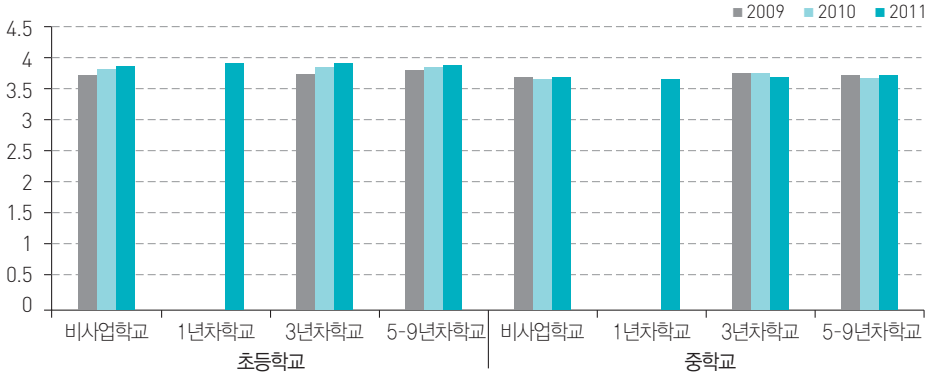
교육복지투자우선지원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본 사업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집단 아동·청소년을 발굴, 지원,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즉, 학교 내에서 취약집단 학생을 발굴하고, 학교 내외에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자원을 개발하여 이들에게 연계할 뿐 아니라, 담임교사, 프로그램 담당교사, 학교의 전담부서, 지역사회기관 담당자 등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취약집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학교를 중심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에서는 불리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내용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첫째,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긍정적 자아개념과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심리·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취약 아동·청소년이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섯째, 건강한 신체 발달과 돌봄 지원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모두 취약집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각 학교별로 교육청 및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의 실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다.

## 마. 사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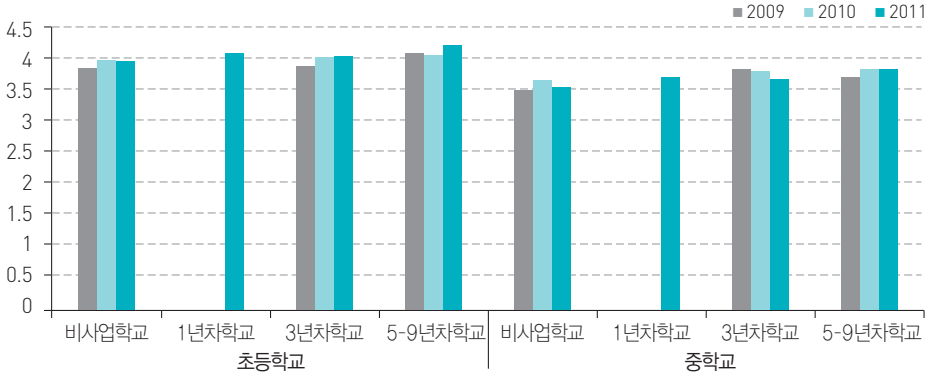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복지연구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3년 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종단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하여 학생과 학교 차원에서 나타나는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3차년도 연구의 주요 결과에 의하면, 사업학교는 비사업학교에 비해 교사의 효능감과 학교장의 리더십, 동아리 활동, 진로 프로그램 및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학교 학생들은 비사업학교 학생들에 비해 교사의 관심과 지원, 긍정적 기대 등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 사회성, 학교생활 적응, 어려움 극복 효능감 등에서 사업학교 기초수급 초등학생들이 비사업학교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중학교에서는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7-3-2 ] 교사 효능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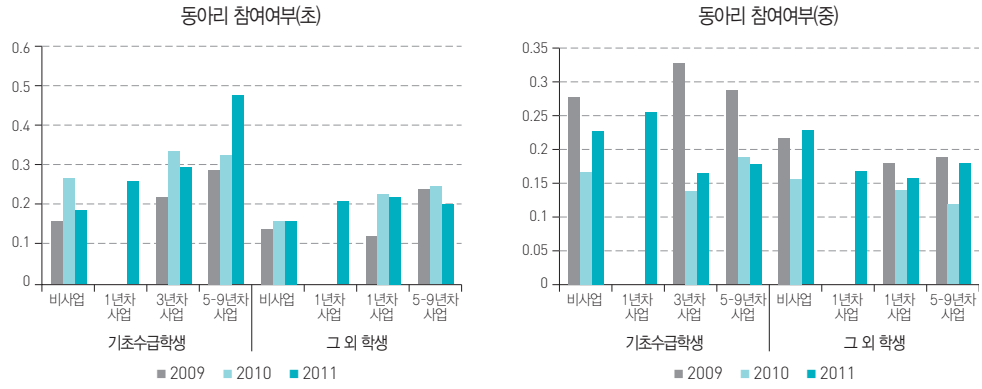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3 ] 취약계층에 대한 학교장의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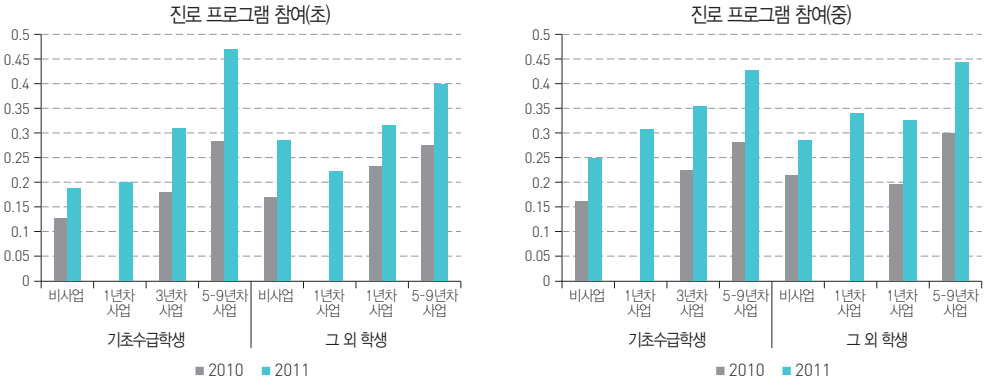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4 ] 동아리 참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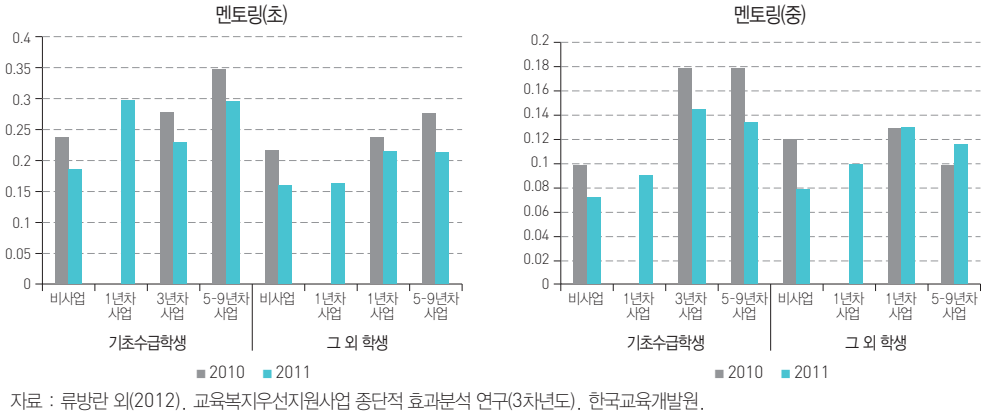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5 ] 진로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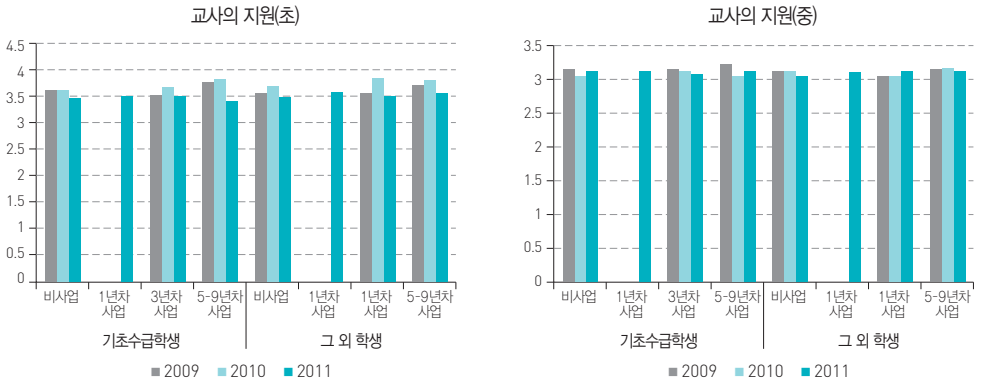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6 ] 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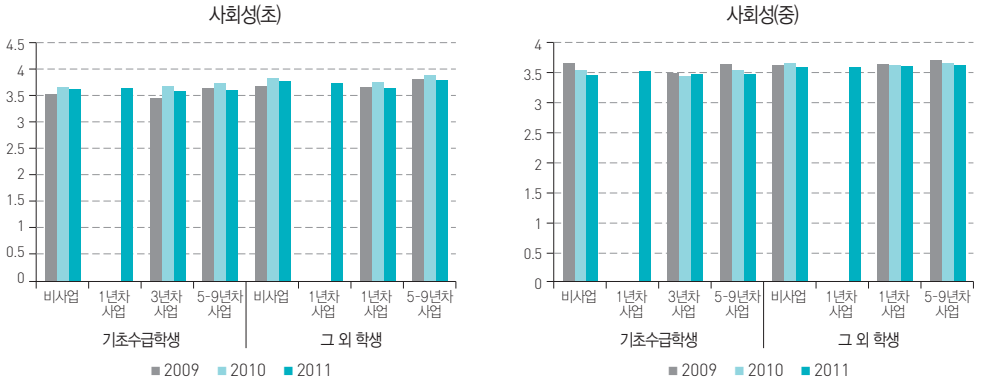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7 ] 교사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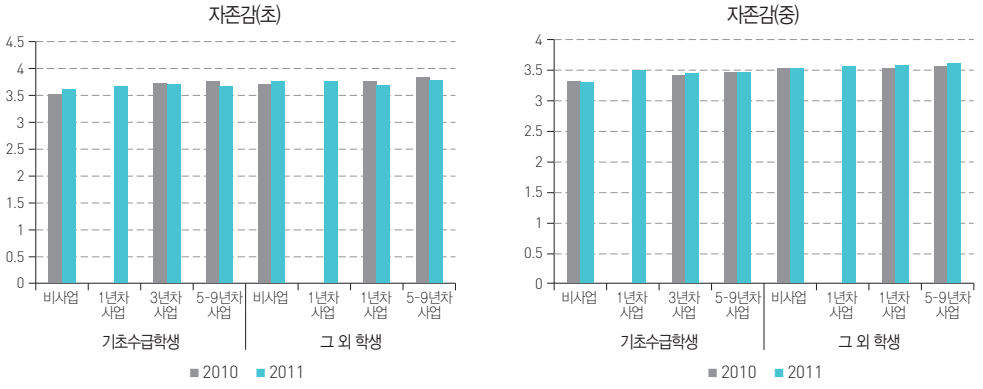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8 ] 사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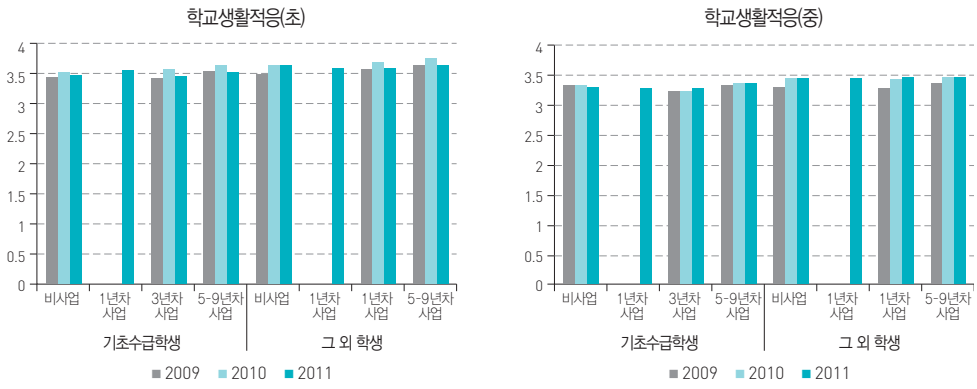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9 ] 자존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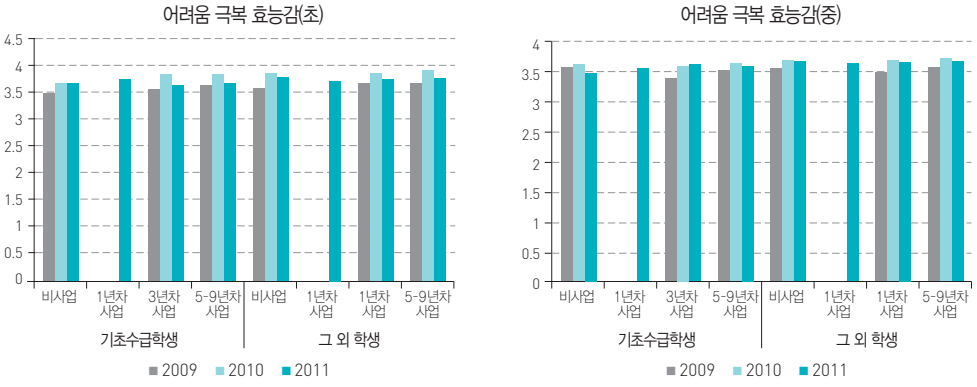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10 ] 학교생활적응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 그림 7-3-11 ] 어려움 극복 효능감




자료 : 류방란 외(201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종단적 효과분석 연구(3차년도). 한국교육개발원.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중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사업을 통한 긍정적인 변화가 두드러진다는 점, 같은 사업학교 내에서도 우선지원을 받은 학생의 변화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크다는 점, 교사의 관심과 지지, 지역 내 사회자본 등이 사업 효과 산출에 매우 핵심적인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점 등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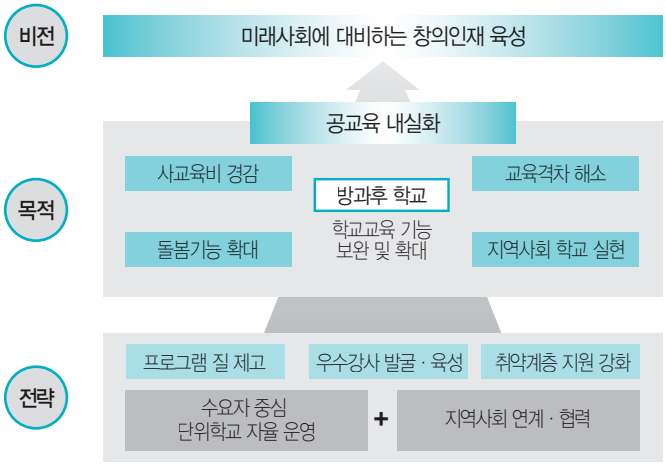
## 2. 방과후학교

2011년의 방과후학교 관련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가.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 발표

2011년에는 방과후학교의 질적 제고와 내실화를 보다 도모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내실화 방안에서는 6년 동안 적용해온 종전의 방과후학교 비전과 목표, 전략들을 수정하였으며,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였다. 내실화 방안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정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 우수 강사 발굴 및 역량 강화, 취약계층 지원 및 돌봄기능 확대, 방과후학교 지원 · 관리 체제 개선 등과 같은 정책들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세부 전략들을 제시하였다.

[ 그림 7-3-12 ] 방과후학교 내실화 방안에서 제시된 방과후학교의 비전, 목표,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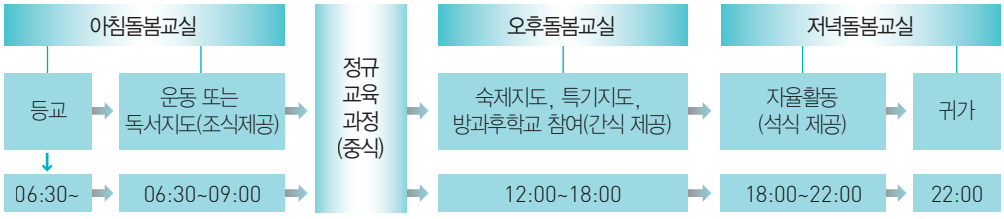



### 나.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의 도입·운영

보호자들이 아침 일찍 일을 나가고 저녁 늦게 귀가하는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오전 6시반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하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을 초등학교 및 유치원에 도입하였다. 2011년에는 1,000개의 온종일 돌봄교실이 운영되었다.

[ 그림 7-3-13 ]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시간대별 운영

| 구 분 | 아침돌봄 | 오후돌봄 | 저녁돌봄 |
|---|---|---|---|
| 시 간 | 06:30 ~ 09:00 | 방과후 ~17:00 | 17:00 ~ 22:00 |




## 다. 방과후학교 민간참여의 확대

지역사회의 공신력 있고, 우수한 민간자원을 방과후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언론 및 방송기관이 참여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11년 하반기부터 6개의 언론기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CBS, 매일신문)과 1개의 방송(아리랑 TV)이 참여하였다. 언론 및 방송 기관들은 다양하고 특화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단위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였다.

## 라. 취약계층의 지원 확대

정부는 201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취약 계층·지역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지원을 확대하였다.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2011년에는 48만명의 도시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연간 36만원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학생들은 자유수강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듣는다. 자유수강권을 지급받는 학생수와 연간 지급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20%, 2011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40%에 대해 자유수강권을 지원하였다.

〈 표 7-3-2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현황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
| 지원금액(백만원) | 115,210 | 127,116 | 141,021 | 176,581 |
| 지원학생수(명) | 320,374 | 353,445 | 392,070 | 482,070 |
| 개인별 연간지원액(만원) | 30 | 30 | 36 | 36 |

### (2)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2011년에는 17,162개의 학급에 대해 총 5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1학급당 평균 3백만원 정도가 지원되었다.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도시나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2011년의 경우, 농산어촌(72.8%)이 도시(61.1%), 전국(65.2%)에 비해서 높다.

〈 표 7-3-3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현황

| 구 분 | 2008 | 2009 | 2010 | 2011 |
|---|---|---|---|---|
| 지원금액(억원) | 528 | 382 | 421 | 515 |
| 지원학급수(실) | 14,645 | 14,605 | 16,210 | 17,162 |

〈 표 7-3-4 〉 농산어촌, 도시, 전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

(단위 : %)

| 구 분 | 농산어촌 | 전국 | 도시지역 |
|---|---|---|---|
| 2011년 | 72.8 | 65.2 | 61.1 |

### (3) 초등돌봄교실 지원

초등학교 학생들을 방과 후와 주말, 방학 중에 안전하게 보호·지도함으로써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해 방과후학교에서는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주로 운영되며, 맞벌이 가정 자녀 및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우선 대상으로 한다. 초등 돌봄 프로그램은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쾌적한 시설·설비로 리모델링한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실시된다. 교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인력풀이 과제지도, 놀이지도, 상담, 소질계발, 인성지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1년 현재 5,430개교(전체 초등학교의 92.4%)이며, 돌봄교실수는

6,639개이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은 총 124,013명이다.

2011년 3월부터는 전국 1,000개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엄마품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아침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4월 현재, 1,026개의 교실에서 27,76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아침, 오후, 저녁돌봄교실 참여 연인원은 37,695명). 1,324명의 외부강사와 1,023명의 현직교사가 참여하여 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표 7-3-5 〉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개)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운영학교수 | 1,421 | 2,275 | 2,716 | 3,413 | 5,117 | 5,430 |
| 운영교실수 | 1,631 | 2,491 | 3,030 | 3,819 | 6,200 | 6,639 |
| 참여학생수 | 31,788 | 43,720 | 51,110 | 66,691 | 104,496 | 124,013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마. 방과후학교의 주요 성과

### (1) 학생참여율

2011년 6월 현재 전국 99.9%의 학교에서 65.2%의 학생(4,558,656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년도에 비해 1.9%의 증가율을 보였다.

〈 표 7-3-6 〉 방과후학교 학생참여율

(단위 : %)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학교참여율 | 99.9 | 99.8 | 99.9 | 99.9 | 99.9 | 99.9 |
| 학생참여율 | 42.7 | 49.8 | 54.3 | 57.6 | 63.3 | 65.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2) 강좌 현황

2011년 6월 현재, 교과 강좌 355,158개(66.9%), 특기·적성 강좌 175,492개(33.1%), 총 530,650개의 방과후학교 강좌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행 초기인 2006년에 비해 4.1배나 증가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수는 매년 증가하여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2007년에는 16만 여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2011년 운영 프로그램 중 수준별로 이루어지는 교과 프로그램 수는 110,318개로

전체 교과 프로그램의 31.1%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학생 1인당 평균 2.8개의 강좌를 수강하고 있으며, 월 평균 부담액은 29,412원으로 나타났다

〈 표 7-3-7 〉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 현황

(단위 : 개)

| 구 분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교과프로그램 | 75,651 | 90,813 | 117,534 | 161,348 | 338,891 | 355,158 |
| 특기적성프로그램 | 54,850 | 68,403 | 112,885 | 124,581 | 156,074 | 175,492 |
| 계 | 130,501 | 159,216 | 230,339 | 285,929 | 494,965 | 530,65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내용별 강좌 현황을 보면, 수학 프로그램이 전년도와 같이 가장 많은 비율(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서 영어(17.1%), 국어(14.0%), 과학(11.4%), 사회(9.0%) 순으로 나타났다. 국·영·수·사·과 주지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의 68.7%를 차지하고 있다.

〈 표 7-3-8 〉 내용별 강좌현황

(단위 : 개, %)

| 구분 |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영어 | 제2 외국어 | 컴퓨터 | 음악 | 미술 | 체육 | 기타 | 계 |
|---|---|---|---|---|---|---|---|---|---|---|---|---|
| 초 | 17,120 | 2,002 | 29,159 | 14,550 | 27,355 | 3,573 | 25,329 | 22,429 | 19,786 | 19,511 | 20,772 | 201,586 |
| 중 | 20,998 | 17,341 | 24,783 | 20,534 | 25,859 | 2,446 | 1,519 | 7,853 | 3,118 | 8,067 | 11,903 | 144,421 |
| 고 | 36,281 | 28,271 | 37,443 | 25,655 | 37,524 | 1,297 | 3,177 | 1,748 | 1,300 | 2,575 | 9,372 | 184,643 |
| 계 | 74,399 | 47,614 | 91,385 | 60,739 | 90,738 | 7,316 | 30,025 | 32,030 | 24,204 | 30,153 | 42,047 | 530,650 |
| 비율 | 14.0 | 9.0 | 17.2 | 11.4 | 17.1 | 1.4 | 5.7 | 6.0 | 4.6 | 5.7 | 7.9 | 10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3) 강사 구성

2011년 6월 현재, 총 294,612명의 강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현직교사가 64.3%, 외부강사가 35.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강좌 유형별로 살펴보면, 특기·적성 강좌의 강사는 현직교사가 33.7%, 외부강사가 66.3%로 외부강사의 비율이 높은 반면, 교과 강좌의 경우에는 현직교사가 83.5%, 외부강사가 16.5%로 현직교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7-3-9 〉 방과후학교 강사 구성 현황

(단위 : 명, %)

| 강좌 유형 | 현직교사 | | 외부강사 | | 계 | |
|---|---|---|---|---|---|---|
| | 수 | 비율 | 수 | 비율 | 수 | 비율 |
| 특기·적성 | 38,368 | 33.7 | 75,382 | 66.3 | 113,7500 | 100.0 |
| 교과 | 150,956 | 83.5 | 29,906 | 16.5 | 180,862 | 100.0 |
| 계 | 189,324 | 64.3 | 105,288 | 35,7 | 294,612 | 10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 (4) 수요자 만족도

아래의 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도교육청을 통해 매년 설문조사하는 수요자 만족도 결과이다. 방과후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여, 이를 100점으로 환산하였다.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학생 만족도 73,8점, 학부모 만족도 73.7점을 획득하였다(2011년에는 학생 295,806명, 학부모 288,751명이 조사대상이 되었음). 특기적성 계발, 학업실력 향상, 사교육비 경감, 향후 지속적 참여의사 등에 있어 모두 70점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 표 7-3-10 〉 방과후학교 만족도

(단위 : 점)

| 구분 | 학생 | | | | 학부모 | | | |
|---|---|---|---|---|---|---|---|---|
| | 초 | 중 | 고 | 계 | 초 | 중 | 고 | 계 |
| 2011 | 82.0 | 67.0 | 61.7 | 73.8 | 79.2 | 70.0 | 64.8 | 73.7 |
| 2010 | 80.6 | 61.0 | 59.1 | 67.9 | 78.0 | 65.1 | 62.5 | 69.4 |
| 2009 | 78.4 | 58.2 | 50.3 | 64.2 | 73.7 | 63.0 | 56.1 | 65.6 |
| 2008 | 77.6 | 64.9 | 54.7 | 69.1 | 74.6 | 67.6 | 60.0 | 69.6 |

〈 표 7-3-11 〉 방과후학교 참여효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점)

| 구 분 | 2011 | |
|---|---|---|
| | 학생 | 학부모 |
| 특기적성계발에 도움 | 71.6 | 71.9 |
| 학업실력향상에 도움 | 71.2 | 70.6 |
| 사교육비 경감 효과 | – | 71.9 |
| 향후 지속적 참여의지 | 71.4 | 71.2 |

## 3. 농산어촌 지역 교육

### 가. 농산어촌 교육정책

교육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1995년 5·31 교육개혁안의 제안과 함께 교육복지 종합대책(1996, 1997)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초기 교육복지 종합대책에는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중도 탈락자, 학습부진아, 귀국학생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농산어촌 교육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3년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 아래 농산어촌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정책들이 나타났다. 이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어촌 교육여건개선 시범사업',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간 통합 운영', '농어촌교육특별법의 제정 추진', '농어촌 수당 신설, 주거 편의 제공,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부여 방안 추진', '도서벽지사택보수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정책', '농어촌학생 대학특별전형',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확대',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등이다.

이어서 2004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농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특별법에 따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복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 촉진, 복합산업 활성화 등의 4대 부분 중점 과제가 선정되었다. 제1차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5년간 3.1조원을 투자하여 농어촌 학생들이 도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였다.

위의 정책 추진과 함께, 2008년에는 「농산어촌 통합형 교육복지 모델 구상」 연구가 수행되어 농산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통합형 교육복지 전략'이 제안되었고 이에 기반한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농산어촌 교육복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첫째, 농산어촌 학교·지역의 특색을 살린 자생적 교육역량 강화로 가고 싶은 농촌 학교의 육성, 둘째,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추진 역량 및 지역교육청의 조정·지원 기능 강화이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과 농산어촌 K-2학교 육성, 농산어촌 유학 시범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실행과정에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와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으로 변경·실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산어촌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화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 운영,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본래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생력이 있는 농산어촌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 나.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

현재 농림어업을 기반으로 하는 1차 산업이 쇠퇴하면서 농산어촌의 인구는 물론 학생 이탈로 인한 학교의 소규모화,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 곤란 등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교육여건의 악화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교육 여건이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초·중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을 만들고자 '농산어촌 전원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전원학교란 농산어촌에 소재하는 자율학교로, 자연친화적 환경과 e-러닝 첨단시설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영어 등 우수 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산어촌의 미래발전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모델학교를 말한다. 또한, 전원학교는 자연체험 학습장·생태연못·산책로 등 자연친화적 시설과 전자칠판·IP TV 등을 갖춘 첨단 e-러닝 교실을 구축하여 자연과 첨단이 조화된 환경에서 학습을 하고, 주민과 지역사회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학교 간 강력한 연계 하에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교의 시설·여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전원학교를 육성하기 위해 2009년 7월에 도교육청 소속 면에 소재하는 학생 수 60~200명 사이의 초·중학교 110개교를 지정하였고, 2010년에는 통폐합 본교와 연계하여 30개교를 추가 지정하였다. 2011년에는 연중돌봄학교가 전원학교 사업의 한 유형으로 통합되었으며, 30교의 중학교가 공모를 통해 3년 지원 공모형 전원학교로 새롭게 선정되었다.

〈 표 7-3-12 〉 농산어촌 전원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선정학교수 | 22 | 15 | 9 | 24 | 22 | 31 | 23 | 22 | 2 | 170 |
| 초 | 16 | 10 | 5 | 14 | 12 | 18 | 16 | 11 | 2 | 104 |
| 중 | 6 | 5 | 4 | 10 | 10 | 13 | 7 | 11 | – | 66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개요.

〈 표 7-3-13 〉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억원)

| 연도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계 |
|---|---|---|---|---|---|---|---|
| 2009년 | • 첨단 e-러닝교실(110교 x 2억) | 220 | | | | | 1,391 |
| | • 종합 지원학교(55교 x 15억) | 570 | 513 | 88 | | | |
| | • 시설비 지원 학교(33교 x 7.5억) | | | | | | |
| | • 프로그램 지원 학교(22교 x 4.5억) | | | | | | |
| 2010년 | • 통합본교 프로그램 지원(30교 x 3천) | | | 9 | 9 | 9 | 27 |
| 2011년 | • 중학교 교육프로그램 지원(30교 x 1억) | | | 30 | 30 | 30 | 90 |
| 계 | | 790 | 513 | 127 | 39 | 39 | 1,508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농산어촌 전원학교 사업개요.

한편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2010년도 대비 2011년도 전원학교 학업성취도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우수학력 학생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비율 달성목표(0.8%)를 2011년도에 조기 달성하였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학업성취도 수준이 2010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 표 7-3-14 〉 농산어촌 전원학교 연차별 학업성취도 수준

(단위 : %)

| 구분 | 우수 | | 보통 | | 기초 | | 미달 | |
|---|---|---|---|---|---|---|---|---|
| | 2010 | 2011 | 2010 | 2011 | 2010 | 2011 | 2010 | 2011 |
| 초등학교 | 39.5 | 36.8 | 38.3 | 42.7 | 21.5 | 19.7 | 0.7 | 0.8 |
| 중학교 | 14.6 | 15.5 | 42.0 | 45.9 | 37.1 | 35.0 | 6.3 | 3.6 |
| 계 | 27.7 | 23.6 | 40.1 | 44.7 | 28.9 | 29.2 | 3.4 | 2.5 |

자료 : 2010년, 2011년 전원학교 자체평가보고서.

또한, 농산어촌 전원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1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원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농산어촌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0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농산어촌 전원학교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다면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농산어촌 학교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원학교가 공교육의 바람직한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지역 학교를 다니면서 사교육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인식의 벽을 극복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해 나가는 인재육성의 산실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유지 혹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접근을 독려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성과분석의 결과 학교가 통제할 수 없는 정책적 요인보다는, 학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공동체로서 지역사회학교가 마을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보다 자율성을 갖고 운영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구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농산어촌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도시는 물론 해당 군의 읍지역 등으로 학생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읍보다 작은 면지역의 학교에는 가정이 제대로 돌봄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높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중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는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에서는 농산어촌 학생에게 학기중, 주말, 방학중에 학습결손을 치유하고, 돌봄 기능이 열악한 가정을 대신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여 학습과 생활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문화·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2009년에 전국의 면 지역에 소재하는 378개의 학교(유24, 초222, 중126, 고6)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에는 전원학교로 지정된 일부 학교를 조정하여 총 383개의 학교(유24, 초225, 중128, 고6), 2011년에는 382개의 학교를 선정·지원하였다.

〈 표 7-3-15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지정 현황

(단위 : 개, 개소)

| 시·도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계 |
|---|---|---|---|---|---|---|---|---|---|---|---|---|---|
| 지역수 | 1 | 1 | 2 | 1 | 4 | 11 | 9 | 9 | 8 | 17 | 13 | 10 | 86 |
| 학교수 | 10 | 2 | 9 | 2 | 15 | 55 | 46 | 44 | 39 | 47 | 77 | 36 | 382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1). 2011년도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계획.

또한, 2009년에는 378교에 298억원을 지원하였고, 2010년에는 기본 지원액에 2009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차등 지원액을 포함하여 총 230억원(지원금 140억원, 대응투자 90억원), 2011년에는 277.4억원(지원금 188억원, 대응투자 89.43억원)을 지원하였다.

〈 표 7-3-16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육성 사업비 규모

(단위 : 천원)

| 구분 | 2009 | 2010 | 2011 | 계 |
|---|---|---|---|---|
| 국고지원비 | 29,800,000 | 14,000,000 | 18,800,000 | 62,600,000 |
| 대응투자비 | - | 9,000,000 | 8,940,000 | 17,940,000 |
| 합 계 | 29,800,000 | 23,000,000 | 27,740,000 | 80,540,000 |

주 : 2009년 사업계획 수립 시 2010년부터 298억원의 30%(90억원) 대응투자 확보 의무화.

자료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지표는 학생의 학업성취수준 향상에 있다. 특히 복지적 차원에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의 구제 여부에 주목하였다. 사업비의 1/3이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투자되기도 하였다.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도별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활용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중돌봄학교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연차별로 꾸준히 향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기초미달학생비율 달성목표(0.8%)를 2011년도에 조기 달성하였다. 다만 2010년 대비 2011년 우수학력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경우 우수 학력 비율도 연차별로 향상되고, 기초학력미달비율은 3년간 4.5%, 2.6%, 2.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 표 7-3-17 〉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의 변화

(단위 : %)

| 구분 | 우수 | | | 보통 | | | 기초 | | | 미달 | | |
|---|---|---|---|---|---|---|---|---|---|---|---|---|
| | 2009 | 2010 | 2011 | 2009 | 2010 | 2011 | 2009 | 2010 | 2011 | 2009 | 2010 | 2011 |
| 초등학교 | 39.3 | 43.8 | 39.0 | 41.3 | 38.2 | 44.5 | 17.6 | 17.0 | 15.8 | 1.8 | 0.9 | 0.7 |
| 중학교 | 14.1 | 15.9 | 17.9 | 44.1 | 44.3 | 48.5 | 34.4 | 35.3 | 29.8 | 7.4 | 4.5 | 2.8 |
| 계 | 27.1 | 30.6 | 26.3 | 42.7 | 41.1 | 46.7 | 25.8 | 25.7 | 25.0 | 4.5 | 2.6 | 2.0 |

자료 :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2012). 연중돌봄학교 육성사업 추진과정과 성과.

또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의 사업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11년도 사업 성과분석 자료에 의하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생 만족도는 84.5점으로 조사되었고, 학부모는 82.8점, 교사는 72.1점이다. 한편, 재학생 수 변화를 살펴보면, 연중돌봄학교 초·중학교의 전체 학생수는 2009년 대비 학교당 평균 8.4명이 감소하였으나, 면지역의 전체 학생수 감소 비율의 1/2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돌봄과 교육의 기능이 혼합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학습자아효능감, 특기 및 적성의 인지 등 학습능력, 학교의 사회적 지지도에 대한 인식, 정서적 안정성 등 심리·정서적 상태, 인간관계 능력 및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 등 사회성과 같은 제반 심리적 특성 검사 결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중돌봄학교 사업은 면지역 소재 2개 이상의 학교(초등 1교, 중등 1교 포함)가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요건으로 하여 지역 단위 교육네트워크 구축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면에 소재하는 학교가 지역과 연계하여 교육력을 강화하고, 학생에 대한 365일 교육복지를 실현함으로써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완화될 것이며, 학생이 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본 사업이 궁극적으로 농촌교육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즉, 단위 학교의 프로그램 위주 사업보다는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4.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 가. 추진 배경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급속하게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 자녀의 수도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의 다문화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4년 간(2009~2012년) 총 7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지원방안은 다문화가정 유아와 초등학생의 한국어·기초학력 향상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지원, 다문화교육 기반 구축, 다문화이해 제고 및 확산을 4개 정책과제로 하여 총 14개 세부 실행과제로 구성되었다. 이 지원방안은 매년 당해년도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던 이전과는 달리, 교육과학기술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세부 실행계획을 세움으로써, 급증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를 고려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 중장기 계획안에 근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매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 표 7-3-18 〉 전체학생수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 연도 / 인원수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다문화 학생 수(A) | 14,654 | 20,180 | 26,015 | 31,788 | 38,678 |
| 전체 학생 수(B) | 7,734,531 | 7,617,796 | 7,447,159 | 7,236,248 | 6,986,853 |
| 다문화학생 비율(A/B×100) | 0.19 | 0.26 | 0.35 | 0.44 | 0.55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2012. 3. 12).

〈 표 7-3-19 〉 2011년 다문화가정 학생 수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학교급 | | | 도시/농촌 | | |
|---|---|---|---|---|---|---|
| | 초 | 중 | 고 | 도시(A) | 농촌(B) | 합계(C=A+B) |
| 한국출생 | 25,615 | 6,574 | 1,810 | 20,340 | 13,659 | 33,999 |
| 중도입국 | 1,592 | 624 | 324 | 2,053 | 487 | 2,540 |
| 외국인자녀 | 1,460 | 436 | 243 | 1,894 | 245 | 2,139 |
| 계 | 28,667 | 7,634 | 2,377 | 24,287 | 14,391 | 38,678 |
| 비율 | 74.1 | 19.7 | 6.2 | 62.8 | 37.2 | 100.0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2012. 3. 12).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외국인 아동 등의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1항을 개정(2008년 2월 22일)하였다. 이를 통해,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통해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가늠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였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9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8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참석)가 구성되었다. 주로 반기마다 이루어지는 동 위원회를 통해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년, 부처 합동) 수립, 부처 간 사업 연계·조율 및 협력 등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 나. 추진 내용

교과부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연계하여 2011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다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교대 등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지역 내 인프라와의 연계·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 (1) 다문화가정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의 특성에 맞는 학습지도, 상담 등을 실시하여 학교 적응 및 학력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과 후, 주말, 방학 등을 활용하여 교사, 예비 초등교사, 퇴직교원 등이 참여하는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125개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방학에는 집중 캠프를 실시하여

학기 중 멘토링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특기적성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

### (2) 글로벌 브릿지 사업

다문화가정 자녀의 부모출신국을 이해하고 리더십을 향상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로벌 브릿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부모의 출신국이 베트남, 필리핀, 중국인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프로그램, 세계시민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2011년에는 2개 분야 4개 대학(서울교대, 카이스트, 경남대(수학, 과학), 광주교대(리더십))에서 실시되었다.

### (3) 교사의 다문화교육 전문성 제고

교원양성 단계에서 다문화 이해를 위한 강좌를 운영하여 예비교사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9~2010년에 추진한 교대 및 국립대 사범대학 '다문화교육 강좌' 개설 성과를 사립대 사범대학까지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과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에 위탁) 등을 통해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도교사, 전문직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 (4)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및 이중언어 강사 양성

교육청별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며,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일반학부모 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한 1:1 결연,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지자체 평생학습관 등 지역의 평생교육기관을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대상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10개 지역 11개 기관에서 추진하였다.

2009년부터 한국어, 모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교육하여 이중언어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2011년에는 125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하였으며 이들을 2012년부터 다문화 유아나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유치원, 다문화교육 거점학교 등에 강사로 배치, 활용할 예정이다.

### (5)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 상담한 교사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험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도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 심사를 거쳐 전국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상 교사 등에게는 다문화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활동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학술대회나 연수의 강사로 활용하고 있다.

### (6)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지원

최근 재혼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학교·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12월 27일에 다문화가정 동반·중도 입국 자녀 등의 초·중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9조, 제75조, 제89조의2)을 개정하였다. 2010년에는 취학전 예비과정(3개소)과 정규학교의 특별학습(5개소)을 설치하여 지원하였으며, 2011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3개 지역에 예비학교가 설치되었다.

### (7)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재, 프로그램 개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실태 분석 등 전문적인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앙다문화교육센터'(서울대)를 운영하여,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교사용 교수–학습 자료 등을 개발·보급하였다.

### (8)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취학 전 아동의 수가 취학아동 수에 비해 훨씬 많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단계부터 적절한 교육경험 및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생애 초기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유아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치원 등 교육기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정보, 저소득층 학비 지원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유아를 위한 기초학습·자아존중감 제고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다문화가정 유아에 대한 교사의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교사 매뉴얼을 제작하여 제공한다. 셋째,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부모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고 유아간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선발, 집중 교육을 통해 양성하였으며 2011년에 공립 유치원 30곳에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로 배치 활용할 계획이다.

## 5. 탈북학생 교육 지원

### 가. 추진 목적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는 탈북학생의 남한 사회 및 학교 부적응 문제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탈북학생이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데 있다. 상이한 체제에서 자라고 성장하여 탈북한 후, 제3국 생활을 거쳐 남한에 입국한 탈북학생이 남한 입국

초기부터 사회 정착기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교육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나. 탈북학생 입국 현황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6세에서 20세 이하의 탈북 청소년 수는 1999년 까지 22명가량에 불과하였으나, 2000년대 초반부터 급속히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매년 300명 가량의 탈북학생이 남한에 입국하였고 2010년에는 306명, 2011년에는 501명의 탈북학생이 남한에 입국하였다.

〈 표 7-3-20 〉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 연도 / 대상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전체 (입국자수) | 148 | 312 | 583 | 1,138 | 1,281 | 1,894 | 1,383 | 2,018 | 2,544 | 2,809 | 2,927 | 2,376 | 2,706 |
| 6~20세 (입국자수) | 22 | 60 | 124 | 211 | 220 | 330 | 224 | 336 | 366 | 378 | 656 | 306 | 501 |

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 통계자료(www.unikorea.go.kr).

2012년 4월 현재 탈북학생 통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는 탈북학생의 규모는 2,202명이다. 이 가운데 1,992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210명(전체의 9%에 해당)의 학생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외에도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등을 다니며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탈북청소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표 7-3-21 〉 2012년 탈북청소년 재학 현황

(2012. 4월 기준, 단위 : 명)

| 정규학교 | | | 대안교육시설 | 계 |
|---|---|---|---|---|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 1,204 | 351 | 437 | 210 | 2,202 |
| 1,992 | | | | |

자료 : 교과부(2012).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남한의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5년

421명이었던 탈북청소년의 규모는 2012년 4월 1,992명으로 늘어났다.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탈북학생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608명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와 인천에 각각 569명, 144명이 거주하고 있어 전체의 70% 가량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 표 7-3-22 〉 탈북청소년 정규학교 재학생 수

(단위 : 명)

| 구 분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 학교재학생 수(6~20세) | 421 | 474 | 602 | 966 | 1,143 | 1,417 | 1,681 | 1,992 |

자료 : 교과부(2012). 탈북학생 재학현황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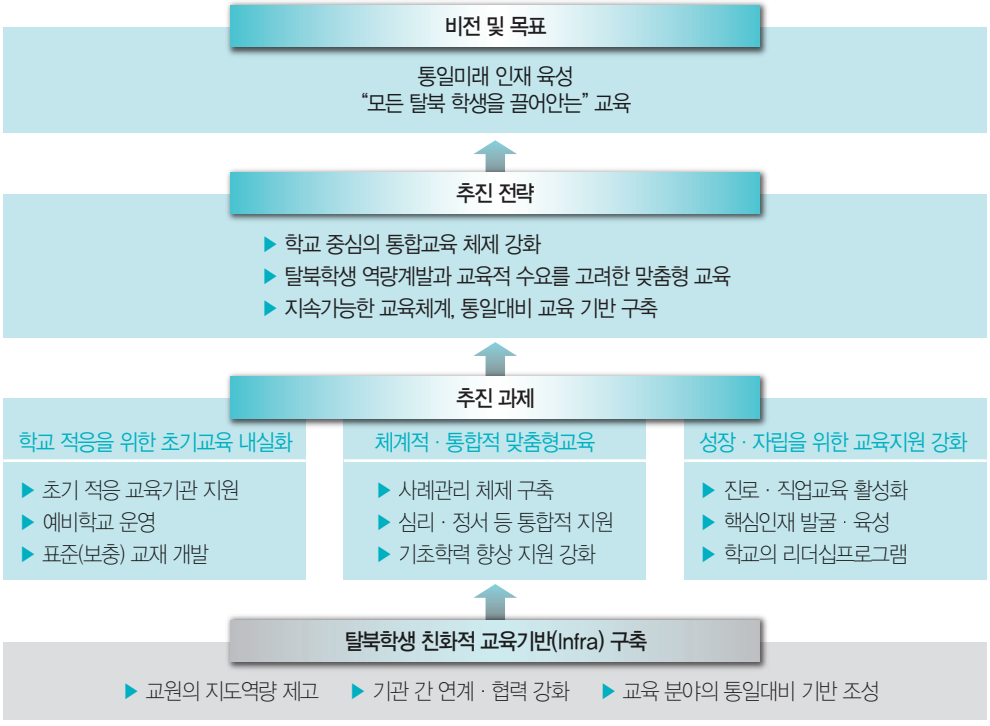
## 다. 탈북학생 교육지원 추진 체계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탈북학생의 남한생활 초기적응을 지원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통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이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규학교 중심의 통합교육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가운데 민간교육시설 등을 통해 학교 밖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병행하여 모든 탈북청소년이 교육지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비롯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유관기관과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각 시도교육청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특교지원사업) 및 시도교육청 자체사업을 통해 지역의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분담금을 통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과의 유기적 협력 하에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업무 전반을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라.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 현황

탈북학생 교육지원은 모든 탈북학생이 사회 및 학교에 순조롭게 적응하여 우리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라 미래의 인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를 위해 학교 중심의 통합 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탈북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을 계발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안 과제 성격을 갖고 있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통일대비 교육기반 구축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다.

[ 그림 7-3-14 ]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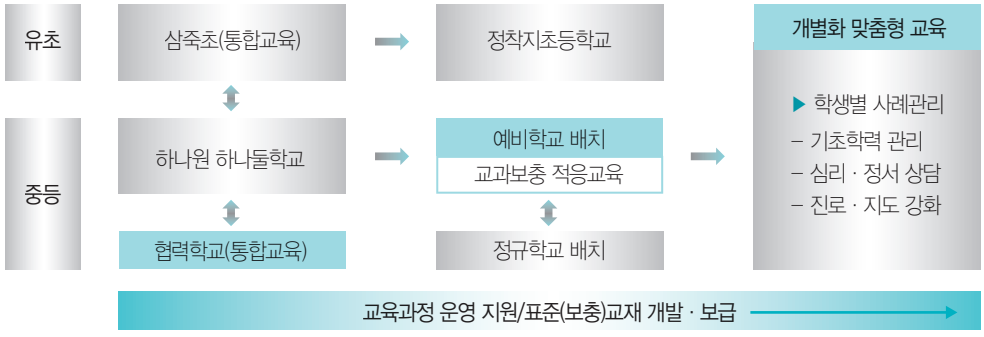

2012년 실시한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은 (1)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2) 체계적 통합적 맞춤형 교육, (3) 성장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4)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된다. 각 영역별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 초기 적응교육지원 강화

첫째,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의 입국초기 단계 교육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초기적응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탈북학생이 입국 초기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기간 동안 재학하게 되는 삼죽초와 하나원 하나둘 학교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탈북학생의 초기 교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였다. 삼죽초에 2명의 전담교사(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탈북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였고, 하나둘학교에 교과별 교사, 상담 교사를 파견하여 학생에 대한 체계적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였다. 둘째, 하나원 재원 생활을 마치고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학업 수준의 격차 등으로 인해 정규학교에 적응하는데 겪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예비학교(하늘꿈학교)와 특별학급(논현중)을 시험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에 정착한 탈북학생이 일정 기간 개별화 교육을 이수한 후 원적학교로 복귀하여 정규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였다. 셋째, 탈북학생의

입국초기 학습 보충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보충 교재 개발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 탈북학생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통일대비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개발을 추진하였다(2013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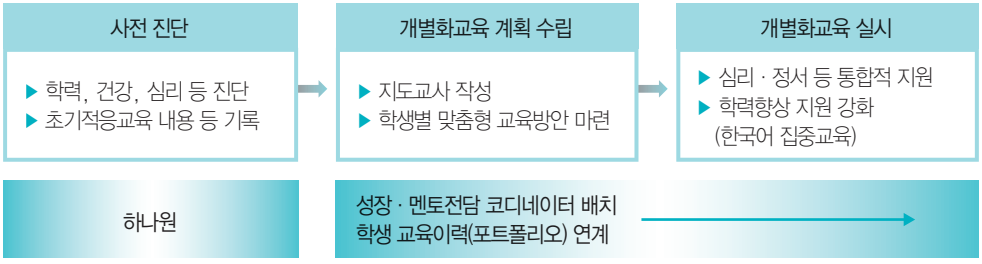
[ 그림 7-3-15 ] 학교 적응을 위한 초기교육 내실화 체계




### (2) 개인별 체계적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정규학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첫째, 정규학교에 재학중인 1,992명 학생에 대한 1대1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멘토교사가 선정되어 탈북학생의 학습,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을 대상으로 탈북교사가 1대1 학습지도를 실시하여 학력 신장을 지원하였다. 둘째, 탈북학생에 대한 개별 사례관리 체제를 구축하여 탈북학생의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탈북학생에 대한 개별화된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체제 구축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셋째, 탈북학생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멘토 및 전담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였다. 탈북학생이 10명 이상 재학중인 15개 학교 및 밀집지역의 2개 복지관에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탈북학생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였다. 탈북학생에 대한 교과교육, 문화체험 활동 이외에도 탈북학생의 정서 및 심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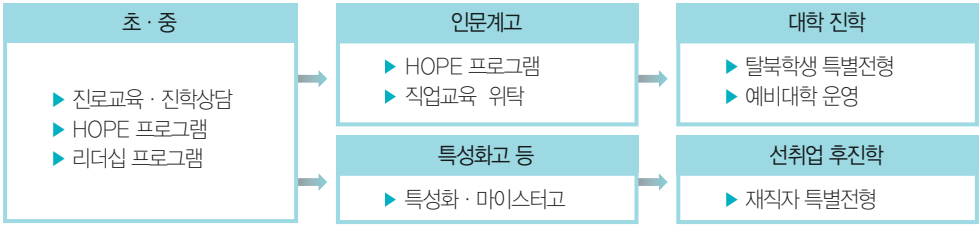
[ 그림 7-3-16 ] 탈북학생의 개인별 체계적 통합적 맞춤형 교육 강화 체제




### (3) 성장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탈북학생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자질, 능력을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성장 ·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첫째,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탈북학생의 진로진학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진학 캠프를 실시하였다. 또한 탈북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체계적 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진로진학상담단을 운영하였다. 또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학생의 진학 선택을 돕기 위해 탈북학생 진로진학박람회(유관 기관과 공동 실시)를 실시하였고 탈북대학생 예비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대학생이 초기 대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였다. 또한 탈북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입학을 확대하였다. 이외에 탈북학생 및 교사용 진로진학 가이드북을 개발·보급하였다. 둘째, 잠재능력을 갖추고 있는 탈북학생을 선발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Hope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셋째, 학교 단위에서 탈북학생의 리더십을 함양하고 남한학생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가운데 미래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그림 7-3-17 ] 탈북학생의 성장 및 자립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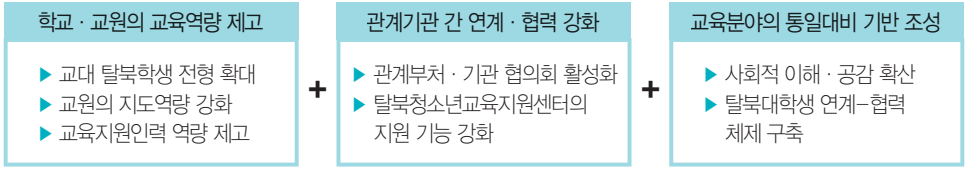



### (4)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을 위해 첫째,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정규학교 교사의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지도교사 및 관리자의 학생 지도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탈북학생 지원 체제를 체계화하기 위해 교원연구회를 확대하였다.

이외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을 통한 탈북학생 교육이해를 위한 원격연수, 심화연수 등을 통해 탈북학생 교육 역량을 전체적으로 향상시켰다. 또한 북한출신 전문인력(탈북교사)에 대한 연수 후 탈북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전문상담사 연수를 통해 이들의 학생지도 능력을 강화하였다. 이외에 민간교육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탈북청소년의 적응, 교육지도에 관한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지원이 이뤄졌다. 둘째, 탈북청소년 교육기관·단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학교, 교육청, 복지관 등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유관단체 간에 원활한 소통 및 협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었다. 또한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 체제 구축 및 지원, 교육포털 및 상담 콜센터 운영, 탈북학생 실태 연구, 통일대비 연구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교육, 통일대비 교육통합 관련 연구를 실시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보다 전문적,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민간교육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를 지원하여 전체적으로 민간교육시설의 교육 역량을 강화하였다. 넷째, 통일대비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 탈북학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상호이해를 위한 자료개발, UCC 공모 등을 통해 탈북학생에 대한 이해와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또한 탈북학생 교육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확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사례 공모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탈북학생 담당 교사 및 전문가 간에 탈북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 그림 7-3-18 ] 탈북학생 친화적 교육기반 구축




## 마. 성과 및 과제

현재까지 실시된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통해 탈북학생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었다. 이를 통해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학업 적응력이 향상되었고 결과적으로 탈북학생의 정규학교 중도탈락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표 7-3-23 〉 탈북청소년 중도탈락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 초 | 중 | 고 | 계 |
|---|---|---|---|---|---|
| 2008 | 2007. 4. 재학생 수 | 341 | 232 | 114 | 687 |
| | 학업중단 학생 수 | 12 | 30 | 32 | 74 |
| | 학업중단률 | 3.5 | 12.9 | 28.1 | 10.8 |
| 2009 | 2008. 4. 재학생 수 | 495 | 288 | 183 | 966 |
| | 학업중단 학생 수 | 7 | 26 | 26 | 59 |
| | 학업중단률 | 1.4 | 9.0 | 14.2 | 6.1 |
| 2010 | 2009. 4. 재학생 수 | 562 | 305 | 276 | 1,143 |
| | 학업중단 학생 수 | 5 | 26 | 25 | 56 |
| | 학업중단률 | 0.9 | 8.5 | 9.1 | 4.9 |
| 2011 | 2010. 4. 재학생 수 | 773 | 297 | 347 | 1,417 |
| | 학업중단 학생 수 | 19 | 13 | 35 | 67 |
| | 학업중단률 | 2.5 | 4.4 | 10.1 | 4.7 |
| 2012 | 2011. 4. 재학생 수 | 1,020 | 288 | 373 | 1,681 |
| | 학업중단 학생 수 | 27 | 11 | 18 | 56 |
| | 학업중단률 | 2.6 | 3.8 | 4.8 | 3.3 |

주 : 1)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2008년도 중도탈락자 총수/2008년도 재학생 총수)×100
2) 2007학년도 중도탈락률 : 초 3.5%, 중 12.9%, 고 28.1%

향후 과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체계화하여 탈북학생의 특성, 적응수준을 고려한 상이한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수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학생, 정서적 지원의 필요를 갖고 있는 학생 등 개별 학생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한 학습 및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동시에 입국 초기부터 진로진학 모색단계(대학진학 및 취업)까지의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특히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탈북학생 관리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유관 기관 및 지역 차원의 적극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또한 지역 차원의 탈북학생 교육지원 역량을 강화하여 학생 규모, 지역의 위치 등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교육지원 모델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통해 축적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통합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신장시켜 교육부분의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 8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보다 21.7%p 낮은 25.5%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 학업활동이 비경제활동인구 중 2011년 기준 87.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이러한 높은 재학률에 따라 청소년 실업률은 9.6%로서 OECD 평균보다 6.6% 낮으나 이는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국제금융위기 이후 청소년 근로자의 명목임금은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고용촉진정책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 내일 만들기 2차 프로젝트 등 청년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한국잡월드를 개관하는 등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를 활용하여 직업진로지도를 내실화하고 있으며,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하여 온라인을 활용한 취업지원을 확대하였다.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해 2005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홍보활동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을 높이고 있다. 또한 캠페인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워크넷, 1318 알바신고센터 등을 이용하여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에 대한 관리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 제 08 부 청소년과 노동

제1장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제2장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제3장 청소년 직업·진로정책

제1장

# 청소년 고용 상황 및 노동조건

## 1.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 경제활동인구는 2011년 153만 5천명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25.5%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은 20.6%, 여자 청소년은 30.1%로 남자 청소년의 군 입대로 인한 노동시장 진입이 늦는 등의 영향으로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전체 경제활동참가율(61.1%)보다 35.6%p 낮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1-1 〉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추이

(단위 : 천명, %)

| 구 분 | 1995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경제활동인구[1] | 2,758 | 2,034 | 1,807 | 1,671 | 1,554 | 1,507 | 1,525 | 1,535 |
| –경제활동참가율[2] | 36.9 | 33.3 | 30.2 | 28.1 | 26.3 | 25.4 | 25.5 | 25.5 |
| • 남 자 | 31.2 | 26.7 | 24.3 | 23.1 | 21.0 | 20.4 | 20.2 | 20.6 |
| • 여 자 | 41.9 | 39.0 | 35.5 | 32.7 | 31.1 | 29.9 | 30.4 | 30.1 |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인구×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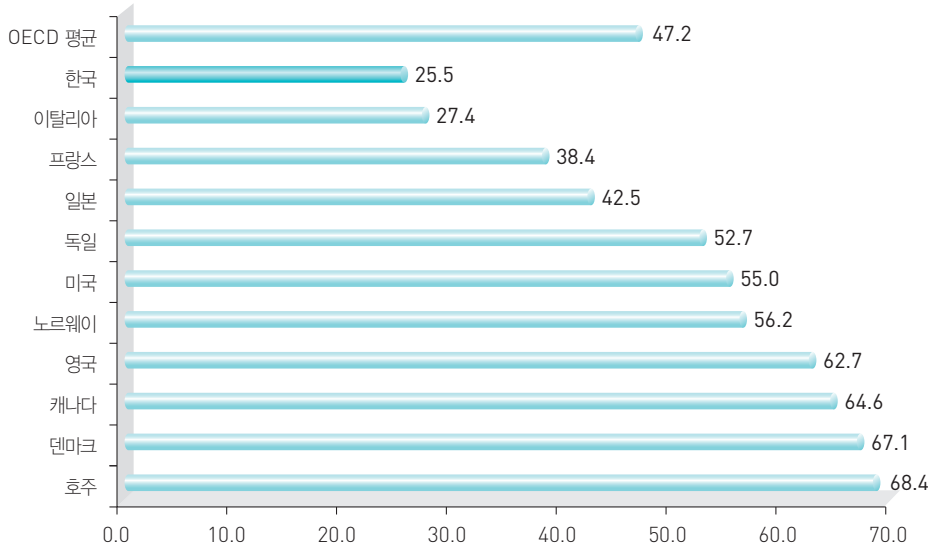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표 8-1-1〉에서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36.9%에서 2011년 25.5%로 11.4%p 낮아졌으며 2000년 이후 30%를 유지하다 2007년 처음으로 30%미만으로 떨어졌다. 성별 추이를 보면 남자 청소년(1995:2011=31.2:20.6)과 여자 청소년(1995:2011=41.9:30.1)의 감소폭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 않다.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고등교육 진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전문대

포함)은 1995년 51.4%에서 2001년 70.5%로 증가한 이후 2010년 79.0%로 상승한 후 2011년 72.5%로 하락하였다. 다만, 2011년부터 이전의 2월 졸업당시 대학합격자 기준에서 대학등록자(4월 중) 기준으로 진학자 기준이 변경된 것이 2011년 수치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므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 그림 8-1-1 ] 2011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11년 OECD 국가들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47.2%로 우리나라보다 21.7%p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국가는 청소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는 이탈리아 정도이다. 호주(68.4%)나 덴마크(67.1%), 캐나다(64.6%), 영국(62.7%) 등의 국가들은 60%가 넘는 높은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표 8-1-2 〉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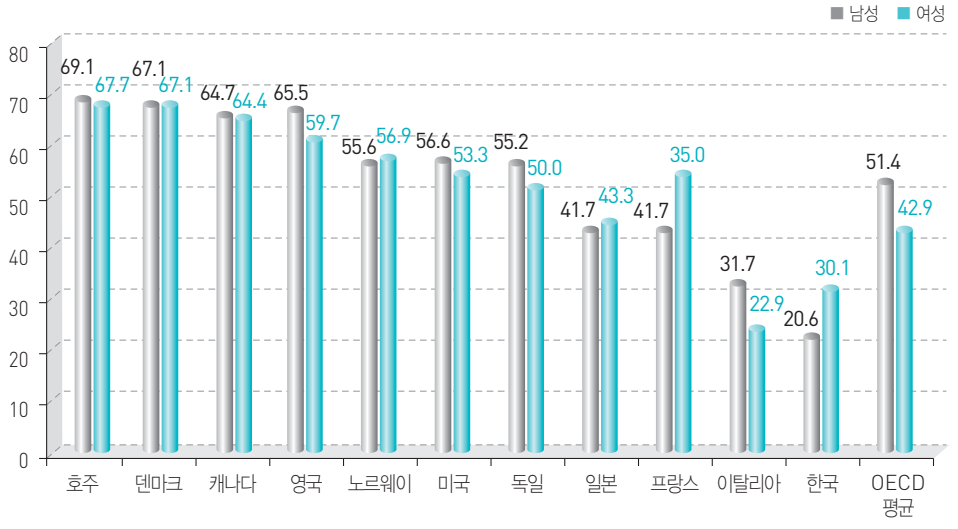
| 구 분 | 1995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15~24세 | 36.9 | 33.3 | 30.2 | 28.1 | 26.3 | 25.4 | 25.5 | 25.5 |
| 남 자 | 31.2 | 26.7 | 24.3 | 23.1 | 21.0 | 20.4 | 20.2 | 20.6 |
| 여 자 | 41.9 | 39.0 | 35.5 | 32.7 | 31.1 | 29.9 | 30.4 | 30.1 |
| 15~19세 | 12.0 | 9.1 | 7.5 | 7.3 | 6.5 | 6.2 | 6.9 | 7.6 |
| 남 자 | 9.5 | 8.0 | 6.3 | 6.5 | 5.6 | 4.9 | 5.5 | 6.3 |
| 여 자 | 14.5 | 10.3 | 8.9 | 8.1 | 7.5 | 7.5 | 8.5 | 9.0 |
| 20~24세 | 63.1 | 57.2 | 54.6 | 52.6 | 50.1 | 49.2 | 48.9 | 48.0 |
| 남 자 | 58.8 | 49.8 | 48.4 | 47.3 | 43.9 | 44.1 | 42.7 | 42.3 |
| 여 자 | 66.1 | 62.6 | 59.1 | 56.4 | 54.6 | 53.0 | 53.5 | 52.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연령계층별·성별로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살펴보면, 15~19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5년 12.0%에서 2009년 6.2%로 떨어졌다가 2011년 7.6%로 소폭 상승했으며, 20~24세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5년 63.1%에서 꾸준히 하락해 2011년 48.0%로 낮아졌다. 특히 가장 큰 폭으로 참가율이 낮아진 것은 20~24세 남자 청소년들로 1995년 58.8%에서 2011년 42.3%로 16.5%p 하락하였다.

[ 그림 8-1-2 ] 2011년 청소년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여자 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의무복무제의 영향으로 대학졸업 시점이 여자보다 늦고 입영대기하면서 보내는 시기 등이 있어 여자 청소년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이 남성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보면, 남자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0.8%p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자 청소년은 12.8%p 낮게 나타나고 있다.

## 2.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

2011년 15~24세 청소년 비경제활동인구는 448만 1천명으로 2010년에 비해 5만 4천 명 증가하였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집안에서 가사를 맡고 있는 가정주부를 비롯하여 학생,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등이 포함된다.

육아와 가사를 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1.8%로 2004년 이후 가장 작은 비중이며, 학교 통학이나 학원 수강 등을 의미하는 재학·수강은 전년보다 다소 하락한 87.1%를 기록했다. 연령대의 특성 상 비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은 학교를 다니거나 학원 수강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8-1-3 〉 청소년(15~24세)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별 현황 추이

(단위 : 천명, %)

| 구 분 | 비 경 제 활동인구 | 구성비 | 육아 가사 | 구성비 | 재학 수강 | 구성비 | 쉬었음 | 구성비 | 그 외 | 구성비 |
|---|---|---|---|---|---|---|---|---|---|---|
| 2004년 | 4,136 | 100.0 | 143 | 3.5 | 3,527 | 85.3 | 173 | 4.2 | 293 | 7.1 |
| 2005년 | 4,079 | 100.0 | 90 | 2.2 | 3,488 | 85.5 | 185 | 4.5 | 317 | 7.8 |
| 2006년 | 4,176 | 100.0 | 81 | 1.9 | 3,632 | 87.0 | 158 | 3.8 | 305 | 7.3 |
| 2007년 | 4,266 | 100.0 | 81 | 1.9 | 3,764 | 88.2 | 137 | 3.2 | 284 | 6.7 |
| 2008년 | 4,365 | 100.0 | 86 | 2.0 | 3,852 | 88.3 | 138 | 3.2 | 289 | 6.6 |
| 2009년 | 4,427 | 100.0 | 88 | 2.0 | 3,887 | 87.8 | 162 | 3.7 | 291 | 6.6 |
| 2010년 | 4,456 | 100.0 | 79 | 1.8 | 3,888 | 87.3 | 155 | 3.5 | 334 | 7.5 |
| 2011년 | 4,481 | 100.0 | 83 | 1.8 | 3,901 | 87.1 | 179 | 4.0 | 318 | 7.1 |

주 : 재학, 수강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과 기관수강 등을 포함. 그 외는 취업준비, 군입대 대기, 심신장애, 결혼준비, 구직활동, 발령대기, 진학준비, 기타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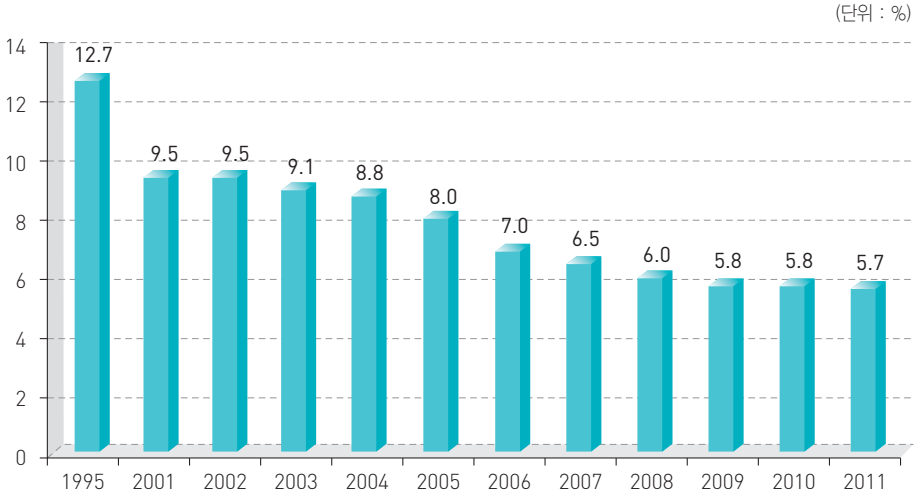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비경제활동인구 중 학생도 아니면서 취업도 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를 추려내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통계를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15~24세) 중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2011년 17만 9천명으로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쉬었음" 인구 비중은 2005년에 4.5%로 증가하였다가 2008년 3.2%로 감소하였는데, 2009년에 3.7%로 증가했고, 2010년은 다시 3.5%로 감소했다가 2011년 4.0%로 증가하였다.

## 3. 청소년의 취업 현황

2011년 15~24세 청소년 취업자는 138만 7천명으로 2010년(137만 5천명)에 비해 1만 2천명 증가하였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59.1%보다 36.0%p 낮은 23.1%로 나타났다.

[ 그림 8-1-3 ] 총 취업자 중 청소년 취업자의 비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전체 취업자(2,424만 4천명) 중 청소년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5.7%로 나타나 2010년보다 약간 하락하였으며 1995년 이후 꾸준히 하락한 수치이다. 이는 청소년인구의 감소와 대학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와 더불어 1998년 IMF 경제 위기이후 청년 고용률 하락 또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계층별로 취업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청소년 취업자 중 15~19세의 비율은 2010년 14.8%에서 2011년 16.4%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20~24세의 취업자 비율은 85.2%에서 83.6%로 소폭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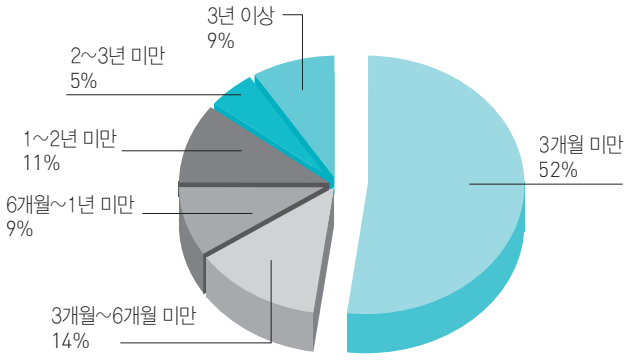
〈 표 8-1-4 〉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취업자 추이

(단위 : 천명, %)

| 구 분 | 2006 | 구성비 | 2007 | 구성비 | 2008 | 구성비 | 2009 | 구성비 | 2010 | 구성비 | 2011 | 구성비 |
|---|---|---|---|---|---|---|---|---|---|---|---|---|
| 15~24세 | 1,627 | 100.0 | 1,524 | 100.0 | 1,410 | 100.0 | 1,359 | 100.0 | 1,375 | 100.0 | 1,387 | 100.0 |
| 남 자 | 605 | 37.2 | 577 | 37.9 | 522 | 37.0 | 510 | 37.5 | 514 | 37.4 | 523 | 37.7 |
| 여 자 | 1,022 | 62.8 | 947 | 62.1 | 887 | 63.0 | 848 | 62.5 | 861 | 62.6 | 863 | 62.3 |
| 15~19세 | 209 | 12.8 | 211 | 13.9 | 190 | 13.5 | 178 | 13.1 | 204 | 14.8 | 227 | 16.4 |
| 남 자 | 90 | 5.5 | 98 | 6.4 | 83 | 5.9 | 72 | 5.3 | 81 | 5.9 | 96 | 7.0 |
| 여 자 | 119 | 7.3 | 113 | 7.4 | 107 | 7.6 | 106 | 7.8 | 123 | 8.9 | 130 | 9.4 |
| 20~24세 | 1,418 | 87.2 | 1,313 | 86.1 | 1,220 | 86.5 | 1,181 | 86.9 | 1,171 | 85.2 | 1,160 | 83.6 |
| 남 자 | 514 | 32.6 | 479 | 31.5 | 439 | 31.1 | 438 | 32.2 | 433 | 31.5 | 427 | 30.8 |
| 여 자 | 904 | 54.6 | 835 | 54.6 | 780 | 55.4 | 743 | 54.7 | 738 | 53.7 | 733 | 52.9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그림 8-1-4 ] 청년층 취업자의 첫 취업 소요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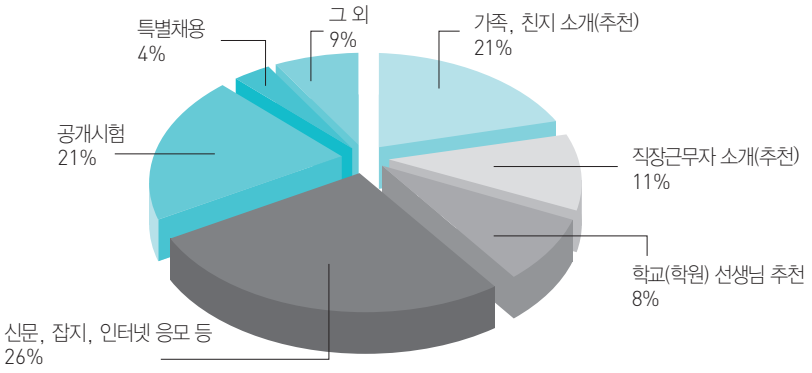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29세의 졸업자 및 중퇴자 중에서 임금근로자로 취업 중인 청(소)년 취업자가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을 살펴보면, 3개월 미만이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3~6개월 미만이 14%, 6개월~1년 미만이 9%,

1~2년 미만이 11%, 2~3년 미만이 5%, 3년 이상이 9%로 나타나 학교를 졸업(혹은 중퇴)한 후 첫 취업을 하는 데 평균 11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8-1-5 ] 청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15~29세 청소년층 취업자의 취업경로를 살펴보면 가족/친지나 직장 근무자, 학교 선생님 등의 추천을 통한 이른바 '연고취업'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신문·잡지·인터넷 등 응모가 26%, 그리고 공개시험은 21%를 차지하였다. 연고취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가족/친지의 소개나 추천이 21%, 직장 근무자의 소개나 추천이 11%, 그리고 학교 선생님 추천이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청소년의 실업 현황

2011년 전체 청소년 실업자는 14만 8천명, 실업률은 9.6%로 나타나고 있으며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12.1%)이 여자 청소년(8.1%)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1년 15세 이상 전체 실업자는 85만 5천명으로 실업률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실업률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8-1-5 〉 청소년 실업자수 및 실업률 추이

(단위 : 천명, %)

| 구 분 | 1995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 청소년 실업자수 | 173 | 208 | 180 | 147 | 145 | 149 | 150 | 148 |
| ● 청소년 실업률 | 6.3 | 10.2 | 10.0 | 8.8 | 9.3 | 9.9 | 9.8 | 9.6 |
| – 남자 | 7.8 | 12.3 | 11.7 | 11.4 | 11.5 | 11.9 | 11.2 | 12.1 |
| – 여자 | 5.3 | 9.0 | 9.0 | 7.2 | 7.9 | 8.6 | 9.0 | 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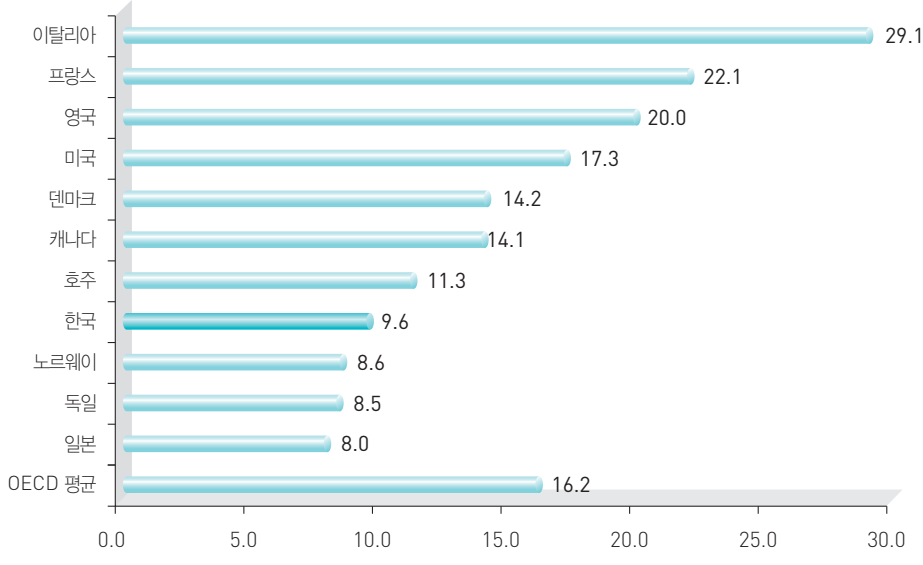
주 : 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하므로 청소년을 15~24세로 하였으며, 현역군인 등은 제외되었음.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청소년 실업률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5년 6.3%, 2002년 8.5%이었으나 2003년 10.1%로 높아진 이후 10% 이상의 실업률에 머무르다 2007년 10% 이하로 떨어졌다. 이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 9.9%까지 실업률이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9.6%로 소폭 하락한 상태이다.

[ 그림 8-1-6 ] 청소년 실업률 국제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2). Employment Outlook.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기 위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 전체 평균(16.2%)보다 6.6%p 낮아 우리나라 청소년 실업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 실업 문제가 최대 사회 현안 중 하나인 이탈리아나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 실업률은 각각 29.1%, 22.1%로 20%를 넘는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산학협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취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지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각각 8.5%와 8.0%로 낮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하위권임에도 매우 낮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소년들의 학교 재학률이 워낙 높은 것과도 연관이 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청소년 실업률은 15~19세가 10.8%로 20~24세(9.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15~19세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이 12.2%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15~19세의 실업률은 11.9%에서 1.1%p 하락했고, 20~24세 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1%p 하락했다. 국제금융위기에서 빠져나와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만, 일자리를 찾으려고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한 증가해 청소년실업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별로 보면 여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9.0%에서 8.1%로 개선되었지만, 남자 청소년의 실업률은 11.2%에서 12.1%로 증가했다.

〈 표 8-1-6 〉 연령계층별·성별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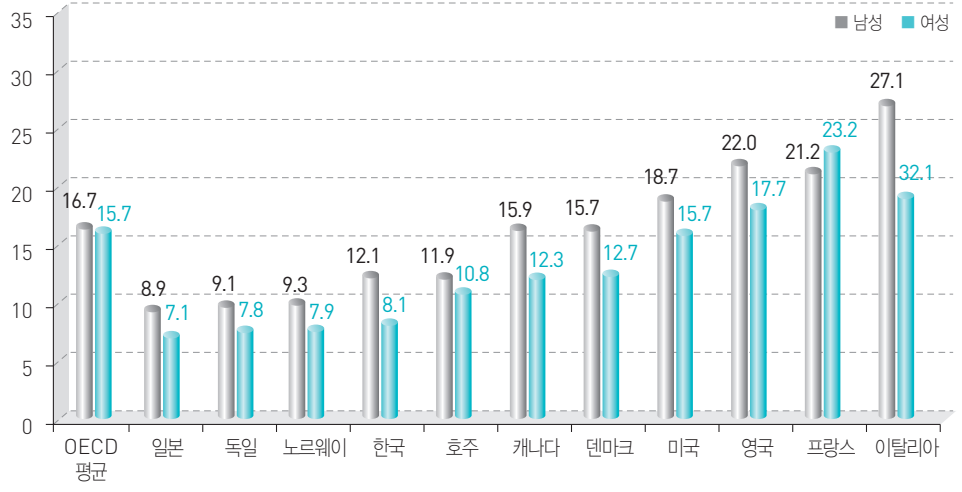
(단위 : 천명, %)

| 구 분 | 2006 | | 2007 | | 2008 | | 2009 | | 2010 | | 2011 | |
|---|---|---|---|---|---|---|---|---|---|---|---|---|
| | | 실업률 | | 실업률 | | 실업률 | | 실업률 | | 실업률 | | 실업률 |
| 15~24세 | 180 | 10.0 | 147 | 8.8 | 145 | 9.3 | 149 | 9.9 | 150 | 9.8 | 148 | 9.6 |
| 남 자 | 80 | 11.7 | 74 | 11.4 | 68 | 11.5 | 69 | 11.9 | 65 | 11.2 | 72 | 12.1 |
| 여 자 | 100 | 9.0 | 73 | 7.2 | 77 | 7.9 | 79 | 8.6 | 85 | 9.0 | 76 | 8.1 |
| 15~19세 | 24 | 10.4 | 22 | 9.3 | 22 | 10.2 | 25 | 12.2 | 28 | 11.9 | 27 | 10.8 |
| 남 자 | 11 | 10.4 | 10 | 9.5 | 12 | 12.2 | 13 | 15.1 | 15 | 15.1 | 13 | 12.2 |
| 여 자 | 13 | 10.5 | 11 | 9.2 | 10 | 8.6 | 12 | 10.3 | 13 | 9.6 | 14 | 9.7 |
| 20~24세 | 156 | 9.9 | 126 | 8.7 | 123 | 9.2 | 124 | 9.5 | 122 | 9.5 | 121 | 9.4 |
| 남 자 | 69 | 11.9 | 64 | 11.7 | 64 | 11.4 | 56 | 11.4 | 50 | 10.4 | 59 | 12.1 |
| 여 자 | 87 | 8.8 | 62 | 6.9 | 67 | 7.9 | 67 | 8.3 | 72 | 8.9 | 62 | 7.8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그림 8-1-7 ] 2010년 성별 청소년 실업률 국제 비교

(단위 : %)




자료 : OECD(2011). Employment Outlook.

OECD 국가들의 청소년 실업률과 비교해 보면, 남자와 여자 모두 OECD 평균보다 낮은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 5. 임금 및 노동시간

2010년 청소년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정액 및 초과급여 기준으로 19세 이하가 102만 2천원으로 전년대비 7.6%p 감소하였고, 20~24세는 142만 7천원으로 전년대비 3.3%p 상승하였다. 20~24세의 경우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19세 이하의 경우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0년 20~24세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고졸이 136만 5천원, 전문대졸의 경우 140만 3천원, 대학교졸은 156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근로자의 경우 고졸자와 전문대졸자간의 임금 격차가 전문대졸자와 대졸자의 임금격차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증감률을 보면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이후 명목임금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명목임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1-7 〉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 구 분 | 임금수준 | | 증감률 | |
|---|---|---|---|---|
| | 19세 이하 | 20~24세 | 19세 이하 | 20~24세 |
| 2001 | 792 | 877 | 10.8 | 5.3 |
| 2002 | 874 | 978 | 10.4 | 11.5 |
| 2003 | 903 | 1,047 | 3.3 | 7.1 |
| 2004 | 973 | 1,112 | 7.8 | 6.2 |
| 2005 | 1,059 | 1,200 | 8.8 | 7.9 |
| 2006 | 1,167 | 1,285 | 10.2 | 7.1 |
| 2007 | 1,197 | 1,324 | 2.6 | 3.1 |
| 2008 | 1,166 | 1,377 | -2.6 | 4.0 |
| 2009 | 1,106 | 1,381 | -5.2 | 0.3 |
| 2010 | 1,022 | 1,427 | -7.6 | 3.3 |
| 2011 | 1,267 | 1,575 | 24.0 | 10.4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 표 8-1-8 〉 청소년 근로자의 학력별 임금수준 추이 : 정액 및 초과급여

(단위 : 천원, %)

| 구 분 | 임금수준 | | | 증감률 | | |
|---|---|---|---|---|---|---|
|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이상 |
| 2001 | 868 | 869 | 994 | 4.6 | 5.6 | 8.4 |
| 2002 | 970 | 945 | 1,111 | 11.8 | 8.7 | 11.8 |
| 2003 | 1,029 | 1,018 | 1,200 | 6.1 | 7.7 | 8.0 |
| 2004 | 1,095 | 1,098 | 1,218 | 6.4 | 7.9 | 1.5 |
| 2005 | 1,174 | 1,190 | 1,306 | 7.2 | 8.4 | 7.2 |
| 2006 | 1,262 | 1,255 | 1,416 | 7.5 | 5.5 | 8.5 |
| 2007 | 1,294 | 1,304 | 1,450 | 2.5 | 3.9 | 2.5 |
| 2008 | 1,334 | 1,355 | 1,510 | 3.1 | 3.9 | 4.1 |
| 2009 | 1,334 | 1,365 | 1,513 | 0.0 | 0.1 | 0.1 |
| 2010 | 1,365 | 1,403 | 1,563 | 2.3 | 2.8 | 3.3 |
| 2011 | 1,523 | 1,548 | 1,712 | 11.6 | 10.3 | 9.5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 표 8-1-9 〉 연령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단위 : 일, 시간)

| 연 도 | 연령별 | 전 체 | | 남 자 | | 여 자 | |
|---|---|---|---|---|---|---|---|
| |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 2003 | 전 체 | 23.5 | 201.8 | 23.4 | 204.7 | 23.6 | 195.2 |
| | 19세 이하 | 23.5 | 202.3 | 23.8 | 211.7 | 23.4 | 197.8 |
| | 20~24세 | 23.6 | 198.9 | 23.7 | 212.0 | 23.5 | 192.8 |
| 2004 | 전 체 | 24.4 | 209.5 | 24.3 | 212.1 | 24.7 | 203.5 |
| | 19세 이하 | 24.5 | 208.4 | 24.6 | 215.1 | 24.5 | 204.5 |
| | 20~24세 | 24.6 | 207.5 | 24.7 | 220.3 | 24.6 | 200.8 |
| 2005 | 전 체 | 23.2 | 201.4 | 23.1 | 204.3 | 23.5 | 194.8 |
| | 19세 이하 | 23.4 | 198.9 | 23.5 | 203.9 | 23.3 | 196.4 |
| | 20~24세 | 23.5 | 198.8 | 23.8 | 211.9 | 23.3 | 192.1 |
| 2006 | 전 체 | 22.9 | 198.0 | 22.9 | 200.3 | 23.0 | 192.8 |
| | 19세 이하 | 23.3 | 196.8 | 22.9 | 200.3 | 23.4 | 195.5 |
| | 20~24세 | 23.1 | 197.0 | 23.6 | 209.5 | 22.8 | 190.9 |
| 2007 | 전 체 | 22.3 | 191.5 | 22.2 | 194.0 | 22.3 | 186.2 |
| | 19세 이하 | 22.6 | 200.2 | 23.1 | 204.4 | 22.3 | 198.4 |
| | 20~24세 | 22.4 | 193.0 | 23.0 | 205.8 | 22.1 | 186.8 |
| 2008 | 전 체 | 21.8 | 188.7 | 21.9 | 191.6 | 21.8 | 182.6 |
| | 19세 이하 | 21.7 | 185.6 | 21.0 | 176.8 | 22.2 | 192.0 |
| | 20~24세 | 21.9 | 188.9 | 22.3 | 204.6 | 21.7 | 181.3 |
| 2009 | 전 체 | 22.8 | 194.8 | 22.7 | 197.2 | 22.8 | 189.6 |
| | 19세 이하 | 21.2 | 182.1 | 21.2 | 186.9 | 21.2 | 179.9 |
| | 20~24세 | 22.6 | 193.9 | 22.7 | 205.9 | 22.6 | 188.5 |
| 2010 | 전 체 | 22.5 | 192.8 | 22.5 | 195.7 | 22.5 | 186.9 |
| | 19세 이하 | 19.8 | 163.5 | 19.7 | 165.4 | 19.9 | 162.2 |
| | 20~24세 | 22.5 | 189.9 | 22.6 | 200.3 | 22.4 | 184.9 |
| 2011 | 전 체 | 22.2 | 189.3 | 22.2 | 192.7 | 22.2 | 182.4 |
| | 19세 이하 | 20.7 | 172.6 | 20.3 | 172.6 | 20.9 | 172.6 |
| | 20~24세 | 22.1 | 187.9 | 22.4 | 200.0 | 22.0 | 181.5 |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각 년도.

청소년 근로자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 노동시간(163.5시간)이 20~24세(189.9시간)보다 26.4시간 짧았으며 남자 청소년보다 여성 청소년의 근로시간이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 6. 청소년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생활과 직업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한 고용노동부 용역보고서인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 중 아르바이트를 경험해본 비중이 29.1%로 나타났다. 특성별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비율이 32.2%로 여자 청소년 25.9%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년에 따른 경험률은 중학교 3학년 9.9%에서 고등학교 3학년 44.2%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진학 청소년(27.4%)보다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은 비진학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62.0%)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8-1-10 〉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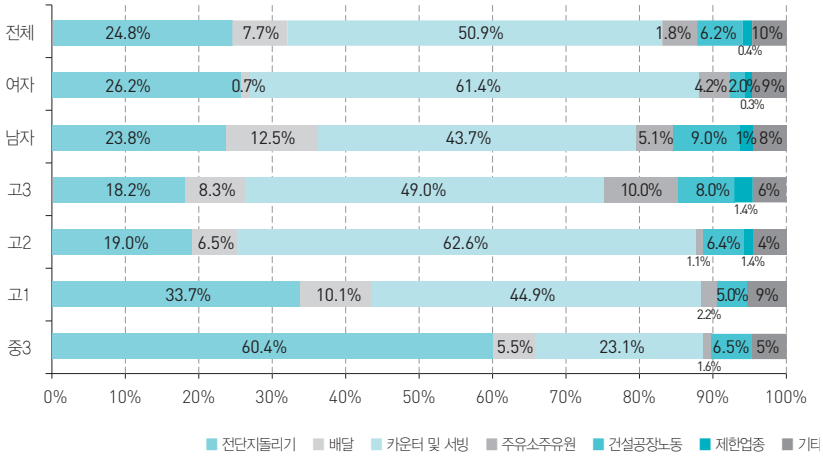
(단위 : 명, %)

| 구분 | | 사례수 | 있다 | 없다 |
|---|---|---|---|---|
| 전체 | | 2,842 | 29.1 | 70.9 |
| 성별 | 남자 | – | 32.2 | 67.8 |
| | 여자 | – | 25.9 | 74.1 |
| 학년 | 중3 | – | 9.9 | 90.1 |
| | 고1 | – | 21.5 | 78.5 |
| | 고2 | – | 39.7 | 60.3 |
| | 고3 | – | 44.2 | 55.8 |
| 진학 여부 | 진학 | 2,700 | 27.4 | 72.6 |
| | 비진학 | 142 | 62.0 | 38.0 |

출처 :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54쪽에서 재구성.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종류를 살펴보면 카운터 및 서빙이 5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단지 돌리기가 24.8%, 배달 7.7%, 건설 및 공장노동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는 경로는 주위(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58.8%), 일반 취업 아르바이트 사이트(18.5%), 가족이나 친지의 소개(12.2%) 순으로 나타났다.

[ 그림 8-1-8 ] 지난 1년간 한 아르바이트 종류




출처 : 고용노동부(2011).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제2장

#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 1. 중학교 신규졸업자의 진로 상황

2011년도 우리나라의 중학교 신규졸업자는 668,224명으로 이들 중 99.6%인 666,109명이 고등학교 및 기타 학교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100%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진학자 중 중졸 취업 인구수는 매우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진학자 중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비율은 72.4%로 나타나고 있다.

〈 표 8-2-1 〉 2011년 중학교 신규 졸업자의 진로상황

(단위 : 명, %)

| 구 분 | 졸업자수 | 진 학 자 | | | | | | |
|---|---|---|---|---|---|---|---|---|
| | | 총 계 | | | 일 반 계 | | 전 문 계 | |
| | | 비율 | 계 | 여자 | 계 | 여자 | 계 | 여자 |
| 총 계 | 668,224 | 99.6 | 666,109 | 313,463 | 483,729 | 231,239 | 125,890 | 57,104 |
| 국 립 | 2,121 | 99.8 | 2,117 | 954 | 1366 | 643 | 565 | 251 |
| 공 립 | 545,297 | 99.6 | 543,593 | 256,068 | 397,216 | 189,676 | 100,278 | 45,155 |
| 사 립 | 120,806 | 99.6 | 120,399 | 56,441 | 85,147 | 40,920 | 25,047 | 11,698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 2. 고등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1년도 고등학교 신규졸업자는 일반계 고등학교 495,644명, 전문계 고등학교 152,824명이며 이

가운데 취업자는 각각 5,359명과 35,69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은 4.4%인데 비해 전문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은 66.0%이다.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미취업자는 상당수가 재수생으로 추정된다.

〈 표 8-2-2 〉 2011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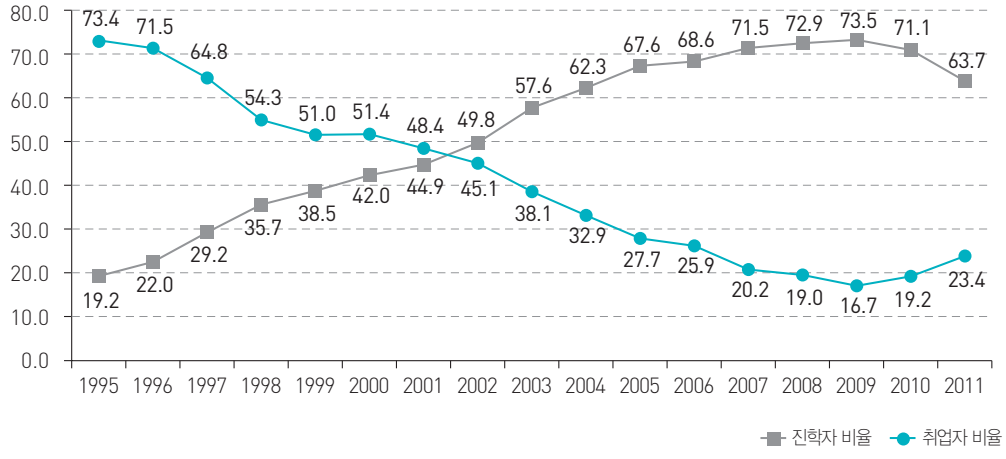
| 구 분 | 합 계 | | 일 반 계 | | 전 문 계 | |
|---|---|---|---|---|---|---|
| | 계 | 여자 | 계 | 여자 | 계 | 여자 |
| 졸 업 자 | 648,468 | 306,314 | 495,644 | 236,841 | 152,824 | 69,473 |
| 진 학 자 | 469,961 | 229,818 | 372,561 | 186,133 | 97,400 | 43,685 |
| 취 업 자 | 41,057 | 20,866 | 5,359 | 2,492 | 35,698 | 18,374 |
| 무 직 자 | 91,557 | 37,801 | 80,106 | 33,053 | 11,451 | 4,748 |
| 입 대 자 | 1,940 | – | 623 | – | 1,317 | – |
| 미 상 | 43,953 | 17,829 | 36,995 | 15,163 | 6,958 | 2,666 |
| 취 업 률 | 23.3 | 27.3 | 4.4 | 4.9 | 66.0 | 71.3 |

주 :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입대자수)}×1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 그림 8-2-1 ] 전문계 신규 졸업자의 진학자와 취업자 비율 추이

(단위 : %)



전문계 고등학교 신규 졸업자들 중 진학자와 취업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1년 진학자 비율은 63.7%로 취업자 비율(23.4%)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졸업 후 취업이라는 완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진학자 비율이 취업자 비율보다 높아진 시기는 2002년(진학자비율:취업자비율 = 49.8%:45.1%)으로 그 이전까지는 취업자 비율이 진학자 비율보다 높았으나 2002년 이후 졸업자 대비 진학자 비율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 3.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

2011년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졸업자 2,428명 중 취업자는 357명으로 진학자를 제외하고 계산한 취업률은 21.0%로 나타나고 있다. 특수학교에서 직업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66.0%)에 비해 특수학교 신규졸업자의 취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 표 8-2-3 〉 2011년 특수학교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 구 분 | 졸업자 | | 진학자 | | 취업자 | | 무직자 | |
|---|---|---|---|---|---|---|---|---|
|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전체 | 여자 |
| 시각장애 | 214 | 81 | 75 | 37 | 92 | 28 | 47 | 16 |
| 청각장애 | 143 | 64 | 36 | 26 | 64 | 24 | 43 | 14 |
| 정신지체 | 1,689 | 576 | 522 | 181 | 172 | 56 | 995 | 339 |
| 지체장애 | 241 | 95 | 74 | 25 | 23 | 11 | 144 | 59 |
| 정서·행동장애 | 94 | 18 | 13 | - | 3 | 1 | 78 | 17 |
| 기타 | 47 | 9 | 6 | 4 | 3 | 1 | 38 | 4 |
| 합 계 | 2,428 | 843 | 726 | 273 | 357 | 121 | 1,345 | 449 |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교육통계연보.

## 4. 대학 졸업자 취업 상황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 상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59,000명 중에서 취업자는 292,028명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8.6%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 졸업자들의 경우는 188,216명 중 105,589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나며,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60.7%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대 졸업자들의 건강보험DB와 연계한 취업률은 54.5%로 전문대에 비해서 낮았다.

〈 표 8-2-4 〉 2011년 대학 신규 졸업자의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 구 분 | 합 계[1] | | 전 문 대 | | 일 반 대 | |
|---|---|---|---|---|---|---|
| | 전 체 | 여 자 | 전 체 | 여 자 | 전 체 | 여 자 |
| 졸 업 자 | 559,000 | 277,910 | 188,216 | 106,507 | 293,967 | 141,329 |
| 졸업자 중 유학생 | 12,793 | 6,870 | 1,712 | 833 | 6,567 | 3,689 |
| 진 학 자 | 35,705 | 15,805 | 6,838 | 3,650 | 24,575 | 10,608 |
| 취 업 자 | 292,028 | 137,791 | 105,589 | 60,018 | 140,204 | 62,418 |
| 입 대 자 | 3,630 | - | 1,941 | - | 1,205 | - |
| 취업불가능자 | 2,445 | 8,684 | 90 | 26 | 99 | 57 |
| 기 타 | 201,455 | 109,844 | 67,254 | 8,707 | 114,670 | 61,048 |
| 미 상 | 4,480 | 2,445 | 1,225 | 691 | 2,501 | 1,352 |
| 제 외 대 상 | 8,684 | 5,053 | 3,567 | 2,582 | 4,146 | 2,157 |
|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 | 58.6 | 55.1 | 60.7 | 60.4 | 54.5 | 50.0 |

주 : 1) 전문대, 일반대 외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대학원, 사내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전체의 수치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취업통계연보.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예체능계열 졸업자 31,551명 중 12,308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3.1%)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 9,389명 중 7,100명이 취업해 가장 높은 취업률(78.3%)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의약계열(72.6%)과 공학계열(66.7%)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8-2-5 〉 2011년 전문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 구분 \ 계열 | 인 문 | 사 회 | 교 육 | 공 학 | 자 연 | 의 약 | 예체능 |
|---|---|---|---|---|---|---|---|
| 졸 업 자 | 7,683 | 58,061 | 9,389 | 42,335 | 13,492 | 25,705 | 31,551 |
| 졸업자 중 유학생 | 186 | 808 | 10 | 456 | 38 | 9 | 205 |
| 진 학 자 | 577 | 2,346 | 181 | 1,181 | 433 | 441 | 1,679 |
| 취 업 자 | 3,437 | 31,559 | 7,100 | 26,378 | 6,828 | 17,979 | 12,308 |
| 입 대 자 | 66 | 500 | 5 | 656 | 214 | 131 | 369 |
| 취업불가능자 | 3 | 31 | 2 | 15 | 24 | 5 | 10 |
| 기 타 | 3,247 | 21,026 | 1,923 | 12,915 | 5,592 | 6,656 | 15,895 |
| 미 상 | 43 | 274 | 41 | 266 | 114 | 119 | 368 |
| 제외대상 | 124 | 1,517 | 127 | 468 | 249 | 365 | 717 |
| 취 업 률 | 51.1 | 59.7 | 78.3 | 66.7 | 54.5 | 72.6 | 43.1 |

주 :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취업통계연보.

〈 표 8-2-6 〉 2011년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과 취업률

(단위 : 명, %)

| 구분 \ 계열 | 인 문 | 사 회 | 교 육 | 공 학 | 자 연 | 의 약 | 예체능 |
|---|---|---|---|---|---|---|---|
| 졸 업 자 | 37,939 | 86,809 | 16,460 | 69,846 | 35,816 | 14,698 | 32,399 |
| 졸업자 중 유학생 | 1,217 | 3,757 | 79 | 665 | 250 | 58 | 541 |
| 진 학 자 | 3,437 | 2,780 | 762 | 7,869 | 6,438 | 616 | 2,673 |
| 취 업 자 | 14,444 | 42,426 | 6,549 | 40,599 | 14,775 | 10,593 | 10,818 |
| 입 대 자 | 104 | 267 | 97 | 246 | 106 | 131 | 254 |
| 취업불가능자 | 20 | 17 | 7 | 20 | 14 | 1 | 20 |
| 기 타 | 16,376 | 35,947 | 8,425 | 19,716 | 13,661 | 3,163 | 17,382 |
| 미 상 | 348 | 891 | 72 | 399 | 347 | 54 | 390 |
| 제외대상 | 1,993 | 724 | 469 | 332 | 225 | 82 | 321 |
| 취 업 률 | 46.3 | 53.5 | 43.5 | 66.9 | 51.3 | 76.7 | 37.8 |

주 : 취업률은 건강보험DB 연계 취업률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1). 취업통계연보.

이어서 일반대 신규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상황을 살펴보면, 의약계열 졸업자는 14,698명 중 10,593명이 취업해 76.7%의 높은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계열 졸업자는 16,460명 중 6,549명이 취업해 가장 낮은 취업률(43.5%)을 보여주고 있다.

제3장
# 청소년의 직업·진로정책

## 1. 청소년고용촉진대책

### 가. 청년고용촉진 대책 수립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시기별 청년고용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종합대책, 부문별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2003년에는 일자리 창출, 산학협력, 해외취업 등 장단기 대책을 종합한 '청년실업종합대책'이 수립되었고, 2005년에는 학교-노동시장간 이행 원활화에 중점을 둔 '청년고용촉진대책'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해외취업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외취업촉진대책'이 마련되었다. 또한 고졸이하 학력 청년층의 실업자가 전체 청년실업자 중에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실업률도 전체 청년실업률 보다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고졸이하 청년층 고용촉진대책'이 마련·시행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간의 청년실업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검토하여 청년고용장려금 사업을 2010년까지 연장키로 하고 청년학생층에 대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강화, 학교의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취약청년층을 위한 고용지원네트워크 구축 등의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8년 들어 정부는 우리 청년들의 취업무대를 국내노동시장에서 세계시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해외 경험을 쌓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국가성장을 주도할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산·학·관 협약을 통해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2009~2013년) 해외취업지원(5만명), 해외인턴(3만명), 해외자원봉사(2만명)를 통해 총 10만명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고용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취업애로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청년 친화적 일자리 지원, 직업체험 확대, 청년고용 인프라 확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기불황으로 인해 청년고용 상황이 악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년실업자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확대하는 '청년고용 추가대책'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2009년말 전반적인 경기가 회복 되어 고용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안정적 일자리에 대한 쏠림현상이 계속 심화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청년·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대책'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보고되고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구직자와 중소기업간 정보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전용 일자리 중개시스템(잡영)을 구축하고 산학연계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청년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는 것이다.

또한, 2010년 10월에는 향후 2년간 청년친화적 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 내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2011년 5월에는 2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고용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 칸막이를 뛰어 넘어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기계발과 재도약 기회를 충분히 갖도록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2차 프로젝트는 일터 학습의 장을 확충, 괜찮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유인 강화, 지방대생 반듯한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청년 벤처 창업과 벤처 공동채용 확대 등의 대책을 담았다.

## 나. 직업탐색·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고용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향상하고 올바른 직업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개발한 CAP+, 성취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올라 프로그램, 취업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은 고등학생, 대학생, 직업훈련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층(만 15~29세)을 대상으로 총 4.5일간(27시간) 진행되며 진로지도 및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취'프로그램은 구직의욕과 취업자신감이 낮은 만 18세 이상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효능감 제고 및 구직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5일(30시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희망'프로그램도 만18세 이상의 구직자에게 원만한 사회진출 및 적응을 돕기 위해 대인관계 향상과 의사소통 개선에 초점을 두고 4일(23시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올라(all-A)'는 청년층 구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자신감이 극히 저하되어 원활한 직업생활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 4일간(23시간)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를 심화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며 삶에 대한 적극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캠프'는 취업준비생들을 중심으로 구직의욕과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합형 과정이다.

청소년 직업체험학습프로그램인 잡스쿨(Job School)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2일짜리 프로그램이다. 첫날은 진로특강을 듣고, 둘째날은 직업과 관련된 대학 학과와 산업분야의 직업현장을

방문한다. 특히 보호관찰소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잡스쿨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운영하고 있다.

청년 직장체험프로그램(1~6개월)은 직업 현장에서 직접 일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및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한국잡월드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 다. 직업진로지도 내실화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알맞은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심리검사를 비롯한 직업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취업지원관, 직업상담원, 커리어코치 등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국 고용센터와 워크넷에서는 각종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각종 직업심리검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개발한 것으로 청소년 및 청년용 직업심리검사 14종(초등학생 진로인식검사,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중2~고3), 청소년 적성검사(중/고), 청소년 직업인성검사(중1~고2), 청소년 진로발달검사(중2~고3), 직업가치관검사(중3~), 학과(전공)흥미검사(고1~고3)를 비롯하여, 만 18세 이상의 청년을 위한 직업선호도검사, 직업적성검사, 구직욕구진단검사, 구직효율성검사, 창업진단검사, 영업직무기본역량검사, IT직무기본역량검사가 보급되어 있다.

〈 표 8-3-1 〉 청소년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직업적성검사 | 직업흥미검사 등 | 계 |
|---|---|---|---|
| 2002 | 173,121 | 225,687 | 398,808 |
| 2003 | 189,495 | 250,132 | 439,627 |
| 2004 | 228,866 | 384,395 | 613,261 |
| 2005 | 247,333 | 304,028 | 551,361 |
| 2006 | 253,709 | 321,631 | 575,340 |
| 2007 | 200,100 | 252,862 | 452,962 |
| 2008 | 132,114 | 237,445 | 369,559 |
| 2009 | 133,085 | 189,960 | 323,045 |
| 2010 | 153,820 | 394,630 | 548,450 |
| 2011 | 341,301 | 1,219,934 | 1,561,235 |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0).

〈 표 8-3-2 〉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활용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직업선호도 검사 | | 직업적성 검사 | 구직 효율성 검사 | 구직욕구 진단검사 | 창업진단 검사 | 직업전환 검사 등 | 계 |
|---|---|---|---|---|---|---|---|---|
| | S형 | L형 | | | | | | |
| 2002 | 131,370 | 76,914 | 12,043 | 2,156 | 17,270 | 1,740 | 1,802 | 243,295 |
| 2003 | 98,710 | 69,839 | 11,022 | 1,837 | 12,363 | 935 | 336 | 193,771 |
| 2004 | 159,315 | 89,724 | 26,833 | 5,605 | 9,798 | 19,199 | 8,043 | 308,719 |
| 2005 | 97,400 | 80,604 | 17,679 | 2,064 | 23,586 | 1,647 | 692 | 222,980 |
| 2006 | 117,028 | 87,636 | 23,547 | 2,289 | 5,865 | 2,504 | 1,194 | 240,063 |
| 2007 | 80,207 | 78,713 | 15,457 | 1,334 | 5,123 | 842 | 79 | 181,755 |
| 2008 | 134,200 | 93,843 | 41,887 | 6,323 | 16,333 | 6,272 | 6,158 | 305,016 |
| 2009 | 145,582 | 121,953 | 117,524 | 19,889 | 30,385 | 8,610 | 9,528 | 455,480 |
| 2010 | 148,558 | 142,173 | 142,277 | 19,512 | 24,592 | 9,503 | 16,418 | 503,033 |
| 2011 | 172,328 | 182,342 | 149,230 | 21,816 | 31,328 | 9,050 | 17,123 | 583,217 |

주 : 만18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용 직업심리검사를 실시함.

자료 :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2010).

아울러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진로와 직업」 교과서, 초·중·고·대·특성화고용 진로지도프로그램(CDP), 사회과·과학과 진로탐색자료(중·고), 특성화고 취업지원로드맵, 대학교 취업지원로드맵, 직업카드, 직업동영상 활용매뉴얼, 사이버진로교육원 이러닝콘텐츠 등을 비롯한 진로교육 자료와 진로지도기법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진로와 직업」 교과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용으로 2003년도에 개발·보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정(초등 2007년 개정, 중학교 2011년 개정)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는 2010년 개발 보급되어 학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진로지도프로그램(CDP)은 초·중·고·특성화고·대 등 각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 학기용 자료로서 총 5종으로 개발·보급되었으며, 교사용 매뉴얼과 학습자용 워크북, 수업진행용 슬라이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특성화고 및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효과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학교급(특성화고/대학교)에 따라 학년별로 강조해야 할 구직역량과 이를 위한 활용자원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학교급별 취업지원 로드맵을 2010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이 외에도 청소년 직업진로지도 및 교과통합형 진로지도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사회과·과학과 세부과목들에 대해 단원별 진로지도를 위한 탐색자료집을 개발하여 보급했고, 학부모대상 진로특강 자료, 직업심리검사 해석을 위한 동영상과 슬라이드 등을 개발하여 각급 학교로 보급하였다.

카드형태의 직업진로교육 매체인 '직업카드' 역시 전국 고용센터와 학교에서 청소년 진로지도를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되어 청소년워크넷 사이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직업진로지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자기주도적 진로 학습이 가능한 사이버진로교육센터(http://cyber-edu.keis.or.kr)을 개원하여 이력서 작성과 면접준비에 필요한 강좌 등 온라인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진로지도와 취업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초중등학교 교사 및 대학 취업관계자와 취업지원관, 담당공무원, 커리어코치, 민간 직업상담원 및 취업알선원 등의 직업진로지도 관련 직무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직업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 교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하는데 2011년에는 초·중·고 일반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 학교 취업지원관, 교장·교감·장학사 등을 위한 진로지도전문화 교육과, 대학(교) 취업 및 경력개발 담당자, 지자체 및 민간 취업관련기관 담당자, CAP+, 취업희망 등을 비롯한 집단프로그램 진행자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 라. 직업정보의 수집 제공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에 따라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직업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정보시스템(KNOW)」을 개발하였다. 2001년부터 실시한 우리나라 대표직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2003년부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http://www.work.go.kr)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직업정보는 물론 직업과 관련되어 있는 학과(전공)정보 및 온라인 진로상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종합적인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직업전망」, 「한국직업사전」, 「학과정보」, 「신생 및 이색직업」 등 초등학교에서 성인까지의 수요자 맞춤형 직업정보자료를 발간하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입체적인 매체를 통해 생생한 직업정보 확인과 직업탐색이 가능하도록 '내일을 Job아라'와 'Work & Life'를 비롯한 직업 및 취업지원 동영상을 제작하였다. 이는 각급 학교에 DVD로 배포되는 한편, 방송 송출 및 홈페이지 다운로드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한 이들 매체를 교육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지도기법이 소개된 직업동영상 활용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있다. 이밖에도 2011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과정보 동영상이 제작되어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 마.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취업지원 확대

1998년 11월 이후 인터넷 방식의 「워크넷(Work-Net, www.work.go.kr)」시스템을 구축하여 고용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의 취업 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온라인을 통해 구인·구직자에게 직접 일자리

정보, 직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에는 정보화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에 따라 워크넷 시스템을 개편하여 청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온라인 고용정보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력서작성과 구직신청, 채용정보 북마크, 알선요청, 직업상담 등의 개별 온라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맞춤 메일링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직업·취업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워크넷에 「대기업 채용정보」 항목을 신설하여 주요 대기업의 구인정보를 취합·제공하였고, 「지역고용동향」 항목의 신설을 통해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제작한 각종 지역단위 고용정보를 구인·구직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그 밖에 「구인·구직 동영상 서비스」를 실시하여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소개를 동영상으로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동영상 이력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취업자료실」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여 취업관련 뉴스와 가이드, 동영상, 직업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채용정보와 인재정보를 직종별, 지역·산업단지별, 역세권별, 대기업채용정보, 단시간근로채용정보, 전공계열별, 청년인턴인재정보 등 특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온라인을 통해 기업들의 채용대행을 지원할 수 있는 「e-채용마당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e-채용마당」은 기업에게는 채용에 따른 비용, 인력, 시간을 절감시키면서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한편, 구직자에게는 우수기업체의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진다. 또한 워크넷 상의 구인·구직표 서식 개정 및 인증시스템 강화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확보 및 제공을 통해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구인·구직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였다.

2011년부터는 공공부문 민간부문 일자리 정보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차세대 워크넷 종합고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2.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 가. 청소년근로 보호대책

정부는 2005년 6월 20일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추진해오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은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종합적·체계적인 보호 대책으로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의 강화방안,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의 제고방안,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방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방안,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방안, 성과점검을 통한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에서는 2008년 6월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연소자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 운영,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을 통해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나.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근로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연소근로자 다수고용사업장에 대해서 법정 근로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연 2회 실시(1~2월, 7~8월)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연소근로자 보호조항과 최저임금 준수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1년 2,711개소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9,681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고, 이중 9,676건은 시정조치, 5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청소년 사용금지 직종에 대한 불법 근로를 지도하기 위한 합동점검을 매년 주기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다. 교육 내실화를 통한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정부는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을 통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등에 대한 연소근로자 근로관련 노동관계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진로상담 교사에 대해 청소년 근로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교사연수과정 교육프로그램에 연소자 근로조건 및 피해사례별 구제방법 등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밖에 종합대책에서는 사례별 구제방법 지정, 직업교육 연구시범학교 워크숍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거나 전문계 고교 CEO 연수 시 노동관계법 교육시간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연소자 근로조건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거나 전문계 고교 및 평생직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인문계 고교까지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 중·고교생 대상 일터 현장체험 프로그램인 잡 스쿨(Job School) 운영 시 학생에 대한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조건 교육을 실시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청소년교실 운영 시 취업청소년을 위한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교실은 경찰서장 등 경찰관이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과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성 순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랑의 교실,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1:1 집중상담이 진행되는 상담교실 등이 있다. 연소자 다수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다수고용업종 대표 간담회를 통하여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지도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다.

## 라.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정 근로조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6년 10월부터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을 통해 유관기관, 연소근로자 다수고용 사업주 협회 등과 협약 체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지역 청소년단체와 공동 캠페인 전개, 팜플릿·포스터 제작·배포 등 중·고등학교 및 연소근로자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매체의 효율적 활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였다. 2006년에 구축한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관련 싸이월드 타운 홈페이지에 이어, 2008년 3월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하고 블로그 이웃맺기 이벤트, 오행시 컨테스트 등 각종 프로모션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령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는 청소년 스스로가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정책프로슈머가 될 수 있도록 1318 알자알자 청소년리더(제1기: 20개 팀, 제2기: 30개 팀, 제3기: 30개 팀)를 선발하였고, 월별 홍보미션을 부여하여 청소년이 스스로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노동관계법령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직접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소근로자의 아르바이트가 성행하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청소년리더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감독관이 연계해 지역 밀착형 홍보를 전개하여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지역단위의 네트워크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 마.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고용노동부는 워크넷(http://work.go.kr)을 통해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검사, 청소년 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러닝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연소근로자들이 권리구제방법을 몰라서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1318 알바신고센터」를 2011년 도입하였다. 1318 알바신고센터는 각급 학교에 설치되고 학교에 배치된 전담교사(생활지도교사 등)가 수집된 피해사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총 47개)의 전담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면, 근로감독관은 센터와 긴밀히 연계하여 신속히 권리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제 9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2009년 4.5%, 2011년 4.4%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소년범죄 자체가 감소된 것이 아니라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으로, 실제로 소년인구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산범을 포함한 생계형 범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은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였으며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고 범죄예방교실과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명예경찰 소년단을 활성화하였다. 검찰은 우범소년 결연사업, 학교담당검사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등의 정책을 활용하고 있으며 법무부 또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에 대한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법교육과 보호자특별교육을 통하여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다.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기관으로는 소년원, 소년교도소, 보호관찰소 등이 있으며 각 기관에는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 제 09 부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

제1장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제2장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제1장

# 청소년 비행 및 범죄의 현황

## 1. 청소년 비행의 동향

지난 5년간 전체범죄인원을 수치적으로 본다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를 전체범죄자 대비 소년범죄자의 구성비율로 본다면 2007년에 4.4%를 기록한 후 2008년에는 5.5%까지 증가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여 2011년에는 4.4%를 나타냈다. 그러나 소년범 구성비율이 2009년부터 감소한 것은 소년법 개정으로 소년범의 범위에서 19세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 표 9-1-1 〉 전체범죄인원 중 소년범죄인원의 구성비율

(단위 : 명, %)

| 구 분 / 연 도 | 전체범죄자 | 소년범죄자 | 구성 비율 |
|---|---|---|---|
| 2007 | 1,989,862 | 88,104 | 4.4 |
| 2008 | 2,472,897 | 134,992 | 5.5 |
| 2009 | 2,519,237 | 113,022 | 4.5 |
| 2010 | 1,954,331 | 89,776 | 4.6 |
| 2011 | 1,907,641 | 83,068 | 4.4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2011년 소년범죄 유형별 분포를 보면 재산범이 37,978명(4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폭력범이 22,233명(26.8%), 교통사범이 11,523명(13.9%), 강력범이 3,289명(4.0%), 저작권법 위반사범이 318명(0.4%) 순이었다. 재산범이 2007년도에 33,659명(38.2%)이었던 것에 반해, 2011년에 37,978명(45.7%)로 재산범의 비율이 증가하였고, 특히 재산범 중 절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82.6%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생계형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표 9-1-2 〉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 88,104 | 134,992 | 113,022 | 89,776 | 83,068 |
| 강력범 | 소 계 | 1,928 | 3,016 | 3,182 | 3,106 | 3,289 |
| | 흉악범 | 1,094 | 1,427 | 1,608 | 999 | 1,268 |
| | 성폭력 | 834 | 1,589 | 1,574 | 2,107 | 2,021 |
| 폭력범 | 소 계 | 23,275 | 34,067 | 29,488 | 23,276 | 22,233 |
| | 공 갈 | 562 | 1,046 | 1,495 | 1,422 | 1,509 |
| | 폭행·상해 등 | 22,713 | 33,021 | 27,993 | 21,854 | 20,724 |
| 재산범 | 소 계 | 33,659 | 39,688 | 45,774 | 40,478 | 37,978 |
| | 절 도 | 28,839 | 33,073 | 38,494 | 33,534 | 31,380 |
| | 횡령 등 | 1,167 | 1,855 | 1,664 | 1,483 | 1,528 |
| | 장 물 | 271 | 571 | 820 | 722 | 454 |
| | 사 기 | 3,382 | 4,189 | 4,796 | 4,739 | 4,616 |
| 교통사범 | | 21,893 | 27,666 | 18,138 | 13,842 | 11,523 |
| 저작권법 위반 | | 2,338 | 20,272 | 7,720 | 275 | 318 |
| 기 타 | | 5,011 | 10,283 | 8,720 | 8,799 | 7,727 |

주 :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등 : 폭행·상해의죄+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기타
3) 횡령 등 : 횡령+배임+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5) 2006년도 통계에는 특별법 위반 현황 중 저작권법 위반 관련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2011년 전체 소년범의 연령을 보면 16세 소년범이 26.3%에 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이어 17세 24.0%, 18세 22.5%, 15세 20.6%, 14세 6.2%, 14세 미만 0.4%의 순이었다. 저연령 소년범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나, 16세~18세 소년범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표 9-1-3 〉 소년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계 | 14세 미만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
| 2007 | 88,104 (100) | 578 (0.7) | 10,884 (12.4) | 18,081 (20.5) | 17,306 (19.6) | 14,539 (16.5) | 13,603 (15.4) | 13,113 (14.9) |
| 2008 | 134,992 (100) | 3,800 (2.8) | 16,638 (12.3) | 26,385 (19.5) | 26,932 (20.0) | 21,784 (16.1) | 20,808 (15.4) | 18,645 (13.9) |
| 2009 | 113,022 (100) | 1,989 (1.8) | 15,431 (13.7) | 24,657 (21.8) | 26,153 (23.1) | 23,307 (20.6) | 21,485 (19.0) | – |
| 2010 | 89,776 (100) | 445 (0.4) | 8,870 (9.9) | 19,280 (21.5) | 21,611 (24.1) | 19,637 (21.9) | 19,933 (22.2) | – |
| 2011 | 83,068 (100) | 360 (0.4) | 5,189 (6.2) | 17,084 (20.6) | 21,815 (26.3) | 19,936 (24.0) | 18,684 (22.5) | –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최근 5년간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였다. 2011년도 전과가 없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59.5%인데 반해, 전과가 있는 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0.5%로 전년도에 비하여 2.2% 상승하였다. 특히 4범 이상 소년범의 비율이 2007년 6.9%에서 2011년 12.0%로 계속 증가하였는데, 이는 소년범죄가 점차 상습화되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 표 9-1-4 〉 소년범죄의 전과별 현황

(단위 : 명, (%))

| 구분 | 계 | 전과없음 | 1범 | 2범 | 3범 | 4범 | 5범 | 6범 | 7범 | 8범 | 9범 이상 |
|---|---|---|---|---|---|---|---|---|---|---|---|
| 2007 | 81,090 (100) | 55,543 (68.5) | 11,540 (14.2) | 5,332 (6.6) | 3,090 (3.8) | 1,969 (2.4) | 1,225 (1.5) | 764 (0.9) | 543 (0.7) | 324 (0.4) | 760 (0.9) |
| 2008 | 114,699 (100) | 79,285 (69.1) | 15,476 (13.5) | 7,553 (6.6) | 4,299 (3.7) | 2,682 (2.3) | 1,778 (1.6) | 1,131 (1.0) | 753 (0.7) | 567 (0.5) | 1,175 (1.0) |
| 2009 | 102,573 (100) | 65,990 (64.3) | 15,103 (14.7) | 7,637 (7.4) | 4,799 (4.7) | 2,884 (2.8) | 1,905 (1.9) | 1,288 (1.3) | 883 (0.9) | 579 (0.6) | 1,505 (1.5) |
| 2010 | 82,368 (100) | 50,830 (61.7) | 12,091 (14.7) | 6,546 (8.0) | 4,070 (4.9) | 2,749 (3.3) | 1,784 (2.2) | 1,147 (1.4) | 865 (1.1) | 627 (0.8) | 1,659 (2.0) |
| 2011 | 75,658 (100) | 45,047 (59.5) | 11,391 (15.1) | 6,254 (8.3) | 3,900 (5.1) | 2,623 (3.5) | 1,773 (2.3) | 1,212 (1.6) | 861 (1.1) | 632 (0.8) | 1,965 (2.6) |

주 : 1) 2008년 6월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2) 전체 합계에서 미상은 제외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2012년도 소년범죄의 남녀별 비율을 보면 남자가 82.8%, 여자가 17.2%로 남자의 비율이 4배 이상 많다. 그러나 2007년 남자소년의 범죄율이 84.2%를 기록한 이후 2008년 80.4%, 2009년 82.7%, 2010년 80.8%, 2011년 82.8%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여자소년의 범죄비율은 2007년도 15.8%에서 2008년 19.6%로 급증하였고, 2009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17.3%가 된 후 2010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19.2%로, 다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7.2%를 차지하였다.

〈 표 9-1-5 〉 소년범죄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

| 성별 / 연도 | 계 | 남 자 | | 여 자 | |
|---|---|---|---|---|---|
| | 인 원 | 인 원 | 비율 | 인 원 | 비율 |
| 2007 | 88,104 | 74,174 | 84.2 | 13,930 | 15.8 |
| 2008 | 134,992 | 108,482 | 80.4 | 26,510 | 19.6 |
| 2009 | 113,022 | 93,509 | 82.7 | 19,513 | 17.3 |
| 2010 | 89,776 | 72,461 | 80.8 | 17,315 | 19.2 |
| 2011 | 83,068 | 68,742 | 82.8 | 14,326 | 17.2 |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2. 청소년 마약사범류 동향

전체 마약류사범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감소하다가 2009년 갑자기 증가하였고 2010년 이후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 청소년마약류사범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증가하다가 2010년 감소 후, 2011년 다시 소폭 증가하였다. 2011년에는 16~17세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퇴치 홍보 및 계몽활동의 전개가 필요하다.

〈 표 9-1-6 〉 청소년 마약류사범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연 도 | 전체 마약류사범 | 청소년 마약류사범 | | | |
|---|---|---|---|---|---|
| | | 15세 이하 | 16~17세 | 18~19세 | 합 계 |
| 2007 | 10,483 | 1 (5.9) | 1 (5.9) | 15 (88.2) | 17 (100) |
| 2008 | 9,705 | 6 (31.6) | 0 (0) | 13 (68.4) | 19 (100) |
| 2009 | 11,875 | 0 (0.0) | 15 (18.3) | 67 (71.7) | 82 (100) |
| 2010 | 9,732 | 0 (0.0) | 6 (17.1) | 29 (82.9) | 35 (100) |
| 2011 | 9,174 | 1 (2.4) | 16 (39.0) | 24 (58.6) | 41 (100) |

자료 : 대검찰청 마약과 내부통계자료(2012).

2011년도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을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비중이 82.9%를 차지하는 등 다른 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07년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치인 바, 청소년마약범죄 중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퇴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표 9-1-7 〉 청소년마약범죄의 마약류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연 도 | 전체 | 청소년 마약류 | | | |
|---|---|---|---|---|---|
| |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 | 합 계 |
| 2007 | 10,649 | – | 13 (68.4) | 6 (31.6) | 19 (100) |
| 2008 | 9,898 | – | 16 (69.6) | 7 (30.4) | 23 (100) |
| 2009 | 11,875 | 2 (2.4) | 55 (67.1) | 25 (30.5) | 82 (100) |
| 2010 | 9,732 | – | 16 (45.7) | 19 (53.3) | 35 (100) |
| 2011 | 9,174 | – | 34 (82.9) | 7 (17.1) | 41 (100) |

자료 : 대검찰청(2011). 마약류 범죄백서.

## 3. 학생범죄의 동향

전체 소년범죄 대비 학생범죄 구성 비율은 2007년 67.8%, 2008년 65.7%, 2009년 69.1%, 2010년 69.3%, 2011년 69.4%로 2008년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9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표 9-1-8 〉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전체범죄(A) | 소 년 범 죄 | | 학 생 범 죄 | |
|---|---|---|---|---|---|
| | | 인 원(B) | 구성비(B/A) | 인 원(C) | 구성비(C/B) |
| 2007 | 1,989,862 | 88,104 | 4.4 | 59,701 | 67.8 |
| 2008 | 2,472,897 | 134,992 | 5.5 | 88,701 | 65.7 |
| 2009 | 2,519,237 | 113,022 | 4.5 | 78,077 | 69.1 |
| 2010 | 1,954,331 | 89,776 | 4.6 | 62,173 | 69.3 |
| 2011 | 1,907,641 | 83,068 | 4.4 | 57,672 | 69.4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2009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은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2011년도 학생범죄자의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16세가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15세(24.4%), 17세(21.8%), 18세(19.2%), 14세(7.8%), 10~13세(0.2%) 등으로 나타난다. 학생범죄에 있어서도 16~18세의 범죄율이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16~18세 연령대의 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 표 9-1-9 〉 학생범죄의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 구 분 | 계 | 7~9세 | 10~13세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
| 2007 | 59,701 (100) | 13 (0.1) | 324 (0.5) | 9,501 (15.9) | 14,535 (24.3) | 12,536 (21.0) | 9,971 (16.7) | 7,747 (13.0) | 5,074 (8.5) |
| 2008 | 88,701 (100) | 53 (0.1) | 2,029 (2.3) | 13,731 (15.5) | 20,428 (23.0) | 18,456 (20.8) | 14,477 (16.3) | 11,947 (13.5) | 7,580 (8.5) |
| 2009 | 78,077 (100) | 44 (0.1) | 1,180 (1.5) | 13,022 (16.7) | 19,061 (24.4) | 17,588 (22.5) | 15,116 (19.4) | 12,066 (15.4) | – |
| 2010 | 62,173 (100) | 11 (0.0) | 191 (0.3) | 7,630 (12.3) | 15,713 (25.3) | 14,620 (23.5) | 12,548 (20.2) | 11,460 (18.4) | – |
| 2011 | 57,672 (100) | 21 (0.0) | 102 (0.2) | 4,504 (7.8) | 14,077 (24.4) | 15,326 (26.6) | 12,597 (21.8) | 11,045 (19.2) | –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2009년도 통계부터 학생범죄의 대상은 7세 이상 18세 이하로 변경됨.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제2장
# 청소년 비행의 예방과 처리

## 1. 청소년 비행의 예방

### 가. 경찰의 예방활동

#### (1)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활동

경찰은 2005년 초,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

특히 2005년부터는 피해학생들이 보복의 두려움에 신고를 기피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음성화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라 학교폭력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 주관, 교육과학기술부·법무부 등 관련 6개 관련부처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고기간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진신고 학생 등 경미초범 가해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선도하는 조건으로 불입건'한 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피해신고 학생은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여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활동의 결과 학교폭력의 중심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하는 등 학교폭력이 위축되는 성과가 나타났으며, 자진신고 학생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의 정착으로 2011년 자진신고 기간에는 3,797명이 불입건 처리되고, 921명이 입건되고 181명이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 표 9-2-1 〉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기간 | 합계 | 자진신고 | | | | 단속 및 피해신고 | | |
|---|---|---|---|---|---|---|---|---|---|
| | | | 계 | 조치 | | | 계 | 조치 | |
| | | | | 불입건 | 입건 | 소년부 송치 등 | | 입건 | 소년부 송치 등 |
| 2007 | 3.12~6.11 | 14,266 | 7,059 | 6,471 | 448 | 140 | 7,207 | 6,387 | 820 |
| 2008 | 6.2~8.31 | 13,614 | 7,515 | 6,901 | 498 | 116 | 6,099 | 5,041 | 1,058 |
| 2009 | 3.16~6.15 | 11,579 | 5,682 | 4,348 | 931 | 403 | 5,897 | 5,074 | 823 |
| 2010 | 3.15~5.14 | 6,472 | 3,504 | 3,076 | 335 | 93 | 2,968 | 2,445 | 523 |
| | 9.1~10.31 | 5,532 | 3,108 | 2,794 | 243 | 71 | 2,424 | 2,107 | 317 |
| 2011 | 3.14~5.15 | 5,466 | 3,205 | 2,933 | 206 | 66 | 2,261 | 1,882 | 379 |
| | 9.1~10.31 | 2,479 | 2,479 | 864 | 715 | 115 | 1,615 | 1,318 | 297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2) 유해환경 정화활동

정보통신산업의 발달로 인터넷 및 미디어에 폭력·음란성 매체물이 범람하고, 신종 풍속업소 등 유해업소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청소년 탈선과 이를 조장하는 유해환경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음란·폭력성 각종 매체물과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거나 유흥주점·비디오방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출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에는「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총 9,575명을 적발하여 6명을 구속하고 9,56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가운데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등 유해약물 단속 위반자는 6,33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고용시키거나 출입하게 한 자는 1,690명,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를 통해 판매·대여하거나 포장·표시한 자는 1,039명, 성적퇴폐나 풍기문란 등 유해행위를 한 자는 509명에 이르렀다.

〈 표 9-2-2 〉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단 속 내 용 | | | | 조 치 | |
|---|---|---|---|---|---|---|---|
| | | 유해 업소 | 유해 매체물 | 유해 약물 | 유해 행위 | 구속 | 불구속 |
| 2007 | 9,651 | 1,075 | 216 | 7,795 | 565 | 2 | 9,649 |
| 2008 | 8,645 | 1,305 | 220 | 6,677 | 443 | 9 | 8,638 |
| 2009 | 8,567 | 1,544 | 291 | 6,230 | 502 | 4 | 8,563 |
| 2010 | 8,154 | 1,351 | 442 | 5,882 | 479 | 10 | 8,144 |
| 2011 | 9,575 | 1,690 | 1,039 | 6,337 | 509 | 6 | 9,569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3) 범죄예방교실 및 사랑의 교실 등 운영

경찰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전국 12,122개교 총 4,253,651명을 대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9-2-3 〉 2011년 범죄예방교실 운영현황

(단위 : 개교, 명)

| 실시학교(개교) | | | 교육 실시인원(명) | | |
|---|---|---|---|---|---|
| 계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소계 | 초등학교 | 중·고등학교 |
| 12,122 | 5,609 | 6,513 | 4,253,651 | 1,765,366 | 2,488,285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소년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단체와 협조하여 '사랑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성교육을 통하여 소년범죄 예방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다. 2011년도에는 전국 38개 청소년전문교육단체에서 총 9,85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 표 9-2-4 〉 사랑의 교실 운영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참가인원 | 5,883 | 7,630 | 6,837 | 17,877 | 9,859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4)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명예경찰소년단은 경찰, 학교, 선도단체의 유기적인 협조 하에 스스로가 각종범죄 및 제반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봉사활동과 교통질서 등 기초질서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초등학교 4·5·6학년 중에서 선발하는 제도이다. 1999년 10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명예경찰 포돌이·포순이 소년단' 발대식을 개최하였으며, 1999년 12월 3일 명예경찰소년단 전국 확대 및 육성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전국학교로 선발대상이 확대되어 2011년 현재 전국 1,510개교 19,250명의 명예경찰 소년단이 활동하고 있다.

〈 표 9-2-5 〉 명예경찰소년단 현황

(단위 : 개교, 명)

| 연도 \ 구분 | 실시학교(개교) | 명예경찰소년단(명) |
|---|---|---|
| 2007 | 4,126 | 27,700 |
| 2008 | 3,295 | 25,120 |
| 2009 | 2,153 | 24,323 |
| 2010 | 1,719 | 20,053 |
| 2011 | 1,510 | 19,250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명예경찰소년단은 청소년의 주인의식 함양을 위해 따돌림을 당하거나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이나 저학년 어린이 등 학교생활이 어려운 학생들과 연대감 쌓기뿐만 아니라 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교통캠페인, 경찰서 견학 및 112 순찰, 도보순찰 체험 등을 하고 있다. 또한 명예경찰이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도교사 및 경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방지활동도 하고 있다.

〈 표 9-2-6 〉 명예경찰소년단 활동현황

(단위 : 회,개교,명)

| 구분 / 연도 | 경찰서 견학 및 체험 | | | 교통캠페인 | | | 봉사활동 | | | 학교폭력방지활동 | | | | | |
|---|---|---|---|---|---|---|---|---|---|---|---|---|---|---|---|
| | | | | | | | | | | 신고 | | 취약지역 순찰 | | 친구 맺기 | |
| | 회 | 개교 | 명 | 회 | 개교 | 명 | 회 | 개교 | 명 | 회 | 명 | 회 | 지도 교사 | 명예 경찰 | 대 상 자 |
| 2007 | 738 | 3,118 | 31,024 | 5,493 | 4,422 | 81,590 | 1,401 | 1,655 | 13,707 | 129 | 306 | 4,976 | 3,919 | 996 | 1,087 |
| 2008 | 485 | 1,889 | 19,972 | 4,514 | 3,849 | 39,609 | 1,396 | 1,836 | 10,014 | 185 | 493 | 4,769 | 3,197 | 520 | 585 |
| 2009 | 445 | 1,763 | 17,057 | 3,543 | 2,850 | 37,303 | 867 | 917 | 9,443 | 102 | 208 | 3,830 | 2,672 | 476 | 655 |
| 2010 | 542 | 1,823 | 18,431 | 4,192 | 3,152 | 30,758 | 1,169 | 1,328 | 10,736 | 189 | 273 | 5,034 | 3,179 | 554 | 541 |
| 2011 | 477 | 1,382 | 16,517 | 4,295 | 3,390 | 28,465 | 1,096 | 1,136 | 10,398 | 51 | 75 | 4,124 | 2,169 | 454 | 426 |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나. 검찰의 예방활동

### (1) 우범소년 결연사업

우범소년결연사업은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 11월 1일부터 서울·부산·광주·제주지검 및 산하 지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1995년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하에 '학교폭력근절대책 추진회의'에서 검찰의 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동 사업은 범죄예방위원이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고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선도하여 정상적인 학업과 생업에 복귀시킴으로써 소년범죄나 비행을 사전에 방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결연대상자는 학교에서 퇴학·정학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와 폭력써클에 가입하거나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 중심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연대상자는 선도결연회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결연활동 중 소년이 소재불명이 되거나 선도에 불응하여 결연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도 우범소년 결연사업 가운데 선도결연 회의 및 간담회는 1,721회 개최되었고, 범죄예방위원 교육은 1,857회 이루어졌다. 우범소년 중 결연 대상을 3,546명 선정하여 실제로 3,545명이 결연을 맺었다.

〈 표 9-2-7 〉 우범소년 결연사업 추진실적

(단위 : 회, 명)

| 구분 / 연도 | 선도결연회의 및 간담회 | 결연대상 선정인원 | 결연인원 | 지역추진대회 | 범죄예방위원교육 |
|---|---|---|---|---|---|
| 2007 | 1,877 | 6,066 | 5,427 | 384 | 1,259 |
| 2008 | 1,825 | 4,933 | 4,535 | 387 | 563 |
| 2009 | 2,023 | 6,970 | 6,389 | 512 | 997 |
| 2010 | 1,730 | 5,336 | 4,511 | 460 | 1,491 |
| 2011 | 1,721 | 3,546 | 3,545 | 386 | 1,857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 (2) 학교담당검사제

학교담당검사제는 1995년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주변 폭력근절지시에 따라, 같은 해 12월 6일 국무총리 주관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검찰의 3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중 학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학원폭력방지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근거하여, 1996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학교담당검사제는 일정 지역 내의 수 개의 중·고교에 대하여 전담검사를 지정, 유관기관이나 민간 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과의 유기적인 지원·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선도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담당검사는 선도보호위원 및 교사선도위원, 학부모위원 등 구성원들과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원폭력 정보수집 및 예방선도 활동방안을 모색하고, 탈선 초기의 학생 상대 개별 면담과 학부모 접촉을 통한 비행의 사전방지, 청소년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합동순찰, 담당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담당검사의 선도강연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학교담당검사의 활동실적을 보면 합동순찰 6,125회, 간담회 1,667회, 우범학생 면담 8,971명, 선도강연 879회 등이다.

〈 표 9-2-8 〉 학교담당검사제 활동실적

(단위 : 회, 명)

| 구분 / 연도 | 합동순찰 | 간담회 | 우범학생 면담인원 | 선도강연 |
|---|---|---|---|---|
| 2007 | 4,490 | 1,618 | 11,389 | 728 |
| 2008 | 4,953 | 1,924 | 9,052 | 1,126 |
| 2009 | 5,651 | 2,063 | 10,576 | 1,466 |
| 2010 | 6,691 | 2,631 | 11,997 | 1,176 |
| 2011 | 6,125 | 1,667 | 8,971 | 879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 (3)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라 함은 통상의 기소유예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계속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도입의 배경은 소년은 성년과 달리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개선의 가능성도 많으므로 죄질이 다소 중하다 하더라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소년에 대하여는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용하기보다는 사회에서 덕망과 학식을 갖춘 범죄예방위원에게 맡겨 선도·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초점이 있다.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소년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여 1981년 1월 20일 법무부훈령 제88호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에 확대 실시된 뒤 수차례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는 1996년 12월 27일 개정된 법무부훈령 제373호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소년선도보호 방법은 접촉선도, 원호선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접촉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있는 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선도방법을 말한다. '원호선도'라 함은 귀주처가 없거나 있더라도 귀주시키는 것이 부적당한 유예소년에 대하여 선도보호위원의 주거나 복지시설에서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접촉선도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1981년부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1981년 4,070명에 대하여 선도유예를 실시한 것을 시작으로, 2011년에는 1,363명에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다.

〈 표 9-2-9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결정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 소년범죄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
| 2007 | 88,104 | 6,610 |
| 2008 | 134,992 | 5,886 |
| 2009 | 113,022 | 7,104 |
| 2010 | 89,776 | 2,967 |
| 2011 | 89,068 | 1,363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 표 9-2-10 〉 2011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죄명별 현황

(단위 : 명)

| 죄명 / 계 | 폭력행위 등 | 절도 | 강도 | 강간 | 교통사범 | 재산범죄 | 기타 |
|---|---|---|---|---|---|---|---|
| 1,363 | 364 | 603 | 7 | 7 | 196 | 66 | 120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 표 9-2-11 〉 2011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 연령 / 계 | 14세 | 15세 | 16세 | 17세 | 18세 | 19세 |
|---|---|---|---|---|---|---|
| 1,363 | 176 | 297 | 353 | 267 | 185 | 85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기존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및 보호관찰소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이외에도 다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소년범에게 적용함으로써 선도 및 재범방지의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그 종류를 보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전문가를 통해 일정기간 심리검사, 정신교육, 분노조절 훈련교육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재범방지, 인성개발 등의 측면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소년분류심사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청소년인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년과 1대1로 결연하여 상담·스포츠·문화활동·봉사활동 등의 일정한 프로그램을 거치면서 대상 청소년을 선도하는 멘토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전문적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으로 소년범을 기소유예 처분하여 청소년 비행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사회봉사활동 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이 있다.

2007년 12월 21일 소년법의 일부 개정으로 검사결정전조사제도(소년법 제49조의2)를 도입하여 검사 처분 전에 비행원인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소년에 대한 교육, 보호자 교육 등을 통해 비행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소년법에 명시하였으며, 이는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 중이다. 또한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또는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소년법 제49조의3).

### (4)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1995년 1월 5일 갱생보호법을 폐지하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동법 제15조 제3호(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선도를 조건으로 공소제기를 유예하고 위탁한 선도의 실시)에 근거하여 1995년 4월 15일 법무부훈령 제332호 보호관찰소선도위탁규정이 제정·시행된 이래, 현재는 개정된 법무부 훈령 제620호(2008년 6월 3일)에 따라 위탁이 시행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제도는 선도보호위원에 의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한다. 보호관찰소장은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 선도하도록 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방법은 보호관찰관이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을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적절한 지도를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할 수 있고,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보호관찰소 위탁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은 소년범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호관찰소는 2011년도에 4,950명을 대상으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실시하였고, 그 중 재범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인원은 313명이다.

〈 표 9-2-12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연 도 | 기소유예자 전체 | 선도위탁 상황 | | | |
|---|---|---|---|---|---|
| | | 선도대상자 | 계속(연장포함) | 해제 | 취소 |
| 2007 | 262,823 | 5,258 | 12,134 | 4,218 | 66 |
| 2008 | 361,907 | 3,421 | 3,967 | 2,614 | 116 |
| 2009 | 467,132 | 3,807 | 3,669 | 2,382 | 129 |
| 2010 | 363,106 | 4,411 | 34,038 | 1,915 | 163 |
| 2011 | 353,564 | 4,950 | 6,716 | 2,833 | 313 |

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 다. 법무부의 예방활동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

### (1) 개요

법무부는 2007년 7월 23일 부산, 광주, 대전, 청주, 창원, 안산 등 6개 지역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직원 56명을 배치함으로써 그동안 소년분류심사원과 대행소년원에서 담당하던 부적응학생(일반학교에서 의뢰)과 초기단계의 비행청소년(검찰 및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의뢰)에 대한 대안교육과 비수용 범죄소년에 대한 비행진단 및 교육을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호자교육, 일반학생 및 국민에 대한 법교육,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문제 전문가에 대한 전문교육,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계나 지역사회에서 강조한 비행예방의 중요성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비행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청소년비행예방에 국가와 지역사회 전체가 전방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용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센터'라는 명칭을 복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행유형별 치료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표 9-2-13 〉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임무

| 구 분 | 기 관 명 | 설립일 | 교 육 과 정 |
|---|---|---|---|
| 청소년비행 예방센터 | 부산·창원·청주·광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2007.7.23 | – 상담조사<br>– 결정전 조사<br>– 대안교육<br>– 보호자교육<br>– 청소년 심리상담 |
|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2007.7.23 | – 법교육 및 법문화 직무연수<br>–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
|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2007.7.23 | – 대안교육, 보호자 교육<br>– 청소년심리상담<br>– 연구 · 개발 및 직무연수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2012).

〈 표 9-2-14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운영실적 현황

(단위 : 명)

| 연도 \ 내용 | | 대안교육 | 심리상담 | 상담조사 | 결정전 조사 | 보호자 교육 |
|---|---|---|---|---|---|---|
| 2008 | 계 | 10,253 | 3,970 | 2,205 | 99 | 1,743 |
| | 부산센터 | 1,937 | 870 | 409 | 1 | 139 |
| | 광주센터 | 496 | 220 | 835 | 48 | 663 |
| | 청주센터 | 1,260 | 236 | 482 | – | 425 |
| | 안산센터 | 2,278 | 2,145 | – | – | 350 |
| | 창원센터 | 4,282 | 499 | 479 | 50 | 166 |
| 2009 | 계 | 43,263 | 4,128 | 2,047 | 118 | 1,538 |
| | 부산센터 | 7,031 | 563 | 276 | 25 | 140 |
| | 광주센터 | 1,644 | 869 | 679 | 53 | 635 |
| | 청주센터 | 3,626 | 310 | 425 | 10 | 278 |
| | 안산센터 | 16,153 | 1,970 | – | – | – |
| | 창원센터 | 14,809 | 416 | 667 | 30 | 485 |
| | 대전센터 | – | – | – | – | – |
| 2010 | 계 | 61,865 | 4,366 | 1,688 | 230 | 1,516 |
| | 부산센터 | 19,015 | 603 | 254 | 10 | 170 |
| | 광주센터 | 12,099 | 796 | 603 | 57 | 486 |
| | 청주센터 | 7,607 | 504 | 406 | 1 | 342 |

| 연도 \ 내용 | | 대안교육 | 심리상담 | 상담조사 | 결정전 조사 | 보호자 교육 |
|---|---|---|---|---|---|---|
| 2010 | 안산센터 | 15,120 | 1,918 | – | – | 277 |
| | 창원센터 | 8,024 | 545 | 425 | 162 | 241 |
| | 대전센터 | – | – | – | – | – |
| 2011 | 계 | 63,312 | 5,762 | 1,646 | 24 | 1,683 |
| | 부산센터 | 26,303 | 724 | 431 | 1 | 465 |
| | 광주센터 | 9,848 | 602 | 419 | – | 348 |
| | 청주센터 | 10,670 | 526 | 343 | 8 | 301 |
| | 안산센터 | 12,407 | 3,399 | – | – | 296 |
| | 창원센터 | 4,084 | 511 | 453 | 15 | 273 |
| | 대전센터 | – | – | – | – | – |

주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솔로몬로파크로 별도 운영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2)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 대안교육 실시

2002년부터 지역사회 일반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은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한 "중·고등학생 특별교육 이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일반학교 부적응학생에 대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신설된 6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와 소년분류심사원 및 7개의 대행소년원에서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안교육으로 진로·성격 등 심리검사, 심성훈련, 체험교육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안교육 수료증을 수여하고 교육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하여 학생 생활지도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학부모에게 적성검사 결과 등 자녀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학교와 협조하여 교육수료 학생에 대한 추수지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은 비행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3) 기소유예 대상자 및 대안교육명령 대상자 등의 대안교육 실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은 해당 지방검찰청과 협의를 통해 기소유예대상자, 선도유예자에 대한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비행성의 조기개선과 함께 재비행 방지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는 소년분류심사원의 전문 진단기법과 교육 프로그램을 비행의 초기단계에 있는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청소년 선도 강화 및 재비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비합숙 체험교육 방식으로 심리 검사, 심성훈련 등 1~5일 과정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8년부터 소년원법이 개정되면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42조의2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대안교육명령을 받은 소년에 대해 1개월의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표 9-2-15 〉 대안교육 실시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학교 | 검찰 | 법원 | 기타 |
|---|---|---|---|---|---|
| 2007 | 3,974 | 1,507 | 703 | 0 | 1,764 |
| 2008 | 11,095 | 8,798 | 1,516 | 211 | 570 |
| 2009 | 44,959 | 5,629 | 1,425 | 294 | 37,611 |
| 2010 | 63,513 | 11,396 | 1,124 | 342 | 50,651 |
| 2011 | 67,471 | 21,280 | 1,191 | 911 | 44,089 |

주 : 2008년 통계상 학교대안교육인원에는 법교육 인원이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법교육 인원은 기타 인원에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4) 청소년적성검사실 운영

1996년 2월부터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분류심사업무를 대행하는 4개 소년원에서 청소년적성검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적성검사실에서는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능·적성·성격 등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소질과 특성에 맞는 진로지도 지침을 제공,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문제 청소년에 대해서도 비행성향을 규명하여 구체적인 개선지침을 제시하는 등 청소년문제 전문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표 9-2-16 〉 청소년심리검사실 운영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인 원 | 4,513 | 5,481 | 5,256 | 6,438 | 7,973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1).

### (5) 법교육

법교육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법문화진흥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법무부는 2005년 3단계 5개년 법교육 추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 대상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법교육시설 및 법문화 체험관 조성, 법교육 교사 양성,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 28일「법교육 지원법」이 제정되어 대국민 법의식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나는야 법짱' 등 맞춤형

법교육 학습교재 및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법교육 출장강연제, 학생자치법정, 교사 직무연수와 법교육 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학교 법교육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 (6) 보호자특별교육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으로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이 신설됨에 따라, 법원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호자에게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을 위하여 법무부는 청소년 이해, 자녀지도방법, 자녀-부모관계 회복 등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12회기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다.

〈 표 9-2-17 〉 보호자교육 실시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보호자특별교육명령 | 일반위탁소년 보호자 |
|---|---|---|---|
| 2008 | 3,494 | 56 | 3,438 |
| 2009 | 5,465 | 455 | 5,010 |
| 2010 | 6,626 | 293 | 6,333 |
| 2011 | 7,498 | 483 | 7,015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2. 비행 청소년의 사법 처리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의한 형사처벌 이외에 비행소년의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처분 등을 인정하고 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선도,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만 형사처벌을 하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범법소년에 대하여는 선도, 보호측면에서 교육적인 처우를 실시하고 있다. 비행소년의 처리기관은 경찰, 검찰, 법원 등이 있다.

### 가. 경찰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가 발견되면 경찰에서는 범죄내용과 신상관계, 환경 등을 조사하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보내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은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소년범조사시 전문가참여제'란 소년범의 조사과정에서 범죄심리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로, 가정·학교 환경 등 43개 비행촉발요인과 공격성·반사회성 등 344개 인성평가 항목을 심층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가능성을 판단하여 전문적인 선도프로그램과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2003년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 이후, 2004년 5개 경찰서, 2005년 45개 경찰서, 2006년부터 2008년에는 52개 경찰서, 2009년에는 60개 경찰서, 2010년 70개, 2011년 10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 중이다.

2007년부터는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시, 가해학생 조사에 전문가참여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저위험군 학생은 사랑의 교실과 연계하여 경찰단계에서 선도교육을 받도록 하고, 고위험군 학생은 재범방지를 위해 법원·검찰이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을 연결해 주고 있다. 전문가참여비율은 2007년 4.9%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전체소년범의 8.8%에 해당하는 7,639명이 전문가참여조사를 받았다.

〈 표 9-2-18 〉 소년범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연도별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명, %)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운영관서 | 52 | 52 | 60 | 70 | 100 |
| 전체소년범수 | 115,661 | 123,044 | 118,058 | 94,862 | 86,621 |
| 참여소년범수 | 5,675 | 6,266 | 5,507 | 7,172 | 7,639 |
| 참여비율 | 4.9 | 5.1 | 4.7 | 7.6 | 8.8 |

주 : 경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94,862명)와 검찰청의 전체소년범 수치(89,776명)가 다른 것은 검찰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수치가 제외되었기 때문임.

자료 : 경찰청(2012). 경찰백서.

## 나. 검찰

2011년도 검찰이 소년범죄를 처리한 내역을 보면 전체 소년범죄자 83,060명 중 기소유예 44.0%, 소년보호 송치 36.8%, 구공판 3.7%, 구약식 2.0% 등이다. 성인범죄와 비교했을 때 소년범죄의 경우 기소율이 매우 낮고,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소년범죄에 대하여 일반범죄와 달리 선도 위주로 처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소년부 송치는 2008년도 21.0%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는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결과이다. 검찰단계에서 소년부송치율과 불기소처분율이 높은 것은 검찰단계에서도 소년범죄에 대하여 비형사사건화하는 경향이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 표 9-2-19 〉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

| 연도 | 계 | 기 소 | | | 불 기 소 | | | | | 소년보호송치 | 가정보호송치 | 성매매보호송치 | 참고인중지 | 기소중지 |
|---|---|---|---|---|---|---|---|---|---|---|---|---|---|---|
| | | 소 계 | 구공판 | 구약식 | 소 계 | 혐의없음 | 기소유예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 | | | | | |
| 2007 | 88,104 (100) | 10,367 (11.8) | 2,815 (3.2) | 7,552 (8.6) | 54,424 (61.8) | 3,029 (3.4) | 44,689 (50.7) | 394 (0.4) | 6,312 (7.2) | 21,368 (24.3) | 22 (0.0) | 21 (0.0) | 93 (0.1) | 1,809 (2.1) |
| 2008 | 134,992 (100) | 15,150 (11.2) | 4,823 (3.6) | 10,327 (7.6) | 88,932 (65.9) | 4,944 (3.7) | 62,977 (46.7) | 2,073 (1.5) | 18,938 (14.0) | 28,360 (21.0) | 30 (0.0) | 46 (0.0) | 104 (0.1) | 2,370 (1.8) |
| 2009 | 133,022 (100) | 7,795 (6.9) | 3,929 (3.5) | 3,866 (3.4) | 71,100 (62.9) | 4,684 (4.1) | 56,715 (50.2) | 1,184 (1.0) | 8,517 (7.5) | 32,453 (28.7) | 37 (0.0) | 16 (0.0) | 86 (0.1) | 1,535 (1.4) |
| 2010 | 89,776 (100) | 5,443 (6.1) | 2,913 (3.2) | 2,530 (2.8) | 52,685 (58.7 | 4,801 (5.3) | 42,021 (46.8) | 339 (0.4) | 5,524 (6.2) | 30,143 (33.6) | 9 (0.0) | 11 (0.0) | 93 (0.1) | 1,392 (1.6) |
| 2011 | 83,060 (100) | 4,691 (5.6) | 3,025 (3.7) | 1,666 (2.0) | 46,224 (55.7) | 4,151 (5.0) | 36,582 (44.0) | 272 (0.3) | 5,219 (6.3) | 30,587 (36.8) | 10 (0.0) | 7 (0.0) | 86 (0.1) | 1,455 (1.8) |

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다. 소년분류심사원

### (1) 개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어떠한 처분이 적합한가를 분류심사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이다. 1977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이 처음 개원하였고 이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설치되었다가 2007년 7월 소년보호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류심사원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이 설치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7개 지역에서는 소년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소년원이 설치되지 않은 인천·수원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위탁소년의 수용관리와 분류심사업무를 맡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소년의 개체적 원인규명, 소년비행의 조기발견과 치료, 소년비행의 실증적 요인 규명, 청소년비행 예방 및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위탁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그 결과를 법원소년부에 보내 조사·심리시에 참고하도록 하며, 소년원·보호관찰소에 처우지침을 제공하고 보호자에게 사후지도 방법을 권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2) 위탁소년의 수용

위탁소년의 수용은 「소년법」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위탁결정서에 의한다. 새로 수용된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에게 수용사실을 통지한다. 위탁소년은 성별, 연령, 비행의 질, 공범 및 질병 유무 등을 고려하여 분류·수용하고, 인권보호와 보건·위생, 비행의 감염방지에 적정을 기함과 동시에 소년들이 교육적 환경에서 안정감을 갖고 생활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년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소년부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2007년 소년분류심사원의 신수용인원은 5,275명이었으나 2008년 5,620명, 2009년 6,065명, 2010년 6,295명, 2011년 6,68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일평균수용인원도 2007년 289명에서 2008년 341명, 2009년 399명, 2010년 419명, 2011년 456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표 9-2-20 〉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신수용인원 | 5,275 | 5,620 | 6,065 | 6,295 | 6,682 |
| 1일 평균수용인원 | 289 | 341 | 399 | 419 | 456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3) 처우·교육활동

위탁소년에 대해서는 성장기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급식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차림표에 따라 급식하며 피복·침구류, 세면용품, 학용품 등 생활용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소년원마다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하여 위탁소년의 건강관리 및 질병을 치료하고, 시설내 치료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외부병원에 통원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면회는 위탁소년의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위탁소년의 교육은 언어·행동·예절·규범 등 기초적인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심리극·분노조절훈련·감수성훈련 등 다양한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체육활동·시청각교육·독서지도·레크레이션 등 심성순화 교육과 기독교·천주교·불교·원불교 등 종교별 관계 인사를 초빙하여 신앙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지도층 인사를 소년보호위원으로 위촉, 위탁소년의 신상 및 진로문제에 관한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어머니회를 운영하여 무의탁소년 등 불우소년에 대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 (4) 분류심사

분류심사란 비행소년의 요보호성 여부와 그 정도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교정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여기에서 요보호성이란 소년의 성격과 행동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치할 경우 범죄로 심화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을 말하며, 요보호성 여부의 판별이 분류심사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분류심사는 심사대상에 따라 수용분류심사와 외래분류심사, 실시방법에 따라 일반분류심사와 특수분류심사로 구분한다. 수용분류심사는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외래분류심사는 가정·학교·사회단체 등에서 의뢰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분류심사는 수용된 모든 소년을 대상으로 하되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비교적 간단한 소년에 대하여 면접조사와 신체의학적 진찰, 표준화검사, 자기기록 및 행동관찰 등을 주로 실시하며, 일반분류심사를 한 결과 문제 또는 비행요인이 중대하고 복잡한 소년에 대하여 개별검사와 정신의학적 진단, 자료조회 및 현지조사 등의 특수분류심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와 같은 조사를 바탕으로 담당 분류심사관과 심리학·교육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분류심사위원회에서 재비행 위험성 정도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처우지침, 예후(豫後) 및 판정 종류 등을 기재한 분류심사결과를 법원소년부에 송부함으로써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보호처분 집행기관인 소년원·보호관찰소 또는 위탁소년의 보호자 등에게 지도 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2011년에 수용된 소년 중 분류심사를 받은 소년은 6,007명이었으며, 이 중 일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4,634명이고, 특수분류심사를 받은 인원은 1,373명이었다.

〈 표 9-2-21 〉 소년분류심사원의 수용분류심사 실시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수용분류심사 | 계 | 4,640 (100) | 5,198 (100) | 5,627 (100) | 5,723 (100) | 6,007 (100) |
| | 일반분류심사 | 3,427 (73.9) | 3,796 (73.0) | 3,729 (66.3) | 4,380 (76.5) | 4,634 (77.1) |
| | 특수분류심사 | 1,213 (26.1) | 1,402 (27.0) | 1,898 (33.7) | 1,343 (23.5) | 1,373 (22.9)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5) 소년심판절차 개선

법무부는 청소년 비행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 구속송치 대상자 위주로 시행해 오던 분류심사제도를 불구속 송치자를 포함한 모든 소년보호사건 대상자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호소년 상담조사제'와 '분류심사관 심리참여제도'를 대법원과 최종 협의를 거쳐 200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 1 보호소년 상담조사제 도입

2003년 7월 새롭게 도입된 '보호소년 상담조사제'는 불구속 송치로 보호자 등에게 위탁되어 있는 소년을 대상으로 법원 소년부 판사 또는 가정법원 판사가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상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주간에만 3~5일 출석하여 상담과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대상소년의 성격과 행동 특징, 능력과 욕구 등 개인이 지니고 있는 자질과 환경적 특성에 대한 조사와 비행원인 규명을 위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담당 소년부 판사에게 심리자료로 송부하는 한편, 보호자에게는 소년의 훈육과 지도지침으로 제공하고 아울러 소년의 비행성을 없애기 위한 '특별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설수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모든 소년사건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처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판사의 소년사건 심리 시 심층적·과학적 판단에 기여하며, 상담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자료를 토대로 보호자에게 자녀의 지도방향 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제도는 대상소년에게 집단상담, 봉사활동, 체험교육 등을 통한 교육효과를 거둘 수 있다. 상담조사제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7개의 대행소년원(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소년원)에서 2007년 4,437명, 2008년 5,952명, 2009년 5,106명, 2010년 5,301명, 2011년 5,296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 표 9-2-22 〉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조사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법원보호처분 | 합계 | 위탁심사 | 상담조사 | 조사비율 |
|---|---|---|---|---|---|
| 2007 | 35,514 | 9,077 | 4,640 | 4,437 | 25.6 |
| 2008 | 30,222 | 11,150 | 5,198 | 5,952 | 36.9 |
| 2009 | 35,819 | 10,733 | 5,627 | 5,106 | 30.0 |
| 2010 | 32,416 | 11,024 | 5,723 | 5,301 | 34.0 |
| 2011 | 35,072 | 11,303 | 6,007 | 5,296 | 32.2 |

주 : 상담조사 인원에는 소년분류심사원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상담조사기능을 수행하는 소년원의 실적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2 분류심사관 심리참여 제도

분류심사관심리참여제도는 소년사건 심리과정에서 각 소년부판사가 분류심사결과통지서에 의문이 있거나 그 보고서만으로는 소년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소년의 성행과 비행환경 등을 정확히 알고 있는 담당 분류심사관을 법정에 참여시켜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대법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사법참여 방안'의 일환이며, 소년분류심사원의 국가 후견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소년법 이념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라.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와 가정지원을 말한다.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대전·대구·부산·광주에 지방법원 가정지원, 인천·춘천·청주·창원·의정부·수원·전주·제주에 지방법원 소년부 등 13개소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이 확보된 가정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011년 4월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이 가정법원으로 승격되면서 소년부가 설치되었고, 2012년 3월에는 대전·대구·광주 지방법원 가정지원도 가정법원으로 승격되어 독자적인 소년부 설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소년법원에서는 소년의 성격·환경·비행경위·재비행성 여부에 대한 조사관의 의견과 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의 심사의견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등을 참고하여 소년의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2011년도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6,497건으로, 검사송치가 70.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찰서장 송치가 20.2%, 법원 송치가 5.2%, 다른 법원 소년부에서 이송된 경우가 3.9%이다.

〈 표 9-2-23 〉 소년보호사건 접수인원 및 접수구분 인원

(단위 : 명, (%))

| 구 분 / 연 도 | 계 | 법원송치 | 검사송치 | 경찰서장 송치 | 타법원 소년부에서 이송 | 보호자등에 의한 통고 (법 제4조제3항) |
|---|---|---|---|---|---|---|
| 2007 | 37,910 (100) | 1,538 (4.1) | 26,682 (70.4) | 9,636 (25.4) | 49 (0.1) | 5 (0.0) |
| 2008 | 41,754 (100) | 1,745 (4.2) | 29,124 (69.8) | 10,781 (25.8) | 84 (0.2) | 20 (0.0) |
| 2009 | 48,007 (100) | 2,050 (4.3) | 33,385 (69.5) | 11,609 (24.2) | 949 (2.0) | 14 (0.0) |
| 2010 | 44,200 (100) | 2,212 (5.0) | 31,715 (71.8) | 9,213 (20.8) | 1,026 (2.3) | 34 (0.1) |
| 2011 | 46,497 (100) | 2,417 (5.2) | 32,803 (70.6) | 9,401 (20.2) | 1,818 (3.9) | 58 (0.1) |

자료 : 법원행정처(2012). 사법연감.

소년법원의 판사는 검찰로부터 송부된 사건기록과 조사관의 조사의견을 종합하여 심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심리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소년법원에서 행한 최근 5년간 보호처분의 현황을 보면, 보호처분의 비율은 2007년 75.7%에서 2011년 72.0%로 3.7% 감소하였다. 검사의 불처분결정율은 2007년 5.8%에서 2010년 6.9%까지 증가하였다가 2011년 5.3%로 감소한 반면에, 검사송치율은 2007년 0.2%에서 2011년 1.3%로 계속 증가하였다. 특히 타법원으로의 이송 비율은 2007년 1.5%에서 2011년 5.2%로 크게 증가하였다.

## 〈 표 9-2-24 〉 소년보호사건 처리상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계 | 보호처분 | | | | | | | | | | 불처분 | 심리불개시 | 검사송치 | 타법원이송 | 기타 |
|---|---|---|---|---|---|---|---|---|---|---|---|---|---|---|---|---|
| | | 소계 |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1·2호 병합 | 1·3호 병합 | 2호 단기 보호 관찰 | 3호 보호 관찰 | 4호 보호시설 등에 감호 위탁 | 5호 병원·요양소에 위탁 | 6호 처분 | 7호 소년원 송치 | | | | | |
| 2007 | 35,514 (100) | 26,874 (75.7) | 6,536 (18.4) | 10,391 (29.3) | 7,639 (21.5) | 34 (0.1) | 9 (0.0) | 478 (1.3) | 27 (0.1) | 957 (2.7) | 803 (2.3) | 2,056 (5.8) | 5,957 (16.8) | 67 (0.2) | 546 (1.5) | 14 (0.0) |

| 구분 / 연도 | 계 | 보호처분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1호 보호자 등에 감호 위탁 | 2호 수강 명령 | 3호 사회 봉사 명령 | 4호 단기 보호 관찰 | 5호 장기 보호 관찰 | 6호 소년 보호 시설 위탁 | 7호 병원 요양소 위탁 |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 10호 소년원 송치 | 1,2호 | 1,2,3호 | 1,2,4호 | 1,2,5호 | 1,2,3,4호 | 1,2,3,5호 | 1,3호 |
| 2008 | 39,532 (100) | 30,222 (76.4) | 6,214 (15.7) | 130 (0.3) | 181 (0.5) | - | 10 (0.0) | 410 (1.0) | - | 6 (0.0) | 762 (1.9) | 857 (2.2) | 972 (2.5) | - | 3,535 (8.9) | 874 (2.2) | 765 (1.9) | 1,576 (4.0) | 227 (0.6) |
| 2009 | 47,865 (100) | 35,819 (74.8) | 5,883 (12.3) | 71 (0.0) | 268 (0.6) | 23 (0.1) | 2 (0.0) | 128 (0.3) | 100 (0.2) | 22 (0.0) | 919 (1.9) | 992 (2.1) | 3,388 (7.1) | 572 (1.2) | 4,891 (10.2) | 1,186 (2.5) | 1,905 (4.0) | 1,581 (3.3) | 1,148 (2.4) |
| 2010 | 45,090 (100) | 32,416 (71.9) | 4,527 (10.0) | 37 (0.1) | 116 (0.3) | 34 (0.1) | 13 (0.0) | 73 (0.2) | 81 (0.2) | 11 (0.0) | 861 (1.9) | 806 (1.8) | 4,251 (9.4) | 615 (1.4) | 4,473 (9.9) | 1,309 (2.9) | 1,777 (4.0) | 1,288 (2.9) | 1,399 (3.1) |
| 2011 | 48,713 (100) | 35,072 (72.0) | 4,021 (8.3) | 18 (0.0) | 53 (0.1) | 77 (0.2) | 28 (0.0) | 9 (0.0) | 150 (0.3) | 15 (0.0) | 883 (1.8) | 1,019 (2.1) | 4,123 (8.5) | 874 (1.8) | 4,998 (10.3) | 1,393 (2.9) | 2,420 (4.9) | 1,990 (4.1) | 1,629 (3.3) |

| 구분 / 연도 | 보호처분 | | | | | | | | 불처분 | 심리불개시 | 타법원이송 | 검사송치 | 기타 |
|---|---|---|---|---|---|---|---|---|---|---|---|---|---|
| | 1,3,4호 | 1,3,5호 | 1,4호 | 1,5호 | 4,6호 | 5,6호 | 5,8호 | 기타 | | | | | |
| 2008 | 1,960 (5.0) | 1,838 (4.6) | 6,259 (15.8) | 2,599 (6.6) | 137 (0.3) | 142 (0.4) | 408 (1.0) | 360 (0.9) | 2,020 (5.1) | 6,801 (17.2) | 332 (0.8) | 152 (0.4) | 5 (0.0) |
| 2009 | 2,183 (4.6) | 1,731 (3.6) | 4,780 (10.0) | 1,256 (2.6) | 192 (0.4) | 739 (1.5) | 1,708 (3.6) | 151 (0.3) | 3,041 (6.4) | 7,377 (15.4) | 1,234 (2.6) | 394 (0.8) | - |
| 2010 | 2,182 (4.9) | 1,482 (3.3) | 3,593 (8.0) | 880 (1.9) | 104 (0.2) | 747 (1.6) | 1,689 (3.7) | 68 (0.1) | 3,105 (6.9) | 7,338 (16.3) | 1,840 (4.0) | 391 (0.9) | - |
| 2011 | 2,418 (5.0) | 1,352 (2.8) | 3,689 (7.6) | 808 (1.76) | 146 (0.3) | 922 (1.9) | 1,915 (3.9) | 122 (0.2) | 2,579 (5.3) | 7,905 (16.2) | 2,536 (5.2) | 621 (1.3) | - |

주 : 1) 2호 및 3호 처분 [ ]내는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2) 2008년도 6월 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유형이 7호처분에서 10호처분으로 변경됨.

자료 : 법원행정처(2012). 사법연감.

## 마. 형사법원

소년법원이 보호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이상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이거나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형사법원으로 이송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9세 미만자의 제1심 소년형사사건의 재판현황을 보면 집행유예의 비율이 가장 높고, 부정기형과 벌금형이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에서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정기형도 매우 낮은 비율로 선고되고 있다.

2011년에 종국처리된 소년범 3,499명 중 사형과 무기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었고, 집행유예가 610명(17.4%)으로 가장 높았고, 부정기형이 492명(14.1%), 벌금형이 133명(3.8%), 정기형이 14명(0.4%) 순으로 나타났다.

〈 표 9-2-25 〉 제1심 소년형사사건 재판현황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계 | 사형 | 무기 | 정기형 | 부정기형 | 집행유예 | 벌금 | 기타 |
|---|---|---|---|---|---|---|---|---|
| 2007 | 4,151 (100) | – | – | 10 (0.2) | 671 (16.2) | 1,129 (27.2) | 362 (8.7) | 1,978 (47.7) |
| 2008 | 5,026 (100) | – | 1 (0.0) | 215 (4.3) | 531 (10.6) | 1,504 (29.9) | 554 (11.0) | 2,222 (44.2) |
| 2009 | 6,160 (100) | – | – | 462 (7.5) | 587 (9.5) | 1,828 (29.7) | 681 (11.1) | 2,602 (42.2) |
| 2010 | 5,294 (100) | – | – | 472 (8.9) | 503 (9.5) | 1,577 (29.8) | 590 (11.1) | 2,152 (40.7) |
| 2011 | 3,499 (100) | – | – | 14 (0.4) | 492 (14.1) | 610 (17.4) | 133 (3.8) | 2,250 (64.3) |

주 : 1) '기타'에는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 송치 등이 포함됨.
2) 본 통계는 2010년까지는 20세 미만자, 2012년부터는 19세 미만자가 기준임.

자료 : 법원행정처(2012). 사법연감.

## 3.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 가. 소년원

#### (1) 임무

소년원은 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비행청소년을 수용·보호하면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과교육,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약물남용·발달장애·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한 의료 및 재활교육과 심리치료·사회봉사활동 등 인성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고 있다. 1942년 처음 개원할 당시에는 교육보다 수용관리에 중점을 두었으나, 두 차례에 걸친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높여왔다.

1988년에는 소년원 학생이 학령기 청소년이란 점을 강조하여 소년원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규 학교체제로 전환함으로써 학업연계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1999년에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직업능력배양과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체제로 혁신하였다.

1958년 공포된 「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원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었고,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종전에 재학했던 학교의 학교장 명의의 졸업장을 주고, 중도에 출원하는 학생은 일반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시켜 학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일반 중·고등학교와 동일한 과정의 일반교육과정과 전체 교육시간의 70~80%를 실용외국어와 컴퓨터 등의 특성화 교과로 운영하는 특성화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

영농, 축산, 원예로 시작된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1973년 안양소년원이 '법무부 제1공공직업훈련소'로 지정되고, 뒤이어 1974년 서울소년원 등 전국의 9개 소년원이 '법무부 제2~10공공직업훈련소'로 인가되면서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부산·광주·안양소년원에서 자동화용접, 카일렉트로닉스, 중장비, 건축환경설비, 제과제빵, 피부미용, 헤어디자인, 사무자동화, 영상미디어 등 10개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이 설치되어 있다.

도의교육, 종교교육으로 출발한 소년원 인성교육은 2000년대 들어와서 국토순례, 야영훈련, 문화예술교육, 공연관람, 사회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함께 학생 개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비행특성 등을 고려한 집단지도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6년에는 소년원 학생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1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대구·춘천소년원을 인성교육 전담소년원으로 개편하고, 2007년 이를 제주소년원으로 확대하여 현재 3개 소년원에서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담소년원 이외 소년원에서도 인성교육을 정규과정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 또한 1999년 교육현장의 자료와 전문가의 임상경험을 토대로 '심리치료 프로그램'이라는

교재를 발간한 이래 2007년까지 총 30여종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6년 (구)대전소년원을 '약물남용원생 전담소년원'으로 지정·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보호소년 중 약물남용, 발달장애, 정신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의료·재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부터는 대덕소년원이 법원으로부터 소년의료보호시설로 지정받으면서 「소년법」에 따라 병원, 요양소 위탁처분을 받은 소년까지 수용하여 의료·재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9년 3월부터는 대덕소년원을 '대산학교'로 개교하고 개방소년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9년 7월 1일부터는 청주소년원의 직제를 개정하여 여자소년원으로 개청하고, 안양소년원에서 여자소년원생을 청주로 인수하였다. 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안양·청주·춘천·제주 등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이와 같이 소년원에서는 과거의 수용 위주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되는 적극적·개방적인 교육행정을 전개하고 있다.

### (2) 보호소년의 수용

법원소년부의 보호사건 대상자는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촉법소년),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우범소년)이다.

소년법 개정 이전의 처우과정은 단기과정(6호), 일반과정(7호)으로 구분되었다. 단기과정은 6개월 이하를 수용하고, 일반과정은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A과정,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의 B과정,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의 C과정으로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소년법 개정 이후의 소년원 처우 과정은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7호), 1개월 이내과정(8호), 단기과정(9호), 장기과정(10호)으로 구분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0호 처분에 따라 달리하고 있다. 7호처분의 경우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부 판사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호처분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소년원에 송치하고, 9호처분의 경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호처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표 9-2-26 〉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단위 : 명, (%))

| 기간 / 연도 | 계 | 의료 (6개월 미만) | 단기 (6개월 미만) | 장 기 | | | 평균수용기간 (개월) |
|---|---|---|---|---|---|---|---|
| | | | | 일반A | 일반B | 일반C | |
| 2007 | 1,511 (100) | 7 (0.5) | 860 (56.9) | 206 (13.6) | 199 (15.8) | 239 (15.8) | 9.9 |
| 2008 (~'08.6.21) | 651 (100) | 4 (0.6) | 318 (48.9) | 144 (22.1) | 104 (16.0) | 81 (12.4) | 8.9 |

| 기간 / 연도 | 계 | 7호 (의료) | 8호 (1개월) | 9호 (단기) | 10호 (장기) | 평균수용기간 (개월) |
|---|---|---|---|---|---|---|
| 2008 ('08.6.22~) | 2,526 (100) | 66 (2.6) | 895 (35.6) | 783 (30.9) | 782 (30.9) | 6.9 |
| 2009 | 2,672 (100) | 52 (2.0) | 1,218 (45.6) | 684 (25.6) | 718 (26.8) | 4.93 |
| 2010 | 2,755 (100) | 56 (2.0) | 1,339 (48.6) | 771 (28.0) | 589 (21.4) | 5.1 |
| 2011 | 2,559 (100) | 69 (2.7) | 1,329 (51.9) | 644 (25.2) | 517 (20.2) | 5.1 |

주 :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과정을 10호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보호소년은 교육과정을 마치면 퇴원 또는 가퇴원을 하게 되는데 퇴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퇴원은 관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가퇴원의 적부를 심사·결정하고, 6개월~2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에 수용된 신수용 보호소년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소년원 신수용인원은 전년도 2,822명보다 4.9% 증가한 2,960명이었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증가하였으나, 2009년 대폭 감소하였다가 2011년 다시 증가하여 1,264명이었다.

〈 표 9-2-27 〉 보호소년 수용현황

(단위 : 명)

| 출원사유 / 연 도 | 신수용인원 | 1일 평균수용인원 |
|---|---|---|
| 2007 | 1,511 | 1,214 |
| 2008 | 1,732 | 1,361 |
| 2009 | 2,775 | 1,191 |
| 2010 | 2,822 | 1,162 |
| 2011 | 2,960 | 1,264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3) 소년원 교육

소년원 교육혁신의 결과, 지난 1999년 9월 이후 일반학교 학생이 참가한 '전국 중·고등부 영어 말하기 대회' 및 '컴퓨터 경시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소년원학생이 각종 수상을 하였으며, 컴퓨터 및 각종 기능 자격을 취득하였다. 2011년도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1,642명이었고, 영어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41명, 일반기능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670명 등이다.

〈 표 9-2-28 〉 소년원 학생 자격 취득 현황

(단위 : 명)

| 연도 / 구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2,377 | 2,950 | 2,685 | 2,644 | 2,980 |
| 영 어 | 172 | 222 | 74 | 45 | 41 |
| 컴퓨터 | 1,297 | 1,478 | 1,389 | 1,387 | 1,642 |
| 일반기능 | 501 | 600 | 584 | 634 | 670 |
| 기 타 | 407 | 650 | 638 | 578 | 627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보호소년들이 임시퇴원 후 완전한 사회복귀를 실현하고 더 이상 재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전국 소년원에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취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민·관 합동의 총체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최근 5년간 1,540명이 취업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였다.

〈 표 9-2-29 〉 소년원학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취업인원 | 277 | 339 | 335 | 328 | 261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한편 2011학년도에 고등학교 89명, 대학교 22명 등 총 111명이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값진 향학의 꿈을 이루었다.

〈 표 9-2-30 〉 소년원학생 진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132 | 113 | 166 | 108 | 111 |
| 대 학 교 | 63 | 49 | 52 | 38 | 22 |
| 고등학교 | 69 | 64 | 114 | 70 | 89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소년원 학교는 전국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

〈 표 9-2-31 〉 소년원 학교 명칭 및 교육과정

| 구 분 | | 기 관 (학교명) | 설립일 | 개교일 | 처우과정 | 교 육 과 정 |
|---|---|---|---|---|---|---|
| 특성화학교 | 정보통신학교 | 서울소년원<br>(고봉중고등학교) | 1942. 4.20. | 2000. 8.30. | 9호<br>10호 | –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직업능력개발훈련<br>(제과제빵, 영상미디어, e-sports)<br>– 보호자교육 |
| | | 대구소년원<br>(읍내정보통신학교) | 1945.11.21. | 2000. 8.31. | 9호<br>10호 |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보호자교육 |
| | | 전주소년원<br>(송천정보통신학교) | 1967. 3.25. | 2000. 9. 6.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보호자교육 |
| | | 춘천소년원<br>(신촌정보통신학교) | 1963. 9. 9. | 2000. 9. 4. | 9호<br>10호 |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직업능력개발훈련<br>– 보호자교육 |
| | | 제주소년원<br>(한길정보통신학교) | 1987.11. 9. | 2000. 8.30. | 8호<br>9호<br>10호 |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8호처분자 교육(제주지역 남자 보호소년)<br>– 보호자교육 |
| | 정보산업학교·직업능력개발훈련 | 부산소년원<br>(오륜정보산업학교) | 1947. 1.18. | 2000. 8.31. | 10호<br>위탁 | –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br>– 보호자교육 |
| | | 광주소년원<br>(고룡정보산업학교) | 1946.11. 7. | 2000. 9. 6. | 10호<br>위탁 | – 직업능력개발훈련, 컴퓨터, 검정고시<br>– 보호자교육 |
| | | 안양소년원<br>(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 | 1946.10. 1. | 2000. 8.30. | 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br>– 직업능력개발훈련<br>– 보호자교육 |
| 인문계학교 | | 대덕소년원<br>(대산학교) | 1998. 7. 1. | 2002. 3. 4. | 7호<br>8호<br>9호<br>10호 | – 중학교 교과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의료 · 재활교육<br>– 8호처분자 교육(남자 보호소년)<br>– 보호자교육 |
| | | 청주소년원<br>(미평여자학교) | 2009. 7. 1. | – | 8호<br>9호 | –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br>– 8호처분자 교육(여자 보호소년)<br>– 보호자교육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4) 소년원생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소년원생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하여 전국 10개 소년원에서 가정관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관은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위하여 가족합숙제, 1일 생활제, 가정관 면회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의탁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다. 자립생활관은 경기(의왕, 안양),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민간단체인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한다. 무의탁 소년원 퇴원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였다.

### (5)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하도록 하고 있고, 22세에 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 중인 학생이 교과 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년원장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퇴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 표 9-2-32 〉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 출원사유 / 연 도 | 계 | 퇴원 | 임시퇴원 | 처분변경 | 이송 | 기타 |
|---|---|---|---|---|---|---|
| 2007 | 2,677 (100) | 1,164 (43.5) | 377 (14.1) | 9 (0.3) | 1,086 (40.6) | 41 (1.5) |
| 2008 | 2,793 (100) | 871 (31.2) | 857 (30.7) | 10 (0.3) | 1,013 (36.3) | 42 (1.5) |
| 2009 | 4,020 (100) | 1,722 (42.8) | 950 (23.6) | 20 (0.5) | 1,289 (32.1) | 39 (1.0) |
| 2010 | 3,941 (100) | 1,821 (46.2) | 934 (23.7) | 26 (0.6) | 1,121 (28.5) | 39 (1.0) |
| 2011 | 4,137 (100) | 1,790 (43.2) | 926 (22.4) | 16 (0.4) | 1,376 (33.3) | 29 (0.7) |

주 : 1) 기타는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 인원임.
2) 2009년부터 퇴원인원 증가는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처분(1개월미만 소년원송치) 인원증가에 기인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교정성적이 양호한 보호소년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년원장은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심사를 신청하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는 보호소년의 인격, 교정성적,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부를 심사·결정한 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임시퇴원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임시퇴원생이 임시퇴원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의 우려가 현저한 때에는 임시퇴원 허가를 취소하고 재수용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2010년도 소년원 출원사유별 인원현황을 보면, 퇴원이 4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송이 33.3%, 임시퇴원이 22.4% 순이다.

## 나. 소년교도소

소년교도소는 소년범죄자를 성인범죄자와 분리처우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교도소에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내지 제13조). 다만,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소년교도소는 2004년까지는 천안교도소와 김천교도소에서 나누어서 수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1월 법무부예규에 의해 천안교도소는 20세 미만 남자소년수형자를 전담 수용하였다. 그러나 교정본부 직제 개편으로 2009년 12월 31일부터 소년범죄자는 김천소년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다.

### (1) 수용현황

소년교도소 수용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2007년에는 657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114명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소년교도소의 수용인원이 감소한 것은 2008년 6월 22일 개정소년법의 시행으로 만 19세 이상의 수용자가 성인교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이다.

〈 표 9-2-33 〉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 연 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수용인원 | 657 | 156 | 169 | 146 | 114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죄명별 현황을 보면, 절도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도, 강간 등의 비율이 높다. 2011년도 소년수형자 중 강간범 등이 33명(28.9%), 절도범이 26명(22.8%), 강도범 등이 18명(15.8%), 살인범이 10명(8.8%) 순으로 나타났다.

〈 표 9-2-34 〉 소년수형자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

| 연도 / 죄명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657 (100) | 156 (100) | 169 (100) | 146 (100) | 114 (100) |
| 절도 | 156 (23.7) | 73 (46.8) | 62 (36.7) | 45 (30.8) | 26 (22.8) |
| 사기·횡령 | 15 (2.3) | 1 (0.6) | 3 (1.8) | 3 (2.1) | 0 (0.0) |
| 폭력·상해 | 10 (1.5) | 9 (5.8) | 8 (4.7) | 1 (0.7) | 5 (4.4) |
| 강간 등 | 116 (17.7) | 24 (15.4) | 44 (26.0) | 32 (21.9) | 33 (28.9) |
| 강도 등 | 192 (29.2) | 24 (15.4) | 32 (18.9) | 33 (22.6) | 18 (15.8) |
| 살인 | 88 (13.4) | 9 (5.8) | 6 (3.6) | 11 (7.5) | 10 (8.8) |
| 과실범 | 15 (2.3) | 5 (3.2) | 2 (1.2) | 3 (2.1) | 1 (0.9) |
| 기타 | 65 (9.9) | 11 (7.0) | 12 (7.1) | 18 (12.3) | 21 (18.4) |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소년수형자의 형명을 보면 유기징역형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금고형은 거의 없었다. 최근 5년간 소년수형자의 형기를 보면 3년 미만의 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5년 미만의 징역형, 1년 미만의 징역형, 10년 미만 징역형 순으로 높았다. 대체로 장기징역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단기징역형의 비율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형의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33.3%, 10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0.5%, 1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8.8%, 15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2.6% 15년 미만 유기징역형이 1.8% 순으로 나타났다. 금고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없었다.

〈 표 9-2-35 〉 소년수형자 형명·형기별 인원

(단위 : 명, (%))

| 형명·형기 \ 연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계 | | 657 (100) | 156 (100) | 169 (100) | 146 (100) | 114 (100) |
| 징역형 | 무기 | 16 (2.4) | – | – | – | – |
| | 15년 이상 | 68 (10.3) | – | – | – | 3 (2.6) |
| | 15년 미만 | 74 (1.3) | 3 (1.9) | 3 (1.8) | 5 (3.4) | 2 (1.8) |
| | 10년 미만 | 89 (13.6) | 14 (9.0) | 15 (8.9) | 15 (10.3) | 12 (10.5) |
| | 5년 미만 | 108 (16.4) | 27 (17.3) | 42 (24.9) | 45 (30.8) | 38 (33.3) |
| | 3년 미만 | 233 (35.5) | 87 (55.8) | 89 (52.7) | 58 (39.7) | 48 (42.1) |
| | 1년 미만 | 52 (7.9) | 24 (15.4) | 19 (11.2) | 23 (15.8) | 10 (8.8) |
| | 6월 미만 | 15 (2.3) | 1 (0.6) | 1 (0.6) | – | 1 (0.9) |
| 금고형 | 무기 | – | – | – | – | – |
| | 15년 이상 | – | – | – | – | – |
| | 15년 미만 | – | – | – | – | – |
| | 3년 이상 | – | – | – | – | – |
| | 3년 미만 | – | – | – | – | – |
| | 1년 미만 | 2 (0.3) | – | – | – | – |
| | 6월 미만 | – | – | – | – | – |

주 : 폭력에는 폭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이 포함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 (2) 교정교육

교정교육은 범죄적 심성을 순화시킴으로써 재범에 이르지 않고 사회에 유용한 일원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과교육, 직업훈련, 생활지도, 교화활동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11년도 소년교도소에서의 학과교육 인원은 75명이며, 이 중 일반학과 교육을 받은 자는 35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원은 40명이다.

〈 표 9-2-36 〉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교육인원(계) | 60 | 85 | 75 | 75 | 75 |
| 일반학과교육 | 27 | 35 | 35 | 35 | 35 |
| 방송통신고<br>(졸업인원) | 33<br>(16) | 50<br>(8) | 40<br>(6) | 40<br>(13) | 40<br>(13)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 (3) 출소

소년수형자는 해당형기가 종료하면 출소하게 되지만, 형기가 종료하기 전에도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에는 3년 부정기형의 경우에는 단기의 1/3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소년법 제65조). 소년수형자 중 가석방된 자의 비율은 2007년 22.6%, 2008년 18.3%, 2009년 16.5%로 감소하였다가 2010년에 18.4%로 소폭 상승 후 2011년 14.5%로 다시 감소하였다.

〈 표 9-2-37 〉 소년수형자 석방사유별 인원

(단위 : 명, (%))

| 연도 \ 석방사유 | 계 | 가석방 | 집행종료결정 | 만기석방 | 기타 |
|---|---|---|---|---|---|
| 2007 | 673<br>(100) | 152<br>(22.6) | – | 197<br>(29.3) | 324<br>(48.1) |
| 2008 | 317<br>(100) | 58<br>(18.3) | – | 164<br>(51.7) | 95<br>(30.0) |
| 2009 | 103<br>(100) | 17<br>(16.5) | – | 44<br>(42.7) | 42<br>(40.8) |
| 2010 | 114<br>(100) | 21<br>(18.4) | – | 66<br>(57.9) | 27<br>(23.7) |
| 2011 | 69<br>(100) | 10<br>(14.5) | – | 45<br>(65.2) | 14<br>(20.3) |

주 : 1) 집행종료결정은 단기만료 후 장기도래전의 석방, 만기석방은 장기만료로 인한 석방을 의미함.
2) '기타'는 특별사면, 형집행정지, 사망, 노역종료 등을 포함함.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통계자료(2012).

## 다. 보호관찰소

### (1) 개요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조사, 전자발찌, 성충동 약물치료 등에 관련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국가기관이다.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교도소,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지 않고 일정기간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원호를 받게 하거나,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봉사를 하게 하거나,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범죄자의 성행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최신 형사정책 수단이다. 1989년 7월 1일부터 소년범에 대하여 최초로 시행된 보호관찰은 제도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성폭력사범(1994년), 성인형사범(1997년), 가정폭력사범(1998년), 성매매사범(1994년), 특정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2008년)로까지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1년 전체 보호관찰 접수인원 121,188명 중 소년대상자는 46,336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의 34.7%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 보호관찰 실시인원 중 청소년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이나, 청소년대상자의 높은 변화가능성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대상자에 대해서는 보다 집중적인 보호관찰을 실시하고 있다. 청소년대상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수자원과 연계하여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보호관찰의 재범방지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고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호관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2) 조직

보호관찰행정 중앙조직으로는 인사 및 예산을 담당하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기획과, 보호관찰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는 보호법제과, 보호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보호관찰과가 있고,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고등검찰청 소재지(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에 설치되어 있으며, 2011년 말 기준 지방검찰청 및 주요지청 소재지에 18개 보호관찰소와 38개 보호관찰지소, 서울지역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대전지역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 (3) 보호관찰 실시

청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 「형법」 제62조의 2에 의한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을 부과 받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소년법의 개정으로

단기보호관찰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호관찰 부과연령이 10세로 하향되었다.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신규 접수인원은 2007년 29,005명, 2008년 36,099명, 2009년 46,686명, 2010년 45,990명, 2011년 46,336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 표 9-2-38 〉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비율

(단위 : 명, %)

| 구분 / 연도 | 전체보호관찰인원 | 소년보호관찰인원 | 소년보호관찰 비율 |
|---|---|---|---|
| 2007 | 86,127 | 29,005 | 33.7 |
| 2008 | 95,137 | 36,099 | 37.9 |
| 2009 | 115,191 | 46,686 | 40.5 |
| 2010 | 86,435 | 45,990 | 53.2 |
| 2011 | 121,188 | 46,336 | 38.2 |

2011년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운데 소년보호처분 40,164명(86.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기소유예처분 4,087명(8.8%), 임시퇴원 1,089명(2.4%), 집행유예 905명(2.0%)순이다.

〈 표 9-2-39 〉 연도별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접수 추이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계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소년보호 | 가석방 | 임시퇴원 | 가정보호 | 성매매보호 | 기소유예 | 성구매자교육 | 벌금대체 | 이수명령 |
|---|---|---|---|---|---|---|---|---|---|---|---|---|
| 2007 | 29,005 | 4 | 1,560 | 24,555 | 142 | 432 | 5 | 15 | 2,265 | 27 | - | - |
| 2008 | 36,099 | 1 | 1,907 | 30,488 | 97 | 945 | 9 | 32 | 2,591 | 29 | - | - |
| 2009 | 46,686 | 4 | 2,174 | 40,139 | 95 | 1,156 | 6 | 29 | 3,060 | 24 | 9 | - |
| 2010 | 45,990 | 1 | 1,723 | 38,681 | 53 | 1,177 | 3 | 15 | 4,255 | 8 | 78 | 2 |
| 2011 | 46,336 | 0 | 905 | 40,164 | 34 | 1,089 | 2 | 7 | 4,087 | 9 | 35 | 4 |

주 : 1) 접수는 신수와 이입을 합산, 보호관찰은 광의의 의미임.
2) 벌금대체 사회봉사명령은 2009년부터, 이수명령은 2010년부터 실시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1).

보호관찰 기간 중 청소년대상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법정준수사항(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및 외출제한명령 등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특별준수사항을 지키며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은 청소년대상자와의 초기면담,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일반, 주요, 집중대상자 등으로 분류하고, 분류등급에 기초하여 차별화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최근에는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통제를 위해 출석지도 위주의 보호관찰 방식을 탈피하여 주거지 방문, 생활근거지에서의 면접 등 현장 중심의 적극적·역동적 보호관찰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2011년부터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청소년대상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년 전담 직원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자원 연계를 통한 특화된 처우와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등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대상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는 등 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형의 집행 등 불이익 처분 가능성을 경고하고, 계속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구인하고 유치한 후 보호처분변경, 집행유예 취소, 가석방·임시퇴원 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실시한다. 그러나 보호관찰기간 중 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가해제 또는 부정기형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의 개선의지를 북돋우고 보호관찰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표 9-2-40 〉 청소년대상자 보호관찰성적에 따른 조치현황

(단위 : 명)

| 성적별 \ 연도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
| 성 적 양호자 | 계 | 202 | 183 | 369 | 105 | 626 |
| | 가해제 | 202 | 183 | 369 | 105 | 626 |
| | 부정기형 종료 | - | - | - | - | - |
| 성 적 불량자 | 계 | 16,273 | 19,459 | 24,903 | 25,873 | 27,890 |
| | 경 고 | 12,823 | 14,674 | 18,827 | 19,037 | 21,305 |
| | 구 인 | 1,161 | 1,538 | 1,987 | 2,153 | 2,007 |
| | 유 치 | 1,110 | 1,490 | 1,943 | 2,095 | 1,936 |
| | 취소·변경 등[1] | 1,078 | 1,638 | 2,033 | 2,444 | 2,449 |
| | 기 타[2] | 101 | 119 | 113 | 144 | 193 |

주 : 1) 취소·변경은 집행유예취소, 보호처분변경, 가석방·임시퇴원취소, 선도위탁취소, 가정보호취소임.
2) 기타는 기간연장, 보호관찰 정지, 사회봉사허가 취소를 포함함.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2).

또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처우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해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각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 특성별 재범방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관찰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대안교육, 상담교육, 야간외출제한명령, 보호자 특별교육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

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사회봉사명령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배상, 범죄에 대한 속죄의식을 유도하는 등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한다. 청소년대상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집행은 주로 처벌적 효과보다는 교육적 효과에 중점을 두고 노인, 장애인 등 생활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이루어지게 하여 봉사체험을 통해 범죄를 속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사회봉사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봉사명령의 부과 연령은 14세로 낮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시간은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문화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1년 청소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인원은 총 8,346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1,481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865명이다.

〈 표 9-2-41 〉 청소년대상자 사회봉사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총계 | 직접집행 | 협력집행 | | | | | |
|---|---|---|---|---|---|---|---|---|
| | | | 소계 | 자연 보호 | 복지 분야 | 공공 시설 | 대민지원 | 기타 |
| 2007 | 3,982 | 825 | 3,157 | 12 | 2,974 | 125 | 8 | 38 |
| 2008 | 5,726 | 1,477 | 4,249 | 11 | 3,990 | 166 | 17 | 65 |
| 2009 | 8,178 | 1,443 | 6,735 | 7 | 6,429 | 184 | 48 | 67 |
| 2010 | 7,394 | 1,324 | 6,070 | 2 | 5,812 | 157 | 80 | 19 |
| 2011 | 8,346 | 1,481 | 6,865 | 51 | 6,490 | 168 | 89 | 67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2).

수강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자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강의, 체험학습, 심신훈련, 봉사활동 등 범죄성 개선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이다. 수강 명령을 통해 대상자가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나 행동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과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재범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 대상자의 범죄내용에 따라 약물 오·남용 방지교육, 알코올남용 방지교육, 정신·심리치료교육, 성폭력방지교육, 준법운전강의, 가정폭력방지교육 등 적합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소년에게 단독 수강명령 결정이 가능하게 되었고, 수강명령 부과 연령은 12세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수강명령 시간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었다(소년법 제33조 제4항).

2011년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인원은 10,135명이고, 이 중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집행한 인원은 9,518명, 협력기관에서 집행한 인원은 617명이다.

〈 표 9-2-42 〉 청소년대상자 수강명령 분야별 집행인원

(단위 : 명)

| 구분 / 연도 | 총계 | 직접집행 | 협력집행 | | | | | | |
|---|---|---|---|---|---|---|---|---|---|
| | | | 소계 | 약물 | 준법운전 | 심리치료 | 가정폭력 | 성폭력 | 기타 |
| 2007 | 2,956 | 2,718 | 238 | 2 | 42 | 59 | – | 11 | 124 |
| 2008 | 5,847 | 5,620 | 227 | – | 40 | 77 | – | 14 | 96 |
| 2009 | 10,397 | 9,954 | 443 | 3 | – | 2 | – | 46 | 382 |
| 2010 | 9,779 | 9,212 | 567 | – | – | 78 | 2 | 43 | 444 |
| 2011 | 10,135 | 9,518 | 617 | – | 11 | 277 | – | 74 | 255 |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2).

### (5) 판결(결정)전 조사 및 환경조사

판결(결정)전 조사는 법원이 소년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조건으로 한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명하기 위하여 판결(결정)전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청함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범죄의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의 제반사항에 관해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보호관찰처분의 적합성 판별과 법원의 적정판결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소년법 개정에 따라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등에 대해 조사를 명할 수 있는 '검사결정전조사제도'가 신설되었다(소년법 제49조의2).

환경조사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수용자, 보호감호소의 감호처분자에 대한 범죄의 동기 및 현재의 환경을 조사하는 것으로 교정 교육자료와 가석방·임시퇴원·가출소 등의 심사자료, 그리고 보호관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내용은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수용전의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상황, 피해회복여부, 생계대책 등이며, 면접, 사실조회, 자료분석 등의 기법이 사용된다.

환경조사 결과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보호관찰소장은 본인, 가족, 관계인의 동의 또는 협력을 얻어 수용자의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

판결(결정)전조사는 2007년 3,072건에서 2011년 12,422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반면, 환경조사는 2007년 1,614건에서 2011년 1,38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 표 9-2-43 〉 청소년대상자 판결(결정)전조사 및 환경조사 접수실적

(단위 : 건)

| 구 분 / 연 도 | 환경조사(소년원 의뢰) | 판결(결정)전조사 |
|---|---|---|
| 2007 | 1,614 | 3,072 |
| 2008 | 1,477 | 3,036 |
| 2009 | 1,668 | 4,848 |
| 2010 | 1,454 | 10,856 |
| 2011 | 1,380 | 12,422 |

주 : 판결(결정)전조사는 판결전조사와 결정전조사를 합산한 것임.

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 통계자료(2012).

# 제 10 부 요약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을 포함하는 청소년수련시설과 문화예술시설, 공공체육시설, 기타 청소년이용시설을 포함하는 청소년이용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보호·복지시설은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과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시설 단체 관련기관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청소년지도사는 1,2,3급 모두 합쳐 2011년 현재 총 26,830명이며, 청소년상담사는 1,2,3급 모두 합쳐 2011년 현재 총 4,805명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정책, 가족정책을 담당하는 두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상시 점검단속 등을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과 연관한 별도의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을 두고 있다.

# 제 10부 청소년정책 추진 인프라

제1장 청소년 시설

제2장 청소년지도자

제3장 청소년 단체

제4장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제5장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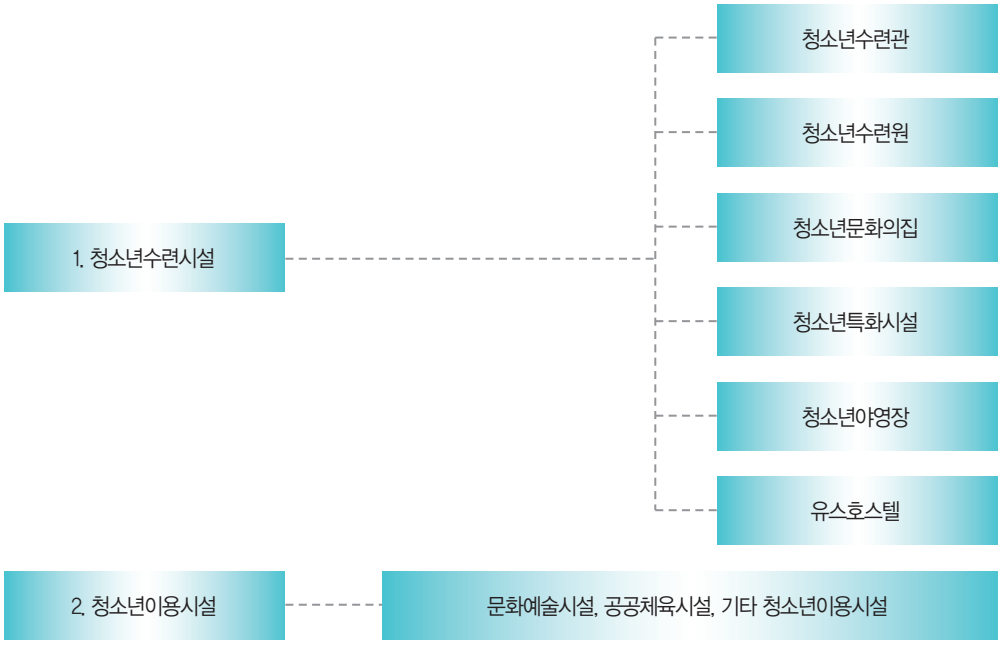
제6장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제1장
# 청소년 시설

## 1. 청소년 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의 민간분야도 활동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가능하지만, 민간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림 10-1-1 ]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가. 청소년수련시설

### (1) 수련시설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수련원'은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문화의집'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을, '청소년 특화시설'은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야영장'은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을,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 기준 738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 표 10-1-1 〉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총 계 | 수련관 | 문화의집 | 수련원 | 야영장 | 유스호스텔 | 특화시설 |
|---|---|---|---|---|---|---|---|
| 계 | 738 | 176 | 215 | 176 | 43 | 121 | 7 |
| 공 공 | 469 | 172 | 210 | 41 | 26 | 13 | 7 |
| 민 간 | 269 | 4 | 5 | 135 | 17 | 108 | 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12.31 기준).

〈 표 10-1-2 〉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구 분 | 총 계 | 수련관 | 문화의집 | 수련원 | 야영장 | 유스호스텔 | 특화시설 |
|---|---|---|---|---|---|---|---|
| 계 | 738 | 176 | 215 | 176 | 43 | 121 | 7 |
| 서 울 | 59 | 33 | 16 | 2 | 0 | 3 | 5 |
| 부 산 | 23 | 7 | 9 | 4 | 2 | 1 | 0 |
| 대 구 | 12 | 5 | 5 | 1 | 0 | 1 | 0 |
| 인 천 | 24 | 7 | 6 | 5 | 2 | 4 | 0 |
| 광 주 | 11 | 5 | 4 | 1 | 0 | 1 | 0 |
| 대 전 | 13 | 4 | 7 | 1 | 0 | 1 | 0 |
| 울 산 | 9 | 1 | 6 | 2 | 0 | 0 | 0 |
| 경 기 | 144 | 27 | 40 | 52 | 6 | 18 | 1 |
| 강 원 | 77 | 14 | 26 | 14 | 5 | 18 | 0 |
| 충 북 | 43 | 9 | 9 | 13 | 2 | 10 | 0 |
| 충 남 | 46 | 7 | 11 | 13 | 3 | 12 | 0 |
| 전 북 | 53 | 13 | 20 | 11 | 3 | 5 | 1 |
| 전 남 | 44 | 12 | 11 | 10 | 6 | 5 | 0 |
| 경 북 | 66 | 16 | 11 | 16 | 7 | 16 | 0 |
| 경 남 | 71 | 13 | 15 | 26 | 4 | 13 | 0 |
| 제 주 | 43 | 3 | 19 | 5 | 3 | 13 | 0 |

주 : 국립청소년시설(3개)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청남도 천안시)/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도 평창군)/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라남도 고흥군).

자료 : 여성가족부(2011.12.31 기준).

## (2) 수련시설의 설치

### 1 중앙정부의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시설로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및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를 건립·운영 중이다. 또한 청소년에게 해양환경체험을 통해 해양생명체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하고 미래해양자원 개발 및 기술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FTA, DDA 등으로 인한 농업 수입개방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새로운 농업생명의 발

전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할 예정이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 국내·외 청소년교류 및 수련시설 간의 네트워크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충청남도 천안시 목천면 독립기념관 내(동곡)에 부지 474,386m², 연면적 35,144m² 내외 규모로 약 6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1년 6월에 준공되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자연권 청소년수련활동의 시범적 운영 및 총괄·지원을 위한 자연권 수련시설로서, 수련시설에 대한 지원과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백옥포리에 부지 478,300m², 연면적 21,127m² 규모에 약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998년 10월에 준공되었다.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는 우주분야에 대해 전문화·특성화된 수련시설로서, 청소년 우주체험활동의 장을 해외에서 국내로 전환하여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우주체험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건립된 국립수련시설이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에 부지 271,039m², 연면적 10,050m² 규모의 우주체험관, 우주생활관 등을 약 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0년 7월에 준공되었다.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센터는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에 부지 50,756m², 연면적 13,558m²에 해양환경체험시설 등 약 372억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도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 김제시 부량면 용성리에 각각 부지 38,510m², 연면적 10,872m²에 농경문화체험시설 등 약 22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2013년에 준공 및 개원할 예정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설치

수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많은 생활권 시설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1990년부터 지방양여금이 청소년시설 건립에 사용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에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되었으며,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010년도부터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의한 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주로 생활권수련시설로, 행정구역별로 1개소씩 건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군·구에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읍·면·동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씩 설치하여야 할 의무를 지닌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시설 신규건립과 더불어 기존 시설의 기능보강을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부지 선정 시 청소년의 접근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에는 청소년수련시설 26개소 신규건립 및 기존 시설 44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27개소 신규건립, 39개소 기능보강을 지원 중이다.

### 3 수련시설 설립 사전검토와 주택건설시 설치계획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국립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입지조건이나 내부구조,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수련시설건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 중 청소년 및 청소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각각 5분의 1이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생활공간 주변에서 손쉽게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택단지 안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3,000호를 초과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기본계획에 수련시설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3) 수련시설 운영지원

### 1 수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험가입

수련시설의 증가와 함께, 시설의 안전을 위해 여성가족부 주관 하에 관련기관(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과 합동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 운영, 주요 구조부의 균열, 내구성 저하 등의 위험사항, 석축, 옹벽, 담장 및 부대시설의 안전성, 전기, 기계, 소방 및 냉·난방시설의 유지관리 상태, 기타 관리 주체의 안전의식 및 재난 관리 체계 구축 여부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8조의 안전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위탁단체가 시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동법 제25조에서는 수련시설 운영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도부터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각 청소년시설 운영주체들에게 상황 개선 및 위상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있다.

###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와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는 수련시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시설 간 정보교류, 협력체계를 통한 상호간의 권익과 교류사업 증진을 위해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이 되는 수련시설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사업,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 나. 청소년이용시설

### (1) 청소년이용시설 개념과 유형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이용시설로는 ❶「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❷「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❹「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❺「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❻「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❼「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❽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이용시설 중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하여 다른 청소년이용시설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2) 청소년이용시설 현황

#### 1 문화시설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 2 과학관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 3 체육시설

우리나라의 체육시설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로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

## 2. 청소년 보호·복지시설

### 가. 청소년보호시설

청소년보호법(1999년 일부개정) 제33조 제2항에서는 청소년 폭력이나 학대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와 청소년폭력·학대 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청소년재활센터의 설치를 명시하였다. 이에 청소년보호센터에서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상담이나 소송업무대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The Youth Center)'를 운영해왔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가정과 학교에서 학대와 폭력을 받은 청소년, 가출청소년, 성범죄 피해청소년, 임금체불 등 근로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청소년, 약물남용 청소년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9월부터 운영되었다.

청소년보호종합지원센터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피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별로 활동하는 NGO와 경찰, 행정당국 간의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전개하였다. 2004년도에는 가출청소년과 성매매 구조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들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를 위한 드롭인센터(Drop-in-center)를 개설하였다. 2005년부터는 서울지역에서만 부분적으로 운영하던 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부산, 광주, 경기, 경남 등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도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는 2011년 청소년보호법 전면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재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

이 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포함된 보호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소년지원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보호·재활센터 등이 있으며, 대상아동·청소년의 보호·자립지원, 장기치료가 필요한 대상아동·청소년의 다른 기관과의 연계 및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상담시설로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매매피해상담소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명시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이 있다.

## 나. 청소년복지시설

### (1)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가출청소년의 상담·선도·수련활동,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청소년의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상담활동, 그 밖에 청소년복지지원에 관한 활동 등이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9~24세의 청소년들을 입소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쉼터유형에 따라 일시(24시간), 6개월, 2년까지(최대 3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가출청소년 쉼터는 1992년 시범사업 운영의 일환으로 서울YMCA 청소년쉼터가 개소한 이래 1996년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해 전국에 총 92개소의 쉼터를 운영 중이다.

2005년에는 가출 및 위기 청소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보호시설 체계화를 위해 청소년 쉼터를 일시쉼터(드롭인센터), 단기쉼터(청소년쉼터), 중장기쉼터로 구분하였으며, 각 청소년쉼터의 전문성과 특성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2011년부터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접근·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 (2)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일정기간 청소년쉼터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2012년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부개정에 따라 제31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012년 현재 경기, 대전,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민간과 지자체에 의해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법적근거 마련을 토대로 향후 시설 확대 운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3)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최근 가정해체와 빈곤 등으로 보호시설로 보내지거나 학업중단, 가출 등으로 거리를 방황하는 위기청소년과 ADHD, 학업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청소년시설에서는 보호, 치료, 교육, 자립 등에 대한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청소년의 성장 · 발달과정에 맞는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에게 종합적·전문적 치료·재활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거주형 기관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2012년 12월에 개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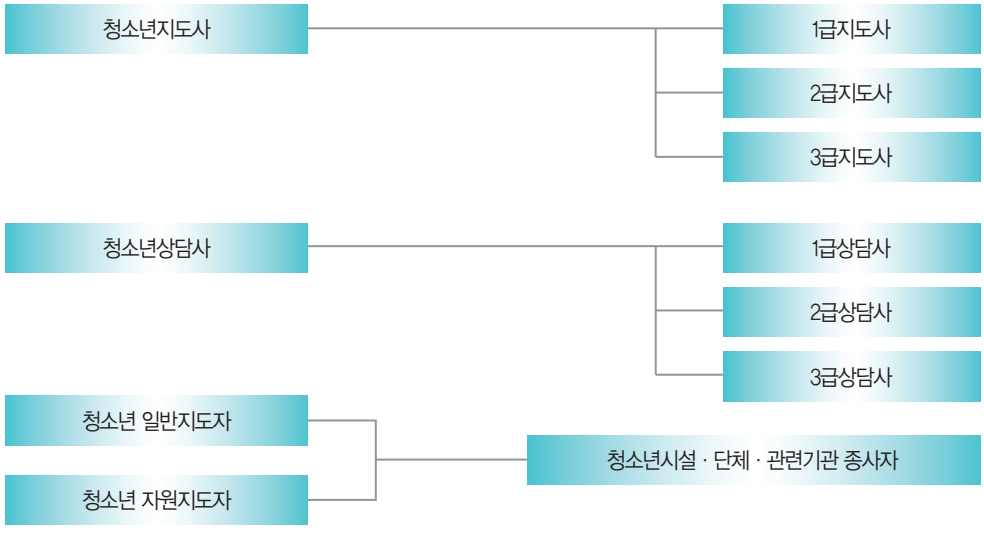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의 입교대상자는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가진 청소년(만9~18세)이고, 입·퇴소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입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는 입교생에게 필요한 상담·치료, 보호, 자립지도, 교육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제2장 청소년지도자

## 1. 청소년지도자의 정의 및 유형

'청소년지도자'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총칭한다. 국가공인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1년까지 총 26,830명이 배출되었으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4,805명을 넘어서고 있다.

[ 그림 10-2-1 ] 청소년 지도자의 분류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 청소년지도사

### 가.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지도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양성해 오고 있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한다.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사업)을 전담하여 청소년의 수련활동, 지역·국가 간 교류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예술활동 등을 지도한다.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10-2-1 〉 청소년 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

| 등급 | 응시자격기준 |
|---|---|
| 1급<br>청소년지도사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2급<br>청소년지도사 |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br>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br>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br>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
| 3급<br>청소년지도사 |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br>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br>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br>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표 10-2-2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

| 구분 | 검정과목 | 검정방법 | |
|---|---|---|---|
| 1급 | 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운영, 청소년지도자론 | 주 · 객관식 필기시험 | |
| 2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청소년문제와 보호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br>(3급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면접시험 면제) |
| 3급 |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활동,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문화,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객관식 필기시험 | 면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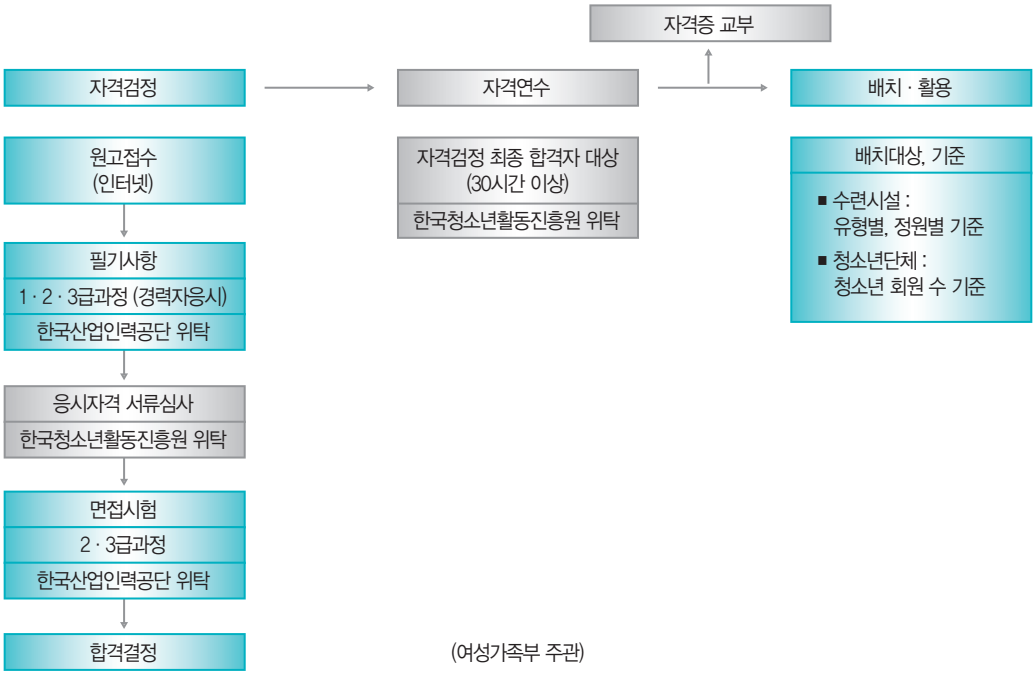
주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함.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나.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청소년지도사 양성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실시한 후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는 다음과 같다.

[ 그림 10-2-2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체계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합격 기준은 필기시험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또한 2008년 1월부터는 2급 자격기준 중 대학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와, 3급 지도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는 해당 급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는 30시간 이상으로 하며, 자질과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 다. 청소년지도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 양성계획에 따라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급 청소년지도사 1,462명, 2급 청소년지도사 17,143명, 3급 청소년지도사 8,225명 등 총 26,830명의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다. 2011년도에는 총 3,051명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출하였는데 이중 여성이 2,445명으로 80.1%를 차지하고 있으며 1급은 82명, 2급은 2,262명, 3급은 407명 등이었다. 연도별 지도사 양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0-2-3 〉 청소년지도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1급 | | 2급 | | 3급 | | 합계 | |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계 |
| 1993 | – | – | 311 | 174 | 156 | 72 | 467 | 246 | 713 |
| 1994 | 78 | 18 | 229 | 146 | 137 | 100 | 444 | 264 | 708 |
| 1995 | 81 | 20 | 193 | 168 | 137 | 116 | 411 | 304 | 715 |
| 1996 | 36 | 11 | 105 | 88 | 54 | 47 | 195 | 146 | 341 |
| 1997 | 98 | 33 | 167 | 147 | 110 | 80 | 375 | 260 | 635 |
| 1998 | 87 | 33 | 122 | 158 | 93 | 100 | 302 | 291 | 593 |
| 1999 | 77 | 51 | 266 | 264 | 96 | 114 | 439 | 429 | 868 |
| 2000 | 70 | 43 | 255 | 330 | 139 | 151 | 464 | 524 | 988 |
| 2001 | 58 | 39 | 421 | 569 | 221 | 275 | 700 | 883 | 1,583 |
| 2002 | 78 | 39 | 310 | 527 | 189 | 286 | 577 | 852 | 1,429 |
| 2003 | 47 | 43 | 269 | 431 | 194 | 386 | 510 | 860 | 1,370 |
| 2004 | 28 | 46 | 232 | 431 | 180 | 400 | 440 | 877 | 1,317 |
| 2005 | 14 | 17 | 160 | 296 | 217 | 688 | 391 | 1,001 | 1,392 |
| 2006 | 43 | 47 | 314 | 478 | 148 | 218 | 505 | 743 | 1,248 |
| 2007 | 11 | 20 | 247 | 448 | 37 | 146 | 295 | 614 | 909 |
| 2008 | 7 | 20 | 342 | 1,744 | 114 | 517 | 463 | 2,281 | 2,744 |
| 2009 | 11 | 23 | 359 | 1,806 | 186 | 546 | 556 | 2,375 | 2,931 |
| 2010 | 20 | 33 | 437 | 1,937 | 177 | 691 | 634 | 2,661 | 3,295 |
| 2011 | 30 | 52 | 436 | 1,826 | 140 | 567 | 606 | 2,445 | 3,051 |
| 누 계 | 874 | 588 | 5,175 | 11,968 | 2,725 | 5,500 | 8,774 | 18,056 | 26,830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10-2-4 〉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 청소년수련시설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청소년수련관 |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수련원 | 1)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br>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유스호스텔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
| 청소년야영장 |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 · 운영자가 동일한 시 · 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br>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 · 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 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
| 청소년특화시설 |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 둔다.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 청소년단체

| 배치대상 | 배 치 기 준 |
|---|---|
| 청소년단체 |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

자료 : 여성가족부(20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라.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013년도부터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소년지도사의 보수교육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3. 청소년상담사

### 가. 청소년상담사의 정의 및 응시자격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증이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차원의 청소년상담 관련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초·중·고·대학의 학생상담소, 청소년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 청소년관련 복지시설,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 청소년업무 지원부서, 사설 청소년상담실, 아동청소년대상 병원, 일반청소년관련 사업체, 근로청소년관련 사업체 등에서 청소년상담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등급별 응시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표 10-2-5 〉 청소년상담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 기준

| 등 급 | 응 시 자 격 기 준 |
|---|---|
| 1급<br>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 분야 또는 그 밖의 상담 관련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를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br>2.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br>3. 2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br>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 2급<br>청소년상담사 | 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br>2.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br>3. 3급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자<br>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정하는 자 |
| 3급<br>청소년상담사 | 1. 대학 및「평생교육법」에 의한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분야 졸업(예정)자<br>2.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자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br>3. 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br>4. 전문대학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하고 전문학사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br>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br>6.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리령이 정하는 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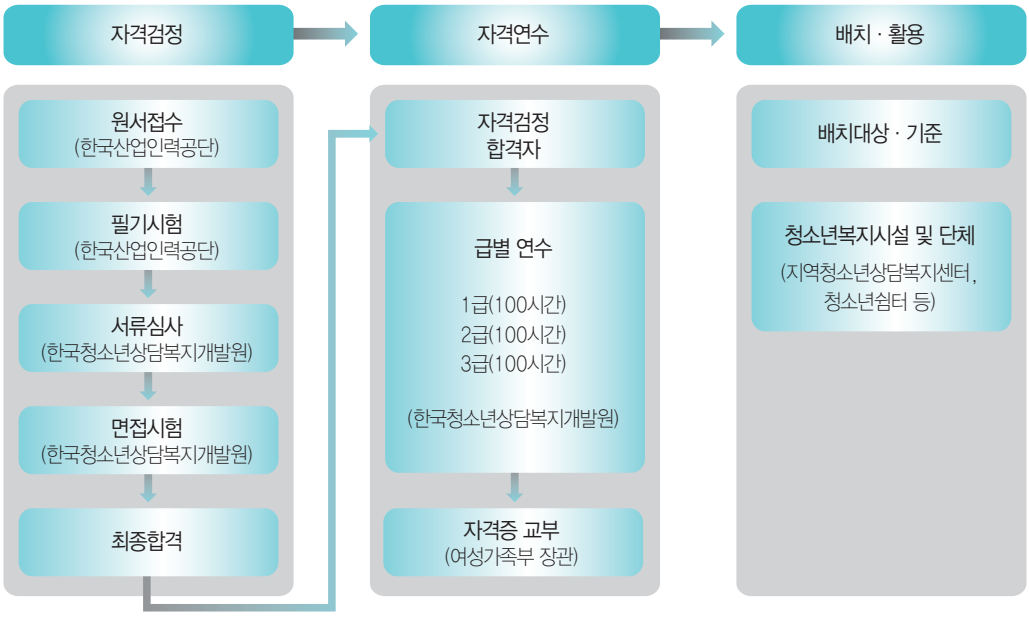
주 : 상담실무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함.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3.

## 나.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와 배치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하고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100시간 의무 연수를 실시하며, 지역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의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활용된다. 이후 청소년상담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일정한 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그림 10-2-3 ] 청소년상담사 양성체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기시험 과목은 1급 5과목, 2급과 3급은 각각 6과목이며,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필기시험 합격 후 응시자격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면접시험을 볼 수 있다. 면접시험에 합격한 자를 자격검정 최종 합격자로 본다.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표 10-2-6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과목 및 방법

| 등 급 | 검 정 과 목 | | 검정방법 | |
|---|---|---|---|---|
| | 구분 | 과 목 | | |
| 1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상담자 교육 및 사례지도<br>• 청소년관련 법과 행정<br>• 상담연구방법론의 실제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 | 선택 | • 비행상담·성상담·약물상담·위기상담 중 2과목 | | |
| 2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청소년 상담의 이론과 실제<br>• 상담연구방법론의 기초<br>• 심리측정 평가의 활용<br>• 이상심리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 | 선택 | • 진로상담·집단상담·가족상담·학업상담 중 2과목 | | |
| 3급 청소년상담사 | 필수 | • 발달심리<br>• 집단상담의 기초<br>• 심리측정 및 평가<br>• 상담이론<br>• 학습이론 | 필기 시험 | 면접 시험 |
| | 선택 | • 청소년이해론·청소년수련활동론 중 1과목 | | |

자료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별표 4.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은 청소년상담 관련 이론과 실제적인 실무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1급은 5과목, 2~3급은 각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격연수 형태는 급별 책무에 맞는 질적 교육을 위하여 이론, 세미나,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0-2-7 〉 청소년상담사 자격연수 과목

| 등 급 | 연 수 과 목 | | |
|---|---|---|---|
| 1급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상담수퍼비전<br>• 청소년문제세미나 | • 청소년상담프로그램개발<br>• 청소년관련법과 정책 | • 청소년위기개입 II |
| 2급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상담과정과 기법<br>• 지역사회상담 | • 청소년 진로·학업상담<br>• 부모상담 | • 청소년 위기개입 I |
| 3급 청소년상담사 | • 청소년 개인상담<br>• 청소년 상담현장론 | • 청소년 집단상담<br>• 청소년 발달문제 | • 청소년 매체상담 |

자료 : 청소년상담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 제31조 별표 2.

## 다. 청소년상담사 양성실적 및 배치기준

청소년상담사 양성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총 9회의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이 있었으며, 청소년상담사 1급 275명, 2급 1,773명, 3급 2,757명 등 총 4,805명의 청소년상담사를 양성하였다.

〈 표 10-2-8 〉 청소년상담사 양성현황

(단위 : 명)

| 연도 | 1급 | | 2급 | | 3급 | | 계 |
|---|---|---|---|---|---|---|---|
|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2003 | 8 | 99 | 22 | 271 | 37 | 247 | 684 |
| 2004 | 4 | 17 | 6 | 84 | 11 | 92 | 214 |
| 2005 | 5 | 16 | 21 | 150 | 19 | 132 | 343 |
| 2006 | 6 | 24 | 17 | 154 | 10 | 196 | 407 |
| 2007 | 0 | 1 | 11 | 166 | 17 | 279 | 474 |
| 2008 | 6 | 41 | 23 | 171 | 39 | 411 | 691 |
| 2009 | 3 | 12 | 20 | 219 | 56 | 461 | 771 |
| 2010 | 1 | 13 | 12 | 128 | 21 | 311 | 486 |
| 2011 | 1 | 18 | 16 | 282 | 27 | 291 | 735 |
| 계 | 34 | 241 | 148 | 1,625 | 237 | 2,520 | 4,805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1).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광역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1급 청소년상담사 또는 2급 청소년상담사 3인 이상을 두고, 3급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에서는 청소년상담사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취득 이후 전문가로서의 윤리성과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 함양을 위하여 2007년부터 보수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청소년기본법 제24조의2에 따라 청소년상담사는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표 10–2–9 〉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현황

(단위 : 명)

| 연 도 | 1급 | 2급 | 3급 | 계 |
|---|---|---|---|---|
| 2007 | 5 | 52 | 78 | 135 |
| 2008 | 16 | 74 | 161 | 251 |
| 2009 | 33 | 122 | 147 | 302 |
| 2010 | 27 | 148 | 307 | 482 |
| 2011 | 21 | 227 | 572 | 820 |
| 계 | 102 | 623 | 1,265 | 1,990 |

자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1).

제3장
# 청소년 단체

## 1.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The 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 in Korea, www.ncyok.or.kr)는 '국제연합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외 청소년단체의 상호연락과 제휴 협조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65년 12월 8일 국내 15개 민간 청소년단체의 협의기구로 창립되어, 청소년문제에 대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도모와 청소년관련 정부부처와 유관 사회단체, 각급 학교 그리고 세계청소년기구와의 연계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활동하고 있다.

1966년 8월 10일에는 세계청소년단체협의회(World Assembly of Youth: WAY) 에 가입하였으며, 1972년 8월 15일에는 아시아청소년단체협의회(Asian Youth Council: AYC)의 창설멤버가 되어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등 청소년육성 운동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육성법과 청소년헌장의 제정 등 청소년정책을 추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청소년육성법'에 따라 1988년 11월 11일 사단법인으로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였고, 이후 2005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청소년단체들의 협의체 역할 및 기능수행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현재 75개 회원 청소년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2012년 기준으로 185만여 명의 청소년회원과 111만여 명의 청소년지도자 등 총 296만여 명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입은 청소년기본법에 준하여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신청을 하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단체가 된다. 회원단체 중에는 7개의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가 가입되어 있는데,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설립목적에 따라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청소년관련 분야의 국제기구(WAY, AYC, UN Youth Unit, AUN, ASEF, EYF, IYC 등) 활동,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남·북 청소년 및 해외교포 청소년과의 교류·지원,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우수 청소년단체와 모범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의 포상, 국제청소년센터 및 청소년교류센터의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2012년을 '새로운 변화, 세계를 향한 우리 청소년'－인성을 갖춘 청소년! 창의적인 청소년! 도전하는 청소년! － 의 해로 정하고, 국가적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기에 청소년활동 활성화 정책이 국정의 주요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회원단체의 역량을 결집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및 청소년 활동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다각도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청소년흡연·음주 및 자살·폭력문제 등 청소년관련 사회 이슈 및 현안에 대한 청소년단체 및 기업, 유관기관과의 연대활동을 위해 다각도의 대정부·대국민 활동을 전개하였고, 청소년정책의 흐름을 읽고 청소년단체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청소년정책연구세미나와 청소년단체 전문연수에도 진력하였다. 청소년참여기구인 청소년회의 및 청소년기자단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청소년분야의 정보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포털서비스의 운영과 오늘의청소년, 청소년단체총람, 사업활동종합보고서 발간 등 출판홍보활동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아울러 회원단체와 청소년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회원단체 협력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여 단체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큰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단체)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찬활동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식생활개선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등도 기업체 및 대외기관과 협력하여 성황리에 추진하는 등 청소년분야에 대한 범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다.

나아가 국제기구 정회원국의 역할 및 국제 청소년관련 기구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글로벌역량 강화에 힘썼으며, 아시아청소년 초청연수와 국제청소년포럼, 한·중·일 청소년 우호의 만남 등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는 다양한 국제교류행사를 추진하여 청소년 및 지도자들이 세계무대에서 넓은 시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국제청소년센터의 활성화와 고객만족을 위해 유스호스텔과 스포츠센터를 효율적 관리·운영하여, 청소년기관단체 연수는 물론 기업체와 유관기관의 각종 행사 등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정을 통한 전 세계 31개국과의 정기적인 청소년교류활동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는 등 국내·외 청소년분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 2.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The Korea Association of Youth Centers, www.youthnet.or.kr)는 전국의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의 발전을 위한 지원, 청소년수련시설 간 연계 협력을 위한 협의와 조정,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활성화 정책 제안 등을 위해 1989년 10월 1일 민간 청소년수련시설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를 창립하였다. 2002년도에 민간 청소년수련시설과 공공 청소년수련시설을 통합하여 조직과 기능을 재정립하였으며,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2004년 2월에 공포된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9조 의거 2005년 2월에 특수법인으로 재출범하였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주요기능으로는 청소년활동 기반 확대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구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청소년활동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청소년활동 참여 극대화를 위한 지역사회 및 학교 등과의 연계사업 개발·운영지원, 청소년활동을 통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실천방안 수립, 우수 마케팅 사례 발굴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유관기관, 청소년지도자 등과 상호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건전한 사회 환경조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지방협회의 구성 및 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지원체제 구축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청소년지도자의 연수·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수련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사업과 국제교류사업,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컨설팅사업,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안전한 청소년활동의 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시설 안전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방과후활동지원센터', 청소년시설의 질적 향상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시설인증평가센터' 등 3개 부설기관을 두어 효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자발적인 운영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안전관리 능력 및 안전관련 시설 여건 및 기능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평가결과를 공포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청소년수련시설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며, 청소년수련시설 고유목적 사업 수행 정도 및 운영실태 평가를 통한 청소년활동의 기반을 강화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설립목적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대국민 신뢰성제고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또한, 주5일 수업 시행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청소년의 진로에 관한 요구가 변화함에 따라, 청소년진로교육 체험활동 프로그램 및 청소년진로교육지도자 양성과정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수련시설의 위상정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는 중앙정부-지역-현장(청소년수련시설)을 매개하는 라우터(router) 기능을 강화하고, 청소년활동의 전문화 및 활성화를 통하여 오늘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국가 성장 동력이 됨은 물론 그들과 함께 땀 흘려 헌신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제4장
#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 1.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가. 설치경위

청소년업무를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조직은 청소년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인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당시 체육부에 설치된 청소년국이다. 이후 체육부의 청소년국은 1991년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개편되었고, 1993년 3월에는 정부조직의 통합에 따라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로 변화되었다.

이후, 1997년 3월 늘어나고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약물에 대한 유통규제와 단속,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시행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1997년 7월 문화체육부에 설치되었다.

청소년조직은 다시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정책실이 청소년국으로 변화되어 문화관광부에 존치되었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변경되어 활동하여 왔다.

이렇게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응능력이 미비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을 시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 정책기능(육성 및 보호)을 통합하는 방안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청소년위원회」 설치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3월 24일에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위한 관계법률(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정부조직법)을 개정·공포하였다. 또한 2005년 4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청소년위원회 직제」를 제정, 「청소년위원회」를 공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이후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8년 3월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보건복지부 아동정책, 여성부 보육정책,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 정책을 통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로 개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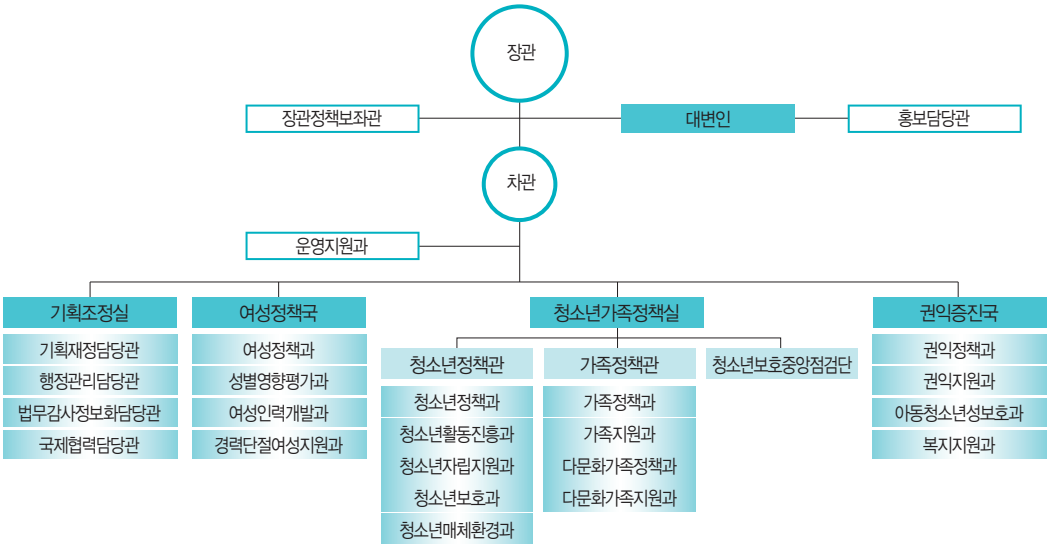
이와 함께 2008년 2월 29일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여성가족부가 수행했던 가족 및 보육정책 기능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한편, 2010년 1월 18일 가족해체 및 다문화가족 등 현안사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가족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가족정책 및 청소년육성·보호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나. 조직구조 및 업무

청소년가족정책실은 청소년가족정책실장,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등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보하고 있다.

[ 그림 10-4-1 ] 여성가족부 조직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조직과 기능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ogef.go.kr)에 잘 정리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 표 10-4-1 〉 청소년정책관의 주요기능

| | |
|---|---|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br>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총괄<br>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br>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의 운영<br>청소년정책 전담 기구·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br>관계 기관 청소년정책의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br>청소년의 달 등 청소년 관련 행사 및 포상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br>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br>청소년 관련 산하기관 및 법인 관리 총괄<br>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종사자의 교육·훈련<br>청소년지도자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인권 보호 등 청소년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br>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구성·운영 지원<br>청소년 정책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의 개발·보급<br>청소년 우대정책의 수립 및 교육·홍보<br>청소년증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br>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br>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 청소년활동진흥과 | 청소년 활동진흥, 역량개발 및 국제교류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br>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운영 지원<br>청소년수련 프로그램·사업의 개발·보급 및 평가<br>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br>청소년의 수련활동 및 문화·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br>청소년 활동정보 제공·지원<br>청소년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br>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연수 및 활동 지원<br>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br>청소년수련시설의 건립·운영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br>국립청소년수련시설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br>학교교육·평생교육과 연계한 청소년 능력개발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br>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등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지원<br>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br>청소년 관련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br>교포청소년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br>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br>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br>소외계층 청소년의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br>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

| | |
|---|---|
| 청소년자립지원과 | 청소년복지에 관한 정책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br>청소년복지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br>청소년복지서비스의 조사·연구 및 통계에 관한 사항<br>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지원 및 청소년복지·지원업무 종사자의 교육·훈련<br>한국청소년상담원의 지도·감독<br>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연수 등에 관한 사항<br>취약계층 청소년의 보호·상담·자립 등에 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br>가출·비취학·학업중단 등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br>북한이탈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비행·폭력 등의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항<br>폭력, 학대 등에 노출된 청소년의 상담, 치료 및 법률 서비스 지원<br>위기 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조정<br>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상담·구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도·지원<br>청소년 전화·청소년 모바일 상담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의 운영<br>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br>청소년의 사회진출 및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 청소년보호과 |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의 총괄 및 계획의 수립·시행<br>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br>청소년보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보호 관계자 교육 등 청소년 보호 중앙점검단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계 부처간 조정·실태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보호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업소, 유해 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br>청소년 유해업소, 유해약물·물건, 유해행위 등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 단속 등에 관한 사항<br>업소·약물·물건 등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 약물 남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예방·치료·재활 지원<br>청소년 유해약물·유해업소 등의 피해예방 및 보호 지원<br>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 관련 시민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 청소년매체환경과 | 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br>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br>매체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의 심의·결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포장·전시·진열 및 판매금지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단속 등의 대책 수립 및 시행<br>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br>매체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환경 개선과 관련된 기관·단체 협력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 및 개선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해매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br>청소년의 건전한 매체 활용능력증진 및 건전한 매체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등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인터넷 중독 등 매체물 역기능 피해의 예방·치료 및 재활 지원 등에 관한 사항<br>청소년 유익매체물 제작·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조직은 청소년정책관과 가족정책관으로 구성되며,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청소년매체환경과 등 5개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의 정원현황은 다음과 같다.

〈 표 10-4-2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정원현황

| 직 급 | 고위공무원 | 3·4급 | 4급 | 4·5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기능직 | 계 |
|---|---|---|---|---|---|---|---|---|---|---|---|
| 정 원 | 2 | 1 | 4 | 2 | 15 | 11 | 6 | 1 | 1 | 3 | 46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다. 청소년정책의 변천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정부의 청소년 정책담당 부서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한다. 청소년 정책기구의 변천과정은 앞의 설치 경위에서 알 수 있다. 청소년정책의 변천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나눌 수 있다.

〈 표 10-4-3 〉 청소년정책의 변천

| 단 계 | 시 기 | 기간 | 특 성 | 명 칭 | 주무부처 |
|---|---|---|---|---|---|
| 1단계 | 1948. 8.~ 1964. 9. | 16년 | 부처별 산발추진 | 부처별 관련업무 추진 | 각 부처 |
| 2단계 | 1964. 10. ~ 1977. 8. | 13년 | 부처차원의 조정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 | 내무부<br>무임소장관실 |
| 3단계 | 1977. 8.~ 1988. 6. | 11년 | 정부차원의 조정 | 청소년대책위원회 | 국무총리실<br>문교부 |
| 4단계 | 1988. 6.~ 2005. 4. | 7년 | 정부차원의 조정,<br>부처차원의 총괄집행 | 청소년육성위원회 | 체육부<br>체육청소년부<br>문화체육부<br>문화관광부/<br>국무총리실<br>(청소년보호위원회) |
| 5단계 | 2005. 4.~ 2008. 2. | 3년 | 청소년조직 통합,<br>단일청소년 전담조직 출범 | 청소년위원회/<br>국가청소년위원회 | 국무총리실 |
| 6단계 | 2008.3.~ 2010. 2. | 2년 | 정부차원 통합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가족부 |
| 7단계 | 2010.3.~ 현재 | | 여성가족부 개편 및 이관 |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

자료 : 여성가족부(2010).

1단계인 1948년 8월부터 1964년까지는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다.

2단계는 1964년 10월부터 1977년까지의 13년간이다. 이 시기에 내무부 및 무임소장관실에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주요 업무는 문제청소년에 대한 규제 및 보호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부처차원의 조정과 보호위주의 정책추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3단계는 1977년 8월부터 1988년까지이며,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2단계의 부처차원의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조정을 시작하게 되었다. 국무총리실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적 조정을 시작하였으며, 1983년 4월부터 1985년 1월까지는 청소년관련 정책이 문교부 소관으로 이관하였다가 다시 1985년 2월 국무총리실로 이전하였다.

4단계는 청소년정책 발전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된 1988년 6월 1일부터 2005년 4월까지로 볼 수 있다. 청소년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청소년관련 전담조직이 설치·운영되기 시작하였는데, 전체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장기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체육부가 관장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설치되고, 체육부 내에 청소년국이 신설되었다. 이는 곧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으며,

이 시기 청소년헌장이 제정(1990년 5월 12일)되었다.

1990년 12월 체육부의 명칭이 체육청소년부로 바뀌면서 청소년업무의 영역이 확장되고 청소년정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수립(1991년 6월 27일)되었고,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는 청소년기본법이 제정(1991년 12월)되었다. 이후 1993년 문화체육부로 통합시 청소년정책조정실은 청소년정책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시기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소년육성5개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1998년 10월 25일 새로운 청소년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청소년정책 기구조정도 함께 단행되었는데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를 따로 두게 되었다. 이후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년 2월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됨에 따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를 전담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로 분리되었다.

제5단계는 2005년 4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단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은 체계적·종합적 정책수행 곤란,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비,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역할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 분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청소년 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소속으로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였으며,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제6단계는 2008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아동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 보건복지가족부로 편입된 후부터 2010년 2월까지를 말한다.

제7단계는 2010년 1월 18일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가족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고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여성정책의 조정·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계를 말한다.

## 2. 청소년 관련업무 추진기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외 중앙정부 부처는 고유기능에 따라 청소년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업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0-4-4 〉 부처별 청소년 관련 업무 현황

| 부처명 | 업무내용 | 주요담당부서 |
|---|---|---|
| 여성가족부 | 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체계성 확립, 체험활동 정보제공체계 마련, 청소년활동종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건전한 놀이문화조성 및 스포츠활동 여건강화, 청소년동아리 활성화, 체험활동프로그램 국가인증제 개선,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사업 개선, 청소년 참여활동 체계 강화, 온라인·미디어 매체 활용 참여 확대,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운동 지원, 청소년자원봉사활동 활성화, 가정의 청소년 인성 교육기능 강화,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인성함양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강화, 청소년의 다양한 국제교류 기회 확대, 국제교류 사업 체계화, 직업체험활동 인프라 확대, 부모교육 확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관련, 부모교육 활성화, 부모교육 이수 인센티브제 도입검토, 청소년 예비부모교육 실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간 협력 강화, 지역별 관련센터간 협조체계 구축, 찾아가는 가족관계 상담 및 가족캠프 운영, 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가족 공유시간 지원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안전망(CYS-Net) 확대·강화,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내 주요 유관기관과의 연계 강화,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체제 구축, 위기 청소년 사례 관리 강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조정,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특별지원을 통한 위기청소년지원 사각지대 해소, 후견인 풀 구성 확대, 가출청소년보호지원강화, 소년원 출원 청소년 교육적 선도 및 자립 지원, 고위기 청소년 치료·재활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학업중단 청소년 상담·교육 등 지원 강화, 청소년한부모 상담·교육·자립지원 강화,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취약·소외계층 청소년 지원 강화,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자립 지원 강화, 다문화청소년 지원체계 강화, 다문화가족 청소년 교육지원 강화,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다문화가족 청소년 자립지원 강화,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강화, 청소년유해매체물 규제·감시 강화 및 기업 의 자율정화 유도, 청소년의 비판적 미디어 이용능력 제고, 음주·흡연·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관리체계 강화,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성범죄자 재범방지조치 강화,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치료 및 재활교육 강화, 청소년 성문화교육 및 성보호 관련 홍보 강화,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프로그램 강화, 청소년활동 시설·단체의 | 청소년정책과,<br>청소년활동진흥과,<br>청소년자립지원과,<br>청소년보호과,<br>청소년매체환경과,<br>가족정책과,<br>가족지원과,<br>다문화가족정책과,<br>권익정책과,<br>권익지원과,<br>아동청소년성보호과 |

| 부처명 | 업무내용 | 주요담당부서 |
|---|---|---|
| 여성가족부 | 안전성 강화,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대책 추진, 청소년친화지수 개발, 청소년친화마을 선정 발표, 청소년권리모니터링 강화,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추진체계 마련, 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실시 및 문화조성, 청소년 연예인 기본권 보호, 청소년활동시설을 지역별 수요에 따라 전략적 확충,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개편, 청소년상담사 전문영역 확대, 청소년상담사 직무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직무보수교육 강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복지 개선, (중앙)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개선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한국청소년상담원지역연계기반구축(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지역 연계기반 구축, (시·군·구) 청소년정책지역협의회 설치·운영, 지역사회 내 서비스 정보종합안내 '가족·청소년 친화자원 전자지도' 제작, 지자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 지자체 정책역량 강화 지원,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관련규정 정비,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기능 및 위상 강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설치 운영, 중앙부처 및 시도별 시행계획 성과평과를 통한 정책의 효과성 제고 | 청소년정책과,<br>청소년활동진흥과,<br>청소년자립지원과,<br>청소년보호과,<br>청소년매체환경과,<br>가족정책과,<br>가족지원과,<br>다문화가족정책과,<br>권익정책과,<br>권익지원과,<br>아동청소년성보호과 |
| 방송통신위원회 | 가정에서의 언어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익광고, 캠페인, 정보통신망상의 언어폭력 제재 강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청소년보호 유해매체 심의시스템 구축, 인터넷 윤리교실 운영 및 인터넷 윤리교육 전문인력 양성, 법·제도 정비 및 관련 심의 규정 강화, 청소년 연예인 방송활동 가이드라인 개발·운영 등 | 방송진흥기획과,<br>네트워크윤리팀 |
| 국가보훈처 | 나라사랑 연수교육, 청소년 보훈캠프, 독립군 체험학교 등 | 나라사랑교육과 |
| 공정거래위원회 | 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 조항 등 신설 | 약관심사과 |
| 국민권익위원회 | 청렴교육 연구학교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 청렴교육과 |
| 교육과학기술부 | 체험활동 정보제공체계 마련,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체계 강화, 학교자치활동강화, 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 봉사활동 수요처의 효율적인 안내 및 지원체제 강화, 학생봉사활동 시간 인정 표준안 개선, 학교의 인성교육 및 올바른 언어습관 교육과정 내실화, 교·사대 창의·인성교육 강화, 인성 및 언어순화 저해 매체환경 대응 강화, 중학교 단계 1회 이상 직업체험 운영, 모든 중고등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 학교급별 진로교육 활동 매뉴얼 개발, 위기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료의 원스톱 지원 서비스, 가출예방교육, 온라인 위기상담, 학업중단 이전 숙려기간을 두어 Wee센터등의 상담 의무화,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조기개입체계 구축, 저소득층 청소년 지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국가장학금 청소년 지원,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사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거점학교 지정, 멘토링 사업 지원, 다문화 특별학급 및 대안학교 설치 운영, 인터넷 중독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 지원강화, 음주·흡연·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도시계획 수립시 유해업소 접촉 최소화 방안 마련,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창의체험활동지원팀,<br>학교문화과,<br>글로벌인턴지원단,<br>교직발전기획과,<br>진로교육과,<br>교육복지과,<br>대학장학지원과,<br>대학장학과,<br>특수교육과,<br>학생건강안전과,<br>학교폭력근절팀 |

| 부처명 | 업무내용 | 주요담당부서 |
|---|---|---|
| 교육과학기술부 | 학생안전강화학교, 배움터지킴이,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 성범죄자에 대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강화, 가·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가해학생 재활치료 대안형 프로그램 개발 운영, 단위학교 학교폭력 대응체제 구축, 학교폭력 매뉴얼 자료 개발 보급, 학교폭력근절 홍보 밥상머리교육 캠페인 추진, 일진경보제 도입 운영, 학교폭력 전문 사이버 상담 지원, 학교폭력대책기획/지역/자치위원회, 배움터지킴이, 등·하교 안심알리미,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조기 회복 및 학교 적응 지원 등, 맞춤형 안전교재 개발 보급, 체험위주 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청소년시설 단체 등에 대한 학교안전공제 가입확대 추진, 교통안전지도 활동비 지원, 워킹스쿨버스 시범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등, 건강증진학교 연구시범학교 확대 운영,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청소년 수면권 보장, 정신건강 선별검사, 학생자살방지대책 수립,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 창의체험활동지원팀,<br>학교문화과,<br>글로벌인턴지원단,<br>교직발전기획과,<br>진로교육과,<br>교육복지과,<br>대학장학지원과,<br>대학장학과,<br>특수교육과,<br>학생건강안전과,<br>학교폭력근절팀 |
| 외교통상부 | 국제협력특강, 지구촌체험관 운영, 견학프로그램, 고등학교 방문 강연프로그램, 글짓기 사진 공모전, 대학생 외교통상부 워크샵, 외교부 견학 프로그램, 주요국제문제특강,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한·미 청소년 교류, 한·일 대학생 교류, 한·중 청소년 교류 | 한국국제협력단홍보실,<br>외교안보연구원<br>외국어교육과,<br>정책홍보담당관실,<br>한국국제협력단 ODA 교육원,<br>한국국제교류재단,<br>재외동포재단 |
| 통일부 | 탈북청소년 중고교 편입학 지원 및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탈북청소년 진로 및 자립지원 강화, 탈북청소년 학교 운영 지원 | 하나원 교육기획과,<br>정착지원과 |
| 법무부<br>(대검찰청포함) | 잡스쿨 프로그램, 보호자교육 대상 '바람직한 부모 역할'등 교육, 위기·비행초기단계 청소년의 보호자 대상 교육, 가족기능 약화에 대응 청소년 보호자가 함께하는 캠프 운영, 청소년안전망 내 유관기관의 연계 활성화, 소년원학생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안정된 사회복귀 및 자립지원, 성범죄 근절 대책 추진, 성범죄 피해 청소년 2차 피해 방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재범방지교육 강화,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에 대한 위치관리 확대, 성폭력 가해 청소년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 입소한 비행소년 대상 성비행예방교육 및 교정·치료프로그램, 소년보호기관 성교육 담당자 전문교육,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 소년과,<br>보호관찰과,<br>보호법제과,<br>형사2과(대검찰청) |
| 국방부 | 청소년 안보체험활동 지원 | 문화정책과 |
| 행정안전부 | 자원봉사 서비스 및 정보 통합제공, 청소년 자원봉사 내실화 등, '아름누리 지킴이' 동아리 구성 운영, 공공부문 유연근무제, 월례휴가제 활성화, 생애주기별예방교육 및 상담, 인터넷중독대응센터확충, 어린이보호구역등에 CCTV설치, 통합관제센터 구축, 자원봉사자들이 지정된 장소에 어린이들과 함께 보행 안전한 등교 지도 | 민간협력과,<br>정보문화과,<br>복무담당관실,<br>정보자원정책과,<br>안전개선과 |

| 부처명 | 업무내용 | 주요담당부서 |
|---|---|---|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현대미술관 청소년대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대상 국악공연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한옥체험업 지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보급,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활동 지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청소년 언어 개선 프로그램, 바른 우리말 선생님 운영, 방송 신문 언어개선 추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규 기준 정비, 청소년 언어 개선프로그램 운영,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청소년 대상 교육, 다문화가정을 위한 동화구연 콘텐츠 제작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 책 꾸러미 돌려보기 사업, 어린이 청소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어린이·청소년 독서진흥, 제5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 대회 개최, 문화바우처, 스포츠바우처, 여행바우처, 학교, 지역사회 기반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등급표시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초중학교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 지원, 청소년의 영상물 건전이용 프로그램 운영, 학생선수 권익보호,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추진, 청소년 기본권 보호 인식 확산 등 | 관광진흥과,<br>국립국악원,<br>국립현대미술관,<br>체육진흥과,<br>장애인문화체육과,<br>체육정책과,<br>국어정책과,<br>국립국어원,<br>게임콘텐츠산업과,<br>영상콘텐츠산업과,<br>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br>국립민속박물관,<br>국립중앙박물관,<br>국립중앙도서관,<br>문화여가정책과,<br>체육정책과,<br>관광정책과,<br>저작권정책과 |
| 고용노동부 | 종합직업체험관 건립, 직장체험, 직업체험, 취업캠프, 청소년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및 국민인식제고, 청년 미취업자에 중소기업 등 인턴기회 제공, 청소년워크넷운영, 취업 희망 고교 졸업예정자 대상 직업교육 확대, 청년 창직·창업 기반 마련, 개인별·단계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자기주도적 참여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밤10시 이후 청소년 아르바이트 단속강화 | 한국잡월드설립추진단,<br>고용차별개선과,<br>청년고용기획과,<br>고용서비스정책과,<br>인적자원개발과,<br>고용지원실업급여과 |
| 농림수산식품부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지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건전한 식생활 확산 | 농어촌사회과,<br>식품산업정책과 |
| 지식경제부 | 교육용로봇 시범사업 지원, 기술꿈나무육성사업, 임베디드SW공모대전(주니어부문), 테크로드 첼린저(청소년 산업기술 체험 프로그램), 한국청소년디자인전람회 | 소프트웨어융합과,<br>로봇산업과,<br>산업기술기반팀,<br>산업기술정책과,<br>디자인브랜드과 |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드림스타트 센터, 아동발달지원계좌 서비스, 시설보호 및 시설퇴소 아동 '자립지원 표준화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청소년가족의 양육지원 강화, 돌봄서비스, 휴식지원 등, 음주에 대한 사회적 관리체계 강화, 아동안전지킴이, 친권상실 요청권자의 범위 확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정신보건서비스 현황 파악,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기관 치료연계 지원 등, UN아동권리협약 이행 점검, 옴부즈퍼슨 활동 지원,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 아동권리과,<br>아동복지정책과,<br>장애인자립기반과,<br>정신건강정책과,<br>건강정책과,<br>질병관리본부 |
| 환경부 |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 녹색협력과 |

| 부처명 | 업무내용 | 주요담당부서 |
|---|---|---|
| 국토해양부 | 학교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활동 마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세주택 지원, 신도시 개발시 청소년 유해업소 격리구획화 시범도입, 성범죄자 공동주택 취업제한 강화 | 해양정책과,<br>주거복지기획과,<br>신도시개발과,<br>주택건설공급과 |
| 경찰청 | 과학수사요원 체험 등, CCTV설치 및 실시간 모니터링, 명예경찰소년단 운영, 성폭력 피해아동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아동안전 지킴이집 운영,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 과학수사센터,<br>여성청소년과,<br>생활안전과 |
| 소방방재청 | 직업체험활동 및 진로상담 프로그램 확대, 소방안전체험관 운영, 국민안전의식 고취 행사 및 대회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소방안전점검 실시, 자율안전관리 의식제고 교육·홍보 | 119생활안전팀,<br>소방제도과 |
| 문화재청 | 고궁청소년문화학교, 문화유산 방문교육 지원 및 으뜸학교 지정·운영, 어린이 자연유산 체험학습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 정책총괄과,<br>활용정책과,<br>국립고궁박물관,<br>궁능문화재과,<br>국립문화재연구소 |
| 농촌진흥청 | 4-H 회원 농촌체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지도정책과 |
| 산림청 | 청소년 산림체험·교육 강화 | 산림휴양문화과 |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 체험학습,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 인력지원과,<br>창업진흥과 |
| 특허청 | 발명교육활성화 | 창의발명교육과 |
| 식품의약품안전청 |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 대책 추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 영양정책과 |
| 계 | 27개 부처 237개 사업 | |

부처별 청소년업무의 특성을 보면 부단위 기관에서는 고유의 정책기능과 관련된 사업 중 청소년이 대상고객인 사업에 일정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단위 기관에서는 정책예산보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성 예산을 지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3. 청소년관련 시·도 행정조직

종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나뉘어서 추진되던 아동, 보육, 청소년 정책이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되어 추진되어 오다 2010년 1월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다. 16개 시·도의 청소년관련 행정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시·도 청소년 업무 총괄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중앙정부와의 청소년업무 연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 각 시·도 청소년 관련 행정조직은 다음과 같다.

〈 표 10-4-5 〉 시·도 청소년관련 행정조직 현황

| 시·도 | 담당 실·국 | 청소년분야 |
|---|---|---|
| 서 울 | 여성가족정책실 | 아동청소년담당관 |
| 부 산 | 여성가족정책관 | 아동청소년담당관 |
| 대 구 | 사회복지여성국 | 여성청소년가족과 |
| 인 천 | 여성가족국 | 아동청소년과 |
| 광 주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
| 대 전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청소년과 |
| 울 산 | 복지여성국 | 여성가족청소년과 |
| 경 기 | 여성가족국 | 아동청소년과 |
| 강 원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청소년가족과 |
| 충 북 | 여성정책관 | 여성정책관 |
| 충 남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
| 전 북 | 복지여성보건국 | 여성청소년과 |
| 전 남 | 보건복지여성국 | 여성가족과 |
| 세 종 | 행정복지국 | 사회복지과 |
| 경 북 | 보건복지국 | 다문화행복과 |
| 경 남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
| 제 주 | 보건복지여성국 | 복지청소년과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4.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정책과제중 세부추진과제로 '민관협력 네트워크인 지자체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성격은 각 시도별로 상이한데, 다음과 같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제주는 심의기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은 자문기구로 운영되고 있고 경기와 전남은 자문기구와 심의기구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 표 10-4-6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성격

| 시 · 도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 시 · 도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성격 |
|---|---|---|---|
| 서 울 | 자문기구 | 강 원 | 자문기구 |
| 부 산 | 심의기구 | 충 북 | 자문기구 |
| 대 구 | 심의기구 | 충 남 | 자문기구 |
| 인 천 | 자문기구 | 전 북 | 심의기구 |
| 광 주 | 심의기구 | 전 남 | 자문/심의 |
| 대 전 | 심의기구 | 경 북 | 자문기구 |
| 울 산 | 자문기구 | 경 남 | 자문기구 |
| 경 기 | 자문/심의(주요시책 및 기금) | 제 주 | 심의기구 |

자료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 5. 정부 산하기관

### 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www.kywa.or.kr)은 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의해 2010년 8월, 청소년활동 현장과 정책을 총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육성하고자 기존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통합되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개발·보급·평가 및 시범운영과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기능(www.all4youth.net, 청소년종합정보서비스)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관련 제 기관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지원·지도·평가를 통해 청소년활동정책의 중앙 전담기관으로서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2012년말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강원 평창),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전남 고흥) 등 총 3개소의 국립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에 2개소(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국립김제농업생명청소년수련원)의 신규 국립수련원이 개원 예정이다.

국가 자격증인 청소년지도사(1급, 2급, 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자격연수, 2013년부터 의무화된 보수교육 운영을 통해 청소년지도사 자격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 욕구 및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 양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연수를 개설·운영함으로써 청소년지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한 전문 연수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자원봉사 포털사이트(dovol.youth.go.kr)를 운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개인·법인·단체 등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활동프로그램, 지도력, 활동환경 활동기록관리가 일정한 기준을 갖추었음을 심사 ·인증하고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관리·제공하는 국가 인증제도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창의성 ·주도성 향상 및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한 인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국제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인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도'의 운영을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한국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간 교류활동의 진흥 및 지원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을 진흥시켜 청소년의 잠재역량 계발과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수련·참여·교류·권리증진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소년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에 이바지하고 있다.

## 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변경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에 따라 2012년 8월 기존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사회 이슈가 되는 청소년문제들을 분석·연구함으로써 문제 해결과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는 등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하고 심각해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 청소년관련 기관에 보급·운영하는 등 청소년 상담기법의 연구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의 전문화와 상담자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를 위탁운영하는 등 국가자격제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친구의 문제를 같은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조언하는 또래상담자 양성교육, 건강한 청소년육성에 목적을 둔 품성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 직무교육 및 전문연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위기청소년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 내 경찰, 학교, 청소년관련 시설들과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을 운영·지원하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효과적 연계를 위하여 컨설팅 지원, 관계자 회의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실시하는 등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지도지원에도 노력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버상담센터 운영과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의 전문상담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등 사이버상담 등 청소년상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 환경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진로를 포기하거나 보호시설 등에 입소된 청소년들을 위해서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학교복귀,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하는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건강한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11박 12일 기숙형 치료학교(RESCUE)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 실시와 인터넷 중독 기숙형 치료학교 운영 등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소년 복지프로그램 개발이 있으며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으로는 CNY-Net 활성화 지원,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 운영 지원, 1388청소년지원단 활성화 지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복귀 지원, 청소년 문제영역별 전문상담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연구연수사업으로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 운영, 청소년 문제영역별 전문상담 운영, 청소년상담사 보수교육 운영, 청소년상담 관련 직원 직무교육 및 연수, 이음부모교육 사업 운영, 솔리언또래상담 사업 운영, 올틴품성계발 사업 운영 등이 있다.

그 외에 2011년 정부 위탁사업 성과를 살펴보면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 내의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운영, 청소년 인터넷 중독 해소 사업,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운영 사업,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상담치료 지원 사업, 청소년희망센터 설치·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사업 「두드림존」,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지도교사 양성, 청소년지도자 대상 맞춤형 권리교육,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 홍보사업, 청소년 건전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방송홍보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제5장

# 청소년관련 연구·개발기관

## 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가. 설립배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www.nypi.re.kr, 원장 이재연)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1989년 7월 1일에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처음 설립되어 청소년정책관련 국가전문연구기관으로 운영되어 왔다.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공포된 청소년기본법 제50조에 의거하여 1993년 1월 1일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1999년 1월 29일부로 「정부출연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었다. 한편, 2005년 국무총리산하 인문사회연구회와 경제사회연구회가 통합됨에 따라 자연적으로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속이 이관되었고, 2007년 5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청소년의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지원 등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을 통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국가발전 동력 창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기초이론연구, 현안정책개발, 프로그램개발, 정책평가지원 등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청소년 단체·시설, 청소년지도자 등 민간부문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정책사업의 방향설정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 및 자문하는 청소년정책사업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주요 기능으로는 첫째, 청소년 생활환경, 의식, 여가, 활동 등의 실태와 변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여 기초통계자료를 구축하는 '기초조사 기능',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연구 및 정책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정책연구·개발 기능', 셋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한 평가 및 자문·

지원과 청소년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정책평가·자문 기능', 넷째, 청소년관련 전문가·학계·기관과의 협력사업과 외국청소년전문기관과의 교류사업을 통해 대내·외적인 협력체계와 정보교류체계를 구축하는 '대외교류·협력 기능', 다섯째, 청소년연구 및 정책개발의 방향제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세미나, 정책협의회, 정보서비스사업을 통한 연구자료 및 정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 및 연구자료 제공 기능' 등이 있다.

## 나. 조직 및 방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1993년 1월 한국청소년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확대·개편될 당시 원장을 중심으로 부원장과 5실 7부의 체계였으나, 1995년 12월 이후 기획조정실, 홍보사업단, 복지환경실, 수련활동실, 정보자료실, 행정실 등 5실 1단 12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구팀제를 도입하여 4실 5부 8팀으로 재개편하였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부설기구로 설치하여 청소년자원봉사중앙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1998년에는 자립경영 기반구축 및 경영혁신 추진을 위해 육성정책연구실, 복지정책연구실,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연구기획부, 총무부 등 2실 1센터 2부로 기구를 축소하였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 기획부와 총무부를 기획조정실과 사무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주요영역별 업무를 팀제로 편성하였으며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사업부서인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분리 운영하는 등 3실 1국 1부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5년 초에는 청소년 생활·의식 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를 통한 청소년 정책 수립의 시계열적 기초자료 축적을 위하여 정책기초연구실을 신설하여 4실 1국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가족부로의 통합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1본부, 1국, 4실, 5팀 체제로 개편하였다. 즉, 기획조정본부에 연구기획팀, 예산기획팀, 대외협력·자격검정팀 등 3팀으로, 감사실 외에 청소년정책연구실, 아동정책연구실, 통계조사연구실 등 3개의 연구실로, 사무국에 총무팀과 경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였다. 이후 2011년에 기획조정본부 내 3개 팀을 연구기획·대외협력팀과 예산기획·성과관리팀 등 2팀으로 개편하였으며, 2012년에는 각 연구실을 활동·역량연구실, 보호·복지연구실, 통계·기초연구실 등 전문분야별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디지털·글로벌 시대 청소년의 창의력과 도전정신 계발을 지원하는 국가 청소년 연구·정책 수립의 중심기관으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첫째, 연구기획의 체계화, 과학적 연구관리 체계 확립, 연구 성과의 정책반영과 사회적 확산을 통하여 연구기획의 체계화와 전문적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둘째, 경영목표의 체계적 추진, 합리적·효율적 조직 구성 및 운영,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 투명하고 적정한 예산관리,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을 통하여 기관경영과

조직운영의 합리화·효율화를 도모하며, 셋째,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청소년정책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청소년연구 국제협력체계 강화를 통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와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다. 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과제는 ❶ 정관상 설립목적 및 정부시책과의 적합성, ❷ 국가의제(National Agenda) 적합성, ❸ 청소년정책의 요구 적합성, ❹ 청소년과 사회적 변화 적합성, ❺ 정책반영도 및 현장 적용 적합성을 고려하고, 연구규모 및 추진전략 기준으로는 ❻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적합성, ❼ 연구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구성 등 7개의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사업은 연구사업(기본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협동연구과제), 연구관련사업, 연구부대사업이 있고, 중앙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소년시설·단체로부터 수탁을 받는 용역연구과제가 있다.

먼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년도 연구사업의 기본연구과제로는 ❶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❷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Ⅱ, ❸ 후기청소년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❹ 주5일 수업제와 청소년활동 연계 방안 연구, ❺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이용 실태 연구, ❻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정책연구, ❼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Ⅰ: 한·중·일·미·핀·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반사업으로는 ❽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연구Ⅰ, ❾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❿ 취약 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연구Ⅲ, ⓫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방안 Ⅲ, ⓬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⓭ 청소년 도덕성발달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⓮ 청소년 미혼부모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Ⅰ, ⓯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⓰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Ⅰ, ⓱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Ⅲ 등이 수행되고 있다. 이중에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 미혼부모 및 가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이 밖에 연구관련사업으로 ❶ 세미나 및 정책협의회, ❷ 청소년 연구관련 교류·협력사업 등 2개 과제를 수행하였고, 연구부대사업으로 ❸ 연구기획사업비, ❹ 학술지·간행물 발간, ❺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❻ 전산·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❼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사업, ❽ 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6개 사업을 수행하였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 및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결정과 수행을 위한 기초연구로

2012년 9월 기준 28개의 용역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그 동안 담당해 온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업무는 2011년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의 위탁사업으로 2010년 6월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센터 조직은 소장을 중심으로 정책전략기획팀, 정책평가연구팀 등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전략기획팀은 중장기 정책 및 청소년정책 의제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슈브리프 및 정책리포트를 발간하고, 주요 정책현안 및 이슈 관련 청소년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하여 범부처적 차원에서 정책입안이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책평가연구팀에서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도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자료 수집 및 분석·평가 체계를 통해 정책협의 및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단체·시설에 대한 최신 동향 및 언론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 유관기관 등의 최신 동향 분석, 주요 자료 번역을 소개하는 등 국내외 청소년정책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 2. 청소년관련 학과 및 민간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더불어 전문적인 청소년지도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1991년도부터 각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들이 신설되기 시작하였다. 2012년 학부, 대학원 등에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을 둔 4년제 대학교, 전문대학, 대학원은 36개교에 달한다. 각 대학별로 학부와 대학원을 모두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학부 또는 대학원만을 설치한 곳도 있다. 한편 평생교육 관련학과 및 사회복지 관련학과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치한 곳도 있다.

4년제 대학에 청소년관련 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경기대학교, 광주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서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초당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려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이상 가나다 순) 등이며, 사이버대학 중 고려사이버대학교, 부산디지털대학교, 세계사이버대학, 한국복지사이버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설치하고 있다. 더불어 목포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에서는 청소년관련 학과를 연계 전공으로, 전문대학은 군장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원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은 경기대학교, 광운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백석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중앙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남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세대학교, 호서대학교(이상 가나다 순) 등에서 석사과정

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경기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명지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앙대학교, 한서대학교, 호서대학교는 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대학과 대학원의 청소년관련 학과나 전공의 설치 또는 청소년관련 학과로의 독립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이는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 관련 분야의 발전과 확장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창출하며,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들도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학회는 한국청소년학회,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이 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청소년분야 일반의 공익을 위한 사단법인으로 청소년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수행하고 청소년(관련)학 분야의 학술연구 및 연구자 상호간의 전문적 지식과 정보 교환을 통하여 청소년학의 정립과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1년 설립되었다. 한국청소년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학연구'라는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미래를여는청소년학회는 2004년 젊은 학자들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의 정체성 확립과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고 연구자 상호간의 정보교환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2004년 학회 창립과 더불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인 '미래청소년학회지'를 발간하였고, 매년 4회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춘계,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청소년시설 및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학술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시설 및 환경을 보급하고 기존 청소년시설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새로운 청소년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2년 창립하였다.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인 '청소년시설환경' 학술지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고, 국제교류/봉사활동, 국제심포지움, 학술대회, 작품집 발간, 월례세미나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1998년에 청소년복지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창설된 학회이다. 한국청소년복지학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청소년복지연구' 학술지를 연 4회 발간하고, 춘계와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부정기적으로 학술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학회는 아니지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인 '한국청소년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편,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문제연구소, 농촌청소년문화연구소, 청소년교육전략21, 한국청소년정책학회, 한국시민청소년학회 등 청소년관련 민간 연구기관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청소년학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이러한 독립 연구기관 및 대학 부설, 단체 부설 등의 민간 연구기관도 늘어날 전망이다.

## 3.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세계 각 국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 및 개발관련 기관간의 협의회로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WARDY: World Associ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Youth)가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이 협의회의 설립목적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연구개발기관간 정보와 학술교류 확대를 통하여 서로 협력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연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21세기에 추구되어야 할 지구촌 공동체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에 있다.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1995년 11월 24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일본청소년연구소, 중국 사회과학원(청년사회학연구회)은 이러한 취지의 세계협의기구 구성에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1997년 10월 7일 중국,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6개국의 8개 기관 대표들이 한국에 모여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창립기념으로 '청소년폭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의 주요 사업은 ❶ 청소년연구 및 개발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 ❷ 청소년 및 청소년 전문가의 상호방문 추진, ❸ 청소년 관련 국제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회원국 간의 상호교류와 연대 강화, ❹ 청소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상호교환 등이다. 주요 사업의 추진실적은 국제심포지엄과 공동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국제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제1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1997년 10월 7일 '청소년폭력의 국제비교'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1998년 9월 23일에는 '21세기 새로운 청소년정책 방향 모색'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한·중·일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1999년 10월 11일에는 중국 북경에서 '21세기를 지향한 청소년과 청소년연구'란 주제로 제2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그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0일에는 제3차 WARDY 국제학술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데 주제는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의 사회변화와 청소년육성정책수립의 과제– 청소년의 권리와 사회참여 증진을 중심으로'이었다.

2002년 6월 20일에는 서울에서 '글로벌시대 청소년의 생활실태와 미래 전망'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2004년 11월 11일에는 '동북아의 미래와 청소년 역할'이란 주제로 역시 서울에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또한 2005년 10월 11일에는 과천에서 '위기청소년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2006년 9월 6일에는 서울에서 '사이버상의 청소년 보호와 역량강화'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2007년에는 '청소년의 가족 내 사회화과정', '한민족 청소년과 글로벌 네트워크', '일본 청소년의 사회화과정 연구 포럼' 등의 세미나가 개최되었고, 2008년에는 '청년기의 사회화에 대한 한·일 비교', 2009년에는 '한·일 청소년 연구포럼: 노동, 교육 그리고 가족에 대한 한·일 비교', '독일의 장애아동, 청소년지원정책',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아시안 아메리칸의 인종적 경험', '선진국의 장애아동, 청소년 지원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2010년에는 '미래시민으로서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과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고, 2011년에는 '한–핀란

드 공동세미나', '한–사우디아라비아 국립청소년연구센터 공동포럼', '한–중 청소년정책 국제세미나' 등이 개최되었다.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가 수행한 공동연구는 1997년 '청소년의식에 관한 한·중·일 국제비교연구', 1999년 '청소년 성공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중·일을 중심으로', 2000년 '새천년 청소년 생활실태와 의식에 관한 국제비교연구–한·미·일·프를 중심으로', 2001년 '주요 외국의 청소년정책 동향 연구' 등이 있다. 2006년에는 '고교생의 생활의식과 친구관계에 대한 국제비교조사'가, 2007년에는 '고교생의 소비행동 및 소비의식에 관한 국제의식 연구', '고교생의 생활의식 국제비교 연구', '초등학생의 생활습관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2006년~2008년의 3개년에 걸쳐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가 공동 수행되었다. 2009년에는 '조기유학청소년의 심리사회적발달과 정책방안 연구'를 공동수행하였으며, 2006년~2010년의 5개년에 걸쳐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 '조기유학청소년의 적응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가 공동으로 추진되었고, 2010년~2011년에는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 6개국 8개 기관이 가입한 이후, 2012년 기준 총 10개국 12개 기관이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 표 10–5–1 〉 세계청소년연구개발협의회 회원현황

| 국가 |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한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 www.nypi.re.kr | 82-2-2188-8800 |
| 중국 | 중국청년정치학원 (Chinese Youth University for Political Science) | 100089 25 Xisanhuan Beilu, Haidian District, Beijing, China | | 86-10-8856-7101 |
| | 중국상해청년관리간부학원 (Shanghai Youth Administration Official College) | No. 574 West Jiangwan Road, Shanghai, China | | 86-21-65405700 |
| 일본 | 일본청소년연구원 (Japan Youth Research Institute) | 15,Kasumigaoka-cho. Shinjuku-ku, Tokyo160, Japan | www1.odn.ne.jp/youth-study | 81-3-3475-2535 |
| | 게이오대학21세기연구소 (KeioUniversity21COE-CCC) | 6th Floor, Mita Toho Building 3-1-7 Mita, Minato-ku Tokyo 108-0073, Japan | | 81-3-5427-1045 |

| 국가 | 기관명 | 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
|---|---|---|---|---|
| 싱가폴 | 국립청소년청<br>(National Youth Council) | 113 Somerset Road<br>National Youth Centre,<br>Singapore 238165 | | 65-6 -734-4233 |
| 호주 | 청소년연구센터<br>(Youth Research Centre) | Youth Research Center<br>Faculty of Education<br>University of Mel-bourne Victoria 3010<br>Australia | | 61-3-8344-9633 |
| 독일 | 포츠담대가족아동연구소<br>(Potsdam University Family-Children Research Center International Council on National Youth) | Burgwall 15, 16727<br>Oberkrämer OT<br>Vehlefanz | www.sturzbecher.de | 49-(0)3304-397010 |
| 영국 | 영국국립청소년청<br>(The National Youth Agency) | 17-23 Albion Street,<br>Leicester LEI 6GD | | 44-1-16-285-3700 |
| 핀란드 | 핀란드연구네트워크<br>(The Finnish Research Network) | The Finnish Youth Reseach Society<br>Olympiastadion<br>Etelaarre 00250,<br>Helsinki, FINLAND | | 358-0-348-24323 |
| 미국 | 아이오와대<br>국립가족자원센터<br>(National Resource Center for Family) | University of Iowa<br>School of Social Work<br>100 Oakdale Campus,<br>W206 OH Iowa City, IA<br>52242-5000 | www.uiowa.edu/ | 1-319-335-4965 |
| 사우디 아라비아 | 국립청소년연구센터<br>(National Center For Youth Studies, King Saud University) | | | 96614670381 |

자료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제6장

# 청소년정책 재정기반

## 1. 청소년정책 재정 현황

2012년도 청소년정책 예산은 총 1,470억원으로 일반회계 47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8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1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10-6-1 〉 연도별 청소년예산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 문화부 청소년국 | 청소년 보호 위원회 | 국가 청소년 위원회 | 청소년육성기금 | | 광특회계 (균특) | 예비비 | 계 |
|---|---|---|---|---|---|---|---|---|---|---|
|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일반회계 | 육성사업 | 시설융자 | | | |
| 2003 | – | – | 25,084 | 7,077 | – | 13,979 | 7,000 | 36,607 | – | 89,747 |
| 2004 | – | – | 23,149 | 8,817 | – | 41,610 | 6,000 | 30,248 | – | 109,824 |
| 2005 | – | – | 10,872 | 9,950 | – | 52,436 | 6,000 | 37,643 | 8,138 | 125,039 |
| 2006 | – | – | – | – | 19,825 | 67,727 | 4,500 | 45,442 | 321 | 137,815 |
| 2007 | – | – | – | – | 35,388 | 74,812 | | 43,128 | – | 153,328 |
| 2008 | – | 116,433 | – | – | – | 75,182 | | 39,251 | – | 230,866 |
| 2009 | – | 182,641 | – | – | – |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 | 36,522 | – | 300,904 |
| 2010 | 20,885 | – | – | – | – | 90,652 | | 34,215 | – | 145,752 |
| 2011 | 21,671 | – | – | – | – | 73,491 | | 49,417 | – | 144,579 |
| 2012 | 47,435 | – | – | – | – | 58,088 | | 41,477 | | 147,000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 6,240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61백만원)

일반예산은 청소년 인권증진 지원,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청소년자립지원,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청소년활동진흥원운영지원, 한국청소년상담원운영지원 등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참여지원,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건립지원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는 청소년시설 건립 및 개보수 등에 사용되고 있다.

## 2.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현황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기본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청소년기본법 제54조)은 정부의 출연금,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 제3항 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출연금,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에 의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용도(청소년기본법 제55조)는 ❶ 청소년활동의 지원, ❷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❹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❺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❻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원, ❼ 청소년 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❽ 기금 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❾ 기타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청소년육성에 관한 홍보, 청소년의 포상 및 격려, 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그 밖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청소년육성기금의 주요 조성재원은 수입 재원으로는 기금 조성 초기에는 정부출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액 등이 있었으나, 현재는 경륜경정사업 법정 분담금이 유일한 수입 재원이고 그나마 2011년에 경륜경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수익금의 30%를 받던 것이 19.5%로 축소되어, 기금의 안정적인 확충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2012년까지의 누계 조성규모는 683억원이며, 재원별로는 정부출연금 350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입금 765억원, 경륜사업수익법정 출연금이 3,493억원, 복권기금전입금 435억원, 이자수입 등 운용수익 적립금이 2,246억원 등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육성기금 사용액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청소년육성 사업 지원에 6,591억원, 기타경비 등에 11억원을 합하여 총 6,607억원을 사용하였으며, 순 조성액은 2012년 기준으로 683억원이다. 기금설치 원년도인 1989년도에는 기금조성액이 극히 빈약하여 청소년 단체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지만, 1990년도에는 8억 5천만원, 1991년도에는 10억 4천만원, 1992년도에는 15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점차 지원액이 급증하였다. 즉, 1994년에는 90억원을,

1999년에는 126억원을 지원하였고, 이후 2004년 407억원, 2005년에는 488억원, 2006년에는 689억원, 2007년에는 748억원, 2008년에는 752억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613억원, 2010년에는 698억원, 2011년에는 724억원, 2012년에는 565억원을 청소년시설 및 단체지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 표 10-6-2 〉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 연도 | 조성액(A) | | | | | | 사용액(B) | | | | 순 조성액 (A-B) | 계 |
|---|---|---|---|---|---|---|---|---|---|---|---|---|
| | 정부 출연금 | 민간 출연금 | 경륜 사업 수익 법정 출연금 | 복권 기금 전입금 | 이자 등 기타 | 계 | 청소년 사업 지원 | 기타 경비 | 기금 전출 | 계 | | |
| 1989 | - | 5,000 | - | - | 206 | 5,206 | 132 | - | | 132 | 5,074 | 5,074 |
| 1990 | - | 5,000 | - | - | 1,363 | 6,363 | 847 | 3 | | 850 | 5,513 | 10,587 |
| 1991 | - | 5,010 | - | - | 2,299 | 7,309 | 1,031 | 9 | | 1,040 | 6,269 | 16,856 |
| 1992 | - | 8,150 | - | - | 3,415 | 11,565 | 1,507 | 12 | | 1,519 | 10,046 | 26,902 |
| 1993 | 10,000 | 5,000 | - | - | 3,965 | 18,965 | 1,613 | 6 | | 1,619 | 17,346 | 44,248 |
| 1994 | - | 11,000 | - | - | 5,285 | 16,285 | 9,034 | 13 | | 9,047 | 7,238 | 51,486 |
| 1995 | 10,000 | 10,000 | - | - | 7,749 | 27,749 | 4,484 | 15 | | 4,499 | 23,250 | 74,736 |
| 1996 | 10,000 | 10,000 | - | - | 8,739 | 28,739 | 5,415 | 8 | | 5,423 | 23,316 | 98,052 |
| 1997 | 5,000 | 10,000 | 111 | - | 11,598 | 26,709 | 8,209 | 6 | | 8,215 | 18,494 | 116,546 |
| 1998 | - | 4,400 | 5,888 | - | 15,453 | 25,741 | 6,245 | 6 | | 6,251 | 19,490 | 136,036 |
| 1999 | - | 3,000 | 6,251 | - | 13,271 | 22,522 | 12,547 | 7 | | 12,554 | 9,968 | 146,004 |
| 2000 | - | - | 11,836 | - | 11,201 | 23,037 | 9,905 | 7 | | 9,912 | 13,125 | 159,129 |
| 2001 | - | - | 32,320 | - | 13,160 | 45,480 | 7,284 | 84 | | 7,368 | 38,112 | 197,241 |
| 2002 | - | - | 46,920 | - | 10,094 | 57,014 | 9,443 | 21 | | 9,464 | 47,550 | 244,791 |
| 2003 | - | - | 70,805 | - | 14,725 | 85,530 | 14,363 | 31 | | 14,394 | 71,136 | 315,927 |
| 2004 | - | - | 40,786 | - | 14,686 | 55,472 | 40,670 | 72 | | 40,742 | 14,730 | 330,657 |
| 2005 | - | - | 24,623 | - | 19,710 | 44,333 | 48,721 | 57 | | 48,778 | -4,445 | 326,212 |
| 2006 | - | - | 14,330 | - | 16,878 | 31,208 | 68,857 | 48 | | 68,905 | -37,697 | 288,515 |
| 2007 | - | - | 2,846 | 735 | 17,634 | 21,215 | 74,750 | 62 | | 74,812 | -53,597 | 234,918 |
| 2008 | - | - | 17,489 | 255 | 8,141 | 25,885 | 75,138 | 45 | | 75,183 | -49,298 | 185,620 |
| 2009 | - | - | 15,672 | 860 | 11,085 | 27,617 | 61,060 | 262 | 22 | 61,344 | -33,727 | 151,893 |
| 2010 | - | - | 19,312 | 2,964 | 5,947 | 28,223 | 69,473 | 113 | 213 | 69,799 | -41,576 | 110,317 |
| 2011 | | | 19,312 | 4,318 | 4,905 | 28,535 | 71,985 | 94 | 306 | 72,385 | -43,850 | 66,467 |
| 2012 (계획) | | | 20,813 | 34,417 | 3,060 | 58,290 | 56,386 | 74 | 30 | 56,490 | 1,800 | 68,267 |
| 계 | 35,000 | 76,560 | 349,314 | 43,549 | 224,569 | 728,992 | 659,099 | 1,055 | 571 | 660,725 | 68,267 | |

주 : 2009~2012년 사업비는 시설비(건설중인 자산에 들어간 비용)를 제외한 금액.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부 록

## 〈 부록 1 〉 청소년관련 학과(전공) 현황

(2012년 10월 기준)

| 학 교 | 학과명 [전공명] | 주 소 |
|---|---|---|
| 경기대학교 | 교육대학원 청소년지도상담교육 전공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94-6<br>(우) 442-760<br>[학과사무실 : 031-249-9490] |
| |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박사) | |
| | 사회과학대학 청소년학 전공 | |
| 고려사이버대학교 | 상담·교육·청소년학부 청소년학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21<br>(우) 110-800<br>[학과사무실 : 02-6361-1862] |
| 광운대학교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br>아동청소년지도복지전공(석사) |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길 26<br>(우) 139-701<br>[학과사무실 : 02-940-5411] |
| 광주대학교 | 보건복지교육대학 청소년상담 평생교육과 |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br>(우) 503-703<br>[대학원실 : 062-670-2057] |
| 군장대학교 | 청소년교육지도과 |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군장대길 13<br>(우) 573-709<br>[학과사무실 : 063-450-8270] |
| 나사렛대학교 | 사회복지학부 청소년복지과 | 충청남도 천안시 쌍용동 산44-1<br>(우) 330-718<br>[학과사무실 : 041-570-7773] |
| 대구과학대학교 | 아동청소년지도과 |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 1동 390<br>(우) 702-723<br>[학과사무실 : 053-320-1139] |
| 대구한의대학교 | 일반대학원 청소년복지상담학과(석·박사) | 경상북도 경산 유곡동 290번지<br>(우) 712-230<br>[학과사무실 : 053-819-1348] |
| | 웰빙복지대학 청소년교육상담과 | |
| 대원대학교 | 사회실무계열 청소년지도과 | 충청북도 제천시 대학로 316<br>(우) 390-702<br>[학과사무실 : 043-649-3143] |
| 동서대학교 | 사회복지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2동 산69-1<br>(우) 617-716<br>[학과사무실 : 051-320-1908] |
| 동의대학교 | 교육대학원 청소년 교육·상담 전공(석사)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번지<br>(우) 614-714<br>[학과사무실 : 051-890-2186] |
| 명지대학교 | 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박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br>(우) 120-728<br>[학과사무실 : 02-300-0620] |
| | 사회과학대학 청소년지도학과 | |

| 학 교 | 학과명 [전공명] | 주 소 |
|---|---|---|
| 명지전문대학 | 교육복지행정학부 청소년교육복지과 |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2동356-1<br>(우) 120-776<br>[학과사무실 : 02-300-1207] |
| 목포대학교 | 청소년지도전공[연계전공] |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br>(우) 534-729<br>[학과사무실 : 061-450-2170] |
| 백석대학교 | 상담대학원 청소년상담학(석사) |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115<br>(우) 330-704<br>[학과사무실 : 041-550-2527] |
| | 사회복지학부 청소년학과 | |
| 부산디지털대학교 | 상담치료학부 가족청소년상담학전공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167<br>(우) 617-701<br>[학과사무실 : 051-320-2762] |
| 서울여자대학교 | 청소년학전공[연계전공]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26<br>(우) 139-774<br>[학과사무실 : 02-970-5024] |
| 성균관대학교 |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3가 53<br>(우) 110-745<br>[학과사무실 : 02-760-0525] |
| | 사회과학대학 아동 · 청소년학과 | |
| 세계사이버대학 | 사회복지계열 청소년복지상담학과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376-2<br>(우) 464-895<br>[학과사무실 : 031-785-3435] |
| 순천향대학교 | 일반대학원 학연산협동과정 청소년교육학과(석·박사)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산53-1<br>(우) 540-742<br>[학과사무실 : 041-530-1146] |
| | 일반대학원 교육과학과 청소년상담 전공(석·박사) | |
| | 인문과학대학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
| 숭실대학교 | 사회복지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전공(석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br>(우) 156-743<br>[대학원실 : 02-820-0277] |
| 영산선학대학교 | 원불교학부 청소년학 |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길용리 20-2<br>(우) 513-902<br>[학과사무실 : 061-350-6081] |
| 전북대학교 | 교육대학원 청소년교육전공(석사)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br>(우) 561-756<br>[대학원실 : 063-270-2739] |
| 전주대학교 |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200<br>(우) 560-759<br>[학과사무실 : 063-220-2693] |
| 중앙대학교 |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학과(석·박사)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221<br>(우) 156-756<br>[학과사무실 : 02-820-5163] |

| 학 교 | 학과명 [전공명] | 주 소 |
|---|---|---|
| 초당대학교 | 아동청소년상담학과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419<br>(우) 534–701<br>[학과사무실 : 061–450–1619] |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 청소년문화복지과 | 충청북도 청원군 내수읍 덕암길 10<br>(우)363–794<br>[학과사무실 : 043–210–8380] |
| 평택대학교 | 상담대학원 아동청소년상담학과(석사) |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br>(우) 450–701<br>[학과사무실 : 031–659–8011] |
| | 사회복지대학원 청소년복지학과(석사) | |
| | 일반대학원 청소년학과(석사) | |
| | 청소년복지학과 |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청소년교육과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br>(우) 110–791<br>[학과사무실 : 02-3668-4400] |
| 한국복지사이버대학 | 청소년복지학과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46–10<br>(우) 712–881<br>[학과사무실 : 1644–9775] |
| 한국체육대학교 | 생활체육대학 스포츠청소년지도학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륜동 88–15<br>(우) 138–763<br>[학과사무실 : 02–410–6753] |
| 한남대학교 | 사회문화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석사)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 133<br>(우) 306–791<br>[대학원실 : 042–629–7226] |
| 한려대학교 | 청소년복지학과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199–4<br>(우) 545–704<br>[학과사무실 : 061–760–1181] |
| 한서대학교 | 일반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석·박사) |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br>(우) 356–706<br>[학과사무실 : 041–660–1049] |
| | 인문사회학부 아동청소년복지학과 | |
| 한세대학교 | 치료상담대학원 상담학과 아동청소년상담전공(석사)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604–5<br>(우) 435–742<br>[대학원실 : 031–450–5125] |
| 호서대학교 | 문화복지상담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사) |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세출리 165<br>(우) 336–795<br>[학과사무실 : 041–560–8140] |
| | 일반대학원 청소년문화상담학과(석·박사) | |
| | 인문대학 청소년문화·상담학과 | |

## 〈 부록 2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협력)회원단체 현황

(2012년 9월 기준, 단위 : 명)

|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 년월일 | 총인원수 | 청소년 회원수 | 설립목적 |
|---|---|---|---|---|---|---|
| | 직위 | 성명 | | | | |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차광선 | 1965.12. 8 | 2,964,770 (1,850,894) | | 바람직한 청소년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 상호간의 협력 및 교류와 지원 |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이사장 | 정신철 | 1996.12.30 | 24,088 | (22,530) | 아동·청소년 육성, 복지, 자선사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존엄성 실현 |
| 국제청소년교류연맹 | 총재 | 유정수 | 2009. 4. 7 | 5,914 | (3,554) | 청소년의 국제적 이해와 역량 함양 |
| 국제청소년연합 | 회장 | 도기권 | 2001.5.31 | 13,467 | (8,102) | 국제교류를 통한 국제화 시대 주도 청소년 양성 |
| 숲사랑소년단 | 이사장 | 최영길 | 1991. 7.24 | 25,663 | (23,439) | 국토보전을 위한 나무심기 운동 전개 및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
| 그린훼밀리·그린스카우트 연합 | 총재 | 정진해 | 1994.10.12 | 30,021 | (1,217) | 청소년 환경교육 및 훈련으로 자연보호 정신 함양 |
| 기독교청소년협회 | 이사장 | 정진해 | 1995.10.30 | 13,147 | (13,147) | 기독교정신에 의한 청소년상담 교육으로 인재양성 |
| 남북청소년교류연맹 | 총재 | 정경석 | 2000.11.20 | 19,755 | (15,472) | 남북청소년 동질성회복 프로그램운영 및 공동체의식함양 |
| 농촌·청소년미래재단 | 이사장 | 류태영 | 2002. 6.27 | 405 | (150) |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줌 |
| 대건청소년회 | 이사장 | 이용훈 | 1998.9.21 | 3,000 | 2,900 | 건전 사회기풍 조성 및 국가와 사회발전에 필요한 올바른 청소년육성 |
| 대한불교청년회 | 회장 | 정우식 | 1920. 6.20 | 70,478 | (9,672) | 불타의 가르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심신계발과 사회정화 |
| 대한적십자사 청소년적십자(RCY) | 총재 | 유중근 | 1953. 4. 5 | 162,401 | (229,592) |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현 및 세계평화와 인류복지 공헌 |
|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 본부장 | 김찬호 | 1929.12. 1 | 17,816 | (17,104) | 종교, 지육, 체육, 봉사생활로 바른 교회생활 기여 |
|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 총재 | 김영희 | 1997.12.30 | 17,643 | (26,742) | 충효예의 연구와 교육 및 수련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 |
| 비로자나청소년협회 | 회장 | 김우식 | 2000. 7.24 | 5,851 | (5,767) | 청소년에게 불교이념을 통한 인류공영에 이바지 |
| 삼동청소년회 | 이사장 | 안민순 | 1989. 1.18 | 7,623 | (6,570) | 일원주의 사상의 도덕적 품성 함양과 세계평화에 기여 |
| 서울가톨릭청소년회 | 이사장 | 조규만 | 1999. 9. 1 | 9,800 | (7,300) | 가톨릭정신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 |
| 성산청소년효재단 | 이사장 | 최성규 | 1994. 2.28 | 1,836 | (4,635) | 기독교 신앙에 입각하여 보호·지도 육성 및 가치관 확립 |

|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 년월일 | 총인원수 | 청소년 회원수 | 설립목적 |
|---|---|---|---|---|---|---|
| | 직위 | 성명 | | | | |
| 세계도덕재무장 (MRA/IC)한국본부 | 총재 | 김상원 | 1948. 6.21 | 78,476 | (76,078) | 절대 정직·순결·무사·사랑으로 청소년 건전지도 육성 |
|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 이사장 | 안구현 | 1992. 6.29 | 744 | (500) | 지·덕·체가 균형잡힌 청소년육성과 한민족의 주체성 전파 |
| 아이섹코리아 | 중앙 위원장 | 김가영 | 1962.11.26 | 514 | (493) | 미래의 유능한 경영인 양성과 국제적 교류 |
| 어린이재단 | 회장 | 이제훈 | 1948.10.15 | 205,107 | (59,937) |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토록 보호 및 지원 |
| 우리누리청소년회 | 이사장 | 이만희 | 1997. 4. 8 | 1,600 | (400) |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해 수련활동제공 및 미래지향적 청소년 육성 |
|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 회장 | 최해상 | 1977. 3.17 | 2,500 | (460) | 선도활동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건전 청소년 육성 |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사무 총장 | 전택수 | 1954. 1.30 | 9,061 | (5,500) | 교육, 과학, 문화보급 및 국제교류를 통한 인류복지증진 |
| 인구보건복지협회 | 회장 | 김영순 | 1961. 4. 1 | 45,285 | 0 | 가족계획, 모자보건, 청소년 성교육 및 가정복지 도모 |
| 청소년과사람사랑 | 이사장 | 양종수 | 1994.12.22 | 16,899 | (4,135) | 청소년 수련활동 및 문화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
| 청소년교화연합회 | 총재 | 박현성 | 1966. 4.16 | 47,577 | (257) | 청소년불자 신행활동 지도와 청소년육성 |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이사장 | 박철원 | 1995.10.31 | 6,212 | (1,071) | 청소년수련활동·선도·유해환경정화·복지증진 |
| 탁틴내일 | 상임 대표 | 이현숙 | 1995. 3. 1 | 31,468 | (8,318) |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총재 | 윤점열 | 1996. 9.30 | 16,066 | (50,355) | 민족의 주체성 확립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 |
| 한국걸스카우트연맹 | 총재 | 김경옥 | 1946. 5.10 | 215,821 | (130,837) | 소녀와 젊은 여성의 잠재력 계발과 민주시민 자질 함양 및 봉사 실천 |
|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 이사장 | 장영달 | 1948. 4.25 | 1,514 | (500) | 참된 인간세계 실현위한 그리스도의 화해와 교회일치 |
| 한국라보 | 이사장 | 이재정 | 1973.12.31 | 8,396 | (3,920) | 각국 간의 상호민박을 통한 친선 문화교류 |
|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 이사장 | 엄익수 | 1997. 7.15 | 92,816 | (36,219) | 청소년의 지역사회 봉사와 국제간의 이해 증진 |
| 한국불교청년지도자회 | 회장 | 김상백 | 1911. 6.15 | 35,821 | (31,900) | 불타의 정신계승 및 인격도야와 청소년 육성 |
| 한국B.B.S중앙연맹 | 총재 | 홍문종 | 1964. 9. 5 | 33,939 | (14,943) | 우애와 봉사의 이념아래 청소년 보호와 지도 |
| 한국4-H본부 | 회장 | 이홍기 | 1954.11. 9 | 74,789 | (66,647) | 4-H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소양과 기술 지원 |

|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 년월일 | 총인원수 | 청소년 회원수 | 설립목적 |
|---|---|---|---|---|---|---|
| | 직위 | 성명 | | | | |
| 한국스카우트연맹 | 총재 | 함종한 | 1922.10. 5 | 371,314 | (187,477) | 민주시민 자질향상 도모와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 |
| 한국YWCA연합회 | 회장 | 차경애 | 1922. 4.20 | 93,363 | (8,085) | 젊은 여성의 기독생활 실천 및 평화와 정의사회 건설 |
| 한국YMCA전국연맹 | 이사장 | 차선각 | 1903. 4. 3 | 130,448 | (2,358) | 기독신앙을 바탕으로 한 민중의 복지향상과 새문화 창조 |
| 한국우주소년단 | 총재 | 서상기 | 1989. 3.11 | 57,788 | (56,548) | 우주시대 인재양성 및 정보화 선진과학입국 실현 |
| 한국웃음운동 청소년진흥회 | 회장 | 김성업 | 2009.12.16 | 5,694 | (3,691) | 웃음운동 캠페인 활동 및 교육을 통해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 |
| 한국유스호스텔연맹 | 총재 | 유재건 | 1967. 4.17 | 65,426 | (1,990) | 야외여행활동을 통한 풍부한 지식과 건전 청소년육성 |
|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 총재 | 이군현 | 2002. 3.22 | 5,485 | (2,991) | 발명영재의 발굴지원을 통해 유능한 발명인 육성 |
| 한국청소년보호육성회 | 대표 | 송원진 | 1994. 7.22 | 8,727 | (7,741) |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실천 |
|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 회장 | 최노사 | 1991. 5. 4 | 36,880 | (22,109) | 복음선교와 후원활동을 통한 청소년 육성 |
| 한국청소년봉사단연맹 | 중앙회장 | 유주영 | 2011. 4.19 | 14,446 | (16,250) | 국제사회에 기둥이 될 청소년세대를 육성하는데 기여 |
|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 회장 | 유창원 | 2001.12.13 | 4,652 | (2,554) | 진취적 개척자적 기상 진작 및 신지식청소년으로 육성 |
|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 이사장 | 김순희 | 1997.10.24 | 5,751 | (5,327)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가치관 및 인성교육을 위한 교화 |
| 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 이사장 | 이수호 | 2008. 9.18 | 5,361 | (2,650) | 스포츠클럽 연합단체로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현 |
| 한국청소년연맹 | 총재 | 황우여 | 1981. 3.19 | 400,626 | (299,699) | 청소년 전인교육을 통한 민족·국가관 확립 |
| 한국청소년연합 | 대표 | 김창신 | 1997.11.27 | 6,500 | (30,100) | 인간사랑 자연사랑 나라사랑의 바람직한 청소년문화창달 |
| 한국청소년육성회 | 총재 | 문헌일 | 1964. 9.11 | 40,697 | (2,769) | 청소년의 비행예방과 건전활동 지도로 민주시민 육성 |
| 한국청소년인권센터 | 이사장 | 강병연 | 1993. 8.25 | 2,224 | (1,500) | 심신단련과 지도육성을 통해 건전한 가치관 확립 |
| 한국청소년재단 | 이사장 | 김병후 | 2000. 2.25 | 500 | (33) |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
| 한국항공소년단 | 총재 | 김홍경 | 2005. 8. 2 | 6,014 | (6,321) | 항공, 우주교육을 통한 도전, 개척정신 함양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총재 | 황규호 | 1980. 5.24 | 192,540 | (84,006) | 해양개척정신 고취를 통한 진취적 기상 증진 |

| 단체명 | 대표자 | | 설립 년월일 | 총인원수 | 청소년 회원수 | 설립목적 |
|---|---|---|---|---|---|---|
| | 직위 | 성명 | | | | |
|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 회장 | 박찬성 | 1989. 7.10 | 52,068 | (44,159) | 강건한 신체와 올바른 품성 및 국가관 확립 |
| 한국환경청소년단 | 총재 | 엄경섭 | 2001. 5. 9 | 7,500 | (5,890) | 환경친화적 생활양식 정착과 자연환경 계몽 감시운동 |
| 한국환경청소년연맹 | 대표 이사 | 송재수 | 2005. 3. 2 | 31,290 | (3,000) | 환경사랑 활동과 관련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보전 확산 이바지 |
| 흥사단 | 이사장 | 반재철 | 1913. 5.13 | 21,109 | (6,158) | 무실, 역행, 충의, 용감의 정신으로 인재 양성 |
| 21세기공동체개발원 | 이사장 | 손대근 | 1994. 6.28 | 580 | (24) | 수련거리연구 개발·보급하여 바람직한 청소년상 제시 |
| 대한치어리딩협회 | 이사장 | 이선화 | 2008. 8.25 | 3,500 | (3,000) | 치어리딩 보급을 통해 생활체육 진흥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 세계화교육문화재단 | 이사장 | 이돈희 | 2009.2.13 | 18,500 | (15,000) | 세계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청소년 단체 활동 |
|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 회장 | 윤종필 | 2008.2.26 | 2,274 | (1,300) | 술과 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하여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
| 한국청소년골프협회 | 회장 | 김창연 | 2005.12.24 | 1,638 | (961) | 청소년골프선수 선발 및 육성 |
| 한국청소년 스킨스쿠버협회 | 회장 | 강경순 | 2003.10. 6 | 12,806 | (4,000) | 해양스포츠 지도교육 능력 함양 및 해양환경보전활동 |
|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 | 이사장 | 이경희 | 2004. 9.10 | 5,555 | (147,840) | 향토봉사 활동을 통한 향토사랑 및 조국 사랑 기여 |
| 광주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김상룡 | 2008. 9.28 | 30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대구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남정달 | 1996. 3. 1 | 24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대전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박장동 | 2002.10.11 | 21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부산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임장근 | 2001. 9. 7 | 29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울산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최해상 | 1998. 3. 5 | 16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인천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최영수 | 2001.12. 4 | 14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 회장 | 서창훈 | 1995. 5.11 | 11개 지역청소년단체 | | 지역청소년단체 상호간의 협력·지원과 청소년 건전 육성 |

자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2012).

## 〈 부록 3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원현황

(2012년 9월 기준)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서울 | 수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세상 |
| 서울 | 역삼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 서울 | 강남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YWCA연합회후원회 |
| 서울 | 강동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서울 | 강북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학교법인 광운대학교 |
| 서울 | 강북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학교법인광운학원(광운대학교) |
| 서울 | 봉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원불교유지재단 |
| 서울 | 강서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흥사단 |
| 서울 | 화곡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강서구시설관리공단 |
| 서울 | 국제청소년센터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 서울 | 관악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온터두레회 |
| 서울 | 삼성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민간 | 직영 |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 서울 | 광진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흥사단 |
| 서울 | 구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교화연합회 |
| 서울 | 금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금천구청 |
| 서울 | 노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서울 |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서울 | 도봉숲속마을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송석문화재단 |
| 서울 | 쌍문동청소년랜드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문화활동협회 |
| 서울 | 도봉구립쌍문동 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교육전략21 |
| 서울 | 창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서울 | 창동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광운학원(광운대학교) |
| 서울 | 동대문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서울 | 사당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뉴서울자원봉사은행 |
| 서울 | 동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동작복지재단 |
| 서울 | 보라매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 서울 | 서울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서울 | 마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학교법인명지학원·명지전문대학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서울 | 마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명지전문대학 |
| 서울 | 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재단 |
| 서울 | 홍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한국청소년재단 |
| 서울 | 방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서울 | 서초구립방배유스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청예단 |
| 서울 | 서초청소년수련관(구립서초유스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 서울 | 성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서울YWCA |
| 서울 | 성동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 |
| 서울 | 성북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
| 서울 | 마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교통문화재단 |
| 서울 | 송파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대한예수교 로회서울노회유지재단 |
| 서울 | 서울올림픽파크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서울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서울 | 목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 |
| 서울 | 목동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
| 서울 | 신월청소년문화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한국천주교 살레시오수녀회 |
| 서울 | 문래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
| 서울 |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과 사람사랑 |
| 서울 |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 수련관 | 민간 | 직영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 |
| 서울 | 청소년직업체험센터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연세대학교 |
| 서울 | 청소년성문화센터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재)한국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서울 | 청소년미디어센터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
| 서울 | 용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
| 서울 | 은평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은평천사원 |
| 서울 | 종로청소년문화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
| 서울 | 서울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 서울 | 서울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
| 서울 | 중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
| 서울 | 청소년문화교류센터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 서울 | 서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서울 | 망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서울 | 중랑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부산 | 오마이랜드부산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혜화학원 |
| 부산 | 금정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범어청소년동네 |
| 부산 | 기장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부산 | 기장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부산 | 기장문화예절학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기장군도시관리공단 |
| 부산 | 장안캠프 | 야영장 | 민간 | 직영 | 개인(조민수) |
| 부산 | 양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불국토청소년도량 |
| 부산 | 양정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불국토청소년도량 |
| 부산 | 화지청소년문화회관 | 문화의집 | 민간 | 직영 | 동래정씨 대종중 |
| 부산 | 부산진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부산YMCA |
| 부산 | 금곡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부산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부산 | 사상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부산YMCA |
| 부산 | 사상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부산YMCA |
| 부산 | 구덕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내원청소년단 |
| 부산 | 구덕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재)내원청소년단 |
| 부산 | 금련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부산광역시장 |
| 부산 | 함지골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내원청소년단 |
| 부산 | 함지골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내원청소년단 |
| 부산 | 중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내원청소년단 |
| 부산 | 해운대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해운대구청장 |
| 부산 | 해운대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해성 |
| 부산 | 부산유스호스텔아르피나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부산도시공사 |
| 대구 | 중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대구중구청 |
| 대구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
| 대구 |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
| 대구 | 서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함께하는 마음재단 |
| 대구 |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
| 대구 |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
| 대구 | 북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대구광역시 북구청소년회관 |
| 대구 | 수성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대구 |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
| 대구 | 달서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 |
| 대구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
| 대구 | 달성군청소년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달성복지재단 |
| 인천 | 동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인천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인천 | 화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교육청 | 위탁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인천 | 연수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인천 | 계양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
| 인천 | 부평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인천 부평구문화재단 |
| 인천 | 서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서구시설관리공단 |
| 인천 | 연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서구시설관리공단 |
| 인천 | 가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서구시설관리공단 |
| 인천 | 검단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서구시설관리공단 |
| 인천 | 강화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군시설관리공단 |
| 인천 | 강화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군시설관리공단 |
| 인천 | 강화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병돈 |
| 인천 | 강화남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에버리치홀딩스 |
| 인천 |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인천 | 강화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이경래 |
| 인천 | 강화성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성산청소년효재단 |
| 인천 | 마니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지맨산업개발 |
| 인천 |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서해교문 |
| 인천 | 화도마니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윤종식 |
| 인천 | 강화갯벌나무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김선미 |
| 인천 | 그레이스힐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서울도시가스 |
| 인천 | 강화로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강화로얄호스텔 |
| 인천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
| 인천 | 인천광역시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
| 광주 | 광산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회복지법인 인애동산 |
| 광주 | 광산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광주 | 남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성원대학교 산학협력단 |
| 광주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단법인 맥지청소년교육원 |
| 광주 | 광주동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단법인 맥지청소년교육원 |
| 광주 | 북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인권센터 |
| 광주 | 서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광주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광주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서구청장 |
| 광주 | 광주광역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 광주 | 빛고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수녀회 |
| 광주 | 광주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흥사단 |
| 대전 | 평송청소년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대전YMCA |
| 대전 | 대전청소년수련마을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사)대전청소년심신수련회 |
| 대전 |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대전YMCA |
| 대전 | 대흥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대전YWCA |
| 대전 | 갈마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걸스카우트대전연맹 |
| 대전 | 도솔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대전흥사단 |
| 대전 | 삼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성광청소년문화회관 |
| 대전 | 탄방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전국주부교실대전시지부 |
| 대전 | 살레시오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
| 대전 | 유성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한국BBS대전충남연맹 |
| 대전 | 장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천주교유지단 |
| 대전 | 대덕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대전 | 대덕구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울산 | 중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울산YWCA |
| 울산 | 문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걸스카우트울산연맹 |
| 울산 | 공업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울산흥사단 |
| 울산 | 남목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울산기독교청년회 |
| 울산 | 동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유네스코 울산광역시협회 |
| 울산 | 울주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 울산 | 삼동배내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삼동청소년회 |
| 울산 | 울산학생교육원 | 수련원 | 교육청 | 직영 |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
| 울산 | 울주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울주군시설관리공단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기 | 권선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영통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수원청소년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장안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수원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시흥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시흥시시설관리공단 |
| 경기 | 시흥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시흥YMCA |
| 경기 | 수정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중원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양지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은행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금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민간 | 직영 | 금광교회 |
| 경기 | 부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부천문화재단 |
| 경기 | 부천시산울림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부천문화재단 |
| 경기 | 부천여성청소년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부천문화재단 |
| 경기 |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교육청 | 위탁 |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
| 경기 |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부천YMCA |
| 경기 | 동안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만안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안양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안양블루몬테 유스호스텔&리조트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현대엠코주식회사 |
| 경기 | 경기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
| 경기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
| 경기 | 일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
| 경기 | 선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아름다운 청소년들 |
| 경기 | 안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안산YWCA |
| 경기 | 뉴라이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정사무엘 |
| 경기 | 한국민속촌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조원관광개발(주)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기 | 용인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신갈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유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용인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용인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파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파인리조트 |
| 경기 | 한터캠프청소년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용실 |
| 경기 | 용인에코파크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한은규 |
| 경기 | 홈브리지캐빈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삼성애버랜드 |
| 경기 | 홈브리지힐사이드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삼성애버랜드 |
| 경기 | 스위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조영희 |
| 경기 | 팽성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평택YFC |
| 경기 | 원평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평택YMCA |
| 경기 | 북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평택YFC |
| 경기 | 안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평택YMCA |
| 경기 |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 경기 | 무봉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평택시청소년재단 |
| 경기 | 서평택아츠벨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황선길 |
| 경기 | 광명시립 오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좋은친구들 |
| 경기 | 광명시립 해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
| 경기 | 근로청소년복지관 | 특화시설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연맹 |
| 경기 | 당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군포시민의모임 |
| 경기 | 광정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군포탁틴내일 |
| 경기 | 군포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
| 경기 | 새싹동산청려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
| 경기 | 하내테마파크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전학열 |
| 경기 | 화성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화성시문화재단 |
| 경기 | 나래울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경기 | 유네스코평화센터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한국유네스코위원회 |
| 경기 | 청학서당예절교육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서재옥 |
| 경기 | 자연나라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동심 |
| 경기 | 덕평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신한개발(주)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기 | (주)앤탐슨아카데미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관응 |
| 경기 | 부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BBS이천시지회 |
| 경기 | 창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BBS이천시지회 |
| 경기 | 김포로그벨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형금 |
| 경기 | 사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김포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통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김포중봉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
| 경기 | 중앙(곤지암)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재)한국스카우트재단 |
| 경기 | 곤지암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올림픽관광 |
| 경기 | 경기도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재)대건청소년회 |
| 경기 | 안성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 경기 | 엄마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임계두 |
| 경기 | 덕풍2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청소년비젼센터 |
| 경기 | 의왕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의왕시인재육성재단 |
| 경기 | 여주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여주군수 |
| 경기 | 여주청소년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홍영광 |
| 경기 | 비전빌리지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마임 |
| 경기 | 여주황학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신재운 |
| 경기 | 여주리치빌리지 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리치빌리지 |
| 경기 |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용득 |
| 경기 | 양평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평군농업기술센터 |
| 경기 | 양평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한국교육문화재단 |
| 경기 | SN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윤천욱 |
| 경기 | 청운인성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강조 |
| 경기 | 미리내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미리내 |
| 경기 | 한국야쿠르트인재개발원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한국야쿠르트 |
| 경기 | 과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과천시장 |
| 경기 |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유린보은동산 |
| 경기 | 고양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정철호 |
| 경기 | 고양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고양문화재단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기 | 중산힐스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중산힐스 |
| 경기 | 서삼릉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사)한국스카우트연맹 |
| 경기 | 고양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고양YMCA |
| 경기 | 서울YMCA일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서울YMCA |
| 경기 | 수동유스타운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박원희 |
| 경기 | 우리마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영일 |
| 경기 | 서경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서경대학교 |
| 경기 | 국제광림비전랜드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광림교회 김정석 |
| 경기 |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남양주도시공사 |
| 경기 | 의정부시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
| 경기 | 대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오희택 |
| 경기 | 자연문화체험수련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사)이시대의 좋은소리 |
| 경기 | 교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파주YMCA |
| 경기 | 금촌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파주문화원 |
| 경기 | 문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해피월드복지재단 |
| 경기 | 영산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순복음선교회 |
| 경기 | 구리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구리시청소년수련관 |
| 경기 | 딱따구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신필호/신평호 |
| 경기 | 양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양주시장 |
| 경기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경기 | 일영샬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재)기독교대한가림유지재단 |
| 경기 | 양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주시장 |
| 경기 | 포천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포천시시설관리공단 |
| 경기 | 경기도학생포천야영장 | 야영장 | 교육청 | 직영 | 포천교육청 |
| 경기 | 베어스타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양상욱 |
| 경기 | 광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광림교회 |
| 경기 | 포천염광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염광수련원 |
| 경기 | 산정호수유스타운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종욱 |
| 경기 | 은곡유스타운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민우 |
| 경기 |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한국청소년한마음연맹 |
| 경기 | 축구마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축구마을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기 | 아침햇살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바로교육문화 |
| 경기 | 동두천청소년문화회관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동두천시장 |
| 경기 | 그린캠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양재철 |
| 경기 | 드림아일랜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하나레저 임성수 |
| 경기 | 영안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양병희(대한예수교영안교회) |
| 경기 | 유스토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성식 |
| 경기 | 가평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남상환 |
| 경기 | 서울시학생교육원 | 수련원 | 교육청 | 직영 | 서울특별시교육청장 |
| 경기 | 여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여산투어 |
| 경기 | 청심국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청심국제문화재단 |
| 경기 | 가평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임문갑, 장명순 |
| 경기 | 브띠프랑스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브띠프랑스 청소년수련원(한홍섭) |
| 경기 | 상천에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해성(한국기독교에덴성회) |
| 경기 | 코스모피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세영 |
| 경기 | 연인산캠핑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가평군시설관리공단 |
| 경기 | 가평목동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위탁 | (사)대한청소년육성회 |
| 경기 | 영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최용석 |
| 경기 | 군남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명진기업 |
| 경기 | 연천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분당사회관장 |
| 경기 | 임진강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박찬명 |
| 강원 | 강원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
| 강원 | 춘천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춘천YWCA (이희수) |
| 강원 | 강원도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천주교회 춘천교구 |
| 강원 | 춘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강원 | 강촌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위탁 |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
| 강원 | 오항리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강원 | 기화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산책커뮤니케이션 |
| 강원 | 강촌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이장일 |
| 강원 |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강원 | 원주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원주YMCA |
| 강원 | 중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강원 | 원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원주YMCA |
| 강원 | 원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금광교회 |
| 강원 | 예동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경안개발 |
| 강원 | 간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황민혜 |
| 강원 | 치악산드림랜드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야외활동협회 |
| 강원 | 치악산황둔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치악산리조트 |
| 강원 | 동서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동서울레스피아 |
| 강원 | 강릉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강릉시장 |
| 강원 | 강릉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강릉시장 |
| 강원 | 강릉시청소년해양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해양소년단강원연맹 |
| 강원 | 대관령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기세남 |
| 강원 | 동해향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동해예총 |
| 강원 | 동해송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동해예총 |
| 강원 | 동해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푸른동해 |
| 강원 | 동해승지골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동해시장 |
| 강원 | 문곡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강원연맹 |
| 강원 | 상장청소년문화의집(황지청소년장학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강원연맹 |
| 강원 | 철암청소년문화의집(철암청소년장학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강원연맹 |
| 강원 | 태백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강원연맹 |
| 강원 | 02 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태백관광개발공사 |
| 강원 | 속초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속초YMCA |
| 강원 | 속초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속초시시설관리공단 |
| 강원 | 설악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설악산유스호스텔 |
| 강원 | 도계청소년장학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삼척시장 |
| 강원 | 삼척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삼척시장 |
| 강원 | 홍천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홍천군수 |
| 강원 | 동북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민간 | 직영 | 창인학원 |
| 강원 | 홍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홍천군수 |
| 강원 | 홍천대명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대명레저산업 |
| 강원 | 홍천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홍천군수 |
| 강원 | 홍천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춘천YMCA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강원 | 횡성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문화협회 |
| 강원 | 풍수원성당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재단법인 천주교원주교구 |
| 강원 | 성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신안종합리조트 |
| 강원 | 유토피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유토피아유스호스텔 |
| 강원 | 둔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로얄관광 |
| 강원 | 세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개인 |
| 강원 | 영월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원주YMCA |
| 강원 |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강원 |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평창군수 |
| 강원 | 호렙오대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호랩동산 |
| 강원 | 용평리조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용평리조트 |
| 강원 | 평창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리드패밀리 |
| 강원 | 휘닉스빌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보광 |
| 강원 | 정선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정선군수 |
| 강원 | 신동청소년·아동 장학복지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강원연맹 |
| 강원 | 철원청소년회관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철원군수 |
| 강원 |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춘천YMCA |
| 강원 | 화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아름다운청소년들 |
| 강원 | 한국안전문화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한국안전문원 |
| 강원 | 양구읍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구군수 |
| 강원 | 양구남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구군수 |
| 강원 | 양구동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구군수 |
| 강원 | 방산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구군수 |
| 강원 | 양구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양구군 시설관리사업단 |
| 강원 | 양구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양구군수 |
| 강원 | 인제남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인제군수 |
| 강원 | 인제북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인제군수 |
| 강원 | (주)미리내캠프-내설악 미리내캠프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미리내캠프 |
| 강원 | 대경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이순옥 |
| 강원 | 고성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속초YMCA |
| 강원 | 현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속초YMCA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강원 | 거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속초YMCA |
| 강원 | 알프스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알프스리조트 |
| 강원 | 설악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문석민 |
| 강원 |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강원연맹 |
| 충북 | 청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교육청 | 위탁 | (학)주성학원 |
| 충북 | 청주시상당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충북연맹 |
| 충북 | 사조마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수안보사조마을 |
| 충북 | 일양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일양유스호스텔 |
| 충북 | 충주시청소년수련원 | 수련관 | 교육청 | 위탁 | (학)주성학원 |
| 충북 | 한국전통문화체험학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박명숙 |
| 충북 | 박달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종진 |
| 충북 | 제천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아름다운청소년들 |
| 충북 | 제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단촌청소년활동개발원 |
| 충북 | 후산리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이기철 |
| 충북 | 제천학생야영장 | 야영장 | 교육청 | 직영 | 제천교육지원청장 |
| 충북 | 충주호월악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지수 |
| 충북 | 청원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흥사단 |
| 충북 | 서당골청소년수련원관광농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박주희, 최지수 |
| 충북 | 보은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BBS충북연맹보은군지회 |
| 충북 | 별방유스타운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용태 |
| 충북 | 속리산알프스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위탁 | 한창환 |
| 충북 | 열림원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장동익 |
| 충북 | 태동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속리산알프스수련원 한창환 |
| 충북 | 속리산유스타운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계룡산업 최영환 |
| 충북 | 수련연수유스호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박승화 |
| 충북 | 속리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계룡산업 최영환 |
| 충북 | 옥천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옥천군수 |
| 충북 | 이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옥천군수 |
| 충북 | 청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옥천군수 |
| 충북 | 영동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영동군수 |
| 충북 | 증평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증평복지재단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충북 | 증평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권세원 |
| 충북 | 진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진천군수 |
| 충북 | 괴산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괴산군수 |
| 충북 | 괴산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대한청소년충효단 |
| 충북 | 충청북도자연학습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 |
| 충북 | 청소년수련원보람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오운문화재단보람원 |
| 충북 | 화양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화양청소년수련원 |
| 충북 | 음성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음성군수 |
| 충북 | 음성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음성군수 |
| 충북 | 꽃동네사랑의연수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예수의꽃 동네유지재단 |
| 충북 | 단양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단양군청소년 수련관운영위원회 |
| 충북 | 단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단양청소년 문화의집운영위원회 |
| 충북 | 매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매포청소년 문화의집운영위원회 |
| 충북 | 소백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세촌소백산유스호스텔 |
| 충북 | 단양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단양유스호스텔 |
| 충북 | 반딧불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반딧불수련원 |
| 충남 | 태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천안시설관리공단 |
| 충남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충남 | 독립기념관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독립기념관 |
| 충남 | 천안용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위탁 | (사)JCIKOREA-동천안 |
| 충남 | 천안상록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공무원연금공단 |
| 충남 | 천안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천안시장 |
| 충남 | 천연휴식공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전정길 |
| 충남 |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
| 충남 |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BBS대전충남연맹공주지회 |
| 충남 | 공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공주유스호스텔 |
| 충남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보령시불교청소년연합회 |
| 충남 | 보령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보령시시설관리공단 |
| 충남 | 대천오성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병직 |
| 충남 | 아산시청소년교육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학)동은학원 순천향대학교 |
| 충남 | 서해천수만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한국인성문화원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충남 | 서해안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서해안 청소년수련원 |
| 충남 | 서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서대학교 |
| 충남 | 논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논산시장 |
| 충남 | 논산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논산시장 |
| 충남 | 케이티앤지 상상마당 논산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컴퍼니에스에스 |
| 충남 | 금산다락원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금산군수 |
| 충남 | 마달피삼육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 |
| 충남 | 연기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마을 연기군지회(장백기) |
| 충남 | 부여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부여군 청소년수련원 |
| 충남 | 부여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부여군 청소년수련원 |
| 충남 | 삼정부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삼정관광호텔 |
| 충남 | 자연부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자연부여유스호텔 |
| 충남 | 서천군청소년문화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서울기독교청년회 |
| 충남 | 청양숭의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 충남 | 군포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군포시장 |
| 충남 |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
| 충남 | 홍성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
| 충남 | 홍성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홍성군청소년수련관 |
| 충남 | 예당저수지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예산군수 |
| 충남 | 태안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태안군수 |
| 충남 | 아가페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아가페유스호스텔 |
| 충남 | 서울가든(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오인근 |
| 충남 | 안면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안면도유스호스텔 |
| 충남 | 안면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
| 충남 | 꾸지나무골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꾸지나무골유스호스텔 |
| 충남 |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안면도해양유스호스텔 |
| 충남 | (주)케이와이엠 청포대썬셋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케이와이엠 청포대썬셋유스호스텔 |
| 충남 | 당진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인천청소년재단 |
| 충남 | 합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당진시청 |
| 충남 | 당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당진시장 |
| 충남 | 합덕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대전카톨릭청소년회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전북 | 솔내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
| 전북 | 전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
| 전북 | 완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전북 | 효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아모스청소년회 |
| 전북 | 덕진동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흥사단 |
| 전북 | 군산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군산기독교청년회 |
| 전북 |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군산기독교청년회 |
| 전북 |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전북 | 익산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익산YMCA |
| 전북 | 익산YMCA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민간 | 직영 | (재)익산YMCA |
| 전북 | (유)청소년특전캠프단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유)청소년특전캠프단 |
| 전북 | 정읍학생복지회관 | 수련관 | 교육청 | 직영 | 정읍교육청장 |
| 전북 | 정읍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정읍YMCA |
| 전북 | 신태인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정읍시장 |
| 전북 | 정읍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정읍시장 |
| 전북 | 정읍청소년문화체육관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정읍시장 |
| 전북 | 남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남원YMCA |
| 전북 | 남원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남원지리산 유스호스텔 |
| 전북 | 지리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남원지리산 유스호스텔 |
| 전북 | 김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김제시장 |
| 전북 | 김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김제시장 |
| 전북 | 금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김제시장 |
| 전북 | 모악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최지승 |
| 전북 | 만경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김제시장 |
| 전북 | 만경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전주안디옥교회 |
| 전북 | 신풍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민간 | 위탁 | 권영세 |
| 전북 | 세인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만석 |
| 전북 | 청정테마센터(청정인성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강동 |
| 전북 |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봉상청소년 육영회 |
| 전북 | 완주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완주군수 |
| 전북 | 한국스카우트송광훈련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전북 | 진안군마이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 전북 | 대광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장홍기 |
| 전북 | 만덕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원불교재단 |
| 전북 | 진안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한국YMCA전국연맹유지재단 |
| 전북 | 무주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
| 전북 | 무주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장호 |
| 전북 | 안성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나누는사람들 |
| 전북 | 반딧불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무주군수 |
| 전북 | 장수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장수군수 |
| 전북 | 장수 일스 리조트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와이제이 관광호텔(서인주) |
| 전북 | 임실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임실군수 |
| 전북 | 섬진강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성호 |
| 전북 | 회문산청소년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윤병규 |
| 전북 | 순창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순창군수 |
| 전북 | 고창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고창군수 |
| 전북 | 성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고창군수 |
| 전북 | 선운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직영 | 고창군수 |
| 전북 | 흥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고창군수 |
| 전북 | 썬리치랜드청소년수련의집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순오 |
| 전북 | 채석강리조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심기본 |
| 전북 |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부안군수 |
| 전북 | 부안군청림청소년수련시설 | 특화시설 | 공공 | 직영 | 부안군수 |
| 전남 | 목포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목포YMCA |
| 전남 |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목포YMCA |
| 전남 | 여수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여수지구회 |
| 전남 | 여수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여수YMCA |
| 전남 | 순천시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 |
| 전남 | 순천시청소년수련원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 |
| 전남 | 순천시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 |
| 전남 | 순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순천시장 |
| 전남 | 대한기독교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대한기독교청소년수련원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전남 | 나주시청소년수련관(일송정)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광주YMCA(광주기독교청년유지재단) |
| 전남 | 광양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광양YMCA |
| 전남 | 광양시청소년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광양YMCA |
| 전남 | 대나무골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대나무골야영장 |
| 전남 | 담양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담양군수 |
| 전남 | 담양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
| 전남 | 성암국제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국제청소년교육재단 |
| 전남 | 곡성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푸른청소년육성개발원 |
| 전남 | 곡성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사)청정청소년복지후원회전남동부지부 |
| 전남 |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구례군 |
| 전남 | 구례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갯돌청소년육성회 |
| 전남 | 국립고흥청소년 우주체험센터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전남 | 도화청소년수련실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고흥군수 |
| 전남 | 고흥청소년수련의집 | 수련원 | 공공 | 직영 | 고흥군수 |
| 전남 | 고흥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고흥군수 |
| 전남 | 보성유스호스텔(주)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임원택 |
| 전남 | 보성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보성기독교청소년협회 |
| 전남 | 장흥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들청소년센터 |
| 전남 | 장흥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회진면사무소 |
| 전남 | (사)남도청소년문화진흥원(남도국제교육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전남도립대학 |
| 전남 | 해남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임창완 |
| 전남 |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월드유스 비전해남군지부 |
| 전남 | 해남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자연사랑메아리 |
| 전남 | 영암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한국청소년인권센터 |
| 전남 | 함평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함평군수 |
| 전남 | 스카이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동휘 |
| 전남 | 옥정골쉼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강낙현 |
| 전남 |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사)남호청소년회 |
| 전남 | 완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삼동청소년회 |
| 전남 | 완도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사)꿈틀 |
| 전남 | 완도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사)삼동청소년회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전남 | 진도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남호청소년회 |
| 전남 | 진도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한국리더문화협회 |
| 전남 | 신안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엘림코뮤니어 |
| 전남 | 무안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무안군 |
| 경북 | 포항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경북 | 포항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경북 | 구룡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포항시시설관리공단 |
| 경북 | 한터울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김규태 |
| 경북 | 성도비치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최인석 |
| 경북 | 경주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경주시 |
| 경북 | 국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국민관광농원 |
| 경북 | 보문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보문청소년수련원 |
| 경북 | 서라벌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삼봉개발(주) 경주지점 |
| 경북 | OK그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양진형 |
| 경북 | 경주시산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서라벌 문화원정분남 |
| 경북 | 대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행조 |
| 경북 | 불국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손우익 |
| 경북 | 서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윤형돈 |
| 경북 | 신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이종찬 |
| 경북 | 해누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진성우 |
| 경북 | 토함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토함산유스호스텔 |
| 경북 | 포시즌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윤선길 |
| 경북 | 한국관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정자 |
| 경북 | 동궁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박순열 |
| 경북 | 계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송영일 |
| 경북 | Remember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성기 |
| 경북 | 동양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임대 | 동양유스호스텔 |
| 경북 | 김천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김천시 |
| 경북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경북청소년육성재단 |
| 경북 | 안동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안동시시설관리공단 |
| 경북 | 안동예절학교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안동예절학교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북 | 구미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구미시 |
| 경북 | 구미시선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구미시 |
| 경북 | 구미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밝은세상 |
| 경북 | 영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영주시 |
| 경북 | 영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BBS경상북도연맹 |
| 경북 | 마락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마락마을발전협의회 |
| 경북 | 물도리예술촌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길원개발 |
| 경북 | 영풍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은희 |
| 경북 | 아지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영주시 |
| 경북 | 영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영천시 |
| 경북 | 성덕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재)성덕유지재단 |
| 경북 | 보현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조정숙 |
| 경북 | 상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상주시 |
| 경북 | 상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상주시 |
| 경북 | 상주학생야영장 | 야영장 | 교육청 | 직영 | 상주교육청 |
| 경북 | 문경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문경시 |
| 경북 | 문경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문경시관광진흥공단 |
| 경북 | 선유동유스파크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양병모 |
| 경북 | 문경새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문경시관광진흥공단 |
| 경북 | 경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경산시 |
| 경북 | 세종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춘희 |
| 경북 | 계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경산시 |
| 경북 | 군위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군위군 |
| 경북 | 의성군청소년센터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의성군 |
| 경북 | 수하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영양군 |
| 경북 | 영덕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영덕군 |
| 경북 | 칠보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곽경수 |
| 경북 | 영덕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영덕군 |
| 경북 | 청도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청도군문화체육시설사업소 |
| 경북 | 옥계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고령군 |
| 경북 | 칠곡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북 | 아카데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송옥현 |
| 경북 | 예천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예천군 |
| 경북 | 봉화군청소년센터 | 수련관 | 공공 | 직영 | 봉화군 |
| 경북 | 봉화학생야영장 | 야영장 | 교육청 | 직영 | 봉화교육장 |
| 경북 | 울진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울진군 |
| 경북 | 울진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울진군 |
| 경북 | 울릉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울릉군 |
| 경북 | 울릉군청소년센터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울릉군 |
| 경남 | 경상남도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 |
| 경남 | 마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마산YMCA |
| 경남 | 여항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심태회 |
| 경남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 경남 | 진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창원시장 |
| 경남 | 여좌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창원시장 |
| 경남 | 진해청소년수련원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
| 경남 | 창원시진해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 경남 | 봉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
| 경남 | 늘푸른전당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창원시시설관리공단 |
| 경남 | 진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진주시장 |
| 경남 | 통영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 |
| 경남 | 사량섬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권휘수 |
| 경남 | 사천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재)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
| 경남 | 사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 |
| 경남 | 김해수련장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경훈 |
| 경남 | 김해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김해시장 |
| 경남 | 가야연수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가야개발 |
| 경남 | 김해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김해시시설관리공단 |
| 경남 | 봉화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선진규 |
| 경남 | 밀양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범죄예방위원 밀양지역협의회 |
| 경남 | 아멘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주형 |
| 경남 | 옥샘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학교법인 동래학원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남 | 밀양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재)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
| 경남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경남 | 거제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임춘남 |
| 경남 | 노자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임만규 |
| 경남 | 거제해와나루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해성 이성관 |
| 경남 | 옥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
| 경남 | 가배랑리조트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주)가배랑리조트수련원 |
| 경남 | 양산시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양산시장 |
| 경남 | 유스호스텔파래소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영남관광개발 |
| 경남 | 양산시청소년회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양산시장 |
| 경남 | 해운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해운개발(주) |
| 경남 | 자굴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경남사회진흥연수원 |
| 경남 | 대유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대봉 |
| 경남 | 의령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주)남강레저(박기곤) |
| 경남 | 홍의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사)경남청소년교육개발원 |
| 경남 | 아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정정숙 |
| 경남 | 온누리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윤현 |
| 경남 | 영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푸른쉼터장학재단 |
| 경남 | 창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푸른쉼터장학재단 |
| 경남 |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고성군(고성군수) |
| 경남 | 금송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정청명 |
| 경남 | 남해바다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박희택 |
| 경남 | 남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박희택 |
| 경남 | 한려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한대섭 |
| 경남 | 상주비치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천안순 |
| 경남 | 상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정우승 |
| 경남 | 하동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
| 경남 | 부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윤영화 |
| 경남 | 한가람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민간 | 직영 | 이재웅 |
| 경남 | 진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하동군수 |
| 경남 | 몽양당청학동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보곤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경남 | 청학동고목당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원석 |
| 경남 | 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미경 |
| 경남 | 청학동서당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서흥석 |
| 경남 | 청학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이명희 |
| 경남 | 하동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하동군수 |
| 경남 | 소남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김경호 |
| 경남 | 지리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임순 |
| 경남 | 경호강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신영철 |
| 경남 | 황매산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부산여자기독교청년회 |
| 경남 | 황석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조종원 |
| 경남 | 거창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거창YMCA |
| 경남 | 거창군월성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사)흥사단 |
| 경남 | 덕유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강철훈 |
| 경남 | 합천호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홍성렬 |
| 경남 | 합천군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위탁 | (사)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경남본부 |
| 경남 | 대암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성진경 |
| 경남 | 합천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합천군수 |
| 제주 |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제주시장) |
| 제주 | 비자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강영중) |
| 제주 | 제주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위탁 | 한국스카우트연맹(함종한) |
| 제주 | 남국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민간 | 직영 | 남국청소년수련원(신장실) |
| 제주 | 도남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도남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
| 제주 | 도평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도평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 |
| 제주 | 아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아라1동마을회 |
| 제주 |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시 |
| 제주 |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시 |
| 제주 | 추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시 |
| 제주 | 화북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화북동주민자치위원회 |
| 제주 | 한림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시 |
| 제주 | 제주시청소년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과 사람사랑(양종수) |
| 제주 | 명도암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공공 | 위탁 | (사)청소년과 사람사랑(양종수) |

| 시도 | 시설명 | 시설종류 | 설치 주체 | 운영 주체 | 운영자(단체) |
|---|---|---|---|---|---|
| 제주 | (주)메이풀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이경철 |
| 제주 | 뉴코리아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세호 |
| 제주 | 아르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아르본리조트 |
| 제주 | 월드와이드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할렐루야기도원 |
| 제주 |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아트오브리빙 |
| 제주 | 제주리조텔타운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주)메트로패밀리 |
| 제주 |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대정청소년수련관 | 수련관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성산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신풍리마을회 |
| 제주 | 안덕청소년수련원 | 수련원 | 공공 | 직영 | 대평리마을회 |
| 제주 | 강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강정동마을회 |
| 제주 | 남원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법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법환동마을회 |
| 제주 | 서귀포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서귀포YWCA |
| 제주 | 송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송산동청소년지도협의회 |
| 제주 | 신산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안덕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예래동청소년운영위원회 |
| 제주 | 토평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토평동마을회 |
| 제주 | 표선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 제주 | 하효청소년문화의집 | 문화의집 | 공공 | 위탁 | 하효마을회 |
| 제주 | 모구리야영장 | 야영장 | 공공 | 직영 | 제주특별자치도 |
| 제주 | 서귀포학생문화원야영장 | 야영장 | 교육청 | 직영 | 제주도교육청 |
| 제주 | 객코스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양경이 |
| 제주 | 노블렛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노블렛유스호스텔 |
| 제주 | 아로마리조트 제주유스호스텔(주)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김지인 |
| 제주 | 중문에스피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중문에스피유스호스텔 |
| 제주 | 중문웰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중문웰유스호스텔 |
| 제주 | C&P리조트유스호스텔 | 유스호스텔 | 민간 | 직영 | C&P리조트유스호스텔 |

자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2012).

## 〈 부록 4 〉 전국 청소년쉼터 현황

(2012년 9월 기준)

| 시도명 | 쉼터명 |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 보호 성별 (남, 여) | 운영주체 |
|---|---|---|---|---|
| 서울특별시 | 시립이동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 시립일시쉼터 | 일시(고정형) | 공용 | 서울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 시립금천쉼터 | 단기 | 여자 | 한국청소년연맹 |
| | 시립신림쉼터 | 단기 | 남자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
| | 강남구쉼터 | 단기 | 남자 | 사회복지법인감리회 태화복지재단 |
| | 노원구쉼터 | 단기 | 여자 | 천도교유지재단 |
| | 강서구쉼터 | 단기 | 남자 | 사단법인 새날청소년세상 |
| | 시립신림중기쉼터 | 중장기 | 남자 |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
| | 성심디딤돌쉼터 | 중장기 | 여자 | (재)성심수도회 |
| | 어울림쉼터 | 중장기 | 여자 | 어울림청소년쉼터 |
| | 안젤라의집 | 중장기 | 여자 | 아씨시의프란치스코전교수녀회 |
| 부산광역시 | 부산시일시청소년쉼터 | 일시(고정형) | 공용 | 학교법인 박영학원 |
| | 부산시일시청소년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학교법인 박영학원 |
| | 부산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학교법인 박영학원 |
| | 부산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재)불국토 청소년도량 |
| | 여자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자 | (재)범어 청소년 동네 |
| 대구광역시 | 대구쉼터 | 단기 | 여자 | (재)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
| | 달서구청소년쉼터 | 단기 | 남자 | 달서구청 |
| | 대구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자 | (재)대구기독교청년회 |
| 인천광역시 | 한울타리 | 일시(고정형) | 공용 | 청소년복지재단 하늘목장 |
| | 꿈꾸는 별 | 일시(고정형) | 공용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 인천여자하모니 | 단기 | 여자 | 성산사랑의 집 |
| | 인천남자바다의별 | 단기 | 남자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 우리들쉼터 | 단기 | 남자 | 한국근로청소년능력개발원 인천지부 |
| | 하늘목장 | 단기 | 여자 | (사)대한청소년육성회 |
| | 인천중장기 예꿈 | 중장기 | 여자 | 성산사랑의 집 |
| | 인천중장기 별마루 | 중장기 | 남자 |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
| 대전광역시 | 이동형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시도명 | 쉼터명 | 유형<br>(일시, 단기,<br>중장기) | 보호<br>성별<br>(남, 여) | 운영주체 |
|---|---|---|---|---|
| 대전광역시 | 일시쉼터 | 일시(고정형) | 공용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 대전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 대전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대한성공회유지재단 |
| | 대전중장기쉼터(여) | 중장기 | 여자 |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
| 울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사과나무청소년쉼터 | 단기 | 남자 | (사)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
| | 남구 꿈나무청소년쉼터 | 단기 | 여자 | (사)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
| | 울산광역시 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자 | (재)천주교예수성심전교수녀회 |
| | 울산여자 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자 | (사)울산기독교사회봉사회 |
| 광주광역시 | 광주일시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YWCA |
| | 광주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YMCA |
| | 광주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YWCA |
| | 광주여자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자 | 맥지회 |
| 경기도 | 안양일시쉼터(민들레뜨락) | 일시(고정형) | 공용 | 안양시 청소년육성재단 |
| | 남양주쉼터 | 일시(고정형) | 공용 | 사회복지재단 대한불교조계종 |
| | 의정부시 이동청소년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사)청소년공동체십대지기 |
| | 수원쉼터 | 단기 | 남자 | (사)참빛 청소년마을 |
| | 안양쉼터 for you | 단기 | 남자 | 사)청소년의 미래포유 |
| | 안산쉼터(한신) | 단기 | 여자 | (사)들꽃 청소년세상 |
| | 의정부쉼터십대지기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문화 공동체십대지기 |
| | 의정부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사)청소년문화 공동체십대지기 |
| | 성남새날쉼터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이 아름다운세상 |
| | 부천모퉁이쉼터 | 단기 | 여자 | 성심수도회 |
| | 용인푸른꿈쉼터 | 단기 | 남자 | (사)푸른꿈 청소년상담원 |
| | 평택쉼터 | 단기 | 여자 | (사)흥사단 평택지부 |
| | 안산쉼터(자유세대) | 단기 | 남자 | (사)청소년의 하늘과바다 |
| | 수원여자단기쉼터 | 단기 | 여자 | (사)참빛 청소년마을 |
| | 군포쉼터(하나로) | 중장기 | 남자 | (복)온누리복지재단 |
| | 고양열린쉼터 | 중장기 | 여자 | 선교감리교회 |
| | 용인여자쉼터 | 중장기 | 여자 | (사)푸른꿈 청소년상담원 |
| | 시흥쉼터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의 하늘과바다 |

| 시도명 | 쉼터명 | 유형 (일시, 단기, 중장기) | 보호 성별 (남, 여) | 운영주체 |
|---|---|---|---|---|
| 경기도 | 고양단기 | 단기 | 남자 | (사)행복한 세상 |
| | 성남시푸른청소년쉼터 | 단기 | 남자 | (사)안나의집 |
| | 구리시여자청소년쉼터 보금자리 | 중장기 | 여자 | (재)두레마을 |
| 강원도 | 강원도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 강원도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춘천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 |
| | 강원도중장기쉼터(보금자리) | 중장기 | 남자 | 천주교춘천교구 사회복지회 |
| | 강원도여자쉼터(루치아) | 중장기 | 여자 | 원주교구 가톨릭 사회복지회 |
| 충청북도 | 충북이동일시청소년쉼터 | 일시(이동형) | 공용 |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
| | 청주청소년쉼터 | 단기 | 남자 | 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
| | 청주느티나무쉼터 | 단기 | 여자 | 유스투게더 |
| | 충북중장기쉼터 | 중장기 | 남자 | 기독교장로회충북노회 |
| | 디딤돌 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자 | (재)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
| 충청남도 | 천안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만세 |
| | 천안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사)청소년만세 |
| | 아산남자단기 | 단기 | 남자 | 옥련청소년 육성개발원 |
| | 천안중장기남자쉼터 | 중장기 | 남자 | (사)청소년만세 |
| 전라북도 | 전주푸른쉼터 | 단기 | 여자 | (사)기독교청소년협회 |
| | 한울안청소년쉼터 | 단기 | 남자 | (사)한울안운동 |
| | 전주임마누엘쉼터 | 중장기 | 남자 | (사)사랑자리 |
| | 군산꽃동산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자 | (사)군산기독교청소년협회 |
| 전라남도 | 목포유달남자쉼터 | 단기 | 남자 | (사)청소년과미래자립지원센터 |
| | 목포유달여자쉼터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좋은세상 |
| | 여수시 중장기 쉼터 | 중장기 | 여자 | 여수YWCA |
| 경상북도 | 안동단기쉼터(희망의샘쉼자리) | 중장기 | 여자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안동교구 |
| | 구미단기쉼터(느티나무) | 단기 | 여자 | (사)청소년밝은세상 |
| | 포항중장기쉼터 | 중장기 | 여자 |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
| | 경북남자단기쉼터 | 단기 | 남자 | (재)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 |
| | 포항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자 | (사)포항청소년복지회관 |
| 경상남도 | 하라단기쉼터 | 단기 | 남자 | (사)하라 |
| | 김해YMCA 청소년단기쉼터 | 단기 | 여자 | 김해YMCA |

| 시도명 | 쉼터명 | 유형<br>(일시, 단기,<br>중장기) | 보호<br>성별<br>(남, 여) | 운영주체 |
|---|---|---|---|---|
| 경상남도 | 마야중장기쉼터 | 중장기 | 남자 | 한가람 문화재단 |
| 제주특별<br>자치도 | 제주쉼터 | 단기 | 여자 | (사)제주상담센터 |
| | 성지청소년쉼터 | 중장기 | 남자 | (재)성지문화재단 |
| | 온누리여자청소년쉼터 | 중장기 | 여자 | 사회복지법인 예담 |

자료 : 여성가족부(2012).

# 2012 청소년백서 편집위원 및 집필진, 감수자 명단

**기획 · 편집**

박현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김병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사무관
조선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훈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집필진**
(가나다순)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고의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김미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석병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장
김승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태훈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문연구원
김홍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박현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장
배주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서일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사무관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상현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장
오경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장
오정희 여성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 서기관
임연기 공주대학교 교수
조규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팀장
조선하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전문위원
조아미 명지대학교 교수
조용수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감수진**
(가나다순)

길은배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송병국 순천향대학교 교수
유성렬 백석대학교 교수
임영식 중앙대학교 교수
전명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본부장

여성가족부
# 2012 청소년백서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
기 획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전 화 | 02-2075-4500
인 쇄 | (사)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정보화인쇄사업단
발행일 | 2012.12
발간등록번호 | 11-1383000-000102-10

www.mogef.go.kr